

# 구례 문화유씨 운조루 문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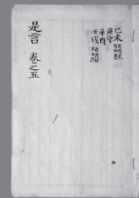
구례 운조루의 재산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의 『고문서집성』 38권 중 명문문기류  
를 번역하였다.

구례  
문화유씨  
운조루  
문서 1

### 일러두기

- 본 역주집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고문서집성』 38권을 저본으로 하였다.
- 탈초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한 것인데 수정을 가했다.
- 탈초원문은 해독의 용이성을 위해 띄어쓰기를 했다.
- 원문이 결락되거나 보이지 않은 경우는 탈초문에 □로 표기하였다.
- 번역의 순서는 각 문서마다 먼저 제목을 붙이고, 이어서 탈초문, 번역문, 해설문 순서로 하였다.
- 목차는 『고문서집성』 38권을 그대로 따랐다.

# 구례 문화유씨 운조루 문서 1



구례 운조루의 재산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의 『고문서집성』 38권 중 명문문기류  
를 번역하였다.

## 발간사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출연한 학술기관입니다. 개원 1년의 성과를 상재합니다.

본원은 그동안 고문서 수집 집성, 근대 문집의 표점 영인, 고문서·일기·선현 문집 국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의 과제는 두 범주로 요약됩니다.

하나, 호남한국학 기초자료 발굴  
둘, 호남 사상·생활문헌 국역

이상의 연구사업은 서세동점 이후 구학(舊學)·구습(舊習)으로 폄하되었던 전통적 학술사조와 생활세계를 탈근대 차원에서 재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난 위망과 극단의 세월에 덧씌워진 ‘소국 트라우마’ ‘문명 콤플렉스’와 같은 문화심리의 질곡을 걷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호혜 공존의 생활지혜 나아가 법고창신(法古創新) 연구혁신(沿舊革新)의 사유 역정이야말로 당당한 새로운 미래 설계의 자양임을 웅변하고 싶습니다.

2019년 1월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이종범

구례 운조루 고문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고문서집성』 38권을 저본으로 하였다. 운조루에는 많은 자료가 소장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운조루의 재산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명문문기류만을 번역하기로 한다. 그동안 운조루의 고문서에 대해서는 몇 종류의 연구성과가 나왔으나 명문문기류를 번역한 적은 없었다.

운조루 고문서 중에는 간찰을 제외하고는 명문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특히 구례에 이거하여 새롭게 시작한 문중과 관련한 문서이기 때문에 한 문중이 어떻게 위상을 확보하고 토착화되는지, 그리고 구례지역 토반의 향방은 어떤지 등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구례 운조루의 창건자인 유이주柳爾胄(1726~1797)는 대구에서 구례로 입거한 시조이다. 그전에 구례와의 연고가 있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그가 풍수에 능해서 금환락지로 알려진 오미리에 터를 잡게 되었다는 설이 있을 뿐이다.

유이주의 자는 성우聖佑, 호는 귀만외歸晩窩로, 경상도 대구에서 영삼榮三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최흥원崔興遠에게서 수학하였다. 양천허씨와 혼인하였으며, 1753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1767년에 남한산성 축성에 참여, 1772년에 낙안군수에 부임하여 1773년 6월에 세곡선이 치패한 일로 유배되었는데, 『낙안읍선생안』에는 '대구 거주'라고 쓰여 있다. 1776년에 함흥성 축성에 참여, 1777년에 경상도 상주영장, 1782년에 평안도 용천부사, 1789년에 함경도 삼수부사, 1791년에 용천부사에 다시 임명되었다가 1793년에 병으로 사퇴하고 오미동에 은거하다가 사망했다. 명문문기류에서는 '삼수공'으로 명명된다.

유이주의 오랜 관직생활로 인해 운조루는 대부분 아들 유덕호柳德浩(1757~1815)가 맡아서 이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덕호의 자는 선양善養, 호는 수분실隨分室, 유이익柳爾翼의 둘째아들로 태어나서 유이주에게 입계했고, 1775년에 재령이씨載寧李氏 이시화李時華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시화는 구례의 토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1780년 말녀 깃부문기>에 보면, 토지면에 있는 논 53두락지 241복 9속과 밭 4두락지 12복 9속, 그리고 노비 8구를 유덕호의 처에게 분재해 주었다. 유덕호는 명문문기류

에서는 ‘참판공’으로 명명된다. 유덕호의 형제는 8명이나 되는데, 그중 막내동생인 광호光浩의 아들 억億이 덕호의 아들로 입계했다.

유이주가 구례에서 최초로 작성한 갑오식(1774) 호적단자에 의하면, 구룡정리에서 살았으며, 본관은 인동仁洞이고, 아들에 택호宅浩가 있는데 정축생이다. 즉 유이주는 1774년 이전에 구례 구룡정리로 입거했고, 대구에 있을 때는 인동유씨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택호는 유덕호의 이름인데, 1774년에 택호宅浩, 1780년에 술호述浩, 1786년에 덕호德浩로 개명했음을 알 수 있다. 경자식(1780) 호적단자에는 오미동에서 살고 있으며, 본관은 문화文化로 기재하고 있다. 이때는 며느리 이씨도 함께 호적에 올라있다.

호적을 통해 보면 덕호가 유이주의 양자가 된 것은 구례로 이거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운조루의 창건은 집에 있는 유덕호가 주관하여 이루어졌을 것이 확실하다. 일기에 의하듯이 7년간의 건설 끝에 병신년(1776) 9월에 오미동으로 입주한 것이고, 이때 100여칸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구례로의 이거 계획은 1770년 이전에 세워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유이주가 형성한 재산의 규모를 살펴려면 우선 1793년에 작성한 장자구처기長子區處記와 차자구처기次子區處記 및 도문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는 장자에게 전답田畷 31석 3두 5도지, 노비 14구 등과 건물 78칸을 물려주었으며, 차자(서자)에게는 전답 13석지와 노비 6구를 구처해주고, 용정龍井리에 이 건한 와가瓦家와 초가草家를 모두 허급해 주었다. 이밖에도 같은 날 작성된 도문기에 의하면 큰조카 찬호贊浩의 몫으로 토지면에 있는 논 16두락을 나누어 주었고, 중질仲姪 천호天浩에게 8두락과 대전埤田과 초가草家 1채를 주었으며, 당질堂姪 문호文浩에게 5두락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다면 유이주 생전에 형성된 재산은 전답 45여석, 노비 20구 정도 되었다. 그는 장자에게는 풍천豐川에서 일가를 찾아온 사람이 있다면 형제가 각자 1석의 토지와 1구의 노비를 내어주라는 말과 오미동 주변의 산림이나 산이 모두 나의 소유라는 말을 했고, 또 차자에게는 중형 구九가 이후에 등과登科하면 몫에서 10두락을 내주라는 단서를 달았다.

유덕호 때는 재산이 얼마나 되었을까? 1815년 1월 27일에 유덕호柳德浩가 작성한 분재기의 도문기都文記를 보면, 딸 최보택崔輔澤에게 논 2석락지石落只(40두락), 돈 1000냥, 그리고 노비 1구를 허급해주었는데, 이것을 포함하여 물려받은 땅 중 6석 18두락을 자신이 범용한 것을 밝히고, 장자 영역 억億의 몫으로는 전답 40석 13두락과 가대家埜와 죽전竹田, 그리고 노비 26구를 주었다. 전답은 줄었

고, 노비는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덕호 이후의 인물을 대략 살펴보면, 유덕호의 양자인 유억柳億(1796~1852)의 자는 대년大年, 호는 원석圓石, 초명은 진억震億으로, 생부는 광호光浩이다. 1825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우후虞侯와 중군中軍을 지냈는데, ‘우후공’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유억의 아들로는 유현룡柳見龍(1817~1851)과 택선宅善(璟龍) 등이 있는데, 유현룡의 자는 내문乃文, 호는 농월현弄月軒으로, 문서에서는 ‘강령공’으로 칭해진다. 택선은 1851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유현룡의 아들에 유제양柳濟陽(1843~1922)이 있는데, 자는 낙중洛中, 호는 이산二山으로, 일찍 부친을 여의고 택선의 보살핌을 받았다. 운조루에 소장된 문서는 주로 유제양 때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제양은 구례의 시사詩社가 활성화되는 데에 큰 공을 세웠다.

운조루의 명문문기류는 550건가량 조사되었는데, 그중 480여 건이 토지매매문서이다. 나머지는 분재기나 허급명문, 배자, 수표, 소지 등으로 매매문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운조루의 매매명문은 구문기가 많은 양을 차지한다. 가장 많은 구문기를 가지고 있는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の 함자답鹹字畓을 예로 들면, 함자답의 매매가 한 번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1두락지 2복 2속 곳의 매매과정을 보면, <1784년 노녀 업이業伊 토지명문>, <1772년 권수이權守伊 토지명문>, <1765년 승僧 인혜印惠 토지명문>, <1757년 백상봉白上奉 토지명문>, <1757년 최崔 노녀 예산禮山 배자牌子>, <1756년 최한주崔漢柱 토지명문> 등 6개의 문기가 남아있다. 즉 1756년에 최한명崔漢明이 최한주崔漢柱에게 3냥에 방매하였고, 1757년에 최한주의 노녀 예산禮山이 주인의 배자에 따라 백상봉白上奉에게 3냥에 방매하였으며, 1765년에는 백상봉이 승僧 인혜印惠에게 9냥에 방매하였고, 1772년에 인혜印惠가 권수이權守伊에게 다른 논인 구만촌九萬村的 이자답李字畓 4두락지 16부 5속 곳과 함께 46냥에 방매하였고, 1784년에 유이주가 그것을 80냥에 산 것이다.

한편 또 함자답에 대해서는 1789년에 황추성黃秋成에게서 유씨 노녀 용남龍男이 7두락지 27부 7속과 4두락지 12부 4속, 합 11두락지 40부 1속인 곳을 100냥에 샀는데, 이것과 관련문서도 몇 건이 있다. 토지는 꼭 합쳐서 매매되는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문건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전답에 대한 소유권은 김후복金厚朴 → 김일용金日龍 → 이인종李仁宗·정조이鄭沼吏 → 이덕창李德唱·이수원李水元 → 김순래金順萊·석명선釋明善 → 연곡사중燕谷寺中·승僧 숙충淑聰 → 이수백李水白·절의 삼강



三綱 → 최생원崔生員택 → 이원세李元世·이덕삼李德三 → 승僧 채원采元·황추성黃秋成 → 유이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1791년 12월 29일 유삼수柳三水택 노奴 복래卜來가 김씨 노 태재에게서 태종 7두락지 32부 8속 곳을 매입했는데, 그것과 관련한 문건, 1791년 12월 14일에 유덕호柳德浩가 조종득에게서 2부 2속 곳과 1부 9속 곳을 매입했는데, 이것에 관련한 문건 등이 더 많이 있다.

전답의 자호는 천자문 순서로 정해지는데, 명문문기류에 많이 보이는 전답의 자호를 뽑아보면 대부분 토지면에 있다. 문전의 검자답, 삼수의 과자답, 죽천의 금자답, 구정자의 내자답, 대천의 등자답과 전, 유목정 또는 천황치의 로자답, 하죽천의 상자답과 전, 구만리 통보평의 생자답과 이자답, 금곡의 양자답, 내하촌의 운자대전, 구만리 당산의 함자답, 천황치 팔송정의 위자답, 구만리 보석의 중자답, 구만리 산정의 채자답, 유목정의 출자답, 세초미의 칭자답, 구만리 송정자의 해자답 등이 그것이다.

지명을 보면 구만리의 경우에는 마을 이름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들판 이름을 쓰고 있어서 그것만을 가지고는 어디인지 확인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대부분 토지면 구만리에 소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토지면 이외에는 문척면의 식자답, 백자답, 구자전과 답, 마산면의 월자전, 간전면 백운천 산지 등이 더 있다. 자호별 토지 소유권의 이동 경로를 쉽게 살피기 위해서 본서의 끝에 부록으로 목록을 실는다.

운조루의 전답 매매과정을 보면, 유이주 때는 ‘유영장택 노’ 이름으로 1780년 1건, ‘유용천택’이라는 이름으로 1787년에 2건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노비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 앞에 삼수택, 낙안택, 부사택, 영장택 등의 이름이 붙어있어서 구별을 가능하게 했다. 유덕호의 경우에는 유술호나 유덕호의 이름으로 매매된 경우도 있다.

업이 : 1784년 2건, 1785년 2건, 1786년 3건, 1787년 1건, 1789년 1건, 1791년 1건

용남 : 1783년 3건, 1787년 1건, 1789년 1건

용봉 : 1779년 1건, 1780년 1건, 1784년 1건, 1786년 1건

석철 : 1788년 1건

연남 : 1783년 1건

유덕호 : 1779년 2건(유술호), 1786년 1건, 1787년 2건, 1791년 1건, 1796년 3건, 1799년 1건,

1800년 1건, 1810년 1건(노비명문)

이상에서 보면 1779년에 매매한 것이 가장 이르다. 매수자 이름이 쓰여있지 않은 것도 다수 있는데, 대부분은 운조루 문화유씨가 산 것으로 판단된다. 1764년 1건, 1784년 1건, 1791년 2건, 1793년 1건, 1795년 1건 등부터 1903년 1건까지 총 72건이 있다.

노 가팔리가 산 명문도 많이 있는데, 가팔리는 이생원택 노비이다. 1721년부터 1751년 사이에 10건의 매매문서가 있고, 이밖에 이생원의 노비로 나온 것이 1717년부터 1745년까지 5건이 더 있으며, 이원석李源碩의 이름으로 기재된 매매문건이 1727년부터 1754년까지 11건이 있어서 모두 26건이 된다. 이시화의 이름으로 매매된 명문도 상당수 있으니, 1755년부터 1768년까지 12건의 매매문서가 있는데 1건만이 매도문서이고 나머지는 매입문서이다. 이것을 볼 때 이원석은 이시화의 아버지가 아니었나 싶고, 이것이 모두 사위 유덕호 집안으로 옮겨온 것이 아닌가 한다.

본서에서 번역대상 문건은 모두 554건인데, 이것을 시대별로 나누어보면 1600년대에 작성된 것은 74건이고, 1700년대에 작성된 것은 357건이며, 1800년대에 작성된 것은 104건, 1900년대 7건, 미상 7건이다. 즉 1700년대에 가장 많은 문건이 작성되었다. 이것으로 유이주 때 많은 매입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매매과정에 많이 나온 성씨도 구분할 수 있는데, 김씨와 이씨가 가장 많이 나오고, 박씨, 정씨, 장씨, 고씨, 문씨, 손씨, 최씨, 윤씨, 권씨, 강씨 등도 몇 차례씩 등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승려가 많이 등장한다.

운조루의 고문서는 호남의 문헌세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교지나 명문, 소지 외에도 간찰이 1700여 건이 남아있고, 또 유제양과 그의 손자 유형업이 기록한 일기도 남아있어서 18세기 문중의 토착화 과정이나 기타 사회사 및 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훌륭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자료들의 번역도 속히 이루어져서 호남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9년 1월

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원 권수용

차례

발간사	04
해제	05
1. 1691년 승僧 명선明善 별급문기別給文記	29
2. 1727년 차자次子 정복延福 별급문기別給文記	31
3. 1735년 말상좌末上佐 백종伯從 허여명문許與明文	32
4. 1733년 세 자녀 화회문기와會文記	33
5. 1777년 3상좌三上佐 깃급문기給都文記	39
6. 1780년 말녀末女 깃부문기給付文記	42
7. 1793년 가사家舍·전민田民 도문기都文記	43
8. 1793년 장자구처기長子區處記	51
9. 1793년 차자구처기次子區處記	61
10. 1809년 최보택崔輔澤 깃급문기給文記	66
11. 1815년 가사家舍·전민田民 도문기都文記	67
12. 1815년 가사家舍·전민田民 도문기都文記	70
1. 1810년 유덕호德浩 노비명문奴婢明文	73
1-1. 1815년 고두열高斗列 고목告目	75
1-2. 1815년 노奴 해손亥孫 소지所志	76
1-3. 1848년 토지명문土地明文	77
1-4. 1847년 토지명문土地明文	79
1. 1721년 장계한張啓漢 토지명문土地明文	80
2. 1707년 성안性眼 허여명문許與明文	82
3. 1642년 오만복吳萬福 토지명문土地明文	83
4. 1686년 이기룡李起龍 처妻 민조이閱召史 토지명문土地明文	84
5. 1690년 석웅釋熊 토지명문土地明文	85

6. 1691년 장선히張善何 토지명문土地明文	86
7. 1691년 장선홍張善弘 토지명문土地明文	88
8. 1728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89
9. 1779년 이효재李孝才 토지명문土地明文	90
10. 1786년 노녀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91
11. 1785년 노녀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92
12. 1789년 권직형權直衡 소지所志	94
13. 1789년 노녀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95
14. 1789년 수리색修理色 배자牌旨	96
15. 1763년 유천지柳千枝 허여명문許與明文	97
16. 1769년 양수정梁水廷 토지명문土地明文	98
17. 1769년 한씨韓氏 인쇄印慧 토지명문土地明文	100
18. 1772년 권수이權守伊 토지명문土地明文	101
19. 1784년 노녀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102
20. 1765년 승僧 인쇄印惠 토지명문土地明文	103
21. 1757년 백상봉白上奉 토지명문土地明文	104
22. 1757년 노녀 예산禮山 배자牌子	106
23. 1756년 최한주崔漢柱 토지명문土地明文	106
24. 1764년 토지명문土地明文	107
25. 1758년 이의송李宜松 토지명문土地明文	108
26. 1722년 호노戶奴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110
27. 1719년 박지화朴枝華 토지명문土地明文	111
28. 1718년 김해준金海准 토지명문土地明文	112
29. 1713년 승僧 승묵勝默 토지명문土地明文	113
30. 1735년 엄한필嚴漢弼 토지명문土地明文	114
31. 1733년 김조이金召吏 토지명문土地明文	115
32. 1752년 김석지金碩只 토지명문土地明文	116
33. 1780년 공재창孔再昌 토지명문土地明文	118
34. 1785년 여방좌呂邦佐 토지명문土地明文	119
35. 1786년 노녀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120
36. 1783년 노녀 선립先立 배자牌子	121
37. 1783년 노녀 용남龍男 토지명문土地明文	122

38. 1767년 노奴 선립善立 토지명문土地明文	123
39. 1729년 김해준金海俊 토지명문土地明文	124
40. 1798년 수노首奴 임적壬迪 토지명문土地明文	125
41. 1795년 정소남丁小男 토지명문土地明文	127
42. 1795년 김덕팔金德八 토지명문土地明文	128
43. 1791년 노奴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129
44. 1755년 김광서金光瑞 토지명문土地明文	130
45. 1751년 김광해金光海 토지명문土地明文	131
46. 1653년 지귀택智貴宅 토지명문土地明文	132
47. 1652년 이상원李尙元 토지명문土地明文	133
48. 1756년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134
49. 1752년 정승조鄭昇朝 토지명문土地明文	135
50. 1741년 종조從祖 토지명문土地明文	136
51. 1717년 이원인李源仁 토지명문土地明文	137
52. 1699년 김해준金海准 토지명문土地明文	138
53. 1697년 김덕립金德立 토지명문土地明文	139
54. 1696년 승僧 일행日行 토지명문土地明文	141
55. 1670년 비婢 학례鶴禮 토지명문土地明文	142
56. 1783년 허구許侏 토지명문土地明文	143
57. 1781년 백악지白惡只 토지명문土地明文	144
58. 1719년 황팔인黃八引 토지명문土地明文	145
59. 1707년 정수영鄭秀永 토지명문土地明文	147
60. 1666년 정지훈鄭之勳 토지명문土地明文	148
61. 1721년 노奴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149
62. 1759년 이의송李宜松 토지명문土地明文	150
63. 1764년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151
64. 1699년 정사길鄭士吉 허여명문許與明文	153
65. 1672년 정사길鄭士吉 토지명문土地明文	154
66. 1789년 노奴 용남龍男 토지명문土地明文	155
67. 1783년 승僧 채원采元 토지명문土地明文	156
68. 1763년 이원세李元世 토지명문土地明文	158
69. 1748년 노奴 희선喜先 토지명문土地明文	169

70. 1740년 이수백李水白 토지명문土地明文	160
71. 1707년 이덕창李德唱 토지명문土地明文	161
72. 1735년 연곡사중燕谷寺中 허급명문許給明文	163
73. 1751년 노奴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164
74. 1711년 김순래金順萊 토지명문土地明文	165
75. 1685년 이인종李仁宗 토지명문土地明文	167
76. 1682년 김일용金日龍 토지명문土地明文	168
77. 1763년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169
78. 1745년 보평沔坪 제작지譜作者 토지명문土地明文	171
79. 1717년 노奴 점봉占奉 토지명문土地明文	172
80. 1746년 김해준金海俊 등 소지所志	172
81. 1745년 김해준金海俊 등 소지所志	175
82. 1764년 김광서金光瑞 토지명문土地明文	177
83. 1746년 재환再還 토지명문土地明文	178
84. 1713년 박임생朴任生 토지명문土地明文	179
85. 1735년 강삼봉姜三奉 토지명문土地明文	180
86. 1677년 김호일金浩日 토지명문土地明文	181
87. 1780년 노奴 용봉用奉 토지명문土地明文	182
88. 1747년 석삼익釋三益 토지명문土地明文	184
89. 1750년 승僧 성열成涅 토지명문土地明文	185
90. 1733년 이만일李萬日 토지명문土地明文	186
91. 1731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187
92. 1701년 차노差奴 태복太卜 배지牌子	189
93. 1701년 박계웅朴戒雄 토지명문土地明文	190
94. 1787년 노奴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191
95. 1787년 승僧 채원采元 토지명문土地明文	192
96. 1760년 김선귀金善貴 토지명문土地明文	193
97. 1760년 김선귀金善貴 토지명문土地明文	194
98. 1753년 김재구金再九 토지명문土地明文	195
99. 1762년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197
100. 1772년 노奴 원반元反 토지명문土地明文	198
101. 1789년 강지택姜之澤 토지명문土地明文	199

102. 1795년 토지명문土地明文	200
103. 1787년 문창옥文昌郁 토지명문土地明文	202
104. 1780년 남궁참南宮諱 토지명문土地明文	203
105. 1787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204
106. 1787년 유용천柳龍川댁 토지명문土地明文	205
107. 1787년 유용천柳龍川 토지명문土地明文	207
108. 1756년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208
109. 1732년 최인관崔寅寬 토지명문土地明文	209
110. 1702년 김익명金益明 토지명문土地明文	210
111. 1732년 관노官奴 정만이鄭萬伊 소지所志	212
112. 1732년 손효근孫孝根 토지명문土地明文	214
113. 1733년 김해준金海俊 토지명문土地明文	215
114. 1743년 이재창李再昌 토지명문土地明文	216
115. 1733년 재찬再讚 토지명문土地明文	218
116. 1734년 재찬再贊 토지명문土地明文	219
117. 1697년 최선백崔善白 토지명문土地明文	221
118. 1690년 전후백全厚白 토지명문土地明文	222
119. 1750년 이주국李柱國 토지명문土地明文	223
120. 1731년 노녀 잉질산荊叱山 토지명문土地明文	224
121. 1706년 승僧 해명海明 토지명문土地明文	225
122. 1748년 달연達演 토지명문土地明文	227
123. 1735년 세민世敏 토지명문土地明文	228
124. 1751년 승僧 성탄成坦 토지명문土地明文	229
125. 1731년 이선익李先益 토지명문土地明文	230
126. 1714년 승僧 취엄就嚴 토지명문土地明文	232
127. 1718년 노녀 장발長發 토지명문土地明文	233
128. 1656년 김시양金時陽 토지명문土地明文	234
129. 1707년 서상문徐尙文 토지명문土地明文	235
130. 1722년 이희증李希曾 토지명문土地明文	236
131. 1725년 이원식李源植 토지명문土地明文	237
131-1. 1724년 이수점李壽漸 토지명문土地明文	238
132. 1705년 박각동朴軻同 토지명문土地明文	239

133. 1694년 박낙복朴祿福 토지명문土地明文	241
134. 1725년 이원식李源植 토지명문土地明文	242
135. 1724년 이수점李守漸 토지명문土地明文	243
136. 1705년 박각동朴芻同 별급명문別給明文	244
137. 1694년 박낙상朴祿尙 토지명문土地明文	245
138. 190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246
139. 1748년 노奴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247
140. 1745년 이무발李戊發 토지명문土地明文	248
141. 1810년 토지명문土地明文	250
142. 1785년 노奴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251
143. 1784년 노奴 용봉龍奉 토지명문土地明文	252
144. 1797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253
145. 1786년 노奴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254
146. 1785년 고응두高應斗 토지명문土地明文	256
147. 1783년 노奴 운삼雲三 토지명문土地明文	257
148. 1788년 유인호柳仁浩 토지명문土地明文	258
149. 1682년 오기립吳起立 토지명문土地明文	259
150. 1741년 노奴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260
151. 1729년 김해일金海日 토지명문土地明文	261
152. 1725년 문후명文厚明 토지명문土地明文	262
153. 1710년 노奴 석민石民 토지명문土地明文	263
154. 1727년 이원석李源石 토지명문土地明文	264
154-1. 갑신년 김희金洵 처妻 장씨張氏 토지명문土地明文	266
155. 1779년 유술호柳述浩 토지명문土地明文	267
156. 1779년 유하옥柳夏燭 토지명문土地明文	268
157. 1806년 노상갑盧祥甲 토지명문土地明文	270
158. 1876년 노병진盧秉鎭  표標	272
159. 1876년 노병진盧秉鎭  표標	273
160. 1876년 토지명문土地明文	275
161. 188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276
162. 1857년 토지명문土地明文	277
163. 1824년 토지명문土地明文	278



164. 189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279
165. 1896년 유제양柳濟陽 소지所志	280
166. 1747년 최우천崔佑天 토지명문土地明文	282
167. 1756년 최우천崔佑天 소지所志	284
168. 1745년 윤상룡尹尙龍 토지명문土地明文	285
169. 1725년 김시백金時伯 토지명문土地明文	286
170. 1745년 노녀 귀만貴萬 토지명문土地明文	287
171. 1735년 이용이李龍伊 토지명문土地明文	288
172. 1714년 이세안李世安 회회명문和會明文	289
173. 1706년 이세안李世安 토지명문土地明文	291
174. 1726년 이희증李希曾 토지명문土地明文	292
175. 1725년 김재귀金再貴 토지명문土地明文	293
176. 1740년 이재창李再昌 토지명문土地明文	294
177. 179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295
178. 1651년 호노戶奴 이룡而龍 토지명문土地明文	296
179. 1745년 이재창李再昌 토지명문土地明文	298
180. 1792년 이수남李壽南 토지명문土地明文	299
181. 1799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300
182. 1795년 장전張灑 토지명문土地明文	301
183. 1840년 토지명문土地明文	302
184. 182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303
185. 1813년 고육석高六錫 토지명문土地明文	304
186. 1820년 장봉익張鵬翼 토지명문土地明文	305
187. 1812년 박진형朴鎭衡 토지명문土地明文	306
188. 1743년 노녀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307
189. 1713년 박옥대朴玉代 소지所志	309
190. 1713년 김독산金禿山 토지명문土地明文	310
191. 1756년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312
192. 1705년 지사持寺 늑준勒俊 허여명문許與明文	313
193. 1702년 김억세金億世 토지명문土地明文	314
194. 1666년 박낙복朴祿朴 토지명문土地明文	315
195. 1693년 가원可元 토지명문土地明文	317

196. 1741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318
197. 1729년 노녀 돌이堧伊 토지명문土地明文	319
198. 1720년 김순형金順亨 토지명문土地明文	320
199. 1650년 김응선金應先 토지명문土地明文	321
200. 1690년 신양信陽 토지명문土地明文	322
201. 1717년 노녀 기인기仁 토지명문土地明文	323
202. 1704년 황조백黃祖白 토지명문土地明文	324
202-1. 1732년 노녀 손선孫先 토지명문土地明文	326
202-2. 1743년 손발孫發 토지명문土地明文	327
203. 179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328
204. 1784년 노녀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329
205. 1784년 노녀 이봉二奉 배자牌子 ; 1786년 노녀 용봉用奉 토지명문土地明文	331
206. 1787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332
207. 1700년 이생원李生員 불망기不忘記	333
208. 1696년 이송린李松隣 토지명문土地明文	334
209. 1691년 이상혁李相赫 토지명문土地明文	335
210. 1737년 김상이金尙伊 토지명문土地明文	336
211. 1750년 노녀 배이盃伊 토지명문土地明文	338
212. 1779년 유술호柳述浩 토지명문土地明文	339
213. 1765년 비婢 원단元丹 토지명문土地明文	340
214. 1738년 조선봉曹先奉 토지명문土地明文	341
215. 1732년 조선봉曹先奉 토지명문土地明文	342
216. 1726년 노들동魯烈同 토지명문土地明文	343
217. 1721년 양세중梁世重 토지명문土地明文	344
218. 1686년 도산룡陶山龍 토지명문土地明文	345
219. 1786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346
220. 1786년 정효달鄭孝達 토지명문土地明文	348
221. 1784년 이철원李澈源 토지명문土地明文	349
222. 182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350
223. 1791년 노 태지 배자牌子	351
224. 1791년 노녀 복래卜來 토지명문土地明文	352
225. 1849년 토지명문土地明文	353

226. 1895년 토지명문土地明文	354
227. 188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356
228. 1905년 유낙안택柳樂安宅 토지명문土地明文	357
229. 1905년 유낙안택柳樂安宅 산지명문山地明文	358
230. 1905년 유낙안택柳樂安宅 토지명문土地明文	359
231. 1784년 토지명문土地明文	361
231-1. 1784년 노奴 유월금六月金 배자牌子	362
232. 179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363
233. 1889년 유제관柳濟寬 서간書簡	364
234. 1828년 오미五美 노奴 해손亥孫 수기手記	365
235. 1745년 이주국李柱國 토지명문土地明文	366
236. 1741년 서시찬徐時贊 토지명문土地明文	367
237. 1733년 이재옥李再郁 토지명문土地明文	368
238. 1766년 노奴 귀재貴才 토지명문土地明文	370
239. 1765년 노奴 치위 배자	371
240. 1765년 노奴 만태萬泰 토지명문土地明文	372
241. 1749년 신광호申光虎 토지명문土地明文	373
242. 1787년 승僧 채원采元 토지명문土地明文	374
243. 1786년 박수근朴水根 토지명문土地明文	375
244. 1768년 이원세李元世 토지명문土地明文	377
245. 1748년 김해준金海准 토지명문土地明文	378
246. 1727년 김해준金海准 토지명문土地明文	379
247. 1724년 승僧 처한處汗 토지명문土地明文	380
248. 1711년 황계남黃戒男 토지명문土地明文	381
249. 1689년 정시필鄭時必 토지명문土地明文	383
250. 정유년 두원斗元 소지所志	384
251. 1765년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385
252. 1739년 이희겸李喜謙 토지명문土地明文	387
253. 1732년 박성봉朴聖鳳 토지명문土地明文	388
254. 1784년 유성호柳星浩 토지명문土地明文	389
255. 1755년 이혁李翽 토지명문土地明文	390
256. 1758년 조도인趙道仁 토지명문土地明文	391

257. 1791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392
258. 1741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394
259. 1699년 우상경禹尙京 토지명문土地明文	395
260. 1681년 오기립吳己立 토지명문土地明文	396
261. 1695년 김명운金命云 토지명문土地明文	397
262. 1702년 승僧 응진應珍 허여문기許與文記	398
263. 1670년 김태흥金太興 토지명문土地明文	399
264. 1731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400
265. 1722년 이원의李源義 토지명문土地明文	402
266. 1714년 하수경河壽鏡 토지명문土地明文	403
266-1. 1680년 서동백徐東伯 토지명문土地明文	404
267. 1667년 계생戒生 토지명문土地明文	405
268. 1825년 유억柳億 토지명문土地明文	406
269. 1813년 주덕래朱德來 토지명문土地明文	408
270. 1813년 강순흥姜順興 토지명문土地明文	409
271. 1813년 주덕래朱德來 토지명문土地明文	411
272. 1811년 강사창姜士昌 토지명문土地明文	412
273. 1808년 서종대徐宗大 토지명문土地明文	413
274. 1800년 진상철陳相喆 토지명문土地明文	414
275. 1739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415
276. 1825년 유억柳億 토지명문土地明文	416
277. 1767년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417
278. 1705년 김춘봉金春奉 토지명문土地明文	418
279. 1630년 우사수禹士壽 토지명문土地明文	419
280. 1754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420
281. 1749년 정환鄭桓 토지명문土地明文	421
282. 1740년 신초성辛楚聖 토지명문土地明文	422
283. 1659년 박낙복朴洛福 토지명문土地明文	423
284. 1822년 족계중族契中 토지명문土地明文	424
285. 1822년 토지명문土地明文	426
286. 1740년 노奴 선생善生 배자牌子	427
287. 1752년 이주국李柱國 토지명문土地明文	428

288. 1740년 이수관李守觀 토지명문土地明文	429
289. 1716년 승僧 극능極能 토지명문土地明文	430
290. 1681년 승僧 명선明善 토지명문土地明文	431
291. 1726년 승僧 성기性機 토지명문土地明文	432
292. 1740년 노奴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434
293. 1716년 연곡사중燕谷寺中 허납명문許納明文	435
294. 1756년 문덕홍文德洪 토지명문土地明文	436
295. 1764년 문우덕文友德 토지명문土地明文	438
296. 1752년 이우인李宇寅 토지명문土地明文	439
297. 1743년 승僧 정신定信 토지명문土地明文	440
298. 1748년 계중契中 토지명문土地明文	442
299. 1742년 정명천鄭命天 토지명문土地明文	443
300. 1734년 김중대金重大 토지명문土地明文	444
301. 1706년 노奴 만금萬金 배자牌子	445
302. 1706년 김춘봉金春奉 토지명문土地明文	446
303. 1652년 서돌시徐弼屎 토지명문土地明文	447
304. 1643년 승僧 수규守圭 토지명문土地明文	449
305. 1716년 최영득崔永得 토지명문土地明文	450
306. 1796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451
307. 1796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453
308. 1792년 상전주上典主 토지명문土地明文	454
309. 1848년 토지명문土地明文	455
310. 1698년 최선백崔善伯 토지명문土地明文	456
311. 1730년 박임생朴壬生 토지명문土地明文	457
312. 1718년 박계필朴戒必 화회명문和會明文	458
313. 1695년 장한세張汗世 토지명문土地明文	459
314. 1680년 김준일金俊一 토지명문土地明文	461
315. 1692년 박득룡朴得龍 토지명문土地明文	462
316. 1660년 나득룡羅得龍 토지방매명문	464
317. 1679년 엄눌금嚴訥叱金 토지명문土地明文	465
318. 1679년 김한金漢 토지명문土地明文	466
319. 1682년 승僧 재현載玄 토지명문土地明文	467

320. 1699년 김세건金世建 토지명문土地明文	469
321. 1727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470
322. 1679년 김상일金尙日 토지명문土地明文	472
323. 1672년 승僧 경륜敬輪 토지명문土地明文	473
324. 1661년 승僧 천묵天默 토지명문土地明文	474
325. 1654년 희정希淨 토지명문土地明文	475
326. 1651년 정말룡鄭耒龍 토지명문土地明文	476
327. 1714년 승僧 낭언郎蓮 토지명문土地明文	477
328. 1736년 김중천金重天 토지명문土地明文	479
329. 1716년 승僧 승묵勝默 토지명문土地明文	480
330. 1725년 승僧 성기性機 토지명문土地明文	481
331. 1679년 승僧 여인如印 토지명문土地明文	483
332. 1665년 손수인孫壽仁 토지명문土地明文	484
333. 1709년 연곡사燕谷寺 대중 토지명문土地明文	485
334. 1704년 승僧 처익處益 토지명문土地明文	487
334-1. 1708년 화주승化主僧 탄오坦悟 허급명문許給明文	488
335. 1783년 노녀 연남然南 토지명문土地明文	490
336. 1767년 승僧 장학壯學 토지명문土地明文	491
337. 1757년 진한형陳漢亨 토지명문土地明文	492
338. 1741년 승僧 벽공碧空 토지명문土地明文	494
339. 1715년 강위빈姜渭賓 토지명문土地明文	495
340. 1704년 박막례朴莫禮 화회명문和會明文	496
341. 1752년 호노戶奴 귀재貞才 토지명문土地明文	498
342. 1740년 김흥재金興載 토지명문土地明文	499
343. 1715년 김세구金世九 토지명문土地明文	501
344. 1709년 손억봉孫億奉 토지명문土地明文	502
345. 1707년 이덕창李德唱 토지명문土地明文	503
346. 1705년 수노首奴 한망韓望 토지명문土地明文	504
347. 1705년 노녀 평립平立 배자牌子	505
348. 1701년 성천복成千卜 토지명문土地明文	506
349. 1705년 승僧 치일致一 토지명문土地明文	507
350. 1763년 양제명梁濟溟 토지명문土地明文	508

351. 1753년 최덕항崔德恒 토지명문土地明文	509
352. 1755년 승僧 성관性寬 토지명문土地明文	510
353. 1769년 양유봉梁有奉 토지명문土地明文	511
354. 1777년 노奴 삭불朔不 토지명문土地明文	512
355. 1750년 승僧 광학廣學 토지명문土地明文	514
356. 1787년 노奴 용남龍男 토지명문土地明文	515
357. 1758년 양덕우梁德遇 토지명문土地明文	516
358. 1758년 양덕우梁德遇 토지명문土地明文	517
359. 1756년 승僧 청탄淸坦 토지명문土地明文	518
360. 1749년 보식寶湜 토지명문土地明文	519
361. 1716년 양세중梁世重 토지명문土地明文	521
362. 1714년 김선흥金善興 토지명문土地明文	522
363. 1783년 노奴 용남用男 토지명문土地明文	523
364. 1741년 신초성辛楚成 토지명문土地明文	524
365. 1788년 노奴 석철石哲 토지명문土地明文	525
366. 1728년 이일재李日載 토지명문土地明文	526
367. 1732년 노奴 각팔리恰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528
368. 1730년 노奴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529
369. 미상년 승僧 경수敬修 토지명문土地明文	530
370. 1722년 구례현求禮縣 취송입안就訟立案	531
371. 1722년 김만일金萬鎰 토지명문土地明文	534
372. 1725년 승僧 개연開演 토지명문土地明文	535
373. 1722년 최성우崔聖禹 소지所志	536
374. 1722년 고이명高以明 토지명문土地明文	537
375. 1722년 최성우崔聖禹 소지所志	538
376. 1706년 최성우崔聖禹 소지所志	540
377. 1704년 손종봉孫種叱捧 방매명문放賣明文	542
378. 1705년 정철석鄭哲石 토지명문土地明文	543
379. 1659년 유경신柳敬信 토지명문土地明文	544
380. 1710년 비婢 정채廷菜 토지명문土地明文	545
381. 1703년 김필홍金必弘 토지명문土地明文	547
382. 1635년 승僧 계영戒英 토지명문土地明文	548

383. 1776년 노한위盧漢位 토지명문土地明文	549
384. 1645년 승僧 덕식德式 토지명문土地明文	551
385. 1698년 노奴 귀손貴孫 배자牌子	552
386. 1719년 배중화裵重華 토지명문土地明文	553
387. 1698년 김용金龍 토지명문土地明文	554
388. 1698년 정무적鄭武赤 토지명문土地明文	555
389. 1736년 최개남崔介南 토지명문土地明文	556
390. 1715년 김사만金士萬 토지명문土地明文	557
391. 1727년 변용백卞龍白 토지명문土地明文	559
392. 1721년 족하族下 정걸이鄭乞伊 정수섭鄭水燮 회회명문和會明文	560
393. 1723년 조익화趙益華 토지명문土地明文	561
394. 1783년 노奴 용남龍男 토지명문土地明文	563
395. 1724년 이희증李希曾 토지명문土地明文	564
396. 1724년 이희증李希曾 토지명문土地明文	565
397. 1718년 박정태朴挺泰 토지명문土地明文	566
398. 1708년 승僧 옥명玉明 토지명문土地明文	567
399. 1687년 김응선金應善 토지명문土地明文	568
400. 1706년 승僧 옥명玉明 토지명문土地明文	569
401. 1702년 이명생李明生 토지명문土地明文	570
402. 1703년 승僧 옥명玉明 토지명문土地明文	572
403. 1768년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573
404. 1768년 양제명梁濟溟 토지명문土地明文	574
405. 1739년 김해준金海俊 토지명문土地明文	575
406. 1741년 김진경金震慶 토지명문土地明文	576
407. 1729년 김해일金海日 불망기不忘記	578
408. 1720년 연곡사連谷寺 삼강三綱 토지명문土地明文	579
409. 1727년 김해일金海日 토지명문土地明文	580
410. 1788년 노奴 한이閑伊 토지명문土地明文	581
411. 1780년 유영장주댁柳營將主宅 노奴 토지명문土地明文	582
412. 1766년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583
413. 1733년 박죽상朴導尙 토지명문土地明文	584
414. 1779년 노奴 용봉龍奉 토지명문土地明文	586



415. 1773년 정정금鄭丁金 토지명문土地明文	587
415-1. 1768년 최창우崔昌佑 토지명문土地明文	588
416. 1721년 이희증李希曾 토지명문土地明文	589
417. 1718년 강태화姜泰華 별급명문別給明文	590
418. 1717년 강선구姜善龜 토지명문土地明文	592
419. 1697년 김억봉金億奉 토지명문土地明文	593
420. 1682년 승僧 양변良卞 토지명문土地明文	594
421. 1671년 동생同生 화회성문和會成文	595
422. 1672년 진영신全永信 토지명문土地明文	597
423. 1652년 승僧 의경儀岡 토지명문土地明文	598
424. 1652년 승僧 의경儀岡 토지명문土地明文	599
425. 1724년 이희증李希曾 토지명문土地明文	600
426. 1723년 나기현羅起見 토지명문土地明文	601
427. 1710년 대천동大川洞 고직庫直 토지명문土地明文	602
428. 1698년 박귀상朴貴上 토지명문土地明文	603
429. 1700년 박귀상朴貴上 소지所志	605
430. 1732년 조목영曹木永 토지명문土地明文	607
431. 1730년 이이삼李二三 토지명문土地明文	608
432. 1728년 이후동시李厚童時 토지명문土地明文	609
433. 1655년 유종산柳種叱山 토지명문土地明文	610
434. 1742년 노奴 순만順萬 배자牌子	611
435. 1742년 이재창李再昌 토지명문土地明文	612
436. 1742년 노奴 순만順萬 토지명문土地明文	613
437. 1742년 김진경金震慶 토지명문土地明文	614
438. 1755년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615
439. 1748년 강태선姜泰先 토지명문土地明文	617
440. 1754년 김지환金之煥 토지명문土地明文	618
441. 1752년 승僧 벽수碧守 토지명문土地明文	619
442. 1750년 유생원柳生員 토지명문土地明文	620
443. 1910년 유수환柳壽桓 계약서契約書	621
444. 1910년 유수환柳壽桓 계약서契約書	622
445. 1824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23

446. 182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25
447. 1846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26
448. 1757년 김우신金禹伸 토지명문土地明文	627
449. 1857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28
450. 182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30
451. 1774년 이경철李景喆 토지명문土地明文	631
452. 1877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32
453. 1822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33
454. 180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34
455. 1801년 이명철李命喆 토지명문土地明文	635
456. 매매기록	636
457. 1814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37
458. 1814년 비婢 개단介丹 배자牌子	638
459. 1797년 김구월금金九月金 토지명문土地明文	640
460. 1822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41
461. 1822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42
462. 1822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43
463. 1801년 서한성徐漢成 토지명문土地明文	645
464. 1815년 강행룡姜幸龍 토지명문土地明文	646
465. 1790년 이필한李弼漢 토지명문土地明文	647
466. 1789년 박태룡朴泰龍 토지명문土地明文	648
467. 1882년 (유제양) 토지명문土地明文	649
468. 1824년 의계중義稷中 토지명문土地明文	650
469. 1824년 노奴 천금千金 배자牌子	652
470. 182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53
471. 기해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54
472. 1729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655
473. 1728년 연곡사燕谷寺 사중寺中 토지명문土地明文	657
474. 1704년 승僧 선명善明 토지명문土地明文	659
475. 1706년 상좌上佐 조의祖儀 별급성문別給成文	660
476. 1724년 호노戶奴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661
477. 1719년 한자근노미韓者斤老未 토지명문土地明文	662

478. 1705년 김우석金禹錫 토지명문土地明文	663
479. 1893년 유씨종계柳氏宗契 토지명문土地明文	664
480. 1889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65
481. 1887년 미동美洞 경계京契 토지명문土地明文	667
482. 1886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68
483. 1885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69
484. 1878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71
485. 1878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72
486. 1875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74
487. 185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75
488. 1862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77
489. 병신년 추록	678
490. 1819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79
491. 1889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81
492. 추록	683
493. 할반문서	684
494. 1888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84
495. 1886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85
496. 1889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86
497. 1879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88
498. 1886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89
499. 1875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90
500. 1869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91
501. 189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93
502. 189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94
503. 1880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95
504. 187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96
505. 1900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97
506. 1897년 토지명문土地明文	698
507. 1897년 장당張塘 수표手標	700
508. 1896년 토지명문土地明文	700
509. 1896년 토지명문土地明文	702

510. 1889년 유두호庾斗瑚  표標	703
511. 1895년 토지명문土地明文	704
512. 1895년 토지명문土地明文	706
513. 1890년 토지명문土地明文	707
514. 189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709
515. 1891년 정영희丁永禧  표標	710
516. 1877년 산인山人 시헌是憲 토지명문土地明文	711
517. 189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712
518. 1838년 토지명문土地明文	713
519. 1829년 곽학묵郭學默 토지명문土地明文	714
520. 1807년 이증태李增泰 토지명문土地明文	715
521. 1808년 한익록韓益祿 토지명문土地明文	717
522. 1809년 노녀 분금分金 토지명문土地明文	718
523. 1814년 유노柳奴 복래卜來 토지명문土地明文	719
524. 1796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720
525. 1800년 고수관高守權 서간書簡	721
526. 1800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722
527. 1808년 토지명문土地明文	723
528. 1834년 박영화朴永和 토지명문土地明文	724
529. 1858년 토지명문土地明文	725
부록	729



# 1. 1691년 승僧 명선明善 별급문기別給文記

康熙參拾年辛未八月初陸日 孫弟僧 明善處 別給成卷

右明卷爲臥乎事段 孫弟僧亦 自少至長 每年生辰 爲吾而設宴 多  
功勞不喻 去庚午歲矣 結卜一結 易亦對答爲臥乎所 將來我生前  
對答是乎等以 其結卜價導良 自己買得畚 九萬員伏在 生字丁玖斗落只  
負數兩作并貳拾伍卜柒束庫乙 所耕價以 永許勞不喻 矣百歲之後  
生平孝養導良 本文二丈 并以 永永別給爲去乎 日後幸有退俗是乃 上佐  
及遠族之中 雜談相爭隅有去等 非吾門之族樣 以此文內乙用良 告  
官辦正事

元財畚主 老師 如印[着名]

證人 同姓族下 姜日良[着名]

證保 住持 釋希鑑[着名]

筆執 雲納 神鑑[着名]

강희康熙 30년 신미년(1691) 8월 6일 손제자 승 명선明善에게 준 별급別給<sup>1</sup> 문기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손제승孫弟僧이 어려서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매년 생일 때  
는 나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어서 공이 많을 뿐만 아니다. 지난 경오년(1690)에 결복結卜<sup>2</sup> 1결로 이내  
대답을 하였던 것은 장래 내가 살았을 때 하기로 대답한 것이다. 그 결복 값을 따라서 자기가 매득한  
논 구만九萬<sup>3</sup> 원員<sup>4</sup>에 있는 생조사 정丁<sup>5</sup> 9두락지斗落只(마지기), 부수負數는 양작兩作 25복 7속 곳을

---

1 **별급(別給)** 조선시대 재산 상속의 한 형태로, 특별한 사유로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는 행위를 뜻한다. 정식 분재(分財) 이전에 행해지지만 정식 분재 시에 별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별급 사유를 파악해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등과나 관직 제수자에 대한 별급으로, 16~17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17세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은 종자·종손에 대한 별급이고, 호도나 시봉(侍奉)의 대가로 주는 별급은 16세기까지 많이 나타나고 17세기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2 **결복(結卜)** 토지에 매기는 단위인 결(結)과 복(卜). 곧 전지(田地)의 단위면적. 양전척(量田尺)으로 1척 평방(平方)을 줌[把]라 하고, 10파를 1못[束]이라 하며, 10속을 1짐[負 또는 卜]이라 한다. 100부를 1목[結]이라 함. 결복은 전지의 면적(面積) 또는 전세(田稅)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됨.

경작가로 영원히 허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백세가 된 후에도 평생 효양孝養할 것을 따라 본 문기 2장을 아울러서 영영 별급別給하니, 일후로는 행어나 환속하는 일이 있거나 상좌 및 원족遠族 중에 잡담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있거든 오문吾門의 족속이 아닌 터, 이 문건을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시비를 바로잡을 일이다.

원재元財 답주畝主 : 노사老師 여인如印

증인證人 : 동성同姓 족하族下 강일양姜日良

증보證保 : 주지住持 석희감釋希鑑

필집筆執 : 운수납자 신감神鑑

1691년 8월 6일에 노승 여인如印이 손제자 명선明善에게 구례 토지면의 구만九萬에 있는 생생자답 9두락지, 부수負數는 25복 7속 곳을 별급別給해주면서 작성한 분재기分財記<sup>6</sup>이다. 별급의 사유는 그동안 시봉을 잘하였고 앞으로도 효양할 것을 바래서이다. 증인은 족하族下 강일양姜日良인 것으로 보아 여인如印의 속성은 강姜씨임을 알 수 있다. 증보證保는 주지住持 석희감釋希鑑이 썼고, 필집筆執은 신감神鑑이 참여했다.

위 문건은 <330. 1725년 승僧 성기性機 토지명문土地明文>과 관련이 있다. 즉 옹정3년(1725, 영조1) 을사년 12월 21일에 명선이 승僧 성기性機에게 구만리의 생자답 9두락지 25복 7속을 90냥에 매도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또한 <331. 1679년 승僧 여인如印 토지명문土地明文>과도 관련이 있으니, 강희18년(1679, 숙종5) 기미년 6월 15일에 승僧 여인如印이 손수인에게서 같은 곳을 교환하여 얻었다. 이밖에도 관련문서가 앞뒤로 있다.

---

3 구만(九萬) 구례현 내지면(內旨面) 구만리(九萬里)로, 현재는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 구만 마을에 해당된다.

4 원(員) 뒤에 평(坪)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곳의 땅이란 뜻이다.

5 정(丁) 고려시대의 정은 일정 면적의 토지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고려는 군인·향리 등 특정 직역의 부담자와 문무양반 등 각층의 관인층에게 전사과(田柴科)의 토지를 차등 분급했는데, 이와 같이 인정 또는 개인에게 지급된 국가의 분급지도 정이라 불렀다. 이와 같은 전정은 고려 말의 과전법(科田法)에도 그대로 수용되어 작정제(作丁制)를 성립시켰다. 즉 5결의 토지를 하나의 정으로 구분하고, 이에 천자문의 순서대로 지번을 매겨 작성했던 것이다. 예컨대, ‘천자정(天字丁)’은 ‘천자(天字)의 지번이 매겨진 5결의 토지’라는 의미였다.

6 분재기(分財記) 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한 문서. 주로 재산의 주인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분배하여준 문서이다. 분깃문서[分衿文書]·분깃[分衿]·분급(分給)·깃득[衿得]·허여(許與)·허급(許給)·분파(分派)·분집(分執)·분금(分襟)·구별(區別)·결급(決給)·분호(分戶)·깃기[衿記]·장기(掌記)·분기(分記)·화회(和會)·화의(和議)라고도 한다. 분재기는 상속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화회문기·분금문기·깃부문기[衿付文記]·별급문기(別給文記)·허여문기 등으로 나누어진다.

## 2. 1727년 차자次子 정복廷福 별급문기別給文記

雍正伍年丁未四月十五日 次子廷福處 別  
給文記

右別給事段 我年六十 猝得難名之  
病 將至死境是在中 同廷福 年雖十歲  
救病之孝誠至極 而來頭長壽 今未詳知之  
矣 孝誠之意乙仍于 爲先 吐旨面露字畚  
上邊貳斗落只 負數捌卜壹束庫乙 別給  
是在果 此畚乃是長子外家之畚也 生前  
畊食是如可 至於子孫或有是非之弊是  
去等 官卞除良 長子之孫乙還歸 成表  
許給事

別給主 父【累日呻吟 故不能成着名】

筆 幼學 朴愼文[着名]

옹정雍正 5년 정미년(1727) 4월 15일 차자次子 정복廷福 별급문기別給文記

위 별급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나이 60세에 갑자기 병명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장차 사경에 있는 중에 같은 사람 정복廷福의 나이가 비록 10세라고는 하지만 병을 구완하는 효성이 지극하다. 그리고 앞으로 장수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효성의 뜻을 따라 우선 토지면 로露자답 위쪽의 2두락지, 부수로 8복 1속 곳을 별급하거나와 이 논은 곧 장자長子 외가의 논이다. 생전에 갈아먹다가 자손에 이르러 후시 시비를 가려야 하는 폐단이 있거든 관청에서 변론하지 말고 장자의 손자를 환귀還歸시키고 표를 만들어 허급할 일이다.

별급주別給主 : 아버지【여러 날을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착명을 할 수가 없음】

필筆 : 유학幼學 박신문朴愼文

1727년 4월 15일에 병중에 있는 아버지가 차자次子 정복廷福에게 토지면 로露자답 2두락지, 부수



로 8복 1속 곳을 별급하면서 작성한 문기文記이다. 별급의 사유는 나이 60세에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사경에 있는 중에 정복延福이 나이는 10살밖에 먹지 않았지만 병을 구원하는 효성이 지극해서이다. 토지는 장자長子 외가의 논이었음을 밝혔다. 필筆은 유학幼學 박신문朴慎文이 했다.

### 3. 1735년 말상좌末上佐 백종伯從 허여명문許與明文

雍正拾參年乙卯正月二十日 末上佐伯從處 許與明文  
右明文事段 矣年登八十餘歲 宿病添身 生死  
未知 故畧干自起畚庫 平均許與爲去乎 右上  
佐衿 吐旨面堂山員伏在鹹字畚 伍斗落只 二夜味內  
上邊參斗落只 一夜味 卜數 并許給爲有置 本  
文記段 他分衿背後爻周 永永許給爲去乎  
日後 如有上佐及族屬中 生謀雜談之弊是  
去等 將此文記 告官卜正事  
元財主 師 明善[着名]  
證人 通政 韓朗溟[着名]  
證參 前判事 處敬  
筆 釋太玄[着名]

옹정雍正 13년 을묘년(1735) 1월 20일 말상좌末上佐 백종伯從 허여명문許與明文

위의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나이가 80여 세에 오른 데다 숙병이 도져서 생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내가 일으킨 논을 평균하여 허여하니, 위 상좌의 것은 토지면 당산堂山<sup>7</sup>에 있는 함鹹자답 5두락지 2배미 내에서 위쪽 3두락지 1배미, 복수卜數를 함께 허급하였다. 본 문기는

---

7 당산(堂山) 토지면 당산은 토지면 구만리에 있던 지명인데, 지명총람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들판이름으로 추정된다.

다른 분깃分給의 뒷면에 있어서 이를 효주爻周<sup>8</sup>하고 영영 허급하니, 이후에 만약 상좌와 족속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원재주元財主 : 사師 명선明善

증인證人 : 통정通政 한낭운韓朗澐

증참證參 : 전판사前判事 처경處敬

필筆 : 석태현釋太玄

1735년 1월 20일에 승 명선明善이 말상좌末上佐 백중伯從에게 구례군 토지면 당산堂山에 있는 함鹹 자답 내 3두락지 1배미를 허여해주면서 작성한 명문明文이다. 나이가 80살에 이른 데다 숙병이 도져서 생사를 알 수 없기 때문이며, 토지는 자신이 일으킨 논이다. 증인證人은 통정대부 한낭운韓朗澐이고, 증참證參은 처경處敬이며, 필筆은 석태현釋太玄이 잡았다.

#### 4. 1733년 세 자녀 화회문기와會文記

雍正十一年癸丑三月初吉日 和會文記

右文爲成文事段 噫呼痛極哉 不肖無狀 頑不自滅 至有今日 尙延殘喘 六載絕島 生還未卜 一妹一弟 俱已早滅 瞻彼四隅 無意人事 則豈有有意於此等事 而第念前頭人事 有不可知者 奉祀條外 妹氏祠宇 今始歸家 則不可無送歸之物 且亡弟一子 今又夭逝 想彼祠宇 不知置委於何地 痛毒之狀 不須云云 不得已 以余次子爲立後 以爲前頭奉祀之地 則亦不可無奉祀之物 故茲不得不 如是論例區別 以爲無前頭人事紛紜之弊是乎 矣 此皆奉承父母主遺教意也 宮中所屬次知之物 木川稷山井邑珍島等地田 畚 及全羅道黃海道江華府等地奴婢 是翁主房祭位奉祀條 故不得入於和會中 是遣 其餘田畚奴婢 斟酌分執是去乎 日後子孫中 以此憑考之地爲旣 且當初翁主房 家舍 在於小貞洞大宮後苑矣 容旋甚難 故祖父主在世時 從公論定價 銀子三百兩 移買

---

8 효주(爻周) 문서 따위를 점검할 때, 잘못된 부분을 ‘爻’ 자 모양의 표를 그려서 지우는 것을 말함.

於大貞洞後 本舍毀之矣 翁主大母主別世後 祠宇仍爲奉安於大貞洞 去辛卯年分 小貞洞放賣後 大祀堂 姑無奉安之處 大都移安於翁主房 則翁主房奉祀分 爲之家似有 □□□□□ 故銀子一百五十兩 送于樂宮後 受其大母主答簡 以爲日後憑考之地爲跡 平安道三和府甘朴□□□ 卽都正仲父主奉祀之物 故今不舉論

大宮奉祀條 金堤順天免稅 合二百結 保寧交河等地田畝 江原道京圻京案平安道等地奴婢 公山墓奴 大貞洞祀堂宮

父母主奉祀條 洪州州北 舊荒字今宿子畝 四卜一斗落只 列字畝四十一卜六束十斗落只 同字田二十一

卜四束□斗落只 海字畝四十卜六束六斗落只 夜字畝十四卜四束三斗落只 稱字畝十二卜八束四斗落只

同字田五卜一束四斗落只 光字畝二十七卜六束五斗落只 同字畝十三卜九束三斗落只 羽字畝三十卜六束

七斗落只 果字畝十七卜一束四斗落只 同字田九束 又七束二斗落只 洪天面鳥字畝二十二卜三束六斗落只 大字畝

二十一卜七束四斗落只 州南面己字畝六卜五束 又五卜六束五斗落只 欲字畝十一卜四束五斗落只 州北面

呂字畝九卜九束四斗落只 雨字田五十六卜四束一石落只 同字田二十一卜八束十斗落只 松枝面入字畝十六卜四

束八斗落只 儀字田十八卜一石落只 及慶尙道忠清道等地奴婢 印

長子炤 雨字畝十五斗落只 辰字畝五斗落只 同字田一斗落只 母主在世時別給 不入於和會中 是跡 餘字畝三十四卜四束 同字畝六十卜一石落只 雲字畝十三卜七束三斗落只 同字畝二十三卜四

斗落只 高南面羅字畝五卜二斗落只 州南面長字畝十卜九束四斗落只 洪天面□字畝二十七卜四

束八斗落只 州北面致字畝十五卜五束四斗落只 結字畝一卜九束一斗落只 崑字田八斗落只 呂字

田十八斗落只 及婢貴生四所生婢士烈年乙丑生 同婢二所生婢好德年庚寅生 三所生婢好禮年丁酉生 四所生奴喜萬年甲辰生 貴生五所生婢莫烈年丙寅生 婢銀化四所生奴云奉年甲子生 同婢五所生婢論今年戊辰生 同婢一所生婢成化年辛卯生 二所生奴成貴年甲午生 婢正業

二所生婢梅香年乙丑生 同婢一所生奴次發年辛卯生 婢次業四所生婢庚辰年庚辰生 同婢一所生

婢玉貞年辛丑生 次業五所生奴忝同年癸未生 六所生奴二同年己丑生 婢莫禮二所生奴二金  
年甲申生

婢銀化三所生婢論禮年戊午生 同婢一所生奴國成年戊子生 二所生婢次梅年甲午生 婢得生  
二所生

婢愛月年戊子生 三所生婢愛尙年辛卯生 婢烈伊一所生婢六月年乙未生 婢禮業四所生奴忝  
金年

辛卯生 婢一禮一所生婢光叔年甲寅生 同婢一所生奴次興年己丑生 二所生奴次新年辛卯生 印

次子炫 洪州洪天面鳳字畚十卜五束四斗落只 人字畚十五卜三束四斗落只 州北面歲字畚二  
卜七束

一斗五升落只 呂字反畚十一卜五束二斗落只 同字田十四卜九束八斗落只 洪字田二十四卜  
十三斗落只

同字田二十三卜三束十二斗落只 騰字田十一卜六束十二斗落只 同字反畚一卜六束一斗落  
只 致字陳田二十

四卜九束一石三斗落只 結城所若洞輕字畚二十三卜八斗落只 假字畚二十三卜七斗落只 同  
字畚七卜四

束二斗落只 仇水洞桓字畚十一卜九束四斗落只 長浦牧字畚二十二卜九束五斗落只 合西郡  
字田

八卜八束九斗落只 漢著洞禹字畚九卜六束三斗落只 國土郎伊更字畚十一卜六束四斗落只 東  
洞寔字畚十六卜四斗落只 長浦起字畚十三卜三束六斗落只 及婢士今一所生婢五禮年甲子生  
同婢一所生奴太山年壬辰生 二所生婢太禮年丙申生 同婢二所生婢分伊年庚午生 同婢一  
所生奴春尙年庚寅生 三所生奴春先年庚子生 四所生奴春今年壬寅生 五所生奴元命年  
乙巳生 士今三所生奴忿之年癸酉生 四所生奴{馬/乙}之年丁丑生 五所生婢甘禮年壬午生 六  
所生婢莫

年年乙酉生 婢正業四所生婢梅貞年癸酉生 同婢一所生奴福只年乙未生 二所生奴單栢伊年  
庚子生

婢先禮一所生奴六夫里年己卯生 二所生奴益夫里年甲午生 婢玉禮五所生奴次松年甲子生  
同奴良妻二所生婢二梅年甲午生 三所生奴千年年壬寅生 四所生奴千貴年甲辰生 京婢  
修德一所生奴老味年壬寅生 婢綠珠二所生婢仁惠年乙未生 婢仁合二所生婢八玉丙申生 印

女尹進士宅 長湍西道面伏在秋字畚八卜三束六斗落只 同字畚七束二斗落只 同字畚一 $\square$  $\square$   
三斗落只 往字畚十卜五束六斗落只 又秋字畚四卜五束四斗落只 又秋字田三卜一束 又一卜

四束

往字田三卜二束 秋字田二卜九束 又三卜一束 又秋字田三卜七束 又往字田一卜一束 又三束  
柴場連

伏四道古介丙字秋字起田三卜 及全羅道萬頃縣伏在畚三十六結內 五結移送是遣 長湍  
奴立先年戊申生 奴甲先年甲戌生 婢孝愛年丁亥生 同婢一所生婢今年生年辛丑生 奴士日良  
產一所生婢栗禮年辛卯生 同婢一所生奴今年生年庚子生 二所生奴九龍年癸卯生 京婢允烈年  
丁巳生 同婢一所生奴大介老味年壬辰生 二所生奴小介老味年甲午生 印

女尹進士宅

長子 炤[着名] [署押]

二子 炫

웅정雍正 11년 계축년(1733) 3월 1일 화회문기<sup>9</sup>和會文記<sup>9</sup>

위 글을 성문<sup>成文</sup>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아! 애통하도다. 불초가 사람답지 않아서 모진 목숨을 스스로 끊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남은 숨이 붙어있다. 6년 동안 절해고도에 있으면서 살아 돌아갈 날을 점칠 수 없는데, 한 누이와 한 아우는 모두 이미 일찍 죽어서 사방을 바라보아도 인사에 대한 뜻이 없으니, 어찌 이러한 일에 뜻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다만 앞으로의 인사를 생각하면 알 수 없는 것이 있는지라 봉사<sup>奉祀</sup>條 외에도 누이의 사우<sup>祠宇</sup>가 지금 비로소 귀가 歸家하니 송귀<sup>送歸</sup>는 물건이 없을 수 없다.

또 죽은 아우가 남긴 한 명의 자식도 지금 또 요절하였으니, 저 사우를 생각하면 어느 곳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애통한 상황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둘째 아들을 입후<sup>立後</sup>로 삼아 앞으로 봉사<sup>奉祀</sup>를 하게 하니, 또한 봉사<sup>奉祀</sup>의 물건이 없을 수 없다. 때문에 이에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논례하고 구별하여 앞으로의 인사에 분운<sup>紛紜</sup>한 폐단을 없게 하고자 한다. 이것은 모두 부

9 화회문기(和會文記) 노비·토지 등의 재산은 재주(財主, 父)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분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주가 재산을 분급해주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재주 사후에 그 자녀들이 모여 합의(和會)하여 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재주 사후에 부인과 자녀에 의하여, 또는 부모가 모두 죽은 뒤에 그 자녀들의 합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배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화회문기이다. 화회문기의 내용은, 첫행에 문기를 작성하는 해의 연호와 연월일 및 화회참가범위를 쓰고, 화회문기를 작성하게 된 사유를 밝히며, 형제자매의 각 몫을 일일이 기재한 뒤, 끝에 화회분기에 참가한 사람들의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을 하였다. 분깃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수효대로 문기를 작성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하였다.

모님이 유언하신 뜻을 받든 것이다.

궁중 소속 차지次知的 물건인 목천木川·직산稷山·정읍井邑·진도珍島 등지의 전답과 전라도全羅道·황해도黃海道·강화부江華府 등지의 노비는 응주방翁主房의 제위봉사祭位奉祀條이기 때문에 화회和會 중에 넣을 수 없었다. 그 나머지 전답과 노비는 짐작해서 분집分執(나누어 가짐)하니, 이후로 자손 중에는 이것을 가지고 빙고憑考할 것이다.

또 당초에 응주방의 가사家舍가 소정동小貞洞의 대궁大宮 후원에 있어서 몸을 움직이기가 매우 어려웠다. 때문에 조부님이 살아계실 때 공론에 따라 값을 은자 300냥으로 정하여 대정동大貞洞 뒤로 이매移買하고 본 집은 허물었다. 응주 대모님께서 별세하신 후로 사우는 이로 인해 대정동에 불안하였다.

지난 신묘년(1711)에 소정동은 방매한 후 대사당大祀堂은 아직 불안할 곳이 없어서 대도大都를 응주방에 이안移安하였으니, 응주방의 봉사분奉祀分은 일반 집과는 ○○○와 같음이 있기 때문에 은자 銀子 150냥을 낙궁樂宮에 보낸 후 대모님의 답간箆簡을 받아서 이후에 빙고하는 일로 삼는다.

평안도平安道 삼화부三和府 감박甘朴○○은 곧 도정都正 중부仲父님의 봉사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론하지 않는다. 대궁大宮의 봉사조奉祀條는 김제金堤와 순천順天의 면세免稅지가 합 200결이고, 보령保寧과 교하交河 등지의 전답과 강원도와 경기의 경안京案(서울의 노비 문적)과 평안도 등지의 노비, 공산公山의 묘노墓奴, 대정동大貞洞의 사당宮祀堂宮이다.

부모님 봉사조 : 홍주洪州 주북州北의 옛 황荒자 지금은 숙잠자답 4복卜 1두락지斗落只, 열렬자답 41복 6속 10두락지, 동자전同字田 21복 4속 ○두락지, 해海자답 40복 6속 6두락지, 야夜자답 14복 4속 3두락지, 칭稱자답 12복 8속 4두락지, 동자전同字田 5복 1속 4두락지, 광光자답 27복 6속 5두락지, 동자답 13복 9속 3두락지, 우雉자답 30복 6속 7두락지, 과果자답 17복 1속 4두락지, 동자전 9속과 7속 2두락지. 홍천면洪天面의 조鳥자답 22복 3속 6두락지, 대大자답 21복 7속 4두락지, 주남면州南面의 기리자답 6복 5속과 5복 6속 5두락지, 욕欲자답 11복 4속 5두락지, 주북면州北面의 여림자답 9복 9속 4두락지, 우雨자전 56복 4속 1석락지石落只, 동자전 21복 8속 10두락지, 송지면松枝面 입入자답 16복 4속 8두락지, 의儀자전 18복 1석락지, 및 경상도·충청도 등지의 노비이다. 인印.

장자長子 소紹의 몫 : 우雨자답 15두락지, 진辰자답 5두락지, 동자전 1두락지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별급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화회 중에 넣지 않는다. 여餘자답 34복 4속, 동자답 60복 1석락지, 운雲자답 13복 7속 3두락지, 동자답 23복 4두락지, 고남면高南面의 나羅자답 5복 2두락지, 주남면州南面의 장長자답 10복 9속 4두락지, 홍천면洪天面의 ○자답 27복 4속 8두락지, 주북면州北面의 치致자답 15복 5속 4두락지, 결結자답 1복 9속 1두락지, 곤崙자전 8두락지, 여림자전 18두락지, 및 비婢(여종) 귀생貴生의 4소생 비 사열士烈 나이 을축생. 동비同婢(귀생) 2소생 비 호덕好德 나이 경인생, 동비 3소생 비 호례好禮 나이 정유생丁酉生, 동비 4소생 노奴 남중 희만喜萬 나이 갑진생, 귀생貴生의 5소생

비 막열莫烈 나이 병인생, 비 은화銀化의 4소생 노 운봉云奉 나이 갑자생, 동비 5소생 비 논금論今 나이 무진생, 동비 1소생 비 성화成化 나이 신묘생, 2소생 노 성귀成貴 나이 갑오생, 비 정업正業의 2소생 비 매향梅香 나이 을축생, 동비 1소생 노 차발次發 나이 신묘생, 비 차업次業의 4소생 비 경진庚辰 나이 경진생, 동비 1소생 비 옥정玉貞 나이 신축생, 차업次業의 5소생 노 맛동耑同 나이 계미생, 6소생 노 이동二同 나이 기축생, 비 막례莫禮의 2소생 노 이금二金 나이 갑신생, 비 은화銀化의 3소생 비 논례論禮 나이 무오생, 동비 1소생 노 국성國成 나이 무자생, 2소생 비 차매次梅 나이 갑오생, 비 득생得生의 2소생 비 애월愛月 나이 무자생, 3소생 비 애상愛尙 나이 신묘생, 비 열이烈伊의 1소생 비 유월六月 나이 을미생, 비 예업業의 4소생 노 맞쇠쇠金 나이 신묘생, 비 일례一禮의 1소생 비 광숙光叔 나이 갑인생, 동비 1소생 노 차흥次興 나이 기축생, 2소생 노 차신次新 나이 신묘생이다. 인印

차자次子 현炫의 몫 : 홍주洪州 홍천면洪天面の 봉鳳자답 15북 5속 4두락지, 인나자답 15북 3속 4두락지, 주북면州北面의 세歲자답 27속 1두 5승락지升落只, 여려자 반답反畓 11북 5속 2두락지, 동자전 14북 9속 8두락지, 홍洪자전 24북 13두락지, 동자전 23북 3속 12두락지, 등騰자전 11북 6속 12두락지, 동자 반답 1북 6속 1두락지, 치致자 진전陳田 24북 9속 1석 3두락지, 결성結城 소약동所若洞의 경輕자답 23북 8두락지, 가假자답 23북 7두락지, 동자답 7북 4속 2두락지, 구수동仇水洞의 환桓자답 11북 9속 4두락지, 장포長浦의 목牧자답 22북 9속 5두락지, 합서合西 군郡자전 8북 8속 9두락지, 한저동漢著洞의 우禹자답 9북 6속 3두락지, 국사랑이國士郎伊 갱更자답 11북 6속 4두락지, 속동東洞 식寔자답 16북 4두락지, 장포長浦의 기거자답 13북 3속 6두락지, 및 비婢 사금士今의 1소생 비 오례五禮 나이 갑자생, 동비 1소생 노 태산太山 나이 임진생, 2소생 비 태례太禮 나이 병신생, 동비 2소생 비 분이分伊 나이 경오생, 동비 1소생 노 춘상春尙 나이 경인생, 3소생 노 춘선春先 나이 경자생, 4소생 노 춘금春今 나이 임인생, 5소생 노 원명元命 나이 을사생, 사금士今의 3소생 노 갯지龔之 나이 계유생, 4소생 노 말지[馬/乙]之 나이 정축생, 5소생 비 감례甘禮 나이 임오생, 6소생 비 막년莫年 나이 을유생, 비 정업正業의 4소생 비 매정梅貞 나이 계유생, 동비 1소생 노 복지福只 나이 을미생, 2소생 노 단백이單栢伊 나이 경자생, 비 선례先禮의 1소생 노 육부리六夫里 나이 기묘생, 2소생 노 익부리益夫里 나이 갑오생, 비 옥례玉禮의 5소생 노 차송次松 나이 갑자생, 동노同奴의 양처良妻의 2소생 비 이매二梅 나이 갑오생, 3소생 노 천년千年 나이 임인생, 4소생 노 천귀千貴 나이 갑진생, 경비京婢 수덕修德의 1소생 노 노미老味 나이 임인생, 비 녹주綠珠의 2소생 비 인혜仁惠 나이 을미생, 비 인합仁合의 2소생 비 팔옥八玉 나이 병신생이다. 인印.

말 윤진사택尹進士宅의 몫 : 장단長湍 서도면西道面에 있는 추秋자답 8북 3속 6두락지, 동자답 7속 2두락지, 동자답 ○북 ○속 3두락지, 왕往자답 10북 5속 6두락지, 또 추秋자답 4북 5속 4두락지, 또 추秋자전 3북 1속, 또 1북 4속, 왕往자전 3북 2속, 추秋자전 2북 9속, 또 3북 1속, 또 추秋자전 3북 7속,

또 왕좌자전 1복 1속, 또 3속. 시장柴場에 이어져 있는 사도고개四道古介 병丙자, 추秋자 기전起田 3복, 및 전라도 만경현萬頃縣에 있는 논 36결 내에서 5결을 이송移送함. 장단長湍의 노 입선先 나이 무신생, 노 갑선甲先 나이 갑술생, 비 효애孝愛 나이 정해생, 동비 1소생 비금년생今年生 나이 신축생, 노 사일 士日 양산良産 1소생 비 울례栗禮 나이 신묘생, 동비 1소생 노 금생今生 나이 경자생, 2소생 노 구룡九龍 나이 계묘생, 경비京婢 윤열允烈 나이 정사생, 동비 1소생 노 대개노미大介老味 나이 임진생, 2소생 노 소개노미小介老味 나이 갑오생이다. 인印.

여女 윤진사댁尹進士宅

장자長子 소焰

이자二子 현炫

1733년 3월 1일에 세 자녀가 모여서 작성한 화회문기와會文記이다. 우선 부모님 봉사조로, 홍주洪州(충남 홍성군)에 있는 논 2석락 95두락지, 부수는 420복 7속의 땅과 경상도·충청도 등지의 노비를 두기로 화회하였다. 장자長子 소焰의 몫으로는 우선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별급해주신 21두락지는 화회 중에 넣지 않고, 논 1석 51두락지, 부수는 191복 8속 곳과 밭 26두락지, 그리고 노비 26구이다. 차자次子 현炫의 몫으로는 홍주洪州의 논 1석락 111두락 5승락지, 부수는 318복 7속 곳과 노비 24구이다. 딸 윤진사댁尹進士宅의 몫은 장단長湍에 있는 논 21두락지, 부수 42복 8속과 밭 3복, 그리고 만경현萬頃縣에 있는 논 5결을 이송移送하고, 노비는 10구이다.

## 5. 1777년 3상좌三上佐 깃급衿給 도문기都文記

乾隆肆拾貳年丁酉二月初三日 三上佐處 平均衿給 都文記

右都文爲臥乎事段 矣亦年登九十 死門臨迫 倏忽人間

始覺無常 思想平生 豈不寒心 僧家由來 與自己買

得是在 略干薄土等物乙 生前若不區分分處是乎則 死

後不無諸上佐相爭之弊 故三上佐處 平均衿給是乎所

若或一人是乃 退俗之舉 則還納於僧門之意 憑考卞正



事

分財主 師[着名]

長上佐永明衿 求禮吐地芋旨番五斗落只負數十七卜三束庫乙 許與 印

次上佐快榮衿 河東平沙內帳員番伍斗落只二十三卜四束庫乙 許與 印

末上佐寬海衿 求禮加耕旨肆斗落只負數十七卜三束庫乙 許與 印

祭位條 求禮竹川番伍斗落只二十六卜九束庫乙除出是乎矣 三上佐處 年年輪廻處度之意 許與爲遣 祭位列目後錄於右

曾翁師 秋澗 忌日

翁師 雪淨 忌日

師叔 道全 忌日

뒷면

乾隆四十五年庚子七月初十日 上佐寬海還俗 故河谷堂厚禪祭位條 除定 印

筆執 山人 恢淨[着名]

歸晚窩

六世孫瑩業謹再攷于

始自壬寅起 今距一百五十三年 甲戌四月初八日辛卯

三水公 參判公 虞侯公 康翎公 通德郎公	} -	四世祖先當年京鄉同僚及知舊書札 都封一軸 今距于六年前己未冬十二月初一戊寅日 第甲之甲攷中 乙丙丁三号所在自氏名未詳書札一 又氏名未詳書 札一以及金統相健等書札 合五十三度中 實在五 十度全封
----------------------------------	-----	--

건륭乾隆 42년 정유년(1777) 2월 3일 3상좌三上佐 평균깃급平均衿給 도문기都文記<sup>10</sup>

위 도문都文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 나이가 90살에 올라 죽음의 문턱에 임박했으므로 갑자기 인간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평생을 생각해보면 어찌 한심하지 않겠느냐? 승가僧家에 유래由來해온 것과 내[自己]가 매득買得한 약간의 박토 등을 살아있을 때 만약 구분해서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죽은 후에 상좌들 간에 서로 다투는 폐단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세 상좌에게 평

균으로 깃급給給하니, 만약 혹 한 사람이라도 환속하는 일이 있으면 승문僧門에 환납還納하라는 뜻을 빙고憑考<sup>11</sup>하여 변정下正할 일이다.

분재주分財主 사師

장상좌長上佐 영명永明의 몫 : 구례 토지의 지지埜旨 논 5두락지 부수負數 17복 3속 곳을 허여함.

차상좌次上佐 쾌영快樂의 몫 : 하동河東 평사平沙 내의 장원帳員 논 5두락지 부수 23복 4속 곳을 허여함.

말상좌末上佐 관해寬海의 몫 : 구례 가경지加耕旨 4두락지 부수 17복 3속 곳을 허여함.

제위조祭位條 : 구례 죽천竹川의 논 5두락지 26복 9속 곳을 제출除出(덜어냄)하되, 세 상좌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처도處度하는 뜻으로 허여하고, 제위 목록은 다음에 후록한다.

증옹사曾翁師 추형秋澗의 기일忌日

옹사翁師 설정雪淨의 기일忌日

사숙師叔 도전道全의 기일忌日

뒷면

건륭乾隆 45년 경자년(1780) 7월 10일에 상좌上佐 관해寬海는 환속하였기 때문에 하곡당河谷堂 후선厚禪의 제위조祭位條는 제하고 정한다. 인印.

필집筆執 : 산인山人 회정恢淨

삼수공三水公(유이주), 참판공參判公(유덕호), 우후공虞侯公, 강령공康翎公, 통덕랑공通德郎公 등 4대 선조의 당년에 오고간 경향간의 동료와 지구知舊의 서찰을 1축軸으로 도봉都封한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기미년 겨울 12월 1일 무인일, 제갑지갑第甲之甲에 상고한 을병정乙丙丁 3호가 소재한 성명 미상의 서찰 1통과 또 성명 미상인 서찰 1통, 및 통상統相 김건金健<sup>12</sup> 등의 서찰을

---

10 **도문기(都文記)** 자기가 관할하는 재산이나 관할 사항을 모두 기록하여 둔 문건. 분재기의 경우 상속내용 전체를 기록한 것을 도문기라고 하고, 각 개인의 상속내용을 기록한 것을 별문기(別文記)라고 한다. 이때 도문기는 피상속인의 수만큼 작성되는 것이 관례이다. 한집안 소유의 노비나 토지를 전부 다 기록한 것을 말하기도 한다.

11 **빙고(憑考)** 어떤 일의 시비, 가부 따위를 여러 가지 근거에 비추어 자세히 따지고 검토함

12 **김건(金健)** 자는 천행(天行), 호는 미촌(美村),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아버지는 김려신(金礪臣), 어머니는 안동권씨(安東權氏)로 안동출신이다. 고조부 유연당(悠然堂) 김대현(金大賢)은 여덟 아들이 모두 소과(小科)에 합격하고 그 중 다섯 아들은 문과에 급제하여 인조가 '팔련오계지미(八蓮五桂之美)'라고 칭찬하고 이들이 살던 마을에 '오미동(五美洞)'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문집으로 『미촌집(美村集)』이 있다

합한 53통 중, 실재한 50통을 동봉한다.

임인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과의 거리가 153년 되는 갑술년(1934) 4월 8일 신묘일에 6세손인 형업 瑩業이 삼가 다시 귀만외歸晩窩(유이주)에게 상고한다.

1777년 2월 3일에 사師가 세 명의 상좌上佐에게 평균 몫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도문기都文記이다. 장상좌長上佐 영명永明의 몫으로는 구례 토지의 저지孳耨 논 5두락지 부수負數 17복 3속 곳을 허여하고, 차상좌次上佐 쾌영快榮의 몫으로는 하동河東 평사平沙 내의 장帳자 논 5두락지 부수 23복 4속 곳을 허여하며, 말상좌末上佐 관해寬海의 몫으로는 구례 가경지加耕耨 4두락지 부수 17복 3속 곳을 허여하였다.

## 6. 1780년 말녀末女 깃부문기衿付文記

乾隆四十五年庚子正月十五日 末女衿

旨雲字八十一畝九負五束 八十二畝二負四束四斗落 騰字十六畝廿

三負一束六斗落 六十七畝內卅一負八束 六十八畝十五負六束八斗落

雨字一百畝廿三負八束六斗落 露字十二畝廿一負五束五斗落 卅

六畝三負四束 三十七田一負八束 四十九畝一卜二束二斗落 結字十畝十

九負六束 十一畝四負二束 十二畝七負九束九斗落 調字卅八畝二十三負

三束五斗落 霜字一田三負六束 二田三負八束 三畝二束二斗落 三

旨家竹田馬山四字六十六畝二負 八十二畝四負九束 大字八十三畝廿負

五束 八十四畝三負三束合八斗落 潤字三畝內九負九束 七畝一負八束 八畝

十二負八束六斗落 月字十四田內四負九束二斗落 十二田內八負二斗落 奴

卜三貴業太爲連萬 婢夜每季梅太月太辰 印

財主 父[着名]

證 同姓再從弟 幼學 李時郁[着名]

筆 同姓三從孫 幼學 李廷臣[着名]

건륭乾隆 45년 경자년(1780) 1월 15일 말녀末女 깃부문기衿付文記<sup>13</sup>

지첩 운운자 81번답 9부負 5속, 82번답 2부 4속 4두락, 등騰자 16번답 23부 1속 6두락, 67번답 내 31부 8속, 68번답 5부 6속 8두락, 우雨자 100번답 23부 8속 6두락, 로露자 12번답 21부 5속 5두락, 36번답 3부 4속, 37번전 1부 8속, 49번답 1복 2속 2두락, 결結자 10번답 19부 6속, 11번답 4부 2속, 12번답 7부 9속 9두락, 조調자 38번답 23부 3속 5두락, 상霜자 1번전 3부 6속, 2번전 3부 8속, 3번답 2속 2두락, 삼지가三旨家 죽전竹田, 마산馬山의 사四자 66번답 2부, 82번답 4부 9속, 대大자 83번답 20부 5속, 84번답 3부 3속, 합 8두락, 운漚자 3번답 내 9부 9속, 7번답 1부 8속, 8번답 12부 8속 6두락, 월月자 14번전 내 4부 9속 2두락, 12번전 내 8부 2두락. 노奴 복삼卜三, 귀업貴業, 태위太爲, 연만連萬. 비婢 야매夜每, 계매季梅, 태월太月, 태진太辰. 인印.

재주財主：부父

증證：동성재중제同姓再從弟 유학幼學 이시욱李時郁

필筆：동성삼중손同姓三從孫 유학幼學 이정신李廷臣

1780년 1월 15일에 이시화李時華가 말녀末女の 몫으로 재산을 나누어준 문기이다. 이시화는 유이주의 아들 덕호德浩의 장인으로, 재령이씨이다. 유덕호는 이시화의 딸과 1775년에 혼인하였다. 나누어준 재산은 토지면에 있는 논 241부 9속 53두락, 밭 12부 9속 4두락과 노비 8구이다. 증證은 이시욱李時郁이, 필筆은 이정신李廷臣이 잡았다.

## 7. 1793년 가사家畝·전민田民 도문기都文記

乾隆五十八年癸丑六月十八日 家畝田民 都文記

余在西邑時 偶得四末不仁之症 瓜遞歸家

13 깃부문기(衿付文記) 분재기 중에서 깃부문기는 분급문기와 같이 재주의 생전에 작성되는 분재문서이지만, 구별되는 것은 형제자매의 분급내용을 같은 문서에 표시하지 않고 자녀 각각의 몫을 따로 작성하여주는 문서이다.

病狀一樣 差復未易 世間人事 難期百年 畧  
干田民 預爲區處於嫡庶名一子 以後日無言之意  
兩侄與諸堂侄 參爲證佐 俾無財上雜談之地 幸甚

伯姪贊浩

考妣祭位條 吐旨坪結字畚八斗地 卜二十二卜七束 金字一百十五畚三斗地 卜九  
卜四束 爲字十六畚五斗地 卜二十七卜五束 霜字四田五斗地 卜五卜 二田三斗地 卜  
三卜五束 大丘槩峴洞墓畚六斗地 卜二十二卜 印

長子德浩處 吐旨坪雲字一百合畚三斗地 卜九卜八束 騰字六十六畚七斗地 卜  
二十七卜九束 五十畚六斗地 卜二十卜一束 陽字十五合畚二斗地 卜七卜九束 露字五十六  
合畚

九斗地 卜三十五卜一束 五十三畚四斗地 卜十四卜四束 五十九合畚四斗地 卜十六卜六束 六  
十六畚二斗地 卜六卜六束 五十四合畚六斗地 卜三十三卜九束 四十二畚一斗地 卜三卜四束  
五十五畚六斗地 卜二十五卜五束 致字三合畚八斗地 卜三十二卜一束 結字二十五合畚四斗  
地 卜十七卜三束 爲字十九畚三斗地 卜九卜八束 廿五合畚七斗地 卜二十六卜一束 霜字廿二  
合畚四斗地 卜十四卜八束 金字一合畚七斗地 卜十卜六束 八十三合畚六斗地 卜二十八卜二  
束 結

字九合畚十五斗地 卜七十一卜八束 生字十四合畚六斗地 卜二十六卜四束 麗字一百合畚  
九斗地 卜四十一卜三束 号字四十畚三斗地 卜九卜八束 李字廿五合畚七斗地 卜十六卜二  
束 十

九畚十二斗地 卜五十一卜六束 五十五合畚三斗地 卜六卜五束 奈字一合畚二斗地 卜七卜八  
束 四

畚二斗地 卜七卜三束 菜字八合畚七斗地 卜二十七卜七束 鹹字卅六合畚三斗地 卜十卜六  
束 李字四十畚四斗地 卜十四卜二束 鹹字八十畚一斗地 卜二卜四束 一百合畚十五斗地  
卜四十五卜九束 爲字四合畚七斗地 卜三十一卜三束 律字一合畚六斗地 卜三十卜二束 致  
字卅三合畚九斗地 卜五十一卜四束 爲字廿一合畚九斗地 卜五十四卜六束 廿三合畚六  
斗地 卜三十卜六束 四十畚五斗地 卜一卜五束 生字四十三合畚七斗地 卜三十六卜五束  
五十合畚六斗地 卜十八卜八束 五十四畚三斗地 卜七卜四束 出字卅三合畚六斗地 卜  
二十六卜五束 崗字四十二畚四斗地 卜十九卜五束 闕字廿一合畚六斗地 卜二十六卜四束  
珠字

六合畚六斗地 卜二十四卜九束 珍字十一合畚六斗地 卜二十七卜八束 李字六合畚六斗地 卜

十六卜 十八畝六斗地 卜二十三卜 四十七合畝七斗地 卜二十八卜五束 六十四合畝七斗地  
卜二十八卜二

束 六十六合畝四斗地 卜十三卜八束 七十一合畝六斗地 卜二十三卜一束 奈字七畝四斗地  
卜十五卜

二束 八合畝四斗地 卜十四卜一束 十一合畝四斗地 卜二十二卜 十五畝二斗地 卜八卜四束  
十八合畝四斗地 卜

十六卜五束 廿二合畝三斗地 卜十二卜三束 廿五畝二斗地 卜五卜六束 廿六合畝七斗地 卜  
三十卜一束 廿

九畝三斗地 卜十卜一束 卅二畝四斗地 卜十六卜一束 卅三畝三斗地 卜十卜一束 卅四畝四  
斗地 卜十七卜六束

卅五畝六斗地 卜二十二卜 卅合畝一斗地 卜三卜三束 四十合畝五斗地 卜十六卜四束  
四十九合畝一斗

地 卜二卜八束 五十四畝四斗地 卜十七卜六束 菜字十合畝六斗地 卜二十二卜七束 十三合畝  
六斗

地 卜二十七卜八束 十五合畝一斗地 卜四卜二束 卅二畝二斗地 卜九卜五束 卅三合畝九斗  
地 卜三十三卜

九束 重字四畝九斗地 卜四十卜二束 五內畝三斗地 卜十二卜三束 海字八合畝五斗地 卜十  
四卜 八十八合畝二斗地 卜七卜三束 鹹字十八畝二斗地 卜六卜九束 廿二畝一斗地 卜三卜  
四束

河字卅二合畝八斗地 卜四十卜八束 馬山坪 名字十二畝四斗地 卜十六卜 夜字二畝六斗  
地 卜十三卜九束 艮田坪 火字帝字合畝十五斗地 卜五十五卜五束 順天錦山坪正  
字畝三十六斗地 卜一結二十卜 谷城梧枝坪畝十二斗地 卜四十卜 勿禁洞坪墓畝  
六斗地 卜二十二卜 吐旨坪 夜字十一合田三斗地 卜十八卜 陳 騰字九田四斗地 卜二卜六束 垞 露  
字四十八合田十二斗地 卜十二卜 時居垞址 霜字十八田三斗地 卜三卜三束 三田二束 竹田 河字  
十六田十五斗地 卜十四卜四束 十七合田二十五斗地 卜二十七卜一束 馬山坪 廣村柿木田  
卜四

十四卜九束 菁菜田三斗地 卜九卜 月字一田六斗地 卜十一卜一束 十五合田三十五斗地 卜  
四十

一卜 縣內坪潤字菁田十五斗地 卜十六卜六束 谷城梧枝坪田十五斗地 卜十五卜八束 瓦  
家并垞址 婢桂花年四十五 婢逢梅一所生奴一甲年八 婢酉愛年四十二 同婢  
一所生奴興孫年十九 同婢三所生婢興娘年三 婢喜節年五十八 同婢一所  
生奴汗甲年三十五 二所生奴福來年三十一 奴壬迪年四十一 婢甘德一所生奴尙

奉年三十五 同婢二所生奴二奉年二十八 同婢三所生奴三用年二十一 同婢四所  
婢莫娘年十九 婢鳳臺年十三 奴龍澤年三十八 印

次子述處 吐旨坪生字廿九畝四斗地 卜十六卜七束 卅一合畝七斗地 卜二十八卜一束 卅五合  
畝十斗地 卜四十四卜八束 四十一畝四斗地 卜十三卜九束 致字六合畝九斗地 卜三十一卜三  
束 騰字

三合畝七斗地 卜二十五卜 四畝九斗地 卜三十九卜一束 成字卅三合畝五斗地 卜十六卜三束  
一百五十

六畝三斗地 卜九卜八束 致字十二畝九斗地 卜三十五卜四束 露字三合畝八斗地 卜二十七卜三束  
結字十三畝四斗地 卜十六卜 騰字卅一畝四斗地 卜十三卜九束 水字卅五畝三斗地 卜十三  
卜四束 崗字九合畝六斗地 卜二十五卜六束 闕字十六畝五斗地 卜二十七卜六束 珠稱卅五  
合畝七斗地 卜二十一卜五束 麗字十五合畝八斗地 卜三十卜五束 劍字廿八合畝九斗地 卜四  
十二卜 号字二畝三斗地 卜十三卜 珠字十八合畝四斗地 卜十四卜九束 稱字十四合畝  
六斗地 卜二十卜二束 珍字七畝三斗地 卜十二卜三束 果字五十四畝九斗地 卜四十一卜九束  
出字四十二畝六斗地 卜二十三卜七束 露字十二合畝九斗地 卜十三卜五束 六十八合畝  
五斗地 卜十九卜五束 陽字一內畝四斗地 卜十五卜八束 崗字一合畝九斗地 卜三十七卜一束  
菜字四十三畝五斗地 卜十九卜三束 四十八畝四斗地 卜十八卜七束 馬山坪秋字四十二畝十  
二斗地 卜三十四卜二束 吐旨坪醜字八十一合田三十斗地 卜三十二卜八束 騰字七內田二十  
斗地 卜

九卜三束 九田四斗地 卜二卜六束 爲字四十六田六斗地 卜五卜四束 婢桂花二所婢賤愛  
年八 婢西愛二所生奴介同年五 婢喜節五所生奴八尙年二十一 婢奉愛年十  
七 婢莫丹年二十七 奴禹孫年二十五 騰字垞田 新造家舍 不計間數 盡爲許給  
次印 汝矣同居從九兄 若登科 則汝矣衿內 拾斗地 出給事

仲侄天浩處 吐旨坪爲字十二合畝五斗地 卜二十二卜九束 醜字七十七田三斗地 卜五卜  
一束 霜字二垞田 并草家一旨印

堂侄文浩處 吐旨坪露字六十七畝五斗地 卜十八卜二束 印

財主 父[着名]

伯侄 贊浩[着名]

仲侄 天浩[着名]

伯堂侄 日浩[着名]

筆 三堂侄 喆浩[着名]

四堂侄 仁浩[着名]

五堂侄 章浩[着名]

六堂侄 文浩[着名]

뒷면

三水公 傳于長子參判公 三水公下世

癸丑六月十八日 丁巳以后一

兩世分衿案 百二十三年

參判公 乙亥正月二十七日 己未冬十二

傳于長子虞侯公 月初一日戊寅

瑩業謹攷同封

參判公妻財分衿案 自邱鄉始家

于求禮吐旨

面九龍井之日

全 女婿 崔輔澤【一名遇鍊】 分衿案

乾隆四十五年正月十五日

財主妻父 李時華

嘉慶十四年四月初四日

건륭乾隆 58년 계축년(1793) 6월 18일 가사家畵·전민田民 도문기都文記

내가 서읍西邑에 있을 때 우연히 사지가 마비되는 병을 얻어 과체瓜遞<sup>14</sup>를 하고 귀가歸家하였는데, 병의 상태가 한 가지여서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 세간의 인사가 백 년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전민田民을 미리 적자 서자에 이름이 오른 자식에게 구처하고, 훗날 말이 없게 할 뜻으로 두 조카와 여러 당질을 참석시켜 증좌證佐하니, 재산에 대해서 잡담이 없게 하면 다행이겠다.

큰조카 찬호贊浩 : 고비考妣, 돌아가신 부모) 제위조祭位條로 토지吐旨坪의 결結자답 8두지斗地 복수

14 과체(瓜遞) 벼슬의 임기가 차서 교체되는 것, 또는 교체를 의미하는 말. 인사이동(人事移動).



卜數 22복 7속, 금금자 115번답 3두지 복수 9복 4속, 위爲자 16번답 5두지 복수 27복 5속, 상霜자 4번  
전 5두지 복수 5복, 2번전 3두지 복수 5속. 대구大丘 비현동裴峴洞 묘답墓畵 6두지 복수 22복. 인印.

장자長子 덕호德浩 : 토지평의 운雲자 100번 합답 3두지 복수 9복 8속, 등騰자 66번답 7두지 복수  
27복 9속, 50번답 6두지 복수 20복 1속, 양陽자 15번 합답 2두지 복수 7복 9속, 로露자 56번 합답 9두  
지 복수 35복 1속, 53번답 4두지 복수 14복 4속, 59번 합답 4두지 복수 16복 6속, 66번답 2두지 복수  
6복 6속, 54번 합답 6두지 복수 33복 9속, 42번답 1두지 복수 3복 4속, 55번답 6두지 복수 25복 5속,  
54번 합답 6두지 복수 33복 9속, 42번답 1두지, 복수 3복 4속, 55번답 6두지 복수 25복 5속, 치致자 3  
번 합답 8두지 복수 32복 1속, 결結자 25번 합답 4두지 복수 17복 3속, 위爲자 19번답 3두지 복수 9복  
8속, 25번 합답 7두지 복수 26복 1속, 상霜자 22번 합답 4두지 복수 14복 8속, 금금자 1번 합답 7두지  
복수 10복 6속, 83번 합답 6두지 복수 28복 2속, 결結자 9번 합답 15두지 복수 71복 8속, 생生자 14번  
합답 6두지 복수 26복 4속, 여麗자 100번 합답 9두지 복수 41복 3속, 호号자 40번답 3두지 복수 9복  
8속, 이隸자 25번 합답 7두지 복수 16복 2속, 19번답 12두지 복수 51복 6속, 55번 합답 3두지 복수 6  
복 5속, 내奈자 1번 합답 2두지 복수 7복 8속, 4번답 2두지 복수 7복 3속, 채菜자 8번 합답 7두지 복수  
27복 7속, 함鹹자 36번 합답 3두지 복수 10복 6속, 이隸자 40번답 4두지 복수 14복 2속, 함鹹자 80번  
답 1두지 복수 2복 4속, 100번 합답 15두지 복수 45복 9속, 위爲자 4번 합답 7두지 복수 31복 3속, 율  
律자 1번 합답 6두지 복수 30복 2속, 치致자 33번 합답 9두지 복수 51복 4속, 위爲자 21번 합답 9두지  
복수 54복 6속, 23번 합답 6두지 복수 30복 6속, 40번답 5도지刀地 복수 1복 5속, 생生자 43번 합답 7  
두지 복수 36복 5속, 50번 합답 6두지 복수 18복 8속, 54번답 3두지 복수 7복 4속, 출出자 33번 합답  
6두지 복수 26복 5속, 강崗자 42번답 4두지 복수 19복 5속, 궤闕자 21번 합답 6두지 복수 26복 4속,  
주珠자 6번 합답 6두지 복수 24복 9속, 진珍자 11번 합답 6두지 복수 27복 8속, 이隸자 6번 합답 6두  
지 복수 16복, 18번답 6두지 복수 23복, 47번 합답 7두지 복수 28복 5속, 64번 합답 7두지 복수 28복  
2속, 66번 합답 4두지 복수 13복 8속, 71번 합답 6두지 복수 23복 1속, 내奈자 7번답 4두지 복수 15복  
2속, 8번 합답 4두지 복수 14복 1속, 11번 합답 4두지 복수 22복, 15번답 2두지 복수 8복 4속, 18번 합  
답 4두지 복수 16복 5속, 22번 합답 3두지 복수 12복 3속, 25번답 2두지 복수 5복 6속, 26번 합답 7두  
지 복수 30복 1속, 29번답 3두지 복수 10복 1속, 32번답 4두지 복수 16복 1속, 33번답 3두지 복수 10  
복 1속, 34번답 4두지 복수 17복 6속, 35번답 6두지 복수 22복, 30번 합답 1두지 복수 3복 3속, 40번  
합답 5두지 복수 16복 4속, 49번 합답 1두지 복수 2복 8속, 54번답 4두지 복수 17복 6속, 채菜자 10번  
합답 6두지 복수 22복 7속, 13번 합답 6두지 복수 27복 8속, 15번 합답 1두지 복수 4복 2속, 32번답 2  
두지 복수 9복 5속, 33번 합답 9두지 복수 33복 9속, 중重자 4번답 9두지 복수 40복 2속, 5번내답 3  
두지 복수 12복 3속, 해海자 8번 합답 5두지 복수 14복, 88번 합답 2두지 복수 7복 3속, 함鹹자 18번  
답 2두지 복수 6복 9속, 22번답 1두지 복수 3복 4속, 하河자 32번 합답 8두지 복수 40복 8속, 마산평

馬山坪 명자 12번답 4두지 복수 16복, 야夜자 2번답 6두지 복수 13복 9속, 간전평良田坪 화火자-제帝자 합답 15두지 복수 55복 5속, 순천順天 금산평錦山坪 정正자답 36두지 복수 1결 20복, 곡성谷城 오지평梧枝坪 답 12두지 복수 40복, 물금동평勿禁洞坪 묘답墓畓 6두지 복수 22복.

토지평吐旨坪 야夜자 11번 합전 3두지 복수 18복 진진陳田, 등騰자 9번전 4두지 복수 2복 6속, 대지[岱] 로露자 48번 합전 12두지 복수 12복, 시거대지時居垞址 상霜자 18번전 3두지 복수 3복 3속, 3번전 2속, 죽전竹田 하河자 16번전 15두지 복수 14복 4속, 17번 합전 25두지 복수 27복 1속, 마산평馬山坪 광촌시목전廣村柿木田 복수 44복 9속, 청채전菁菜田 3두지 복수 9복, 월月자 1번전 6두지 복수 11복 1속, 15번 합전 35두지 복수 41복, 현내평縣內坪 윤潤자 청전菁田 15두지 복수 16복 6속, 곡성 오지평梧枝坪 전 15두지 복수 15복 8속, 와가瓦家와 대지垞址.

비婢 계화桂花 나이 45세, 비 봉매逢梅 1소생 노 일갑一甲 나이 8세, 비 유애酉愛 나이 42세, 동비同婢(유애) 1소생 노 흥손興孫 나이 19세, 동비 3소생 비 흥랑興娘 나이 3세, 비 희절喜節 나이 58세, 동비 1소생 노 한갑汗甲 나이 35세, 2소생 노 복래福來 나이 31세, 노 임적壬迪 나이 41세, 비 감덕甘德의 1소생 노 상봉尙奉 나이 35세, 동비 2소생 노 이봉二奉 나이 28세, 동비 3소생 노 삼용三用 나이 21세, 동비 4소생 비 막낭莫娘 나이 19세, 비 봉대鳳臺 나이 13세, 노 용택龍澤 나이 38세. 인印.

차자次子 술述 : 토지평吐旨坪 생生자 29번답 4두지 복수 16복 7속, 31번 합답 7두지 복수 28복 1속, 35번 합답 10두지 복수 44복 8속, 41번답 4두지 복수 13복 9속, 치致자 6번 합답 9두지 복수 31복 3속, 등騰자 3번 합답 7두지 복수 25복, 4번답 9두지 복수 39복 1속, 성成자 33번 합답 5두지 복수 16복 3속, 156번답 3두지 복수 9복 8속, 치致자 12번답 9두지 복수 35복 4속, 로露자 3번 합답 8두지 복수 27복 3속, 결結자 13번답 4두지 복수 16복, 등騰자 31번답 4두지 복수 13복 9속, 수水자 35번답 3두지 복수 13복 4속, 강崗자 9번 합답 6두지 복수 25복 6속, 귤關자 16번답 5두지 복수 27복 6속, 주珠자-칭稱자 35번 합답 7두지 복수 21복 5속, 여麗자 15번 합답 8두지 복수 30복 5속, 김劔자 28번 합답 9두지 복수 42복, 호号자 2번답 3두지 복수 13복, 주珠자 18번 합답 4두지 복수 14복 9속, 칭稱자 14번 합답 6두지 복수 20복 2속, 진珍자 7번답 3두지 복수 12복 3속, 과果자 54번답 9두지 복수 41복 9속, 출出자 42번답 6두지 복수 23복 7속, 로露자 12번 합답 9두지 복수 13복 5속, 68번 합답 5두지 복수 19복 5속, 양陽자 1번내답 4두지 복수 15복 8속, 강崗자 1번 합답 9두지 복수 37복 1속, 채菜자 43번답 5두지 복수 19복 3속, 48번답 4두지 복수 18복 7속, 마산평馬山坪 추秋자 42번답 12두지 복수 34복 2속, 토지평吐旨坪 함鹹자 81번 합전 30두지 복수 32복 8속, 등騰자 7번내전 20두지 복수 9복 3속, 9번전 4두지 복수 2복 6속, 위爲자 46번전 6두지 복수 5복 4속.

비婢 계화桂花의 2소생 비 천애賤愛 나이 8세, 비 유애酉愛의 2소생 노 개동介同 나이 5세, 비 희절喜節의 5소생 노 팔상八尙 나이 21세, 비 봉애奉愛 나이 17세, 비 막단莫丹 나이 27세, 노 우손禹孫 나이 25세. 등騰자 대전垞田에 신조新造한 가사家畝를 칸수를 계산하지 않고 모두 허급한다.

너의 동거하는 종형 구구가 민약 등과登科를 하게 되면 너의 몫 내에서 10두지를 출급해줄 일이다.

중질仲姪 천호天浩 : 토지평吐旨坪의 위爲자 12번 합답 5두지 복수 22복 9속, 함鹹자 77번전 3두지 복수 5복 1속, 상糶자 2번 대전垞田과 초가草家 1지旨<sup>15</sup>. 인印.

당질堂姪 문호文浩 : 토지평吐旨坪의 로露자 67번답 5두지 복수 18복 2속. 인印.

재주財主 : 부父

백질伯姪 찬호贊浩

중질仲姪 천호天浩

백당질伯堂姪 일호日浩

필筆 : 삼당질三堂姪 철호喆浩

사당질四堂姪 인호仁浩

오당질五堂姪 장호章浩

육당질六堂姪 문호文浩

뒷면

삼수공三水公·참판공參判公 양세兩世 분깃안分衿案

계축년 6월 18일에 장자 참판공에게 전함.

을해년 1월 27일에 장자 우후공虞侯公에게 전함.

삼수공이 하세한 정사년 이후로 123년이 지난 기미년 겨울 12월 1일 무인일에 형업瑩業이 삼가 살 피고 동봉함.

참판공參判公 처재妻財 분깃안分衿案【구향邱鄕에서 비로소 집을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구룡정<sup>16</sup>에 잡은 날】 건륭乾隆 45년(1780) 1월 15일, 재주財主 처부妻父 이시화李時華

동소 여서女婿 최보택崔輔澤【일명 우련遇鍊】분깃안分衿案

가경嘉慶 14년 4월 4일.

1793년 6월 18일에 유이주柳爾曹가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도문기都文記이다. 큰조카 찬호

---

15 지(旨) 집을 세는 단위로 보임. 채.

16 구룡정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에 해당.

贊浩의 몫으로는 부모의 제위조祭位條로 토지면에 있는 논 16두락 부수는 59복 6속과 밭 8두락 5복 5속 및 대구 비현동에 있는 묘답 6두락 22복을 나누어 주었고, 장자長子 덕호德浩의 몫으로는 구례에 있는 논 454두 5도락, 부수는 2032복 9속과, 순천順天 금산鎭山의 36두락 1결 20복, 곡성곡城 오지梧枝에 12두락 40복, 물금동勿禁洞에 묘답墓畓 6두락 22복, 전체 508두 5도락, 22결 14복 9속에 해당된다. 밭은 121두락 부수는 200복 2속, 곡성 오지梧枝리 15두락 부수 15복 8속으로, 합 136두락 216복과 와가瓦家와 대지塚址, 노비 15구를 나누어 주었다.

차자次子 술述의 몫으로는 토지면에 있는 논 260두락 부수 812복 4속, 노비 6구와 새로 지은 집을 나누어 주었고, 중형 구구가 만약 등과登科를 하게 되면 몫에서 10두락을 출금해주라는 단서를 달았다.

중질仲姪 천호天浩에게도 8두락 부수는 28복 곳과 대전塚田과 초가草家 1채를 주고, 당질堂姪 문호文浩에게는 5두락 부수 18복 2속을 나누어 주었다.

## 8. 1793년 장자구처기長子區處記

癸丑六月十八日

長子區處記

三水公貽襟

乾隆五十八年癸丑六月十八日 長子德浩衿

雲一百合畓三斗地 卜九卜八束

騰六十六畓七斗地 卜二十七卜九束

五十四合畓六斗地 卜二十卜一束

陽十五合畓二斗地 卜七卜九束

露五十六合畓九斗地 卜三十五卜一束

五十三畓四斗地 卜十四卜四束

五十九合畓四斗地 卜十六卜六束

六十六畓二斗地 卜六卜六束

五十四合畓六斗地 卜三十三卜九束

四十二畝一斗地 卜三卜四束  
 五十五畝六斗地 卜二十五卜五束  
 致三合畝八斗地 卜三十三卜五束 中埜去  
 結廿五合畝四斗地 卜十七卜三束  
 爲十九畝三斗地 卜九卜八束  
 廿五合畝七斗地 卜二十六卜一束  
 霜廿二合畝四斗地 卜十四卜八束  
 金一合畝七斗地 卜十卜六束  
 八十三合畝六斗地 卜二十八卜二束  
 結九合畝十五斗地 卜七十一卜八束 內八十地竹川去  
 在七十地  
 生十四合畝六斗地 卜二十六卜四束 竹川去  
 麗一百合畝九斗地 卜四十一卜三束 斥賣新家堡  
 号四十畝三斗地 卜九卜八束  
 李廿五合畝七斗地 卜十六卜二束  
 十九畝十二斗地 卜五十一卜六束  
 五十五合畝三斗地 卜六卜五束  
 奈一合畝二斗地 卜七卜八束  
 四畝二斗地 卜七卜三束  
 菜八合畝七斗地 卜二十七卜七束  
 鹹三十六合畝三斗地 卜十卜六束  
 李四十六畝四斗地 卜十四卜二束 竹川去  
 鹹八十畝一斗地 卜二卜四束  
 一百合畝十五斗地 卜四十五卜九束  
 爲四合畝七斗地 卜三十一卜三束  
 律一合畝六斗地 卜三十卜二束  
 致卅三合畝九斗地 卜五十一卜四束  
 爲廿一合畝九斗地 卜五十四卜六束  
 廿三合畝六斗地 卜三十卜六束  
 四十畝五斗地 卜一卜五束  
 生四十三合畝七斗地 卜三十六卜五束  
 五十合畝六斗地 卜十八卜八束

五十四畝三斗地 卜七卜四束 龍井堡  
 出卅三合畝六斗地 卜二十六卜五束  
 崗四十二畝四斗地 卜十九卜八束  
 闕廿一合畝六斗地 卜二十六卜四束  
 珠六合畝六斗地 卜二十四卜九束  
 珍十一合畝六斗地 卜二十七卜八束  
 李六合畝六斗地 卜十六卜  
     十八畝六斗地 卜二十三卜  
     四十七合畝七斗地 卜二十八卜五束  
     六十四合畝七斗地 卜二十八卜二束  
     六十六合畝四斗地 卜十三卜八束  
     七十一合畝六斗地 卜二十三卜一束  
 奈七畝四斗地 卜十五卜二束  
     八合畝四斗地 卜十四卜一束  
     十一合畝四斗地 卜二十二卜  
     十五畝二斗地 卜八卜四束  
     十八合畝四斗地 卜十六卜五束  
     廿二合畝三斗地 卜十二卜三束  
     廿五畝二斗地 卜五卜六束  
     廿六合畝七斗地 卜三十卜一束  
     廿九畝三斗地 卜十卜一束  
     卅二畝四斗地 卜十六卜一束  
     卅三畝三斗地 卜十卜一束  
     卅四畝四斗地 卜十七卜六束  
     卅五畝六斗地 卜二十二卜  
     卅合畝一斗地 卜三卜三束  
     四十合畝五斗地 卜十六卜四束  
     四十九合畝一斗地 卜二卜八束  
     五十四畝四斗地 卜十七卜六束  
 菜十合畝六斗地 卜二十二卜七束  
     十三合畝六斗地 卜二十七卜八束  
     十五合畝一斗地 卜四卜二束

卅二畝二斗地 卜九卜五束  
卅三合畝九斗地 卜三十三卜九束  
重四畝九斗地 卜四十卜二束  
五內畝三斗地 卜十二卜三束  
海八合畝五斗地 卜十四卜  
八十八合畝二斗地 卜七卜三束  
醜十八畝二斗地 卜六卜九束 竹川去  
廿二畝一斗地 卜三卜四束 竹川去  
河卅二合畝八斗地 卜四十八卜八束  
馬山  
名十二畝四斗地 卜十六卜 斥賣  
夜二畝六斗地 卜十三卜九束 斥賣  
良田  
火帝畝十五斗地  
順天  
正畝三十六斗地 斥賣  
谷城  
梧枝畝十二斗地 洪室去  
勿禁洞墓畝六斗地  
合畝四百八十九斗五刀地

夜十一合田三斗地 卜十八卜 陳  
梧枝田十五斗地 洪室去  
瓦家并垞址 洪室去  
騰九田四斗地 卜二卜六束 垞  
露四十八合田十斗地 卜十二卜 時居垞址  
霜十八田三斗地 卜三卜三束  
三田二束 竹田  
河十六田十五斗地 卜十四卜四束  
廣村柿木田 卜四十四卜九束 并草家二旨  
菁菜田三斗地 卜九卜  
月一田六斗地 卜十一卜一束

十五合田三十五斗地 卜四十一卜  
 河十七合田二十五斗地 卜二十七卜一束  
 潤菁田十五斗地 卜十六卜六束  
 合田一百三十四斗地  
 都合田畝三十一石三斗五刀地  
 婢桂花年四十五 婢逢每一所生奴日甲年八  
 婢西愛年四十二 同婢一所生奴興孫年十  
 九 同婢三所生婢興娘年三 婢嘉節年  
 五十八 同婢一所生奴汗甲年三十五 二所生奴  
 福來年三十一 奴壬迪年四十一 婢甘德一所  
 生奴尚奉年三十五 二所生奴二奉年二十八  
 三所生奴三困年二十一 四所生婢莫娘  
 年十九 婢鳳臺年十三  
 一 述兒 所給 新造瓦家草家 不計間數 盡爲  
 許給是旆 衿給田畝段 待渠年十五歲 正  
 月日內出給是矣 渠若不幸 則勿論已出給  
 未出給 都付於吾夫婦祭位事  
 一 日後 若自豐川有尋倫而來 則兄弟各出  
 一石土與一口奴婢 以爲同居之地事  
 一 此後 田畝間 買得者 并前給限五十石地  
 亦爲吾夫婦祭位事  
 一 祭位 五十石地段 宗子宗孫 世世傳給是  
 遣 支子支孫 初勿舉論於祭位畝中  
 事  
 一 家舍 後山松楸 奴婢田民 一并祭位事

財主 父[着名]

蓋瓦祠堂二間	層屋四間	前行廊六間
蓋瓦體舍九間	蓋瓦西翼廊三間	中外舍三間
東翼廊三間	層屋三間	外舍八間
蓋瓦東行廊十二間	西挾廊三間	內外厠二間



下外舍四間            東足砧舍三間  
大門一間            西行廊十二間

- 一 五美洞新設戶 皆吾所有是齊
  - 一 五美洞表裏山林 皆吾所有是齊
  - 一 五美洞一局內外草木土石 皆吾所有是齊
  - 一 五美洞前案五峯卽空山 故吾所有之是齊
  - 一 五美洞一局 摠是加耕田是齊
  - 一 五美洞後松田中 朴李張三四塚 卽無地之古塚  
也 洞西側射場李塚 亦然是齊
- 右衿世世傳給是齊 [着名]

건륭乾隆 58년 계축년(1793) 6월 18일 장자長子 구치기區處記

삼수공三水公 이금貽襟

- 건륭乾隆 58년 계축년 6월 18일, 장자 덕호德浩의 묵  
운雲자 100번 합답 3두지 복수 9복 8속.  
등騰자 66번답 7두지 복수 27복 9속.  
54번 합답 6두지 복수 20복 1속.  
양陽자 15번 합답 2두지 복수 7복 9속.  
로露자 56번 합답 9두지 복수 35복 1속.  
53번답 4두지 복수 14복 4속.  
59번 합답 4두지 복수 16복 6속.  
66번답 2두지 복수 6복 6속.  
54번 합답 6두지 복수 33복 9속.  
42번답 1두지 복수 3복 4속.  
55번답 6두지 복수 25복 5속.  
치致자 3번 합답 8두지 복수 33복 5속. 중대거中坵去.  
결結자 25번 합답 4두지 복수 17복 3속.  
위爲자 19번답 3두지 복수 9복 8속.

25번 합답 7두지 복수 26복 1속.  
 상霜자 22번 합답 4두지 복수 14복 8속.  
 중重자 1번 합답 7두지 복수 10복 6속.  
 83번 합답 6두지 복수 28복 2속.  
 결結자 9번 합답 15두지 복수 71복 8속 내, 80지地는 죽천거竹川去, 남은 것은 70지.  
 생生자 14번 합답 6두지 복수 26복 4속, 죽천거竹川去.  
 여麗자 100번 합답 9두지 복수 11복 3속, 척매斥賣하여 새로운 가대家垞 조성.  
 호号자 40번답 3두지 복수 9복 8속.  
 이李자 25번 합답 7두지 복수 16복 2속.  
 19번답 12두지 복수 51복 6속.  
 55번 합답 3두지 복수 6복 5속.  
 내奈자 1번 합답 2두지 복수 7복 8속.  
 4번답 2두지 복수 7복 3속.  
 채菜자 8번 합답 7두지 복수 27복 7속.  
 함鹹자 36번 합답 3두지 복수 10복 6속.  
 이李자 46번답 4두지 복수 14복 2속, 죽천거竹川去.  
 함鹹자 80번답 1두지 복수 2복 4속.  
 100번 합답 15두지 복수 45복 9속.  
 위爲자 4번 합답 7두지 복수 31복 3속.  
 율律자 1번 합답 6두지 복수 30복 2속.  
 치致자 33번 합답 9두지 복수 51복 4속.  
 위爲자 21번 합답 9두지 복수 54복 6속.  
 23번 합답 6두지 복수 30복 6속.  
 40번답 5도지 복수 1복 5속.  
 생生자 43번 합답 7두지 복수 36복 5속.  
 50번 합답 6두지 복수 18복 8속.  
 54번답 3두지 복수 7복 4속, 용정대龍井垞.  
 출出자 33번 합답 6두지 복수 26복 5속.  
 강崗자 42번답 4두지 복수 19복 8속.  
 궐闕자 21번 합답 6두지 복수 26복 4속.  
 주珠자 6번 합답 6두지 복수 24복 9속.  
 진珍자 11번 합답 6두지 복수 27복 8속.

이李자 6번 합답 6두지 복수 16복.  
 18번답 6두지 복수 23복.  
 47번 합답 7두지 복수 28복 5속.  
 64번 합답 7두지 복수 28복 2속.  
 66번 합답 4두지 복수 13복 8속.  
 71번 합답 6두지 복수 23복 1속.

내奈자 7번답 4두지 복수 15복 2속.  
 8번 합답 4두지 복수 14복 1속.  
 1번 합답 4두지 복수 22복.  
 5번답 2두지 복수 8복 4속.  
 18번 합답 4두지 복수 16복 5속.  
 22번 합답 3두지 복수 12복 3속.  
 25번답 2두지 복수 5복 6속.  
 26번 합답 7두지 복수 30복 1속.  
 29번답 3두지 복수 10복 1속.  
 32번답 4두지 복수 16복 1속.  
 33번답 3두지 복수 10복 1속.  
 34번답 4두지 복수 17복 6속.  
 35번답 6두지 복수 22복.  
 30번 합답 1두지 복수 3복 3속.  
 40번 합답 5두지 복수 16복 4속.  
 49번 합답 1두지 복수 2복 8속.  
 54번답 4두지 복수 17복 6속.

채菜자 10번 합답 6두지 복수 22복 7속.  
 13번 합답 6두지 복수 27복 8속.  
 15번 합답 1두지 복수 4복 2속.  
 32번답 2두지 복수 9복 5속.  
 33번 합답 9두지 복수 33복 9속.

중重자 4번답 9두지 복수 40복 2속.  
 5번 내답 3두지 복수 12복 3속.

해海자 8번 합답 5두지 복수 14복.  
 88번 합답 2두지 복수 7복 3속.

함궤자 18번답 2두지 복수 6복 9속, 죽천거竹川去.

22번답 1두지 복수 3복 4속, 죽천거竹川去.

하河자 32번 합답 8두지 복수 48복 8속.

마산馬山

명名자 12번답 4두지 복수 16복, 척매斥賣.

야夜자 2번답 6두지 복수 13복 9속, 척매斥賣.

간전良田

화火자·제帝자답 15두지.

순천順天

정正자 답 36두지, 척매斥賣.

곡성谷城

오지梧枝답 12두지, 홍실거洪室去.

물금동勿禁洞 묘답墓畓 6두지.

합답畓畓 489두 5도지刀地.

야夜자 11번 합전 3두지 복수 18복, 진陳.

오지梧枝 전田 15두지, 홍실거洪室去.

와가瓦家와 대지垓址, 홍실거洪室去.

등騰자 9번전 4두지 복수 2복 6속, 대垓.

로露자 48번 합전 10두지 복수 12복, 시거대지時居垓址.

상霜자 18번전 3두지 복수 3복 3속.

3번전 2속, 죽전竹田.

하河자 16번전 15두지 복수 14복 4속.

광촌시목전廣村柿木田 복수 44복 9속, 아울러 초가草家 2지들.

청채전菁菜田 3두지 복수 9복.

월月자 1번전 6두지 복수 11복 1속.

15번 합전 35두지 복수 41복.

하河자17번 합전 25두지 복수 27복 1속.

윤潤자청전菁田 15두지 복수 16복 6속.

합전畓田 134두지.

도합都合 전답田畓 31석 3두 5도지.

비 계화桂花 나이 45세, 비 봉매逢每의 1소생 노 일갑田甲 나이 8세, 비 유애酉愛 나이 42세, 동비 1

소생 노 흥손興孫 나이 19세, 동비 3소생 비 흥랑興娘 나이 3세, 비 희절嘉節 나이 58세, 동비 1소생 노 한갑汗甲 나이 35세, 이소생 노 복래福來 나이 31세, 노 임적壬迪 나이 41세, 비 감덕甘德의 1소생 노 상봉尙奉 나이 35세, 2소생 노 이봉二奉 나이 28세, 3소생 노 삼근三困 나이 21세, 4소생 비 막랑莫娘 나이 19세, 비 봉대鳳臺 나이 13세.

1. 술아述兒에게 준 새로 지은 와가瓦家와 초가草家は 칸 수를 헤아리지 않고 모두 허급하며, 깃급한 전답은 그의 나이 15세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정월 내에 출급할 것이로되, 그가 만약 불행[죽음]하다면 이미 출급한 것이건 출급하지 않은 것이건 막론하고 모두 우리 부부의 제위祭位에 부칠 일.

1. 이후에 만약 풍천豐川에서 일가를 찾아 온 사람이 있다면 형제가 각자 1석의 토지와 1구의 노비를 내어서 동거하는 방도로 삼을 일.

1. 이후로 밭이건 논이건 매득買得한 것은 전에 준 50석지石地에 한해서 또한 우리 부부의 제위祭位로 삼을 일.

1. 제위祭位 50석지는 종자宗子 종손宗孫에게 대대로 전급傳給하고, 지자支子와 지손支孫은 처음부터 제위답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 일.

1. 가사家舍와 후산後山의 송추松楸와 노비奴婢와 전민田民은 한 가지로 모두 제위祭位로 할 일.

재주財主 부父

개와蓋瓦 사당祠堂 2칸, 개와 체사體舍 9칸, 동익랑東翼廊 3칸,  
층옥層屋 4칸, 개와 서익랑西翼廊 3칸, 층옥層屋 3칸,  
전행랑前行廊 6칸, 중외사中外舍 3칸, 외사外舍 8칸,  
개와 동행랑東行廊 12칸, 하외사下外舍 4칸, 대문大門 1칸,  
서협랑西挾廊 3칸, 동족침사東足砧舍 3칸, 서행랑西行廊 12칸, 내외측內外廁 2칸.

1. 오미동五美洞에 신설하는 호戶는 모두가 나의 소유이다.

1. 오미동 안팎의 산림山林은 모두 나의 소유이다.

1. 오미동 일국一局 내외의 초목과 토석土石은 모두 나의 소유이다.

1. 오미동의 전안前案인 오봉산五峯山은 곧 공산空山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다.

1. 오미동 일국一局은 모두가 가경전加耕田이다.

1. 오미동 뒤의 송전松田 중에서 박차·이李·장張의 3~4 무덤은 곧 무지無地의 고총古塚이다. 오미동 서측 사장射場의 이충李塚도 또한 그러하다.

위의 깃矜은 대대로 전급傳給한다.

1793년 6월 18일에 유이주柳爾胄가 장자長子 덕호德浩에게 재산을 깃부한 문서이다. 장자 덕호德浩의 몫은 구례에 있는 논 438두락 5도지, 부수는 1672복 4속과 순천順天에 36두락 곡성 오지리에 12두락, 물금동勿禁洞에 묘답墓畓 6두락으로, 합습 논 489두 5도지와 밭 134두락 부수는 밭 189복 1속으로, 도합都合 전답田畓 31석 3두 5도지. 노비 14구 등과 건물 78칸을 구처했으며, 풍천豐川에서 일가를 찾아온 사람이 있다면 형제가 각자 1석의 토지와 1구의 노비를 내어주라는 말과 오미동 주변의 산림이나 산이 모두 나의 소유임을 밝혀놓았다.

## 9. 1793년 차자구처기次子區處記

癸丑六月十八日

【大監有孽子一兒早折耳】

次子區處記

乾隆五十八年癸丑六月十八日 次子區處記

生廿九畓四斗地 卜十六卜七束

卅一合畓七斗地 卜二十八卜一束

卅五合畓十斗地 卜四十四卜八束

四十一畓四斗地 卜十三卜九束

合二十五斗地

致六合畓九斗地 卜三十一卜三束

騰三合畓七斗地 卜二十五卜

四畓九斗地 卜三十九卜一束 中殆去

秋四十二畓十二斗地 卜三十四卜二束

成卅三合畓五斗地 卜十六卜三束

一百五十六畓三斗地 卜九卜八束

致十二畓九斗地 卜三十五卜四束

露十三合畓八斗地 卜二十七卜三束

結十三畓四斗地 卜十六卜

騰卅一畝四斗地 卜十三卜九束  
水卅五畝三斗地 卜十三卜四束  
崗九合畝六斗地 卜二十五卜六束  
闕十六畝五斗地 卜二十七卜六束  
珠稱卅五合畝七斗地 卜二十一卜五束  
麗十五合畝八斗地 卜三十卜五束  
劬廿八合畝九斗地 卜四十二卜  
号二畝三斗地 卜十三卜  
珠十八合畝四斗地 卜十四卜九束  
稱十四合畝六斗地 卜二十卜二束  
珍七畝三斗地 卜十二卜三束  
果五十四畝九斗地 卜四十一卜九束  
出四十二畝六斗地 卜二十三卜七束  
露十二合畝九斗地 卜三十卜五束  
    六十八合畝五斗地 卜十九卜五束  
陽一內畝四斗地 卜十五卜八束  
崗一合畝九斗地 卜三十七卜一束  
菜四十三畝五斗地 卜十九卜三束  
    四十八畝四斗地 卜十八卜七束  
鹹八十一合田三十斗地 卜三十二卜八束  
騰七內田二十斗地 卜九卜三束  
    九田四斗地 卜二卜六束  
爲四十六田六斗地 卜五卜四束  
合畝十石地  
    田三石地  
        都合田畝十三石地  
婢桂花二所生婢賤愛年八丙午  
婢酉愛二所生奴介同伊年五己酉  
婢喜節五所生奴八尙年二十一癸巳  
婢奉愛年十七丁酉  
奴禹孫年二十五己丑  
又婢莫丹年二十七丁亥

騰垞田之地 移建龍井 瓦家與草家 不計

間數 盡爲許給次

汝矣處衿給田畝并十三石地內 五十斗地 自

明年爲始耕食是遣 十石十斗地段 待汝年

十五歲正月日推尋次

日後 若自豐川尋倫以來 則兄弟各出一石好土 [着名]

地 俾爲同居之地 而奴婢段置 亦爲各出一口以  
給事

一 汝矣區處外 家舍 後山松楸 奴婢田民 一并

汝矣兄祭位事

財主 父[着名]

此亦中 汁物中未盡區處者

汝矣兄思量分用是遣 其

中冊藏二坐段 初勿舉論次

汝矣同居從九兄 日後登科 則

汝矣衿內 拾斗地乙 出給事

건륭乾隆 58년 계축년(1793) 6월 18일 차자次子 구처기區處記

【대감에게 열자孿子 1명이 있었지만 요절하였다.】

건륭乾隆 58년 계축년 6월 18일에 작성한 차자次子 구처기區處記

생자 29번답 4두지 복수 16복 7속.

31번 합답 7두지 복수 28복 1속.

35번 합답 10두지 복수 44복 8속.

41번답 4두지 복수 13복 9속.

합 25두지.

치致자 6번 합답 9두지 복수 31복 3속.

등騰자 3번 합답 7두지 복수 25복.

4번답 9두지 복수 39복 1속, 중대거中殆去.



추秋자 42번답 12두지 복수 34복 2속.  
 성成자 33번 합답 5두지 복수 16복 3속.  
     156번답 3두지 복수 9복 8속.  
 치致자 12번답 9두지 복수 35복 4속.  
 로露자 13번 합답 8두지 복수 27복 3속.  
 결結자 13번답 4두지 복수 16복.  
 등騰자 31번답 4두지 복수 13복 9속.  
 수水자 35번답 3두지 복수 13복 4속.  
 강崗자 9번 합답 6두지 복수 25복 6속.  
 궤闕자 16번답 5두지 복수 27복 6속.  
 주珠자·칭稱자 35번 합답 7두지 복수 21복 5속.  
 여麗자 15번 합답 8두지 복수 30복 5속.  
 검劔자 28번 합답 9두지 복수 42복.  
 호号자 2번답 3두지 복수 13복.  
 주珠자 18번 합답 4두지 복수 14복 9속.  
 칭稱자 14번 합답 6두지 복수 20복 2속.  
 진珍자 7번답 3두지 복수 12복 3속.  
 과果자 54번답 9두지 복수 41복 9속.  
 출出자 42번답 6두지 복수 23복 7속.  
 로露자 12번 합답 9두지 복수 30복 5속.  
     68번 합답 5두지 복수 19복 5속.  
 양陽자 1번내답 4두지 복수 15복 8속.  
 강崗자 1번 합답 9두지 복수 37복 1속.  
 채菜자 43번답 5두지 복수 19복 3속.  
     48번답 4두지 복수 18복 7속.  
 함醢자 81번 합전 30두지 복수 32복 8속.  
 등騰자 7번내전 20두지 복수 9복 3속.  
     9번전 4두지 복수 2복 6속.  
 위爲자 46번전 6두지 복수 5복 4속.  
 합답슴畚 10석지石地, 전田 3석지, 도합都畚 전답 13석지.  
 비 계화桂花의 2소생 비 천애賤愛 나이 병오생.  
 비 유애酉愛의 2소생 노 개동이介同伊 나이 기유생.

비 희절喜節의 5소생 노 팔상八尙 나이 21세 계사생.

비 봉애奉愛 나이 17세 정유생.

노 우손禹孫 나이 25세 기축생.

또 비 막단莫丹 나이 27세 정해생.

등騰자 대전垞田의 땅에 대해서는 용정龍井에 이견移建한 와가瓦家와 초가草家は 칸 수를 헤아리지 않고 모두 허급한다.

너에게 깃급衿給한 전답의 13석지石地 내에서 50두지는 내년부터 시작하여 갈아 먹고, 10석 10두지는 너의 나이가 15세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정월에 추심推尋한다.

이후에 만약 풍천豐川에서 일가를 찾아 온 사람이 있다면 형제가 각각 1석의 좋은 땅을 내주어서 동거하는 방도로 삼게 하고, 노비도 또한 각각 1구씩 내어 줄 일이다.

1. 너에게 구처區處한 것 외의 가사家舍와 뒷산의 송추松楸, 노비와 전민은 모두 너의 형이 제위祭位로 할 일이다.

재주財主 부父

이에 집물汁物 중에서 다 구처區處하지 못한 것은 너의 형과 사랑하여 나누어 쓰고, 그중에 책장冊藏 2좌坐는 처음부터 거론하지 말라.

너의 동거하는 종형 구九가 이후에 등과登科하면 너의 몫 내에서 10두지를 내줄 일이다.

1793년 6월 18일에 유이주柳爾曹가 차자次子 술述에게 재산을 깃부한 문서이다.

논은 10석지石地(200두락), 부수는 779복 3속과 밭 3석지石地(60두락) 부수는 50복 1속으로, 도합 都合 전답 13석지와 노비 6구를 구처해주고, 용정龍井<sup>17</sup>에 이견한 와가瓦家와 초가草家を 모두 허급해 주었다. 끝에서는 종형 구九가 이후에 등과登科하면 몫에서 10두락을 내주라는 단서를 달았다.

---

17 용정(龍井)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용정마을에 해당.

## 10. 1809년 최보택崔輔澤 깃급문기衿給文記

嘉慶十四年己巳四月初四日 女婿崔輔澤處 衿給文書

右文爲衿給事 噫 人家田民區處之法 無論內外孫 在於元財主傳家之際 而汝家形勢將有失時之慮 故茲以拔例衿給爲去乎 千金之財 鬼神所知同 況近二千之財乎 以吾名存實無之勢 錢谷

之前後 逐年救急 亦不爲不多 而急境所在 不必屑屑枚舉是遣 至於今番大區處段 特以獨女之故而

可謂竭盡心力 不可無一張文字 故如是後錄出給爲去乎 從今以後 勿復作區區苟且之說 爲可龍頭坪成

字二番三斗地十一卜三束 金谷坪調陽字二番四斗地十六卜 沙灘坪出字一番五斗地廿卜三束 深坪重字十四番四斗地

十一卜 七番二斗地七卜 九萬坪菜字十三番七斗地廿五卜二束 馬鞭亭珍字十六番三斗地九卜八束 稱字五番三斗地

十一卜一束 垣內坪崗字一百一番九斗地卅八卜五束 合番貳石落只果 錢文壹千兩果 婢小代一口身乙許給印

財主 妻父 通德郎 柳德浩[着名]

筆 本生弟 幼學 喆浩[着名]

證 堂侄 幼學 永達[着名]

가경嘉慶 14년 기사년(1809) 4월 4일 사위 최보택崔輔澤 깃급衿給 문서

위 문서를 깃급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아! 집과 전민田民을 구처區處하는 법은 내외손을 막론하고 원재주元財主가 전가傳家할 즈음에 달려 있다. 네 집의 형세가 장차 때를 잃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발례拔例로 깃급한다. 천금의 재물은 귀신도 함께 아는 것인데, 하물며 2천에 가까운 재물에 있어 서랴? 나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 세가 없는 사람이다. 돈과 곡식을 전후로 해마다 구급해준 것 또한 많지 않은 것이 아니고,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은 세세하게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크게 구처區處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외동딸의 고故로 인한 것이지만 심력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 한 장의 문자가 없을 수 없다. 때문에 이와같이 후록後錄하여 출급하니, 지금 이후부터는 구구

하고 구차한 말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용두평龍頭坪<sup>18</sup>의 성成家 2번답 3두지 복수 11복 3속, 금곡평金谷坪<sup>19</sup>의 조調자·양陽자 2번답 4두지 복수 16복, 사탄평沙灘坪<sup>20</sup> 출출자 1번답 5두지 복수 20복 3속, 보평溲坪 중중자 14번답 4두지 복수 11복, 7번답 2두지 복수 7복, 구만평九萬坪<sup>21</sup>의 채菜자 13번답 7두지 복수 25복 2속, 마편정馬鞭亭<sup>22</sup>의 진珍자 16번답 3두지 복수 9복 8속, 칭稱자 5번답 3두지 11복 1속, 원내평垣內坪<sup>23</sup>의 강崗자 101번답 9두지 복수 38복 5속, 합답 2석락지石落只와 전문錢文 1000냥과 비婢 소대小代 1구를 허급한다. 인印.

재주財主 : 처부妻父 통덕랑通德郎 유덕호柳德浩

필筆 : 본생제本生弟 유학幼學 철호詰浩

증證 : 당질 유학幼學 영달永達

1809년 4월 4일에 유덕호柳德浩<sup>24</sup>가 사위 최보택崔輔澤에게 몫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건이다. 논 2석락지石落只(40두락) 부수는 150복 2속 곳과 돈 1000냥, 그리고 노비 1구를 허급해주었다. 증證은 당질 영달永達이 썼고, 필筆은 아우 철호詰浩가 잡았다.

## 11. 1815년 가사家舍·전민田民 도문기都文記

嘉慶二十年乙亥正月二十七日 家舍田民 都文記

余之身病 積年沈痼之餘 近添別症 回春難期

畧干田民 區處於嫡席子女等處爲去乎 大抵

18 용두평(龍頭坪)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를 말함.

19 금곡평(金谷坪)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를 말한 것으로 보임.

20 사탄평(沙灘坪) 구례 내지면 사탄리로, 현재는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양안마을.

21 구만평(九萬坪) 구례 토지면 구산리 구만마을을 말함.

22 마편정(馬鞭亭) 구례 내지면 마편정리로.

23 원내평(垣內坪) 구례 내지면 원내리로, 현재는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원내마을에 해당.

24 유덕호(柳德浩, 1757~1815) 호는 수분실(隨分室). 유이주의 사촌동생 유이익(柳爾翼)의 둘째 아들로, 1790년에 유이주의 양자로 입적했다.

田民 既有所受 則恣意犯手 爲人子者 窃有所不敢  
而悶其宗兄本生兄 家勢之零替 宗家納二十一斗地 本  
生家納十六斗地 女崔輔澤處二石地 其間賣用三石一  
斗地 合六石十八斗地 除出於先君傳授都文記者 孤負  
付托之意也 不肖之罪 烏可免乎 自己買如干田民 茲以  
區處爲去乎 女崔輔澤 已爲區劃於己巳四月日是遣 庶  
子女段 待其成就 男則十斗畝 女則七斗畝出給 以爲日後財  
上無言之地 幸甚

長子永億處 傳來畝二十七石十一斗地果 田九石地果 妻衿  
畝吐旨坪膽字九斗地 六斗地 雨字六斗地 調字五斗地 結字八斗  
地 字六斗地果 自己畝露字六斗地 結字拾斗地 霜字四斗地 律  
字六斗地 馘字三斗地 又三斗地 文尺坪 字七斗地果 田草字太種  
三斗地 龜村家垞竹田果 木果 傳來婢僕果 妻衿婢桂每 同婢  
一所生婢日暹 二所生奴日孫 三所生奴亥孫 四所生奴末孫 五所生奴月  
辰 六所生婢月每 婢日暹一所生奴守成 二所生婢卜禮果 自己婢  
辰丹一所生婢貴德 二所生奴豆老味 婢汝大 同婢一所生婢銀杏 二所生奴銀  
中 婢銀杏一所生婢暹伊 婢春德 同婢一所生奴出中 二所生奴有中  
婢有丹 同婢一所生奴命芑 二所生婢命暹 三所生婢命女 婢店尙一所生  
奴有卜 奴白雲婢白娘 婢青金等 妻衿自己田民乙 爲吾夫婦  
祭位印

女崔輔澤處 吐旨龍頭坪成字畝三斗地 金谷坪調陽字四斗  
地 沙灘坪出字五斗地 深坪重字六斗地 九萬坪菜字七斗地 馬鞭亭珍  
字三斗地 稱字三斗地 垣內坪崗字九斗地 合畝貳石地果 錢文壹千  
兩果 婢小垞一口身乙 已爲區處於己巳四月初四日 印

財主 父[着名]

筆 本生弟 喆浩[着名]

證 侄 永茂[着名]

내 몸의 병은 몇 년 동안 고질이 된 나머지에 근래에는 별증別症까지 더해져서 회춘을 기약하기 어렵다. 약간의 전민田民을 적서嫡庶 자녀들에게 구처區處한다. 대저 전민은 이미 받은 것이 있다면 멋대로 범수犯手(범용)하는 것은 사람의 자식된 자로는 절대로 감히 할 수 없는 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형宗兄인 본생형本生兄은 가세가 쇠잔해져서 종가宗家에 드린 21두지와 본생가本生家에 드린 16두지, 딸 최보택崔輔澤에게 준 2석지石地, 그간에 팔아서 쓴 3석 1두지, 합 6석 18두지를 선군先君께서 전수傳授해준 도문기都文記에서 제하고 낸 것은 부탁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불초不肖의 죄를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자기매득自己買得<sup>25</sup>한 약간의 전민을 이에 구처하는데, 딸 최보택崔輔澤에게는 이미 기사년 4월에 구획區劃하였다. 서자녀庶子女는 그가 성취하기를 기다렸다가 남자에게는 12두의 논을, 여자에게는 7두의 논을 출급해주어서 이후 재산에 대해서는 말이 없게 하는 것이 다행이겠다.

장자長子 영억永億 : 전래답傳來畱 27석 11두지와 전田 9석지와 처깃답妻衿畱의 토지평吐旨坪 등臚자답 9두지 6두지, 우雨자답 6두지, 조調자답 5두지, 결結자답 8두지, ○자답 6두지와 자기매득 답로露자답 6두지, 결結자답 10두지, 상霜자답 4두지, 율律자답 6두지, 함鹹자답 3두지와 또 3두지, 문척평文尺坪의 ○자답 7두지와 전田 초草자전 태종太種 3두지, 귀촌龜村 가대家垜 죽전竹田과 나무와 전래한 비복婢僕과 처깃妻衿의 비 계매桂每, 동비 1소생 비 일섬日暹, 2소생 노 일손日孫, 3소생 노 해손亥孫, 4소생 노 말손末孫, 5소생 노 월진月辰, 6소생 비 월매月每, 비 일섬日暹의 1소생 노 수성守成, 2소생 비 복례卜禮와 자기가 매득한 비 진단辰丹의 1소생 비 귀덕貴德, 2소생 노 두로미로老味, 비 여대汝大, 동비 1소생 비 은행銀杏, 2소생 노 은중銀中, 비 은행銀杏의 1소생 비 섬이暹伊, 비 춘덕春德, 동비 1소생 노 출중出中, 2소생 노 유중有中, 비 유단有丹, 동비 1소생 노 명돌命奘, 2소생 비 명섬命暹, 3소생 비 명녀命女, 비 점상店尙의 1소생 노 유복有卜, 노 백운白雲, 비 백랑白娘, 비 청금靑金 등 처깃妻衿과 자기매득한 전민田民을 우리 부부의 제위祭位로 삼는다. 인印.

딸 최보택崔輔澤 : 토지 용두평龍頭坪의 성成家 3두지, 금곡평金谷坪의 조調자양陽자 4두지, 사탄평沙灘坪의 출出자 5두지, 보평溲坪의 중중자 6두지, 구만평九萬坪의 채菜자 7두지, 마편정馬鞭亭의 진珍자 3두지, 칭稱자 3두지, 원내평垣內坪의 강崗자 9두지, 합답 2석지石地와 전문錢文 1000냥과 비婢 소대小垆 1구를 이미 기사년 4월 4일에 구처했다. 인印.

---

25 자기매득(自己買得) 자신이 댓가를 주고 산 땅. 매도자가 매도할 땅을 소유하게 된 배경을 적을 때 표현한 말 중의 하나로, 자기 때 직접 구입한 경우에 썼다.

재주財主 : 부父

필筆 : 본생제本生弟 철호喆浩

증證 : 조카 영무永茂

1815년 1월 27일에 유덕호柳德浩가 재산을 자녀에게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도문기都文記이다. 물려 받은 6석 18두락의 땅을 자신이 범용한 것을 밝히고, 딸 최보택崔輔澤에게는 이미 기사년 4월에 구획區劃하였음과 서자녀庶子女는 그가 성취하기를 기다렸다가 남자에게는 12두의 논을, 여자에게는 7두의 논을 출급해주라는 말을 먼저 하였다.

장자 영억永億의 몫으로는 전래답傳來畝 27석 11두지와 전田 9석지와 논 79두락, 밭 3두락, 합 36석 93두락과 가대家垆와 죽전竹田, 그리고 노비 26구를 주었고, 딸 최보택崔輔澤의 몫으로는 이미 논 2석지石地와 돈 1000냥, 그리고 노비 1구를 구처해주었다. 증證은 조카 영무永茂가 썼고, 필筆은 아우 철호喆浩가 잡았다.

## 12. 1815년 가사家舍·전민田民 도문기都文記

嘉慶二十年乙亥正月二十七日 家舍田民  
都文記

余之身病 積年沈痼之餘 近添別  
症 回春難期 若干田民 區處於嫡庶  
子女等處爲去乎 大抵田民 既有所受  
則恣意犯手 爲人子者 窃有所不敢 而  
悶其宗兄本生兄 家勢之零替 宗家  
納二十一斗地 本生家納十六斗地 女崔  
輔澤處 二石地 其間賣用三石一斗地  
合六石十八斗地 除出於先君傳授  
都文記者 孤負付託之意也 不肖之  
罪 烏可免乎 自己買若干田民 茲以區

處爲去乎 女崔輔澤 已爲區劃於  
己巳四月日是遣 庶子女段 待其成  
就 男則十斗畝 女則七斗畝出給 以  
爲日後財上無言之地 幸甚

長子永億處 傳來畝二十七石十一  
斗地果 田九石地果 妻衿畝 吐旨坪  
騰字九斗地 六斗地 雨字六斗地 調字  
五斗地 結字八斗地 字六斗地果 自己畝  
露字六斗地 結字十斗地 霜字四斗地  
律字六斗地 鹹字三斗地 又三斗地 文尺坪  
字七斗地果 田草字太種三斗地 龜村  
家垈 竹田果 木果 傳來婢僕果 妻  
衿婢桂每 同婢一所生婢日蟾 二所生奴  
日孫 三所生奴亥孫 四所生奴末孫 五  
所生奴月辰 六所生婢月每 婢日蟾一  
所生奴守成 二所生婢卜女果 自己婢辰  
丹一所生婢貴德 二所生奴豆老味 婢汝  
大 同婢一所生婢銀杏 二所生奴銀  
中 婢銀杏一所生婢蟾伊 婢春德  
同婢一所生奴出中 二所生奴有中 婢有  
丹 同婢一所生奴命芑 二所生婢命蟾  
三所生婢命女 婢店尙一所生奴有卜  
奴白雲 婢白娘 婢千金等 妻衿自  
己田民乙 爲吾夫婦祭位 印

女崔輔澤處 吐旨龍頭坪成字畝三  
斗地 金谷坪調陽字四斗地 沙灘坪  
出字五斗地 深坪重字六斗地 九萬坪  
菜字七斗地 馬鞭亭珍字三斗地  
稱字三斗地 垣內坪崗字九斗地 合畝  
二石地果 錢文一千兩果 婢小大一口身



乙 已爲區處於己巳四月初四日 印

財主 父

筆生弟 喆浩

證侄 永茂

가경嘉慶 20년 을해년(1815) 1월 27일 가사家畵·전민田民 도문기都文記

내 몸의 병이 몇 년 동안 고질이 된 나머지에 근래에는 별증別症까지 더해져서 회춘을 기약하기 어렵다. 그래서 약간의 전민田民을 적서嫡席 자녀들에게 구처區處하고자 한다. 대저 전민은 이미 받은 것이 있다면 멋대로 범수犯手(범용)하는 것은 사람의 자식된 자로서는 절대로 감히 할 수 없는 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형宗兄인 본생형本生兄은 가세가 쇠잔해져서 종가宗家에 드린 21두지와 본생가本生家에 드린 16두지, 딸 최보택崔輔澤에게 준 2석지石地, 그간에 팔아서 쓴 3석 1두지, 합 6석 18두지를 선군先君께서 전수傳授해준 도문기都文記에서 제하고 낸 것은 부탁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불초不肖의 죄를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매득한 약간의 전민을 이에 구처하니, 딸 최보택崔輔澤에게는 이미 기사년 4월에 구획區劃하였다. 서자녀庶子女는 그가 성취하기를 기다렸다가 남자에게는 12두의 논을, 여자에게는 7두의 논을 출급해주어서 이후 재산에 대해서는 말이 없게 하는 것이 다 행이겠다.

장자長子 영억永億 : 전래답傳來畓 27석 11두지와 전田 9석지와 처깃妻衿의 논인 토지평吐旨坪 등膳 자답 9두지 6두지, 우雨자답 6두지, 조調자답 5두지, 결結자답 8두지, ○자답 6두지와 자기가 매득한 답 露자답 6두지, 결結자답 10두지, 상霜자답 4두지, 율律자답 6두지, 함鹹자답 3두지와 또 3두지, 문척평文尺坪의 ○자답 7두지와 밭인 초루자전 태종太種 3두지, 귀촌龜村 가대家垵, 죽전竹田과 나무와 전래한 비복婢僕과 처깃妻衿의 비 계매桂每, 동비 1소생 비 일섬日暹, 2소생 노 일손日孫, 3소생 노 해손亥孫, 4소생 노 말손末孫, 5소생 노 월진月辰, 6소생 비 월매月每, 비 일섬日暹의 1소생 노 수성守成, 2소생 비 복녀卜女와 자기가 매득한 비 진단辰丹의 1소생 비 귀덕貴德, 2소생 노 두로미豆老味, 비 여대汝大, 동비 1소생 비 은행銀杏, 2소생 노 은중銀中, 비 은행銀杏의 1소생 비 섬이蟾伊, 비 춘덕春德, 동비 1소생 노 출중出中, 2소생 노 유중有中, 비 유단有丹, 동비 1소생 노 명돌命珥, 2소생 비 명섬命蟾, 3소생 비 명녀命女, 비 점상店尙의 1소생 노 유복有卜, 노 백운白雲, 비 백랑白娘, 비 천금千金 등 처깃妻衿과 자기 매득한 전민田民을 우리 부부의 제위祭位로 삼는다. 인印.

딸 최보택崔輔澤 : 토지 용두평龍頭坪의 성成家 3두지, 금곡평金谷坪의 조調자양場와 4두지, 사탄평沙灘坪의 출出자 5두지, 보평溲坪의 중중자 6두지, 구만평九萬坪의 채菜자 7두지, 마편정馬鞭亭의 진珍

자 3두지, 칭稱자 3두지, 원내평垣內坪의 강崗자 9두지, 합답 2석지石地와 전문錢文 1000냥과 비婢 소대小大 1구를 이미 기사년 4월 4일에 구처했다. 인印.

재주財主 : 부父

필筆 : 생제生弟 철호喆浩

증證 : 조카 영무永茂

1815년 1월 27일에 유덕호柳德浩가 재산을 자녀에게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도문기都文記이다. 물려 받은 6석 18두락의 땅을 자신이 범용한 것을 밝히고, 딸 최보택崔輔澤에게는 이미 기사년 4월에 구획區劃하였음과 서자녀庶子女는 그가 성취하기를 기다렸다가 남자에게는 12두락의 논을, 여자에게는 7두락의 논을 출급해주라는 말을 먼저 하였다.

장자 영억永億의 몫으로는 전래답傳來畝 27석 11두지와 전田 9석지와 논 79두락, 밭 3두락, 합 36석 93두락과 가대家垔와 죽전竹田, 그리고 노비 26구를 주었고, 딸 최보택崔輔澤의 몫으로는 이미 논 2석지石地와 돈 1000냥, 그리고 노비 1구를 구처해주었다. 증證은 조카 영무永茂가 썼고, 필筆은 아우 철호喆浩가 잡았다.

## 1. 1810년 유덕호德浩 노비명문奴婢明文

嘉慶拾伍年庚午二月初四日 幼學 柳德浩前 明文  
右明文事段 當此大歉之年 萬無資生 故不得已 要用所致 衿得傳來 婢有月二所生辰丹年四十五 婢辰丹一所生婢貴德年二十二 同婢二所生奴豆老末年十二 同婢三所生奴販金年七 四口身等乙 價折錢文參拾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本文段都文記并付 故背後交周是在果 日後子孫中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新文記一丈憑考爲臥乎乙事  
奴婢主 幼學 李基大[着名]  
證人 幼學 鄭伯亨[着名]  
筆 堂侄 幼學 李鎮漢[着名]

추록

也每一所生奴戀男 同婢二所生奴分三等 時居  
昌寧獻基或院洞 同婢戀辰 在清道鵝谷

추록

文尺面 太  
種三斗落  
只十一卜二束 明文  
奴狀草一 告目一  
婢辰丹 四口  
身 明文 二  
同封

가경 15년(1810, 순조10) 경오년 2월 4일 유학幼學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큰 흉년을 당하여 살아갈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용소치要用所致<sup>26</sup>로 깃든한 전래 비婢 유월有月的 둘째 소생 진단辰丹 나이 45세, 비婢 진단辰丹의 첫째 소생 비婢 귀덕貴德 나이 22세, 진단의 둘째 소생 노奴 두노미豆老未 나이 20세, 진단의 셋째 소생 노奴 판금販金 나이 7세, 총 4구口를 전문錢文 30냥으로 숫자대로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는 도문기에 병부되어 있으므로 뒤쪽에 효주爻周<sup>27</sup>한다. 훗날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증빙할 일이다.

노비주奴婢主 : 유학幼學 이기대李基大 [착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정백형鄭伯亨 [착명]

필筆 : 당질堂侄 유학幼學 이진한李鎭漢 [착명]

추록

아매也每의 첫째 소생 노奴 연남戀男과 동비同婢의 둘째 소생 노奴 분삼分三 등은 현재 창녕昌寧의 헌기獻基 혹은 원동院洞에 살고 있고, 동비同婢의 소생인 연진戀辰은 청도淸道の 아곡鵝谷에 살고 있다.

26 요용소치(要用所致) 긴히 쓸 데가 있어서. 조선후기 매매문기의 작성에서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말이다.

27 효주(爻周) 어떤 글의 글자를 “爻”자 모양의 부호를 그려서 지워 버리는 일. 爻去.

## 추록

문척면文尺面 태종太種 3두락지 11복 2속 명문明文과 노奴 장초狀草 1, 고목告目 1, 비婢 진단辰丹 4명의 명문明文 2개를 동봉함.

1810년 2월 4일에 이기대李基大가 요용소치로 유덕호柳德浩에게 노비 4구를 돈 30냥에 팔면서 작성한 노비 매매문서이다. 이때 매매된 노비는 전래 비인 유월의 2소생 진단과 그의 세 아들딸이다. 증인證人은 정백형鄭伯亨이 있고, 당질 이진한李鎭漢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1-1. 1815년 고두열高斗列 고목告目

告目

謹問

安爲白乎旡 伏不審 此際

生員主氣體候若何 伏慕區區 無任下誠 小人 無事服役 伏幸何達 就

恐白 下牌中俠起事 呈訴一款 可謂無事中起事也 本無流來文

跡 但以口傳以來 則日後憑考 日前手記 以訴志倍加 而何

必呈訴乎 此後更有此等之言說 當不當 在於小人之口端 果

勿深慮之地 伏望 而訴志還出送 若或不信是白去等 呈官

憑後之地 緣由詮次

告課

乙亥十二月二十五日 高斗列 告目

고목告目<sup>28</sup>

삼가 안부를 여쭙니다. 살피지 못했는데 요즈음 생원의 기체후는 어떠하신지요? 사모하는 저의

---

28 고목(告目) 신분이 낮은 사람이윗사람에게 편지를 한 것을 말함.

마음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소인은 일이 없이 지내고 있으니 이 다행을 어찌 말로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아될 것은 내려주신 배자 가운데 협기挾起<sup>29</sup>의 일로 정소呈訴를 한 일은 일 없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유래가 없는 문적文跡<sup>30</sup>입니다. 다만 입으로만 전해온 것이니, 훗날의 빙고憑考는 일전에 수기手記한 것에 소지所志를 배가하면 되는데, 하필 정소를 하는 것입니까? 이후에 다시 이러한 언설이 있다면 당부당當不當은 소인의 입에 달려있으니, 너무 심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지는 다시 보내주실 것인데, 만약 혹시라도 믿지 못하신다면 관청에 올려 후에 증빙할 일입니다. 이런 연유로 보고드립니다.

을해년(1815) 12월 25일 고두열高斗列 고목告目

을해년(1815) 12월 25일에 고두열高斗列이 생원에게 문안을 여쭙고, 협기挾起의 일로 정소呈訴를 한 일에 대해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린 내용이다.

## 1-2. 1815년 노奴 해손亥孫 소지所志

吐旨 五美洞 柳豊川宅 奴 亥孫

右謹陳所志矣段 矣宅田庄 在於文尺面九城里是如乎 該面書員輩 稱以竹田挾起 年年侵責二十餘卜 故今年則因官傳令 使之逐庫踏驗 則別無可起處 故今年則雖無橫侵是乎乃 此後書員輩如前橫侵 則必多紛紜之弊 故茲敢仰訴爲去乎 更勿橫侵之意 立旨成給事 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案前主 處分

乙亥十二月日 所志

---

29 협기(挾起) 자투리 땅을 개간하는 것을 말한다.

30 문적(文跡) 증빙이 되는 문서나 기록.

토지吐旨 오미동五美洞 유풍천택柳豐川宅 노奴 해손亥孫

삼가 소지所志를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상전택의 전장田庄이 문척면文尺面 구성리九城里에 있는데, 이 면면의 서원書員들이 죽전竹田을 헐기挾起한다고 칭하고서 해마다 먹어 들어오길 20여 복卜이나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관의 전령傳令으로 인해 곳곳마다 답험踏驗<sup>31</sup>하게 하니, 별달리 헐기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비록 횡침橫侵<sup>32</sup>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서원書員들이 여전히 횡침한다면 반드시 분운紛紜의 폐단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감히 우러러 소지를 올립니다. 다시는 횡침할 뜻이 없도록 입지立旨<sup>33</sup>를 성급成給할 일에 대해 명령을 내려주실 일입니다. 안전주案前主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을해년 12월에 소지 올림.

을해년(1815) 12월에 토지면 오미동의 유풍천택柳豐川宅 노奴 해손亥孫이가 구례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문척면의 서원書員들이 구성리에 있는 상전의 전장을 해마다 침범해 들어와서 20복이나 침탈을 당했으니, 이들이 앞으로는 횡침하는 일이 없도록 입지를 성급해달라는 내용이다.

### 1-3. 1848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二十八年戊申二月初十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昨年自己買得

馬山面舟浮坪成字伍斗

落畝卜數九卜九束廳 價折錢

文依本價參拾參兩 右前

捧上爲遣 舊文記貳張

31 답험(踏驗) 전답(田畓)의 위치·토질·작황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로 가서 조사하는 일을 의미한다.

32 횡침(橫侵) 함부로 침범함.

33 입지(立旨) 신청서 끝에 신청한 사실을 입증하는 뜻을 부기하는 관부의 증명.

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  
雜談 以此文告官下正事  
畚主 吐旨 尹察訪宅 奴 大喆  
訂筆 幼學 韓正履[著名]

추록

馬山面 舟浮坪  
成字五斗地 卜  
數九卜九束  
文券一 直土

추록

代坪直畚 三斗只十一卜三束  
下沙山直方作

도광 28년(1848, 헌종14) 무신년 2월 10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작년에 자기매득한 마산면馬山面 주부평舟浮坪에 있는 성자成字 5두락지의 답, 부수負數로는 9부 9속인 곳을 전문錢文을 본가인 30냥으로 값을 정하여 위 사람으로부터 받고, 구문기 2장과 아울러 영구히 방매放賣하니, 이후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음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토지吐旨 윤찰방댁尹察訪宅 노奴 대철大喆

증필訂筆 : 유학幼學 한정리韓正履[작명]

추록

마산면馬山面 주부평舟浮坪의 성자成字 5두락지, 부수負數 9부 9속의 문권文券 1 직토直土임.

추록

대평代坪의 직자답直字畚 3두락지 11부 3속 곳은 하사下沙의 산직山直이가 경작 중이다.

1848년 2월 10일에 토지에 사는 윤찰방댁尹察訪宅 노奴 대철大喆이가 마산면馬山面 주부평舟浮坪에

있는 성자成字답 5두락지, 부수負數로는 9부 9속인 곳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증필訂筆로 한정리韓正履가 참여하였다. 이때 매입자는 운조루의 유억柳億인 것으로 추정된다.

## 1-4. 1847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貳拾柒年丁未十二月十四日 前明文  
右明文事 傳來家垞 累年居生是如可 伏在求禮  
文尺面龜城里駒字丁 體舍四間 行廊四間 竹  
田太種三斗落只 卜數十三卜五束庫乙 價折錢  
文陸拾兩 依數捧上爲遣 新文記一丈 右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  
此文記下正事  
自筆 家垞主 幼學 張楠[着名]

### 추록

文尺面龜城里駒字 體舍四間  
行廊四間 竹田太種三斗地  
卜數十三卜五束  
道光廿七年丁未  
張楠許得  
卽今之墓  
直家

도광 27년(1847, 현종13) 정미년 12월 14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전래해온 가대家垞를 여러 해 동안 살아오다가 구례求禮 문



척면文尺面 구성리龜城里에 있는 구자정駒字丁의 체사 4칸 행랑 4칸과 죽전竹田 태종太種 3두락지, 부수負數 13복 5속을 전문錢文 6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신문기新文記 1장을 가지고 위 사람 앞에 영원히 방매한다. 이후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가대주家垞主 : 유학幼學 장남張楠[작명]

### 추록

문척면文尺面 구성리龜城里 구자駒字의 체사體舍 4칸, 행랑行廊 4칸, 죽전竹田 태종太種 3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3부 5속인 곳을 도광道光 27년 정미년에 장남張楠으로부터 얻었는데, 곧 지금의 묘지기 집이다.

1847년 12월 14일에 유학幼學 장남張楠이 구례求禮 문척면文尺面 구성리龜城里에 있는 구자駒字의 본체 4칸과 행랑 4칸, 죽전 태종 3두락지, 부수로는 13복 5속인 곳을 돈 60냥에 팔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방매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가대주인 장남이 자필로 작성하였다. 추록에는 구자駒字의 체사體舍 4칸, 행랑行廊 4칸, 죽전竹田 태종太種 3두락지 13부 5속인 곳을 1847년에 장남張楠에게 매득했는데 지금의 묘지기 집임을 기록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때 매입자는 운조루의 유억柳億인 것으로 추정된다.

## 1. 1721년 장계한張啓漢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六十年辛丑正月十四日 幼學張啓漢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以 自己買得畝 在於吐旨面  
九萬里前寶石員 伏在<sup>34</sup>重字陸斗落只 負數十  
六負五束庫乙 價折錢文伍拾陸兩 依數交易  
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四丈立旨一丈并以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子孫中雜談是去等 此文相考

---

34 원문에는 재(載)자로 잘못 기재된 것을 고쳤다.

告官卞正事

畚主 黃八引[着名]

訂人 張漢榮[着名]

筆 幼學 朴鼎泰[着名]

강희 60년(1721, 경종1) 신축년 1월 14일 유학幼學 장계한張啓韓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를 하기 위해 자기매득自己買得한 논인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 앞 보석원寶石員에 있는 중자重字<sup>35</sup> 6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6부負 5속束 곳을 전문錢文 56냥으로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sup>36</sup> 4장과 입지立旨 1장과 함께 영구히 방매하니 이후 자손 중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신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황팔인黃八引[작명]

증인訂人 : 장한영張漢榮[작명]

필筆 : 유학幼學 박정태朴鼎泰[작명]

1721년 1월 14일에 유학幼學 황팔인黃八引이 이매하기 위해 장계한張啓韓에게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 앞 보석寶石에 있는 중자重字답 6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6부負 5속束인 곳을 돈 56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은 장한영張漢榮이 썼고, 필집으로 유학幼學 박정태朴鼎泰가 참여하였다.

---

35 중자(重字) 중(重) 자호(字號). 양전시에 붙이는 전답의 구분번호로, 토지의 번호를 천자문의 차례에 따라 매긴 번호를 말함. 중자는 62번째 자호임. 양안(量案)에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서 양전의 순서에 의하여 1필지마다 천자문(千字文)의 번호 자번호(字番號)를 부여했는데 자번호는 자와 번호로서 천자문의 1자는 5결이 되면 부여했다.

36 본문기(本文記) 땅이나 집을 사고 팔 때, 그 때도 증서에 붙는 이전 소유자의 등기 권리증. 재산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넘겼는데, 이를 본문기 또는 구문기(舊文記)라고 한다.

## 2. 1707년 성인性眼 허여명문許與明文

康熙肆拾陸年丁亥二月初十日 同生弟 性眼處 許與明文  
右明文爲許與事段 矣亦年登柒十餘歲 老病交  
侵 死門不遠乙仍于 吐旨面普石坪伏在重字畚陸  
斗落只 卜數拾陸卜伍束庫 本文記一丈及立旨  
一丈等 右同生處 永永許與爲去乎 後次若有某同  
生族下及某上佐孫弟中 生謀雜談相爭之弊有  
之是去等 此文內乙用良 告官卞正事  
元財主 長兄 宝淨[着名]  
證人 通政 慈善[着名]  
證保 判司 文遠[着名]  
筆執 山人 國平[着名]

강희 46년(1707, 숙종33) 정해년 2월 10일 동생제同生弟 성인性眼에게 주는 허여명문

이 명문明文을 허여許與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 나이가 70여 세가 넘어 노병老病이 번갈아 찾아 오니 죽음이 멀지 않았으므로 토지면吐旨面 보석평普石坪에 있는 중자답重字畚 6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6부 5속인 곳을 본문기本文記 1장 및 입지立旨 1장 등과 함께 동생에게 영원히 허여하니 이후에 만약 동생同生이나 족하族下 및 어떤 손제孫弟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의 폐단을 만드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원재주元財主 : 장형長兄 보정宝淨[작명]

증인證人 : 통정通政 자선慈善[작명]

증보證保 : 판사判司 문원文遠[작명]

필집筆執 : 산인山人 국평國平[작명]

1707년 2월 10일에 장형長兄 보정宝淨이 동생제同生弟 성인性眼에게 토지면吐旨面 보석평普石坪에 있는 중자답重字畚 6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6부 5속인 곳을 허여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證人으로

통정通政 자선慈善이, 증보證保로 판사判司 문원文遠이, 필집筆執으로 산인山人 국평國平이 참여하였다.

### 3. 1642년 오만복吳萬福 토지명문土地明文

壬午年拾壹月初伍日 吳萬福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自記買得 桶深員伏在李畚  
參斗落只 負數陸負柴束庫良中 價折木綿貳拾伍  
疋以 依數交易捧上爲遣 永永矣身上爲去乎 後此某同生  
雜談爲去等 此文記內用 告官卞正事  
畚主 僧 法性[着名]  
證人 鄭應淥[着名]  
證保 金厚男  
筆執 金載平[着名]

임오년(1642) 11월 5일 오만복吳萬福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自己買得한 땅이 통보桶深에 있는데 이자답李字畚 3두락지, 부수負數로는 6부 7속인 곳을 목면木綿 25필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원히 방해하니 이후에 어떤 동생同生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기의 내용을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승僧 법성法性[작명]

증인證人 : 정응록鄭應淥[작명]

증보證保 : 김후남金厚男

필집筆執 : 김재평金載平[작명]

임오년 11월 5일에 승僧 법성法성이 오만복吳萬福에게 통보桶深에 있는 이자답李字畚 3두락지, 부수

負數 6부 7속인 곳을 목면木綿 25필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증인證人으로 정응록鄭應潑이, 증보證保로 김후남金厚男이, 필집筆執으로 김재평金載平이 참여하였다.

#### 4. 1686년 이기룡李起龍 처妻 민조이閔召史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貳拾年丙寅十一月拾捌日 李起龍 妻 閔召史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徒等貧寒所致以 外祖父衿得耕  
 食爲在 求禮縣拈旨九萬閭前 伏在是在李字  
 畝參斗落只 卜數柒卜吳萬卜帳名庫良中  
 正租全捌石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處本文  
 記壹張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此同生族類  
 中雜談爲去等 此文相考 告官卜正事  
 畝主 正兵 河仁弘[着名]  
 證參 保人 李莫立[左寸]  
 證見 保人 李近鶴[左寸]  
 筆執 正兵 裴仁龍[着名]

강희 25년(1686, 숙종12) 병인년 11월 8일 이기룡李起龍 처妻 민조이閔召史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이 빈한소치貧寒所致로 외조부外祖父가 깃득衿得하여 경식耕食한 구례현求禮縣 고지拈旨 구만려九萬閭 앞에 있는 이지답李字畝 3두락지, 부수負數로는 7복인 곳, 오만복吳萬卜의 이름으로 양안에 기재된 곳을 정조正租<sup>37</sup> 전소<sup>38</sup> 8석을 받고, 위 사람에게 본

37 정조(正租) 벼의 겉껍질을 아직 벗겨내지 않은 쌀을 말한다. '전석(全石)'이란 20두를 담은 섬이며, 15두를 담은 섬은 평석(平石)이라고 한다.

문기本文記 1장과 더불어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이나 족류族類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정병正兵<sup>39</sup> 하인홍河仁弘[착명]

증참證參 : 보인保人<sup>40</sup> 이막립李莫立[좌촌]

증견證見 : 보인保人 이근학李近鶴[좌촌]

필집筆執 : 정병正兵 배인룡裵仁龍[착명]

1686년 11월 8일에 정병正兵 하인홍河仁弘이 가난 소치로 이기룡李起龍의 처妻 민조이閔召史에게 구례현求禮縣 고지狹窄 구만려九萬閭 앞에 있는 이자답李字畓 3두락지, 부수負數 7복을 정조正租 전全 8석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참證參으로 보인保人 이막립李莫立이, 증견證見으로 보인保人 이근학李近鶴이, 필집筆執으로 정병正兵 배인룡裵仁龍이 함께 참여하였다.

## 5. 1690년 석옹釋熊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貳拾玖年庚午貳月貳拾捌日 僧釋熊處  
右明文爲臥乎事段 女矣叔父僧 自己買得畓庫  
衿得耕食爲自如可 貧寒之人切有所用之處 故  
伏在李字畓貳斗落只 負數四卜四束廳 右人處價折  
正租全拾壹石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一張  
并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某族類中雜談是  
去等 此文告官下正爲臥乎事  
畓主 女 今香[右寸]

38 전(全) 전석(全石)을 말함. 전석이란 20두를 담은 섬이며, 15두를 담은 섬은 평석(平石)이라고 한다.

39 정병(正兵) 조선시대 일반 양인이 국역부담을 위해 입속하던 병종(兵種).

40 보인(保人) 조선시대 평민 남자가 부담하던 국역(國役)의 하나. 군포·군미·군전 등을 내는 방식으로 국역을 부담하는 자.

證人 羅儀一[着名]

訂保 子僧 靈岩[着名]

筆執 俊健[着名]

강희 29년(1690, 숙종16) 경오년 2월 28일 승僧 석옹釋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숙부叔父 승僧이 자기매득한 논을 깃득衿得하여 경식耕食하다가 빈한한 사람으로서 긴히 쓸 곳이 있어서 이자답李字畓 2두락지, 부수負數로는 4부 4속인 곳을 위 사람에게 정조正租 전술 1석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어떠한 족류族類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여女 금향今香[우촌]

증인證人 : 나의일羅儀一[착명]

증보訂保 : 아들 승僧 영암靈岩[착명]

필집筆執 : 준건俊健[착명]

1690년 2월 28일에 금향今香이 긴히 쓸 곳이 있어서 승僧 석옹釋熊에게 이자답李字畓 2두락지, 부수負數로는 4부 4속인 곳을 정조正租 전술 1석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證人으로 나의일羅儀一이 썼고, 증보訂保로 승僧 영암靈岩이, 필집筆執으로 준건俊健이 참여하였다.

## 6. 1691년 장선하張善何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三十辛未年二月初七日 張善何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自己買得耕

食爲如可 勢不得已 移買以 仇萬閭前員 伏

在李字畚三斗落只 負數柒卜柒束庫乙 價折  
正租全捌石 依數交易捧上爲遣 同  
人處永永放賣爲去乎 後此同生子息族  
類等乃 雜談爲去等 此文記持遣告官  
卜正事  
畚主 閱<sup>41</sup>召吏[右寸]  
訂人 李近鶴[右寸]  
訂保 梁海水  
筆執 柳善伯[着名]

강희 30년(1691, 숙종17) 신미년 2월 7일 장선하張善何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식耕食하다가 형세가 부득이 이매移買를 위해 구만려仇萬閻 앞에 있는 이자답李字畚 3두락지, 부수負數로는 7부 7속인 곳을 정조正租 전소 8석으로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이나 자식子息, 족류族類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민조이閱召吏[우촌]

증인訂人 : 이근학李近鶴[우촌]

증보訂保 : 양해수梁海水

필집筆執 : 유선백柳善伯[착명]

1691년 2월 7일에 민조이閱召吏가 이매하기 위해 장선하張善何에게 구만려仇萬閻 앞에 있는 이자답李字畚 3두락지, 부수負數로는 7부 7속인 곳을 정조正租 전소 8석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訂人으로 이근학李近鶴이, 증보訂保로 양해수梁海水가, 필집筆執으로 유선백柳善伯이 참여하였다.

---

41 원문에는 閱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 7. 1691년 장선홍張善弘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參拾年辛未正月貳拾柒日 張善弘處 明文  
右明文臥乎事段 矣身自記買得耕食  
爲白如可 勢不得已 移買次<sup>42</sup>以 伏在李字畝  
貳斗落只 負數四卜四束庫乙 右人處價  
折四禾雌牛壹隻 正租全二石 依數交  
易捧上爲遣 本文記并 永永放賣爲  
去乎 後次良中某族類等是乃 雜談爲  
去等 文記內用告官下正爲乎事  
畝主 僧 釋能[着名]  
證人 同生 鄭三哲[着名]  
訂保 梁海水[左寸]  
筆執 柳善伯[着名]

강희 30년(1691, 숙종17) 신미 1월 27일 장선홍張善弘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식耕食하다가 형세상 부득이 이매移買를 위하여 이자답李字畝 2두락지, 부수負數 4부 4속인 곳을 위 사람에게 4살짜리 암소 1척隻과 정조正租 전소 2석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족류族類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기의 내용을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승僧 석능釋能[작명]

증인證人 : 동생同生 정삼철鄭三哲[작명]

증보訂保 : 양해수梁海水[좌촌]

필집筆執 : 유선백柳善伯[작명]

---

42 원문에는 此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1691년 1월 27일에 승僧 석능釋能이 이매하기 위해 장선홍張善弘에게 이자답李字畓 2 두락지, 부수負數 4부 4속인 곳을 4살짜리 암소 1척隻과 정조正租 전소 2석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證人으로 동생同生 정삼철鄭三哲이, 증보訂保로 양해수海水가, 필집筆執으로 유선백柳善伯이 참여하였다.

## 8. 1728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六年戊申正月初十日 幼學 李源碩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妻邊衿得畊食  
 爲如可 要用所致以 勢不得已  
 吐旨桶深員伏在李字畓二作  
 并以伍斗落只 負數十一卜五束庫  
 價折錢文四十四兩以 依數交易  
 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五  
 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  
 此良中同生子息中 幸有雜  
 談爲去等 此文記告官下正事  
 畓主 姜謂亨[着名]  
 訂人 婿 朴明山[着名]  
 證參 同姓四寸 姜碩老[着名]  
 筆執 徐宗建[着名]

옹정 6년(1728, 영조4) 무신년 1월 10일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처가쪽에서 깃들하여 경식畊食하다가 요용소치要用所致로 형세상 부득이 토지吐旨 통보桶深에 있는 이자답李字畓 2작병 5두락지, 부수負數 11부 5속을 전문錢文 44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5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

에 동생同生 자식子息 가운데 혹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강위형姜謂亨 [작명]

증인訂人 : 사위 박명산朴明山 [작명]

증참證參 : 동성 4촌同姓四寸 강석노姜碩老 [작명]

필집筆執 : 서종건徐宗建 [작명]

1728년 1월 10일에 강위형姜謂亨이 요용소치로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에게 토지吐旨 통보桶漚에 있는 이자답李字畵 2작병 5두락지, 부수負數 11부 5속인 곳을 돈 44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처가쪽에서 깃든한 곳을 본문기本文記 5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는 사위 박명산朴明山이 썼고, 증참證參으로 동성 4촌同姓四寸 강석노姜碩老가, 필집筆執으로 서종건徐宗建이 참여하였다.

## 9. 1779년 이효재李孝才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四年己亥七月十一日 李孝才處 明文

右明文事段 石谷面勿金洞 官字堡<sup>43</sup>田八刀只內 西片三刀

只庫乙 卜數一卜六束庫乙 價折錢文二兩 交易捧上爲

遣 永永放賣<sup>44</sup> 此後如有雜談 此文告 官

卜正事

田主 金致玉 [着名]

訂人 韓世鳳 [着名]

證 金世云 [着名]

筆 幼學 呂邦輔 [着名]

43 원문에는 伐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44 원문에는 仿賣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건륭 44년(1779, 정조3) 기해년 7월 11일 이효재李孝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석곡면石谷面 물금동勿金洞에 있는 관자대전官字垡田 8도락지 내에서 서쪽의 3도락지를, 부수負數는 1복 6속인 곳을 전문錢文 2냥을 받고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김치옥金致玉[작명]

증인訂人 : 한세봉韓世鳳[작명]

증證 : 김세운金世云[작명]

필筆 : 유학幼學 여방보呂邦輔[작명]

1779년 7월 11일에 김치옥金致玉이 이효재李孝才에게 석곡면石谷面 물금동勿金洞 관자대전官字垡田 8도락지 내에서 서쪽의 3도락지, 부수負數는 1복 6속인 곳을 돈 2냥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증인은 한세봉韓世鳳이 썼고, 필집으로 유학幼學 여방보呂邦輔가 참여하였다.

## 10. 1786년 노奴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壹年己巳十二月 求禮 柳龍川宅奴 業伊前 明文

右明文事段 石谷面勿金洞 官字垡田

八刀落只庫乙 草家三間乙 價折錢文六

兩 交易捧上爲遣 卜數一卜六束庫乙 右

人處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

談是去等 持此文告

官卜正事

田主 白惡只[着名]

訂人 朴小才[着名]

訂保 朴必才[着名]

筆執 幼學 許生員珩[着名]

건륭 51년(1786, 정조10) 병오년 12월 구례求禮 유용천柳龍川댁 노奴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석곡면石谷面 물금동勿金洞의 관자대전官字垡田 8두락지와 초가草家 3칸을 전문錢文 6냥을 받고, 부수負數로는 1부 6속인 곳을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백악지白惡只[착명]

증인訂人 : 박소재朴小才[착명]

증보訂保 : 박필재朴必才[착명]

필집筆執 : 유학幼學 생원生員 허후許珩[착명]

1786년 12월에 백악지白惡只가 구례求禮 유용천柳龍川댁 노奴 업이業伊에게 석곡면石谷面 물금동勿金洞에 있는 관자대전官字垡田 8두락지와 초가草家 3칸, 1부 6속인 곳을 돈 6냥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증인은 박소재朴小才가 썼고, 증보訂保로 박필재朴必才가, 필집筆執으로 생원生員 허후許珩가 참여하였다.

## 11. 1785년 노奴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乙巳八月二十七日 求禮 柳龍川宅奴 業伊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洞內累年禁養

地之矣 勢不得只 要用所致以<sup>45</sup> 石谷面勿金

洞 官字禁山太種十斗落 價折錢文拾兩乙 依

45 원문에는 路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數交易捧上 右前立旨<sup>46</sup>一丈不亡記并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某雜談是去等 此文記告  
官卞正事  
禁山主 洞長 朴必才[着名]  
洞首 韓世鳳[着名]  
證 幼學 呂芳坐[着名]  
筆 幼學 梁渭淡[着名]

건륭 50년(1785, 정조9) 을사년 8월 27일 구례求禮 유용천柳龍川댁 노부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우리 동내洞內에서 여러 해 동안 금양禁養한 땅을 형세상 부득이 요용소치로 석곡면石谷面 물금동勿金洞의 관자금산官字禁山 태종太種 10두락지를 전문錢文 10냥을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입지 1장 및 불망기不亡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금산주禁山主 : 동장洞長 박필재朴必才[작명]

동수洞首 한세봉韓世鳳[작명]

증證 : 유학幼學 여방좌呂芳坐[작명]

필筆 : 유학幼學 양위담梁渭淡[작명]

1785년 8월 27일에 동장洞長 박필재朴必才와 동수洞首 한세봉韓世鳳이 요용소치로 구례求禮 유용천柳龍川댁 노부 업이業伊에게 석곡면石谷面 물금동勿金洞 관자금산官字禁山 태종太種 10두락지를 돈 10냥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입지 1장, 불망기不亡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유학幼學 여방좌呂芳坐가 섰고, 필집으로 유학幼學 양위담梁渭淡이 참여하였다.

---

46 원문에는 指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 12. 1789년 권직형權直衡 소지所志

修理色 權直衡

右謹陳所志事段 該廳負債許多 而萬無拮据之道 自鄉中相議後 吐旨面結水爲三字畚拾斗落 因以鄉中牌旨放賣他處矣 買畚主本文記推尋是乎矣 此畚元無本文記之意 修理廳謄錄冊中 昭載是乎等以 後考次立旨成給事

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己酉四月日

官司主 處分

立旨成給

向事

初四日

官[署押]

[官印] 1

수리색修理色 권직형權直衡이 올린 소지

삼가 소지所志를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청該廳의 부채가 많으나 해결할 방도가 없어서 향중鄉中과 상의한 후에, 토지면吐旨面에 있는 결結·수水·위爲의 세 곳 답 10두락을 향중 배지牌旨에 따라 다른 곳에 방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산 답주가 본문기를 추심하려고 합니다. 이 답은 원래부터 본문기가 없었다는 뜻이 수리청 등록책 가운데 분명히 실려있으니, 후에 상고하기 위해 입지立旨를 성급成給하여 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실 일입니다. 관사주官司主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기유년(1789) 4월 일

입지를 성급해줄 일이다. 4일.

관官[서업]

기유년(1789) 4월에 수리색修理色 권직형權直衡이 구례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해청該廳의 부채가 많아 토지면에 있는 세 곳의 논 10두락지를 방매하였는데, 이것을 산 새 주인이 본문기를 달라고 하는데, 원래부터 없다는 것이 수리청 등록책자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이러한 사실을 적은 입지를 성급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구례현감은 입지를 성급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 13. 1789년 노奴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四年己酉五月初二日 柳營將宅 業伊前 明文  
右明文事段 本廳所負公債許多 而出處無路  
故鄉會班首生員主牌旨據 吐旨面伏在本廳  
畚水字三十五畚 十三卜四束庫三斗落只 及結字四十二畚  
二十卜五束 爲字畚一十一卜三束庫 兩作七斗落只 合三  
作拾斗落只庫乙 價折錢文柒拾伍兩 捧上爲  
遣 官立旨一丈 鄉中牌旨一丈并以 右處永永  
放賣爲去乎 日後或有雜談是去等 此文告  
官下正事  
畚主 自筆 修理色 權直衡[着名]  
證人 金成采[着名]  
黃聖澄[着名]

건륭 54년(1789, 정조13) 기유년 5월 2일 유영장柳營將宅 노奴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본청本廳의 공채公債가 너무 많은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향회鄉會의 반수班首와 생원生員의 패지牌旨에 따라 토지면吐旨面에 있는 본청本廳의 수자水字



35번답 13부 4속 3두락지와 결지結字 42번답 20부 5속, 그리고 위자답爲字畚 11부 3속의 양작兩作 7 두락지, 총 3작作 10두락지를 전문錢文 75냥을 받고, 관의 입지立旨 1장과 향중鄉中 패지牌旨 1장과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혹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수리색修理色 권직형權直衡[작명]

증인證人 : 김성채金成采[작명]

황성징黃聖澄[작명]

1789년 5월 2일에 수리색修理色 권직형權直衡이 본청의 부채가 많아서 유영장柳營將덕 중 업이業伊에게 토지면吐旨面에 있는 본청本廳의 수자水字 35번답 13부 4속 3두락지, 결지結字 42번답 20부 5속, 위자답爲字畚 11부 3속 양작兩作 7두락지, 총 3작作 10두락지 곳을 돈 7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입지旨 1장과 향중鄉中 패지牌旨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證人으로 김성채金成采, 황성징黃聖澄이 참여하였다.

## 14. 1789년 수리색修理色 배자牌旨

修理色處

本廳物財 已盡無餘 每

當修理之時 所用出處無路

是遣 只有三四畚土外 萬無繼

用之道 同廳畚吐旨面水字三十

五十三卜四束庫三斗落只 結字

四十二畚二十卜五束 爲字一畚十一卜三

束 合三作十斗落只庫 盡數斥

賣 存本取息以用之意 如是牌

旨 知悉舉行事

己酉二月廿六日

筆班首韓[着名]

수리색修理色에게

본청本廳의 재물이 이미 소진되어 여분이 없는데, 매양 수리할 때가 되면 소용되는 것을 낼 길이 없다. 단지 서너 곳에 있는 답을 쓰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쓸 길이 전혀 없다. 동청同廳의 답인 토지면 수자水字 35번답 13복 4속 곳 3두락지와 결자結字 42번답 20복 5속, 위자爲字 1번답 11복 3속, 합 3작 10두락지 곳을 모두 척매하고, 그 돈의 이자만을 가지고 쓸 뜻으로 이와 같이 배자牌<sup>47</sup>를 하니, 잘 알아서 거행할 일이다.

기유년(1789) 2월 26일

필筆 : 반수班首 한韓[착명]

기유년(1789) 2월 26일에 반수班首 한韓이 수리색修理色 권직형權直衡에게 내린 배자이다. 본청을 수리할 재물이 없어서 토지면에 있는 수자水字 35번답 13복 4속 곳 3두락지와 결자結字 42번답 20복 5속, 위자爲字 1번답 11복 3속, 합 3작 10두락지 곳을 모두 팔고 그 돈의 이자만을 가지고 쓰려고 하니 그리 알아서 일을 하라고 위임하였다.

## 15. 1763년 유천지柳千枝 히어명문許與明文

乾隆二十八年癸未二月十二日 長女壻柳千枝處 明文

右文爲許與事段 家夫生時 畧干田地子女等處分

衿爲有矣 其中吐旨面桶溲員伏在 李字第四十

---

47 배자[牌旨]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 권한을 위임하는 증거로 주던 공식적인 글. '패지', '패자', '배지', '배자', '비즈' 등으로 지칭되며, 주로 전답 등을 매매할 때 상전이 자신의 노비에게 해당 매매 행위를 대행시키면서 작성해 준 사례가 널리 알려졌다.

六二作畚肆斗落只 負數拾陸負伍束 文記載錄  
於燒火立案 故背爻如是成文以給爲臥乎所 日  
後良中 若有此畚庫移買之端是良置 以憑施  
行事

元財主 故鄭渭周 妻 金氏 右掌[手影]  
證 朴東紀[着名]  
筆 陳漢亨[着名]

건륭 28년(1763, 영조39) 계미년 2월 12일 장녀서長女壻 유천지柳千枝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허여許與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가부家夫께서 생전에 약간의 전지田地를 자녀들에게 분  
깃해주었다. 그중 토지면吐旨面 통보桶漚에 있는 이자李字 제 46번답 2작作 4두락지, 부수負數 11부 5  
속인 곳은 문기가 불타버린 입안立案에 실려 있으므로 뒷면에 효주하고 이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여  
허급하니, 이후에 만약 이 논을 이매移買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 문서로써 빙고하여 시행할 일이다.

원재주元財主 : 고故 정위주鄭渭周 처妻 김씨金氏[우장]

증證 : 박동기朴東紀[착명]

필筆 : 진한형陳漢亨[착명]

1763년 2월 12일에 정위주鄭渭周의 처妻 김씨金氏가 장녀서長女壻 유천지柳千枝에게 토지면吐旨面  
통보桶漚에 있는 이자李字답 4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1부 5속인 곳을 허여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해당 문기는 불타버린 입안立案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뒷면에 효주하고 새로 문서를 작성하여 준다  
고 했다. 증인으로는 박동기朴東紀가 썼고, 필집으로 진한형陳漢亨이 참여하였다.

## 16. 1769년 양수정梁水廷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三十四年己丑正月二十二日 梁水廷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妻家衿得耕食爲如可 移  
買次 吐旨面桶滌員九亭子上 伏在李字  
第四十六 二作畚肆斗落只 卜數十六卜五束庫乙  
價折錢文伍拾貳兩伍錢 捧上爲遣 右前本  
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屬  
中雜談爲去等 此文告官下正事  
畚主 柳千枝[着名]  
證 妻媪 鄭東哲[着名]  
筆 朴東紀[着名]

건륭 34년(1769, 영조45) 기축년 1월 22일 양수정梁水廷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처가妻家에서 깃들衿得하여 경식耕食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해 토지면吐旨面 통보桶滌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이자李字 제 46번답 2작二作 4두락지, 부수負數 16부 5속 곶을 전문錢文 52냥 5전을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자손子孫 족속族屬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유천지柳千枝[착명]

증證 : 처남妻媪 정동철鄭東哲[착명]

필筆 : 박동기朴東紀[착명]

1769년 1월 22일에 유천지柳千枝가 이매하기 위해 양수정梁水廷에게 토지면吐旨面 통보桶滌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이자李字답 4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6부 5속인 곶을 돈 52냥 5전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위 논문은 처가妻家에서 깃들衿得한 것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처남妻媪 정동철鄭東哲이 섰고, 필집으로 박동기朴東紀가 참여하였다.

토지면吐旨面 통보桶滌에 있는 이자답李字畚 4두락지 11부 5속인 곶은 유천지가 1763년에 정위주鄭渭周의 딸 몫으로 받은 것이다.

## 17. 1769년 한씨韓氏 인쇄印慧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三十四年己丑二月二十一日 韓氏印慧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自己是在 移買次 不得已 吐  
旨面桶深員九萬村前伏在 李字第四十六番  
肆斗落只 負數十六卜五束庫乙 價折錢文伍  
拾貳兩捧上爲遣 右處本文記并以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子孫族類中 雜談是去等  
此文告官卞正事  
畝主 梁水廷[着名]  
證 文芑山[着名]  
筆 朴東紀[着名]

건륭 34년(1769, 영조45) 기축년 2월 21일 한씨韓氏 인쇄印慧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땅을 이매移買를 위해 부득이 토지면吐旨面 통보桶深 구만촌九萬村 앞에 있는 이자李字 제 46답畝 4두락지, 부수負數 16부 5속 곳을 전문錢文 52냥을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자손子孫 족류族類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양수정梁水廷[착명]

증證 : 문돌산文芑山[착명]

필筆 : 박동기朴東紀[착명]

1769년 2월 21일에 양수정梁水廷이 이매하기 위해 한씨韓氏 인쇄印慧에게 토지면吐旨面 통보桶深 구만촌九萬村 앞에 있는 이자李字답 4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6부 5속인 곳을 돈 52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문돌산文芑山이 썼고, 필집으로 박동기朴東紀가 참여하였다.

## 18. 1772년 권수이權守伊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參拾捌年壬辰正月二十二日 權守伊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自己買得累年畊食是如可 移  
買次 不得已 求禮吐旨面桶深員九萬村前伏在  
李字第四十六畝四斗落只 負數十六卜五束庫果  
又同面堂山員伏在鹹字畝一斗落只 卜數二卜二束庫  
兩畝合作 折價段肆拾陸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本  
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族屬僧門中 雜談是去等 此  
文書持遣 告官下正事  
畝主 印慧[着名]  
訂保 設華[着名]  
筆 大日[着名]

건륭 37년(1772, 영조48)<sup>48</sup> 임진년 1월 22일 권수이權守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식畊食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하여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통보桶深 구만촌九萬村 앞에 있는 이자李字 제 46답 4두락지, 부수負數 16부 5속 곳과 동면同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畝 1두락지, 부수負數 2복 2속인 곳 양답兩畝 합작合作을 46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족속族屬 승문僧門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인혜印慧[착명]

증보訂保 : 설화設華[착명]

필筆 : 대일大日[착명]

48 건륭 38년(1773, 영조49)은 기사년이고, 임진년은 건륭 37년(1772, 영조48)이다. 임진년을 기준으로 한다.

1772년 1월 22일에 인혜印慧가 권수이權守伊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통보원桶溲員 구만촌九萬村 앞에 있는 이지李字 제 46답 4두락지 부수負數 16부 5속과 동면同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畓 1두락지 부수負數 22속의 양답兩畓 합작合作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이매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가격은 46냥이며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보訂保로 설화設華가, 필집으로 대일大日이 참여하였다.

## 19. 1784년 노奴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九年甲辰十月二十二日 柳龍川宅 業伊前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移買次以 祖上傳來耕食  
 爲如可 不得已 求禮吐旨面九萬 李字第四十六  
 畓四斗落只 負數十六負五束庫果 同面堂山  
 員鹹字畓一斗落只 負數二ト二束庫乙 價折錢文  
 八十三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并 永  
 永放賣爲去乎 日後雜談是去等 將此文記告  
 官下正事  
 畓主 權後孫[着名]  
 證 朴守根  
 證 金末乙連金[着名]  
 筆 幼學 鄭致明[着名]

건륭 49년(1784, 정조8) 갑진년 10월 22일 유용천柳龍川댁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를 위하여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아 경식耕食한 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구만九萬에 있는 이지李字답 제 46답 4두락지, 부수負數 16부 5속 곳과 동면同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畓 1두락지, 부수負數 2부 2속 곳을 전문錢文 8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

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권후손權後孫[작명]

증證 : 박수근朴守根

증證 : 김말련금金末乙連金[작명]

필筆 : 유학幼學 정치명鄭致明[작명]

1784년 10월 22일에 권權씨 후손이 이매하기 위해 유용천柳龍川댁 노 업이業伊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구만九萬에 있는 이자李字 제 46번답 4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6부 5속인 곳과 동면同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畵 1두락지, 부수負數 2복 2속인 곳을 돈 80냥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해하였다. 증인으로 박수근朴守根과 김말련금金末乙連金이 섰고, 필집으로 유학幼學 정치명鄭致明 참여하였다.

토지면 구만리 통보에 있는 이자답李字畵 4두락지 16부 5속인 곳의 소유권은 정위주鄭渭周 → 유천지柳千枝 → 양수정梁水廷 → 한씨韓氏 인혜印惠 → 권수이權守伊 → 유이주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토지면 구만리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畵 1두락지 2복 2속인 곳의 소유권은 최한명崔漢明 → 최한주崔漢柱·최한주의 노奴 예산禮山 → 백상봉白上奉 → 승僧 인혜印惠 → 권수이權守伊 → 유이주로 이동됨을 볼 수 있다.

## 20. 1765년 승僧 인혜印惠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三十年乙酉三月十七日 僧 印惠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耕食爲如可

要用所致 不得已 求禮吐旨面堂山員

伏在鹹字畵壹斗落只 卜數二負二

束庫乙 價折錢文玖兩 依數捧上爲遣 右

前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子孫族屬中雜談是去等 此文記告

官下正事



畚主 白相奉[着名]

證 金六月金[着名]

筆 朴東紀[着名]

건륭 30년(1765, 영조41) 을유년 3월 17일 승僧 인혜印惠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경식耕食하다가 긴히 쓸 곳이 있어서 부득이 한 사정으로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畓 1두락지, 부수負數 2부 2속 곳을 전 문錢文 9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자손이나 가문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백상봉白相奉[착명]

증證 : 김유월금金六月金[착명]

필筆 : 박동기朴東紀[착명]

1765년 3월 17일 백상봉白相奉이 요용소치로 승僧 인혜印惠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畓 1두락지, 부수負數 2부 2속 곳을 9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김유월금金六月金이 섰고, 필집으로 박동기朴東紀가 참여하였다.

## 21. 1757년 백상봉白上奉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二年丁丑六月二十日 白上奉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上典自己<sup>49</sup>買得畊食爲如可

牟麥還上出處無路乙仍于 勢不得已 堂山員

---

49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醜字畚一斗落只 負數二卜二束庫 價折錢文  
參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  
一丈牌字一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雜  
談是去等 此文記  
告官卞正事  
畚主 奴 禮山[着名]  
訂人 金順巖[着名]  
筆 金盛來[着名]

건륭 22년(1757, 영조33) 정축년 6월 20일 백상봉白上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상전上典이 자기매득하여 경식畊食하다가 모맥牟麥의 환자還上를 값은 방도가 없어서 형세상 부득이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醜字畚 1두락지, 부수負數 2복 2속 곳을 전문錢文 3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 패자牌字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노奴 예산禮山[착명]

증인訂人 : 김순의金順巖[착명]

필筆 : 김성래金盛來[착명]

1757년 6월 20일에 노奴 예산禮山이 상전의 환자를 값기 위해 백상봉白上奉에게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醜字畚 1두락지 2복 2속인 곳을 3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1장, 배자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은 김순의金順巖가 썼고, 필집으로 김성래金盛來가 참여하였다.

## 22. 1757년 노奴 예산禮山 배자牌子

奴 禮山處 付

無他 上典諸一家 牟麥還

上末由備納無路 當山員

鹹字畚一斗落只 負數二

卜四束庫乙 禾谷并以 某處斥賣宜

當事

丁丑六月十八日 上典崔[着名]

노奴 예산禮山에게 부침

다름이 아니라 상전의 일가가 모맥牟麥의 환자를 비납할 길이 없어서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畚 1두락지, 부수 2복 4속 곳을 화곡禾谷(곡식)과 함께 모처에 척매斥賣(방매)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정축년(1757년) 6월 18일 상전上典 최崔[착명]

1757년 6월 18일에 상전上典 최崔가 노奴 예산禮山에게 당산리에 있는 함자답鹹字畚 1두락지, 부수 2복 4속 곳을 화곡禾谷과 함께 팔라고 위임한 문서이다.

## 23. 1756년 최한주崔漢柱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一年丙子正月十七日 同姓六寸 漢柱處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sup>50</sup>買得畚 堂山員

鹹字畚七升落只 負數二卜二束庫乙 價折

錢文參兩 依數捧上爲遣 右人處永永  
放賣爲去乎 日後雜談是去等 持此  
告官下正事  
自筆 幼學畝主 崔漢明[着名]

건륭 21년(1756, 영조32) 병자년 1월 17일 동성 6촌同姓六寸 한주漢柱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곳이 있어서 자기매득한 당산堂山の 함자답鹹字畝 7승락지升落只, 부수負數 2복 2속 곳을 전문錢文 3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유학幼學 답주畝主 : 최한명崔漢明[작명]

1756년 1월 17일에 최한명崔漢明이 요용소치로 동성 6촌同姓六寸 한주漢柱에게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畝 7승락지升落只 2복 2속인 곳을 3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최한명이 자필自筆로 작성하였다.

## 24. 1764년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九年甲申四月十七日  
右明文事段 切有移買處 自己買得是在 求禮縣  
吐旨面九亭子員 奈字五十四畝十七卜六束一庫 實種  
四斗地庫乙 價折錢文五十二兩 依數捧上爲遣 本

---

50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文記并以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某同生  
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告官卞正事  
畚主 自筆 幼學 李宜松[着名]

건륭 29년(1764, 영조40) 갑신년 4월 17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이매移買를 위해 자기매득한 구례현求禮縣 토지면吐旨面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내자奈字 54번답畝 17부 6속, 실종實種 4두락지를 전문錢文 52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해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이의송李宜松[착명]

1764년 4월 17일에 유학幼學 이의송李宜松이 이매하기 위해 구례현求禮縣 토지면吐旨面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내자奈字 54번답 17부 6속 4두락지 곳을 52냥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해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이의송이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를 통해 보면 토지면吐旨面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畝 17부 6속 4두락지의 소유권은 승僧 처찰處察 → 박지화朴枝華 → 호노 가팔리.이장희李璋晦 → 이의송李宜松 → 문화유씨?로 이동됨을 볼 수 있다.

## 25. 1758년 이의송李宜松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三年戊寅十一月二十四日 幼學 李宜松前 明文  
右明文事段 切有移買<sup>51</sup>處 妻家衿得是在

---

51 원문에는 賣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吐旨面九亭員伏在 李字一夜實種肆斗只  
卜數十七卜七束庫乙 價折錢文四十四兩 依  
數奉上 右人前本文書二丈并以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子孫中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 告官卞正事  
畚主 幼學 李璋晦[着名]  
證人 幼學 李宇林  
筆執 幼學 金必鳴[着名]

건륭 23년(1758, 영조34) 무인년 11월 24일 유학幼學 이의송李宜松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이매移買를 위해 처가妻家에서 깃득衿得한 토지면吐旨面 구정九亭에 있는 이자李字답 1배미 실증實種 4두락지, 부수負數 17복 7속 곳을 전문錢文 44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서本文書 2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 자손 가운데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유학幼學 이장회李璋晦[작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이우림李宇林

필집筆執 : 유학幼學 김필명金必鳴[작명]

1758년 11월 24일에 유학幼學 이장회李璋晦가 이매하기 위해 유학幼學 이의송李宜松에게 토지면吐旨面 구정九亭에 있는 이자李字답 4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7부 7속인 곳을 44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서本文書 2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유학幼學 이우림李宇林이, 필집筆執으로 유학幼學 김필명金必鳴이 참여하였다.

## 26. 1722년 호노戶奴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陸拾正年壬寅三月初五日 戶奴 加八里處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畊食爲如  
可 要用所致 九亭員伏在奈字畚四  
斗落只 負數拾柒卜柒束庫乙 價折  
錢文四十一兩 依數捧上爲遣 本文  
記並以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  
後子孫中如有雜談 則將此文告  
官卞正事  
畚主 朴枝華[着名]  
筆執 徐尙元[着名]

강희 61년(1722, 경종2) 임인년 3월 5일 호노<sup>52</sup>戶奴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경식畊食하다가 긴히 쓸 곳이 있어서 구정九亭에 있는 내자답奈字畚 4두락지, 부수負數 17부 7속 곳을 전문錢文 41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 자손 중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박지화朴枝華[착명]

필집筆執 : 서상원徐尙元[착명]

1722년 3월 5일에 박지화朴枝華가 요용소치로 호노戶奴 가팔리加八里에게 구정九亭에 있는 내자답奈字畚 4두락지 17부 7속인 곳을 41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

---

52 호노(戶奴) 사노비 중 양반 호(戶)에 등재된 사내종을 뜻하는데, 이런 일반적 의미 외에도 양반가의 농업 경영에 참여한 간사노(幹事奴) 등의 의미로 쓰였다. 또 상전을 대신하여 소지(所志)·의송(議送)·정장(呈狀)을 올리는 사내종, 노비와 토지매매를 대행하는 사내종 역시 호노로 칭해졌다.

다. 필집筆執으로 서상원徐尙元이 참여하였다.

## 27. 1719년 박지화朴枝華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捌年己亥三月廿日 朴枝華處 明文  
右明文事段 祖上傳來 衿得畊  
食爲如可 移買次 吐旨面九亭  
員伏在奈字畚四斗落只 負數  
拾柒卜七束庫乙 價折錢文參拾  
捌兩 依數捧上爲遣 右前不  
忘記一丈並以 永永放賣爲去  
乎 日後同生子孫中 或有雜談  
則持此文 告官下正事  
畚主 自筆 僧 處察[着名]  
證 同生 金尙福[着名]

강희 58년(1719, 숙종45) 기해년 3월 20일 박지화朴枝華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조상祖上으로부터 전래한 땅을 깃득하여 경식畊食하다가 이  
때移買를 위해 토지면吐旨面 구정九亭에 있는 내자답奈字畚 4두락지, 부수負數 17부 7속을 전문錢文 38  
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불망기不忘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  
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혹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승僧 처찰處察[착명]

증證 : 동생同生 김상복金尙福[착명]



1719년 3월 20일에 승僧 처찰處察이 이매하기 위해 박지화朴枝華에게 토지면吐旨面 구정九亭에 있는 내지답奈字畓 4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7부 7속인 곳을 38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불망기不忘記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동생同生 김상복金尙福이 참여하였다.

## 28. 1718년 김해준金海准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柒年戊戌五月二十三日 金海准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身外邊衿得畓 求  
禮吐旨面捕芑員伏在 重字畓四斗落只 卜  
數十五卜五束庫乙 價折錢文五十一兩  
捧上爲遣 本文段 他田畓並付乙仍  
于 背後爻周爲遣 永永放賣爲去乎  
後次同生子孫中 幸有雜談是去等 此  
文記告官下正事  
畓主 河渭補[着名]  
訂人 河水京[着名]  
筆執 李元必[着名]

강희 57년(1718, 숙종44) 무술년 5월 23일 김해준金海准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외가쪽에서 깃득衿得한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포돌捕鬲에 있는 중지답重字畓 4두락지, 부수負數 15부 5속을 전문錢文 51냥을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 있어서 뒷면에 효주爻周하고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후시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하위부河渭補[착명]

증인訂人 : 하수경河水京[착명]

필집筆執 : 이원필李元必[착명]

1718년 5월 23일 하위부河渭浦가 김해준金海准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포돌捕鬪에 있는 중자답重字畓 4두락지 15부 5속 곳을 51냥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해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있기 때문에 뒷면에 효주한다고 하였다. 증인으로 하수경河水京이 섰고, 필집筆執으로 이원필李元必이 참여하였다.

## 29. 1713년 승僧 승묵勝默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貳年癸巳正月貳拾壹日 僧 勝默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祖上傳來 代代畊食爲如可 矣  
 年老八十之餘 遭此凶年 生資爲難乙仍于 不得不 吐旨面  
 浦坪乙員伏在 重字畓參斗落只 負數拾負肆束庫  
 價折錢文貳拾伍兩伍錢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此畓庫本文記段 當無故以 日  
 後幸有某人處見奪之弊 則其代天王峙員生字  
 畓六斗落只內 下邊參斗落只乙 代給爲乎矣 見失之其爲  
 兩土乙 論價從公論以 加給加捧爲去乎 後次某子孫  
 族屬中 若有雜談爲去等 持此文告官下正事  
 畓主 嘉善大夫 姜永老[着名]  
 證人 業武 孫以華[着名]  
 證保 通政大夫 禹尙慶  
 筆執 業武 朴俊英[着名]

강희 52년(1713, 숙종39) 기사년 1월 21일 승僧 승묵勝默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대대로 경식畊食하다가 내 나이 80여 세로 늙은 데다 이와 같은 흉년을 만나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토지면吐旨面 포평을浦坪乙에 있는 중자답重字畓 3두락지, 부수負數 10부 4속을 전문錢文 25냥

52전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한다. 이 논의 본문기本文記는 당초부터 없었으므로 이후 혹시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폐단이 발생한다면, 대신 천왕치天王峙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6두락지 내의 하변下邊 3두락지를 대신 지급하되, 견실見失한 두 곳의 땅은 공론公論에 따라 가격을 정하여 더 주고 더 받을 것이다. 이후에 자손子孫 족속族屬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가선대부嘉善大夫 강영노姜永老[작명]

증인證人 : 업무業武 손이화孫以華[작명]

증보證保 : 통정대부通政大夫 우상경禹尙慶

필집筆執 : 업무業武 박준영朴俊英[작명]

1713년 1월 21일에 가선대부嘉善大夫 강영노姜永老가 흥년을 만나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승僧 승묵勝默에게 토지면吐旨面 포평을浦坪乙에 있는 중자답重字畓 3두락지, 부수負數 10부 4속인 곳을 25냥 52전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이 논의 본문기本文記는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 침탈의 폐단이 발생한다면 대신 천왕치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6두락지 내에 하변下邊 3두락지를 대신 지급한다고 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업무業武 손이화孫以華가 섰고, 증보證保로 통정대부通政大夫 우상경, 필집筆執으로 업무業武 박준영朴俊英이 참여하였다.

### 30. 1735년 엄한필嚴漢弼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拾參年乙卯閏四月二十伍日 嚴漢弼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身自己買得 累

年畊食爲白如可 要用所致以 勢不得已

浦坪員伏在 重字畓三斗落只 負數

拾卜四束庫乙 價折錢文拾四兩以 依

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本文記一丈

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某

同生上佐俗屬之中 生謀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畚主 通政大夫 勝默[着名]  
證人 新悟[着名]  
筆執 山人 處行[着名]

용정 13년(1735, 영조11) 을묘년 윤4월 25일 엄한필嚴漢弼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 형세상 부득이 포평浦坪에 있는 중자답重字畓 3두락지, 부수負數 10부 4속 곳을 전문錢文 14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이나 친족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통정대부通政大夫 승묵勝默[착명]

증인證人 : 신오新悟[착명]

필집筆執 : 산인山人 처행處行[착명]

1735년 윤 4월 25일 통정대부通政大夫 승묵勝默이 엄한필嚴漢弼에게 포평원浦坪에 있는 중자답重字畓 3두락지 부수負數 10부 4속 곳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필요한 일이 있어 형세상 부득이 방매한다고 하였다. 가격은 전문錢文 14냥이며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신오新悟가 썼고, 필집筆執으로 산인山人 처행處行이 참여하였다.

### 31. 1733년 김조이金召吏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五十一年癸丑正月十四日 女金召吏處 明文  
右文爲事段 妻邊衿得畊食爲如可 移買次 勿金洞  
所坪員伏在 官字畓貳斗落只 卜數十一卜 庫乙  
價折錢文拾四兩五錢 依數交易捧上爲遣 本

文記段 都文書在錄乙仍于 不得出給爲遣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子孫中 雜談爲去等  
此文告官卞正事  
證人 幼學 馬重鳴[着名]  
畚主 自筆 幼學 崔鳳齊[着名]

용정 11년(1733, 영조9) 계축년 1월 14일 김조이金召吏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처가쪽으로부터 깃득하여 경식畊食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해 물금동勿金洞에 있는 관자답官字畓 2두락지, 부수負數 11복인 곳을 전문錢文 14냥 5전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도문서都文書가 실려 있어서 내어줄 수 없으며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해하니, 이후에 만약 자손子孫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증인證人 : 유학幼學 마중명馬重鳴[착명]

답주畚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최봉제崔鳳齊[착명]

1733년 1월 14일에 유학幼學 최봉제崔鳳齊가 이매하기 위해 김조이金召吏에게 물금동勿金洞에 있는 관자답官字畓 2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1복인 곳을 14냥 5전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도문서都文書가 실려 있어서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유학幼學 마중명馬重鳴이 참여하였다.

## 32. 1752년 김석지金碩只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七年壬申三月二十日 稷座上 金碩只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自己買得是在 累年耕食爲如可 移  
賣次 勢不得已 谷城石谷面勿金洞里前坪家莊伊伏

在 官字員上邊田一斗落只 畚三斗落只下邊 田畚二斗落只  
合六斗落只庫 負數二十五負庫乙 價折錢文七十兩 依數  
交易捧上 右人前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以後  
子孫族屬同生中 生謀雜談是去等 以此文記告官  
卞正事  
畚主 張元貴[着名]  
訂人 池致三[着名]  
訂保 李貴山[着名]  
筆 吳胤德[着名]

건륭 17년(1752, 영조28) 임신년 3월 20일 계좌상稷座上 김석지金碩只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自己買得하여 여러 해 동안 경식耕食하다가 이매移賣를 위해 형세상 부득이 곡성谷城 석곡면 물금동勿金洞 마을 앞의 가장이家莊伊에 있는 관자官字 상변上邊의 밭 1두락지와 논 3두락지, 하변下邊의 전답田畓 2두락지, 총 6두락지, 부수負數 25부 곳을 전문錢文 7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자손子孫 족속族屬 동생同生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장원귀張元貴[작명]

증인訂人 : 지치삼池致三[작명]

증보訂保 : 이귀산李貴山[작명]

필筆 : 오윤덕吳胤德[작명]

1752년 3월 20일에 장원귀張元貴가 이매하기 위해 계좌상稷座上 김석지金碩只에게 곡성谷城 석곡면 물금동에 있는 관자官字 상변上邊의 밭 1두락지와 논 3두락지, 하변下邊의 전답田畓 2두락지, 총 6두락지 25부인 곳을 7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지치삼池致三이 썼고, 증보訂保로 이귀산李貴山이, 필집으로 오윤덕이 참여하였다.

### 33. 1780년 공재창孔再昌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五年庚子三月初四日 幼學 孔再昌前 明文  
右明文事段 契中買得累年畊食是如可  
勢不得已 谷城面勿金洞里前坪家  
莊員 官字上邊田一斗落只 反畝三斗落  
只 下邊田畝二斗落只 合六斗落只  
負數二十五負庫乙 價折錢文六十二  
兩乙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  
記并以 右人前永永放賣爲去  
乎 日後契員中 若有雜談  
是去等 將持此文告官下  
正者  
契座上 劉寫旬[着名]  
有司 趙命金[着名]  
筆 幼學 李亨觀[着名]

건륭 45년(1780, 정조4) 경자년 3월 4일 유학幼學 공재창孔再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계중契中에서 매득買得하여 여러 해 동안 경식畊食하다가 형세상 부득이 곡성면谷城面 물금동리勿金洞里 앞의 가장家莊에 있는 관자官字 상변上邊의 밭 1두락지와 번답反畝(밭은 논으로 만든 것) 3두락지, 하변下邊의 전답田畝 2두락지, 합 6두락지, 부수負數 25부 곳을 전문錢文 62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계원契員 가운데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계좌상契座上 유도순劉寫旬[작명]

유사有司 조명금趙命金[작명]

필筆 : 유학幼學 이형관李亨觀[작명]

1780년 3월 4일에 계좌상契座上 유도순劉薦旬이 형세가 부득이하여 유학幼學 공재창孔再昌에게 곡성면谷城面 물금동리勿金洞里 가장家莊에 있는 관자官字 상변上邊의 밭 1두락지와 논 3두락지, 하변下邊의 전답田畓 2두락지, 합 6두락지, 부수負數로는 25부인 곳을 62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유사有司 조명금趙命金이 유학순과 함께 방매자로 참여하였고, 유학幼學 이형관李亨觀이 필집으로 참여하였다.

### 34. 1785년 여방좌呂邦佐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年乙巳三月十五日 女婿 呂邦佐處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是如可 移買次 伏在谷城突  
 失面勿金洞村前 官字畓六斗落只 負數二十負庫果  
 陳田十負庫乙 價折錢文七十二兩 依數捧上爲遣  
 右人處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畓并付仍于  
 不得出給爲去乎 日後如有雜言是去等 持此告官  
 卞定事  
 自筆 翁 孔道昌[着名]

건륭 50년(1785, 정조9) 을사년 3월 15일 여서女婿 여방좌呂邦佐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自己買得하여 경식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해 곡성谷城 돌실면突失面 물금동勿金洞의 관자답官字畓 6두락지, 부수負數 20부와 진진陳田 10부를 전문錢文 72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있으므로 내어줄 수 없다.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 翁翁 孔道昌[착명]



1785년 3월 15일에 공도창孔道昌이 이매하기 위해서 여서女婿 여방좌呂邦佐에게 곡성谷城 돌실면突失面 물금동勿金洞의 관자답官字畓 6두락지 부수負數 20부와 진전陳田 10부를 72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있으므로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공도창이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35. 1786년 노奴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一年丙午十一月廿日 柳龍川宅 奴 業伊處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sup>53</sup>買得是如可 移買次 伏在  
 谷城石谷勿金洞村前 官字畓六斗落只  
 負數二十卜庫果 陳田十負庫乙 價折錢  
 文伍十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并以 右  
 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  
 去等 持此文告官下正事  
 畓主 呂邦佐[着名]  
 證 金貴同[着名]  
 筆 韓世奉[着名]

건륭 51년(1786, 정조10) 병오년 11월 20일 유용천柳龍川댁 노奴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경식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해 곡성谷城 석곡石谷 물금동勿金洞의 관자답官字畓 6두락지, 부수負數 20부와 진전陳田 10부를 전문錢文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 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53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답주畵主 : 여방좌呂邦佐[작명]

증證 : 김귀동金貴同[작명]

필筆 : 한세봉韓世奉[작명]

1786년 11월 20일 여방좌呂邦佐가 유용천柳龍川 댁 노奴 업이業伊에게 곡성곡城 석곡石谷 물금동勿金洞 관자답官字畵 6두락지 부수負數 20부와 진전陳田 10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이매移買를 위해서라고 하였다. 가격은 전문錢文 50냥이며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김귀동金貴동이 필집으로 한세봉韓世奉이 참여하였다.

이상의 관련문건을 통해 살펴보면 곡성군 석곡면 물금동에 있는 관자답官字畵에 대한 소유권은 최봉제崔鳳齊 → 김조이金召吏·장원귀張元貴 → 계좌상稷座上 김석지金碩只·유도순崑旬 → 공도창孔道昌 → 여방좌呂邦佐 → 유이주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6. 1783년 노奴 선립先立 배지牌子

奴 先立處

分付是置 宅自己買得畵 移買

次 勢不得已 吐旨面三水坪果字

四十四二作并 四十一卜九束庫 拾斗

落只乙 某處準捧價納上 宜當

向事

癸卯二月二十日

上典 朴[着名]

노奴 선립先立에게

분부를 하니, 댁에서 자기매득한 답을 이매하기 위해 형세가 부득이하여 토지면吐旨面 삼수三水에

있는 과자果字 44번답 2작병 41복 9속 곳, 10두락지를 모처에 준가대로 받아 납상할 것.

계묘년(1783) 2월 20일, 상전上典 박朴[작명]

계묘년(1783) 2월 20일에 상전上典 박朴이 노奴 선립先立에게 토지면吐旨面 삼수三水에 있는 과자果字답 41복 9속 곳, 10두락지를 모처에 팔라고 위임한 문서이다.

### 37. 1783년 노奴 용남龍男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八年癸卯二月二十五日 柳龍川宅 奴 龍男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上典牌子據 吐旨面三水坪

果字實種拾斗落只 卜數四十四畝二作并

四十一卜九束庫乙 價折錢文一百六十兩 依數

捧上爲遣 右處本文記并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下正事

畝主 朴生員奴 先立[着名]

證人 申興周[着名]

筆 黃聖澄[着名]

건륭 48년(1783, 정조7) 계묘년 2월 25일 유용천柳龍川덕 노奴 용남龍男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우리 상전上典의 배자牌子에 따라 토지면吐旨面 삼수평三水坪의 과자果字답 실종實種 10두락지, 부수負數는 44번답 2작병인 41부 9속 곳을 전문錢文 16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박생원朴生員 노奴 선립先立[작명]

증인證人 : 신흥주申興周[작명]

필筆 : 황성징黃聖澄[작명]

1783년 2월 25일에 박생원朴生員 노부 선립先立이 상전의 배자에 따라 유용천柳龍川댁 노부 용남龍男에게 토지면吐旨面 삼수三水의 과자果字답 10두락지, 부수負數로는 41부 9속인 곳을 16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證人 으로 신흥주申興周가, 필집으로 황성징黃聖澄이 참여하였다.

관련문서를 통해 토지면吐旨面 삼수三수에 있는 과자果字답의 소유권은 승僧 낭식朗湜 → 김해준金海俊·김진광金振光 처妻 마조이馬召史 → 박생원朴生員 → 유이주로 이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8. 1767년 노부 선립善立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三十二年丁亥二月二十二日 朴生員奴 善立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家夫傳來畚參

水坪果字 卜數四十一負九束庫乙 累年畊

食爲如可 家夫前妻有一女息矣 不意

今者 忠靑道居李哥上典來到 故不得已 屬

身次 拾斗落只 價折錢文一百五兩 依數

交易捧上爲遣 右前本文記并以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一家中 如有雜

談是去等 將此文告官卞呈事

畚主 金振光妻馬召史[右掌]

證 朴命善[着名]

筆 女婿 尹聖國[着名]

건륭 32년(1767, 영조43) 정해년 2월 22일 박생원朴生員 노奴 선립善立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가부家夫의 전래담인 삼수參水の 과자담果字畝, 부수負數 41부 9속을 여러 해 동안 경식畊食하다가 가부家夫의 전처前妻에게 여식女息이 한 명 있는데 뜻밖에 이번에 충청도忠淸道에 사는 이기李哥 상전上典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속신屬身을 하기 위해 10두락지를 전문錢文 10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해放賣하니, 이후에 자손子孫 일가一家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김진광金振光 처妻 마조이馬召史[우장]

증證 : 박명선朴命善[작명]

필筆 : 여서女婿 윤성국尹聖國[작명]

1767년 2월 22일에 김진광金振光 처妻 마조이馬召史가 박생원朴生員 노奴 선립善立에게 삼수參水の 과자담果字畝 10두락지 부수負數 41부 9속인 곳을 105냥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해 사유는 남편의 전처前妻 딸의 속신屬身을 위해서라고 하였다. 증인으로 박명선朴命善이, 필집으로 여서女婿 윤성국尹聖國이 참여하였다.

### 39. 1729년 김해준金海俊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七年己酉正月十二日 金海俊前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身僧家流來畊食爲如  
可 移買次 不得已 吐旨面三水坪員伏在 果字  
畝拾斗落只 負數四十一卜九束庫乙 價折錢文  
玖拾陸兩伍錢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本  
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僧俗族屬  
中 生謀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者  
畝主 通政 僧 朗湜[着名]

訂人 叔僧 碧空[著名]

訂保 僧 處閑[著名]

筆執 僧 處瓊[著名]

용정 7년(1729, 영조5) 기유년 1월 12일 김해준金海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승가僧家에 유래한 땅을 경식畊食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해 부득이 하게 토지면吐旨面 삼수평三水坪에 있는 과자답果字畓 10두락지, 부수負數 41부 9속 곳을 전문錢文 96냥 5전으로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승가나 속가의 족속族屬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통정通政 승僧 낭식朗湜[작명]

증인訂人 : 숙叔 승僧 벽공碧空[작명]

증보訂保 : 승僧 처한處閑[작명]

필집筆執 : 승僧 처경處瓊[작명]

1729년 1월 12일에 통정通政 승僧 낭식朗湜이 이매하기 위해서 김해준金海俊에게 토지면吐旨面 삼수평三水坪에 있는 과자답果字畓 10두락지, 부수負數로는 41부 9속인 곳을 돈 96냥 5전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은 숙叔 승僧 벽공碧空이 썼고, 증보訂保로 승僧 처한處閑이, 필집筆執으로 승僧 처경處瓊이 참여하였다.

## 40. 1798년 수노首奴 임적壬迪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三年戊午十二月十五日 首奴 壬迪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家垆 累

年居生是如可 當此大無 公私

酬應無路 伏在文尺面龜城  
 里 駒字垵田太種壹斗落只 草  
 家三間 卜數一卜三束庫乙 上典宅  
 價折錢文四兩是遣 本文記二丈  
 并以 永永放賣納上爲去乎 日  
 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憑  
 考事  
 家垵主 婢夫 丁小男[着名]  
 筆執 金太右[着名]  
 證 徐正中[着名]

가경 3년(1798, 정조22) 무오년 12월 15일 수노首奴 임적壬迪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가대家垵에서 여러 해 동안 살다가 이처럼 큰 흉년을 당하여 공적으로 사적으로 수응酬應할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문척면文尺面 구성리龜城里에 있는 구자대전駒字垵田 태종太種 1두락지, 초가草家 3칸三間 부수負數 1부 3속 곳을 상전택에 전문錢文 4냥을 받고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여 납상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垵主 : 비부婢夫 정소남丁小男[착명]

필집筆執 : 김태우金太右[착명]

증證 : 서정중徐正中[착명]

1798년 12월 15일 비부婢夫 정소남丁小男이 수노首奴 임적壬迪에게 문척면文尺面 구성리龜城里 구자대전駒字垵田 태종太種 1두락지와 초가草家 3칸三間, 부수負數로는 1부 3속인 곳을 상전택에 4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흉년을 당해 수응酬應할 방도가 없어서라고 했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필집筆執으로 김태우金太右가 참여하였고, 증인으로 서정중徐正中이 섰다.

관련문서를 통해 보면, 구례求禮 문척면文尺面 구성리九城里에 있는 구자대전駒字垵田에 대한 소유권은 백순재白順才 → 김덕팔金德八 → 정소남丁小男 → 유덕호柳德浩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1. 1795년 정소남丁小男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陸拾年乙卯十二月初二日 丁小男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家堡 累年  
居生是如可 值此大無之年 生道爲難  
故勢不得已 伏在文尺面龜城駒字堡田  
太種一斗落只 草家三間 負數壹負  
三束庫乙 價折錢文參兩 依數交易捧上  
爲遣 右前本文記三丈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告  
官卞正事  
家堡主 自筆 金德八[着名]

건륭 60년(1795, 정조19) 을묘년 12월 2일 정소남丁小男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한 가대家堡에서 여러 해 살다가 이처럼 큰 흉년을 만나 살아갈 방도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세상 부득이 문척면文尺面 구성龜城 구자대전駒字堡田 태종太種 1두락지와 초가草家 3칸三間, 부수負數 1부 3속 곳을 전문錢文 3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 자손 가운데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堡主 : 자필自筆 김덕팔金德八[착명]

1795년 12월 2일에 김덕팔金德八이 흉년을 만나 살길이 없어서 정소남丁小男에게 문척면文尺面 구성龜城 구자대전駒字堡田 태종太種 1두락지와 초가草家 3칸三間, 부수負數로는 1부 3속인 곳을 3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김덕팔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42. 1795년 김덕팔金德八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陸拾年乙卯二月初六日 金德八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買得家  
垡 累年居生是如可 當此窮春生  
爲最難 故勢不得已 求禮文尺面九城里 駒字  
垡田太種耆斗落只 與家舍三間 負數耆卜三束  
塵 價折錢文參兩 依數交易  
捧上爲遣 右前本文記并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爲去等  
將此文告官下正事  
家垡主 自筆 白順才[着名]

건륭 60년(1795, 정조19) 을묘년 2월 6일 김덕팔金德八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낱히 쓸 곳이 있어서 자기매득한 가대家垡에서 여러 해 동안 살다가 이 춘궁기를 당하여 살아가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형세상 부득이 구례求禮 문척면文尺面 구성리九城里에 있는 구자대전駒字垡田 태종太種 1두락지와 가사家舍 3칸三間, 부수負數 1부 3속 곳을 전문錢文 3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垡主 : 자필自筆 백순재白順才[착명]

1795년 2월 6일에 백순재白順才가 춘궁기를 당하여 김덕팔金德八에게 구례求禮 문척면文尺面 구성리九城里에 있는 구자대전駒字垡田 태종太種 1두락지와 가사家舍 3칸三間, 부수負數로는 1부 3속인 곳을 3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백순재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43. 1791년 노부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六年辛亥十二月十八日 柳三水宅 奴 業伊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自己買得是在 吐旨九  
萬村後坪員 李字畚拾參斗落只 負數  
三作并伍拾壹負壹束庫乙 價折錢文貳百  
參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  
肆丈及立案壹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  
后若有雜談 則將此告官卞正事  
畚主 自筆 幼學 金光瑞[着名]  
訂 幼學 金乃規[着名]

건륭 56년(1791, 정조15) 신해년 12월 18일 유삼수柳三水댁 노부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를 위해 자기매득한 땅인 토지吐旨 구만촌九萬村 뒤에 있는 이자답李字畚 13두락지, 부수負數는 3작병 51부 1속인 곳을 전문錢文 23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4장 및 입안案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김광서金光瑞[착명]

증訂 : 유학幼學 김내규金乃規[착명]

1791년 12월 18일에 유학幼學 김광서金光瑞가 이매하기 위해 유삼수柳三水댁 노부 업이業伊에게 토지吐旨 구만촌九萬村 뒤에 있는 이자답李字畚 13두락지 51부 1속인 곳을 23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4장 및 입안案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유학幼學 김내규金乃規가 참여하였다.

관련문서를 통해서 보면, 구례군 토지면 구만리에 있는 이자답李字畚에 대한 소유권은 정백인鄭白仁 처妻 말개奎介 → 이상원李尙元 → 지귀댁智貴宅·김덕추金德秋 → 김광해金光海 → 김광서金光瑞 → 유이주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련문서로는 1787년 7월 15일에 승 채원采元이 유용천柳龍川 덕 노奴 업이業伊에게 토지면吐  
旨面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이자답李字畓 9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3두락지 11부 1속 곳을 40냥에 방매하  
면서 작성한 명문이 있는데, 이 논문은 문우덕文友德이 채원에게 방매한 것이다.

## 44. 1755년 김광서金光瑞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年乙亥六月二十七日 幼學 金光瑞處 明文

右文爲移買次 買得耕食是在 吐旨九萬

村後 李字畓拾參斗落只 負數三作并

伍拾貳負陸束庫乙 價折錢文貳百參

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右人處本文記

參丈及立案一丈并以 永爲放賣爲乎矣

今年禾穀段 本主次知是遣 日後若有

雜談是去等 將此文告官下正事

畓主 自筆 幼學 金光海[着名]

證 同生兄 幼學 金光洙[着名]

건륭 20년(1755, 영조31) 을해년 6월 27일 유학幼學 김광서金光瑞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를 위해 매득買得하여 경식耕食하던 토지면吐旨 구만  
촌九萬村 뒤의 이자답李字畓 13두락지, 부수負數 3작병 52부 6속 곳을 전문錢文 235냥으로 값을 정하  
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3장 및 입안案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 금년今年의  
회곡禾穀은 본주本主가 차지한다.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김광해金光海[착명]

증證 : 동생형同生兄 유학幼學 김광수金光洙[착명]

1755년 6월 27일에 유학幼學 김광해金光海가 이매하기 위해 김광서金光瑞에게 토지吐旨 구만촌九萬村 뒤의 이자답李字畓 13두락지 52부 6속인 곳을 23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3장 및 입안案 1장과 함께 방매하였고, 금년의 회곡은 본주가 차지하기로 했다. 별도의 필집 없이 김광해가 스스로 작성하고, 증인으로 동생형同生兄 유학幼學 김광수金光洙가 참여하였다.

## 45. 1751년 김광해金光海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拾陸年辛未二月初六日 幼學 金光海前 明文  
右明文移買次 傳來衿得耕食是在 吐旨九萬  
村後 李字畓拾參斗落只負數三作并伍拾貳卜陸  
束庫乙 價折錢文貳百參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右  
人前本文記貳丈及立案一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 則將此文下正事  
畓主 自筆 幼學 金德秋[着名]  
證 同生弟 金有秋[着名]

건륭 16년(1751, 영조27) 신미년 2월 6일 유학幼學 김광해金光海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를 위해 전래한 땅을 깃득衿得하여 경식耕食하던 토지吐旨 구만촌九萬村 뒤의 이자답李字畓 13두락지, 부수負數로 3작병 52부 6속 곳을 전문錢文 23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2장 및 입안立案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김덕추金德秋[작명]

증證 : 동생제同生弟 김유추金有秋[작명]

1751년 2월 6일에 유학幼學 김덕추金德秋가 이매하기 위해 유학幼學 김광해金光海에게 구만촌九萬

村 뒤의 이자답李字畓 13두락지 52부 6속인 곳을 23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2장 및 입안立案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동생제同生弟 김유추金有秋가 참여하였다.

## 46. 1653년 지귀댁智貴宅 토지명문土地明文

順治拾年癸巳正月初拾日 智貴宅處 明文  
右明文爲馭乎事段 矣身亦自己買得次知畊食爲  
如乎 遠處執畊爲難乙仍于 移買次以 求禮吐旨里九  
萬里伏在 李字畓種子拾參斗落只 三作并卜數肆拾捌  
負捌束庫乙 價折正木伍同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  
處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矣子息及門  
族中雜談爲去等 此文記內乙用良告官下正事  
畓主 李尙元[着名]  
訂人 李任生[着名]  
筆執 李承立[着名]

순치 10년(1653, 효종4) 기사년 1월 10일 지귀댁智貴宅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차지하고 경식畊食하다가 거리가 멀어 직접 경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매移買를 하기 위하여 구례求禮 토지吐旨 구만리九萬里에 있는 이자답李字畓 종자種子 13두락지 3작병, 부수負數 48부 8속 곳을 정목正木 5동同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자식子息이나 문족중에서 이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이상원李尙元[착명]

증인訂人 : 이임생李任生[착명]

필집筆執 : 이승립李承立[착명]

1653년 1월 10일에 이상원李尙元이 이매하기 위해서 지귀덕智貴宅에게 구례求禮 토지吐旨 구만리九萬里에 있는 이자답李字畓 13두락지 48부 8속인 곳을 정목正木 5동同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은 이임생李任生이 썼고, 필집筆執으로 이승립李承立이 참여하였다.

## 47. 1652년 이상원李尙元 토지명문土地明文

順治九年壬辰正月初拾日 李尙元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女矣子衿得陸斗落只 孫子起龍衿得柒斗  
落只等庫亦 吐旨里伏在是去乙 遠處畊食爲難乙仍于 近處移買  
次以 放賣爲乎矣 三作拾參斗落只 李字畓是在卜數肆拾捌負捌束  
庫良中 價折正木綿肆同 數依交易捧上爲遣 同人處永永  
放賣爲去乎 後次良中某人是乃相爭雜談隅有去等 此文告  
官辦正向事

畓主 鄭白仁 妻 衿介[右寸]

證人 壻 金東立[着名]

證保 孫壻 李景修[左寸]

筆執 金銀陽[着名]

순치 9년(1652, 효종3) 임진년 1월 10일 이상원李尙元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아들이 깃득衿得한 6두락지와 손자 기룡起龍이 깃득衿得한 7두락지 등이 토지吐旨에 있는데, 거리가 멀어 경작하기가 어려우므로 가까운 곳으로 이매移買를 하기 위하여 방매放賣한다. 3작作 13두락지 이자답李字畓이고, 부수負數는 48부 8속인 곳을 정목正木綿 4동同으로 숫자대로 값을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서로 다투고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발생하는 기미가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정백인鄭白仁 처妻 말개숯介[우촌]

증인證人 : 서궤 김동립金東立[작명]

증보證保 : 손서孫瑒 이경수李景修[좌촌]

필집筆執 : 김은양金銀陽[작명]

1652년 1월 10일에 정백인鄭白仁의 처妻 말개숯介가 이매하기 위해 이상원李尙元에게 이자답李字畝 13두락지 48부 8속인 곳을 정목면正木綿 4동同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13두락지 중 6두락지는 아들이 갖득한 것이고 7두락지는 손자 기룡起龍이 갖득衫得한 것이다. 증인證人으로 서궤 김동립金東立이, 증보證保로 손서孫瑒 이경수李景修가, 필집筆執으로 김은양金銀陽이 참여하였다.

## 48. 1756년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一年丙子二月二十九日 異姓五寸姪 李時華前 明文

右明文事段 當此殺年 生活無計 自己買得 累

年耕食爲如可 細草未員 伏在畝三斗落只 卜數十

一卜九束稱字庫乙 價折錢文一十八兩 依數捧上

爲遣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幸有雜談

是去等 將此下正事

畝主 自筆 幼學 鄭昇朝[着名]

건륭 21년(1756, 영조32) 병자년 2월 29일 이성 오촌질異姓五寸姪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심한 흉년을 당하여 살아갈 방도가 전무하기 때문에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한 세초미細草未에 있는 칭자답稱字畝 3두락지, 부수負數 11부 9속 곳을 전문錢文 18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정승조鄭昇朝[작명]

1756년 2월 29일에 유학幼學 정승조鄭昇朝가 흉년을 당하여 이성 오촌 조카인 이시화李時華에게 세초미細草未에 있는 칭자답稱字畝 3두락지, 부수負數 11부 9속 곳을 18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별도의 필집 없이 정승조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관련문서를 통해 보면, 구례 토지면 세초미細草未[마편정 또는 수집으로도 불림]에 있는 칭자답稱字畝에 대한 소유권은 사노寺奴 득상得祥 → 비婢 학례鶴禮·김항익金項益 → 쌍계사승僧 일행日行 → 김덕립金德立 → 김해준金海准 → 이원인李源仁·이종혁李宗赫 → 종조從祖·이원석李源碩 → 정승조鄭昇朝 → 이시화李時華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시화는 이 땅을 사위 유덕호에게 물려준 것이다.

## 49. 1752년 정승조鄭昇朝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七年壬申十一月十五日 外從弟 幼學 鄭昇朝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自己買得  
畊食爲如可 吐旨面細草未員 稱字三  
畝十一卜九束 實種三斗落庫乙 價折  
錢文二十一兩 交易捧上爲遣 右前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他田  
畝並付 故不得傳給爲去乎 日後  
如有雜談是去等 此文卞正事  
畝主 自筆 幼學 李源碩[着名]

건륭 17년(1752, 영조28) 임신년 11월 15일 외종제外從弟 유학幼學 정승조鄭昇朝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필요한 일이 있어 자기매득하여 경식畊食하던 토지면吐旨面 세초미細草未에 있는 칭자稱字 3번답 11부 9속, 실종實種 3두락지 곳을 전문錢文 21냥으로 값을 정



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있어서 내어 줄 수 없다. 이후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작명]

1752년 11월 15일에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이 요용소치로 외종제外從弟 유학幼學 정승조鄭昇朝에게 토지면吐旨面 세초미細草未에 있는 칭자稱字 3번답 11부 9속, 실종實種 3두락지 곳을 21냥에 방매하면 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있어서 내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원석이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50. 1741년 종조從祖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六年辛酉三月初九日 從祖前 明文

右明文事段 切有用處 傳來衿

得 伏在本面馬鞭亭員 稱字

十一卜九束 實種三斗落只庫乙 價

折錢文二十五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并永永放賣爲去乎

後有雜談 則此文記卞正事

畓主 自筆 從孫 幼學 李宗赫[着名]

건륭 6년(1741, 영조17) 신유년 3월 9일 종조從祖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곳이 있어서 전래 깃득衿得한 본면本面の 마편정馬鞭亭에 있는 칭자稱字 11부 9속, 실종實種 3두락지를 전문錢文 2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자필自筆 종손從孫 유학幼學 이종혁李宗赫[작명]

1741년 3월 9일 종손從孫인 유학幼學 이종혁李宗赫이 긴히 쓸 곳이 있어서 종조從祖에게 본면本面의 마편정馬鞭亭에 있는 칭자稱字 11부 9속, 3두락지를 2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돈을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였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이종혁이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51. 1717년 이원인李源仁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陸年丁酉二月貳拾玖日 幼學 李源仁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自己買得 積年畊食爲如可 要用  
所致以 勢不得已 世草味員伏在 稱字畵伍斗落只內 上邊  
參斗落只 負數十九卜內十一卜三束庫 價折錢文參拾柒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肆丈并以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良中某子孫同生中 若有雜談爲去  
等 持此文告官下正事  
畵主 金海准[着名]  
訂人 同生弟 金海日[着名]  
訂保 次弟 金准弼[着名]  
筆執 朴俊英[着名]

강희 56년(1717, 숙종43) 정유년 2월 29일 유학幼學 이원인李源仁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식畊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 형세상 부득이 세초미世草味에 있는 칭자답稱字畵 5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3두락지, 부수負數는 19부 내의 11부 3속 곳을 전문錢文 37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4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자손子孫 동생同生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김해준金海准 [작명]

증인訂人 : 동생제同生弟 김해일金海日 [작명]

증보訂保 : 차제次弟 김준필金准弼 [작명]

필집筆執 : 박준영朴俊英 [작명]

1717년 2월 29일에 김해준金海准이 요용소치로 유학幼學 이원인李源仁에게 세초미世草味에 있는 칭자답稱字畵 3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1부 3속인 곳을 37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4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동생제同生弟 김해일金海日이 썼고, 증보訂保로 차제次弟 김준필이, 필집筆執으로 박준영이 참여하였다.

## 52. 1699년 김해준金海准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參拾捌年己卯正月初六日 金海准處 明文

右成文爲臥乎事段 矣身亦貧寒所致以 券不諭▣▣

萬身不起是乎等以 得自五斗落只 累年畊食爲白如可 勢

不得已 吐旨面細草味伏在 稱字畵伍斗落只 負數貳拾壹負庫

乙 價折正租全拾柒石 三禾雄牛一隻 依數交易捧上爲

遣 右人處本文四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同生子息族屬盤我次中 更良雜談爲去等 持此文記內

乙用良相考告官卞正事

畵主 金德立[着名]

訂人 趙位京[着名]

訂保 金斗弘[着名]

筆執 金鑑重[着名]

강희 38년(1699, 숙종25) 기묘년 1월 6일 김해준金海准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빈한 소치로 뿐만 아니라 온 몸에 병이 들어 몸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매득한 5두락지를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형세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토지면吐旨面 세초미細草味에 있는 칭자답稱字畓 5두락지, 부수負數 21부인 곳을 정조正租 전소 70석石과 세 살짜리 수소 1척隻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4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식子息 족속族屬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김덕립金德立 [작명]

증인訂人 : 조위경趙位京 [작명]

증보訂保 : 김두홍金斗弘 [작명]

필집筆執 : 김일중金鎰重 [작명]

1699년 1월 6일에 김덕립金德立이 빈한 소치로 김해준金海准에게 토지면吐旨面 세초미細草味에 있는 칭자답稱字畓 5두락지, 부수負數 21부인 곳을 정조正租 전소 70석石과 세 살짜리 수소 1척隻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4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은 조위경趙位京이 썼고, 증보訂保는 김두홍金斗弘, 필집筆執은 김일중金鎰重이 함께 참여하였다.

### 53. 1697년 김덕립金德立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參拾陸丁丑四月二十九日 全羅道 求禮縣 金德立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自己<sup>54</sup>買得畊食是在 本縣吐旨面水執員  
伏在 稱字畓伍斗落只 負數貳拾正卜束庫 累年畊食爲如  
可 他道遠地乙仍于 移買次以 同人處價租全拾伍石 依數捧上

54 원문에는 記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爲遣 本文記貳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此良中同生及  
族屬上佐等是乃 雜談爲去乙等 此文記告官下正事  
畚主 慶尙道 雙溪寺 僧 日行[着名]  
證人 鄭時泰[着名]  
證保 申日生[着名]  
筆執 孔厚元[着名]

강희 36년(1697, 숙종23) 정축년 4월 29일 전라도全羅道 구례현求禮縣 김덕립金德立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식畊食하던 본현本縣 토지면吐旨面 수  
집水執에 있는 칭자답稱字畓 5두락지, 부수負數 21부 곳을 여러 해 동안 경식하다가 다른 도의 먼 곳에  
있으므로 이매移買를 위하여 위 사람에게 조租 전소 11석石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  
文記 2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이나 족속族屬들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  
다면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경상도慶尙道 쌍계사雙溪寺 승僧 일행日行[착명]

증인證人 : 정시대鄭時泰[착명]

증보證保 : 신일생申日生[착명]

필집筆執 : 공후원孔厚元[착명]

1697년 4월 29일 경상도慶尙道 쌍계사雙溪寺 승僧 일행日行이 이매하기 위해 전라도全羅道 구례현  
求禮縣의 김덕립金德立에게 본현本縣 토지면吐旨面 수집水執에 있는 칭자답稱字畓 5두락지, 부수負數  
21부 곳을 조租 전소 11석石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  
인證人으로 정시대鄭時泰가, 증보證保로 신일생申日생이, 필집筆執으로 공후원孔厚元이 참여하였다.

## 54. 1696년 승僧 일행日行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參拾伍年丙子肆月貳拾日 僧 日行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貧寒所致以 今年大無凶年 莫重田  
三稅 他条得處無路乙仍于 勢不得已 祖上傳來 衿得耕食爲如可  
水執員伏在稱字畝伍斗落只 負數貳拾壹負 束良中 價折雄  
牛壹首 價布五疋 正租全拾壹石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本文  
記 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同生姪子子孫中 雜談爲良置  
此文記內乙用良告官卞正教是事

畝主 金項益[着名]

訂人 同姓姪 金斗弘[着名]

訂保 金莫山[着名]

筆執 權希信[着名]

강희 35년(1696, 숙종22) 병자년 4월 20일 승僧 일행日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빈한소치로 올해의 큰 흉년을 만나 막중한 전 3세田三稅와 다른 항목들의 세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 형세상 부득이 조상祖上 전래한 땅을 깃득衿得하여 경식耕食하다가 수집水執에 있는 칭자답稱字畝 5두락지, 부수負數 21부 속인 곳을 숫소1수首와 포布 5필疋, 정조正租 전全 11석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질자姪子 자손 중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김항익金項益[착명]

증인訂人 : 동성질同姓姪 김두홍金斗弘[착명]

증보訂保 : 김막산金莫山[착명]

필집筆執 : 권희신權希信[착명]

1696년 4월 20일에 김항익金項益이 빈한소치로 승僧 일행日行에게 수집水執에 있는 칭자답稱字畓 5두락지, 부수負數 21부인 곳을 솟소 1수首와 포布 5필疋, 정조正租 전소 11석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은 동성질同姓姪 김두홍金斗弘이 썼고, 증보는 김막산金莫山이, 필집筆執으로 권희신權希信이 참여하였다.

## 55. 1670년 비婢 학례鶴禮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玖年庚戌參月初柒日 婢 鶴禮處 明文

右明文事段 夫婦亦寺奴婢 身貢勞不喻 受食還上米太租并

將至參拾餘石是乎矣 貧殘莫甚 數多之物積納末由仍于 迫不得已 祖上傳來畊食爲如乎

受執員伏在稱字畓拾斗落只內上邊伍斗落只 卜數二十一卜 束庫良中

價折步兵木拾疋 正租全肆石 依數交易捧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

後次同生子息族類等中 生謀雜談爲去等 持此文內告官下正

事

畓主 寺奴 得祥[着名][着名]

證人 異姓五寸叔 方貴列[左寸]

證保 異姓四寸妹夫 黃義賢

筆執 鄭應淥[着名]

강희 9년(1670, 현종11) 경술년 3월 7일 비婢 학례鶴禮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우리 부부가 사노비寺奴婢로서 신공身貢뿐 아니라 받아먹은 환자還上의 미·태·조租가 모두 장차 30여 석에 이르게 되었는데, 가난이 극심하여 많은 물건을 납부할 방도가 없는지라 절박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아 경식畊食하던 수집受執에 칭자답稱字畓 10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5두락지, 부수負數 21부 곳을 보병목步兵木 10필疋과 정조正租 전소 4石으로 값을 정하여 솟자대로 받고,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식子息 족류族類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番主 : 사노寺奴 득상得祥[작명][작명]

증인證人 : 이성 5촌숙異姓五寸叔 방귀열方貴列[左寸]

증보證保 : 이성 4촌매부異姓四寸妹夫 황의현黃義賢

필집筆執 : 정응록鄭應祿[작명]

1670년 3월 7일에 사노寺奴 득상得祥이 빈한소치로 비婢 학례鶴禮에게 수집受執에 있는 칭자답稱字 番 10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5두락지 21부 곳을 보병목步兵木 10필疇과 정조正租 전소 4石에 방해하면 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證人으로 이성 5촌숙異姓五寸叔 방귀열方貴列이 썼고, 증보證保로 이성 4촌 매부異姓四寸妹夫 황의현黃義賢, 필집筆執으로 정응록鄭應祿이 참여하였다.

## 56. 1783년 허구許侏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肆拾九年癸卯十一月初三日 幼學 許侏前 明文

右明文事段 以不得已事 石谷面上道勿金

洞家基 伏在官字 負數二卜庫乙 價折錢

文七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

去乎 日後雜談是去等 此文告

官卜定事

癸卯十一月初三日

筆執 李陽鎮[着名]

垞田主 呂方喆[着名]

訂人 呂方佐[着名]



건륭 48년(1783, 정조7)<sup>55</sup> 계묘년 11월 3일 유학幼學 허구許俵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부득이한 일로 석곡면石谷面 상도上道 물금동勿金洞 집터에 있는 관자官字 부수負數 2복인 곳을 전문錢文 7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계묘년 11월 3일

필집筆執 : 이양진李陽鎭[착명]

대전주垆田主 : 여방철呂方喆[착명]

증인訂人 : 여방좌呂方佐[착명]

1783년 11월 3일에 여방철方喆이 부득이한 일로 유학幼學 허구許俵에게 석곡면石谷面 상도上道 물금동勿金洞 집터에 있는 관자官字 부수負數 2복인 곳을 7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필집筆執으로 이양진李陽鎭이, 증인으로 여방좌呂方佐가 참여하였다. 석곡면石谷面 물금동勿金洞에 있는 관자대전官字垆田은 이효재李孝才 → 백악지白惡只 ; 여방철呂方喆 → 허구許俵로 소유권이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 57. 1781년 백악지白惡只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五年辛丑十二月初六日 白惡只處 明文

右明文事段 石谷面勿金洞 官字代田五刀只

廩 卜數一卜六束廩 價折錢文八兩 交易

捧上爲遺 永永放賣<sup>56</sup> 此後如有雜

淡是去等 告官卜正事

田主 李孝才[着名]

55 건륭 49년(1784, 정조8)은 갑진년이고, 계묘년은 건륭 48년(1783, 정조7)이다. 계묘년을 기준으로 한다.

56 원문에는 仿買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訂人 魯汗儀[着名]  
朴小才[着名]  
筆 幼學 韓世鳳[着名]

건륭 46년(1781, 정조5)<sup>57</sup> 신축년 12월 6일 백악지白惡只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석곡면石谷面 물금동勿金洞의 관자대전官字垸田 5도지, 부수負數로는 1부 6속인 곳을 전문錢文 8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이효재李孝才[작명]  
증인訂人 : 노한의魯汗儀[작명]  
박소재朴小才[작명]  
필筆 : 유학幼學 한세봉韓世鳳[작명]

1781년 12월 6일에 이효재李孝才가 백악지白惡只에게 석곡면石谷面 물금동勿金洞에 있는 관자官字대전垸田 5도락지, 부수負數로는 1부 6속인 곳을 8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증인은 노한의와 박소재가 썼고, 필집으로 유학幼學 한세봉韓世鳳이 참여하였다.

## 58. 1719년 황팔인黃八引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捌年己亥正月拾玖日 黃八引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同姓三寸僧性眼亦別得畝 在於吐旨  
面九萬里前寶石員 重字伏在畝六斗落只 負數

---

57 건륭 45년(1780, 정조4)은 경자년이고, 신축년은 건륭 46년(1781, 정조5)이다. 신축년을 기준으로 한다.

拾陸卜伍束庫乙 積年畊食爲如可 同畚主性眼亦時  
 運不幸 年前十一月十二日身死是白乎矣 元無上佐 且無他  
 族屬 矣等擔當收死葬事 而葬事需分七七齋需 納  
 備無路乙仍于 不可不此畚放賣 葬事需之物及七七日  
 齋米 借備次以 價折錢文伍拾兩以 依數交易捧上爲  
 遣 右人前本文記三丈及立旨一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遠近族類之中 若有雜談之弊是去等 將  
 此文記告官卜正事  
 畚主 韓德文[着名]  
 妻兄 曹召史[右寸]  
 公訂人 沈昌元[左寸]  
 筆執 方禹弼[着名]

강희 58년(1719, 숙종45) 기해년 1월 19일 황팔인黃八引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동성 삼촌三寸승僧인 성인性眼이 별득別得한 논인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 앞 보석寶石에 있는 중지답重字畓 6두락지, 부수負數 16부 5속 곳을 여러 해 동안 경식畊食하다가 동同 답주畚主 성인性眼이 시운時運이 불행하여 연전年前 11월 12일에 사망하였는데, 원래부터 상좌上佐나 다른 족속族屬이 없어서 우리들이 담당하여 사체의 수습과 장사葬事를 하여야 하지만, 장사에 드는 비용과 사십구재를 지내는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므로 부득이 이 논을 방매放賣하여 장사에 소용되는 물건과 사십구재에 소용되는 물자를 마련하기로 하고, 전문錢文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3장, 입지旨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원근遠近의 족류族類 중에서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한덕문韓德文[작명]

치형妻兄 曹召史[우촌]

공증인公訂人 : 심창원沈昌元[좌촌]

필집筆執 : 방우필方禹弼[작명]

1719년 1월 19일에 한덕문韓德文이 황팔인黃八引에게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 앞 보석寶石에 있

는 중자답重字畵 6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6부 5속인 곳을 5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해당 토지를 별득別得하여 경작하던 승 성인性眼이 사망 이후 장례와 사십구재를 지낼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라고 하였다. 본문기本文記 3장, 입지立旨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처형妻兄 조조이曹召史가 방매자로 함께 나섰으며 공증인公訂人으로 심창원沈昌元이, 필집筆執으로 방우필方禹弼이 참여하였다.

## 59. 1707년 정수영鄭秀永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陸年丁亥三月初陸日 鄭秀永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女矣家夫衿得畵 山亭員菜  
 字畵八斗落只庫 官訟推閱結訟之後 女矣貧  
 寒之寡女獨苦仍于 官位納吉紙錢文出處  
 無路是乎等以 勢不得已 八斗落只乙 秀永前  
 永永許給爲去乎 後次子息中雜論議之  
 事內是去等 此文記內相考告官卞事  
 畵主 鄭召吏[右掌]  
 筆 趙位京[着名]

강희 48년(1707, 숙종33) 정해년 3월 6일 정수영鄭秀永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가부家夫가 깃득衿得한 논인 산정山亭의 채자답菜字畵 8두락지를 관官에서의 송사로 추열推閱(죄인을 심문함)을 받아 송사가 마무리 된 후로, 내가 빈한한 과녀寡女로 외롭고 고단한 처지에 관위官位에게 납부할 길지吉紙와 전문錢文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형세상 부득이 8두락지를 수영秀永에게 영원히 허급許給하니, 이후에 자식 중에서 다른 논의를 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 내용을 살피어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정조이鄭召吏[우장]

필筆 : 조위경趙位京[착명]

1707년 3월 6일에 정조이鄭召吏가 정수영鄭秀永에게 산정山亭에 있는 채지답菜字畓 8두락지를 허급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허급 사유는 관에서의 송사에서 심문을 받고 낙송한 후 소비한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라고 하였다. 조위경趙位京이 필집으로 참여하였다.

## 60. 1666년 정지훈鄭之勳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年丙午二月初十日 鄭之勳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奴矣身上典牌字導良 有  
要用所致以 求禮縣東面九萬里山亭下 菜字伏在  
畓拾伍斗落只 負數陸拾玖卜五束 貳作畓肆卜 參作  
畓拾參卜陸束 肆作畓捌卜陸束庫乙 價折大雄牛肆  
隻以 依數交易捧上爲遣 牌字粘付 右人處永永放  
賣爲去乎 後此更生某計雜談之弊爲良置 只此文  
相考告官下正爲臥乎事  
畓主 奴 忠立[左寸]  
證人 趙連世[左寸]  
證保 姜永老[着名]  
筆執 金應善[着名]

### 牌子

奴忠立  
無他故 奴應清記上爲有在山  
亭木菜畓十五斗落只庫乙 有切  
用之地爲置 牌字導良 放賣 價  
本一一捧上來納向事  
丙午正月三十日  
上典尹[着名]

강희 5년(1666, 현종7) 병오년 2월 10일 정지훈鄭之勳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노奴인 내가 상전上典의 패자牌字에 따라 필요한 일이 있어 구례현求禮縣 동면東面 구만리九萬里 산정山亭에 있는 채자답菜字畓 15두락지, 부수負數 69복 5속과 2작답 4복, 3작답 13복 6속, 4작답 8복 6속 곳을 큰 수소 4척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패자牌字를 점련해 붙여서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후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내용을 살피어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노奴 충립忠立[좌촌]

증인證人 : 조연세趙連世[좌촌]

증보證保 : 강영로姜永老[작명]

필집筆執 : 김응선金應善[작명]

### 배자

노奴 충립忠立에게

다른 일이 아니다. 노奴 응청應淸의 이름으로 된 땅인 산정목山亭木에 있는 채菜자답 5두락지 곳을 낱히 써야 될 처지에 있으니, 배자에 따라 방매하고 본값은 일일이 받아서 들일 일이다.

병오년 정월 30일에 상전 윤尹[작명]

1666년 2월 10일에 노奴 충립忠立이 상전의 배자에 따라 정지훈鄭之勳에게 구례현求禮縣 동면東面 구만리九萬里 산정山亭에 있는 채자답菜字畓 15두락지, 부수負數 69부 5속과 2작답 4부, 3작답 13부 6속, 4작답 8부 6속을 큰 수소 4척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證人에 조연세趙連世가 썼고, 증보證保에 강영로姜永老, 필집筆執으로 김응선金應善이 참여하였다. 이어서 배자가 점련되어 있다. 상전 윤씨가 노비 충립에게 채자답을 팔라고 위임한 배자이다.

## 61. 1721년 노奴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陸拾年辛丑十二月拾捌日 李生員宅奴 加八里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身要用所致以 長兄秀命  
 妻鄭召史前買得 吐旨山亭員伏在菜字拾壹  
 畝拾參負肆束 十二畝拾負捌束 陸夜伍斗落只  
 庫乙 價折錢文捌拾兩 依數捧上爲遣 本文  
 記貳丈 牌字壹丈 決立案貳丈 移文壹丈并以 右人  
 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同生子孫中亦有  
 雜談是去等 此文告官下正事是乎旆 同畝付錄  
 文記段 他田畝並付乙仍于 不爲出給事  
 畝主 鄭秀永[着名]  
 證人 姪子 鄭乞伊[着名]  
 證保 姪子 鄭加并伊[着名]  
 筆執 同姓六寸 鄭時泰[着名]

강희 60년(1721, 경종1) 신축년 12월 18일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긴히 쓸 곳이 있어서 장형長兄 수명秀命의 처妻 정조이鄭召史에게서 매득買得한 토지吐旨 산정山亭에 있는 채자菜字 11번답 13부 4속, 12번답 10부 8속, 6배미夜味 5두락지를 전문錢文 8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2장, 패자牌字 1장, 결송입안決訟立案 2장, 이문移文 1장과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대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중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동 답畝이 부록付錄된 문기文記는 다른 전답田畝이 함께 붙어있어서 내어줄 수 없다.

답주畝主 : 정수영鄭秀永[작명]

증인證人 : 질자姪子 정걸이鄭乞伊[작명]

증보證保 : 질자姪子 정가병이鄭加并伊[작명]

필집筆執 : 동성 6촌同姓六寸 정시태鄭時泰[작명]

1721년 12월 18일에 정수영鄭秀永이 요용소치로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토지吐旨 산정山亭에 있는 채자菜字 11번답 13부 4속, 12번답 10부 8속, 6배미夜味 5두락지를 80냥에 방대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해당 토지는 장형長兄인 수명秀命의 처妻 정조이鄭召史에게서 매득買得한 것이다. 동 답畝이 부록付錄된 문기文記는 다른 전답田畝이 함께 붙어있어서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증

인證人으로 조카 정걸이鄭乞伊, 증보證保로 조카 정가병이鄭加并伊, 필집筆執으로 6촌 정시태鄭時泰가 참여하였다.

## 62. 1759년 이의송李宜松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四年己卯正月十六日 幼學 李宜松前 明文  
右明文爲臥事段 移買次 祀位吐旨面伏在菜字  
畝實種柒斗落只 卜數四作并卅卜七束庫乙 價  
折錢文捌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本文  
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  
是去等 將此文下正事  
畝主 自筆 出身 李時華[着名]

건륭 24년(1759, 영조35) 기묘년 1월 16일 유학幼學 이의송李宜松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를 위해 사위祀位인 토지면吐旨面に 있는 채자답菜字畝 실종實種 7두락지, 부수負數 4작병 30부 7속 곳을 전문錢文 8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출신出身<sup>58</sup> 이시화李時華[작명]

1759년 1월 16일에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가 이매하기 위해 유학幼學 이의송李宜松에게 토지면吐旨面 채자답菜字畝 7두락지, 부수負數로는 30부 7속인 곳을 8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

---

58 출신(出身) 무과 시험에 합격하고도 벼슬을 얻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이시화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63. 1764년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九年甲申四月十九日 出身 李時華前 明文  
右明文事段 切有移買處 自己買得是在 求禮縣  
吐旨面自川員 菜字十畝七卜四束 十一畝十三卜八束 十二畝十卜五束  
庫 實種六斗地 價折錢九十六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并以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某  
同生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告官  
卜正事  
畝主 自筆 幼學 李宜松[着名]

건륭 29년(1764, 영조40) 갑신년 4월 19일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필요한 일이 있어 이매移買를 위해 자기매득한 구례현求禮縣 토지면吐旨面 자천自川에 있는 채자菜字 10번답畝 7부 4속, 11번답 13부 8속, 12번답 10부 5속, 실종實種 6두락지를 전문錢文 96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중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이의송李宜松[작명]

1764년 4월 19일에 유학幼學 이의송李宜松이 이매하기 위해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구례현求禮縣 토지면吐旨面 자천自川에 있는 채자菜字 10번답 7부 4속, 11번답 13부 8속, 12번답 10부 5속, 6두락지를 96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문서는 답주 이의송李宜松이 자필로 작성하였다.

## 64. 1699년 정사길鄭士吉 허여명문許與明文

康熙參拾捌年己卯二月二十二日 同姓四寸兄 鄭士吉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徒等同姓四寸之間 彼此文記相  
爭 公私不和乙仍于 彼此文記及所付遺漏田畝 自此以  
後不爲相爭爲遺 其中菜字畝六十九卜五束 二作  
畝四卜等庫 十三斗落只內上邊柴斗落只 負數卅四卜果  
二作畝四卜四束 私和許給爲去乎 此後良中族屬中  
如有雜談爲去等 此文記告官卞定事  
畝主 五寸 姪子 鄭秀命[着名]  
證人 金信命[着名]  
證保 同姓四寸 鄭順明  
筆執 鄭東湜[着名]

강희 38년(1699, 숙종25) 기묘년 2월 22일 동성同姓 사촌형四寸兄 정사길鄭士吉에게 주는 허여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동성同姓 사촌지간으로서 서로 문기文記로 분쟁하  
여 공사公私간에 불화하였다. 피차의 문기文記과 붙여진 유루전답遺漏田畝에 대해서는 이후로는 서로  
분쟁하지 않기로 하고, 그중 채자답菜字畝 69부 5속, 2작답作畝 4부 등 곳과 13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7두락지, 부수 34부와 2작답作畝 4부 4속에 대해 화해하여 허급許給하니, 이후 족속族屬 중에서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5촌五寸 조카 정수명鄭秀命[작명]

증인證人 : 김신명金信命[작명]

증보證保 : 동성同姓 4촌四寸 정순명鄭順明

필집筆執 : 정동식鄭東湜[작명]

1699년 2월 22일에 5촌 조카 정수명鄭秀命이 사촌형 정사길鄭士吉에게 채자답菜字畝 69부 5속, 2  
작답作畝 4부, 13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7두락지, 부수 34부와 2작답作畝 4부 4속을 허급許給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허급 사유는 동성同姓 사촌지간으로서 피차의 문기文記를 가지고 상쟁하였는데, 이 후로는 서로 분쟁하지 않고 화해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증인證人은 김신명金信命이 썼고, 증보證保에는 동성同姓 4촌四寸 정순명鄭順明이, 필집筆執에는 정동식鄭東湜이 함께 참여하였다. 정수명이 5촌 조카가 되면 정사길은 5촌숙이 되어야하는데 사촌형이라고 한 것을 보면 답주는 정수명의 아버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65. 1672년 정사길鄭士吉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拾壹年壬子正月貳拾捌日 鄭士吉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女矣身貧殘之人以 新舊田稅等 一時刻督 他  
 条出處無路乙仍于 勢不得已 祖上傳來衿得爲在 山亭員伏在  
 太種貳斗落只 卜數捌負陸束庫良中 價折五升布貳疋 正租伍  
 石等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亦中永永放賣爲去乎 如有後日  
 某子息等中雜談是去等 將此文記相考告官下正事

田主 故 金義平 妻 方召史[右寸]

證人 長子 金仁伯[着名]

證保 徐德立[着名]

筆執 李弘益[着名]

강희 11년(1672, 현종13) 임자년 1월 28일 정사길鄭士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서 신규新舊의 전세田稅 등을 일시에 급히 독촉당하고 다른 조목도 마련해낼 방법이 없어서 형세상 부득이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인 산정山亭에 있는 태종太種 2두락지, 부수負數 8부 6속 곳을 5승포升布 2필疋과 정조正租 5석石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만약 이후에 자식들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살피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고故 김의평金義平 처妻 방조이方召史[우촌]

증인證人 : 장자長子 김인백金仁伯[작명]

증보證保 : 서덕립徐德立[작명]

필집筆執 : 이홍익李弘益[작명]

1672년 1월 28일에 고故 김의평金義平 처妻 방조이方召史가 정사길鄭士吉에게 산정山亭에 있는 태종太種 2두락지, 부수負數 8부 6속인 곳을 5승포升布 2필疋과 정조正租 5석石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신구新舊의 전세田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장자長子 김인백이 섰고, 증보證保로 서덕립徐德立이, 필집筆執으로 이홍익李弘益이 참여하였다.

## 66. 1789년 노奴 용남龍男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四年己酉五月十五日 柳府使道宅奴 龍男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自己<sup>59</sup>買得畓 累年畊食  
是如可 移買次 求禮吐旨面九萬里堂山坪員伏在  
鹹字畓柒斗落只 卜數二十七卜七束 同字畓四斗落  
只 卜數十二卜四束 合畓拾壹斗落只 合卜四十卜一束庫乙  
價折錢文壹百兩 依數交捧上爲遣 右處本文  
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  
去等 將此文記告官下呈事  
畓主 嘉善大夫 黃秋成[着名]  
證筆 黃聖澄[着名]

---

59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된 것을 고쳤다.

건륭 54년(1789, 정조13) 기유년 5월 15일 유부사柳府使댁 노奴 용남龍男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해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 당산평堂山坪에 있는 함자답醜字畓 7두락지, 부수負數 27부 7속과 동자답同字畓 4두락지, 부수負數 12부 4속, 합 11두락지 40부 1속 곳을 전문錢文 10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가선대부嘉善大夫 황추성黃秋成[착명]

증인證人 : 황성징黃聖澄[착명]

1789년 5월 15일에 가선대부嘉善大夫 황추성黃秋成이 이매하기 위해 유부사柳府使댁 노奴 용남龍男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 당산평堂山坪에 있는 함자답醜字畓 7두락지, 부수負數 27부 7속과 동자답同字畓 4두락지, 부수負數 12부 4속, 합 11두락지 40부 1속인 곳을 10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證人으로 황성징黃聖澄이 참여하였다.

관련문서를 통해 보면,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醜字畓의 소유권은 김후복金厚朴 → 김일용金日龍 → 이인종李仁宗·정조이鄭召吏 → 이덕창李德唱·이수원李水元 → 김순래金順萊·석명선釋明善 → 연곡사중燕谷寺中·승僧 숙충淑聰 → 이수백李水白·절의 삼강三綱 → 최생원崔生員댁 → 이원세李元世·이덕삼李德三 → 승僧 채원采元·황추성黃秋成 → 유이주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부수는 차이가 있다. 한편 서시찬徐時贊 → 이생원李生員댁으로 소유권이 이동되기도 하였다.

## 67. 1783년 승僧 채원采元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八年癸卯三月十五日 嘉善大夫 僧 采元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父主生時 自己<sup>60</sup>買得畓 累年耕食  
是如可 家運不幸 矣父身死之後 初喪及葬事  
時 喪債難堪乙仍于 勢不得已 求禮吐旨面堂山坪

員伏在鹹字畚一百廿八內 東邊下畚十九卜一束 五夜味  
 四斗落只庫果 又東邊中間 同字畚一百廿九 五負九束 長  
 一夜三斗落只 兩作并以 合畚實種柒斗落只 卜數合  
 廿五負庫乙 價折錢文壹百肆拾兩 依數交易捧上  
 爲遣 右前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某同  
 生子孫中 若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用告官下正事  
 畚主 李德三[着名]  
 證 嘉善大夫 李信迪[着名]  
 筆執 黃聖澄[着名]

건륭 48년(1783, 정조7) 계묘년 3월 15일 가선대부嘉善大夫 승僧 채원采元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부주父主께서 살아 계실 때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  
 식耕食하다가 가운家運이 불행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초상初喪과 장사葬事로 생긴 빚을 감당하  
 지 못하게 되었다. 형세상 부득이 하여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당산평당山坪에 있는 함자답鹹字畚 128  
 번의 동변東邊 하답下畚 19부 1속, 5배미夜味 4두락지와 동변東邊 중간의 동자답同字畚 129번 5부 9속,  
 1배미夜味 3두락지, 두 곳 실종實種 7두락지, 부수負數 합 25부 곳을 전문錢文 14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이덕삼李德三[착명]

증證 :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신적李信迪[착명]

필집筆執 : 황성징黃聖澄[착명]

1783년 3월 15일에 이덕삼李德三이 가선대부嘉善大夫 승僧 채원采元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당  
 산평당山坪에 있는 함자답鹹字畚 128번과 129번의 7두락지, 부수負數로는 25부인 곳을 140냥에 방매  
 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초상初喪과 장사葬事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신적李信迪이, 필

60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된 것을 고쳤다.

집筆執으로 황성징黃聖澄이 참여하였다.

## 68. 1763년 이원세李元世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八年癸未正月十九日 李元世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上典自己<sup>61</sup>買得 累年耕食爲有  
如可 移買次 吐旨面堂山坪伏在 鹹字畝二作 卜數  
拾陸卜捌束 四斗落只庫乙 價折錢文參拾柒兩以  
牌字導良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  
賣爲去乎 日後良中族屬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  
告官下正事  
畝主 崔生員宅奴 希先[左寸]  
訂人 梁夫淡[着名]  
訂保 礪禮山[着名]  
筆執 業武 全一周[着名]

건륭 28년(1763, 영조39) 계미년 1월 19일 이원세李元世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상전上典이 자기매득한 땅을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해 토지면吐旨面 당산평堂山坪에 있는 함자답鹹字畝 2작二作 부수負數 16부 8속, 4두락지를 전문錢文 37냥으로 패지牌字에 따라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족속族屬 자손子孫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최생원崔生員댁 노奴 희선希先[좌촌]

---

61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된 것을 고쳤다.

증인訂人 : 양부담夫淡[작명]

증보訂保 : 반예산礮禮山[작명]

필집筆執 : 업무業武 전일주全一周[작명]

1763년 1월 19일에 최생원崔生員댁 노奴 희선希先이 이매하기 위해 상전上典의 배자에 따라 이원세李元世에게 토지면吐旨面 당산평堂山坪에 있는 함자답鹹字畓 16부 8속 4두락지를 37냥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訂人은 양부담夫淡이 썼고, 증보訂保는 반예산礮禮山, 필집筆執은 업무業武 전일주全一周가 참여했다.

## 69. 1748년 노奴 희선希先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三年戊辰三月初十日 崔生員宅奴 喜先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佛糧畓 累年畊食爲

如可 此畓段 斗落只往來半分不便 不獲已 移

買次 吐旨面堂山員伏在 鹹字畓貳斗落只 卜

數十一卜庫乙 價折錢文拾陸兩 依數交易捧

上爲遣 右人前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如有日後寺中某人是乃 生謀雜談之

弊是去等 將此文記告官下正事

畓主 三綱 檜澄[着名]

有文[着名]

自信[着名]

訂人 圓益[着名]

時住持 處元[着名]

筆 釋太玄[着名]



건륭 13년(1748, 영조24) 무진년 3월 10일 최생원崔生員댁 노奴 희선喜先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불량답佛糧畝를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이곳을 왕래 하기가 매우 불편하여 부득이 이매移買를 위해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畝 2두락지, 부수負數 11부 곳을 전문錢文 16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만약 이후에 사중의 어떤 사람이거나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삼강三綱 회징檜澄 [작명]

유문有文 [작명]

자신自信 [작명]

증인訂人 : 원익圓益 [작명]

현 주지住持 처원處元 [작명]

필筆 : 석태현釋太玄 [작명]

1748년 3월 10일에 절의 삼강三綱 3인이 이매하기 위해 최생원崔生員댁 노奴 희선喜先에게 토지면 吐旨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畝 2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1부인 곳을 16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에는 원익圓益과 현 주지住持 처원處元이 썼고, 필집으로 석태현釋太玄이 참여하였다.

## 70. 1740년 이수백李水白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年庚申四月二十八日 李水白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亦師翁前別得 累年畊食爲

如可 移買次 吐旨面堂山員伏在 鹹字畝伍斗落只二夜味內 上

邊參斗落只一夜味 卜數拾壹卜參束庫 價折錢文拾柒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

乎矣 都文記中背後爻周爲有置 日後如有上佐及同

族中生謀雜談之弊是去等 將此文記告官下正事

畚主 僧 淑聰[着名]

訂人 僧 竺敏[着名]

筆 釋太玄[着名]

건륭 5년(1740, 영조16) 경신년 4월 28일 이수백李水白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사옹師翁으로부터 별득別得한 땅을 여러 해 동안 경식 畊食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해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畓 5두락지 2배미夜味 내의 상변上邊 3두락지 1배미夜味, 부수負數 11부 3속 곳을 전문錢文 17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한다. 도문기都文記 중의 기록은 배후背後에 효주爻周한다. 이후에 만약 상좌上佐나 동족同族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승僧 숙충淑聰[작명]

증인訂人 : 승僧 축민竺敏[작명]

필筆 : 석태현釋太玄[작명]

1740년 4월 28일에 승僧 숙충淑聰이 이매하기 위해 이수백李水白에게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畓 5두락지 2배미夜味 내의 상변上邊 3두락지 1배미夜味, 부수負數로는 11부 3속인 곳을 17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은 승僧 축민이 썼고, 필집은 석태현釋太玄이 하였다.

## 71. 1707년 이덕창李德唱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陸年丁亥二月初拾日 李德唱前 明文

右明文 □…□ 生時同居買得畊

食爲如可 勢不得已 資生爲難乙仍于 堂山員伏

在醜字畝貳斗落只 負數陸負伍束庫 價折  
租全拾石 錢文貳拾兩以 依數交易上捧爲遣 右  
前本文記正丈并 永永放賣許給爲去乎 後次良中  
同生子息族類等是乃雜談爲去等 此文記內用告官  
辨政事  
畝主 鄭召吏  
訂人 鄭秀永  
訂保 趙時奉  
筆執 趙位京

강희 46년(1707, 숙종 33) 정해년 2월 10일 이덕창李德唱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살아계실 때에 함께 살면서 매득買得하여 경식畊食하다가 형세상 부득이 살아갈 방도가 어려워서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醜字畝 2두락지, 부수負數 6부 5속을 조租 전全 10석과 전문錢文 2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식子息 족류族類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정조이鄭召吏

증인訂人 : 정수영鄭秀永

증보訂保 : 조시봉趙時奉

필집筆執 : 조위경趙位京

1707년 2월 10일 정조이鄭召吏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이덕창李德唱에게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醜字畝 2두락지, 부수負數로는 6부 5속인 곳을 조租 전全 10석과 돈 2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에 정수영이 썼고, 증보訂保로 조시봉, 필집筆執으로 조위경이 참여하였다.

## 72. 1735년 연곡사중燕谷寺中 허급명문許給明文

雍正拾參年乙卯正月二十日 燕谷寺中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先亡父母招魂願納次 吐  
旨面堂山員伏在馘字畚伍斗落只二夜味內 下邊一夜  
味貳斗落只庫乙 右寺中佛糧許納爲去乎  
本文記段他內分 故不得許給爲有置 日後  
如有上佐及族屬中 生謀雜談之弊  
是去等 將此文記告官下正事  
畚主 嘉善大夫 釋明善[着名]  
訂人 通政 釋朗溟[着名]  
訂參 前判事 釋處敬  
筆 釋太玄[着名]

옹정 13년(1735, 영조11) 을묘년 1월 20일 연곡사중燕谷寺中에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돌아가신 부모의 초혼招魂으로 원납하기 위해 토지면 吐旨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馘字畚 5두락지 2배미夜味 내의 하변下邊 1배미夜味 2두락지를 위 절의 불량佛糧으로 허납許納하되,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문서에 있으므로 허급許給할 수 없다. 만약 이후에 상좌上佐나 족속族屬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가선대부嘉善大夫 석명선釋明善[작명]

증인訂人 : 통정通政 석낭운釋朗溟[작명]

증참訂參 : 전판사前判事 석처경釋處敬

필筆 : 석태현釋太玄[작명]

1735년 1월 20일에 가선대부嘉善大夫 석명선釋明善이 연곡사중燕谷寺中에게 토지면吐旨面 당산원堂山員에 있는 함자답馘字畚 5두락지 2배미夜味 내의 하변下邊 1배미夜味 2두락지를 허급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허급 사유는 돌아가신 부모의 초혼招魂을 위해서라고 하였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문서에 붙어있으므로 허급許給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증인으로 통정通政 석낭운釋朗溇이 섰고, 증참訂參으로 전판사前判事 석처경釋處敬이, 필집으로 석태현釋太玄이 참여하였다.

### 73. 1751년 노奴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六年辛未二月十五日 李生員宅奴 加八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亦妻邊衿得 積年耕

食爲如可 要用所致 不得已 吐旨面九萬

村前員伏在 鹹字畚壺斗落只 卜數三卜

四束庫乙 價折錢文柒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并以 右人處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類中 幸有雜談爲去等

此文告官下正事

畚主 折衝 徐時贊[着名]

證 姜順興

筆 朴東紀[着名]

#### 추록

吐旨面九萬村

後 鹹字一斗

落 三卜四束 徐

時贊

건륭 16년(1751, 영조27) 신미년 2월 15일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처변妻邊으로부터 깃득衿得한 땅을 여러 해 경식耕食

하다가 긴히 쓸 곳이 있어서 부득이 토지면吐旨面 구만촌九萬村 앞에 있는 함자답醜字畓 1두락지, 부수負數 3부 4속 곳을 전문錢文 7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자손子孫 족류族類 가운데 행여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절충折衝 서시찬徐時贊[작명]

증證 : 강순흥姜順興

필筆 : 박동기朴東紀[작명]

### 추록

토지면吐旨面 구만촌九萬村 뒤의 함자답醜字畓 1두락지 3복 4속을 서시찬徐時贊에게서 매득함.

1751년 2월 15일에 절충장군 서시찬徐時贊이 요용소치로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토지면吐旨面 구만촌九萬村 앞에 있는 함자답醜字畓 1두락지, 부수負數로는 3부 4속인 곳을 7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은 강순흥姜順興이 썼고, 필집은 박동기朴東紀가 하였다.

## 74. 1711년 김순래金順萊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玖年辛未十二月貳拾日 金順萊前 明文  
右明文爲畝乎事段 矣父買得畊食爲如可 矣  
上典前許良爲乎等以 不得不屬良價折出處無乙  
仍于 九萬處前員伏在 醜字儀平帳貳負伍  
東庫乙 價折錢文拾伍兩乙 依數交易捧上爲  
遣 本文記貳丈并以 右人前永永放賣許給  
爲去乎 後次某同生子息族類中雜談爲去  
等 此文記內用良告官辦政事  
畓主 李水元[着名]

訂 鄭秀永  
保 趙時奉[着名]  
筆執 趙位京[着名]

강희 50년(1711, 숙종37)<sup>62</sup> 신묘년 12월 20일 김순래金順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아버지가 매득買得하여 경식畊食하다가 나의 상전上典이 허량許良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속량가屬良價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구만九萬 앞에 있는 함자鹹字답 의평儀平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록된 2부 5속 곳을 전문錢文 15냥으로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 허급許給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식子息 족류族類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이수원李水元[착명]

증訂 : 정수영鄭秀永

보保 : 조시봉趙時奉[착명]

필집筆執 : 조위경趙位京[착명]

1711년 12월 20일에 이수원李水元이 김순래金順萊에게 구만九萬 앞에 있는 땅, 의평儀平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록된 함자鹹字답 2부 5속 곳을 1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속량가屬良價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은 정수영鄭秀永이었고, 증보는 조시봉이, 필집筆執은 조위경이 함께 참여하였다.

---

62 강희 49년은 경인년(1710)이고, 강희 50년(1711, 숙종37)은 신묘년이다. 신미년은 1691년 강희 30년과 1751년 건륭 16년이다. 그래서 신묘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75. 1685년 이인종李仁宗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貳拾肆年乙丑正月貳拾日 李仁宗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貧寒所致以 矣自己  
買得爲有在 土旨面九萬里伏在 鹹字太種壹斗落  
只 卜數貳負伍束庫良中 價折所畊壹結  
及正租全壹石等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亦中  
永永放賣爲去乎 如有後次遠近族類等中  
雜談隅是去等 將此本文記并以許給爲去乎  
後次告官卜正爲乎事  
田主 金日龍[着名]  
證人 安日晚  
訂保 金山欽  
筆執 李弘益

강희 24년(1685, 숙종11) 을축년 1월 20일 이인종李仁宗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빈한한 소치로 자기매득한 토지면 구만리九萬里에 있는 함자鹹字 태종太種 1두락지, 부수負數 2부 5속 곳을 소경所畊 1결結과 정조正租 전술 1석石 등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해하니, 만약 이후에 원근遠近的 족류族類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허급許給하니 이후에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김일용金日龍[작명]

증인證人 : 안일만安日晚

증보訂保 : 김산흠金山欽

필집筆執 : 이홍익李弘益

1685년 1월 20일 김일용金日龍이 빈한 소치로 이인종李仁宗에게 토지면 구만리九萬里에 있는 함자



鹹字 태종太種 1두락지, 부수負數 2부 5속 곳을 소경所畊 1결결과 정조正租 전소 1석石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證人은 안일만安日晚이 썼고, 증보訂保는 김산흙이, 필집筆執은 이홍익李弘益이 함께 참여하였다.

## 76. 1682년 김일용金日龍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貳拾年壬戌正月貳拾玖日 金日龍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身亦貧寒所致以 自己買得爲如可 勢

不已 伏在鹹字垡田太種正斗落只庫 卜數二卜二束庫乙 價折正租

二十二斗 正木一疋 捧上爲遣 同人處前後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同生及子息族類中 若有雜談爲去乙等 持文告官卜正

爲乎事

田主 老除正兵 金厚朴[着名]

證人 金莫山[着名]

證保 趙仁立[着名]

筆執 金廷顯[着名]

강희 21년(1682, 숙종8)<sup>63</sup> 임술년 1월 29일 김일용金日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빈한소치로 자기매득한 함자대전鹹字垡田 태종太種 1두락지, 부수負數 2복 2속 곳을 정조正租 22두斗와 정목正木 1필匹로 값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전후의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식子息 족류族類 중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노제老除 정병正兵 김후복金厚朴[착명]

63 강희 20년(1681, 숙종7)은 신유년이고, 임술년은 강희 21년(1682, 숙종8)이다. 임술년을 기준으로 한다.

증인證人 : 김막산金莫山[작명]

증보證保 : 조인립趙仁立[작명]

필집筆執 : 김정현金廷顯[작명]

1682년 1월 29일에 노제老除 정병正兵 김후복金厚朴이 빈한소치로 김일용金日龍에게 합자대전鹹字代田 태종太種 1두락지 부수負數 2부 2속인 곳을 정조正租 22두과와 정목正木 1필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전후의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해하였다. 증인證人은 김막산金莫山이 썼고, 증보證保에는 조인립趙仁立이, 필집筆執에는 김정현金廷顯이 함께 참여하였다.

## 77. 1763년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八癸未正月三十日 首作者 出身 李時華前 明文  
右明文事段 當初此畝買取之意 盖出於湫水不足之致以 右畝餘水 灌溉於湫內畝庫 故給價買得  
是如可 諸作者渾同相議 伏在山亭員海字三作并一斗  
落只庫 卜數四卜四束 價折錢文陸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本文記二丈及所志二丈并以 永永放賣爲去  
乎 日後作者等 幸有雜談是去等 將此文告官  
卜正事

湫畝主 幼學 趙道濟[着名]

同姓七寸姪 幼學 李鵬運[着名]

嘉善大夫 金海俊[着名]

筆 徐以漢[着名]

### 추록

吐旨面山亭員海字八畝二卜

九束 九畝一卜三束 十畝二束 合四卜四束

壹斗落只庫乙 買泐坪泐  
首作者趙友晦元許

건륭 28년(1763, 영조39) 계미년 1월 30일 수작자首作者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당초에 이 논을 매득한 뜻은 대개 보수泐水가 부족한 까닭에 위 논외의 남는 물을 보내泐內의 논으로 관개灌溉하려고 한 것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매득買得하였다. 여러 작자作者들과 서로 의논을 하여 산정山亭에 있는 해자海字 3작병 1두락지, 부수負數 4부 4속 곳을 전문錢文 6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2장, 소지所志 2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작자作者들 중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보답주泐畝主 : 유학幼學 조도제趙道濟[작명]

동성 7촌질同姓七寸姪 유학幼學 이봉운李鵬運[작명]

가선대부嘉善大夫 김해준金海俊[작명]

필筆 : 서이한徐以漢[작명]

#### 추록

토지면吐旨面 산정山亭에 있는 해자海字 8번답 2부 9속, 9번답 1부 3속, 10번답 2속, 합 4부 4속 1두락지 곳을 보평泐坪의 보泐 수작자首作者인 벗 조희원趙晦元에게서 샀다.

1763년 1월 30일에 유학幼學 조도제趙道濟가 수작자首作者인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산정山亭에 있는 해자海字답 1두락지, 부수負數로 4부 4속인 곳을 6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2장, 소지所志 2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동성 7촌질同姓七寸姪인 유학幼學 이봉운李鵬運과 가선대부嘉善大夫 김해준金海俊이 방매자로 함께 나섰으며, 필집은 서이한徐以漢이 담당했다.

## 78. 1745년 보평泐坪 제작지諸作者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年乙丑四月初三日 泐坪諸作者處 明文  
右明文事段 切有用處 本面山亭員  
伏在買得甲量伍升落 己量反畚伍升  
落 合畚實種一斗落只 海字八畚二卜九束  
九畚一卜三束 十畚二束 三作庫乙 價折錢  
文陸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一文並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  
去等 此文告官下正事  
畚主 自筆 幼學 李夏碩

건륭 10년(1745, 영조21) 을축년 4월 3일 보평泐坪 제작지諸作者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곳이 있어 본면本面の 산정山亭에 있는 매득買得한 갑甲년의 양안에 등록된 5승락지升落와 기리년의 양안에 실린 변답反畚(밭을 논으로 만든 것) 5승락지升落, 합답畚畚 실종實種 1두락지, 해자海字 8변답畚 2부 9속, 9변답 1부 3속, 10변답 2속의 3작作을 전문錢文 6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이하석李夏碩

1745년 4월 3일에 유학幼學 이하석李夏碩이 긴히 쓸 곳이 있어서 보평泐坪 제작지諸作者에게 본면本面 산정山亭에 있는 1두락지, 해자海字 8변답 2부 9속, 9변답 1부 3속, 10변답 2속인 곳을 6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답주 이하석이 직접 작성한 문서이다.

## 79. 1717년 노奴 점봉占奉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陸年丁酉三月初十日 李生員宅奴 占奉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祖上傳來 量付畚庫 山亭員伏在海字  
畚耆斗落只內 陳地并以 負數耆負貳束庫乙 價折錢文貳兩參錢 依數交易  
捧上爲遺 本文記段量付都文記交周爲乎旆 日後良中同生  
子孫中雜談爲去等 此文記并以告官下正事  
自筆 畚主 鄭時泰[着名]

강희 56년(1717, 숙종43) 정유년 3월 10일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점봉占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아 양안量案에 실린 산정山亭에 있는 해자답海字畚 1두락지 내의 진지陳地와 함께 부수負數 1부 2속 곳을 전문錢文 2냥 3전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양안量案에 실린 도문기都文記에 효주交周하며,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畚主 : 정시태鄭時泰[착명]

1717년 3월 10일에 정시태鄭時泰가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점봉占奉에게 산정山亭에 있는 해자답海字畚 1두락지 내의 진지陳地와 함께 부수負數 1부 2속 곳을 2냥 3전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별도의 필집 없이 답주 정시태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80. 1746년 김해준金海俊 등 소지所志

吐旨居 金海俊等

右謹陳所志事段 以一漢之小利 棄萬民家利處 而空  
作乾畚可乎 除一漢不義之事 而取眾民之願可乎  
此惟在

案前明政處置之如何 舉槩齊訴 伏乞拔例採納焉  
矣民等畚庫 多在泐坪泐下 又有桶泐自子川泐等兩  
泐之上是白如乎 同村居巫夫使令曹太九称号者 徒  
恃愚惡 上項兩泐之間引水空地反畚一斗落 而以  
兩泐之水 都執灌溉其反畚處 故矣民等十餘名作農  
畚庫 不下一勺水 秧板盡枯 無路引水 故至於  
廢農之境是白乎所 許多農畚庫 以一太九之反  
畚愚惡 一朝滲乾廢農 極涉冤痛 如此齊訴  
爲白去乎 卽速自官摘奸後 同太九各別重治 使不  
作戲之意 嚴明分付教是遣 使矣民等十餘名畚  
庫 趁時注秧 俾免枯損之冤事 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官司主 處分

丙寅四月日

後

金海俊 鄭位周 鄭儀萬 徐是贊 金太住 李同白 奴 元鶴 奴 順鶴  
奴 耆勇 奴 尙實 奴 淡金 奴 淡沙 奴 愛奉 奴 三矣 朴大文 奴 者斤老 姜者發 等

往此畚庫

詳細摘奸

後 來告事

鄉廳

初三

官[署押]

토지면에 사는 김해준金海俊 등

이와 같이 삼가 소지所志를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이익 때문에 만민 집안

의 이익 되는 것을 버리고 공연히 건답乾畝<sup>64</sup>을 만드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불의한 일을 제하고 많은 백성의 바람을 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안전案前의 명정한 처치가 어떠한가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대개를 들어서 나란히 하소연을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발례拔例로 채납해주소서.

저희 백성들의 논은 대부분 보평보沔坪沔 아래 있고, 또 통보桶沔와 자자천보自子川沔 등이 두 보沔의 위에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무부사령巫夫使令<sup>65</sup> 조태구曹太九라고 부르는 자가 한갓 우악함을 믿고서 위에서 말한 양쪽 보沔 사이에서 물을 끌어다 공지空地에 번답反畝<sup>66</sup> 1두락을 만들었습니다. 양쪽 보沔의 물을 모두 잡아서 그 번답에 물을 대므로 민민 등 10여 명이 경작하는 답에는 한국자의 물도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모판이 다 말라도 논에 물을 끌어올 길이 없어서 농사를 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농답農畝들이 한사람 태구太九의 번답으로 인해 우악하게도 하루아침에 삼건滲乾하여 농사를 폐하게 되었으니, 매우 원통한지라 이와 같이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즉시 관에서 적간摘奸한 후에 위의 태구를 각별히 중히 다스려서 희롱하는 뜻을 짓지 못하도록 엄명한 분부를 내리시고, 우리 민민 등 10여 명의 논으로 하여금 때맞추어 못자리에 물을 대게 하여 말라 죽는 원통한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명령하시어 관사주官司主께서 처분하십시오.

병인년(1746) 4월 일. 후後

김해준金海俊, 정위주鄭位周, 정의만鄭儀萬, 서시찬徐是贊, 김태주金太住, 이동백李同白, 노녀 원학元鶴, 노 순학順鶴, 노 기용耆勇, 노 상실尙實, 노 담금淡金, 노 담사淡沙, 노 애봉愛奉, 노 삼의三矣, 박대문朴大文, 노 자근노者斤老, 강자발姜者發 等等.

이 답고畝庫에 가서 상세하게 적간한 후에 와서 알릴 일이다. 향청鄉廳, 3일.

관官[서업]

1746년 4월에 토지면에 사는 김해준金海俊 등이 구례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10여 명의 논이 대부분 보평보沔坪沔 아래 있고, 또 통보桶沔와 자자천보自子川沔 위에 있는데, 같은 마을에 사는 조태구曹太九라는 사람이 양쪽 보 사이에 번답 1두락을 만들고서 양쪽 보의 물을 모두 끌어가버려서 다른 사람의 못자리는 건답이 되어 농사를 폐하게 생겼으니, 조태구를 중히 다스려서 엄하게 분부하시고 못자리에 때맞추어 물을 대서 농사를 망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한 내용이다. 뒤에는 김해준金海俊, 정

64 건답(乾畝) 물이 실려 있지 않은 논. 마른논.

65 무부사령(巫夫使令) 무당의 남편으로서 선발된 사령.

66 번답[反畝] 진황(陳荒)된 것을 다시 개간한 밭을 말한다

위주鄭位周 등 17명이 연명을 하였다. 이에 대해 구례현감은 이곳에 대해 상세히 적간한 후 알리라고 향청에 판결을 내렸다.

## 81. 1745년 김해준金海俊 등 소지所志

吐旨居 金海俊等

右謹陳所志事 矣等畚庫 在於湫坪湫下 而上有上湫 次有桶湫 次有  
阜子川湫 其下有湫坪湫是乎矣 堅築三湫 則酌水不漏於湫坪湫 故  
湫坪畚皆是乾畚 專賴阜子川畚下自生水一小畚是如乎 同村居巫夫使  
令曹太古亦 自恃頑悍 敢生前人不敢爲之事 作畚於空地 將欲據  
奪其生水處 以爲浹得加耕之意是乎所以 彼一人一斗之畚 其果廢  
棄十餘石地畚乎 此則衆人之所關 彼則一人之利也 若廢衆 於理不當  
弊不喻 太古之所作畚也 果是川邊積石處 而自古欲畚其田 古非一非  
再是乎乃 坐於湫坪衆怨 不敢生意是如乎 前人不行事 太古乃欲行之  
太古之頑悍 於此可知是白遣 設或太古之畚 在於湫上是良置 衆怨既  
盈 則以一人私情 不可廢棄衆論是去等 矧乎太古之畚 在於湫外 漏水  
亦不入於吐乙乎 於法亦不可許 不待卞而明矣 伏願

仁政勸農之下 各別參商摘奸後 太古之<sup>□</sup>衆<sup>□</sup>私之罪 嚴治教是遣  
同水路 則不敢下壬事嚴明 行下爲白只爲

官主 處分

乙丑五月日

後

鄭位周 鄭儀萬 徐是贊 金太位 李同白 奴 元鶴 奴 順鶴  
奴 耆勇 奴 尚實 奴 淡金 奴 淡沙里 奴 三矣 奴 愛奉 朴大文  
奴 者斤老未 姜者發 奴 崔之 梁王目 朴承鶴 等



이와 같이 삼가 소지所志를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들의 담고畝庫가 보평보淤坪淤 아래에 있는데, 위에는 상보上淤가 있고, 다음으로 통보桶淤가 있으며, 다음으로 작자천보阜子川淤가 있고, 그 아래에 보평보淤坪淤가 있습니다. 단단히 세 개의 보淤를 쌓았으니 한 그릇의 물도 보평보淤坪淤에 새지 않아서 보평답淤坪畓은 모두 건답이 되었습니다. 오직 작자천답 아래에 저절로 나오는 물에 의지해서 하나의 작은 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사는 무부사령 조태고曹太古가 스스로 완한頑悍함을 믿고서 감히 전인들도 감히 하지 않았던 일을 만들어서 공지空地에 논을 만들고 장차 물이 나는 곳을 갑자기 빼앗아 가경加耕할 수 있는 곳으로 삼으려는 뜻을 가지니, 저 한 사람의 1두락 논 때문에 10여석지의 논을 폐기할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 사람과 관계된 것이고, 저것은 한 사람의 이익일 뿐입니다. 만약 대중적인 것을 폐한다면 이치에 있어서도 부당할 뿐만이 아닙니다. 태고가 짓는 논은 과연 천변에 돌이 쌓인 곳이라서 예로부터 그 밭에 논을 만들려고 한 것이 옛날에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보평의 중원衆怨에 좌절되어 감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인도 행하지 않은 일을 태고가 곧 행하고자 하니, 태고의 완한頑悍함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설혹 태고의 논이 보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원衆怨이 이미 가득하니, 한 사람의 사정으로서 중론을 폐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태고의 논이 보 밖에 있어서 누수가 땅에 들어올 수 없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법에 있어서도 허락할 수 없음은 변론을 기다리지 않고도 분명한 것입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어진 정사로 권농을 하는 아래에서 각별히 참상參商하고 적간한 후에 태고의 대중을 기만하고 사욕을 부리는 죄를 엄히 다스려주시고, 위에서 말한 물길은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엄하고 분명하게 명령을 내려주셔서 처분해주시길 바랍니다.

을축년(1745) 5월.

후後

정위주鄭位周, 정의만鄭儀萬, 서시찬徐是贊, 김태위金太位, 이동백李同白, 노녀 원학元鶴, 노 순학順鶴, 노 기용耆勇, 노 상실尙實, 노 담금淡金, 노 담사리淡沙里, 노 삼의三矣, 노 애봉愛奉, 박대문朴大文, 노 자근노미者斤老末, 강지발姜者發, 노 최지崔之, 양왕목梁壬目, 박승학朴承鶴 等等.

관官[서업]

1745년 5월에 토지면에 사는 김해준金海俊 등 19명이 연명하여 구례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자신들의 논이 보평보淤坪淤 아래에 있는데, 위에 몇 개의 보가 있어서 조금도 물이 새어 나오지 않아 보평보의 논은 오직 작자천답 아래에서 자생하는 물에 의지하여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을 뿐이라는 것과, 같은 마을에 사는 무부사령 조태고曹太古가 이 물길을 막고 공지에 자신의 논을 만들게 되어 10여

석지가 되는 땅이 모두 마른논이 되었으니 그 죄를 엄하게 다스려달라고 청원한 내용이다.

## 82. 1764년 김광서金光瑞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貳拾玖年甲申二月十七日 幼學 金光瑞前 明文  
右明文爲臥乎矣段 上典畚畊食是如可 移買次 求禮  
吐旨面九萬村前自自川坪 菜字畚柴斗落只 卜數二十  
七卜七束庫乙 價折錢文壹百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  
牌子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此後孫中雜談是去等 以  
將此文記告官下正事

畚主 趙生員宅奴 六月金[着名]

訂人 崔命才[着名]

筆 劉世章[着名]

건륭 29년(1764, 영조40) 갑신년 2월 17일 유학幼學 김광서金光瑞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상전上典이 논을 경식畊食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해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구만촌九萬村 앞 자자천自自川의 채자답菜字畚 7두락지, 부수負數 27부 7속 곳을 전문錢文 10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및 패자牌子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 후손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조생원趙生員댁 노奴 유월금六月金[착명]

증인訂人 : 최명재崔命才[착명]

필筆 : 유세장劉世章[착명]

1764년 2월 17일에 조생원趙生員댁 노奴 유월금六月금이 상전을 대신하여 유학幼學 김광서金光瑞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구만촌九萬村 앞 자자천自自川의 채자답菜字畚 7두락지, 부수負數로는 27부

7속인 곳을 10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이매移買를 위해서라고 하였다. 본문 기본本文記, 패자牌子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에 최명재崔命才가 썼고, 필집으로 유세장世章이 참여하였다.

### 83. 1746년 재환再還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年丙寅五月二十六日 山人 再還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身自己買得是在 大川前加畊  
旨員伏在 金字畚三斗落只九卜四束庫 資生次以 價  
折錢文拾貳兩捧上 今年禾穀并以 右人處永永  
放賣之日 本文亦爲出給爲去乎 日後若子孫族屬  
中雜談爲去等 此文告官下正事  
畚主 李萬日[着名]  
訂人 白龍[着名]  
筆 金之翰[着名]

건륭 11년(1746, 영조22)<sup>67</sup> 병인년 5월 26일 산인山人 재환再還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한 대천大川 앞 가경지에 있는 금자답金字畚 3 두락지, 9부 4속을 생계를 위하여 전문錢文 12냥을 받고 금년今年的 화곡禾穀과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며 본문기本文記도 출급出給한다. 이후에 만약 자손子孫 족속族屬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이만일李萬日[착명]

증인訂人 : 백룡白龍[착명]

---

67 건륭 10년은 을축년이고, 병인년은 건륭 11년(1746, 영조22)이다.

필筆 : 김지한金之翰[작명]

1746년 5월 26일에 이만일李萬日이 생계를 위해 산인山人 재환再還에게 대천大川 앞 가경지에 있는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9부 4속을 12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금년今年의 화곡禾穀을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백룡白龍이 섰고, 필집으로 김지한金之翰이 함께 참여하였다.

## 84. 1713년 박임생朴任生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貳年癸巳二月拾肆日 朴任生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貧寒所致以 勢不得  
以 天皇時伏在亦 露字畓貳斗落只 負數陸卜參  
束庫良中 價折錢文參拾肆兩以 依數交易  
爲遣 右人處本文記二丈并以 永永放賣爲  
去乎 幸有後日某同生等是乃雜談爲去  
等 此文記用良告官下正事  
畓主 崔致華[着名]  
證人 金愛仁[着名]  
筆執 陶漢慶[着名]

강희 52년(1713, 숙종39) 기사년 2월 14일 박임생朴任生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가난의 소치로 형세상 부득이하어 천황치天皇時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2두락지, 부수負數 6부 3속 곳을 전문錢文 34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만약 이후 동생同生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최치화崔致華[작명]

증인證人 : 김애인金愛仁[작명]

필집筆執 : 도한경陶漢慶[작명]

1713년 2월 14일에 최치화崔致華가 빈한소치로 박임생朴任生에게 천황치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2두락지, 부수負數 6부 3속 곳을 34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證人은 김애인金愛仁이 썼고, 필집筆執은 도한경陶漢慶이 맡았다.

## 85. 1735년 강삼봉姜三奉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拾參年乙卯正月二十四日 姜三奉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自己<sup>68</sup>買得 積年耕食爲如可  
要用所致以 不得已 求禮吐旨面大川芑朴只員  
伏在 騰字畓參斗落只 負數三作並捌負伍束庫果  
又天皇員伏在 露字畓貳斗落只 卜數陸負參束  
庫 兩庫良中 價折錢文貳拾貳兩 依數交易捧上  
爲遣 右人處兩庫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  
後某同生子息族屬中 雜談是去等 將此文記告  
官下正事

畓主 朴任生[着名]

證 鄭順白[着名]

筆 朴東紀[着名]

---

68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옹정 13년(1735, 영조11) 을묘년 1월 24일 강삼봉姜三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대천돌박지大川窟朴只에 있는 등자답騰字畓 3두락지, 부수負數 8부 5속인 곳과 천황天皇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2두락지, 부수負數 6부 3속인 곳의 두 곳을 전문錢文 22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식子息 족속族屬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박임생朴任生[작명]

증證 : 정순백鄭順白[작명]

필筆 : 박동기朴東紀[작명]

1735년 1월 24일에 박임생朴任生이 요용소치로 강삼봉姜三奉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대천돌박지大川窟朴只에 있는 등자답騰字畓 3두락지 부수負數 8부 5속인 곳과 천황天皇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2두락지 부수負數 6부 3속인 곳 두 곳을 22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은 정순백鄭順白이 썼고, 필집은 박동기朴東紀가 함께 참여하였다.

## 86. 1677년 김호일金浩日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拾陸年丁巳四月初八日 金浩日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自己<sup>69</sup>買得耕食爲如可 移買<sup>70</sup>次以 天皇時 員伏在 露字畓肆斗落只 負數二作并拾肆負九束 露字畓貳斗落只 負數陸負參束庫乙 價折七禾大雄牛壹首 正租壹石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處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同生族類等是乃雜談爲

69 원문에는 記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70 원문에는 賣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去乙等 持次文記告官辨正爲乎事

畚主 全召史[右寸]

訂人 姜先文[着名]

訂保 郭戒龍

筆執 羅儀日[着名]

강희 16년(1677, 숙종3) 정사년 4월 8일 김호일金浩日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식耕食하다가 이매하기 위하여 천황 天皇時에 있는 로자답 露字畓 4두락지, 부수 負數 2작병 14부 9속 곳과 로자답 露字畓 2두락지, 부수 負數 6부 3속인 곳을 7살짜리 수소 1마리와 정조 正租 1석石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 同生이나 족류 族類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 畓主 : 전조이 全召史 [우촌]

증인 訂人 : 강선문 姜先文 [착명]

증보 訂保 : 광계룡 郭戒龍

필집 筆執 : 나의일 羅儀日 [착명]

1677년 4월 8일에 전조이 全召史가 이매하기 위해 김호일 金浩日에게 천황치 天皇時에 있는 로자답 露字畓 4두락지 14부 9속 곳과 로자답 露字畓 2두락지 6부 3속 곳을 7살짜리 수소 1마리와 정조 正租 1석石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 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에는 강선문 姜先文이 섰고, 증보 訂保에 광계룡 郭戒龍, 필집 筆執에 나의일 羅儀日이 함께 참여하였다.

## 87. 1780년 노 奴 용봉 用奉 토지명문 土地明文

乾隆四十五年庚子十二月初七日 柳生員宅奴 用奉處

右明文事段 移買次<sup>71</sup> 吐旨面石朴只員  
騰者畚三斗落只 負數三作并以  
八卜五束庫果 天皇員伏在露  
字畚二斗落只 數六卜三束兩庫  
右人處價折錢文伍拾兩 捧上  
是遣 永永放賣爲去乎 本文  
記段 他畚并付 故不得出給 而日  
後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此文告官下正事  
畚主 幼學 朴龍瑞[着名]  
筆 幼學 金泰玉[着名]

건륭 45년(1780, 정조4) 경자년 12월 7일 유생원柳生員댁 노녀 용봉用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를 위해 토지면吐旨面 석박지石朴只에 있는 등자답騰者畚 3두락지, 부수負數 8부 5속 곳과 천황天황에 있는 로자답露字畚 2두락지, 부수部數 6부 3속의 두 곳을 위 사람에게 전문錢文 50냥을 받고 영원히 방매하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같이 적혀 있으므로 내어줄 수 없다. 이후에 자손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유학幼學 박용서朴龍瑞[작명]

필筆 : 유학幼學 김태옥金泰玉[작명]

1780년 12월 7일에 유학幼學 박용서朴龍瑞가 이매하기 위해서 유생원柳生員댁 노녀 용봉用奉에게 토지면吐旨面 석박지石朴只에 있는 등자답騰者畚 3두락지 8부 5속 곳과 천황天황에 있는 로자답露字畚 2두락지 6부 3속의 두 곳을 5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이 같이 붙어있으므로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필집으로 유학幼學 김태옥金泰玉이 참여하였다.

---

71 원문에는 此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 88. 1747년 석삼익釋三益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拾貳年丁卯四月十七日 釋三益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身亦自己買得 多年畊食  
是如可 貧寒所致以 勢不得已 求禮 吐旨面大  
川芫朴只員伏在 騰字畚三斗落只 負數三作并以  
八卜五束庫果 又天皇員伏在 露字畚二斗落只  
卜數六卜三束兩庫并以 價折錢貳拾九兩 依  
數交易捧上爲遣 同畚兩庫本文記并以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謀片子孫族屬中 幸有生  
謀雜談爲去等 持此文記告官卜正事  
畚主 姜三奉[着名]  
證人 僧 得閑[着名]  
筆執 山人 謀賢[着名]

건륭 12년(1747, 영조23) 정묘년 4월 17일 석삼익釋三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식畊食하다가 가난한 소  
치로 형세상 부득이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대천大川 돌박지芫朴只에 있는 등자답騰字畚 3두락지, 부  
수負數 8부 5속 곳과 천황天황에 있는 로자답露字畚 2두락지, 부수負數 6부 3속 곳을 모두 전문錢文 29  
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두 곳의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  
후에 자손이나 가문에서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강삼봉姜三奉[작명]

증인證人 : 승僧 득한得閑[작명]

필집筆執 : 산인山人 모현謀賢[작명]

1747년 4월 17일에 강삼봉姜三奉이 빈한소치로 석삼익釋三益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대천大川

돌박지<sup>托朴</sup>지에 있는 등자답<sup>騰字畓</sup> 3두락지 8부 5속 곳과 천황<sup>天皇</sup>에 있는 로자답<sup>露字畓</sup> 2두락지 6부 3속 곳을 29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두 곳의 본문기<sup>本文記</sup>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sup>證人</sup>에 승<sup>僧</sup> 득한<sup>得閑</sup>이 썼고, 필집<sup>筆執</sup>으로 산인<sup>山人</sup> 모현<sup>謀賢</sup>이 참여하였다.

## 89. 1750년 승<sup>僧</sup> 성열<sup>成涅</sup> 토지명문<sup>土地明文</sup>

乾隆拾五年庚午三月十七日 僧 成涅處 明文  
右明文爲事段 矣身自己<sup>72</sup>買得  
耕食爲如可 移買次 不得已  
大川前加耕旨員伏在 金字  
畓三斗落只一百十五畓 九卜四束庫乙 價折錢  
文拾三兩 依數捧上爲遣 右人  
處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次後良中子孫中是去等 此文記  
告官下正事  
自筆畓主 姜渭昌[着名]  
證人 僧 敬行[着名]

건륭 15년(1750, 영조26) 경오년 3월 17일 승<sup>僧</sup> 성열<sup>成涅</sup>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식<sup>耕食</sup>하다가 이매<sup>移買</sup>를 위해 부득이 한 사정으로 대천<sup>大川</sup> 앞 가경지<sup>加耕旨</sup>에 있는 금자답<sup>金字畓</sup> 3두락지 115번답 9부 4속 곳을 전문<sup>錢文</sup> 13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sup>本文記</sup>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 자손<sup>子孫</sup>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

72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자필自筆 답주畝主 : 강위창姜渭昌[작명]

증인證人 : 승僧 경행敬行[작명]

1750년 3월 17일에 강위창姜渭昌이 이매하기 위해 승僧 성열成涅에게 대천大川 앞 가경지에 있는 금자답金字畝 3두락지 9부 4속 곳을 13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답주 강위창이 직접 작성한 문서이며, 증인證人에 승僧 경행敬行이 참여하였다.

## 90. 1733년 이만일李萬日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拾壹年癸丑十月晦日 李萬日處 明文

右明文事 矣亦自己<sup>73</sup>買得 累年耕食爲如可 要用  
所致以 勢不得已 大川前加畊旨員伏在 金字畝參斗  
落只 卜數玖負肆束庫乙 價折錢文拾兩 依數捧上  
爲遣 同人處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某同生子孫族屬中 幸有謀計雜談之弊是去等 將  
此文記告官下正事  
畝主 鄭順生[着名]  
證 徐允激[着名]  
證 卞難白[着名]  
筆 朴東紀[着名]

추록

吐旨

---

73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鄉約講信圖式  
并邑面入籍人  
員記

용정 11년(1733, 영조9) 계축년 10월 그믐 이만일李萬日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식耕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 형세상 부득이 대천大川 앞 가경지에 있는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부수負數 9부 4속 곳을 전문錢文 1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 족속 중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정순생鄭順生[작명]

증證 : 서윤징徐允激[작명]

증證 : 변난백卞難白[작명]

필筆 : 박동기朴東紀[작명]

#### 추록

토지 향약鄉約 강신講信 도식圖式

아울러 읍과 면에 입적入籍한 사람의 기록

1733년 10월 그믐에 정순생鄭順生이 요용소치로 이만일李萬日에게 대천大川 앞 가경지에 있는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9부 4속 곳을 1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서윤징과 변난백이 함께 섰으며, 필집은 박동기朴東紀가 맡았다.

## 91. 1731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九年辛亥三月拾伍日 幼學 李源碩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夫生時同居買得 多年耕食爲如  
可 生道爲難乙仍于 勢不得已 本面杏木亭員 出  
字畚陸斗落只 卜數貳作并貳拾貳卜庫乙 價  
折正租陸拾石 依數捧上爲遣 都文書背後爻  
周是遣 右人前本文書壹丈并以 永永放賣爲去  
乎 日後子孫中雜談是去 持此文記下正事  
畚主 金召史[右掌]

次子 朴東▣[着名]

筆執 長子 朴東彩[着名]

용정 9년(1731, 영조7) 신해년 3월 15일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남편이 생전에 함께 살 때 매득買得하여 여러 해 경식  
耕食하다가 살아갈 방도를 찾기가 어려워 형세상 부득이 본면本面 행목정杏木亭에 있는 출자답出字畚  
6두락지, 부수負數 2작병 22부 곳을 정조正租 60석石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도문서都文書  
는 배후효주背後爻周하여 위 사람에게 본문서本文書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 지손 가운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김조이金召史[우장]

차자次子 朴東○朴東▣[착명]

필집筆執 : 장자長子 朴동채朴東彩[착명]

1731년 3월 15일 김조이金召史가 생도위난하여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에게 본면本面 행목정杏木亭  
에 있는 출자답出字畚 6두락지 22부를 정조正租 60석石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도문기에 효  
주하고 본문서本文書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답주에는 김조이와 차자가 이름을 올렸고, 필집筆執으  
로도 김조이의 장자長子 朴동채朴東彩가 참여하였다. 차자와 장자의 이름은 뒷면에 적었다.

## 92. 1701년 차노差奴 태복太卜 배자牌子

差奴 太卜處 付  
無他 切有要用  
處 汝亦求禮 故奴僧  
人熙卞己上番 麗字十二  
卜四束庫果 出字番十卜七束  
十卜六束庫乙 合柒斗落  
只庫乙 有價人處 此  
牌子導良 永永放賣  
爲遣 同價乙依數捧  
上納宅向事  
上典 金[着名]  
辛巳正月廿七日

### 추록

雍正四年丙午十二月二十一日 麗字  
番參斗落只 卜數十二卜八束庫乙  
張佑廷前 永永放賣印[着名]

차노差奴 태복太卜에게 부침

다름 아니라 긴히 쓸 곳이 있어서이다. 네가 구례의 고노故奴 승인僧人 희변熙卞의 이름으로 올라 있는 려자답麗字番 12복 4속 곳과 출자답出字番 10복 7속, 10복 6속 곳, 합 7두락지 곳을 값을 내는 사람에게 이 배자에 따라 영원히 방매하고, 값을 받아서 상전덕에 들일 일이다.

상전 김금[착명]

신사년(1701) 1월 27일.

### 추록

옹정 4년 병오년 12월 21일에 여자답麗字畓 3두락지, 부수로는 12복 8속인 곳을 장우정張佑廷에게 영구히 방매함.

신사년(1701) 1월 27일에 상전 김금이 차노差奴 태복太卜에게 내린 배자이다. 구례의 러자답麗字畓 12복 4속 곳과 출자답出字畓 10복 7속, 10복 6속 곳, 합 7두락지 곳을 팔라고 위임하였다. 추록에는 옹정 4년 병오년(1726) 12월 21일에 러자답麗字畓 3두락지, 부수로는 12복 8속인 곳을 장우정張佑廷에게 영구히 방매했다는 기록을 덧붙였다.

## 93. 1701년 박계웅朴戒雄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四十年辛巳正月二十七日 朴戒雄處 明文  
右明文爲馭乎事段 奴矣上典宅牌字導良 伏  
在吐旨坪麗字畓拾貳卜四束庫果 出字畓十卜七束 又  
畓十卜六束 三庫合七斗落只庫乙 同人處永永放賣  
爲遣 價本則卜馬正匹 錢文拾四兩以 依數捧上爲  
去乎 日後上典族屬子孫中 或有雜談是  
去等 持此文告官下正事  
畓主 金進士宅奴 太卜[左寸]  
證人 班奴 明生[左寸]  
訂保 寺奴 水興[着名]  
筆執 幼學 梁胤濟[着名]

강희 40년(1701, 숙종27) 신사년 1월 27일 박계웅朴戒雄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노奴인 내가 상전택上典宅의 패자牌字에 따라 토지평吐旨坪

에 있는 려자답麗字畝 12부 4속, 출자답出字畝 10부 7속, 또 10부 6속, 3곳의 총 7두락지를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고, 값은 복마卜馬 1필과 전문錢文 14냥으로 정하여 숫자대로 받았다. 이후에 상전上典의 족속族屬 자손子孫 가운데 혹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김진사金進士댁 노奴 태복太卜 [좌촌]

증인證人 : 반노班奴 명생明生 [좌촌]

증보訂保 : 사노寺奴 수흥水興 [작명]

필집筆執 : 유학幼學 양윤제梁胤濟 [작명]

1701년 1월 27일에 김진사金進士댁 노奴 태복太卜이 박계웅朴戒雄에게 상전을 대신하여 토지평吐旨坪에 있는 려자답麗字畝 12부 4속, 출자답出字畝 10부 7속, 또 10부 6속 총 7두락지를 복마卜馬 1필과 돈 14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증인證人으로 반노班奴 명생明生이 섰고, 증보訂保로 사노寺奴 수흥水興이, 필집筆執으로 유학幼學 양윤제梁胤濟가 참여하였다.

## 94. 1787년 노奴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二年丁未七月十五日 柳龍川宅奴 業伊處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是遣 吐旨面九

亭子坪伏在 李字畝九斗落只內上

邊三斗落只 負數十一卜一束庫乙

價折錢文肆拾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告官

卜正事

畝主 自筆 采元[着名]

證 文友德[着名]



건륭 52년(1787, 정조11) 정미년 7월 15일 유용천柳龍川댁 노부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토지면吐旨面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이자답李字畓 9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3두락지, 부수負數 11부 1속을 전문錢文 4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自筆 채원采元[작명]

증證 : 문우덕文友德[작명]

1787년 7월 15일에 승 채원采元이 유용천柳龍川댁 노부 업이業伊에게 토지면吐旨面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이자답李字畓 9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3두락지 11부 1속 곳을 4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답주 채원이 직접 작성한 문서이다. 증인으로 문우덕文友德이 참여하였다.

## 95. 1787년 승僧 채원采元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二年丁未正月十五日 僧 采元處 明文

右明文事段 以要用所致 自己買得  
伏在吐旨九亭子坪 李字畓九斗落只  
內上邊參斗落只 負數十一卜一束  
庫乙 價折錢文四十二兩 依數捧上  
爲遣 都文記背後爻周後 本文記並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如有雜談  
是去等 持此文卞正事  
畓主 自筆 幼學 文友德[着名]  
證 李德三

건륭 52년(1787, 정조11) 정미년 1월 15일 승僧 채원采元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곳이 있어서 자기매득한 땅 토지吐旨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이자답李字畓 9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3두락지 부수負數 11부 1속 곳을 전문錢文 42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도문기都文記의 배후背後에 효주爻周한 다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문우덕文友德[작명]

증證 : 이덕삼李德三

1787년 1월 15일에 유학幼學 문우덕文友德이 요용소치로 승僧 채원采元에게 토지吐旨 구정자평九亭子坪에 있는 이자답李字畓 9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3두락지 부수 11부 1속 곳을 42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도문기都文記에 효주한 다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한다고 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답주 문우덕이 직접 작성한 문서이다. 증인으로 이덕삼李德三이 참여하였다.

## 96. 1760년 김선귀金善貴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五年庚辰十二月十一日 同生兄 金善貴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亦自己<sup>74</sup>買得耕食爲白如可 公  
私債還報之道 出處無路乙仍于 不得已 求禮吐旨  
面九亭子員伏在是在 第李字畓九斗地內上邊參斗地  
只 卜數捌負庫 價折錢文四十四兩以 依數交易捧上  
爲遣 右兄前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此後良中  
某同生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此文記相考告官下  
正事

---

74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自筆 畝主 同生弟 金弼亨[着名]

건륭 25년(1760, 영조36) 경진년 12월 11일 동생형(同生兄) 김선귀(金善貴)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식(耕食)하다가 공사채(公私債)를 갚을 방도가 전혀 없어서 부득이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이자답(李字畝) 9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3두락지, 부수(負數) 8부인 곳을 전문(錢文) 44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형님 앞으로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畝主) : 동생제(同生弟) 김필형(金弼亨) [작명]

1760년 12월 11일에 동생제(同生弟) 김필형(金弼亨)이 빚을 갚기 위해 동생형(同生兄) 김선귀(金善貴)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이자답(李字畝) 9두락지 내 상변(上邊) 3두락지 8부를 44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답주 김필형이 직접 작성한 문서이다.

## 97. 1760년 김선귀(金善貴)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五年庚辰正月二十六日 長兄 金善貴前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亦父親衿得 累年耕食  
爲白如可 切有用處弊不諭 農糧不足 故不得  
已 求禮吐旨面九亭子員伏在是在 第李字畝正  
種參斗地只 負數捌負庫 價折錢文拾玖兩  
以 依數交易捧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 此後良  
中某同生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此文記相考  
告官卞正事

畚主 同生弟 弼萬[着名]

證筆 同生弟 弼亨[着名]

건륭 25년(1760, 영조36) 경진년 1월 26일 장형長兄 김선귀金善貴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부친父親께 깃득衿得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긴히 쓸 곳이 있을 뿐 아니라 농량農糧이 부족하여 부득이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이자답李字畓 정종正種 3두락지, 부수負數 8부 곳을 전문錢文 19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동생제同生弟 필만弼萬[착명]

증필證筆 : 동생제同生弟 필형弼亨[착명]

1760년 1월 26일에 동생제同生弟 김필만金弼萬이 긴히 쓸 곳이 있을 뿐 아니라 농량農糧이 부족해서 장형長兄 김선귀金善貴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이자답李字畓 정종正種 3두락지 8부 곳을 19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필證筆로 동생제同生弟 필형弼亨이 참여하였다.

## 98. 1753년 김재구金再九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八年癸酉十二月十八日 金再九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女家長生時 自己<sup>75</sup>買得

累年耕食爲自如可 移買次 不得已 求禮吐

旨面九亭子員伏在 李字畓正種參斗地只 卜

---

75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數捌負庫 價折錢文拾柒兩伍錢 依數交易捧  
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某同  
生子孫中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此文記相  
考告官下正事  
畓主 姜太善妻 召史[右掌]  
證人 同生甥 姜渭采[着名]  
證保 金汝才[着名]  
筆 徐彭甲[着名]

건륭 18년(1753, 영조29) 계유년 12월 18일 김재구金再九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지어 먹다가 이매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구례 토지면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이지답李字畓 정종正種 3두락지, 부수로는 8복인 곳을 전문 17냥 5전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한다. 이후에 어떠한 동생이나 자손 중에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상고하여 관청에 고하고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강태선姜太善의 처妻 조이召史[우장]

증인證人 : 동생甥 同生甥 강위채姜渭采[착명]

증보證保 : 김여재金汝才[착명]

필筆 : 서팽갑徐彭甲[착명]

1753년 12월 18일에 강태선姜太善의 처妻 조이召史가 이매하기 위해 김재구金再九에게 구례 토지면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이지답李字畓 3두락지 8복인 곳을 돈 17냥 5전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證人에는 생甥 강위채姜渭采가 섰고, 증보證保는 김여재金汝才가 참여하였으며, 서팽갑徐彭甲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99. 1762년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七年壬午三月十五日 出身 李時華前 明文

右明文事段 傳來祭位畚 馬山內坪秋字捌

斗落 負數二十九卜七束庫 移買次 價折錢

文捌拾柒兩 依數捧上爲遣 永永放賣爲

有矣 本文記段 他田畚并付乙仍于 背後爻周

而不得許與 日後子孫中 如有雜談 則將

此文卞正事

畚主 自筆 幼學 吳德沃[着名]

추록

馬山面下沙道里

村前秋字畚

實種八斗落

只庫乙 給價錢

九十兩 買吳生

德沃前

건륭 27년(1762, 영조38) 임오년 3월 15일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전래해온 제위답祭位畚으로 마산면 내평內坪에 있는 추자秋字 8두락지, 부수로는 29복 7속 곳을 이매하기 위해 전문 87냥에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는 다른 전답이 함께 붙어있어서 배후에 효주하고 허여하지 않는다. 이후에 자손 중에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오덕옥吳德沃[작명]

추록

마산면馬山面 하사도리下沙道里 마을 앞에 있는 추자답秋字畚 실종實種 8두락지 곳을 돈 90냥을 주고 오덕옥吳德沃에게서 샀다.

1762년 3월 15일에 오덕옥吳德沃이 이매하기 위해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마산면馬山面에 있는 추지답秋字畓 8두락지 29복 7속 곳을 돈 87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는 다른 전답 문서에 붙어있어서 주지 않았다. 답주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100. 1772년 노奴 원반元反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三十七年壬辰十一月初一日 閱生員宅奴 元反處 明文

右文爲事段 同宅基址慕字太種二斗

落只 負數十一卜七束庫果 女字太種二

斗落只 負數十一卜庫乙 矣父買得居生

是如可 窮敗之餘 移居次 右項基址四

斗落只 草家八間果 後園松竹田並以 價折

錢文五十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永永放

賣爲乎矣 落種荒牟陸斗禾數並以 成文許

給右人爲去乎 日後同生子孫良中 如有雜談

是去等 持此文告官下正事

家基主 李順孫[着名]

訂人 閑良 金漢成[着名]

筆 閑良 郭海奉[着名]

건륭 37년(1772, 영조48) 임진년 11월 1일 민생원閱生員댁 노奴 원반元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동택同宅의 기지基址인 모지慕字 태종太種 2두락지, 부수負數 11부 7속과 여자女字 태종太種 2두락지, 부수負數 11부인 곳을 나의 아버지께서 매득買得하여 살다가 가세가 궁한 나머지 이거移居를 위해 위 항목의 기지基址 4두락지, 초기草家 8칸 및 후원後園의 송죽전松竹田과 함께 전문錢文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원히 방매放賣한다. 낙종落種 황모荒牟 6두의 화곡禾穀와 함께 위 사람에게 문서를 작성하여 허급許給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가기주家基主 : 이순손李順孫[작명]

증인訂人 : 한량閑良 김한성金漢成[작명]

필筆 : 한량閑良 곽해봉郭海奉[작명]

1772년 11월 1일에 이순손李順孫이 궁색하여 이거하기 위해 민생원閔生員댁 노奴 원반元反에게 모자慕字 태종太種 2두락지 11부 7속 곳과 여자女字 태종太種 2두락지 11부 곳 및 기지基址 4두락지, 초가草家 8칸과 후원後園의 송죽전松竹田을 모두 함께 5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으로 한량閑良 김한성金漢成이 섰고, 필집으로 한량閑良 곽해봉郭海奉이 참여하였다.

## 101. 1789년 강지택姜之澤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伍拾三年己酉正月十五日 幼學 姜之澤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如可 移買次 求  
禮吐旨竹川伏在 霜字垡田 草家三旨果 太種十五  
斗落只果 竹田果 柿木及同字畚十九斗落只果 左右加  
耕田灰場並以 負數五十七負三束庫乙 價折錢文壹百  
伍拾兩捧上爲遣 路上元田耗數段 半分許除爲遣  
本文記二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若有  
是非 則以此文記告官卞正事  
自筆畚主 幼學 文昌郁[着名]

### 추록

上竹川家垡竹田  
文記姜之澤處  
買得印 卜數五十五卜



건륭 54년(1789, 정조13)<sup>76</sup> 기유년 1월 15일 유학幼學 강지택姜之澤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해 구례求禮 토지吐旨 죽천竹川<sup>77</sup>에 있는 상지霜字 대전垞田, 초가草家 3지늪, 태종太種 15두락지, 죽전竹田, 시목柿木 및 동자답同字畓 19두락지, 좌우左右 가경전加耕田 회장灰場 등 부수負數 57부 3속 곳을 전문錢文 150냥을 받고, 노상路上 원전元田의 모수牟數는 반분半分하여 제하기로 하고,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 자손 가운데 만약 시비를 따지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畓主 : 유학幼學 문창욱文昌郁[착명]

### 추록

상죽천上竹川의 가대家垞와 죽전竹田의 문기文記를 강지택姜之澤에게 매득買得함. 부수負數는 55복이다.

1789년 1월 15일에 유학幼學 문창욱文昌郁이 이매하기 위해 유학幼學 강지택姜之澤에게 구례求禮 토지吐旨 죽천竹川에 있는 상지霜字 대전垞田, 초가草家 3지늪, 태종太種 15두락지, 죽전竹田, 시목柿木 및 동자답同字畓 19두락지, 좌우左右 가경전加耕田 회장灰場 등 부수負數 57부 3속 곳을 15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추록에는 상죽천上竹川의 가대家垞와 죽전竹田 문기文記 55부를 강지택姜之澤에게서 매득했다는 기록이 붙어있다.

## 102. 1795년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六十年乙卯三月初四日 幼學 前明文

右明文事段 切有緊用處 自己買得是如

<sup>76</sup> 건륭 53년은 무신년이고, 기유년은 건륭 54년(1789, 정조13)이다.

<sup>77</sup> 죽천(竹川) 현재는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상죽마을에 해당.

伏在求禮吐旨面上竹川坪 霜字垆田太種  
 十五斗落只庫果 霜字畚十五斗落只果  
 家舍一旨三間 竹田柿木十一株 左右灰場  
 及加耕田 合負數五十三卜二束庫乙 價折錢文  
 伍拾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本文記并以 永  
 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下  
 正事  
 家垆田畚主 幼學 姜志澤[着名]  
 證 幼學 李榮東[着名]  
 筆 幼學 李基厚[着名]

건륭 60년(1795, 정조19) 을묘년 3월 4일 유학幼學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일이 있어서 자기매득한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상죽천上竹川에 있는 상자霜字 대전垆田 태종太種 15두락지와 상자답霜字畚 15두락지, 가사家舍 1지旨 3칸三間, 죽전竹田 시목柿木 11주株, 좌우 회장灰場 및 가경전加耕田 등 총 부수負數 53부 2속 곳을 전문錢文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전 답주家垆田畚主 : 유학幼學 강지택姜志澤[착명]

증證 : 유학幼學 이영동李榮東[착명]

필筆 : 유학幼學 이기후李基厚[착명]

1795년 3월 4일에 유학幼學 강지택姜志澤이 긴히 쓸 곳이 있어서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상죽천上竹川에 있는 상자대전霜字垆田 태종太種 15두락지와 상자답霜字畚 15두락지, 가사家舍 1지旨 3칸三間, 죽전竹田 시목柿木 11주株, 좌우 회장灰場 및 가경전加耕田 등 53부 2속 곳을 5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유학幼學 이영동李榮東이 썼고, 필집으로 유학幼學 이기후李基厚가 참여하였다.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상죽천上竹川에 있는 상자霜字 대전垆田 53부 2속 곳의 소유권 이동 상황을 보면, 유선호柳先浩 → 남궁참南宮岳 → 문창욱文昌郁 → 강지택姜志澤 → 문화유씨(유덕호)인 것으로 나타난다.

## 103. 1787년 문창옥文昌郁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拾九年丁未十一月十四日 幼學 文昌郁前 明文  
右明文段 自己買得 累年耕食爲如 以移  
賣次 求禮吐旨面上大坪員伏在 霜字垡田艸家  
貳旨 太種四十五斗落只 竹田菓木及加耕田果  
前後左右灰場 亦同字畚拾八斗落只 合  
負數五十五卜二束庫乙 價折錢貳百二十兩捧上爲遣  
本文記正文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或有雜談是  
去等 告官卜正事  
自筆畚主 幼學 南宮岳[着名]

건륭 52년(1787, 정조11)<sup>78</sup> 정미년 11월 14일 유학幼學 문창옥文昌郁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이매移賣를 위해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상대평上大坪에 있는 상자霜字 대전垡田 초가 2지릅, 태종太種 45두락지, 죽전竹田 과목菓木, 가경전加耕田, 전후좌우 회장灰場, 동자답同字畚 18두락지 등 총 부수負數 55부 2속 곳을 전문錢文 220냥을 받고,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혹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畚主 : 유학幼學 남궁참南宮岳[착명]

1787년 11월 14일에 유학幼學 남궁참南宮岳이 이매하기 위해 유학幼學 문창옥文昌郁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상대평上大坪에 있는 상자霜字 대전垡田 초가 2지릅, 태종太種 45두락지, 죽전竹田 과목菓木, 가경전加耕田, 전후좌우 회장灰場, 동자답同字畚 18두락지 등 총 55부 2속 곳을 22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자필 없이 남궁참 스스로 문서

---

78 건륭 49년은 갑진년(1784)이고, 정미년은 건륭 52년(1787, 정조11)이다.

를 작성하였다.

## 104. 1780년 남궁참南宮參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肆拾陸年庚子三月十六日 幼學 南宮參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是在 要用所致 求禮吐旨上竹川  
伏在霜字員 家垞田太種十五斗地 艸家兩旨 竹田菓木  
及加耕田 前後左右灰場果 同字畓拾八斗地只 負數五  
十五卜二束庫乙 價折錢文參百兩捧上爲遣 新文記正文永  
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告  
官下正事  
畓主 幼學 柳先浩[着名]  
證 幼學 崔漢景[着名]  
筆 幼學 高尚甲[着名]

건륭 45년(1780, 정조4)<sup>79</sup> 경자년 3월 16일 유학幼學 남궁참南宮參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땅을 필요한 일이 있어 구례求禮 토지吐旨 상죽천上竹川에 있는 상자霜字 가대전家垞田 태종太種 15두락지, 초가 2지旨, 죽전竹田 과목菓木, 가경전加耕田, 전후좌우의 회장灰場과 동지답同字畓 18두락지, 부수負數 55부 2속 곳을 전문錢文 300냥을 받고, 신문기新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유학幼學 유선호柳先浩[작명]

증證 : 유학幼學 최한경崔漢景[작명]

---

79 건륭 46년은 신축년(1781)이고, 경자년은 건륭 45년(1780, 정조4)이다.

필筆 : 유학幼學 고상갑高尚甲[작명]

1780년 3월 16일에 유학幼學 유선호柳先浩가 요용소치로 유학幼學 남궁참南宮參에게 구례求禮 토지  
뜯耔 상죽천上竹川에 있는 상지霜字 가대전家垵田 태종太種 15두락지, 초가 2지耔, 죽전竹田 과목菓木,  
가경전加耕田, 전후좌우의 회장灰場과 동자답同字畓 18두락지, 총 55부 2속 곳을 30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으로 유학幼學 최한경崔漢景이 참석하였고, 필집으로 유학幼學 고상갑高尚甲이  
참여하였다.

## 105. 1787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一年丁未二月初七日 通德郎 柳德浩前 明文  
右明文爲馭乎事段 移居次以 土旨面竹川霜字垵  
田二斗落只 卜數 果 草家三旨 竹田果木果 綿  
田太種二斗落只 卜數 庫 合十二卜乙 價折錢文  
十五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雜談是去等 將此文記告官下正事  
家垵主 姜珺[着名]  
筆執 鄭致明[着名]

### 추록

竹川霜字家垵  
金書房兄弟許  
買得印

건륭 52년(1787, 정조11)<sup>80</sup> 정미년 2월 7일 통덕랑通德郎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거移居를 위하여 토지면土旨面 죽천竹川 상자대전霜字垆田 2두락지와 초가 3지붕, 죽전竹田 과목果木, 면전綿田 태종太種 2두락지, 총 12부 곳을 전문錢文 1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해하니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垆主 : 강무姜斌[작명]

필집筆執 : 정치명鄭致明[작명]

### 추록

죽천竹川의 상자霜字 가대家垆를 김서방金書房 형제兄弟에게 매득買得함.

1787년 2월 7일에 강무姜斌가 이거하기 위해 통덕랑通德郎 유덕호柳德浩에게 토지면土旨面 죽천竹川의 상자霜字 대전垆田 2두락지와 초가 3지붕, 죽전竹田 과목果木, 면전綿田 태종太種 2두락지, 총 12부 곳을 15냥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필집筆執으로 정치명鄭致明이 참여하였다. 추록은 죽천竹川의 상자霜字 가대家垆를 김서방金書房 형제兄弟에게 매득買得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 106. 1787년 유룡천柳龍川댁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二年丁未二月二十一日 柳龍川宅前 明文

右明文事段 以要用所致 吐旨下竹川里

家舍二旨負數三卜塵 價折錢

文九兩 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

文書并付 故不得出給爲去乎 新文記

---

80 건륭 51년은 병오년(1786)이고, 정미년은 건륭 52년(1787, 정조11)이다.

一章 右前永永放賣爲去乎 如有雜  
談是去等 以此告官卞正事  
家垵主 自筆 金之瑚 喪不着

#### 추록

竹川霜字家垵  
田 竹田 姜書  
房處 買得  
印

건륭 52년(1787, 정조11) 정미년 2월 21일 유용천柳龍川댁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곳이 있어서 토지吐旨 하죽천리下竹川里 가사家舍 2지指 부수負數 3부 곳을 전문錢文 9냥으로 값을 정하여 방매放賣하되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문서가 함께 붙어 있어서 내어줄 수 없고, 신문기新文記 1장과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垵主 자필自筆 : 김지호金之瑚 상불착喪不着<sup>81</sup>

#### 추록

죽천竹川의 상자霜字 가대전家垵田과 죽전竹田을 강서방姜書房에게서 매득買得함.

1787년 2월 21일에 김지호金之瑚가 요용소치로 유용천柳龍川댁에게 토지吐旨 하죽천리下竹川里的 가사家舍 2지指 3복인 곳을 9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문서가 함께 붙어 있어서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김지호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며 상중이라 작명은 하지 않았다. 추록에는 죽천竹川의 상자霜字 가대전家垵田과 죽전竹田을 강서방姜書房에게서 매득買得하였다는 내용이 붙어있다.

---

81 상불착(喪不着) 존속의 상을 당한 죄인으로서 계약행위를 기피했으나, 부득이하게 계약할 경우에는 관행상 서압(署押)하지 않고 '상불착(喪不着, 상을 당해 수결을 하지 못한다)'라고 기재함.

## 107. 1787년 유용천柳龍川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二年丁未正月初六日 柳龍川宅前 明文  
右明文事段 大凶生道極難 吐旨面下竹川里  
伏在家垡霜字田十八合田太種一斗五升落  
只 負數七負三束庫 草家五旨 棗柿等  
三株并以 價折錢文三十兩 依數捧上爲  
遣 右前本文記段 他田畚并付 故新文記  
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弟兄間如有  
雜是去等 以此文下正<sup>82</sup>事  
家垡田主 自筆 幼學 金之珏 喪不着

건륭 52년(1787, 정조11) 정미년 1월 6일 유용천柳龍川댁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큰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어려워 토지면吐旨面 하죽천리下竹川里에 있는 가대家垡 상자전霜字田 18번전 태종전太種田 1두 5승락지升落只, 부수負數 7부 3속 곳과 초가草家 5지旨 및 대추나무 감나무 등 3그루를 모두 전문錢文 3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방매하되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畚이 함께 붙어있으므로 신문기新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형제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전주家垡田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김지각金之珏 상불착喪不着

1787년 1월 6일에 유학幼學 김지각金之珏이 흉년에 살아갈 길이 어려워서 유용천柳龍川 댁에게 토지면吐旨面 하죽천리下竹川里에 있는 가대家垡 상자霜字 18번전田 태종전太種田 1두 5승락지升落只 7부 3속인 곳과 초가草家 5지旨 및 대추나무 감나무 3그루를 모두 함께 3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

---

82 원문에는 延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있으므로 신문기新文記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김지각이 스스로 작성하였고 상중이라 착명은 하지 않았다.

관련문기를 통해 볼 때 유덕호는 1787년 1월과 2월 사이에 토지면 하죽천에 있는 상자霜字 대전과 그에 딸린 초가집 및 과목 등을 김지각金之珏과 김지호金之瑚 형제 및 강무姜璣에게서 각각 사들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786년 11월 16일에도 고응두高應斗에게서 상자대전 등을 사들였고, 1797년 10월 13일에도 고종열高宗說에게서도 사들였다.

## 108. 1756년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一年丙子四月初四日 李時華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買得是在 舊亭子員  
李字畓五夜七斗落只 卜數二十八卜六束  
庫乙 價折錢文柒拾兩 依數交易捧上  
爲遣 同畓庫乙本文記並以 右人前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此文  
告官卞正事  
自筆畓主 崔寅寬[着名]

### 추록

吐旨面九亭員 李  
字畓七斗落 廿八卜六束  
庫乙 買崔生員

건륭 21년(1756, 영조32) 병자년 4월 4일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곳이 있어서 매득買得한 구정자의 이자답李字畓 5배 미夜味 7두락지, 부수負數 28부 6속 곳을 전문錢文 7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동답同畓 곳

을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畝主 : 최인관崔寅寬[작명]

### 추록

토지면吐旨面 구정九亭에 있는 이자답李字畝 7두락지 28부 6속 곳을 최생원崔生員에게 매득함.

1756년 4월 4일에 최인관崔寅寬이 요용소치로 이시화李時華에게 구정자에 있는 이자답李字畝 5배미夜味 7두락지 28부 6속 곳을 7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최인관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추록에는 토지면吐旨面 구정九亭에 있는 이자답李字畝 7두락지 28부 6속 곳을 최생원崔生員에게서 매득하였다는 내용이 붙어있다.

## 109. 1732년 최인관崔寅寬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十年壬子四月二十日 幼學 崔寅寬前 明文

右明文事段 妻邊衿得畝 累年畊食爲如可 移賣次 吐

旨面伏在舊亭員 李字七斗落只 卜數三作并以二十八卜六束庫乙

價折錢文六十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一丈牌子

一丈立旨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雜談是去等

此文下正事

自筆 畝主 幼學 張鳴漢[着名]

옹정 10년(1732, 영조8) 임자년 4월 20일 유학幼學 최인관崔寅寬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처변妻邊으로부터 깃득衿得하여 여러 해 동안 경식畊食하다가 이매移賣를 위해 토지면吐旨面 구정에 있는 이자李字답 7두락지, 부수負數 3작병 28부 6속 곳을 전

문錢文 6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 패지牌子 1장, 입지立旨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 지순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 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畝主 : 유학幼學 장명한張鳴漢[작명]

1732년 4월 20일에 유학幼學 장명한張鳴漢이 이매하기 위해 유학幼學 최인관崔寅寬에게 토지면吐旨面 구정자에 있는 이자李字답 7두락지 28부 6속 곳을 6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1장, 패지牌子 1장, 입지立旨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장명한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110. 1702년 김익명金楹明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正年壬午十一月貳拾參日 金{木+盖}明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舊上典宅記上爲是在 矣父衿得畊食爲如乎  
矣上典亦 今始下來推尋仍于 吐旨面九亭子員伏在李字畝  
捌斗落只 參拾正卜伍束永立帳庫乙 舊上典牌字導  
良 價折錢文正百兩 正租拾陸石 依數捧納于上典宅  
爲遣 同人前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燒火立案  
中他田畝并付仍于 許給不得爲去乎 日後良中某人是  
乃雜談爲去等 此牌字明文告官下政事  
自筆畝主 趙位京[着名]  
訂人 孫萬載[着名]  
訂保 全二上[着名]

배자

奴渭京處

無他 故奴永立己上田畝

上典切有用處 賣用  
計料爲去乎 奴永立名帳  
九萬里伏李字畝三十  
一卜庫乙 某人處准價  
賣納上典宅爲乎矣 日  
後幸有雜談者是去等  
將此牌子告官下正事  
壬午十一月二十三日  
上典 李[着名]

강희 41년(1702, 숙종28) 임오년 11월 23일 김익명金楡明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옛 상전댁上典宅에 기록된 땅을 나의 아버지가 물려받아 경식畊食하다가 나의 상전上典이 지금 비로소 내려와 추심推尋을 하기 때문에 토지면吐旨面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이자답李字畝 8두락지 총 11부 5속 곳, 영립永立의 이름으로 양안量案에 등재된 곳을 옛 상전上典의 패자牌字에 따라 전문錢文 100냥과 정조正租 16석石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아서 상전에게 납입하고 동인同人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불타고 입안立案에는 다른 전답田畝이 함께 붙어있으므로 내어 줄 수 없다. 이후에 누군가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배자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畝主 : 조위경趙位京[착명]

증인訂人 : 손만재孫萬載[착명]

증보訂保 : 전이상全二上[착명]

## 배자

노奴 위경渭京에게

다름이 아니라 고노故奴 영립永立의 이름으로 있던 전답田畝를 상전上典이 간히 쓸 곳이 있어 팔아 쓰려고 하니, 노奴 영립永立의 이름으로 장부에 올라 있는 구만리九萬里的 이자답李字畝 31부 곳을 모인某人에게 값을 준하여 팔아서 상전댁上典宅에 납입하되, 이후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패자牌字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임오년 11월 23일

상전上典 이李[착명]

1702년 11월 23일에 조위경趙位京이 상전의 배자에 따라 김익명金楡明에게 토지면吐旨面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이자답李字畓 8두락지 11부 곳을 돈 100냥과 정조정租 16석石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대상 전답은 영립永立의 이름으로 양안量案에 등재된 곳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불타고 입안立案에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있으므로 내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증인으로 손만재孫萬載가 섰고, 증보訂保로 전이상全二上이 참여하였다.

배자는 임오년(1702)년 11월 23일에 상전上典 이나가 노녀 위경渭京에게 구만리九萬里的 이자답李字畓 31부 곳을 팔라고 위임한 내용이다.

## 111. 1732년 관노官奴 정만이鄭萬伊 소지所志

官奴 鄭萬伊

右謹陳所志後考事段 矣身亦官奴之役 依次第圓頭汗施行  
及其他公私債煩重乙仍于 矣身接訟畓庫 得決後放賣  
之計 而矣無依家口之際 同受來文記中 奈字畓文記四丈 元  
無闕失是乎等以 此後某人是乃得持 而雜談之弊爲白有  
置 憑考立旨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上典主 處分  
壬子 月三十一日

立旨成

給向事

初一日

官[署押]

불망기

壬戌八月二十日 李生員宅奴加八里處 不忘  
右不忘记事段 矣身要所致 汝

矣宅錢拾陸兩 長利還報  
次 正二月間 相報次成表事  
不忘記主 金海俊[着名]  
筆 高德鼎[着名]

관노<sup>官奴</sup> 정만이<sup>鄭萬伊</sup> 소지

이와 같이 삼가 소지를 올려 이후에 빙고하고자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관노<sup>官奴</sup>의 역을 차례에 의해 원두한<sup>圓頭汗</sup><sup>83</sup>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타 공사채<sup>公私債</sup>가 번중<sup>煩重</sup>하여서 제가 송사하고 있는 논을 득결<sup>得決</sup>(소송에서 이김)한 이후에 방매하려는 계획입니다. 저는 의지할 만한 식구가 없는데, 받아온 문기<sup>文記</sup> 가운데 내자답<sup>奈字畓</sup>의 문기<sup>文記</sup> 4장은 원래 없이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사람이거나 간에 이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을까 싶으니, 빙고할 수 있도록 입지<sup>立旨</sup>를 명령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주<sup>上典主</sup>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처분하여 주십시오.

입지<sup>立旨</sup>를 성급<sup>成給</sup>하여 줄 일이다.

초 1일.

관<sup>官</sup>[서업]

### 불망기

임술년(1732) 8월 20일에 이생원<sup>李生員</sup>댁 노<sup>奴</sup> 가팔리<sup>加八里</sup>에게 주는 불망기<sup>不忘記</sup>

위와 같이 불망기<sup>不忘記</sup>를 작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너의 <sup>덕</sup>으로부터 돈 16냥을 빌려 장리<sup>長利</sup>로 갚기로 위해 1월 2월 사이에 갚기로 하고 표를 작성한다.

불망기주<sup>不忘記主</sup> : 김해준<sup>金海俊</sup>[착명]

필<sup>筆</sup> : 고덕정<sup>高德鼎</sup>[착명]

1732년에 관노<sup>官奴</sup> 정만이<sup>鄭萬伊</sup>가 구례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자신이 송사 중인 논을 소송에서 이긴 후 방매하려고 하는데, 의지할 가족이 없고 받아온 문기 중 내자답<sup>奈字畓</sup>의 문기<sup>文記</sup> 4장에 대해 후에 빙고할 수 있게 입지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구례현감의 제김에 입지를 성급<sup>成給</sup>해주라는 판결이

---

83 원두한(圓頭汗) 밭에 심은 오이, 참외, 수박, 호박 등을 재배하는 사람.

있다.

〈불망기〉는 임술년(1732) 8월 20일에 김해준金海俊이 이생원李生員덕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불망기不忘記로, 너의 덕으로부터 돈 16냥을 장리로 빌려 1~2월 사이에 갚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 문서는 고덕정高德鼎이 작성했다.

## 112. 1732년 손효근孫孝根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十年壬子十月二十日 孫孝根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逢差圓頭汗之役舉行爲如乎  
值此凶歲 凡百菜物等事 不能擔當乙仍于  
勢不得已 矣父衿得祖上傳來是在 吐旨面  
九滿里具亭子員 奈字畚四斗落只 負數二作  
并十四卜七束庫乙 價折錢文貳拾陸兩 依數捧上  
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闕  
失 故呈立旨壹丈傳給是遣 決得立案良中背  
後爻周爲去乎 此後族屬中 如有雜談爲去等 此  
文告官下正事  
畚主 官奴 鄭萬伊[左寸]  
證人 異姓五寸 金海俊[着名]  
證保 同姓五寸 鄭寶葉  
筆執 朴愼文[着名]

### 추록

吐旨面奈字四斗

落庫乙 買金

海俊處路下

옹정 10년(1732, 영조8) 임자년 10월 20일 손효근孫孝根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원두한圓頭汗의 역역을 거행하다가 흥년을 만나 갖가지 채물菜物 등을 담당하기가 어려워졌기에 형세상 부득이하여 나의 아버지가 깃득衫得한 조상祖上 전래의 땅인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滿里 구정자具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4두락지, 부수負數 2작병 14부 7속 곳을 전문錢文 26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되 본문기本文記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입지立旨 1장을 전급傳給하고, 결득입안決得立案의 배후에 효주爻周하니, 이후 족속族屬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관노官奴 정만이鄭萬伊[좌촌]

증인證人 : 이성異姓 5촌五寸 김해준金海俊[작명]

증보證保 : 동성同姓 5촌五寸 정보엽鄭寶葉

필집筆執 : 박신문朴愼文[작명]

#### 추록

토지면吐旨面の 내자奈字답 4두락지를 노하리의 김해준金海俊에게 매득함.

1732년 10월 20일에 관노官奴 정만이鄭萬伊가 흥년을 만나 손효근孫孝根에게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滿里 구정자具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4두락지 14부 7속 곳을 26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잃어버려서 입지立旨 1장을 전급傳給하고 결득입안決得立案의 문서 뒷면에 효주爻周한다고 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이성異姓 5촌五寸 김해준金海俊이 썼고, 증보證保로 동성同姓 5촌五寸 정보엽鄭寶葉이, 필집筆執으로 박신문朴愼文이 참여하였다. 추록에는 토지면吐旨面 내자奈字 4두락지를 김해준金海俊에게서 매득하였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113. 1733년 김해준金海俊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拾壹年癸丑正月貳拾伍日 妻媧 金海俊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亦自己買得 吐旨面奈字肆斗



落只 負數二作拾肆負柒束庫 官奴鄭萬處買得爲  
有如乎 遠不能執畊 移買次 同畝價折參拾兩捧  
上爲遣 右人前本明文尙張立旨尙張 鄭萬決得  
立案一度等許給爲去乎 子孫與他族 如有是非之  
端是去等 以此文告官下正事  
畝主 自筆 妹夫 孫孝根[着名]

응정 11년(1733, 영조9) 계축년 1월 25일 처남妻媻 김해준金海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한 토지면吐旨面 내지奈字 4두락지, 부수負數 2작二作 14부 7속 곳을 관노官奴 정만鄭萬에게 매득買得하였는데, 거리가 멀어서 경작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이매移買를 위해 동답同畝를 30냥을 받고, 위 사람에게 본 명문 1장, 입지立旨 1장, 정만鄭萬의 결득입안決得立案 1통 등을 허급許給하니, 자손이나 타족他族 가운데 만약 시비를 가리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매부妹夫 손효근孫孝根[착명]

1733년 1월 25일에 매부妹夫 손효근孫孝根이 이매하기 위해 처남妻媻 김해준金海俊에게 토지면吐旨面 내지奈字 4두락지 14부 7속 곳을 3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 명문 1장, 입지立旨 1장, 정만鄭萬의 결득입안決得立案 1통 등과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손효근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114. 1743년 이재창李再昌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八年癸亥三月初六日 幼學 李再昌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亦自己<sup>84</sup>買得 累年  
耕食爲如可 勢不得已 移買次 求禮吐旨

天皇時八松亭坪員伏在 爲字畚陸斗落  
只 負數三十一卜八束庫 價折錢文陸拾兩 依數交易  
捧上爲遣 右人前前後本文記并以 永永放賣  
爲去乎 此後同生及上佐某人謀計雜談爲去等  
此文記告官下正事  
畚主 僧 再贊[着名]  
訂人 僧 策坦[着名]  
筆 僧 款察[着名]

### 추록

吐旨面八松亭爲  
字畚六斗落買  
僧再贊

건륭 8년(1743, 영조19) 계해년 3월 6일 유학幼學 이재창李再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형세상 부득이 이매移買를 위해 구례求禮 토지吐旨 천황치天皇峙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위자답爲字畚 6두락지, 부수負數 31부 8속인 곳을 전문錢文 6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동생同生이나 상좌上佐의 어떤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승僧 재찬再贊[착명]

증인訂人 : 승僧 책탄策坦[착명]

필筆 : 승僧 관찰款察[착명]

### 추록

토지면吐旨面 팔송정八松亭의 위자답爲字畚 6두락지를 승僧 재찬再贊에게서 매득함.

---

84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1743년 3월 6일에 승僧 재찬再贊이 이매하기 위해 유학幼學 이재창李再昌에게 구례求禮 토지吐旨 천황치天皇時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위치답爲字畓 6두락지 31부 8속 곳을 6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승僧 책탄이 썼고, 필집으로 승僧 관찰欸察이 참여하였다. 추록에는 토지면吐旨面 팔송정八松亭의 위치답爲字畓 6두락지를 승僧 재찬再贊에게서 매 득하였다는 내용이 붙어있다.

토지면吐旨面 천황치天皇時에 있는 위치답爲字畓 9두락지 내에 대한 소유권은 나의일羅儀日 → 전후백全厚白·처妻 이조이李召史 → 최선백崔善白·최치화崔致華 → 재찬再贊 → 이재창李再昌으로의 이동된 것과 김갯동金佗洞 → 승僧 해명海明·탈인脫忍 → 이생원李生員의 노부 잉질산苧叱山·이수천李守天 → 이주국李柱國으로 이동됨을 살필 수 있다.

## 115. 1733년 재찬再讚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拾壹年癸丑六月貳拾柒日 再讚處 明文  
 右明文爲馭乎事段 矣身亦自己買得 累年耕  
 食爲如可 移買<sup>85</sup>次以 勢不得已 吐旨天皇時伏在  
 爲畓陸斗落只負數參拾壹卜捌束內 下邊壹  
 夜味三斗落只 負數拾伍卜八束塵 價折錢文  
 拾伍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本文記段不得  
 傳給 他田畓并付仍于 背後 永永放賣爲去乎 後  
 次良中同生子息遠族中 若有雜談爲去等  
 持此文記 告官卞爲乎事  
 畓主 幼學 崔致華[着名]  
 證人 歸應[着名]  
 筆執 山人 處軒[着名]

85 원문에는 利賣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옹정 11년(1733, 영조9) 계축년 6월 27일 재찬再讚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이매移賣를 위하여 형세상 부득이 토지吐旨 천황치天皇峙에 있는 위자답爲字畓 6두락지 부수負數 31부 8속 내의 하변下邊 1배미夜味 3두락지, 부수負數 15부 8속 곳을 전문錢文 1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 있어서 전급傳給이 불가하니 후면에 배탈하고 영원히 방매한다. 이후에 동생同生 자식子息 원족遠族 가운데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유학幼學 최치화崔致華[작명]

증인證人 : 귀응歸應[작명]

필집筆執 : 산인山人 처헌處軒[작명]

1733년 6월 27일에 유학幼學 최치화崔致華가 이매하기 위해 승 재찬再讚에게 토지吐旨 천황치天皇峙에 있는 위자답爲字畓 6두락지 31부 8속 내의 하변下邊 1배미夜味 3두락지 15부 8속 곳을 1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 있어서 전급傳給이 불가하니 후면에 배탈한다고 하였다. 증인證人으로 귀응歸應이 썼고, 필집筆執으로 산인山人 처헌處軒이 참여하였다.

## 116. 1734년 재찬再贊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拾貳年甲寅正月二十一日 再贊處 明文  
右明文爲事段 矣身亦自己<sup>86</sup>買得 累年畊食爲  
白如可 勢不得已 移買<sup>87</sup>次 吐旨天皇峙八松亭坪  
員伏在 爲字畓陸斗落只卜數三十一卜八束內 上邊

86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87 원문에는 賣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參斗落只 卜數拾陸卜庫乙 價折錢文貳拾柒  
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本記  
二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幸有  
子孫中 如有雜談爲去等 此文以告官卜  
正事  
畚主 幼學 崔致華[着名]  
訂參 堉 幼學 李震暉[着名]  
筆執 宇謙[着名]

용정 12년(1734, 영조10) 갑인년 1월 21일 재찬再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형세상 부득이  
이매를 위해 토지吐旨 천황치天皇峙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위자답爲字畓 6두락지 부수負數 31부 8속 내  
의 상변上邊 3두락지, 부수負數 16부 곳을 전문錢文 27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만약 자손子孫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  
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유학幼學 최치화崔致華[착명]

증참訂參 : 서堉 幼學 이진엽李震暉[착명]

필집筆執 : 우겸宇謙[착명]

1734년 1월 21일에 유학幼學 최치화崔致華가 이매하기 위해 재찬再贊에게 토지吐旨 천황치天皇峙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위자답爲字畓 6두락지 31부 8속 내의 상변上邊 3두락지 16부 곳을 27냥에 방매  
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참訂參으로 사위 유학幼學 이진엽李  
震暉이, 필집筆執으로 우겸宇謙이 참여하였다.

## 117. 1697년 최선백崔善白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參拾陸年丁丑三月拾參日 崔善白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貧寒所致以 女矣家夫生時 自己買得  
累年同居畊食爲在 吐旨天皇員伏在 爲字畚陸斗落只  
負參拾正貳束庫乙 價折正租全參拾伍石 及白木參疋以 依  
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正文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日良中 幸有某同生子孫族屬中雜談爲去等 將次  
文記相考告官下正事  
畚主 故全厚白 妻 李召史[右寸]  
訂人 裊莫立[左寸]  
筆執 李時敏[着名]

강희 36년(1697, 숙종23) 정축년 3월 13일 최선백崔善白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빈한소치로 나의 남편이 살아 계실 때 자기매득해서 여러 해 동거同居하며 경식畊食한 토지吐旨 천황天황에 있는 위치답爲字畚 6두락지, 부수負數 31부 2속 곳을 정조正租 전소 35석石과 백목白木 3필疋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 혹시 동생同生 자손이나 족속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고故 전후백全厚白 처妻 이조이李召史[우촌]

증인訂人 : 배막립裊莫立[좌촌]

필집筆執 : 이시민李時敏[착명]

1697년 3월 13일에 고故 전후백全厚白 처妻 이조이李召史가 빈한소치로 최선백崔善白에게 토지吐旨 천황天황에 있는 위치답爲字畚 6두락지 31부 2속 곳을 정조正租 전소 35석石과 백목白木 3필疋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에 배막립裊莫立이 썼고, 필집筆執으로 이시민李時敏이 참여하였다.

## 118. 1690년 전후백全厚白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貳拾玖年庚午三月拾伍日 全厚白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身亦祖上傳來衿得耕食爲如可  
矣身價布 一族尙衣院價布 及受食還上米太租并貳拾餘石  
出處無路乙仍于 勢不得已 吐旨天皇員伏在爲字畚陸斗  
落只 負數參拾正負貳束庫乙 價折正租全肆拾捌  
石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 後次  
良中同生族類等是乃雜談爲去等 此文記用良  
告官卞正爲乎事  
自筆 畚主 羅儀日[着名]  
訂人 鄭士吉[着名]  
訂保 申泡[着名]

강희 29년(1690, 숙종19) 경오년 3월 15일 전후백全厚白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아 경식耕食하다가 나의 가포價布<sup>88</sup>와 일족의 상의원尙衣院 가포 및 받아먹은 환자還上의 미米 태太 조租가 모두 20여 석인데 널 길 이 없어 형세상 부득이 토지吐旨 천황天皇에 있는 위자답爲字畚 6두락지, 부수負數 31부 2속 곳을 정조正租 전全 48석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족류族類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畚主 : 나의일羅儀日[작명]

증인訂人 : 정사길鄭士吉[작명]

증보訂保 : 신포申泡[작명]

---

88 가포(價布) 역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그 대신 군포에 기준하여 바치는 베를 이르던 말.

1690년 3월 15일에 나의일羅儀日이 가포價布 및 환자를 갚기 위해 전후백全厚白에게 토지吐旨 천황 天皇에 있는 위자답爲字畓 6두락지 31부 2속 곳을 정조正租 전소 48석石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에 정사길鄭士吉이 섰고, 증보訂保로 신포申洵가 참여하였다.

## 119. 1750년 이주국李柱國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拾伍年庚午十二月十二日 李柱國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吐旨大川員

爲字衿得畓三斗落 卜數十卜庫 價

折錢文拾柒兩 依數捧上爲遣 右人

前本文並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下正事

畓主 李守天[着名]

筆 同姓六寸 守璧[着名]

건륭 15년(1750, 영조26) 경오년 12월 12일 이주국李柱國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를 위해 토지吐旨 대천大川에 있는 깃득衿得한 논 위자답爲字畓 3두락지, 부수負數 10부를 전문錢文 17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이수천李守天[작명]

필筆 : 동성 6촌同姓六寸 수벽守璧[작명]

1750년 12월 12일에 이수천李守天이 이매하기 위해 이주국李柱國에게 대천大川에 있는 위자답爲字畓 3두락지 10부를 17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필집으로



동성 6촌同姓六寸 수벽守壁이 참여하였다.

## 120. 1731년 노奴 잉질산苧叱山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八年辛亥正月十五日 李生員奴 苧叱山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師僧海明 自己買得 天  
皇峙員伏在 爲字十九番九卜八束一夜三  
斗落庫乙 師僧臨終時 各以買得文書分  
衿爲乎等以 累年畊食爲如可 意外師  
僧同姓姪子及姪女婿數三人等 稱以其矣  
三寸臨終時無區處文書是如 同番庫乙 放  
賣分食次 累度來侵爲乎等以 矣僧  
不能據執 同番庫乙 價折錢文二十七兩捧  
上爲遣 與三人等各各均分參訂爲旂 同  
番本文記并以 右人宅永永放賣爲去  
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以下正事

番主 僧 脫忍[着名]

訂人 師僧 同姓姪 金有察[着名]

師僧 姪女婿 趙世太[着名]

姪女婿 李莫立[着名]

筆執 孫必扈[着名]

옹정 9년(1731, 영조7)<sup>89</sup> 신해년 1월 15일 이생원李生員의 노奴 잉질산苧叱山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사승師僧 해명海明이 자기매득한 천황치天皇峙에 있는  
위자爲字 19번답 9부 8속 1배미 3두락지를 사승師僧이 임종(臨終할 때에 매득買得 文書를 각자에게 분

깃分飡하였기에 여러 해 경식畊食하였는데, 뜻밖에 사승의 동성同姓 질녀姪子와 질녀서姪女婿 몇 명이 와서 그의 삼촌이 임종할 때에 구쳐문서가 없었다고 칭하면서 위 논을 방매하여 나누어 먹자고 여러 차례 와서 괴롭히므로 내가 계속하여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위 논을 전문錢文 27냥을 받고, 위 세 사람과 함께 각각의 몫으로 균분하면서 증인으로 참여하였다. 해당 토지의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위 덕으로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番主 : 승僧 탈인脫忍[작명]

증인訂人 : 사승師僧 동성질同姓姪 김유실金有察[작명]

사승師僧 질녀서姪女婿 조세태趙世太[작명]

질녀서姪女婿 이막립李莫立[작명]

필집筆執 : 손필후孫必屋[작명]

1731년 1월 15일에 승僧 탈인脫忍이 균분하기 위해 이생원李生員의 노奴 잉질산苧叱山에게 천황치天皇峙에 있는 위자爲字답 9부 8속 3두락지를 27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사승師僧의 동성질同姓姪 김유실金有察, 사승師僧의 질녀서姪女婿 조세태趙世太·이막립李莫立이 참여하였고, 필집筆執으로 손필후孫必屋가 참여하였다.

## 121. 1706년 승僧 해명海明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伍年丙戌肆月二十五日 僧 海明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自己買得 積年畊食爲白

如可 千萬意外 矣族下次得亦 本縣人吏田稅色 逢差爲白

在如中 京上納時無面數多 而矣身處錢文別音多數出

定爲乎等以 他條備給之策 出處無路乙仍于 勢不得已 吐旨面

89 옹정 8년은 경술년(1730)이고, 신해년은 옹정 9년(1731, 영조7)이다. 신해년을 기준으로 한다.

天皇時員伏在 爲字畚玖斗落只 卜數參拾肆卜參束內 下邊壹  
 夜味參斗落只 負數拾壹卜伍束庫乙 價折錢文陸拾兩以 依數交  
 易捧上爲遣 右人處 本文記段 他田畚并付仍于 本文記中背  
 後爻周爲遣 不得許給爲去乎 後次良中 同生及子孫中 如有  
 雜談爲去等 將此文記告官 卞定爲乎事  
 畚主 金佺同[着名]  
 證人 同生弟 僧 神祐[着名]  
 訂保 朴桂成[着名]  
 筆執 僧 普遠[着名]

강희 45년(1706, 숙종32) 병술년 4월 25일 승僧 해명海明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천만뜻밖에 나의 족하族下 차득次得이 본현本縣의 아전인 전세색田稅色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전세를 서울에 납상할 때에 무면無面 숫자가 많아서 나에게도 그 전문錢文을 별음別音<sup>90</sup>한 것이 다수로 정해졌다. 다른 조목도 마련할 방책이 없어서 형세상 부득이하게 토지면吐旨面 천황치天皇峙에 있는 위치답爲字畚 9두락지 부수負數 34부 3속 내의 하변下邊 1배미夜味 3두락지, 부수負數 11부 5속 곳을 전문錢文 6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畚이 함께 붙어있으므로 본문기本文記 중 배후에 효주爻周하고 허급하지 않는다.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김갯동金佺同[착명]

증인證人 : 동생제同生弟 승僧 신우神祐[착명]

증보訂保 : 박계성朴桂成[착명]

필집筆執 : 승僧 보원普遠[착명]

1706년 4월 25일에 김갯동金佺同이 별음을 갖기 위해서 승僧 해명海明에게 토지면吐旨面 천황치天皇峙에 있는 위치답爲字畚 9두락지 34부 3속 내의 하변下邊 1배미夜味 3두락지 11부 5속 곳을 60냥에

90 별음(別音) 벼름. 백성이 사망하거나 도망하면 아전들이 그 자의 동성 8촌, 이성 6촌에게 포획한 세금이나 공채(公債)를 물리는데, 그 친족의 범위를 넘거나 평소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물리는 것.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있으므로 본문기本文記의 뒷면에 효주爻周한다고 하였다. 증인證人으로 동생제同生弟 승僧 신우神祐가 썼고, 증보訂保로 박계성朴桂成이, 필집筆執으로 승僧 보원普遠이 참여하였다.

## 122. 1748년 달연達演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拾三年戊辰三月拾二日 達演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自己<sup>91</sup>買得 累年畊食是多可  
勢不得已 求禮吐旨面柳木亭坪員伏在 露字  
畓伍斗落只內 上邊伍斗落只 負數十六卜四束  
庫乙 價折錢文參拾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同生  
幸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告  
官卜正事  
畓主 摠敏[着名]  
證人 快澄[着名]  
筆 山人 風哲[着名]

건륭 13년(1748, 영조24) 무진년 3월 12일 달연達演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형세상 부득이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15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5두락지, 부수負數 16부 4속 곳을 전문錢文 3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

---

91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충민摠敏[작명]

증인證人 : 쾌징快澄[작명]

필筆 : 산인山人 풍철風哲[작명]

1748년 3월 12일에 충민摠敏이 부득이 하여 달연達演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畵 15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5두락지 16부 4속 곳을 3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쾌징快澄이 썼고, 필집으로 산인山人 풍철風哲이 참여하였다.

## 123. 1735년 세민世敏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十三年乙卯二月十六日 世敏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亦自己買得 累年  
畊食爲如可 免俗時 百事無路乙仍于 勢  
不得已 求禮吐旨面柳木亭員 露字畵十五  
斗落只內 上邊伍斗落只 負數十六負四束庫  
乙 價折錢文參拾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本  
文記并以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幸  
有日後兩邊子孫同生遠族之中 雜談爲去等  
將此文卷告官下正事  
畵主 通政大夫 李先益[着名]  
證人 曹太英[着名]  
筆執 山人 覺領[着名]

옹정 13년(1735, 영조11) 을묘년 2월 16일 세민世敏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속인을 면할 때 온갖 일에 방도가 없어서 형세상 부득이하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15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5두락지, 부수負數 16부 4속 곳을 전문錢文 3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만약 이후에 양쪽의 자손子孫 동생同生 원족遠族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선익李先益[착명]

증인證人 : 조태영曹太英[착명]

필집筆執 : 산인山人 각령覺領[착명]

1735년 2월 16일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선익李先益이 부득이한 일로 세민世敏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15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5두락지 16부 4속 곳을 3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조태영曹太英이 썼고, 필집筆執으로 산인山人 각령覺領이 참여하였다.

## 124. 1751년 승僧 성탄成坦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六年辛未三月二十五日 僧成坦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自己<sup>92</sup>買得 多年畊食爲  
如可 移買次 勢不得已 求禮柳木亭坪員  
伏在 露字畓十伍斗洛只內 上邊伍斗落只  
卜數十六卜四束塵 價折錢文參拾九兩  
以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本明文并以 永永

92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放賣爲去乎 日後上佐族屬中 幸有雜淡

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畚主 僧 達演[着名]

訂人 李時三

筆執 僧 有澄[着名]

건륭 16년(1751, 영조27) 신미년 3월 25일 승僧 성탄成坦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해 형세상 부득이 구례求禮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로자담露字畓 15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5두락지, 부수負數 16부 4속 곳을 전문錢文 39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 명문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상좌上佐 족속族屬 가운데 혹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승僧 달연達演[작명]

증인訂人 : 이시삼李時三

필집筆執 : 승僧 유징有澄[작명]

1751년 3월 25일에 승僧 달연達演이 이매하기 위해 승僧 성탄成坦에게 구례求禮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로자담露字畓 15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5두락지 16부 4속 곳을 39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은 이시삼李時三이 썼고, 필집筆執으로 승僧 유징有澄이 참여하였다.

## 125. 1731년 이선익李先益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捌年辛亥九月十八日 李先益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自己<sup>93</sup>買得 累年畊食

爲如可 要用所致以 勢不得已 吐旨面柳木亭員

露字畚十五斗落只內 上邊五斗落只卜數十六卜  
 四束庫乙 價折錢文貳拾柒兩 依數交易捧  
 上爲遣 右人處本文記三丈并以 永永放賣爲  
 去乎 日後良中同生子孫族屬中 若有雜  
 談是去等 此文告官卞正事  
 畚主 禹丁良[着名]  
 訂人 高貴介[着名]  
 筆執 李元弼[着名]

옹정 9년(1731, 영조7)<sup>94</sup> 신해년 9월 18일 이선익李先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 형세상 부득이하여 토지면吐旨面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畚 15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5두락지, 부수負數 16부 4속 곳을 전문錢文 27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이나 족속에서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우정량禹丁良[작명]  
 증인訂人 : 고귀개高貴介[작명]  
 필집筆執 : 이원필李元弼[작명]

1731년 9월 18일에 우정량禹丁良이 요용소치로 이선익李先益에게 토지면吐旨面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畚 15두락지 내의 상변上邊 5두락지 16부 4속 곳을 27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은 고귀개高貴介가 썼고, 필집筆執으로 이원필李元弼이 참여하였다.

93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94 옹정 8년은 경술년(1730)이고, 신해년은 옹정 9년(1731, 영조7)이다.



## 126. 1714년 승僧 취엄就嚴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參年甲午二月初八日 僧 就嚴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父亦自己買得 累年耕食爲如可  
慘遭凶歲 生道爲難仍于 勢不得已 吐旨九萬  
里杏亭下員伏在 海字畝二斗落只 卜數五  
負六束 進云帳庫 價折錢文二十柒兩以 交易  
捧上爲遣 右人處本文記二丈并以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良中 同生子孫中 雜談之  
弊是去等 此文記相考卜正事  
畝主 徐宗建[着名]  
證 同生兄 僧 道岑[着名]  
筆執 同生兄 山人 泰和[着名]

강희 53년(1714, 숙종40) 갑오년 2월 8일 승僧 취엄就嚴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아버지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참혹한 흉년을 만나 살아갈 방도가 없어 형세상 부득이하게 토지吐旨 구만리九萬里 행정杏亭 아래에 있는 해자답海字畝 2두락지, 부수負數 5부 6속, 진운進云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록된 곳을, 전문錢文 27냥을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영원히 방대放賣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서종건徐宗建[작명]

증證 : 동생형同生兄 승僧 도잠道岑[작명]

필집筆執 : 동생형同生兄 산인山人 태화泰和[작명]

1714년 2월 8일에 서종건徐宗建이 흉년을 만나 승僧 취엄就嚴에게 토지吐旨 구만리九萬里 행정杏亭 아래에 있는 해자답海字畝 2두락지 5부 6속 [진운進云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록된] 곳을 27냥에 방대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방대하였다. 증인으로 동생형同生兄 승僧 도잠이 썼

고, 필집筆執으로 동생형同生兄 산인山人 태화泰和가 참여하였다.

## 127. 1718년 노奴 장발長發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柒年戌貳月十五日 李生員宅奴 長發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亦自己買得 累年耕食爲如可  
生道爲難乙仍于 勢不得已 吐旨九萬里松亭子

下坪員伏在 海字畓二斗落只負數伍卜六  
束 進云帳庫乙 價折錢文貳拾柒兩以 依數  
交易捧上爲遣 右人處本文記三丈并以 永  
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若有上佐及俗族  
中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

正事

畓主 僧 就嚴[着名]

證人 僧 道峯[着名]

證參 徐宗建[着名]

筆執 山人 泰和[着名]

강희 57년(1718, 숙종44) 무술년 2월 15일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장발長發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살아갈 방도를 찾기가 어려워 형세상 부득이 진운進云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록된, 토지吐旨 구만리九萬里 송정자松亭子 아래에 있는 해자답海字畓 2두락지, 부수負數 5부 6속 곳을 전문錢文 27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상좌上佐나 속족俗族 중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승僧 취엄就嚴[작명]

증인證人 : 승僧 도잠道岑[작명]

증참證參 : 서종건徐宗建[작명]

필집筆執 : 산인山人 태회泰和[작명]

1718년 2월 15일에 승僧 취임就嚴이 부득이한 일로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장발長發에게 토지吐旨 구만리九萬里 송정자 아래에 있는 해자답海字畓 2두락지 5부 6속 곳을 27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진운進운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록된 곳이다.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방매放賣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승僧 도잡이 썼고, 증참證參으로 서종건徐宗建이, 필집筆執으로 산인山人 태회泰和가 참여하였다.

## 128. 1656년 김시양金時陽 토지명문土地明文

順治拾伍年丙申參月廿九日 金時陽處 明文

右明文爲馭乎事段 矣身亦祖上傳來畊食衿得爲有如可

吐旨九萬松亭下伏在 海字田太種貳斗落只 卜數五卜六束

庫乙 價折正木拾伍疋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處永永放賣

爲去乎 後此良中 同生子息族類等是乃 雜談爲去等 此文

內乙用良 告官卞定爲乎事

田主 禹進云[著名]

訂人 姜永泉[著名]

訂保 金厚謙[著名]

筆執 金應先[著名]

순치 13년(1656, 효종7)<sup>95</sup> 병신년 3월 29일 김시양金時陽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아 경식畊食하다가 토지吐旨 구만九萬 송정松亭 아래의 해자전海字田 태종太種 2두락지, 부수負數 5부 6속 곳을 정목正木 15필疋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식子息 족류族類 들

이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우진운禹進云[작명]

증인訂人 : 강영록姜永祿[작명]

증보訂保 : 김후겸金厚謙[작명]

필집筆執 : 김응선金應先[작명]

1656년 3월 29일에 우진운禹進云이 김시양金時陽에게 토지吐旨 구만九萬 송정松亭 아래의 해자전海字田 태종太種 2두락지 5부 6속 곳을 정목正木 15필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으로 강영록姜永祿이 섰고, 증보訂保로 김후겸金厚謙이, 필집筆執으로 김응선金應先이 참여하였다.

## 129. 1707년 서상문徐尙文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四十六年丁亥二月初九日 徐尙文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祖上傳來衿得畊食爲如可 要用所致以 勢

不得已 吐旨九萬松亭下伏在 海字田太種貳斗落只 卜數伍

卜陸束庫乙 價折錢文柒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同

人處 本文記一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同生子

孫中 若有雜談爲去等 此文記告官卜正事

畚主 自筆 金進夏[着名]

강희 46년(1707, 숙종 33) 정해년 2월 9일 서상문徐尙文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아 경식畊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

---

95 순치 15년은 무술년(1658)이고, 병신년은 순치 13년(1656, 효종7)이다.

어 부득이 토지吐旨 구만九萬 송정松亭에 있는 해자전海字田 태종太種 2두락지, 부수負數 5부 6속을 전 문錢文 7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김진하金進夏[착명]

1707년 2월 9일에 김진하金進夏가 서상문徐尙文에게 토지吐旨 구만九萬 송정松亭에 있는 해자전海字田 태종太種 2두락지 5부 6속 곳을 7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김진하金進夏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130. 1722년 이희증李希曾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六十二年壬寅八月十六日 幼學 李希曾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爲如可  
生道爲難乙仍于 吐旨面九萬松亭子下坪員  
伏在海字畝二斗落 負數六卜七束庫乙 價  
折錢文參拾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  
前本文記四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良中 幸有雜談是去等 此文記告官事  
畝主 幼學 李壽益[着名]  
筆 幼學 李東尹[着名]

추록

海字畝二斗二作並七卜三束  
買李守益  
量年立

강희 62년(1722, 경종2) 임인년 8월 16일 유학幼學 이희증李希曾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살아갈 방도를 찾기가 어려워 토지면吐旨面 구만九萬 송정자松亭子 아래에 있는 해자답海字畓 2두락지, 부수負數 6부 7속 곳을 전문錢文 3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4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혹시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할 일이다.

답주畓主 : 유학幼學 이수익李壽益[작명]

필筆 : 유학幼學 이동윤李東尹[작명]

### 추록

해자답海字畓 2두락지 2작병 7복 3속을 이수익李守益에게서 매득함. 양안을 만든 해에 세움.

1722년 8월 16일에 유학幼學 이수익李壽益이 생도가 위난하여 유학幼學 이희증李希曾에게 토지면吐旨面 구만九萬 송정자松亭子 아래에 있는 해자답海字畓 2두락지 6부 7속곳을 3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4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필집으로 유학幼學 이동윤李東尹이 참여하였다. 추록에는 해자답海字畓 2두락지 2작병 7부 3속 곳을 이수익李守益에게서 매득하였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131. 1725년 이원식李源植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三年乙巳十二月二十日 幼學 李源植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自己買得 九

亭子員 奈字畓肆斗落只 卜

數拾四卜二束庫乙 價折錢文肆

拾兩 依數捧爲遣 本文記三丈

並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

有雜談是去等 此文卜正事

畓主 自筆 幼學 李守漸[着名]

옹정 3년(1725, 영조1) 을사년 12월 20일 유학幼學 이원식李源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를 위해 자기매득한 구정자九亭子の 내자답奈字畓 4두락지, 부수負數 14부 2속 곳을 전문錢文 4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이수점李守漸[착명]

1725년 12월 20일에 유학幼學 이수점李守漸이 이매하기 위해 유학幼學 이원식李源植에게 구정자九亭子の 내자답奈字畓 4두락지 14부 2속 곳을 4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3장도 함께 영원히 방매하였다. 이수점이 직접 문서를 작성했다.

## 131-1. 1724년 이수점李壽漸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二年甲辰十二月二十八日 同姓六寸弟 壽漸處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 仇亭子員奈

字畓肆斗落只 拾肆卜貳束庫乙 價

折錢文伍拾兩 依數捧上爲遣 本

文記二丈並以 永永放賣爲乎矣 自己

買得文記段 他田畓並付 故不得許與

此後時此中 如有雜談是去等

以此卜正事

畓主 自筆 李壽寅[着名]

옹정 2년(1724, 경종4) 갑진년 12월 28일 동성 6촌제同姓六寸弟 수점壽漸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구정자仇亭子の 내자답奈字畓 4두락지, 14부 2

속 곳을 전문錢文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며, 자기매득한 문기文記에는 다른 전답田畝이 함께 붙어있으므로 내어줄 수 없다. 이후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이수인李壽寅[작명]

1724년 12월 28일에 이수인李壽寅이 동성 6촌제同姓六寸弟 수점壽漸에게 구정자仇亭子の 내자답奈字畝 4두락지 14부 2속을 5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이수인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132. 1705년 박각동朴峇同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肆年乙酉十二月初五日 族下 朴峇同處 明文  
右明文事段 女矣身家夫生時 同居買得田畝 累年  
畊食爲白如可 女矣身男女間無子息 故家夫同姓族下二上乙 養  
子爲定 家夫死後三年殺癸之後 二上身死 則女矣身飢死  
仍于 不可不吐旨面九萬里槐亭子坪員伏在 奈字畝肆斗落  
只庫 負數二作并拾肆負貳束庫乙 當初二上處許給爲白如可  
女矣身既至八十餘歲 四顧無助 故大無之凶年 生離爲難仍于 家  
夫同姓族下峇同處放賣爲乎矣 後次子孫中相爭之弊是白良置  
爲先他處許給田畝 又於他處放賣緣由導良 立旨成置後 族  
下峇同處 更爲放賣爲去乎 奈字畝肆斗落只 負數拾肆  
負貳束庫乙 價折則正租貳拾參石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貳丈爲遣 立旨所志壹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若有  
後日良中 子孫族屬中是乃 雜談相爭之弊是去等 文記  
立旨相考 告官別樣重治施行事  
畝主 朴峇福妻 金召史[右掌]  
證人 孫以華[着名]



證保 金今奉[着名]

筆執 金尙白[着名]

강희 44년(1705, 숙종31) 을유년 12월 5일 족하族下 박각동朴軻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살며 매득買得한 전답田畓을 여러 해 경식畊食하였는데, 우리 부부간에는 자식이 없어서 남편의 동성同姓 조카族下 이상二上을 양자養子로 정하였다. 남편 사후 3년 살계殺癸 후에 이상二上도 죽었으니, 내가 굶어 죽을 상황이 되어 부득이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 괴정자槐亭子에 있는 내지답奈字畓 4두락지, 부수負數 2작병 14부 2속 곳을 당초에는 이상二上에게 허급許給하였는데, 내가 80여 세가 되어 사망을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큰 흉년을 만나자 살아갈 방도가 전무하므로 남편의 동성同姓 족하 각동에게 방매放賣한다. 이후에 자손子孫 가운데 서로 분쟁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므로 우선 다른 곳에 허급許給 전답을 또 다른 곳에 방매放賣한다는 연유에 따라 입지立帖을 만들어 둔 다음 족하 각동에게 다시 방매放賣한다. 내지답奈字畓 4두락지, 부수負數 14부 2속 곳을 정조正租 23석石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2장, 입지立帖 소지所志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자손이나 족속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서로 분쟁하는 폐단이 발생한다면 문기文記와 입지立帖을 서로 살펴 관에 고하여 특별히 중치重治할 일이다.

답주畓主 : 박낙복朴尙福 처妻 김조이金召史[우장]

증인證人 : 손이화孫以華[작명]

증보證保 : 김금봉金今奉[작명]

필집筆執 : 김상백金尙白[작명]

1705년 12월 5일에 박낙복朴尙福의 처妻 김조이金召史가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 괴정자槐亭子에 있는 내지답奈字畓 4두락지 14부 2속 곳을 족하族下 박각동朴軻同에게 정조正租 23석石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2장, 입지立帖 소지所志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손이화孫以華가 썼고, 증보證保로 김금봉이, 필집筆執으로 김상백金尙白이 참여하였다.

### 133. 1694년 박낙복朴恪福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三十三年甲戌十二月十九日 朴恪福處 明文

右明文事段 奴矣上典四宅亦俱處 故吐旨九萬里居奴永男  
名付 九亭員伏在奈字二作并拾四卜五束庫良中 同里居私  
奴朴恪福處放賣 受價納宅後 此牌子據明文成給向事亦爲  
白有等以 同上典牌子導良 價折雌牛壹隻捧上爲遣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奴矣同生及子孫中 更生謀計雜談  
爲去乙等 將此文告官卞正事

畚主 奴 命先[左寸]

證人 趙位京[着名]

筆執 金聲振[着名]

강희 33년(1694, 숙종20) 갑술년 12월 19일 박낙복朴恪福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奴]의 상전上典 4택宅이 구처하기 때문에 토지吐旨 구만리九萬里에 사는 노奴 영남永男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록된 구정九亭에 있는 내지奈字답 2작병 14부 5속 곳을 같은 마을에 사는 사노私奴 박낙복에게 방매放賣하고 값을 받아 위 댁에 들인 후, 이 배자에 따라 명문을 성급成給하라고 하셨으므로 동同 상전의 배자에 따라 암소 1척隻을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나의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다시 이의를 제기하려는 뜻을 낸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노奴 명선命先[좌촌]

증인證人 : 조위경趙位京[작명]

필집筆執 : 김성진金聲振[작명]

1694년 12월 19일에 노奴 명선命先이 상전의 분부에 따라 박낙복朴恪福에게 토지吐旨 구정九亭에 있는 내지奈字답 14부 5속 곳을 암소 1척隻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위 땅은 구만리九萬里에 사는 노奴 영남永男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록된 된 곳이다. 증인證人으로서 조위경趙位京이 썼고, 필집筆

執으로 김성진金聲振이 참여하였다.

## 134. 1725년 이원식李源植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三年乙巳十月二十日 幼學 李源植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自己買得 九亭子員  
奈字畚肆斗落 負數十四卜二束庫乙 價  
折錢文貳拾參兩 依數捧上爲遣 本  
文記三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幸有雜談是去等 此文下正事  
畚主 自筆 幼學 李守漸[着名]

옹정 3년(1725, 영조1) 을사년 10월 20일 유학幼學 이원식李源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를 위해 자기매득한 구정자九亭子の 내자답奈字畚 4두락지, 부수負數 14부 2속 곳을 전문錢文 23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이수점李守漸[작명]

1725년 10월 20일에 유학幼學 이수점李守漸이 이매하기 위해 유학幼學 이원식李源植에게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畚 4두락지 14부 2속 곳을 23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이수점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135. 1724년 이수점李守漸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二年甲辰十二月二十八日 同姓六寸弟 守漸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自己買得 九亭

子員奈字畚肆斗落十四卜二束

庫 價折錢文貳拾肆兩 依數捧

上爲遣 本文記二丈並 永永放賣

爲乎矣 買得文記段 他田畚並付

故不得許與 此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下正事

畚主 自筆 李守斌[着名]

옹정 2년(1724, 경종4) 갑진년 12월 28일 동성同姓 6촌제六寸弟 이수점李守漸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구정자九亭子の 내자답奈字畚 4두락지 14부 2속 곳을 전문錢文 24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되 매득문기買得文記는 다른 전답田畚에 함께 붙어 있어서 허여許與할 수 없다. 이후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로서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이수빈李守斌[착명]

1724년 12월 28일에 이수빈李守斌이 동성同姓 6촌제六寸弟 이수점李守漸에게 구정자九亭子の 내자답奈字畚 4두락지 14부 2속 곳을 24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방매하며 매득문기買得文記는 다른 전답田畚이 함께 붙어있어서 허여許與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방매자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136. 1705년 박각동朴軼同 별급명문別給明文

康熙肆拾肆年乙酉十二月初五日 子軼同處 別給  
右文爲別給事 汝亦意外 以火患萬身  
致傷 累年辛苦 艱以得生 故父子間  
情誼 不可不畧干別給 故本面九亭  
員奈字畚參斗地只 負數十肆卜二  
束庫乙 汝矣處 永永許給爲去乎 日  
後子女中 幸有雜談是去等 此文下正事  
畚主 父[左寸]  
筆執 金尙白[着名]

강희 44년(1705, 숙종31) 을유년 12월 5일 아들 각동軼同에게 별급別給하는 명문

이 명문을 별급別給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네가 뜻밖의 화재를 만나 온몸에 화상을 입고 여러 해 고생하다가 가까스로 살게 되었으므로 부자간의 정의情誼에 있어서 약간의 별급別給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본면本面 구정九亭에 있는 내자답奈字畚 3두락지, 부수負數 14부 2속 곳을 너에게 영원히 허급許給하니, 이후 자녀子女 가운데 혹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부父[좌촌]

필집筆執 : 김상백金尙白[착명]

1705년 12월 5일에 아버지가 아들 각동軼同에게 구정九亭에 있는 내자답奈字畚 3두락지 14부 2속 곳을 별급別給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아들이 뜻밖의 화재를 만나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가 가까스로 살게 되었으므로 부자간의 정의情誼로 별급한다고 하였다. 필집筆執으로 김상백金尙白이 참여하였다.

## 137. 1694년 박낙상朴恡尙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三十三年甲戌十二月十九日 朴恡尙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上典四宅亦俱處 故吐旨九萬里  
居奴永男名付 九亭員伏在奈字畚二作並 十四卜五束  
庫良中 同里居朴恡尙處放賣 受價納上典宅爲  
白遣 價折雌牛壹隻 依數捧上爲遣 右人處永永放  
去乎 後此奴矣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此文告官下  
正事  
畚主 奴 命先[左寸]  
訂人 趙位京[着名]  
筆執 金聲振[着名]

강희 33년(1694, 숙종20) 갑술년 12월 19일 박낙상朴恡尙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奴]의 상전上典 4택宅이 구처하기 때문에 토지吐旨 구만리九萬리에 사는 노奴 영남永男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록된 구정九亭에 있는 내지답奈字畚 2작병 14부 5속 곳을 같은 마을에 사는 박낙상에게 방매放賣하고 값을 받아 상전택에 납부하고, 값으로 암소 1척 隻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나의 자손子孫 가운데 만일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노奴 명선命先[좌촌]

증인證人 : 조위경趙位京[작명]

필집筆執 : 김성진金聲振[작명]

1694년 12월 19일에 노奴 명선命先이 상전의 분부에 따라 박낙상朴恡尙에게 토지吐旨 구정九亭에 있는 내지답奈字畚 14부 5속 곳을 암소 1척隻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위 땅은 구만리九萬리에 사는 노奴 영남永男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록된 된 곳이다. 증인證人으로서 조위경趙位京이 썼고, 필집筆執으로 김성진金聲振이 참여하였다.

위 문서는 <133. 1694년 박낙복朴歙福 토지명문土地明文>과 내용이 똑같다.

## 138. 190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大韓光武七年癸卯二月二十一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傳來松田一局 在於求禮  
土旨面陶山村前猛虎嶺 以要用所  
致 價折錢文貳佰伍什兩 永永許給之  
意 如是成標事  
標主 柳濟宗[着名]  
證 柳弼桓[着名]  
此亦中 伍十兩 又捧上是齊

대한 광무 7년(1903) 계묘년 2월 21일에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송전松田 1국局이 구례求禮 토지면土旨面 도산촌陶山村 앞의 맹호등猛虎嶺에 있는데, 필요한 일이 생겨 전문錢文 250냥으로 값을 정하여 영원히 허급許給하겠다는 뜻으로 이와 같이 표標를 작성한다.

표주標主 : 유제중柳濟宗[착명]

증證 : 유필환柳弼桓[착명]

이에 50냥을 또 받았다.

1903년 2월 21일에 유제중柳濟宗이 구례求禮 토지면土旨面 도산촌陶山村 앞의 맹호등猛虎嶺에 있는 송전松田 1국局을 문화유씨에게 25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필요한 일이 생겨 방매한다고 하였다. 가격은 전문錢文 250냥이다. 문서명을 시면에서는 명문이라고 하였지만 결사와 방매자 기재에서는 표標라고 하였다. 조선후기를 지나면서 명문과 표標를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증인으

로 유필환柳弼桓이 참여하였다. 끝에서는 50냥을 또 받는다고 하였다.

## 139. 1748년 노奴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三年戊辰十一月二十日 李生員宅奴 加八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亦要用所致以 吐旨面

劔字門前坪 字一卜四束畚五升落只庫

乙 右宅奴加八里處 錢文二兩捧上爲遣

右畚庫乙 永永放賣爲乎矣 本文

書段 他田畚并付乙仍于 不得許與

爲去乎 此后良中 同生子孫中

雜談爲去等 將此文記告官

卜正事

畚主 金太厚[着名]

筆執 前司果 張漢璧[着名]

### 추록

劔字一卜

四束五刀

庫乙 買

金太位

處

건륭 13년(1748, 영조24) 무진년 11월 20일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필요한 일이 있어 토지면吐旨面 검자劔字 문전에 있는 답畚 1부 4속 5승락지升落只를 위 댁의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전문錢文 2냥을 받고 위 눈을 영원히 방



매放賣한다. 본문서本文書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있으므로 허여許與할 수 없다.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김태후金太厚[작명]

필집筆執 : 전사과前司果 장한벽張漢璧[작명]

#### 추록

검자劔字 1부 4속 5두락지를 김태위金太位에게서 매득함.

1748년 11월 20일에 김태후金太厚가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토지면吐旨面 검자劔字 문전에 있는 답畓 1부 4속 5승락지升落只를 2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있으므로 줄 수 없다고 하였다. 필집筆執으로 전사과前司果 장한벽張漢璧이 참여하였다. 추록에는 검자劔字 1부 4속 5두락지를 김태위金太位에게서 매득하였다고 쓰여 있다.

## 140. 1745년 이무발李戊發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年乙丑正月十一日 李戊發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趙忒惡番布出處

無路如乎 不得 海字卅一田太種五刀落只 負數

八束庫 又海字田太種五刀落只 負數九束

庫乙 兩庫并一卜七束 價折錢文八錢奉上爲

遣 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 次後雜談

爲去等 此文告官下正事

自筆 田主 金海俊[着名]

#### 추록

吐旨面海字卅一田

太種五刀落八束庫

果又海字太種五  
刀落九束庫果  
水衡員芋字五斗  
落只 買僧坦  
彦武發私

건륭 10년(1745, 영조21) 을축년 1월 11일 이무발李戊發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조덕악趙丕惡의 번포番布<sup>96</sup>를 마련할 길이 없어 부득이 해자海字 31번전田 태종太種 5두락지, 부수負數 8속 곳과 해자海字 전田 태종太種 5두락지, 부수負數 9속 곳, 두 곳의 합 1부 7속 곳을 전문錢文 8전을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해하니,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전주田主 : 김해준金海俊[작명]

#### 추록

토지면吐旨面 해자海字 31번전田 태종太種 5두락 9속과 해자海字 태종太種 5두락 9속, 수형水衡에 있는 우지芋字 5두락지를 승僧 탄언坦彦과 무발武發에게서 사적으로 매득하였음.

1745년 1월 11일 김해준金海俊이 번포를 마련하기 위해 이무발李戊發에게 해자海字 31번전田 태종太種 5두락지 8속과 해자海字 전田 태종太種 5두락지 9속, 합 1부 7속 곳을 8전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별도의 필집 없이 김해준이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추록에는 토지면吐旨面 해자海字 31번전田 태종太種 5두락 9속과 해자海字 태종太種 5두락 9속, 수형水衡의 우지芋字 5두락지를 승僧 탄언坦彦과 무발武發에게서 매득하였다는 기록이 붙어있다.

---

96 번포(番布) 오위(五衛)의 군졸이 궁중에 번(番)드는 대신에 바치는 무명.

## 141. 1810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十五年庚午五月十二日 幼學 明文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生計萬無 故勢  
不得已 傳來田草字員太種三斗落只 負  
數十一卜二束庫乙 價折錢文十八兩 依數  
捧上是遣 本文記段 他文卷并付 故新文記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某子  
孫中 如有誰談是去 將此文告官  
卜正事  
田主 自筆 幼學 高守權[着名]

가경 15년(1810, 순조10) 경오년 5월 12일 유학幼學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흉년을 당하여 살아갈 방도가 만무하므로 형세상 부득이 물려받은 밭 초자草字 태종太種 3두락지, 부수負數 11부 2속 곳을 전문錢文 18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문권文卷과 함께 붙어있으므로 신문기新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자손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고수권高守權[착명]

1810년 5월 12일에 유학幼學 고수권高守權이 흉년을 당해서 초자草字 전田 태종太種 3두락지 11부 2속 곳을 18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문권文卷과 함께 붙어 있으므로 신문기新文記 1장과 함께 방매한다고 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고수권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142. 1785년 노부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伍十年乙巳八月十八日 柳龍川宅奴 業伊處 明文  
右明文事段 切有移買處是如可 吐旨面苧旨坪  
伏在露字十一合畝二作卅卜五束 九斗落只庫乙  
價折錢文壹百伍十壹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及  
禾并以 右人處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  
談是去等 將此文卞正事  
畝主 幼學 金慶渭[着名]  
筆執 幼學 姜與天[着名]

### 추록

露字十一合畝  
二作卅卜五束  
九斗落只  
金慶渭處  
買得印

건륭 50년(1785, 정조9) 을사년 8월 18일 유용천柳龍川댁 노부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이매移買를 위해 토지면吐旨面 저지평苧旨坪에 있는 로지露字 11번답 2작병 30부 5속 9두락지 곳을 전문錢文 15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및 화곡禾穀과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유학幼學 김경위金慶渭[작명]

필집筆執 : 유학幼學 강여천姜與天[작명]

### 추록

로지露字 11번답 2작병 30부 5속 9두락지를 김경위金慶渭에게 매득買得함.

1785년 8월 18일에 유학幼學 김경위金慶渭가 이매하기 위해 유용천柳龍川댁 노奴 업이業伊에게 토지면吐旨面 저지평亭旨坪에 있는 로지露字답 30부 5속 9두락지 곳을 15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및 회곡禾穀과 함께 방매하였다. 필집筆執으로 유학幼學 강여천이 참여하였다.

### 143. 1784년 노奴 용봉龍奉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年甲辰十一月十三日 柳生員宅奴 龍奉處 明文  
右明文事段 大川員露字四十六田 七卜  
二束太種五斗落只庫乙 價折錢文七兩 依數捧上 右  
處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文書  
并付乙仍于 不得出給爲去乎 日後如  
有雜談是去等 以此文下正事  
田主 自筆 金生員宅奴 卜太[着名]

#### 추록

東垆露字四十六田  
七卜二束 金奴卜太處  
買得印  
甲辰 本文他付故  
未捧耳

건륭 49년(1784, 정조8)<sup>97</sup> 갑진년 11월 13일 유생원柳生員댁 노奴 용봉龍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대천大川에 있는 로지露字 46번전田 7부 2속 태종太種 5두락지를 전문錢文 7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문서文書와 함께 붙어있으므로 내어줄 수 없으며, 이후에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자필自筆 김생원金生員댁 노奴 복태卜太[작명]

#### 추록

동대東岱 로자露字 46번전田 7부 2속 곳을 노奴 복태卜太에게서 매득買得함. 갑진년.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에 붙어있으므로 받지 못했음.

1784년 11월 13일 김생원金生員댁 노奴 복태卜太가 유생원柳生員댁 노奴 용봉龍奉에게 대천大川에 있는 로자露字전 7부 2속 5두락지를 7냥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문서文書와 함께 붙어있어서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추록에는 동대東岱 로자露字 46번전田 7부 2속을 노奴 복태卜太에게서 매득買得하였다는 내용이 붙어있다.

## 144. 1797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二年丁巳十月十三日 喪人 柳德浩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不得已 傳來家基  
放賣爲去乎 草家四旨 果木與竹田 垡田 太  
種貳斗落只 霜字田 卜數四負五束庫乙 價  
折錢文貳拾伍兩 右前依數捧上爲遣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  
雜談是去等 以此文下正事  
自筆 家基主 幼學 高宗說[着名]

#### 추록

竹川霜字家

---

97 건륭 50년은 을사년(1785)이고, 갑진년은 건륭 49년(1784, 정조8)이다.

垞高都監許買

가경 2년(1797, 정조21) 정사년 10월 13일 상인喪人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필요한 일이 있어서 부득이 물려받은 집터를 방매放賣한다. 초가草家 4지붕, 과목果木과 죽전竹田 대전垞田 태종太種 2두락지 상자전霜字田 부수負數 4부 5속 곳을 전문錢文 25냥으로 값을 정하여 위 사람에게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자기주家基主 : 유학幼學 고종열高宗說[작명]

추록

죽천竹川 상자霜字 가대家垞를 고도감高都監에게 매득함.

1797년 10월 13일에 유학幼學 고종열高宗說이 요용소치로 상인喪人 유덕호柳德浩에게 초가草家 4지붕, 과목果木과 죽전竹田 대전垞田 태종太種 2두락지, 상자전霜字田 4부 5속 곳을 2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고종열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추록에는 죽천竹川의 상자霜字 가대家垞를 고도감高都監에게서 매득하였다는 내용이 붙어있다.

## 145. 1786년 노奴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一年丙午十一月十六日 柳龍川宅奴 業伊前 明文

右明文事段 當此災年 還上無路辨

納乙仍于 以勢不得已 下大川霜字

垞田果 畚庫五刀庫果 合太種一斗

七刀落只庫 草家三間 蘇灯

木果木并以 卜數陸負七束

乙 右前捧價肆兩爲遣 本文  
記一丈并以 永永放賣爲去  
乎 如有雜談是去等 此文記  
卞正事  
家垈田畚主 幼學 高應斗[着名]  
筆執 幼學 鄭致明[着名]

#### 추록

竹川高書  
房家基  
霜字垈

건륭 51년(1786, 정조10) 병오년 11월 16일 유용천柳龍川댁 노奴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흥년을 당하여 환자還上를 마련하여 납부할 방법이 없기에 형세상 부득이 하대천下大川 상지霜字 대전垈田, 답畓 5도락지 합 태종太種 1두 7도락지, 초가草家 3칸, 소등목蘇灯木과 과목을 모두 아울러 부수負數 6부 7속곳을 위 사람에게 4냥을 받고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 잡을 일이다.

가대家垈 전답주田畚主 : 유학幼學 고응두高應斗[착명]

필집筆執 : 유학幼學 정치명鄭致明[착명]

#### 추록

죽천竹川 고서방高書房에게 가기家基 상자대霜字垈를 매득함.

1786년 11월 16일에 유학幼學 고응두高應斗가 환자를 마련하기 위해 유용천柳龍川댁 노奴 업이業伊에게 하대천下大川의 상지霜字 대전垈田, 답畓 5도락지 합 태종太種 1두 7도락지, 초가草家 3칸, 소등목蘇灯木과 과목을 아울러 6부 7속인 곳을 4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필집筆執으로 유학幼學 정치명鄭致明이 참여하였다. 추록에는 죽천竹川 고서방高書房에게 가기家基 상자대霜字垈를 매득하였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146. 1785년 고응두高應斗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年乙巳九月十九日 幼學 高應斗前 明文  
右明文事段 下大川朴同主亦 面錢貳兩乙 每  
年并利備納是如可 同東主家垓次知是  
如可 不得已 霜字垓田 卜數陸負七束庫  
果 家舍三間一旨并以 價折錢文 貳兩九錢  
捧上爲遣 右前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  
乎 日後面員中 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  
記告官卜正事  
垓主 幼學 都有司 李鵬運[着名]  
筆 黃聖澄[着名]

건륭 50년(1785, 정조9) 을사년 9월 19일 유학幼學 고응두高應斗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하대천下大川 박동주朴同主가 면전面錢 2냥을 매년 이자까지 비납備納하였는데, 위 동주東主의 가대家垓를 차지하고 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자霜字 대전垓田 부수負數 6부 7속을 가사家舍 3칸間 1지늬와 함께 전문錢文 2냥 9전을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면원面員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대주垓主 : 유학幼學 도유사都有司 이봉운李鵬運[착명]

필筆 : 황성징黃聖澄[착명]

1785년 9월 19일에 유학幼學 도유사都有司 이봉운李鵬運이 유학幼學 고응두高應斗에게 상자霜字 대전垓田 부수負數 6부 7속 곳을 가사家舍 3칸間 1지늬와 함께 2냥 9전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필집으로 황성징이 참여하였다.

## 147. 1783년 노奴 운삼雲三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八年癸卯十一月十一日 柳生員宅奴 雲三處 明文  
右明文事段 切有要用處 自己買得  
垞畚天皇員伏在是遣 露字  
肆斗落只內三斗落只內 三斗落只 賣從兄主宅 卜數十五卜三束庫果  
草家二旨并以 右人處價折錢  
文四十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  
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  
雜談是去等 將此文下正事  
自筆家垞主 朴守根[着名]

### 추록

家垞露字  
給價十二兩  
汝大家基  
丁未十二月

건륭 48년(1783, 정조7) 계묘년 11월 11일 유생원柳生員댁 노奴 운삼雲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요용처가 있어서 자기매득한 대전垞畚 천황天황에 있는 로지露字 4두락지 [내의 3두락지는 종형 댁에 팔았음] 부수負數 15부 3속 곳과 초가草家 2旨를 함께 위 사람에게 전문錢文 40냥을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가대주家垞主 : 박수근朴守根[작명]

### 추록

가대家垞 로지露字에 값 12냥을 주었다. 여대汝大의 가기家基이다. 정미년 12월.

1783년 11월 11일에 박수근朴守根이 요용처가 있어서 유생원柳生員댁 노부 운삼雲三에게 천황天皇에 있는 로자露字 4두락지 15부 3속 곳과 초가草家 2늪를 4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박수근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148. 1788년 유인호柳仁浩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三年戊申十月十五日 再從弟 柳仁浩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買得  
垞田伏在 天皇員露字一斗落只  
卜數三卜三束庫果 草家三旨  
並以 價折錢文拾貳兩 依數  
捧上爲遣 本文記并以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  
去等 以此文相考事  
家垞主 自筆 再從兄 天浩[着名]

건륭 53년(1788, 정조12) 무신년 10월 15일 재종제再從弟 유인호柳仁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곳이 있어서 자기매득한 대전垞田 천황天皇의 로자露字 1두락지, 부수負數 3부 3속 곳과 초가草家 3지늪를 전문錢文 12냥으로 값을 정하여 수를 정하여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垞主 : 자필自筆 재종형再從兄 천호天浩[작명]

1788년 10월 15일에 재종형再從兄 유천호柳天浩가 요용소치로 재종제再從弟 유인호柳仁浩에게 천황天皇에 있는 로자露字 1두락지 3부 3속과 초가草家 3지늪를 12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

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방매자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149. 1682년 오기립吳起立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貳拾壹年戊寅正月貳拾八日 吳起立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祖上衿得代田 在於九萬里 醜字田太種壹

斗伍升落只 卜數五卜九束庫乙 累年畊食爲白如可 矣姪子孫執甫集

藥工價布乙 他条措備無路乙仍于 勢不得已 同代田庫乙 價折正租

全貳石肆斗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處永永放賣爲乎矣 本文

記段 都文記中並錄乙仍于 傳給不得爲去乎 後次之中子息及同生中雜

談爲去等 將此文相考告官卞正爲臥乎事

田主 李尙敏[着名]

證人 金廷賢[着名]

證保 鄭士夫[着名]

筆執 金聖善[着名]

강희 21년(1682, 숙종8) 임술년 1월 28일 오기립吳起立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조상으로부터 깃득衿得한 대전代田인 구만리九萬里 함자전醜字田 태종太種 1두 5승락지升落只, 부수負數 5부 9속인 곳을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나의 조카와 손자가 잡게 된 약공藥工의 가포價布는 다른 조목도 갖추어낼 길이 없어서 형세상 부득이하게 같은 대전代田을 정조正租 전소 2석石 4두斗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도문기都文記 중에 함께 실려 있어서 줄 수 없다. 이후에 자식과 동생同生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이상민李尙敏[작명]

증인證人 : 김정현金廷賢[작명]

증보證保 : 정사부鄭士夫[작명]

필집筆執 : 김성선金聖善 [작명]

1682년 1월 28일에 이상민李尙敏이 가포를 갖추어내기 위해 오기립吳起立에게 구만리九萬里的 함자전鹹字田 태종太種 1두 5승락지升落只 5부 9속인 곳을 정조正租 전술 2석石 4두斗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도문기都文記 중에 함께 실려 있어서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증인證人으로 김정현金廷賢이, 증보證保로 정사부鄭士夫가 참여하였다.

## 150. 1741년 노奴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陸年辛酉正月初拾日 李生員宅奴 加八里處 明文  
右明文爲事段 矣妻邊衿得畊食爲如可 要用所致以 吐旨面九萬里坪員伏在 鹹字  
壹斗伍升落只 負數肆卜肆束庫乙 價折  
錢文玖兩以 依數捧上爲遣 右人處本文記  
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同生子孫中  
生謀雜談之弊是去等 將此文記相告告  
官下正事  
自筆 畝主 權世輝[着名]

### 추록

吐旨鹹字畝一斗五升  
落 買權世輝處

건륭 6년(1741, 영조17) 신유년 1월 10일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처변(妻邊)으로부터 물려받아 경식(耕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생겨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에 있는 함자(鹹字) 1두 5승락지(升落只), 부수(負數) 4부 4속(속) 곳을 전문(錢文) 9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畝主) : 권세휘(權世輝) [작명]

### 추록

토지면(吐旨)의 함자(鹹字) 1두 5승락(升落)을 권세휘(權世輝)에게 매득함.

1741년 1월 10일에 권세휘(權世輝)가 요용소치(召用所)로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토지면(吐旨) 면(面) 구만리(九萬里)에 있는 함자(鹹字) 1두 5승락지(升落只) 4부 4속(속) 곳을 9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권세휘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추록에는 토지면(吐旨)의 함자(鹹字) 1두 5승락(升落)을 권세휘(權世輝)에게서 매득하였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151. 1729년 김해일(金海日)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七年己酉十月二十七日 金海日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自己買  
得耕食爲如可 要用所致以 鹹  
字畝一斗五升落只 負數五卜 束  
庫乙 價折錢文拾壹兩 依數交易捧  
上爲遣 本文記并 永永放賣爲  
去乎 日後良中 子孫中雜談爲去  
等 此文記告官下正事

畚主 文厚明[着名]  
訂人 同生 朗演[着名]  
筆執 婿 孫必屋[着名]

용정 7년(1729, 영조5) 기유년 10월 27일 김해일金海日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식耕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 함자답鹹字畓 1두 5승락지升落只, 부수負數 5부 곳을 전문錢文 11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자손子孫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문후명文厚明[착명]

증인訂人 : 동생同生 낭연朗演[착명]

필집筆執 : 서婿 손필후孫必屋[착명]

1729년 10월 27일에 문후명文厚明이 요용소치로 김해일金海日에게 함자답鹹字畓 1두 5승락지升落只 5부 곳을 11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동생同生 낭연朗演이 섰고, 필집筆執으로 서婿 손필후孫必屋가 참여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문후명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152. 1725년 문후명文厚明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三年乙巳三月八日 文厚明處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吐旨九萬員  
伏在鹹字畓正斗伍升落只 負數  
肆卜四束庫乙 價折錢拾伍兩  
依數交易捧上 右人前本

文記貳丈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子孫中雜談 將此文告  
官卞正事  
畚主 自筆 幼學 高海翼[着名]

용정 3년(1725, 영조1) 을사년 3월 8일 문후명文厚明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곳이 있어서 토지吐旨 구만九萬에 있는 함자답鹹字 畓 1두 5승락지升落只, 부수負數 4부 4속 곳을 전문錢文 1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자손子孫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고해익高海翼[작명]

1725년 3월 8일 유학幼學 고해익高海翼이 요용소치로 문후명文厚明에게 토지吐旨 구만九萬에 있는 함자답鹹字畓 1두 5승락지升落只 4부 4속 곳을 1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고해익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153. 1710년 노奴 석민石民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九年庚寅參月拾正日 高生員宅奴 石民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僧矣身亦 祖上流來田庫 在於本面  
九萬里 鹹字丁太種正斗五升落只 卜數五卜九束 累年畊食爲如可 如此  
凶年 生道爲難乙仍于 勢不得已 價折錢文貳兩 衣數  
交易捧上爲遣 本文記正文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此幸  
有同生族屬中雜談爲去等 將此文記告官卞正事  
田主 僧 久學[着名]



訂人 同生兄 吳厚音時[左寸]  
訂保 異姓五寸姪 魯水鳧[着名]  
筆執 金順亨[着名]

강희 49년(1710, 숙종36) 경인년 3월 11일 고생원高生員댁 노녀 석민石民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승僧 내가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은 본면本面 구만리九萬里 함자鹹字 태종太種 1두 5승락지升落只, 부수負數 5부 9속을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이와 같은 흉년을 당하여 살아갈 방도를 찾기가 어려움에 형세상 부득이 전문錢文 2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 만약 동생同生 족속族屬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승僧 구학久學[착명]

증인訂人 : 동생형同生兄 오후음시吳厚音時[좌촌]

증보訂保 : 이성異姓 5촌질五寸姪 노수도魯水鳧[착명]

필집筆執 : 김순형金順亨[착명]

1710년 3월 11일에 승僧 구학久學이 흉년을 당해서 고생원高生員댁 노녀 석민石民에게 본면本面 구만리九萬里 함자鹹字 태종太種 1두 5승락지 5부 9속 곳을 2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동생형同生兄 오후음시吳厚音時가 썼고, 증보訂保로 이성異姓 5촌질五寸姪 노수도가, 필집筆執으로 김순형金順亨이 참여하였다.

## 154. 1727년 이원석李源石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五年丁未三月十二日 幼學 李源石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亦祖上傳來 累年耕食爲如可 貧

不能資生乙仍于 吐旨面垣內員伏在 麗字十五畝二十九卜八束 十

六畚七束 二作并以十斗落只庫乙 價折錢文肆拾柒兩 正租貳  
拾石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一丈并以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生謀雜談爲去等 此文記告官  
卜正事

畚主 幼學 金禹錫[着名]

證人 幼學 張啓漢[着名]

筆執 幼學 張應漢[着名]

### 추록

麗字畚八斗二作並 卅卜五束

買金禹錫

量同人

옹정 5년(1727, 영조3) 정미년 3월 12일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石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아 여러 해 동안 경식耕食하  
다가 가난하여 살아갈 방도가 없기에 토지면吐旨面 원내垣內에 있는 려자麗字 15번답畝 29부 8속, 16  
번답 7속, 2작병 10두락지 곳을 전문錢文 47냥, 정조正租 20석石에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  
람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자손이나 가문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유학幼學 김우석金禹錫[착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장계한張啓漢[착명]

필집筆執 : 유학幼學 장응한張應漢[착명]

### 추록

려자답麗字畝 8두락지 2작병 30부 5속을 김우석金禹錫에게 매득買得함. 양안에 같은 사람으로 올  
라있다.

1727년 3월 12일에 유학幼學 김우석金禹錫이 가난하여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石에게 토지면吐旨面 원

내垣內에 있는 러자麗字 15번답 29부 8속과 16번답 7속, 10두락지 곳을 돈 47냥과 정조正租 20석石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유학幼學 장계한張啓漢이 썼고, 필집筆執으로 유학幼學 장응한張應漢이 참여하였다. 추록에는 러자답麗字畝 8두락지 30부 5속을 김우석金禹錫에게 매득買得하였다는 내용이 붙어있다.

## 154-1. 갑신년 김회金澮 처妻 장씨張氏 토지명문土地明文

甲申十二月二十五日 故學生 金澮妻 張氏前 明文  
 右明文事叱段 遠在田土似難 近處移買次以 祖上傳來  
 耕食爲如乎 吐旨牆內豎簷員伏在 麗字畝二十七ト七束庫  
 十斗落只良中 價折正租全參拾石 正木拾疋等乙  
 依數交易捧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 後次  
 良中 子息等雜談爲去等 將此文告官卜正事  
 畝主 自筆 別坐 韓廷俊[着名]

갑신년 12월 25일 고故 학생學生 김회金澮 처妻 장씨張氏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멀리 있는 전토田土를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이매移買하기 위하여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아 경식耕食하던 토지吐旨 장내牆內 수침豎簷에 있는 러자답麗字畝 27부 7속 10두락지를 정조正租 전췌 30석石과 정목正木 10필疋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자식子息 등이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별좌別坐 한정준韓廷俊[착명]

갑신년 12월 25일에 별좌別坐 한정준韓廷俊이 이매하기 위해 고故학생學生 김회金澮의 처妻 장씨張氏에게 토지吐旨 장내牆內에 있는 러자답麗字畝 27부 7속 10두락지 곳을 정조正租 전췌 30석石과 정목

正木 10필피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별도의 필집 없이 한정준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155. 1779년 유술호柳述浩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四年己亥七月二十六日 幼學 柳述浩前 明文  
右明文爲 移買次 自己買得是在 伏在吐旨面  
亭旨員 露字七十八 卜數十九卜五束庫果 結字二 卜數二十  
二卜七束 合畚窠種十二斗落只庫果 天皇峙員雲字畚  
八斗落只 卜數二十五卜庫 合畚二十斗落只 價折錢文  
貳百伍拾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并以 右前永永  
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如有雜談 則將此文  
下正事

畚主 幼學 柳夏焞[着名]  
證 幼學 高宗說[着名]  
筆 幼學 羅鳳佐[着名]

### 추록

無秋叱川相換  
伏在吐旨面二  
十斗落 柳  
夏焞處換  
得 其中  
露字八斗落  
放賣 而餘十二斗  
己亥七月日

건륭 44년(1779, 정조3) 기해년 7월 26일 유학幼學 유술호柳述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를 위해 자기매득한 토지면吐旨面 저지筭旨에 있는 로자露字 78번답畝 부수負數 19부 5속 곳, 결지結字 2번답畝 부수負數 22부 7속 곳, 합 실종實種 12두락지와 천황치天皇峙의 운자답雲字畝 8두락지 부수負數 25부, 총 답畝 20두락지를 전문錢文 25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 자손 중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유학幼學 유하욱柳夏燾[작명]

증證 : 유학幼學 고종열高宗說[작명]

필筆 : 유학幼學 나봉좌羅鳳佐[작명]

### 추록

상환한 것이 토지면吐旨面に 있는 20두락으로, 유하욱柳夏燾에게 환득換得하였는데, 그중 로자露字 8두락을 방매放賣하고 12두락지가 남았다. 기해년 7월 일.

1779년 7월 26일에 유학幼學 유하욱柳夏燾이 이매하기 위해 유학幼學 유술호柳述浩에게 토지면吐旨面 저지筭旨에 있는 로자露字답 19부 5속과 결지結字답 22부 7속 합 12두락지와 천황치天皇峙에 있는 운자답雲字畝 8두락지 25부, 총 20두락지를 25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으로 유학幼學 고종열高宗說이 섰고, 필집으로 유학幼學 나봉좌羅鳳佐가 참여하였다. 추록에는 토지면吐旨面に 있는 20두락을 유하욱柳夏燾에게 환득換得하였으며 로자露字 8두락을 방매放賣하고 12두락지가 남았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관련문서로 보면 구례 토지면吐旨面 저지筭旨에 있는 로자露字답의 소유권은 1779년에 문우덕文友德 → 유하욱柳夏燾 → 유술호柳述浩로 급히 이동하였다.

## 156. 1779년 유하욱柳夏燾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四年己亥七月十八日 幼學 柳夏燾前 明文

右明文事 要用所致 自己買得是在 伏在吐旨  
 面苧旨員露字七十八 卜數十九卜五束 結字二之  
 卜數二十二卜七束 合畚窠種拾貳斗地只庫乙  
 價折錢文壹百柒拾兩 依捧爲遣 本  
 文記并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  
 雜言 則將此文下正事  
 畚主 幼學 文友德[着名]  
 證 同生兄 幼學 師德[着名]  
 筆 幼學 高時瓚[着名]

건륭 44년(1779, 정조3) 기해년 7월 18일 유학幼學 유하옥柳夏燿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곳이 있어서 자기매득한 토지면吐旨面 저지苧旨에 있는 로자露字 78번답 부수負數 19부 5속, 결자結字 23번답 부수負數 22부 7속, 합 실종實種 12두락지를 전문錢文 17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유학幼學 문우덕文友德[작명]

증證 : 동생형同生兄 유학幼學 사덕師德[작명]

필筆 : 유학幼學 고시환高時瓚[작명]

1779년 7월 18일에 유학幼學 문우덕文友德이 요용소치로 유학幼學 유하옥柳夏燿에게 토지면吐旨面 저지苧旨에 있는 로자露字답 19부 5속과 결자結字답 22부 7속, 합 12두락지를 17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동생형同生兄 유학幼學 문사덕文師德이 섰고, 필집으로 유학幼學 고시환高時瓚이 참여하였다.

## 157. 1806년 노상갑盧祥甲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十一年庚寅十二月 幼學 盧祥甲前 明文  
右明文事段 分職畝二斗落只 累年  
耕食是如可 移買次 石谷上道龍  
珠里村前坪 官字畝二斗落只 負數  
四負九束 價折錢文十五兩 依數  
捧上爲遣 本文記段 此文書并付 故右人  
前不得出給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紛紜之  
弊 以此文記告官下正事  
畝主 自筆 閑良 金仲孫[着名]

### 추록

田畝及山坂買受文券  
山主 金萬昌 道光二年壬午正月二十五日 買受一度  
畝主 金仲孫 嘉慶十一年庚寅 一度 舊  
全 盧秉鎮 光緒二年丙子 合四度 新  
合五券也 勿金洞畝券  
谷城石谷面龍珠洞村前 直畝  
二斗只 官字十夜味四負九束 新舊文券

### 추입

上全直畝二斗只 鳥字十一卜 文記  
求禮五美瓦坪 太種六斗只 脂字十八束  
馬山大召坪菁田 地字三斗只十一卜九束  
文尺九星里 直田三斗只 草字十一卜二束  
癸酉二月日攷  
金秉禮 吐旨面五美里一〇三番

가경 11년(1806, 순조6)<sup>98</sup> 병인년 12월 유학幼學 노상갑盧祥甲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분직답分職畝 2두락지를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해 석곡石谷 상도上道 용주리촌龍珠里村에 있는 관자답官字畝 2두락지, 부수負數 4부 9속 곳을 전문錢文 1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이 문서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주지 않고 영구히 방매한다. 이후에 만약 분쟁의 폐단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한량閑良 김종손金仲孫[작명]

### 추록

전답田畝와 산판山坂을 매수買受한 문권文券

- 산주山主 김만창金萬昌, 도광道光 2년 임오년 1월 25일 매수買受 1통.
- 답주畝主 김종손金仲孫, 가경 11년 경인庚寅 1통. 구문기.
- 답주畝主 노병진盧秉鎭, 광서光緒 2년 병자년 합 4통. 신문기.
- 총 5권임. 물금동勿金洞 답권畝券, 곡성谷城 석곡면石谷面 용주동촌龍珠洞村 앞에 있는 직답直畝 2두락지, 관자官字 10배미夜味 4부 9속, 신구문권新舊文券.

### 추입

위의 직답直畝 2두락지 조자鳥字 11복의 문기文記.

구례求禮 오미五美 와평瓦坪 태종太種 6두락지 지지脂字 18속.

마산馬山 대소평大召坪 청전菁田 지지地字 3두락지 11부 9속.

문척文尺 구성리九星里 직전直田 3두락지 초자草字 11부 2속.

계유년 2월 일에 살핌.

김병례金秉禮 : 토지면吐旨面 오미리五美里 103번

1806년 12월에 한량閑良 김종손金仲孫이 이매하기 위해 유학幼學 노상갑盧祥甲에게 석곡石谷 상도上道 용주리촌龍珠里村의 관자답官字畝 2두락지 4부 9속 곳을 1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이 문서와 함께 붙어 있어서 주지 않았다. 별도의 필집 없이 김종손이 스스로 작성한

98 가경 11년은 병인년이고, 경인년은 1770년 또는 1830년이다. 병인년을 잘못 쓴 것으로 판단된다.



문서이다. 추록에는 전답田畓과 산판山坂을 매수買受한 문권文券 등이 기록되어 있다.

## 158. 1876년 노병진盧秉鎭 표標

丙子八月二十日

標

右標事段 六斗落畓價文

壹百貳拾兩 捧上 而日後

若有煩說 則以此標 憑

考事

標主 幼學 盧秉鎭[着名]

九月初五日 二斗落舊文記 入送

추록

標

右標事 畓八斗落價 正百十六

兩 推尋於西村柳生員處 日後

事 則以標憑考事

丙子八月二十日 標主 盧秉鎭[着名]

二斗落舊文記 九月初五日 入送耳

병자년(1876) 8월 20일 표標

이 표標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6두락斗落의 논값 120냥을 받았으니, 이후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표를 가지고 증빙할 일이다

표주標主 : 유학幼學 노병진盧秉鎭[작명]

9월 5일에 2두락二斗落의 구문기舊文記를 입송함.

추록

표標

이 표標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논 8두락의 값 116냥을 서촌西村의 유생원柳生員으로부터 추심推尋하니, 이후에 일이 발생하면 이 표로 증빙할 일이다

병자년(1876) 8월 20일, 표주標主 노병진盧秉鎭[작명]

2두락의 구문기舊文記는 9월 5일에 입송함.

병자년(1876) 8월 20일에 유학幼學 노병진盧秉鎭이 작성한 표標이다. 두 개의 표가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같은 날짜에 작성한 것이다. 앞의 표는 6두락 논에 대한 값 120냥을 받고 작성한 것이고, 뒤의 표는 8두락의 논에 대한 값 116냥을 받고 작성한 것이다.

## 159. 1876년 노병진盧秉鎭 표標

표標

右標事 畚貳斗落價 拾陸兩

乙捧是遣 舊文記段 他處相置

故胡爲未及 而新文記出給 九

月三十日爲限爲遣 日後若有雜談

則持此標相考事

標主 幼學 盧秉鎭[着名]

證人 幼學 柳任奎

丙子九月十二日

추록

買得於龍珠洞居盧秉鎭處

丙子九月日 價文十四兩

三度[着名]

谷城石谷面上道堂山坪 官字畚

二斗落十夜味 卜數四負九束麴

#### 표標

위 표標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답 2두락의 값 16냥을 받고, 구문기는 다른 곳과 상치되어 있으므로 발급하지 않고 신문기의 출급은 9월 30일로 기한을 정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표로 상고할 일이다.

표주標主 : 유학幼學 노병진盧秉鎭[작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유임규柳任奎

병자년(1876) 9월 12일

#### 추록

용주동龍珠洞에 사는 노병진盧秉鎭에게 매득함.

병자년 9월 일. 값은 전문 14냥임.

3통임. [작명]

곡성谷城 석곡면 상도上道 당산堂山에 있는 관자답官字畚 2두락 10배미, 복수 4부 9속 곳임.

1876년 9월 12일에 노병진盧秉鎭이 작성한 표標이다. 답 2두락의 값 16냥을 받고, 구문기는 발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증인證人은 유학幼學 유임규柳任奎가 썼다. 추록에는 용주동에 사는 노병진에게 14냥에 매득했다는 내용과 해당 전답이 곡성 석곡면 당산에 있는 관자답官字畚 2두락 10배미 4부 9속이라는 내용이 붙어 있다.

## 160. 1876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二年丙子七月二十五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傳來畚累年耕食  
是如可 勢不得已 要用所致 伏在  
石谷面上道堂山內 官字畚  
十夜味二斗落只 卜數四負六束 加耕十三束  
廩 價折錢文貳拾兩 依數捧  
上 新舊文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紛紜之敝 則以  
此文記告官下呈事  
畚主 幼學 盧秉鎭[着名]  
證人 自筆 幼學 柳昌奎 喪不着

광서 2년(1876, 고종13) 병자년 7월 25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전래해온 논을 여러 해 동안 경식耕食하다가 형세상 부득이 하여 긴히 쓸 곳이 있어서 석곡면石谷面 상도上道 당산堂山 내의 관자답官字畚 10배미夜味 2두락지, 부수負數 4부 6속 곳과 가경加耕 13속을 전문錢文 2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신구문기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분쟁의 폐단이 있으면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유학幼學 노병진盧秉鎭[착명]

증인證人 : 자필自筆 유학幼學 유창규柳昌奎 상불착喪不着

1876년 7월 25일 유학幼學 노병진盧秉鎭이 석곡면石谷面 상도上道 당산堂山 내에 관자답官字畚 10배 미夜味 2두락지 부수負數 4부 6속, 가경加耕 13속 곳을 2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신구문기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유학幼學 유창규柳昌奎가 참여했는데 문서를 자필로 작성했다. 상중이라 착명은 하지 않았다.

## 161. 188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九年癸未十二月晦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田 數年  
耕食是多可 移買次 府地  
求禮文尺面竹淵里村前 及字麻田五斗  
落 負數二卜庫果 柿木三株  
價折錢文拾壹兩 依數捧  
上爲遣 舊文都文合付 故右前以新文一丈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若有梗者 則以  
此文記相考事  
自筆 田主 幼學 韓奉浚 喪不着  
證人 幼學 高鳳千[着名]

광서 9년(1883, 고종20) 계미년 12월 그믐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해 부지府地 구례求禮 문척면文尺面 죽연리竹淵里 마을 앞에 있는 급자及字 마전麻田 5두락지, 부수負數 2부인 곳과 시목柿木 3주株를 전문錢文 11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구문기는 도문기에 함께 붙어 있어서 위 사람에게 신문기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잡음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전주田主 : 유학幼學 한봉준韓奉浚 상불착喪不着

증인證人 : 유학幼學 고봉천高鳳千[작명]

1883년 12월 30일에 유학幼學 한봉준韓奉浚이 이매하기 위해 구례求禮 문척면 죽연리竹淵里 마을 앞에 있는 급자及字 마전麻田 5두락지 2부와 시목柿木 3주株를 11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구문기는 도문기에 함께 붙어 있어서 신문기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한봉준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증인證人으로 유학幼學 고봉천高鳳千이 참여하였다.

## 162. 1857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咸豐七年丁巳十月十六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  
如可 勢不得已 要用所致 伏在石谷  
面上道龍珠村隅 島字畓四斗內 下邊  
六夜味二斗落 負數十一卜廩 價折錢文  
參拾兩 依數捧上爲遣 新舊文并以 右人  
前永永放賣爲去乎 日后若有紛紜之端 則  
以此文憑考事  
畓主 幼學 金銀火[着名]  
筆執 幼學 金圭源[着名]

함풍 7년(1857, 철종8) 정사년 10월 16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형세상 부득이하게  
긴히 쓸 곳이 있어서 석곡면石谷面 상도上道 용주촌龍珠村 모퉁이에 있는 조자답鳥字畓 4두락지 내의  
하변 6배미夜味 2두락지, 부수負數 11부 곳을 전문錢文 3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신구문  
기와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분쟁의 실마리가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  
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유학幼學 김은화金銀火[착명]

필집筆執 : 유학幼學 김규원金圭源[착명]

1857년 10월 16일에 유학幼學 김은화金銀火가 요용소치로 석곡면石谷面 상도上道 용주촌龍珠村 모  
퉁이에 있는 조자답鳥字畓 4두락지 내의 하변 6배미夜味 2두락지 11부 곳을 3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  
한 명문이다. 신구문기와 함께 방매하였다. 필집筆執으로 유학幼學 김규원金圭源이 참여하였다.

## 163. 1824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四年甲申十一月十一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家基田 累年耕食是如可 移  
寓故要用所致 勢不得已 伏在五美  
洞坪 騰字田太種陸斗落 卜數加耕  
拾捌負庫乙 價折錢文貳拾兩 依  
數捧上爲遣 本文記段 他文記並付 故  
不得出給 而以此新文記一丈 右前永  
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下正事  
田主 自筆 幼學 李元馨[着名]

추록

騰字

李元馨

方內 作棉田四斗

只 在瓦嶝坪

道光四年

甲申十一月十二日[着名]

도광 4년(1824, 순조24) 갑신년 11월 11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가기전家基田을 여러 해 동안 경식耕食하다가 이사로 인해  
긴히 쓸 곳이 있어서 형세상 부득이 오미동五美洞에 있는 등자전騰字田 태종太種 6두락지, 부수負數  
가경加耕 18부 곳을 전문錢文 2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문기가 함께  
붙어 있어서 내어주지 않고 신문기新文記 1장과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이원형李元馨[착명]

## 추록

등자騰字 땅은 이원형李元馨이 방내方內에서 면전棉田으로 만든 것으로 4두락지가 와등瓦嶺에 있다.

도광道光 4년 갑신년 11월 12일[작명]

1824년 11월 11일에 유학幼學 이원형李元馨이 이사를 위한 요용소치로 오미동五美洞에 있는 등자전騰字田 태종太種 6두락지 18부 곳을 2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문기가 함께 붙어 있어서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이원형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164. 189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十九年癸巳十一月十二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矣身傳來畚 累年耕食是如  
可 年前以要用所致以 還退之意放賣是加尼  
當此歉歲 生活萬無 故勢不得已 伏在於能城  
員斯字十二畚 卜二負二束六夜味一斗落果 十二畚卜十二  
負四束十五夜味三斗落果 十一畚一負三束十夜味一斗落  
果 同員牟田一席地一斗落廳乙 并畚四斗落果 田  
一斗落并 價折錢壹百肆拾兩 依數捧用是  
遣 右前永爲放賣爲去乎 自此以後 若有  
異談 則以此文記憑正事  
畚田主 柳奴奉月[着名]  
門族 柳奴大奉月[着名]  
證筆 孫崔月[着名]

此亦中 舊還退文記

六章乙 并付事



광서 19년(1893, 고종30) 기사년 11월 12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전래답을 여러 해 동안 경식耕食하다가 연전年前에 필요한 일이 있어 환퇴還退할 뜻으로 방매放賣하였는데, 이와 같은 흥년을 만나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형세상 부득이하게 능성能城에 있는 사자斯字 12번답畝 2부 2속 6배미夜味 1두락지, 12번답畝 12부 4속 15배미夜味 3두락지, 11번답 1부 3속 10배미夜味 2두락지, 같은 곳의 모전牟田 1석지席地 1두락지 등 총 답畝 4두락지와 전田 1두락지를 전문錢文 14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할 일이다.

답전주畝田主 : 유노柳奴 봉월奉月[작명]

문족門族 유노柳奴 대봉월大奉月[작명]

증인證人 : 손취월孫崔月[작명]

이에 옛 환퇴문기還退文記 6장을 함께 부칠 일이다.

1893년 11월 12일 유노柳奴 봉월奉月이 흥년을 만나서 능성能城에 있는 사자斯字 12번답 2부 2속 6배미夜味 1두락지와 12부 4속 15배미夜味 3두락지, 그리고 11번답 1부 3속 10배미夜味 2두락지, 같은 곳에 있는 모전牟田 1석지席地 1두락지 등, 답畝 4두락지와 전田 1두락지를 14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옛 환퇴문기還退文記 6장을 함께 부친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 165. 1896년 유제양柳濟陽 소지所志

全羅北道 求禮居 柳濟陽

右謹言 伏以民之六代祖參議公墓 在於治下解北村面龍巖洞仁山後麓 而位土畚四斗落 亦在於本墓下 以來百餘年矣 年前族人寅山 遂出山直 奪耕那畚四斗落 此是寅山者 幸其本孫之居遠 肆其荒悖也 上年寅山自然逃走之後 該面百安洞居 名不知金哥稱以 那畚買得於寅山處云 而仍作己物視若無主 噫 寅山荒悖 卽金哥之必素稔知 而寅山已逃之後 金哥敢生無據之心 欲奪班家百餘年守護直土 究厥心腸 則愈有甚於寅山者也 不勝憤痛 裹足遠來 茲敢呼籲 伏願捉

致金哥 嚴覈其買賣眞假 若假則置之 若眞則嚴治其無難盜買之習 右畚四斗落 依舊推給 使遠  
居之民 俾保先壟守護之地 千萬祈懇事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丙申二月日

大邱郡守李鎭善之章

名不知金哥 卽

爲率來 對質

後 查處向事

三月五日

頭民

洞任 眼同

[관인] 3

추록

建陽二年丁酉三月五日 大邱郡守 題決

丁酉三十九日 佑聖來

전라북도 구례에 사는 유제양柳濟陽이

삼가 아뢰습니다. 엇드려 생각건대 저의 6대조 참의공參議公의 묘가 치하治下의 해북촌면解北村面 용암동龍巖洞 인산仁山 후록後麓에 있는데, 위토답位土畝 4두락이 본 묘의 아래에 있는 지가 100여 년이 나 되었습니다. 연전에 죽인 인산寅山이 마침 산직山直을 내치고 그 논 4두락을 빼앗아 지었습니다. 이 인산이란 자는 본래 본손本孫과 거리가 멀고 방자하기가 황패荒悖한 자입니다. 작년에 인산이 자연스럽게 도주한 후에, 해당 면의 백안동百安洞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답을 인산에게서 매득하였다고 하면서 자기 물건 만들기를 주인이 없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아! 인산의 황패함을 김가가 필시 본래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인산이 이미 도망친 후라 김가가 감히 근거없는 마음을 내어 반가班家에서 100여년 동안 지켜온 직토直土를 뺏고자 합니다. 그 속내를 살펴보면 인산보다 더 심한 자이니 분통함을 억누르지 못하겠습니다. 발을 싸매고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에 감히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김가를 잡아다가 그 매매의 참과 거짓을 엄핵嚴覈하되, 만약 거짓이면 그만두더라도 참이면 무난히 몰래 파는 습관을 엄히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 4두락지는 예

전대로 찾아주시어서 멀리 사는 백성으로 하여금 선산을 수호할 수 해주시길 천만번 간절히 바랍니다. 명령하실 일이오니, 성주城主께서 처분해주시옵소서.

병신년 2월 일

대구군수 이진선李鎭善의 장章

이름을 모르는 김가는 데리고 와서 대질을 한 후 조사할 일.

3월 5일. 두민과 동임이 안동眼同할 것.

추록

건양建陽 2년 정유년 3월 5일. 대구군수大邱郡守 제결題決.

정유년 3월 29일에 우성佑聖이 가져옴.

1896년 2월에 전라북도 구례에 사는 유제양柳濟陽이 대구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6대조 참의공參議公의 묘가 대구의 해북촌면解北村面 용암동龍巖洞 인산仁山에 있고 위토답位土畓 4두락이 그 아래에 있는지가 100여 년이나 되었는데, 연전에 죽인 인산寅山이 산지기를 내치고 자신이 그 논을 빼앗았고, 이것을 작년에 도주하면서 백안동에 사는 김가에게 팔아서 마침내 양반가의 직토를 잃게 되었으니, 이들을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그 논 4두락을 찾아달라는 내용이다. 대구군수는 3월 5일에 김가를 데려와서 대질하고 조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166. 1747년 최우천崔佑天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二年丁卯十二月二十八日 同姓五寸侄 佑天處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逃奴秃男 自己買得田畓  
在於吐旨面堂山員馘字丁 而畓則時種五升落只  
是遣 田則皮牟三斗落只 卜數七卜二束庫爲乎矣 本文記段  
右奴乙丑年逃亡時 偷去是乎等以 不得許與是乎  
乃 價折則錢文肆兩 依數捧上爲遣 永永許

與爲去乎 日後若有時非之端是去等 以此下

正事

自筆田畝主 同姓五寸叔 崔宇寬[着名]

추록

吐旨面

奈醜二字

並三斗三升

落只 買

李龍處

건륭 12년(1747, 영조23) 정묘년 12월 28일 동성同姓 5촌질五寸姪 우천佑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곳이 있어서 도노逃奴 독남禿男이 자기매득한 전답田畝인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醜字丁 답밭은 시종時種 5승락지升落只이고 전田은 피모皮牟 3두락지, 부수負數는 7부 2속인 곳이다. 본문기本文記는 위 노奴가 을축년에 도망갈 때 훔쳐갔기 때문에 허여許與할 수 없다. 전문錢文 4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원히 허여許與하니, 이후에 만약 시비의 실마리가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전답주田畝主 : 동성 5촌숙同姓五寸叔 최우관崔宇寬[착명]

추록

토지면吐旨面 내奈·함醜자 전답 3두 3승락지升落只를 이룡李龍에게 매득함.

1747년 12월 28일에 동성 5촌숙同姓五寸叔 최우관崔宇寬이 요용소치로 동성同姓 5촌질五寸姪 최우천崔佑天에게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醜字 전답, 답밭은 시종時種 5승락지升落只이고 전田은 피모皮牟 3두락지 7부 2속인 곳을 4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해당 전답은 도노逃奴 독남禿男이 자기매득한 전답田畝으로, 본문기本文記는 위 노奴가 을축년에 도망갈 때 훔쳐갔기 때문에 허여許與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최우관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추록에는 토지면吐旨面 내奈·함醜자 전답 3두 3승락지升落只를 이룡李龍에게 매득했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관련문서를 통해서 구례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醜字畝의 소유권은 정변鄭燮 → 김시

백金時伯·김유재金有載 → 윤상룡尹尙龍으로 이동되고, 한편 최우관崔宇寬 → 최우천崔佑天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167. 1756년 최우천崔佑天 소지所志

化民 幼學 崔佑天

右謹言所志情由段 民亦吐旨 賦字七十七田 牟三斗地 卜數五卜一束庫  
買得於民同姓五寸叔前爲乎矣 同田庫 堂叔使喚奴禿男之田 而  
避上典無去處 逃走已多年所 故上典次知放賣爲有置 日後後考  
次論理立旨 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丙子正月日

立旨成給

向事 廿日

官[署押]

화민化民 유학幼學 최우천崔佑天

이와 같이 삼가 소지를 올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토지吐旨에 있는 함자賦字 77번전田 모牟 3두락지, 부수 5부 1속 곳을 저의 동성同姓 5촌숙五寸叔에게서 매득하였습니다. 위 받은 당숙堂叔의 시환노使喚奴인 독남禿男의 발인데 상전上典을 피해 거처를 알 수 없이 도주한 것이 이미 여러 해가 되기 때문에 상전이 차지하여 방해한 것입니다. 이후에 증빙을 하기 위해 입지를 성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실 일이니, 성주께서 처분하여 주십시오.

병자년 1월 일.

입지立旨를 성급해줄 일. 20일.

## 관官[서업]

1756년 1월에 화민化民 유학幼學 최우천崔佑天이 구례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토지면에 있는 함자전鹹字田 3두락지 5부 1속 곳을 5촌숙五寸叔에게서 샀는데, 원래 그 땅은 당숙의 사환노비인 독남禿男의 밭으로, 독남이 도주를 했기 때문에 당숙의 차지가 된 것을 산 것이니, 여기에 대해 증빙할 수 있게 입지를 성급해달라는 내용이다.

## 168. 1745년 윤상룡尹尙龍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年乙丑二月二十日 尹尙龍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祖先傳來 累年耕食  
爲如可 要用所致以 不得已 求禮吐旨面堂  
山員伏在 鹹字畓壠斗參升落只 卜數伍  
負庫乙 價折錢文貳兩 捧上爲遣 右人處本  
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某同生子息  
族屬中 幸有雜談爲等 此文告官卞正事  
畓主 金有載[着名]  
證 李萬世[着名]  
筆 朴再盛[着名]

건륭 10년(1745, 영조21) 을축년 2월 20일 윤상룡尹尙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조상으로부터 전래한 땅을 여러 해 동안 경식耕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부득이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畓 1두 3승락지, 부수負數 5부 곳을 전문錢文 2냥을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식子息 족속族屬 가운데 혹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김유재金有載[작명]

증證 : 이만세李萬世[작명]

필筆 : 박재성朴再盛[작명]

1745년 2월 20일에 김유재金有載가 요용소치로 윤상룡尹尙龍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畝字畵 1두 3승락지 5부인 곳을 2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이만세李萬世가 섰고, 필집으로 박재성朴再盛이 참여하였다.

## 169. 1725년 김시백金時伯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參年乙巳三月十一日 金時伯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祖上傳來衿得 累年畊

食爲白如可 堂山員伏在畝字畵正斗參升落只 負

數伍卜庫乙 價折雄牛正正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都文記中背後爻

周爲白遣 不得已許給爲白遣 後此同生子孫中

如有雜談爲去等 次文記告官卜正事

畵主 鄭樊[着名]

證人 同生弟 鄭加并[着名]

筆執 前司果 許時廷[着名]

雍正 3년(1725, 영조1) 을사년 3월 11일 김시백金時伯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아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畝字畵 1두 3승락지, 부수負數 5부 곳을 수소 1필匹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

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해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도문기都文記 중의 뒤에 효주爻周하고 내어주지 않는다. 이후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기를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정번鄭樊[작명]

증인證人 : 동생제同生弟 정가병鄭加并[작명]

필집筆執 : 전사과前司果 허시정許時廷[작명]

1725년 3월 11일에 정번鄭樊이 김시백金時伯에게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畵 1두 3승락지 5부 곳을 수소 1필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해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본문기本文記는 도문기都文記 배후背後에 효주爻周하고 내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증인證人으로 동생제同生弟 정가병鄭加并 이 썼고, 필집筆執으로 전사과前司果 허시정許時廷이 참여하였다.

## 170. 1745년 노奴 귀만貴萬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年乙丑正月二十四日 李生員宅 奴 貴萬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自己<sup>99</sup>買得 積年耕

食爲白如可 要用所致以 勢不得已 吐旨面九萬

坪員伏在 奈字畵參斗落只 又鹹字畵三升落只

奈字卜數拾伍負貳束 鹹字七束 合參斗參升落

只 負數拾伍負玖束庫乙 價折錢文參拾兩 依數

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幸有雜談爲去等 此文告

官卞正事

畵主 李竜伊[着名]

---

99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筆 朴東紀[着名]

건륭 10년(1745, 영조21) 을축년 1월 20일 이생원李生員댁 노부 귀만貴萬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 형세상 부득이 토지면吐旨面 구만평九萬坪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3두락지, 함자답鹹字畓 3승락지升落只, 내자奈字 부수負數 15부 2속, 함자鹹字 부수 7속, 총 3두락지 3승락지, 부수負數 15부 9속 곳을 전문錢文 3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자손이나 족속 중에 혹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이용이李龍伊[작명]

필筆 : 박동기朴東紀[작명]

1745년 1월 20일 이용이李龍伊가 요용소치로 이생원李生員댁 노부 귀만貴萬에게 토지면吐旨面 구만평九萬坪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3두락지 15부 2속, 함자답鹹字畓 3승락지升落只 7속, 총 3두 3승락지 15부 9속 곳을 3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필집으로 박동기朴東紀가 참여하였다.

## 171. 1735년 이용이李龍伊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十三年乙卯十二月十九日 李龍伊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女矣身家夫生時 自己<sup>100</sup>之物 積年耕食爲如可 子息  
三兄弟贖身次 勢不得已 求禮吐旨面九萬坪員伏在 奈字畓三斗落只  
負數十五卜二束 又鹹字畓三升落只 負數七束 兩庫并 價折錢文參拾肆

---

100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兩 依數交易捧上 右人處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之中  
某子息族屬中 幸有雜談之弊爲去等 此文告官卜正事  
畚主 故李世安妻 朴召史[右寸]  
證 異姓四寸姪 朴枝萬[着名]  
筆 朴再盛[着名]

용정 13년(1735, 영조11) 을묘년 12월 19일 이용이李龍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스스로 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자식子息 3형제의 속신贖身을 위해 형세상 부득이하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구만평九萬坪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3두락지 부수負數 15부 2속, 함자답鹹字畓 3승락지 부수負數 7속의 두 곳을 모두 전문錢文 34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자식子息 족속族屬 가운데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고故 이세안李世安 처妻 박조이朴召史[우촌]

증證 : 이성異姓 4촌질四寸姪 박지만朴枝萬[작명]

필筆 : 박재성朴再盛[작명]

1735년 12월 19일에 고故 이세안李世安의 처妻 박조이朴召史가 자식을 속신시키기 위해 이용이李龍伊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구만평九萬坪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3두락지 15부 2속 곳과 함자답鹹字畓 3승락지 7속 곳 두 곳을 34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이성異姓 4촌질四寸姪 박지만朴枝萬이 섰고, 필집으로 박재성朴再盛이 참여하였다.

## 172. 1714년 이세안李世安 화회명문和會明文

康熙五十三年甲午正月十五日 李世安處 和會明文

右和會明文爲臥乎事段 矣祖上流來畧干田  
 畚 官作平均分衿次以 呈儀送到付爲有知乎  
 五寸禹鼎果更爲和會 本面伏在奈字丁  
 畚參斗落只 負數十三卜二束庫 畧干吉病  
 價 錢文肆兩 交數捧上爲遣 右人處 同  
 和會文記背後爲遣 永永許給爲去乎  
 後此良中 子孫中雜談爲去等 文記內  
 乙良相考下正事  
 自筆 隻主 金順亨[着名]  
 訂人 金海准[着名]  
 訂保 姜碩老[着名]

강희 53년(1714, 숙종40) 갑오년 1월 15일 이세안李世安에게 주는 화회명문和會明文

이 화회명문和會明文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약간의 전답田畚  
 을 관官에서 직접 재산을 균등히 분깃分衿을 하는 일로 의송議送을 올려 도부到付함에 5촌 우정禹鼎과  
 다시 화회和會를 하게 되어 본면本面の 내자奈字답 3두락지, 부수負數 13부 2속 곳을 약간의 길병吉病  
 값인 전문錢文 4냥을 받고 위 사람에게 같은 화회문기會文記에 배후背後하여 영영 허급許給하니, 이  
 후에 자손子孫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문기를 가지고 살펴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척주隻主 : 김순형金順亨[작명]

증인訂人 : 김해준金海准[작명]

증보訂保 : 강석노姜碩老[작명]

1714년 1월 15일에 척주隻主 김순형金順亨이 이세안李世安에게 본면本面の 내자奈字 정답丁畚 3두락  
 지 13부 2속 곳을 약간의 돈인 4냥을 받고 화회和會한 명문明文이다. 증인으로 김해준金海准이 썼고,  
 증보訂保로 강석노姜碩老가 참여하였다.

## 173. 1706년 이세안李世安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伍年丙戌十二月初十日 李世安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貧寒所致以 矣子  
息年亦能對答爲如可 授食還上多數乙仍于  
矣祖上傳來畊食爲如可 莫重國穀無路乙仍于  
勢不得已 吐旨九萬里伏在 奈字丁畝參斗  
落只 負數拾參負貳束庫乙 價折正租全  
拾石 錢文肆拾陸兩 衣數交易捧上爲遣  
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畝  
并付乙仍于 不得不許給爲去乎 後次子息族  
類中是乃雜談之弊 則將此文記告官  
下正施行事  
畝主 金順益[着名]  
訂 異姓四寸 金順肇[着名]  
筆 同姓孫 金順亨[着名]

강희 45년(1706, 숙종32) 병술년 12월 10일 이세안李世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빈한 소치로 자식이 해마다 잘 납부하다가 받아먹은 환자還上가 너무 많아서 값을 길이 없어 형세상 부득이 나의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아 경식畊食하던 토지吐旨 구만리九萬里에 있는 내자답奈字畝 3두락지, 부수負數 13부 2속 곳을 정조正租 전소 10석 석과 전문錢文 46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畝이 함께 붙어있으므로 허급許給할 수 없다. 이후에 자식子息 족류族類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김순익金順益[착명]

증訂 : 이성異姓 4촌四寸 김순조金順肇[착명]

필筆 : 동성同姓 손孫 김순형金順亨[착명]

1706년 12월 10일 김순익金順益이 환자를 갚기 위해 이세안李世安에게 토지면吐旨 구만리九萬里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3두락지 13부 2속 곳을 정조正租 전 10석石과 돈 46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있으므로 허급許給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이성異姓 4촌 四寸 김순조金順肇가 있고, 필집으로 동성同姓 손孫 김순형金順亨이 참여하였다.

## 174. 1726년 이희증李希曾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肆年丙午正月廿日 幼學 李希曾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亦要用所致以 自己買  
 得 吐旨面珍字七畓參斗八刀落只 負數  
 十二卜三庫乙 價折正租廿九石 依數交易  
 捧上爲遣 右前本文記並以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子孫中雜談爲去等 此  
 文記告官下正事  
 畓主 自筆 金再具[着名]

### 추록

珍字畓三斗十二卜三束  
 買金再記  
 量順亨

옹정 4년(1726, 영조2) 병오년 1월 20일 유학幼學 이희증李希曾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필요한 일이 있어 자기매득한 토지면吐旨面 진자珍字 7번답 3두 8승락지, 부수負數 12부 3속 곳을 정조正租 29석石으로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 자손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기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자필自筆 김재구金再具[작명]

### 추록

진자답珍字畵 3두락지 12부 3속을 김재기金再記에게서 매득함. 양안에는 순형順亨으로 되어 있음.

1726년 1월 20일에 김재구金再具가 요용소치로 유학幼學 이희증李希曾에게 토지면吐旨面 진자珍字 답 3두 8승락지 12부 3속 곳을 정조正租 29석石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김재구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추록에는 진자답珍字畵 3두락지 12부 2속을 김재기金再記에게서 매득하였으며 양안에는 순형順亨으로 되어있다는 내용이 붙어있다.

## 175. 1725년 김재귀金再貴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參年乙巳二月初七日 金再貴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祖上傳來 累年耕  
食爲如可 貧寒所致以 年既七十之年 資生  
難繼乙仍于 勢不得 吐旨面珍字七畵參斗  
捌升落只 負數十二卜三束庫 量爲子順亨  
帳名庫乙 依數價折錢文四十兩 捧上爲  
遣 右人處 本文記段 燒火立案中 故  
背後爻周 後他族屬等雜談爲去等 此  
文告官下正事

畵主 通政大夫 金斗弘[着名]

訂人 通政大夫 鄭時泰[着名]

訂保 李元弼[着名]

筆執 同姓四寸弟 金兌輝[着名]

옹정 3년(1725, 영조1) 을사년 2월 7일 김재귀金再貴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아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빈한소치로 나이도 이미 70살이 넘은 나이에 살아갈 방도를 구하기가 어려워 형세상 부득이 토지면 吐旨面 진자珍字 7번답畓 3두 8승락지, 부수負數 12부 3속, 양안에 순형順亨의 이름으로 등록된 곳을 전문錢文 40냥을 받고 위 사람에게 방매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불에 탄 입안立案 가운데 있어서 배후背後에 효주爻周한다. 이후에 다른 족속族屬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통정대부通政大夫 김두홍金斗弘[작명]

증인訂人 : 통정대부通政大夫 정시대鄭時泰[작명]

증보訂保 : 이원필李元弼[작명]

필집筆執 : 동성同姓 4촌제四寸弟 김태휘金兌輝[작명]

1725년 2월 7일에 통정대부通政大夫 김두홍金斗弘이 빈한소치로 김재귀金再貴에게 토지면吐旨面の 진자답珍字畓 3두 8승락지 12부 3속 곳을 4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불에 타서 배후背後에 효주爻周한다고 하였다. 증인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정시대鄭時泰가 썼고, 증보訂保는 이원필李元弼, 필집筆執은 동성同姓 4촌제四寸弟 김태휘金兌輝가 참여하였다.

## 176. 1740년 이재창李再昌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伍年庚申七月十一日 幼學 李再昌前 明文

右明文事段 傳來衿得是在 吐旨

面柿木亭員伏在 重字畓西邊五夜

玖斗落只 負數肆拾負捌束庫乙

折價錢文捌拾伍兩 依數交易捧

上爲遣 右前本文書一丈并以 永永

放賣爲去乎 後日良中同生

子孫中 幸有雜談是去等 將此文告  
官下正事  
畚主 自筆 幼學 張處載[着名]

건륭 5년(1740, 영조16) 경신년 7월 11일 유학幼學 이재창李再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전래된 땅을 깃득衿得한 토지면吐旨面 시목정柿木亭에 있는 중자답重字畚 서변西邊 5배미 9두락지, 부수負數 40부 8속 곳을 전문錢文 8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 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서本文書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혹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장처재張處載[작명]

1740년 7월 11일에 유학幼學 장처재張處載가 유학幼學 이재창李再昌에게 시목정柿木亭에 있는 중자답重字畚 서변西邊 5배미 9두락지 40부 8속 곳을 8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본문기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장처재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177. 179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伍拾捌年癸丑十一月初一日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 要用所出 本面下訖里龍字  
畚二斗落只 卜數五卜內一斗落  
只庫叱 價折錢文拾兩 依數  
捧上爲遣 本文記段 他田畚并  
付故 日後某子中如  
有雜談是去等 此文已告 官下正



事

自筆 幼學 潘一善[着名]

건륭 58년(1793, 정조17) 계축년 11월 1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땅을 필요한 일이 생겨서 본면本面 변흘리卞訖里 용자답龍字畓 2두락지 부수負數 5부 내의 1두락지를 전문錢文 1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 있으므로 내어줄 수 없으며, 이후에 자손 중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기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 유학幼學 반일선潘一善[착명]

1793년 11월 1일에 유학幼學 반일선潘一善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본면本面 변흘리卞訖리에 있는 용자답龍字畓 2두락지 5부 내의 1두락지를 1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 있으므로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반일선이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178. 1651년 호노戶奴 이룡而龍 토지명문土地明文

順治八年辛卯五月初□□主簿宅 戶奴 而龍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叱段 僧矣師亦月初一日身死爲有是矣  
如此凶年窮夏 永葬時及行齊等 所用之物乙 他無辨出  
仍于 同師僧自己買得耕食爲如乎 求禮吐旨甫坪柿木亭  
員伏在 重字畓三作并八十三卜三束 二十二斗落只內 西邊五  
夜味九斗落只參拾負庫良中 價折正木綿參同 依數  
交易捧上爲遣 同人處矣 永永放賣爲去乎 後此良  
中 師僧族類及僧矣師兄師弟上佐等中 更生謀計

雜談爲去乙等 持此文記告官辨正爲乎事  
此亦中 本文記段 未盡放賣 故傳給不得 同本文記四  
丈內終末一丈良中 背後錄爲去乎 後考次  
畚主 故 天印 上佐僧 自筆 應卞[着名]  
證保 弟子僧 海明[着名]  
證人 三寸姪子 孝白 年十六 丙子生[左寸]

순치 8년(1651, 효종2) 신묘년 5월 주부댁主簿宅 호노戶奴 이룡而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스승이 이달 초1일에 돌아가셨는데, 이같은 흉년에 궁하窮夏를 당하여 장사에 소용되는 물자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동同 사승師僧이 자기매득하여 경식耕食한 구례求禮 토지吐旨 보평甫坪 시목정柿木亭에 있는 중자답重字畓 3작병 83부 3속 22두락지 내의 서변西邊 5배미夜味 9두락지 30부 곳을 정목면正木綿 3동同으로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사승師僧의 족류族類나 사형師兄 사제師弟 상좌上佐들 중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이에 본문기本文記는 기재된 전답을 모두 방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고, 본문기 4장 내의 마지막 1장의 후면에 기록하니 나중에 참고할 것.

답주畓主 : 고故 천인天印 상좌승上佐僧 자필自筆 응변應卞[착명]

증보證保 : 제자弟子 승僧 해명海明[착명]

증인證人 : 삼촌三寸 질자姪子 효백孝白 나이 60세 병자생丙子生[좌촌]

1651년 5월에 승僧 응변應卞이 사승 천인天印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주부댁의 호노戶奴 이룡而龍에게 구례求禮 토지吐旨 보평甫坪 시목정柿木亭에 있는 중자답重字畓 83부 3속 22두락지 내의 서변西邊 5배미夜味 9두락지 30부 곳을 정목면正木綿 3동同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기재된 전답을 모두 방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증보證保로 제자弟子 승僧 해명海明이, 증인證人으로 삼촌三寸 질자姪子 효백孝白이 참여하였다.

## 179. 1745년 이재창李再昌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拾年乙丑七月十六日 幼學 李再昌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吐旨面浦坪員伏在 重字  
三作內番柒斗落只 負數參拾柒卜六束庫乙 右人前 價折  
錢文六十四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並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爲去等 將此文下正事  
番主 自筆 幼學 張處元[着名]

### 추록

文尺面龜村張生  
纏處買得印

건륭 10년(1745, 영조21) 을축년 7월 16일 유학幼學 이재창李再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낱히 쓸 곳이 있어서 토지면吐旨面 포평浦坪에 있는 중자重字 3작作 내의 답畚 7두락지, 부수負數 37부 6속 곳을 위 사람에게 전문錢文 64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장처원張處元[착명]

### 추록

문척면文尺面 귀촌龜村의 장전張纏에게서 매득買得함.

1745년 7월 16일에 유학幼學 장처원張處元이 요용소치로 유학幼學 이재창李再昌에게 토지면吐旨面 포평浦坪에 있는 중자답重字畚 7두락지 37부 6속 곳을 64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장처원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추록에는 문척면文尺面 귀촌龜村의 장전張纏에게서 매득買得하였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180. 1792년 이수남李壽南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七年壬子十二月二十七日 幼學 李壽南前 明文

右文爲放賣事 自己買得是在 要用所

致 本面卞屹里龍字畓二斗落只 卜數五卜

厶 價折錢文十九兩五錢 依數捧上爲遣 本

文記段 他田畓并付乙仍于 不得許給 而永永

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告官卞正事

畓主 朴宗采 在喪不着

筆 幼學 全乃祚[着名]

건륭 57년(1792, 정조16) 임자년 12월 27일 유학幼學 이수남李壽南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여 방매放賣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필요한 일이 있어서 자기매득한 땅인 본면本面 변흘리卞屹里 용자답龍字畓 2두락지, 부수負數 5부인 곳을 전문錢文 19냥 5전으로 숫자대로 받고 영원히 방매放賣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 있으므로 허급許給할 수 없으며, 이후 자손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박종채朴宗采 재상불착在喪不着

필筆 : 유학幼學 전내복全乃祚[착명]

1792년 12월 27일에 박종채朴宗采가 요용소치로 유학幼學 이수남李壽南에게 본면本面 변흘리卞屹里 용자답龍字畓 2두락지 5부 곳을 19냥 5전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 있으므로 허급許給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답주畓主인 박종채朴宗采는 상중이라 착명을 하지 않았으며 필집으로 유학幼學 전내복全乃祚이 참여하였다.

## 181. 1799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四年己未三月初七日 喪人 柳德浩前 明文  
右明文事段 勢不得已 自己買得是在  
文尺面龜石里駒字垡田一斗落只 卜數  
二卜草家二旨合四間庫乙 價折錢文捌  
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一文  
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或有雜  
談是去等 將此文卜正事  
家垡主 自筆 幼學 張灑[着名]

가경 4년(1799, 정조23) 기미년 3월 7일 상인喪人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형세상 부득이 자기매득한 문척면文尺面 구석리龜石里 구자대전駒字垡田 1두락지 부수負數 2복, 초가草家 2지旨 합 4칸間을 전문錢文 8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혹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垡主 자필自筆 유학幼學 장전張灑[착명]

1799년 3월 7일에 유학幼學 장전張灑이 어쩔 수 없어서 상인喪人 유덕호柳德浩에게 문척면文尺面 구석리龜石里 구자대전駒字垡田 1두락지 2복과 초가草家 2지旨 합 4칸間을 8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장전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구례 문척면文尺面 구석리龜石리에 있는 구자대전駒字垡田의 소유권은 장란張灑 → 장전張灑 → 유덕호柳德浩로 이동되었다.

## 182. 1795년 장전張灑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六十年乙卯二月十七日 同姓四寸 幼學 灑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本面九城里駒字  
垆田太種一斗落只 草家各二間式二  
旨合四間 負數二卜庫乙 價折錢文十兩  
依數捧上爲遣 右處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家垆并付以 不得出給爲  
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將此  
文下正事  
垆主 自筆 同姓四寸 張灑[着名]

건륭 60년(1795, 정조19) 을묘년 2월 17일 동성同姓 4촌四寸 유학幼學 장전張灑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낱히 쓸 곳이 있어서 본면本面 구성리九城里 구자대전駒字垆田 태종太種 1두락지, 초가草家 각 2칸間씩 2지늬 합 4칸間, 부수負數 2부가 되는 곳을 전문錢文 1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되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가대家垆와 함께 붙어 있으므로 내어줄 수 없다.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 잡을 일이다.

대주垆主 : 자필自筆 동성同姓4촌四寸 장란張灑[착명]

1795년 2월 17일에 동성同姓4촌四寸 장란張灑이 요용소치로 동성同姓 4촌四寸 유학幼學 장전張灑에게 본면本面 구성리九城里 구자대전駒字垆田 태종太種 1두락지, 초가草家 2지늬 4칸間 2부가 되는 곳을 1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가대家垆에 함께 붙어 있으므로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장란이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183. 1840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二十年庚子二月二十一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傳來田累年耕食是如可 要  
用所致 伏在馬山面玉只村前坪 盈字田太  
種參斗五刀內 東邊正斗落 卜數四負五  
束廬 價折錢文捌兩 依數捧上爲遣 舊文  
段 他田并付故以 新文一丈 右前永永放賣  
是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告  
卜事  
田主 自筆 幼學 金致基[着名]

### 추록

盈字田一斗落  
買得龍頭金  
致基處

도광 20년(1840, 현종6) 경자년 2월 21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전래되어 온 밭을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마산면馬山面 옥지촌玉只村 앞에 있는 영자전盈字田 태종太種 3두 5승락지 내의 동변東邊 1두락지, 부수負數 4부 5속 곶을 전문錢文 8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구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붙어 있으므로 신문기 1장과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김치기金致基[착명]

### 추록

영자전盈字田 1두락지를 용두龍頭의 김치기金致基에게서 매득買得하였음.

1840년 2월 21일에 김치기金致基가 마산면馬山面 옥지촌玉只村의 영자전盈字田 태종太種 3두 5승락 지 내의 동변東邊 1두락지 4부 5속 곳을 8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구문기는 다른 받이 함께 붙어 있으므로 신문기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김치기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추록에는 영자전盈字田 1두락지를 용두리의 김치기金致基에게서 매득買得하였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184. 182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三年癸未正月二十七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買得 伏在吐旨面  
 九萬坪 海字四十七番十一卜四束 實落三斗落  
 只應 價折錢文參十兩 依數捧上爲遣 右前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  
 談是去等 以此文記憑考事  
 畝主 自筆 幼學 張鴻翼[着名]

### 추록

九萬坪海字 負數十  
 一卜四束三斗落 給價三  
 十兩 買得九萬張鴻  
 翼生連處

도광 3년(1823, 순조23) 계미년 1월 27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곳이 있어서 자기매득한 토지면吐旨面 구만평九萬坪의 해자海字 47번답畓 11부 4속, 실중 3두락지인 곳을 전문錢文 3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할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장홍익張鴻翼[작명]

### 추록

구만평九萬坪의 해자海字답 부수負數 11부 4속 3두락지에 대해 30냥을 주고 구만리의 장홍익張鴻翼에게서 매득買得하였음.

1823년 1월 27일에 유학幼學 장홍익張鴻翼이 요용소치로 토지면吐旨面 구만평九萬坪의 해자海字 답 11부 4속 3두락지인 곳을 3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한다고 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장홍익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추록에는 구만평에 있는 해자海字답 11부 4속 3두락지를 30냥을 주고 구만리의 장홍익張鴻翼에게서 매득買得하였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에 있는 해자海字답은 김낙성金洛成 → 박진형朴鎭衡 → 고육석高六錫 → 장봉익張鵬翼·장홍익張鴻翼 → 유덕호로 소유권이 이동되었다.

## 185. 1813년 고육석高六錫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十八年癸酉二月二十一日 幼學 高六錫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  
如可 移買次 求禮吐旨面九萬村前 海  
字畝四十七三斗落只 負數十一卜四束庫乙  
價折錢文參拾兩 依數交易捧上爲  
遣 右前本文記并 永永放賣爲  
去乎 日後幸有雜談是去等 此  
文記告 官卜呈事  
自筆 畝主 幼學 朴鎭衡

가경 18년(1813, 순조13) 계유년 2월 21일 유학幼學 고육석高六錫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이매移貫를 위해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구만촌九萬村 앞에 있는 해자답海字畓 47번 3두락지, 부수負數 11부 4속 곳을 전문錢文 3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기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畓主 : 유학幼學 박진형朴鎭衡

1813년 2월 21일에 유학幼學 박진형朴鎭衡이 이매하기 위해 유학幼學 고육석高六錫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구만촌九萬村 앞에 있는 해자海字답 3두락지 11부 4속 곳을 3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박진형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186. 1820년 장봉익張鵬翼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貳拾伍年庚辰正月十五日 幼學 張鵬翼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如可 要

用所致 吐旨面九萬坪 海字畓四十七丁三

斗落只 負數十一卜四束庫乙 價折錢

文拾貳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本文

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

談是去等 將此文下正事

畓主 自筆 幼學 高六錫[着名]

가경 25년(1820, 순조20)<sup>101</sup> 경진년 1월 15일 유학幼學 장봉익張鵬翼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토지면吐旨面 구만평九萬坪의 해자답海字畓 47번 3두락지, 부수負數 11부 4속 곳을 전문錢文 12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교육석高六錫[착명]

1820년 1월 15일에 유학幼學 교육석高六錫이 요용소치로 유학幼學 장봉익張鵬翼에게 토지면吐旨面 구만평九萬坪의 해자답海字畓 47번 3두락지 11부 4속 곳을 12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교육석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187. 1812년 박진형朴鎭衡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十七年壬申二月廿八日 幼學 朴鎭衡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買得是在 吐旨

面九萬員 海字四十七畓十一卜四東五夜味 實

種三斗落只庫乙 價折錢文參拾兩 依

數捧上爲遣 右前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

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憑考事

畓主 自筆 幼學 金洛成[著名]

---

101 가경 20년은 을해년(1815)이고, 경진년은 가경 25년(1820)이다.

가경 17년(1812, 순조12) 임신년 2월 28일 유학幼學 박진형朴鎭衡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낱히 쓸 곳이 있어서 자기매득한 토지면吐旨面 구만九萬에 있는 해자海字 47번답畝 11부 4속 5배미夜味, 실종實種 3두락지인 곳을 전문錢文 3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수를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익을 제기 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할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김낙성金洛成[착명]

1812년 2월 28일 유학幼學 김낙성金洛成이 요용소치로 유학幼學 박진형朴鎭衡에게 토지면吐旨面 구만九萬에 있는 해자海字 47번답畝 11부 4속 3두락지인 곳을 3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김낙성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토지면 구만리에 있는 해자海字 47번답畝 11부 4속 3두락지의 소유권 이전 경로는 김낙성金洛成 → 박진형朴鎭衡 → 고육석高六錫 → 장봉익張鵬翼·장홍익張鴻翼 → 문화유씨이다.

## 188. 1743년 노奴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八年癸亥五月拾伍日 李生員宅奴 加八里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資生無路是乎等以 自己<sup>102</sup>買得 海  
字畝二斗落只二作并 負數五卜九束庫乙 價折錢文  
拾肆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一丈立旨一丈牌旨一丈  
并 右人宅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子孫中如有雜  
談是去等 將此文下正事

畝主 金禿山[著名]

證 金仁白

---

102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筆執 折衝 鄭位周[着名]

### 배자

奴 禿山處

無他 汝亦與丹春同居買

得 海字畚二斗落二作五卜九束

庫乙 從其所告 如是出牌 任意

發賣 以補其艱窮向事

癸酉五月初八日

上典 金[着名]

건륭 8년(1743, 영조19) 계해년 5월 15일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자기매득한 해자답海字畚 2두락지 2작二作, 부수負數 5복 9속인 곳을 전문錢文 14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1장, 입지立旨 1장, 패지牌旨 1장과 함께 위 댁에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자손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김독산金禿山[착명]

증證 : 김인백金仁白

필집筆執 : 절충折衝 정위주鄭位周[착명]

### 배자

노奴 독산禿山에게

다름이 아니라 네가 단춘이랑 동거하면서 매득買得한 해자답海字畚 2두락지 2작作 5부 9속 곳을 고한 바에 따라 이와 같이 패지를 주니, 마음대로 발매發賣하여 곤궁한 생활에 보태도록 할 일이다.

계유년 5월 8일

상전上典 김금[착명]

1743년 5월 15일에 김독산金禿山이 자생養生을 위해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해자답海字畚 2두락지 5복 9속인 곳을 14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1장, 입지立旨 1장,

패지牌牒 1장과 함께 방대하였다. 증인으로 김인백金仁白이 썼고, 필집筆執으로 절충장군 정위주鄭位周가 참여하였다. 배자도 함께 붙어 있는데, 이 배자는 상전上典 김금이 노奴 독산禿山에게 해자답海字畓 2두락지 5부 9속 곳을 임의로 팔아서 곤궁한 생활에 보태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다.

관련 문서로 보면 토지면의 해자답海字畓에 대한 소유권은 박옥대朴玉代 → 김금노奴 독산禿山 → 이생원李生員덕으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89. 1713년 박옥대朴玉代 소지所志

吐旨居 朴玉代

右謹陳所志矣段 矣身去甲戌年分 無主陳荒草木盖林  
處 同面海字庫乙 起畊者爲主 累年畊食爲白有如可  
今年被灾宏甚 凶年慘酷 多有受食還上 他無周變之策  
無敦迫不得已 同里居金禿山處 畓二斗落只 負數五卜六束  
庫乙 放賣於正租二石捧來 無弊還上納公是白乎等以 敢此  
仰訴爲白去乎 右良情由細細參商分捧 同海字丁二斗  
落只庫良中 末世人心 或有他人橫奪之弊是白良置  
後考發明次 立旨成給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官司主 處分  
癸巳十月日 所志

狀辭的

實 則依

願立旨事

廿一日

官[署押]

토지吐旨에 사는 박옥대朴玉代 소지

위와 같이 삼가 소지를 올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 갑술년 무렵에 무주진황지 초목이 울창한 곳에 같은 면의 해자海字 곳을 기경起耕한 것이 주가 되어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올해 재해를 입은 것이 굉장히 심하고 흉년이 참혹하여 받아먹은 환자還上가 많은데 변통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같은 마을에 사는 김독산金禿山에게 답궤 2두락지, 부수 5부 6속 곳을 정조正租 2석을 받고 방매하여 환자를 납부하는 데 폐단이 없게 되었기에 감히 이와같이 호소하오니, 이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살피시어 분봉分捧<sup>103</sup>해주십시오. 같은 해자海字 정丁 2두락지 곳은 말세末世의 인심이 혹시 타인이 횡탈橫奪하는 폐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후의 빙고를 위해 입지立旨를 성급成給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실 일이니, 관사주官司主께서 처분處分해주십시오.

계사년(1713) 10월 일 소지.

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하는 바에 따라 입지立旨를 성급해 줄 일이다. 21일 관衙[서업]

1713년 10월에 박옥대朴玉代가 구례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갑술년에 무주진황지인 해자海字 곳을 기경하여 지어먹다가 재해를 입고 흉년으로 환자를 받아먹은 것이 많아 변통할 길이 없음에 같은 마을에 사는 김독산金禿山에게 답궤 2두락지 5부 6속 곳을 정조正租 2석을 받고 방매하여 환자를 갚게 되었으니, 입지를 성급해 주어서 훗날에 빙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한 내용이다.

## 190. 1713년 김독산金禿山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五十二年癸巳十月初十日 金禿山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無主陳荒處 吐旨海

字畝貳斗落只 負數伍卜陸束 年久起耕食

---

103 분봉(分捧) 분등수봉(分等收捧). 조세(租稅)를 봄-가을 두차례에 나누어 받아들임.

爲如可 當此凶年 多食還上 他無變通無敦迫不得已  
同貳斗落只庫 價折正租全貳石 依數交易捧上爲  
遣 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子孫  
中 雜談爲去等 將此文記告官下正事  
畚 朴玉代[着名]  
證人 呂得龍[着名]  
筆執 金尙璠[着名]

### 추록

吐旨面  
海字畚二  
斗落地  
買禿山  
處

강희 52년(1713, 숙종39) 기사년 10월 10일 김독산金禿山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무주진황지인 토지吐旨 海字답海字畚 2두락지 부수負數 5부 6속을 오래도록 경식耕食하다가 금년의 흉년을 만나 많은 환자還上을 변통할 도리가 없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同 2두락지를 정조正租 전췌 2석石으로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해하니 이후에 자손子孫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畚 : 박옥대朴玉代[작명]

증인證人 : 여득룡呂得龍[작명]

필집筆執 : 김상번金尙璠[작명]

### 추록

토지면吐旨面 海字답海字畚 2두락지를 독산禿山에게 매득買得함.

1713년 10월 10일에 박옥대朴玉代가 환자를 갚기 위해 김독산金禿山에게 무주진황지였던 토지吐旨



해자답海字畓 2두락지 5부 6속 곳을 정조正祖 전 2석石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證人으로 여득룡呂得龍이 있고, 필집筆執으로 김상번金尙璠이 참여하였다. 추록에는 토지면吐旨面 해자답海字畓 2두락지를 독산禿山에게서 매득買得했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191. 1756년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貳拾壹年丙子十二月十四日 出身 李時華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寺佛糧是在 金信世畓亦移賣  
 次 不得已 吐旨面求亭子前坪伏在 奈字畓參  
 斗落只 卜數柒卜伍束庫乙 價折錢文拾貳兩 依數  
 捧上交易 本文書四丈并以 永永放賣爲有矣 結  
 價變通無路乙仍于 結卜壹伏及同畓此年結卜  
 并以 後無雜談發爲擔當云云 故以結卜防  
 徵例但爲成文放賣爲去乎 幸有生謀雜談  
 是去等 持此文記查實卜正事  
 畓主 華嚴寺 元持事 僧 發敏[右寸]  
 管主時 書記 僧 活軒[着名]

건륭 21년(1756, 영조32) 병자년 12월 14일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우리 절의 불량佛糧이던 김신세金信世의 논 토지면吐旨面 구정자求亭子 앞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3두락지 부수負數 7부 5속 곳을 이매移賣를 위해 부득이한 사정으  
 로 전문錢文 12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서本文書 4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한다. 결  
 가結價를 변동할 방법이 없으므로 결복結卜 1복伏 및 동답同畓의 올해 결복結卜과 함께 훗날의 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결복을 방징례防徵例로서 성문을 하여 방매를 하니,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화엄寺華嚴寺 원지사元持事 승僧 발민發敏[우촌]

관주시[管主時] 서기[書記] : 승[僧] 활헌[活軒] [작명]

1756년 12월 14일에 화엄사[華嚴寺] 원지사[元持事] 승[僧] 발민[發敏]이 이매를 하기 위해 출신[出身] 이시[李時華]에게 토지면[吐旨面] 구정자[求亭子] 앞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3두락지 7부 5속 곳을 12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서[本文書] 4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서기는 승[僧] 활헌[活軒]이 맡았다.

관련문서로 보면 구례 토지면[吐旨面] 구정자[求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畓]에 대한 소유권은 여기응[余奇應] → 박낙복[朴洛朴] → 승[僧] 가원[可遠] → 김억세[金億世] → 화엄사[華嚴寺] 지사[持寺] 늑준[勒俊]·발민[發敏] → 이시화[李時華]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92. 1705년 지사[持寺] 늑준[勒俊] 허여명문[許與明文]

康熙肆拾肆年乙酉貳月貳拾捌日 華嚴寺持寺 勒俊處 明文  
右明文爲乎事段 矣身亦要用所致以 自己買得耕食爲白如乎 年  
滿之餘 意亦無他處誠以次爲己身及亦爲先亡父母 每朔望  
四名日招饗次以 吐旨面求亭子員伏在 奈字畓參斗落只  
負數八卜五束庫乙 右寺法堂佛糧以 本文記參丈并以 永永許  
納爲去乎 日後若有矣子孫姪及同生與遠近族屬中 生謀  
雜談爲去等 將此文內乙用良告官下正事  
畓主 金億世[着名]  
證人 同生 金億奉[着名]  
證保 通政 照明[着名]  
筆執 山人 處玄[着名]

강희 44년(1705, 숙종31) 을유년 2월 28일 화엄사[華嚴寺] 지사[持寺] 늑준[勒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필요한 일이 있어 자기매득하여 경식[耕食]하던 곳을 나

이가 많은 나머지 생각도 달리 정성을 들일 곳이 없어서 내 몸과 선망부모를 위해 초하루와 보름에 4명을 초대하여 대접하기 위하여 토지면吐旨面 구정자求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3두락지 부수負數 8부 5속 곳을 위 절의 법당法堂 불량佛糧으로,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영원히 허납許納하니, 이후에 만약 나의 자손질子孫姪 및 동생同生과 원근遠近 족속族屬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김억세金億世[작명]

증인證人 : 동생同生 김억봉金億奉[작명]

증보證保 : 통정通政 조명照明[작명]

필집筆執 : 산인山人 처현處玄[작명]

1705년 2월 28일에 김억세金億世가 화엄사華嚴寺 지사持寺 늑준勒俊에게 토지면吐旨面 구정자求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3두락지 8부 5속 곳을 허여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절에 허납한 이유는 자신과 선망부모를 위해 매 삭망 때마다 4명을 초청하여 대접하는 법당法堂 불량佛糧으로 쓰라고 한 것이며,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주었다. 증인證人으로 동생同生 김억봉金億奉이 섰고, 증보證保로 통정通政 조명照明이, 필집筆執으로 산인山人 처현處玄이 참여하였다.

## 193. 1702년 김억세金億世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壹年壬午貳月貳拾貳日 金億世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僧矣身亦自己<sup>104</sup>買得耕食爲如可 移買次以 求禮地求亭員伏在爲在如中 奈字畓參斗落只 卜數柒卜伍束庫乙 價折正租全貳拾石伍斗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處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某同生姪子上佐族類中 雜談隅有是去乙等 將此文記內乙用良 告官辨正爲乎事

104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고쳤다.

畚主 僧 可遠[着名]  
證人 驛吏 姜先龍[着名]  
證保 奇保 申奉連[着名]  
筆執 驛吏 朴儀立[着名]

강희 41년(1702, 숙종28) 임오년 2월 22일 김억세金億世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승僧인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식耕食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하여 구례求禮 구정求亭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3두락지 부수負數 7부 5속 곳을 정조正租 전소 20석石 5두斗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질자姪子 상좌上佐 족류族類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승僧 가원可遠[작명]  
증인證人 : 역리驛吏 강선룡姜先龍[작명]  
증보證保 : 기보奇保 신봉련申奉連[작명]  
필집筆執 : 역리驛吏 박의립朴儀立[작명]

1702년 2월 22일 승僧 가원可遠이 이매를 하기 위해 김억세金億世에게 구례求禮 구정求亭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3두락지 7부 5속 곳을 정조正租 전 20석石 5두斗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역리驛吏 강선룡姜先龍이 썼고, 증보證保로 기보奇保 신봉련申奉連이, 필집筆執으로 역리驛吏 박의립이 참여하였다.

## 194. 1666년 박낙복朴恪朴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四年丙午五月初二日 朴恪朴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自己買得耕

食爲白如可 要用所致以 自任員伏在李字畚  
參斗落只 卜數七卜五束庫乙 價折正木六十疋  
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處永永放賣爲  
去乎 後次良中同生等是乃 雜談爲去乙等 此文記  
告官辨正爲乎事  
畚主 余奇應[左寸]  
證人 金汗  
證保 僧 學玄[著名]  
筆執 朴慶益[著名]

강희 5년(1666, 현종7)<sup>105</sup> 병오년 5월 2일 박낙복朴恪朴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식耕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 자임  
自任에 있는 이자답李字畚 3두락지 부수負數 7부 5속 곳을 정목正木 60필疋로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  
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등이 이의를 제기하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여기응余奇應[좌촌]

증인證人 : 김한金汗

증보證保 : 승僧 학현學玄[작명]

필집筆執 : 박경익朴慶益[작명]

1666년 5월 2일에 여기응余奇應이 요용소치로 박낙복朴恪朴에게 자임自任에 있는 이자답李字畚 3  
두락지 7부 5속 곳을 정목正木 60필疋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證人으로 김한金汗이 썼  
고, 증보證保로 승僧 학현學玄이, 필집筆執으로 박경익朴慶益이 참여하였다.

---

105 강희 4년은 을사년(1665)이고, 병오년은 강희 5년(1666, 현종7)이다.

## 195. 1693년 가원可元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參拾貳年癸酉二月貳拾柒日 可元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自己買得畊食爲  
白如可 要用致以 求亭員伏在 奈字畚參斗  
落只庫乙 價折雄牛壹隻以 依交易捧上爲遣 右  
人處本文記壹丈并 永永放賣爲去等 後次同生族  
類中雜談爲去等 此文記用良告官辨正事  
畚主 朴尙祜[左寸]  
訂人 同生 朴尙上[左寸]  
訂保 趙連世[左寸]  
筆執 司果 趙位京[着名]

강희 32년(1693, 숙종19) 계유년 2월 27일 가원可元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식畊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 구정求亭에 있는 내자답奈字畚 3두락지를 수소 1척隻을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족류族類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박내복朴尙祜 [좌촌]

증인訂人 : 동생同生 박내상朴尙上 [좌촌]

증보訂保 : 조연세趙連世 [좌촌]

필집筆執 : 사과司果 조위경趙位京 [작명]

1693년 2월 27일에 박내복朴尙祜이 요용소치로 가원可元에게 구정求亭에 있는 내자답奈字畚 3두락지를 수소 1척隻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에는 동생同生 박내상이 섰고, 증보訂保로 조연세趙連世가, 필집筆執으로 사과司果 조위경이 참여하였다.

## 196. 1741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六年辛酉三月二十日 幼學 李源碩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自己買得 九萬里鹹字  
垆田太種二斗落 負數六卜八束庫 柿木三柱 草  
家六間餘外果木并以 價折錢文參拾兩 依數  
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三文并以 永永放賣爲  
去乎 日後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此文下正事  
家垆主 幼學 牟聖薰[着名]  
筆 幼學 李東尹[着名]

추록

鹹字田

黃右世 太田

건륭 6년(1741, 영조17) 신유년 3월 20일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때移買를 위해 자기매득한 구만리九萬里 함자대전鹹字垆田 태종太種 2두락지 부수負數 6부 8속, 시목柿木 3주柱, 초가草家 6칸여 외의 과목果木과 함께 전문錢文 3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 자손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垆主 : 유학幼學 모성훈牟聖薰[작명]

필筆 : 유학幼學 이동윤李東尹[작명]

추록

함자전鹹字田은 황우세黃右世의 콩밭이다.

1741년 3월 20일에 유학幼學 모성훈牟聖薰이 이때를 하기 위해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에게 구만리

九萬里 함자대전醜字垡田 태종太種 2두락지 6부 8속 곳과 시목柿木 3주柱 및 초가草家 6칸과 과목果木 을 3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필집은 유학幼學 이동윤李東尹이 맡았다.

관련문서로 보면 토지면 구만리에 있는 함자대전醜字垡田은 1650년에 정희鄭希가 김응선金應先에 방매하였고, 1690년에 송신망宋信望이 신양信陽에게 방매하였으며, 1704년에 이조이李召史가 황조백黃祖白에게, 1732년에 황우세黃右世가 노奴 손선孫先에게 방매하였다. 1717년에 강선위姜善偉가 이생원李生員덕에 방매하였다. 1720년에 정선재鄭善才가 김순형金順亨에게 방매했고, 1729년에 김순형은 모생원牟生員에게 방매했으며, 1741년에 모성훈牟聖薰이 이원석李源碩에게 방매하였다.

## 197. 1729년 노奴 돌이鬻伊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柒年九月晦日 牟生員宅奴 鬻伊處 明文  
右明文爲乎臥事段 矣祖流來代田 在於此里醜字田太種  
貳斗落只 負數陸負八束庫 市木貳柱扶柱草家二指六間  
草行廊及庫舍并以 價折錢參拾五兩捧上爲遣 本文  
記并以 右人處永永放賣爲去乎 此後同生及子息中  
雜談是去等 此文記施行事  
家代田主 長兄 金順亨[着名]  
訂人 同生弟 金順泰[着名]

옹정 7년(1729, 영조5) 기유년 9월 그믐 모생원牟生員덕 노奴 돌이鬻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조상으로부터 전해 받은 대전代田인 본리本리의 함자대전醜字田 태종太種 2두락지 부수負數 6부 8속 곳, 시목柿木 2주柱, 초가草家 2지指 6칸間, 초행랑草行廊 및 고사庫舍와 함께 전문錢文 35냥을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 동생同生이나 자식子息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전주家代田主 : 장형長兄 김순형金順亨[작명]

증인訂人 : 동생제同生弟 김순태金順泰[작명]



1729년 9월 그믐에 장형長兄 김순형金順亨이 모생원牟生員덕 노奴 돌이鬻伊에게 본리本里의 함자전 鹹字田 태종太種 2두락지 6부 8속 곳과 시목柿木 2주柱, 초가草家 2지指 6칸間, 초행랑草行廊 및 고사庫 5를 3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 하였다. 증인으로 동생제同生弟 김순태金順泰가 참여하였다.

## 198. 1720년 김순형金順亨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玖年庚子正月廿五日 金順亨 處明文  
 右明文爲馭乎事段 矣祖上代田畝有文  
 卷 故以呈議送到付于本縣爲是如乎 右人  
 招捉是乎矣 彼此相親之間 官庭是非除良  
 同伏在鹹字代田二斗落 負數十一卜五束內 西  
 邊正斗落 負數五卜八束庫乙 價折錢文  
 畧干三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段 他田  
 畝并付仍于 不得傳給爲去乎 日後良中  
 及同生遠近族屬中 幸有雜談爲去等 此  
 文記相考告官下正事  
 和會田主 自筆 鄭善才[着名]  
 證參 徐宗健[着名]

강희 59년(1720, 숙종46) 경자년 1월 25일 김순형金順亨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답田畝 문권文卷이 있어서 의송議 送을 올려 본현에 도부到付함에 위 사람을 초착招捉하였는데, 피차 친분이 있는 사이에 관정官庭에서 시비是非를 하게 된지라 함자鹹字 대전代田 2두락 부수負數 11부 5속 내의 서변西邊 1두락, 부수負數 5 부 8속 곳을 전문錢文 3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畝이 함께 붙 어 있으므로 전급傳給하지 않는다. 이후에 동생同生 원근遠近 족속族屬 가운데 혹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화회和會 전주田主 : 자필自筆 정선재鄭善才[작명]

증참證參 : 서종건徐宗健[작명]

1720년 1월 25일에 정선재鄭善才가 김순형金順亨에게 함자鹹字 대전代田 2두락 11부 5속 내의 서변西邊 1두락 5부 8속 곳을 송사 이후 화회를 하고 3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 있으므로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정선재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참證參으로 서종건徐宗健이 참여하였다.

## 199. 1650년 김응선金應先 토지명문土地明文

順治七年庚寅十一月初六日 金應先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自己買得耕食爲自如可 移買所致

以 伏在九萬員鹹字旧代田十一卜伍束 二作田十四卜庫 太種伍斗落只 又九亭

子員奈字畓三斗落只 卜數十三卜二束等庫乙 價折正木綿四同 依數交易

捧上爲遣 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同生子息族類等是乃

雜談爲去乙等 此文記相考告官辦正爲乎事

田畓主 自筆執 京砲保 鄭希[着名]

訂人 趙永男[着名]

訂保 姜永立[着名]

순치 7년(1650, 효종 1) 경인년 11월 6일 김응선金應先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식耕食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해 구만九萬에 있는 함자鹹字 구대전旧代田 11부 5속 2작작전 14복 곳 태종太種 5두락지, 또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3두락지 부수負數 13부 2속 등 곳을 정목면正木綿 4 동同으로 값을 정해 숫자대로 받

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해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식子息 족류族類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든 이 문서를 살펴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답주田畝主 : 자필집自筆執 경포보京砲保 정희鄭希[작명]

증인訂人 : 조영남趙永男[작명]

증보訂保 : 강영립姜永立[작명]

1650년 11월 6일에 경포보京砲保 정희鄭希가 이매를 하기 위해 김응선金應先에게 구만九萬에 있는 함자鹹字 대전 11부 5속, 2작전 14복 곳 태종太種 5두락지,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畝 3두락지 13부 2속 곳을 정목면正木綿 4 동同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별도의 필집 없이 정희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인으로 조영남趙永男이 섰고, 증보訂保로 강영립姜永立이 참여하였다.

## 200. 1690년 신앙信陽 토지명문土地明文

庚午十月貳拾柒日 信陽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罔有用處是乎等以 勢不得已 祖上傳來畊食爲如乎  
鹹字伏在田太種壺斗落只 負數參卜參束庫良中 價折正租拾斗 依數  
交易捧上爲遣 久處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畝并付乙仍于  
許給不得爲去乎 後此良中 同生及子息他族屬等是乃 生謀雜  
談爲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自筆 宋信望[着名]

證人 金莫山[着名]

경오년(1690) 11월 27일 신앙信陽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사용할 곳이 있어 형세상 부득이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아 경식畊食하던 함자전鹹字田 태종太種 1두락지 부수負數 3부 3속 곳을 정조正租 10두斗를 숫자

대로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 있으므로 허급許給할 수 없다. 이후에 동생同生이나 자식子息 및 다른 족속族屬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자필自筆 송신망宋信望[작명]

증인證人 : 김막산金莫山[작명]

경오년 11월 27일에 송신망宋信望이 쓸 곳이 있어서 신양信陽에게 함자전鹹字田 태종太種 1두락지 3부 3속 곳을 정조正租 10두대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 있으므로 허급許給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송신망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인證人으로 김막산金莫山이 참여하였다.

## 201. 1717년 노奴 기인己仁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陸年丁酉二月晦日 李生員宅奴 己仁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亡妻自己買得累年畊食爲  
如可 要用所致以 勢不得已 九萬村前伏在鹹字田  
太種壹斗落只 負數參卜參束 世弘帳庫 價折  
錢貳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壹丈  
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某子孫同生中 若  
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下正事  
田主 姜善偉[着名]  
訂人 金碩生[着名]  
筆執 朴俊英[着名]

### 추록

吐旨面 鹹字田太種一斗落  
買永川宅 孫發△

강희 56년(1717, 숙종43) 정유년 2월 그믐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기인仁仁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망치亡妻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 형세상 부득이 구만촌九萬村 앞에 있는 함자전醜字田 태종太種 1두락지 부수負數 3부 3속, 세홍世弘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록된 곳을 전문錢文 2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자손子孫 동생同生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강선위姜善偉[착명]

증인訂人 : 김석생金碩生[착명]

필집筆執 : 박준영朴俊英[착명]

### 추록

토지면吐旨面 함자전醜字田 태종太種 1두락을 영천댁永川宅 손발모孫發△에게서 매득함.

1717년 2월 그믐에 강선위姜善偉가 요용소치로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기인仁仁에게 구만촌九萬村에 있는 함자醜字 전田 태종太種 1두락지 3부 3속 곳을 2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위 땅은 세홍世弘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록된 곳으로,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김석생金碩生이 섰고, 필집筆執으로 박후영朴後英이 참여하였다. 추록에는 토지면吐旨面 함자전醜字田 태종太種 1두락을 영천댁永川宅 손발에게서 매득하였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202. 1704년 황조백黃祖白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參年甲申三月十九日 黃祖白處 明文

右明文爲畝乎事段 家夫祖上衿得畊食爲白如可 莫重國穀

還上果 田三稅對答無路仍于 勢不得已 堂山員伏在 醜字田太種

拾斗落只 負數四十四負內 上邊五斗落只 負數貳拾伍負伍束庫乙

價折四禾雄牛一隻 及五禾卜馬正疋 錢文貳拾壹兩以 依數交易捧上

爲遣 同人處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燒火立案在錄 故以不  
得許給爲乎旆 各衿都文記中背後爻周爲去乎 後次如有  
及同生子息族屬中 更爲雜談爲去等 其代他田畚代給次以  
相約成文是去等 文記內乙用良中 告官卞正事  
田主 妻 李召史[右寸]  
訂人 家夫同生弟 鄭秀英[着名]  
訂保 異姓 四寸兄 趙年世[左寸]  
筆執 金重彩[着名]

### 추록

吐旨鹹字  
垆田二斗落  
買可樹宅

강희 43년(1704, 숙종30) 갑신년 3월 19일 황조백黃祖白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가부家夫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경식畊食하다가 막중한 나라 곡식인 환자還上와 전3세田三稅를 납부할 방법이 없어 형세상 부득이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전鹹字田 태종太種 10두락지 부수負數 44부 내의 상변上邊 5두락지 부수負數 25부 5속 곶을 4살짜리 수소 1척隻과 5살짜리 짐말卜馬 1필匹, 그리고 전문錢文 21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본문기本文記는 불탄 입안立案에 실려 있어서 허급許給할 수가 없으며, 각 깃의 도문기都文記 중에서 배후효주背後爻周하니 이후에 만약 동생同生 자식子息 족속族屬 가운데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그 대신 다른 전답田畚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하고 문서를 작성한 이 문기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처妻 이조이李召史[우촌]

증인訂人 : 가부家夫 동생제同生弟 정수영鄭秀英[작명]

증보訂保 : 이성異姓 사촌형四寸兄 조년세趙年世[좌촌]

필집筆執 : 김중채金重彩[작명]

### 추록

토지吐旨 함자대전鹹字垆田 2두락지를 가수댁可樹宅으로부터 매득하였음.

1704년 3월 19일에 이조이李召史가 환자와 전세를 위해 황조백黃祖白에게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전 鹹字田 태종太種 10두락지 44부 내의 상변上邊 5두락지 25부 5속 곳을 4살짜리 수소 1척隻과 5살짜리 짐말卜馬 1필匹 및 돈 21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불탄 입안立案에 실려 있어서 허급許給할 수가 없어서 도문기都文記 중에서 배후효주背後交周한다고 하였다. 증인으로 남편 동생인 정수영鄭秀英이 썼고, 증보訂保로 이성異姓 사촌형四寸兄 조년세趙年世가, 필집筆執으로 김종채金重彩가 참여하였다. 추록에는 토지吐旨 함자대전鹹字垵田 2두락지를 가수택可樹宅으로부터 매득 하였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202-1. 1732년 노奴 손선孫先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拾年壬子三月二十一日 奴 孫先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亦自己買得 累年耕食爲如  
 可 以移買次 堂山里伏在鹹字田太種伍斗落只 負數  
 貳拾伍負壹束 帳名羽世庫乙 價折錢文八兩 依數交易  
 捧上爲遺 右人處本文記壹丈牟禾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此同生及子孫中 幸有雜談是去等 此文記告  
 官下正事  
 自筆 田主 黃羽世[着名]

옹정 10년(1732, 영조8) 임자년 3월 21일 노奴 손선孫先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해 당산리堂山里에 있는 함자전鹹字田 태종太種 5두락지 부수負數 25부 1속, 우세羽世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록된 곳을 전문錢文 8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을 모화牟禾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이나 자손子孫 가운데 혹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전주田主 : 황우세黃羽世[착명]

1732년 3월 21일에 황우세黃羽世가 이매를 하기 위해 노부 손선孫先에게 당산리堂山里에 있는 함자전鹹字田 태종太種 5두락지 25부 1속 곳을 8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위 땅은 우세羽世의 이름으로 양안에 기록된 곳으로, 본문기本文記 1장을 모회牟禾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황우세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202-2. 1743년 손발孫發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七年癸亥三月二十八日 孫發處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買得 鹹  
字二十四 二卜八束皮牟三斗落只 價折  
錢文二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一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幸有雜談是  
去等 此文下正事  
田主 自筆 李[着名]

건륭 8년(1743, 영조19)<sup>106</sup> 계해년 3월 28일 손발孫發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곳이 있어서 자기매득한 함자鹹字 24번답 2부 8속 피모皮牟 3두락지를 전문錢文 2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자필自筆 이춘[작명]

1743년 3월 28일에 이춘가 요용소치로 손발孫發에게 함자鹹字전 2부 8속 3두락지를 2냥에 방매하

---

<sup>106</sup> 건륭 7년은 임술년(1742)이고, 계해년은 건륭 8년(1743, 영조19)이다.



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이씨가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203. 179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六年辛亥十二月初七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意外遭此大故 初喪凡百無路乙仍于  
吐旨面奈字畚 伏在九萬里村前貳斗落只  
負數七卜二束庫乙 價折錢文三十一兩 依  
數捧上是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旧文書段 曾失於火災中是如 以新文書  
一丈永永放賣之地 日後子孫中 如有  
雜談是去等 告官下呈事  
畚主 喪人 趙宗得 喪人  
筆 李必榮[着名]

### 추록

九萬里村前奈字  
畚七卜二束二斗地只 趙  
宗得處 給價文三  
十一兩買得印

건륭 56년(1791, 정조15) 신해년 12월 7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뜻밖에 부모상을 당하여 제반 물자를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 토지면吐旨面 내자답奈字畚에 있는 구만리九萬里 촌전村前的 2두락지 부수負數 7부 2속 곳을 전문錢文 31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한다. 구문서旧文書는 일찍이 화재에

소실하였기 때문에 신문서新文書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 자손 가운데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상인喪人 조종득趙宗得 상인喪人

필筆 : 이필영李必榮[작명]

#### 추록

구만촌九萬村 앞의 내자답奈字畝 7부 2속 2두락지 곳을 조종득趙宗得에게서 31냥을 주고 매득買得 하였음.

1791년 12월 7일에 상인喪人 조종득趙宗得이 부모상을 치르기 위해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에 있는 내자답奈字畝 2두락지 7부 2속 곳을 31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구문서舊文書는 일찍이 화재에 소실하였기 때문에 신문서新文書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였다. 필집으로 이필영李必榮이 참여하였다. 추록에는 구만촌九萬村 앞의 내자답奈字畝 7부 2속 2두락지를 조종득趙宗得에게서 31냥을 주고 매득買得하였다는 내용이다.

## 204. 1784년 노奴 업이業伊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九年甲辰二月初七日 柳龍川宅奴 業伊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上典宅山直畝 移買次 牌子據 吐旨

面五美洞村後伏在 露字畝一斗落只 卜數三卜

五束庫乙 價折錢文伍兩 依數捧上 右宅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

是去等 將此文告官下正事

畝主 梁生員宅奴 二奉[左寸]

#### 추록

• 乾隆四十九年甲辰二月初七日 梁奴二奉許 五美洞村後山直畝正斗落 買得文記一度 在美洞

## 村後

- 全年月初四日 全文記 一
- 全五十一年丙午十二月日 朴守根許 五美洞村後田三斗落 買得文記 一
- 全五十二年丁未六月十一日 梁重輦許 五美洞村後如山坂 買得文記 一
- 癸丑七月十八日 李永運許 家垵田畝 盡爲買得文記 一
- 道光二年壬午十月十九日 大邱北村良坊 李萬五等連名 山坂文記 一  
合六度全封

건륭 49년(1784, 정조8) 갑진년 2월 7일 유용천柳龍川댁 노녀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상전댁上典宅의 산직답山直畓을 이매移買하기 위해 배자牌子에 따라 토지면吐旨面 오미동촌五美洞村의 뒤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1두락지 부수負數 3부 5속을 전문錢文 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댁에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양생원梁生員댁 노녀 이봉二奉 [좌촌]

## 추록

- 건륭 49년 갑진년 2월 초7일, 양梁노녀 이봉二奉에게 오미동촌五美洞村 뒤의 산직답山直畓 1두락을 매득買得한 문기 1통. 미동촌美洞村 뒤에 있음.
- 동년월 4일, 동문기 1통.
- 건륭 51년 병오 12월 일, 박수근朴守根에게 오미동촌五美洞村 뒤의 밭 3두락지를 매득買得한 문기 1통.
- 건륭 52년 정미년 6월 11일, 양중거梁重輦에게 오미동촌五美洞村 뒤에 있는 여간의 산판山坂을 매득買得한 문기 1통.
- 계축년 7월 18일, 이영운李永運에게 가대家垵 전답田畓을 모두 매득買得한 문기 1통.
- 도광道光 2년 임오년 10월 19일, 대구大邱 북촌北村 양방良坊의 이만오李萬五 등이 연명連名한 산판山坂 문기 1통.  
총 6통을 동봉함.

1784년 2월 7일에 양생원梁生員댁 노녀 이봉二奉이 이매를 하기 위해 상전댁을 대신하여 유용천柳

龍川 덕 노奴 업이業伊에게 토지면吐旨面 오미동촌五美洞村의 뒤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1두락지 3부 5속  
곳을 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추록에는 건륭 49년 갑  
진년 2월 초7일에 양梁노奴 이봉二奉에게 오미동촌五美洞村 뒤의 산직답山直畓 1두락을 매득買得한 문  
기 1통을 포함하여 총 6통을 동봉한다는 기록이 적혀 있다.

## 205. 1784년 노奴 이봉二奉 배자牌子 ; 1786년 노奴 용봉用 奉 토지명문土地明文

### 배자

奴 二奉處

無他 汝矣上典宅 移買次

吐旨五美洞村後 山直畓露

字一斗落 負數三卜五束庫乙

某處放賣 以爲納上宜當

事

甲辰二月初四日

上典 梁[着名]

### 명문

乾隆五十一年丙午十二月日 奴用奉宅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賣次 五美洞村

後伏在田騰字 卜數四卜六束

太種三斗落只 捧價錢拾

兩爲遣 右宅永永放賣爲

去乎 日後如有雜談 持此

文卞正事

田主 朴守根[着名]

노부 이봉二奉에게

다름이 아니라 너의 상전택上典宅이 이매移買를 위해 토지吐旨 오미동촌五美洞村의 뒤에 있는 산직답山直畓 로지露字 1두락 부수負數 3부 5속 곳을 모처某處에 방매放賣하여 납상納上함이 마땅할 일이다.

갑진년 2월 4일

상전上典 양梁[작명]

건륭 51년(1786, 정조10) 병오년 12월 노부 용봉用奉덕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를 위해 오미동촌五美洞村의 뒤에 있는 등자전騰字田 부수負數 4부 6속 태종太種 3두락지 곳을 진문錢文 10냥을 받고 위 택에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박수근朴守根[작명]

배자는 갑진년(1784) 2월 4일에 상전上典 양梁이 노부 이봉二奉에게 이매移買를 위해 토지吐旨 오미동촌五美洞村의 뒤에 있는 산직답山直畓 로지露字 1두락 3부 5속을 방매放賣하여 납상하라는 뜻으로 작성한 것이고, 명문은 1786년 12월에 박수근朴守根이 이매를 하기 위해 노부 용봉用奉덕에게 오미동촌五美洞村의 뒤에 있는 등자전騰字田 4부 6속 태종太種 3두락지 곳을 1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 206. 1787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二年丁未六月十一日 幼學 柳德浩前 明文

右文爲事段 如千山所丘木 在於五美洞村後是

如乎 既與本村基主有相議守護之意 則不可自意

移賣是乎矣 日後子孫中 或有彼我物之爭

則不可不終歸一處爲好 且當災歲所用緊

急 故同先山丘木等地 捧價錢壹兩伍錢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

卞正事

山主 梁重輦[着名]

證 高應斗[着名]

筆 鄭致明[着名]

건륭 52년(1787, 정조11) 정미년 6월 11일 유학幼學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약간의 산소山所 구목丘木이 오미동촌五美洞村의 뒤에 있는데 이미 본촌本村의 기주基主와 서로 수호守護할 뜻으로 상의相議하였기에 자의로 이매移賣할 수 없다. 이후 지손 가운데 피차의 물건으로 분쟁을 일으킨다면 끝내는 한 곳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없고, 또 흉년을 당하여 긴급한 상황이라서 위 선산과 구목 등을 전문錢文 1냥 5전훤을 받고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 지손 가운데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산주山主 : 양중여梁重輦[작명]

증證 : 고응두高應斗[작명]

필筆 : 정치명鄭致明[작명]

1787년 6월 11일에 양중여梁重輦가 소용이 긴급하여 유학幼學 유덕호柳德浩에게 오미동촌五美洞村의 뒤에 있는 산소山所 구목丘木 등을 1냥 5전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으로 고응두高應斗가 썼고, 필집으로 정치명鄭致明이 참여하였다.

## 207. 1700년 이생원李生員 불망기不忘記

康熙四十年庚辰十二月十七日 李生員前 不忘記

右不忘記爲臥乎事段 天

皇峙騰字田太種二斗落只 及加  
畚一斗三升落只等庫乙 價折雌  
牛一隻 捧上爲白遣 本主前 永  
永還推放賣爲去乎 後此良中  
如有雜談爲去等 此不忘記乙  
告官卜正事  
自筆 金愛承[着名]

강희 39년(1700, 숙종26)<sup>107</sup> 경진년 12월 17일 이생원李生員에게 주는 불망기不忘記

이 불망기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천황치天皇峙의 등자전勝字田 태종太種 2두락지와 가답加畚 1두 3승락지 등을 수소 1척隻을 받고, 본주本主에게 영원히 환퇴還推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불망기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 김애승金愛承[착명]

1700년 12월 17일에 김애승金愛承이 이생원李生員에게 천황치天皇峙의 등자전勝字田 태종太種 2두락지와 가답加畚 1두 3승락지 등을 수소 1척隻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주本主에게 영원히 환퇴還推 방매放賣한다고 한 것을 보아 원래 이생원의 전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별도의 필집 없이 김애승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208. 1696년 이송린李松隣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參拾伍年丙子六月初七日 同姓七寸 松隣前 明文

---

<sup>107</sup> 강희 40년은 신사년(1701)이고, 경진년은 강희 39년(1700, 숙종26)이다.

右明文爲臥乎事段 自己買得耕食  
 爲如可 貧寒所致以 勢不得已 伏在  
 天皇時員騰字田太種二斗落只 及加畚  
 一斗三升落只等庫良中 價折正租二  
 石以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  
 爲去乎 後此子孫中 若有雜談爲去乙  
 等 此文告官卞正事  
 田畚主 自筆 李弘星[着名]

강희 35년(1696, 숙종22) 병자년 6월 7일 동성同姓7촌七寸 송린松隣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경식耕食하다가 가난의 소치로 형세상 부득이 천황치天皇時에 있는 등자전騰字田 태종太種 2두락지와 가답加畚 1두 3승락지를 정조正租 2석石으로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답주田畚主 : 자필自筆 이홍성李弘星[착명]

1696년 6월 7일에 이홍성李弘星이 빈한소치로 동성同姓7촌七寸 이송린李松隣에게 천황치天皇時에 있는 등자전騰字田 태종太種 2두락지와 가답加畚 1두 3승락지 곳을 정조正租 2석石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별도의 필집 없이 이홍성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209. 1691년 이상혁李相赫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參拾年辛未十月初四日 李相赫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 矣妻邊衿得年大耕食  
 爲如可 要用所致以 勢不得已 伏在天皇時



員騰字丁 吐越田太種二斗落只 及加畝一斗三升  
落只等庫良中 價折上木二疋 捧上爲遣 右  
人前永永放賣爲去乎 後此某同生子孫  
中 若有訴談爲去乙等 將此文告官下正事  
自筆 田畝主 金廷顯[着名]  
證人 趙位星[着名]

강희 30년(1691, 숙종17) 신미년 10월 4일 이상혁李相赫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처변妻邊으로부터 깃득衿得하여 오래 경식耕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형세상 부득이 천황치天皇峙에 있는 등자騰字 땅 토월전吐越田 태종太種 2두락지와 가답加畝 1두 3승락지 곳을 상목上木 2필을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만약 분쟁을 삼는 일이 생긴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전답주田畝主 : 김정현金廷顯[작명]

증인證人 : 조위성趙位星[작명]

1691년 10월 4일에 김정현金廷顯이 요용소치로 이상혁李相赫에게 천황치天皇峙에 있는 등자騰字田 태종太種 2두락지와 가답加畝 1두 3승락지 곳을 상목上木 2필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별도의 필집 없이 김정현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조위성趙位星이 참여하였다.

## 210. 1737년 김상이金尙伊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貳年丁巳元月拾捌日 金尙伊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要用所致以 勢不得  
已 求禮吐旨面大川員伏在 騰字畝壹斗  
伍升落只 卜數肆卜玖束 吾禮帳庫乙 價折

錢文貳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  
前 本文記壹丈 不忘記壹丈并以 永永放  
賣爲去乎 後次族類中 如有雜談爲去  
等 此文記相考下正事  
畚主 幼學 李[着名]  
證人 文貴成[着名]  
筆執 崔泰山[着名]

### 추록

吐旨面天皇時下 伏  
在畚二斗落只 四卜九束  
果 同字田三負一束庫  
乙高 生員萬赫處給價七兩  
買得印

건륭 2년(1737, 영조13) 정사년 1월 18일 김상이金尙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필요한 일이 있어서 부득이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대천大川에 있는 등자답騰字畚 1두 5승락지, 부수負數 4부 9속, 오례畝禮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록된 곳을 전문錢文 2냥으로 값을 정해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 불망기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족류族類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살피어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유학幼學 이李[착명]

증인證人 : 문귀성文貴成[착명]

필집筆執 : 최태산崔泰山[착명]

### 추록

토지면吐旨面 천황치天皇時 아래에 있는 답畚 2두락지 4부 9속 곳과 동자전同字田 3부 1속 곳을 생원生員 고만혁高萬赫에게서 7냥을 주고 매득買得하였음.

1737년 1월 18일에 유학幼學 이나가 요용소치로 김상이金尙伊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대천大川에 있는 등자답騰字畓 1두 5승락지 4부 9속 곳을 2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위 땅은 오례吾禮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록된 곳으로, 본문기本文記 1장, 불망기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證人으로 문귀성文貴成이 섰고, 필집筆執으로 최태산崔泰山이 참여하였다. 추록에는 토지면吐旨面 천황치天皇峙 아래에 있는 답畓 2두락지 4부 9속과 동자전同字田 3부 1속을 생원生員 고만혁高萬赫에게서 7냥을 주고 매득買得하였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211. 1750년 노奴 배이盃伊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拾年庚午十二月初六日 奴 盃伊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要用所致以 勢不得已  
 吐旨大川員伏在 騰字畓壹斗伍升落只 太種  
 貳斗落只庫 卜數四卜九束庫乙 價折錢文壹  
 兩 依數捧上是遣 同人處本文記參丈不忘記  
 壹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如有  
 雜談 此文告官卞正事  
 田畓主 金相伊[左寸]  
 訂保 朴太三[着名]  
 筆執 金元輝[着名]

건륭 15년(1750, 영조26) 경오년 12월 6일 노奴 배이盃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필요한 일이 있어서 형세상 부득이 토지吐旨面 대천大川에 있는 등자답騰字畓 1두 5승락지, 태종太種 2두락지 부수負數 4부 9속 곳을 전문錢文 1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3장, 불망기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답주田畓主 김상이金相伊[좌촌]

증보訂保 : 박태삼朴太三[작명]

필집筆執 : 김원휘金元輝[작명]

1750년 12월 6일에 김상이金相伊가 요용소치로 노奴 배이쑤伊에게 토지吐旨 대천大川에 있는 등자답騰字畓 1두 5승락지, 태종太種 2두락지 4부 9속 곳을 1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본文記 3장, 불망기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보訂保로 박태삼朴太三이, 필집筆執으로 김원휘金元輝가 참여하였다.

## 212. 1779년 유술호柳述浩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五年己亥正月初六日 柳述浩前 明文

右明文爲移買次 吐旨天皇時伏在騰

字田太種一斗落只 負數三卜一束庫果 同字

畓二斗落只 負數四卜九束庫乙 價折錢文

七兩 依依數交易捧上爲遣 右前本文記

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如有

雜談是去等 將此文告官下正事

田畓主 自筆 幼學 高萬赫[着名]

건륭 44년(1779, 정조3)<sup>108</sup> 기해년 1월 6일 유술호柳述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를 위해 토지吐旨 천황치天皇時에 있는 등자전騰字田 태종太種 1두락지 부수負數 3부 1속 곳과 동자답同字畓 2두락지 부수負數 4부 9속 곳을 전문錢文 7

---

108 건륭 45년은 경자년(1780)이고, 기해년은 건륭 44년(1779, 정조3)이다.

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답주田畠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고만혁高萬赫[작명]

1779년 1월 6일에 고만혁高萬赫이 이매를 하기 위해서 유술호柳述浩에게 토지吐旨 천황치天皇峙에 있는 등자전騰字田 태종太種 1두락지 3부 1속 곳과 동자답同字畓 2두락지 4부 9속 곳을 7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고만혁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213. 1765년 비婢 원단元丹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參拾年乙酉八月初八日 高生員宅 婢 元丹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傳來衿得 累年畊食是如可  
要用所致 不得已 吐旨面伏在 天王峙員騰字田  
太種壹斗落只 卜數三卜壹束庫乙 價折錢文壹  
兩 依數捧上爲遣 右人處本文記并以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某子孫如有雜談  
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曹召史[右手]  
筆 徐萬演[著名]

건륭 30년(1765, 영조41) 을유년 8월 8일 고생원高生員댁 비婢 원단元丹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대대로 깃득衿得하여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지면吐旨面 천왕치天皇峙에 있는 등자전騰字田 태종太種 1두락지 부수負數 3부 7속 곳을 전문錢文 1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 자손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조조이曹召史[우수]

필筆 : 서만연徐萬演[작명]

1765년 8월 8일에 조조이曹召史가 고생원高生員댁 비婢 원단元丹에게 토지면吐旨面 천왕치天王峙에 있는 등자전騰字田 태종太種 1두락지 3부 7속 곳을 1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필집으로 서만연徐萬演이 참여하였다.

## 214. 1738년 조선봉曹先奉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參年戊午十一月十六日 曹先奉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自己買<sup>109</sup>  
得是在 吐旨天王峙員伏在田太種  
伍升落只卜數一卜六束庫乙 要用所致以 價折錢文壹  
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  
爲去乎 日後子孫中若有雜談是去等  
此文告官下定事  
田主 魯芻同[着名]  
筆 幼學 姜得舉[着名]

---

109 원문에는 起賣자로 잘못 쓰여있어서 고쳤다.

건륭 3년(1738, 영조14) 무오년 11월 16일 조선봉曹先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한 토지吐旨 천왕치天王峙에 있는 전田 태종太種 5승락지升落只 부수負數 1부 6속 곳을 필요한 일이 있어 전문錢文 1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 자손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노돌동魯廻同[착명]

필筆 : 유학幼學 강득거姜得學[착명]

1738년 11월 16일에 노돌동魯廻同이 요용소치로 조선봉曹先奉에게 토지吐旨 천왕치天王峙에 있는 전田 태종太種 5승락지升落只 1부 6속 곳을 1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필집으로 유학幼學 강득거姜得學가 참여하였다.

## 215. 1732년 조선봉曹先奉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十年壬子三月十三日 曹先奉前 明文

右明文字段 矣亦祖上傳來 累年畊食爲如可 大殺之年 生

道爲難乙仍于 勢不得只 求禮吐旨面大川天皇峙 騰字

田太種一斗落只 卜數三卜一束內 上邊太種伍升落只 卜數一卜五束

庫乙 價折錢文六錢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

乎 日後良中同生子孫中 幸有雜談爲去等 此文

用告官下正事

自筆 田主 李培聖[着名]

訂人 同生弟 李天來[着名]

옹정 10년(1732, 영조8) 임자년 3월 13일 조선봉曹先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아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큰 흉년을 당하니 살아갈 방도를 찾기가 어려워 형세상 부득이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대천大川 천황치天皇峙에 있는 등자전騰字田 태종太種 1두락지 부수負數 3부 1속 내의 상변上邊 태종太種 5승락지升落只 부수負數 1부 5속 곳을 전문錢文 6전훤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혹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전주田主 : 이배성李培聖[작명]

증인訂人 : 동생제同生弟 이천래李天來[작명]

1732년 3월 13일에 이배성李培聖이 흉년을 당해 조선봉曹先奉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대천大川 천황치天皇峙에 있는 등자전騰字田 태종太種 1두락지 3부 1속 내의 상변上邊 태종太種 5승락지升落只 1부 5속 곳을 6전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으로 동생제同生弟 이천래李天來가 참여하였다.

## 216. 1726년 노돌동魯玆同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四年三月十三日 魯玆同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亦自己買<sup>110</sup>得 畊食爲如可 貧寒

所致以 勢不得只 吐旨面騰字田太種一斗落只 卜數三卜一束內

下邊太種五升落 卜數一卜六束庫乙 價折錢文一兩五錢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二丈并以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幸有雜談爲去等 此文

記告官卜正事

110 원문에는 起賣자로 잘못 쓰여있어서 고쳤다.



田主 梁世重[着名]

筆執 李聖來[着名]

용정 4년(1726, 영조2) 병오년 3월 13일 노돌동魯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식畊食하다가 가난한 소치로 형세상 부득이 토지면吐旨面 등자전騰字田 태종太種 1두락지 부수負數 3부 1속 내의 하변下邊 태종太種 5승락 升落 부수負數 1부 6속 곳을 전문錢文 1냥 5전으로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子孫 가운데 혹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기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양세중梁世重[착명]

필집筆執 : 이성래李聖來[착명]

1726년 3월 13일에 양세중梁世重이 빈한소치로 노돌동魯同에게 토지면吐旨面 등자전騰字田 태종太種 1두락지 3부 1속 내의 하변下邊 태종太種 5승락지 1부 6속 곳을 1냥 5전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필집筆執으로 이성래李聖來가 참여하였다.

## 217. 1721년 양세중梁世重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六十年辛丑閏三月十五日 梁世重前 明文

右明文字段 矣祖上傳來量案處 在於吐旨面芻薄

只是如 矣父起耕食爲如可 身死之後亦及矣身多有

還上牟麥 備納無路乙仍于 勢不得已 騰字田太種正斗落只

卜數貳卜參束庫果 俠加田并以 價折錢文參兩五錢 依

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子孫中生謀雜談爲去等 此文告官下正事

田主 陶時奉[着名]

訂參 李雲伊

筆執 前司果 朴時重[着名]

강희 60년(1721, 경종1) 신축년 윤3월 15일 양세중梁世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조상祖上으로부터 전래된 양안量案에 실려 있는 토지면吐旨面 돌박지疇薄只를 아버지가 기경하여 먹다가 돌아가신 후의 일과 내가 먹은 많은 환자還上와 모맥牟麥을 비납備納할 방법이 없어 형세상 부득이 등자전騰字田 태종太種 1두락지 부수負數 2부 3속 곳과 험가전俠加田을 함께 전문錢文 3냥 5전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해하니 이후에 자손子孫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도시봉陶時奉[착명]

증참訂參 : 이운이李雲伊

필집筆執 : 전사과前司果 박시중朴時重[착명]

1721년 윤3월 15일 도시봉陶時奉이 환자를 갚기 위해 양세중梁世重에게 토지면吐旨面 돌박지疇薄只의 등자전騰字田 태종太種 1두락지 2부 3속 곳을 가전加田과 함께 3냥 5전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참訂參으로 이운이李雲伊가, 필집筆執으로 전사과前司果 박시중朴時重이 참여하였다.

## 218. 1686년 도산룡陶山龍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二十五年丙寅二月拾一日 陶山龍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同生弟儀日亦 正兵充定對答爲如

可 去丁巳年分無去處逃走是乎等以 其矣番布措備

勢難乙仍于 騰字田太種壺斗落只庫良中 價折

價布貳疋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處永永

放賣爲去乎 後次子孫族類中雜談爲去等 將  
此文告官卞正事  
田主 金浩日[着名]  
證人 李時敏[着名]  
證保 張士成[着名]  
筆執 前司果 張大命[着名]

강희 25년(1686, 숙종12) 병인년 2월 11일 도산룡陶山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동생제同生弟 의일儀日이 정병正兵에 충원되었다가 지난 정사년에 간 곳을 모르게 도망을 갔으므로 그의 번포番布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등자전騰字田 태종太種 1두락지를 가포價布 2필疇로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자손子孫 족류族類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김호일金浩日[착명]

증인證人 : 이시민李時敏[착명]

증보證保 : 장사성張士成[착명]

필집筆執 : 전사과前司果 장대명張大命[착명]

1686년 2월 11일에 김호일金浩日이 동생 의일儀日의 번포番布를 마련하기 위해 도산룡陶山龍)에게 등자전騰字田 태종太種 1두락지를 가포價布 2필疇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證人으로 이시민李時敏이 썼고, 증보證保로 장사성張士成이, 필집筆執으로 전사과前司果 장대명張大命이 참여하였다.

## 219. 1786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伍拾壹年丙午閏七月二十二日 幼學 柳德浩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爲如可 移買

次 吐旨面八松亭坪伏在  
畚參斗落只 負數 庫乙 價  
折錢文陸拾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本文記并以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某中如有  
雜談是去等 以此文下正事  
畚主 幼學 自筆 鄭孝達[着名]

### 추록

堂山田緘字  
太種十一斗地  
奴太才宅 給價  
二十七兩買得

건륭 51년(1786, 정조10) 병오년 윤7월 22일 유학幼學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땅을 이매移買를 위해 토지면吐旨面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답畚 3두락지를 전문錢文 6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유학幼學 자필自筆 정효달鄭孝達[작명]

### 추록

당산전堂山田 함자鹹字 태종太種 11두락지를 노奴 태재太才 맥에게서 27냥을 주고 매득買得하였음.

1786년 윤7월 22일에 정효달鄭孝達이 이매를 하기 위해 유학幼學 유덕호柳德浩에게 토지면吐旨面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답畚 3두락지를 6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땅의 자호와 부수는 적지 않았으며,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정효달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추록에는 당산전堂山田 함자鹹字 태종太種 11두락지를 노奴 태재太才맥으로부터 27냥을 주고 매득買得하였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220. 1786년 정효달鄭孝達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伍拾壹年丙午二月廿九日 幼學 鄭孝達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耕食是如可 移買  
次 吐旨面下竹川八松亭坪 露字  
畚參斗落只肆夜味 負數拾貳負  
參束庫乙 價折錢文陸拾參兩 依  
數捧上爲遣 本文記二丈并以 右前  
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 則以此  
文卜正事  
畚主 自筆 幼學 李澈源[着名]

건륭 51년(1786, 정조10) 병오년 2월 29일 유학幼學 정효달鄭孝達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경식耕食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해 토지면吐旨面 하죽천下竹川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畚 3두락지 4배미夜味 부수負數 12부 3속 곳을 전문錢文 63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위 사람에게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로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이철원李澈源[착명]

1786년 2월 29일에 유학幼學 이철원李澈源이 이매를 하기 위해 유학幼學 정효달鄭孝達에게 토지면吐旨面 하죽천下竹川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畚 3두락지 4배미夜味 12부 3속 곳을 63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이철원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221. 1784년 이철원李澈源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九年甲辰三月十五日 幼學 李澈源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買得是

在 吐旨面下大川坪八松亭員伏在

露字畝三斗落只 卜數十

二負三束庫乙 價折錢文陸拾

兩 依數捧上 本文記并以 右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雜

談是去等 以此下正事

畝主 自筆 文德燿 喪不着

건륭 49년(1784, 정조8) 갑진년 3월 15일 유학幼學 이철원李澈源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낱히 쓸 곳이 있어서 자기매득한 토지면吐旨面 하대천下大川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畝 3두락지 부수負數 12부 3속 곳을 전문錢文 6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로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문덕희文德燿 상불착喪不着

1784년 3월 15일에 문덕희文德燿가 요용소치로 유학幼學 이철원李澈源에게 토지면吐旨面 하대천下大川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畝 3두락지 12부 3속 곳을 6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문덕희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상중이라 착명은 하지 않았다.

## 222. 182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二年癸未九月十一日 前明文  
右明文段 自己買得田 累年耕食  
是多可 以移買次 伏在馬山面  
月字田太種三斗落只 負  
數十一卜九束庫乙 價折錢文  
十兩 依數捧上爲遣 右  
前新文記一丈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若有雜談 此文記  
告官卞正事  
田主 自筆 幼學 李元基[着名]

### 추록

玉浦月字太種  
三斗落 卜數十  
一卜九束庫買

도광 3년(1823, 순조23)<sup>111</sup> 계미년 9월 11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밭을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이매移買를 위해 마산면馬山面에 있는 월자전月字田 태종太種 3두락지 부수負數 11부 9속 곳을 전문錢文 1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신문기新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이원기李元基[착명]

---

111 도광 2년은 임오년(1822)이고, 계미년은 도광 3년(1823, 순조23)이다.

## 추록

옥포玉浦의 월자月字 태종太種 3두락지 부수負數 11부 9속을 매득함.

1823년 9월 11일에 유학幼學 이원기李元基가 이매를 하기 위해 마산면馬山面에 있는 월자전月字田 태종太種 3두락지 11부 9속 곳을 10냥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별도의 필집 없이 이원기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추록에는 옥포玉浦 월자月字 태종太種 3두락지 11부 9속을 매득하였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223. 1791년 노 태지 배자牌子

노 태지

무타라 년년 류리부채

을 갑플길업스니 당산

평 함즈전 태종 칠두낙 짐

수 설흔두짐 여덥뭇 곳을

모처의 방해 납상하라

신히 납월 망일

닉상전 김

노녀 태재에게

다름이 아니다. 해마다 유래해온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 당산에 있는 함자전 태종 7두락, 부수 32부 8속 곳을 모처에 방해하고 납상하라.

신해년 12월 15일에, 상전 김.

신해년에 상전 김이 노비 태재에게 당산에 있는 함자전 태종 7두락 32부 8속 곳을 팔라고 위임한



배자이다.

## 224. 1791년 노奴 복래卜來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伍拾陸年辛亥十二月廿九日 柳三水宅奴 卜來前 明文

右文爲事 年年流來負債許多 而備報

無路 故本面堂山坪伏在鹹字田太種

七斗落只 卜數卅二卜八束庫乙 內上典

牌子據 價折錢文二十七兩 依數捧上爲

遣 右人處永永放賣爲去乎 日後雜談

是去等 此文下正事

田主 李生員宅 奴 太才

筆執 趙雲翼 喪不着

### 추록

八松亭下露

字畚三斗落 李澈源處買得 受

文記鄭孝達處

卜數十三卜

건륭 56년(1791, 정조15) 신해년 12월 29일 유삼수柳三水댁 노奴 복래卜來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해마다 유래해오는 부채負債가 많아 값을 방도가 없어서 본면本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전鹹字田 태종太種 7두락지 부수負數 32부 8속 곳을 상전上典의 패자牌子에 따라 전문錢文 27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태재太才

필집筆執 : 조운익趙雲翼 상불착喪不着

### 추록

팔송정八松亭 아래 로자담露字畓 3두락지를 이철원李澈源에게 매득買得하였고, 정효달鄭孝達에게서 문기를 받았음. 부수負數는 13부이다.

1791년 12월 29일에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태재太才가 부채를 갚기 위해 유삼수柳三水 댁 노奴 복래卜來에게 상전上典의 패자牌子에 따라 본면本面 당산堂에 있는 함자전鹹字田 태종太種 7두락지 32부 8속 곳을 27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필집筆執으로 조운익趙雲翼이 참여하였는데 상중이라 착명하지 않았다. 추록에는 팔송정八松亭 아래 로자담露字畓 3두락지를 이철원李澈源에게 매득買得하였으며, 정효달鄭孝達에게서 문기를 받았고, 부수는 13부라는 내용이 붙어 있다.

## 225. 1849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二十八年己酉二月二十九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傳來禁養 竹川後山自有

定界是如 勢不得已 價折錢文十五

兩 依數捧上 右前永永放賣爲去

乎 日後某人中 如有雜談是去等 以

此文記憑考事

禁養山 幼學 柳翼龍[着名]

證筆 幼學 田光夏[着名]

### 추록

庚申十二月十一日 南原仲父主搜覓於雲石亭藏籠

內 卽傳給于余 余受之見此書類 則乃是下竹後山文記

一度 及婢鳳淳買得文記一度 全封者也

도광 29년(1849, 현종15)<sup>112</sup> 기유년 2월 29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전래 되어온 금양禁養이 죽천竹川의 뒷산에 있어서 스스로 경계를 정함이 있는데 형세상 부득이하여 전문錢文 1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사람들 가운데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살펴볼 일이다.

금양산禁養山주 : 유학幼學 유익룡柳翼龍[작명]

증필證筆 : 유학幼學 전광하田光夏[작명]

### 추록

경신년(1860) 12월 11일에 남원南原에 사는 중부주仲父主께서 운석정雲石亭 장릉藏籠에서 문서를 찾아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문서를 보니 하죽 뒷산의 문기 1통과 여중 봉순鳳淳을 매득한 문기 1통이 동봉되어 있는 것이었다.

1849년 2월 29일에 유학幼學 유익룡柳翼龍이 형세가 부득이해서 금양禁養지인 죽천竹川 뒷산을 1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필證筆로 유학幼學 전광하田光夏가 참여하였다. 추록에는 경신년(1860) 12월 11일에 남원南原에 사는 중부주仲父主께서 운석정雲石亭 장릉藏籠에서 문서를 찾아서 나에게 주셨는데, 곧 하죽 뒷산의 문기와 여중 봉순鳳淳을 매득한 문기가 동봉되어 있는 것이었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226. 1895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開國五百四年乙未五月初一日 前明文

右明文事 傳來禁養 在於南原

---

112 도광 28년은 무신년(1848)이고, 기유년은 도광 29년(1849, 현종15)이다.

山洞靑峯谷 而東麓柳訪谷  
右邊一片之地 限東西上下四表  
是矣 上以限主山頭右 右爲限三  
十把 下以限階前水道是遣  
價折錢文伍拾兩 依數捧上  
是如乎 以新文一張 右前永永  
放賣 日後兄弟叔姪之間  
如有異說是去等 以此文記  
憑考事  
山主 幼學 崔晃九[着名]  
證 韓仁教[着名]  
上同月十日 文記二張 可考次

#### 추록

南原山洞靑峯下 柳訪谷西邊  
壬坐乙得坤破 禁養山地 買得  
於大田崔晃九處 先人鄉祀于此

개국 504년(1895, 고종 32) 을미년 5월 1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전래되어온 금양禁養지가 남원南原 산동山洞 주봉곡靑峯谷에 있는데, 동록東麓의 유방곡柳訪谷 오른쪽 한 조각의 땅을 동서상하東西上下 사표四表로 한정하였다. 위로는 맹두 오른쪽으로 한정하고, 오른쪽으로는 30파把를 한계로 하며, 아래로는 계단 앞 수도水道를 한계로 하여 전문錢文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신문기 1장과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형제兄弟 숙질 사이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할 일이다.

산주山主 : 유학幼學 최황구崔晃九[작명]

증證 : 한인교韓仁教[작명]

상동월上同月 10일에 문기文記 2장을 상고함.

## 추록

남원南原 산동山洞의 주봉冑峯 아래, 유방곡柳訪谷 서변西邊 임좌을득곤파壬坐乙得坤破의 금양산지禁養山地를 대전大田에 사는 최황구崔晃九에게 매득買得함. 그 선인은 여기에서 향사하고 있음.

1895년 5월 1일에 유학幼學 최황구崔晃九가 남원南原 산동山洞 주봉곡冑峯谷에 있는 금양禁養지를 5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으로 한인교韓仁教가 참여하였다. 추록에는 남원 산동의 주봉 아래, 유방곡 서쪽에 있는 금양지를 대전에 사는 최황구에게 매득했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227. 188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七年辛巳十二月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畝 累年耕食是多可

以要用所致 伏在吐旨

面道山坪五刀落 加耕

一負庫乙 價折錢文伍兩

依數捧上是遣 右前新

旧文記並 永永放賣爲去

乎 日後若有相左之

端 則以此文記憑考事

畝主 幼學 李洪浚[着名]

證人 幼學 金在學[着名]

광서 7년(1881, 고종18) 신사년 12월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논을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긴히 쓸 곳이 있

어서 토지면吐旨面 도산道山에 있는 5두락지 가경加耕 1부負 곳을 전문錢文 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 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신구문기新舊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서로 어긋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할 일이다.

답주番主 : 유학幼學 이홍준李洪浚[작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김재학金在學[작명]

1881년 12월에 유학幼學 이홍준李洪浚이 요용소치로 토지면吐旨面 도산道山에 있는 5두락지 1부負 곳을 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신구문기新舊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유학幼學 김재학金在學이 참여하였다.

## 228. 1905년 유낙안택柳樂安宅 토지명문土地明文

光武九年乙巳四月初一日 柳樂安宅前 明文

右明文事 自起綿田以 數年耕食是多可 要

用所致 伏在求禮良田面白雲川洞山上

東邊 田一斗落加耕 塵 價折錢文伍兩

依數捧上尼遣 右宅前以新文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異說 則

以此文記憑考事

田主 徐僉只[着名]

證人 朴敬淑[着名]

金相杓[着名]

### 추록

光武九年乙巳四月初一日成

美洞 葬乙巳正月二十四日 丁酉

同山成文正月廿六日

徐田金朴松田乙巳四月

初一日 緘

全南求土

광무 9년(1905, 광무9) 을사년 4월 1일 유낙안택柳樂安宅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 기경한 면전綿田을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구례求禮 간전면良田面 백운천동白雲川洞 산상山上 동편에 있는 밭 1두락지 가경加耕인 곳을 전문錢文 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택에 신문기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할 일이다.

전주田主 : 서침지徐僉只[착명]

증인證人 : 박경숙朴敬淑[착명]

김상표金相杓[착명]

1905년 4월 1일에 서침지徐僉只가 요용소치로 유낙안택柳樂安宅에게 스스로 기경한 면전綿田인 구례求禮 간전면良田面 백운천동白雲川洞 산 위 동쪽의 밭 1두락지 곳을 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證人으로 박경숙朴敬淑과 김상표金相杓가 참여하였다.

## 229. 1905년 유낙안택柳樂安宅 산지명문山地明文

光武九年乙巳四月初一日 柳樂安宅前 明文

右明文事 求禮良田面白雲川前麓 東邊路

下松田上 自畚頭麥田繞東邊畚頭下

至江頭墓邊柿木上 麥田并一局共 價

折錢文拾兩 依數捧上尼遣 右宅前永

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 則

以此文記憑考事  
山主 奇村 金相杓  
朴敬淑  
此亦中 松田邊加耕田 并入是齊

광무 9년(1905, 광무9) 을사년 4월 1일 유낙안택柳樂安宅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구례求禮 간전면良田面 백운천白雲川<sup>113</sup> 앞 기슭의 동쪽 길 아래와 송전松田 위인 곳, 논 머리에 보리밭을 두르고 있는 동쪽 논 머리 아래에서부터 강 머리의 묘지 가에 감나무가 심어진 위의 보리밭까지 모두 한 국내를 전문錢文 1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택에 영원히 방해하니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할 일이다.

산주山主 : 기촌奇村 김상표金相杓  
박경숙朴敬淑

이에 송전松田 가의 가경전加耕田도 함께 포함한다.

1905년 4월 1일에 기촌奇村<sup>114</sup>의 김상표金相杓와 박경숙朴敬淑이 유낙안택柳樂安宅에게 구례求禮 간전면良田面 백운천白雲川 앞 기슭에 난 동쪽 길 아래와 송전松田 위를 10냥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해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송전松田 가에 있는 가경전加耕田도 함께 포함한다는 추기追記가 있다.

## 230. 1905년 유낙안택柳樂安宅 토지명문土地明文

光武九年乙巳正月二十六日 柳樂安宅前 明文

113 백운천(白雲川) 현재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에 해당함.

114 기촌(奇村)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기촌마을에 해당함.



右明文事 本洞山而在於求禮良田面白雲  
 川前麓尼多 洞山一局 成肆標是矣  
 東自巫夫塚傍路 至崔塚傍 第二路  
 至畚陌是遣 西自村前從水道 第二西  
 道 至江頭畚前是遣 南自村前山路  
 至嶸坪畚是遣 北自江頭西邊畚  
 前 至東邊畚陌是遣 山上東邊綿田  
 八斗五升落 加耕貳負塵并 價折  
 錢文貳拾兩 依數捧上尼遣 右宅前  
 以新文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異說 則以此文記  
 憑考事  
 田主 金洪文 字善珉[着名]  
 洞山 頭民 徐相表 字敬老[着名]  
     洞首 金洪文[着名]  
 證人 文元 字桂雲[着名]  
 證筆 全德瑞[着名]

광무 9년(1905, 광무9) 을사년 1월 16일 유낙안댁柳樂安宅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본동本洞의 산山이 구례求禮 간전면良田面 백운천白雲川 전  
 록前麓에 있어서 동산洞山 1국局에 대한 4표標를 만들었으니, 동쪽은 무부총巫夫塚 옆길에서부터 최  
 총崔塚 옆의 제 2길의 논두렁까지이고, 서쪽은 마을앞 물길을 따라 제2 서도西道부터 강머리의 논 앞  
 까지이며, 남쪽은 마을 앞 산길에서부터 등평답嶸坪畚까지 이고, 북쪽은 강머리 서쪽 논에서부터 동  
 쪽 논두렁까지이다. 이 산상山上의 동변東邊 면전綿田 8두 5승락 가경加耕 2부負 곳을 전문錢文 20냥  
 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댁에 신문기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할 일이다.

전주田主 : 김홍문金洪文 자字 선민善珉[작명]

동산洞山 : 두민頭民 서상표徐相表 자字 경노敬老[작명]

동수洞首 김홍문金洪文[작명]

증인證人 : 문원文元 자字 계운桂雲[작명]

증필證筆 : 전덕서全德瑞[작명]

1905년 1월 16일에 김홍문金洪文이 유낙안택柳樂安宅에게 구례求禮 간전면良田面 백운천白雲川 전  
록前麓의 산상山上 동변東邊에 있는 면전綿田 8두 5승락, 가경加耕 2부負인 곳을 2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동산洞山 대표로 두민頭民 서상표徐相表과 동수洞首 김홍문金洪文이 착명했고, 증인  
證人으로 문원文元이 섰으며, 증필에 전덕서全德瑞가 참여하였다.

## 231. 1784년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一年甲辰十二月初六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吐旨面九萬村  
前 鹹字畝三斗落只二作并  
負數捌卜六束庫乙 價折錢文  
六十兩以納爲乎矣 本文記段  
他田畝并付乙仍于 不得出給  
是遣 倍子一丈果 以新文書一丈  
右人前永永放賣爲乎矣 都文  
中背頃以給爲去乎 日後子孫中如有  
雜談是去等 將此文告官下  
呈事  
畝主 自筆 上典 趙[着名]

건륭 49년(1784, 정조8)<sup>115</sup> 갑진년 12월 6일에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를 위해 토지면吐旨面 구만촌九萬村 앞에 있는 함자  
답鹹字畝 3두락지 2작병 부수負數 8부 6속 곳을 전문錢文 60냥으로 정하여 주되,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붙어 있으므로 내어줄 수 없고 배자 1장, 신문서新文書 1장을 가지고 위 사람에게 영  
원히 방매放賣한다. 도문기都文記 가운데 배탈背頓<sup>116</sup>하고 주니, 이후 자손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  
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自筆 상전上典 조趙[작명]

1784년 12월 6일에 상전上典 조趙가 이매를 하기 위해 토지면吐旨面 구만촌九萬村 앞에 있는 함자  
답鹹字畓 3두락지 8부 6속 곳을 6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  
이 함께 붙어 있으므로 내어줄 수 없고 배자 1장, 신문서新文書 1장과 함께 방매하며 도문都文에 배탈  
背頓하고 준다고 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방매자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231-1. 1784년 노奴 유월금六月金 배자牌子

奴六月金處

無他 移買次 吐旨面九萬村前 鹹

字畓三斗落只二作并 負數捌負六

束庫乙 捧價六十兩以納爲乎矣 本文

記段 他田畓并付乙仍于 不得出給

故同都文書背後爻周爲去乎 以

此意論理時文書中成文以給事

甲辰十二月日

上典 趙[着名]

---

115 건륭 41년은 병신년(1776)이고, 갑진년은 건륭 49년(1784, 정조8)이다.

116 배탈(背頓) 문기의 뒷면에 상속된 재산의 이후 소유권 변동 사항을 추가로 기입한 기록을 말한다.

노부 유월금六月金에게

다름 아니라 이매를 하기 위해 토지면 구만촌 앞에 있는 함자답鹹字畓 3두락지 2작병 부수로는 8부 6속인 곳을 60냥에 팔아서 납상하되, 본문기는 다른 전답에 붙어 있어서 내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위 도문서의 뒷면에 효주하니, 이 뜻으로 매매를 할 때 문서 중에 글을 작성하여 줄 일이다.

갑진년(1784) 12월에 상전 조趙[작명]

1784년 12월에 상전 조趙가 노부 유월금六月金에게 내린 배자이다. 이매를 위해서 토지면 구만촌 앞에 있는 함자답鹹字畓 3두락지 8부 6속인 곳을 60냥에 팔아서 납상하라고 위임한 문서이다.

## 232. 179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六年辛亥十二月初九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矣流來自己買得 累年耕食  
是如可 至於今年 官穀許多 他無備納乙仍  
于 不得已 本面九萬村前鹹字畓三斗落只庫  
并以 負數捌卜陸束庫乙 價折錢文肆拾  
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二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是雜談是去等 以此文記告官下正事  
畓主 幼學 金之珏[着名]  
訂參 約正 崔昌漢[着名]  
筆 官督 李有祥[着名]

### 추록

九萬村前鹹字畓八卜  
六束三斗地只 金生之珏  
處 給價文四十兩買得印  
辛亥十二月 日

건륭 56년(1791, 정조15) 신해년 12월 9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올해에 이르러 관곡官穀이 허다한데 비납備納할 방도가 없어 부득이 본면本面 구만촌九萬村 앞에 있는 함자답鹹字畓 3두락지 부수負數 8부 6속 곳을 전문錢文 4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유학幼學 김지각金之珽[작명]

증참訂參 : 약정約正 최창한崔昌漢[작명]

필筆 : 관감독官監督 이유상李有祥[작명]

### 추록

구만촌九萬村 앞의 함자답鹹字畓 8부 6속 3두락지를 김지각金之珽에게 40냥을 주고 매득買得하였음. 신해년 12월 일.

1791년 12월 9일에 김지각金之珽이 관곡을 갚기 위해 토지면 구만촌九萬村에 있는 함자답鹹字畓 3두락지 8부 6속 곳을 4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참訂參으로 약정約正 최창한崔昌漢이, 필집으로 이유상李有祥이 참여하였다. 추록에는 구만촌九萬村의 함자답鹹字畓 8부 6속 3두락지를 김지각金之珽에게 40냥을 주고 매득買得하였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233. 1889년 유제관柳濟寬 서간書簡

己丑四月廿三日 從弟 濟寬 上書

向於李柯浦 今家人四

次付上候 伏想先此

下覽矣 伏惟比來

省餘棣體候萬安 區區  
伏慕伏慕 從弟 五日入直 昨  
始出番 而一是擾擾 滄  
浪奈何 多少都  
留錄紙 不備上候狀

기축년(1889) 4월 23일 종제從弟 제관濟寬 상서上書

저번에 이가포에서, 그리고 지금 집사람이 4차례나 부친 안부편지를 생각건대 이것보다 먼저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요사이 부모님을 모시면서 형제들과 사는 생활이 매우 편안하시겠지요? 매우 그립습니다.

종제 저는 5일에 입직했다가 어제서야 비로소 출번을 하여, 한결같이 어수선하니 창랑滄浪함을 어찌하겠습니까? 다소간의 이야기는 모두 별지에 남겨두고 이만 안부편지 줄입니다.

1889년 4월 23일에 종제從弟 유제관柳濟寬이 유제양柳濟陽에게 보낸 편지이다. 안부를 묻고 자신은 5일 날 입직했다가 어제서야 출직해서 어수선하다는 안부를 전한 내용이다.

## 234. 1828년 오미五美 노奴 해손亥孫 수기手記

戊子十月十六日 手記  
右手記事 還仕次 今  
方赴京 而右人前正  
百肆拾兩錢 每朔伍  
葉邊得用 而歲後具  
邊備報之意 如悉成  
手記爲臥乎事

手標主 五美[着名] 奴亥孫  
保人 尹在五[着名]

무자년(1828) 10월 16일 수기

이와 같이 수기를 하는 일은 벼슬살이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막 서울에 왔는데, 위 사람에게 140냥을 매월 5엽葉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려서 쓰고, 설을 쇠 후에 본자와 이자를 모두 갚겠다는 뜻으로 이와 같이 수기를 작성하는 일이다.

수표주手標主 : 오미五美[착명] 노 해손亥孫

보인保人 : 윤재오尹在五

## 235. 1745년 이주국李柱國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年乙丑二月二十三日 幼學 李柱國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自己買田畊食爲如可

要用所致不得 縣內浦田坪伏在 閩字

田太種三斗落只 卜數十六卜六束庫乙

價折錢文二十壹兩 捧上爲遣 右前今

年麥禾及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此後子女中雜談是去等 將此文下正

事

田主 折衝 徐時贊[着名]

筆 子 [着名]

추록

縣內面浦田

閩字太種

## 三斗落買

건륭 10년(1745, 영조21) 을축년 2월 23일 유학幼學 이주국李柱國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스스로 매득하여 경식畊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부득이 현내縣內 포전浦田에 있는 윤자전閏字田 태종太種 3두락지 부수負數 16부 6속 곳을 전문錢文 21냥을 받고, 위 사람에게 금년의 맥화麥禾 및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 자녀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절충折衝 서시찬徐時贊[작명]

필筆 : 아들 [작명]

### 추록

현내면縣內面 포전浦田 윤자閏字 태종太種 3두락을 매득함.

1745년 2월 23일에 절충장군 서시찬徐時贊이 요용소치로 유학幼學 이주국李柱國에게 현내縣內 포전浦田에 있는 윤자전閏字田 태종太種 3두락지 16부 6속 곳을 21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금년의 맥화麥禾 및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문서는 아들이 작성하였는데, 이름을 뒷면에 쓰고 있어서 판독 불능이다. 추록에는 현내면縣內面 포전浦田 윤자閏字 태종太種 3두락을 매득하였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236. 1741년 서시찬徐時贊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六年辛酉二月十八日 徐時贊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不得已 自己買得是在  
縣內面浦田閏字太種參斗落只 負數拾  
陸負陸束庫良中 價折錢文貳拾參兩 捧上



爲遣 本文記壺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  
後如有雜談者是去等 此文告官下  
正事  
自筆 田主 李再旭[着名]

건륭 6년(1741, 영조17) 신유년 2월 18일 서시찬徐時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필요한 일이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매득한 현내면  
縣內面 포전浦田 윤자閏字 태종太種 3두락지 부수負數 11부 6속 곳을 전문錢文 23냥을 받고 본문기本文  
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전주田主 : 이재욱李再旭[착명]

1741년 2월 18일에 이재욱李再旭이 요용소치로 서시찬徐時贊에게 현내면縣內面 포전浦田 윤자閏字  
태종太種 3두락지 11부 6속 곳을 23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방매  
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이재욱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237. 1733년 이재욱李再郁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十一年癸丑六月廿五日 李再郁前 明文  
右明文爲 孤等罪逆深重 奄遭父喪 叩叫靡  
逮 而家素貧寒 連值凶歉 保喘無賴 拘  
於生活 外家傳來 邑內浦田坪伏在 閏  
字太種三斗落只 十六卜六束庫 伏受  
慈堂所命 價折錢十九兩 捧上爲遣 右人  
前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並付

仍于 背後交周都文書中爲去乎 後有

同生中雜談是去等 將此文告官下

正事

田主 喪人 金德曄[着名]

金德昇[着名]

筆 堂叔 幼學 金敏屋[着名]

용정 11년(1733, 영조9) 계축년 6월 25일 이재옥李再郁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아들들의 죄역罪逆이 심중하여 갑자기 아버지 상을 당함에 울부짖어도 미칠 수 없는데, 집안도 원래 빈한한 데다 연이어 흉년까지 들어 목숨을 의지하고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외가外家에서 전해 내려온 읍내邑內 포전浦田에 있는 윤자潤字 태종太種 3두락지 16부 6속 곳을 어머니의 명을 삼가 받들어 전문錢文 19냥을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되,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이 함께 붙어 있어서 도문서都文書에 배후효주背後交周한다. 이후 동생同生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상인喪人 김덕엽金德曄[작명]

김덕승金德昇[작명]

필筆 : 당숙堂叔 유학幼學 김민후金敏屋[작명]

1733년 6월 25일에 상인喪人 김덕엽金德曄·김덕승金德昇이 이재옥李再郁에게 읍내邑內 포전浦田에 있는 윤자潤字 전 태종太種 3두락지 16부 6속 곳을 19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아버지 상을 당한 데다 흉년까지 연이어 살아갈 길이 없어서라고 했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이 함께 붙어 있어서 도문서都文書에 배후효주背後交周한다고 하였다. 필집으로 당숙堂叔 김민후金敏屋가 참여하였다.

## 238. 1766년 노奴 귀재貴才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三十一年丙戌正月二十七日 李先達宅奴 貴才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宅買得是在 伏在吾里洞騰字六十  
七番 卅七卜捌束果 六十八番十五卜六束 二作并十一斗落只庫乙  
移買次 價折錢文壹百壹兩 依數捧上爲遣 右  
宅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幸有雜  
談是去等 將此文記告官下正事  
番主 朴生員宅 奴 萬太[左寸]  
證 咸云載[着名]  
筆 全日周[着名]

### 추록

吐旨面吾里  
洞 騰字二作  
并 五十參負  
肆束 十一斗落  
只庫乙 給價  
錢壹百兩 買  
申奴致位處

건륭 31년(1766, 영조42) 병술년 1월 27일 이선달李先達댁 노奴 귀재貴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상전댁에서 매득買得한 오리동五里洞에 있는 등자騰字 67번 답췌 37부 8속과 68번답 15부 6속, 2작병 11두락지 곳을 이매移買를 위해 전문錢文 10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댁에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番主 : 박생원朴生員댁 노奴 만태萬太[좌촌]

증證 : 함운재咸云載[작명]

필筆 : 전일주全日周[작명]

### 추록

토지면吐旨面 오리동吾里洞 등자騰字 2작병 53부 4속 11두락지를 100냥을 주고 신노申奴 치위致位에게 매득함.

1766년 1월 27일에 박생원朴生員댁 노奴 만태萬太가 이매를 하기 위해 선달李先達댁 노奴 귀재貴才에게 오리동五里洞에 있는 등자騰字답 67번답썰 37부 8속과 68번답 15부 6속, 11두락지를 100냥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해하였다. 증인으로 함운재咸云載가 썼고, 필집으로 전일주全日周가 참여하였다. 추록에는 토지면吐旨面 오리동吾里洞 등자騰字 53부 4속 11두락지를 100냥을 주고 신노申奴 치위致位에게 매득하였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239. 1765년 노奴 치위 배자

노 치위쳐

무타라 천만의외 저근셔방님

상수를 만나 초상빚이 만하되

갑풀길업셔 토지면 등즈

답 십일두락고를 프라 갑

푸려하니 모인쳐의 방해하

야 준가 바더드리고 이빅즈드

되여 성문하여 주라

을유 십이월 이십일

상전 윤씨

[인]1

노 치위에게

다름이 아니라 너무 뜻밖에 작은서방님의 상사를 당하여 초상빛이 많은데 값을 방법이 없어서 토지면 등자답 11두락을 방매하여 갚으려 하니, 모인에게 방매하여 값을 준하여 받고 이 패자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하여라

을유년 12월 20일, 상전 윤씨.

1765년 12월 20일에 상전 윤씨가 노 치위에게 내린 배자이다. 뜻밖에 작은서방님의 상을 당하여 초상빛을 지게 되었는데 값을 길이 없기 때문에 토지면 등자답 11두락을 방매하라고 위임한 내용이다.

## 240. 1765년 노奴 만태萬泰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三十年乙酉十二月二十四日 朴生員宅奴 萬泰處 明文  
右明文事段 奴矣宅上典 千萬意外喪事 出於  
去月是乎所 初喪所入許多錢兩 他無變通 求禮吐  
旨面伏在吾里洞 騰字六十七畝卅七卜八束 六十八畝十五卜六束  
二作并十一斗落只庫乙 價折錢文壹百兩 依數  
捧上爲遣 右宅上典牌子一丈及本文并以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幸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  
告官下正事  
畝主 申生員宅奴 致爲[着名]  
證 業武 李萬周[着名]  
筆 全日周[着名]

건륭 30년(1765, 영조41) 을유년 12월 24일 박생원朴生員댁 노奴 만태萬泰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노奴의 상전上典이 지난달에 천만 뜻밖에 상사를 당하여 장

례에 소용되는 허다한 돈을 변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오리동呑里洞에 있는 등자騰字 67번답畝 37부 8속, 68번답 15부 6속 2작병 11두락지를 전문錢文 10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택에 상전上典의 패자牌子 1장 및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신생원申生員택 노奴 치위致爲[작명]

증證 : 업무業武 이만주李萬周[작명]

필筆 : 전일주全日周[작명]

1765년 12월 24일에 신생원申生員택 노奴 치위致爲가 상전의 배자에 따라 박생원朴生員택 노奴 만태萬泰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오리동呑里洞에 있는 등자騰字 67번답畝 37부 8속과 68번답 15부 6속의 11두락지를 10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상전上典이 상사를 당하여 장례에 소용되는 허다한 돈을 변통할 방법이 없어서라고 하였다. 패자牌子 1장 및 본문기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업무業武 이만주李萬周가 썼고, 필집으로 전일주全日周가 참여하였다.

## 241. 1749년 신광호申光虎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拾肆年己巳二月二十五日 幼學 申光虎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傳來是在 吐旨天皇峙員伏在 騰  
字畝二作並拾壹斗落只 負數伍拾參卜參束庫乙 價折錢文  
陸拾柒兩 依交易捧上爲遣 本文記並以 右人前永永放賣爲  
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下呈事  
畝主 自筆 喪人 張處元[着名]

건륭 14년(1749, 영조25) 기사년 2월 25일 유학幼學 신광호申光虎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간히 쓸 곳이 있어서 대대로 내려온 토지吐旨 천황치天皇峙

에 있는 등자답騰字畵 2작병 11두락지 부수負數 53부 3속 곳을 전문錢文 67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자필自筆 상인喪人 장처원張處元[착명]

1749년 2월 25일에 상인喪人 장처원張處元이 요용소치로 유학幼學 신광호申光虎에게 토지吐旨 천황치天皇峙에 있는 등자답騰字畵 11두락지 53부 3속 곳을 67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장처원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242. 1787년 승僧 채원采元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伍十二年丁未三月二十七日 僧 采元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自己買得是如可 移賣次

吐旨堂山員鹹字畵四斗落只 卜數九卜八束

庫乙 價 折錢文五十二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 柿木一柱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

後某人中 若有雜談是去等 將此文告

官下正事

畵主 自筆 朴水振[着名]

추록

鹹字下邊畵四

斗落只 文記九

丈

건륭 52년(1787, 정조11) 정미년 3월 27일 승僧 채원采元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였다가 이매移賣를 위해 토지吐旨의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畓 4두락지 부수負數 9부 8속 곳을 전문錢文 52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및 시목柿木 한 주柱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누군가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自筆 박수진朴水振[작명]

### 추록

함자鹹字 하변답下邊畓 4두락지 문기文記 9장丈

1787년 3월 27일에 박수진朴水振이 이매를 하기 위해 승僧 채원采元에게 토지吐旨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畓 4두락지 9부 8속 곳을 52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및 시목柿木 한 그루와 함께 방매하였다. 별도의 필집 없이 박수진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추록에는 함자鹹字 하변답下邊畓 4두락지의 문기文記는 9장丈이라는 내용이 붙어 있다.

## 243. 1786년 박수근朴水根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一年丙午三月二十日 朴水根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父主生時衿得畓 累年  
耕食是如可 千萬意外 風病累年終無差道  
故千萬難甚乙仍于 勢<sup>117</sup>不得已 求禮吐旨面堂山  
員伏在 鹹字畓負數一百廿八內九負八束庫 起耕宗種畓貳夜  
肆斗落只庫乙 價折錢文柒拾伍兩 依數交易捧上

---

117 원문에는 執자로 잘못 기록되어 있어서 고쳤다.



爲遣 右人處本文記柒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良中長兄族屬中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用告官下正事

畚主 李德俊[着名]

證 奉母 朴召吏[右掌]

證見 外叔 朴萬迪[着名]

筆執 黃聖澄[着名]

건륭 51년(1786, 정조10) 병오년 3월 20일 박수근朴水根<sup>118</sup>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에 깃득袴得한 논을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천만뜻밖에도 풍병風病에 걸려 여러 해 동안 끝내 차도가 없음에 생활이 너무 어려워 부득이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畓 128번답 부수負數 9부 8속, 기경起耕한 실종宗種 2배미夜味 4두락지인 곳을 전문錢文 7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7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장형長兄 족속族屬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이덕준李德俊[착명]

증證 : 봉모奉母 박조이朴召吏[우장]

증견證見 : 외숙外叔 박만적朴萬迪[착명]

필집筆執 : 황성징黃聖澄[착명]

1786년 3월 20일에 이덕준李德俊이 형세가 어쩔 수 없어서 박수근朴水根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畓 128번답 9부 8속 2배미夜味 4두락지인 곳을 75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7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어머니 박조이朴召吏가 썼고, 증견證見으로 외숙外叔 박만적朴萬迪이, 필집筆執으로 황성징黃聖澄이 참여하였다.

---

118 앞의 명문에 의하면 박수진(朴水振)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 244. 1768년 이원세李元世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三十三年戊子十二月二十日 李元世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女矣家夫生時遺來畝

累年耕食爲如可 移賣次 本面堂山員伏

在 鹹字負數六卜三束二斗落只 及近處

陳地并以 價折錢文二十二兩乙 依數捧上爲遣

右前本文記十五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子孫中雜談是去等 將此文告

官卜正事

畝主 故金振光妻 馬氏[右掌]

證 朴德水[着名]

筆 幼學 尹聖國[着名]

건륭 33년(1768, 영조44) 무자년 12월 20일 이원세李元世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가부家夫가 생전에 남겨놓은 논을 여러 해 경식耕食하다가 이매移賣를 위해 본면本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畝 6부 3속 2두락지를 근처의 진지陳地와 함께 전문錢文 22냥을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15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만약 자손子孫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고故 김진광金振光 처妻 마씨馬氏[우장]

증證 : 박덕수朴德水[작명]

필筆 : 유학幼學 윤성국尹聖國[작명]

1768년 12월 20일에 김진광金振光의 처妻 마씨馬氏가 이매를 하기 위해 이원세李元世에게 토지면 당산堂山리에 있는 함자답鹹字畝 6부 3속 2두락지를 근처의 진지陳地와 함께 22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 15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박덕수朴德水가 섰고, 필집으로 유학幼學 윤성국尹聖國이 참여하였다.

## 245. 1748년 김해준金海准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拾貳年戊辰三月二十六日 金海准前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祖上傳來畊食  
爲如可 要用所致以 吐旨堂山員伏字 鹹畚耆斗  
落只 負數四卜二束庫 價折錢文參 菱 依數  
交易捧上爲遣 本文記并以 右人前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如有族屬中生謀雜談  
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畚主 金夫談[着名]  
筆 釋太玄[着名]

건륭 13년(1748, 영조24)<sup>119</sup> 무진년 3월 26일 김해준金海准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아 경식畊食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 토지吐旨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畚 1두락지 부수負數 4부 2속 곳을 전문錢文 3전으로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만약 족속族屬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김부담金夫談[작명]

필筆 : 석태현釋太玄[작명]

1748년 3월 26일에 김부담金夫談이 요용소치로 김해준金海准에게 토지吐旨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畚 1두락지 4부 2속 곳을 3전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필집으로 석태현釋太玄이 참여하였다.

---

<sup>119</sup> 건륭 12년은 정묘년(1747)이고, 무진년은 건륭 13년(1748, 영조24)이다.

## 246. 1727년 김해준金海准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伍年丁未四月十八日 金海准處 明文  
右明文事段 僧矣身族下許輝亦 本案付水軍  
對答爲白如可 當此大蕪之凶年 生道爲難乙仍于  
乞食次無去處逃亡之後 番布出處無路 故以僧矣  
身乙許輝三寸是如 同番布番徵亦督促爲白去乙  
莫重軍布 他無逃避如此乙仍于 不得已祖上傳  
來番 伏在吐旨面堂山員 馘字番二斗落只 卜數  
九卜二束庫乙 價折正租全拾石 錢文捌兩 依數捧上  
於番布 及矣僧兄斗元死身墳塚時許費 及許輝受  
後還上無弊納上次 永永放賣爲有矣 本文記段  
決立案背後爻周爲去乎 日後良中某族屬  
中 如有雜談爲去等 此文記相考告官下正事  
番主 僧 進起[着名]  
訂人 同生弟 鄭斗必[着名]  
    同姓七寸 鄭奉己[着名]  
    異姓六寸 趙禾里同[着名]  
筆執 鄭致周[着名]

용정 5년(1727, 영조3) 정미년 4월 18일 김해준金海准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승僧인 나의 족하族下 허휘許輝가 본안本案의 수군水軍으로 부역하다가 지금의 흉년을 당하여 살아갈 방도를 찾기가 어렵자 걸식乞食을 위해 거처를 알 수 없게 도망가버린 후로 번포番布가 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승僧에게 허휘許輝의 삼촌三寸이라 하여 동同 번포를 납부하도록 독촉하는데, 막중한 군포軍布를 변통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 받은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馘字番 2두락지 부수負數 9부 2속 곳을 정조正租 전소 10석 石과 전문錢文 8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나의 형 두원斗元이 사망하여 무덤을 쓸 때 든 비용과 허휘許輝가 받은 환지還上를 폐단없이 납상納上하기 위해 영원히 방매하되, 본문기本文記는 결

입안決立案에 배후효주背後交周하니, 이후에 족속族屬 가운데 민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살피어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승僧 진기進起[작명]

증인訂人 : 동생제同生弟 정두필鄭斗必[작명]

동성同姓 7촌七寸 정봉기鄭奉己[작명]

이성異姓 6촌六寸 조화리동趙禾里同[작명]

필집筆執 : 정치주鄭致周[작명]

1727년 4월 18일에 승僧 진기進起가 김해준金海准에게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畝 2두락지 9부 2속 곳을 정조正租 전 10석石과 돈 8냥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방해 사유는 조카 허휘許輝가 먹은 환자와 형 두원의 무덤 쓸 때 비용을 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본문기本文記는 결입안決立案에 배후효주背後交周한다고 하였다. 증인으로 동생제同生弟 정두필鄭斗必과 7촌七寸 정봉기鄭奉己, 이성異姓 6촌六寸 조화리동趙禾里同이 공동으로 썼고, 필집筆執으로 정치주鄭致周가 참여하였다.

## 247. 1724년 승僧 처한處汗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二年甲辰十二月二十五日 僧 處汗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女矣家夫衿得畝 伏在本面河字員貳斗落只

負數三作并陸負庫乙 累年畊食爲白如可 千萬意外 父邊上

典 以矣子息 同白連眞壽良妻所產是如 贖良是如 再巡分

付乙仍于 不可不同畝庫乙 右僧處 價折錢文拾肆兩 依數捧

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立案中背後交周爲

遣 日後良中同生族類中 亦有雜談爲去等 將此文記并以告 官卜

正事

畝 故李壽元妻 莫今[右寸]

證人 鄭加并伊[着名]

證保 趙禾里同[着名]

筆執 折衝 鄭時泰[着名]

용정 2년(1724, 경종) 갑진년 12월 25일 승僧 처한處汗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가부家夫가 깃득衿得한 논이 본면本面に 있는데 하자河字의 2두락지 부수負數 3작병 6부인 곳을 여러 해 경식畊食하다가 천만뚝뚝에 부면父邊의 상전上典이 나의 자식子息인 백련白連과 진수眞壽를 함께 양초소산良妻所産이니 속량贖良하라고 재차 분부分付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동답同畓을 위 승僧에게 전문錢文 14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영원히 방매하며, 본문기本文記는 입안立案에서 배후효주背後交周한다. 이후에 동생同生 족류族類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畓 : 고故 이수원李壽元 처妻 막금莫今[우촌]

증인證人 : 정가병이鄭加并伊[착명]

증보證保 : 조화리동趙禾里同[착명]

필집筆執 : 절충折衝 정시태鄭時泰[착명]

1724년 12월 25일에 고故 이수원李壽元의 처妻 막금莫今이 자식들을 속량하기 위해 승僧 처한處汗에게 본면本面 하자河字 땅 2두락지 3작병 6부인 곳을 14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는 입안立案에서 배후효주背後交周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정가병이鄭加并伊가 섰고, 증보證保로 조화리동趙禾里同이, 필집筆執으로 절충장군 정시태鄭時泰가 참여하였다.

## 248. 1711년 황계남黃戒男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年辛卯二月拾伍日 黃戒男處 明文

右明文爲白臥乎事段 矣身折迫所致 勢不已不可不

自己<sup>120</sup>買得 耕食爲白如可 吐旨面九萬堂山員伏在 鹹

字畓參斗落只 負數四卜四束貳夜未庫乙 價折

錢文貳拾捌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  
本二丈并以 永永放賣爲乎矣 次後子息同生  
中雜談爲去等 此文以告官卞正事

畵主 黃介童[着名]

證人

訂保 林金[着名]

筆執 鄭時泰[着名]

강희 50년(1711, 숙종37) 신묘년 2월 15일 황계남黃戒男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절박한 상황으로 부득이 하게 자기매득하여 경식耕食 하던 토지면吐旨面 구만九萬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畵 3두락지 부수負數 4부 4속 2배미夜味 곳을 전문錢文 28냥으로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2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 자식子息 동생同生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황개동黃介童[착명]

증보訂保 : 임금林金[착명]

집執 : 정시태鄭時泰[착명][서업]

1711년 2월 15일에 황개동黃介童이 절박 소치로 황계남黃戒男에게 토지면吐旨面 구만九萬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답鹹字畵 3두락지 4부 4속 2배미夜味를 28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 2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증보訂保로 임금林金이, 필집으로 정시태鄭時泰가 참여하였다.

---

120 원문에는 起자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고쳤다.

## 249. 1689년 정시필鄭時必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貳拾捌年己巳二月十五日 鄭時必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女家夫祖上傳

來畊食爲如可 家夫早死之後 畧奸

食口生利爲難乙仍于 勢不得已 堂

山員馘字田 太種貳斗落只 負數四卜

四束庫乙 價折正租全二石 依數交

易捧上爲遣 右人處永永放賣爲白

去乎 後次良中 家夫遠近族屬中生

謀雜談爲去等 持此文告官卞正爲

臥乎事

田主 方召吏[右寸]

證人 趙年世[左寸]

筆執 外孫 黃俊健[着名]

강희 28년(1689, 숙종15) 기사년 2월 15일 정시필鄭時必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가부家夫가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경식畊食하다가 가부家夫가 사망한 다음에는 얼마 되지 않는 식구가 살아갈 방도가 없어 형세상 부득이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전馘字田 태종太種 2두락지 부수負數 4부 4속 곳을 정조正租 전초 2석石에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가부家夫의 원근遠近 족속族屬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방조이方召吏[우촌]

증인證人 : 조연세趙年世[좌촌]

필집筆執 : 외손外孫 황준건黃俊健[작명]

1689년 2월 15일에 방조이方召吏가 세부득이 정시필鄭時必에게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전馘字田 태



종太種 2두락지 4부 4속 곳을 정조正祖 전 2석石에 방해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증인證人으로 조연세趙年世가 있고, 필집筆執으로 외손外孫 황준건黃俊健이 참여하였다.

## 250. 정유년 두원斗元 소지所志

吐旨面居 私奴 斗元

右所志爲白內等 矣身本以無田土貧寒之民 資生無路乙仍于 本面堂山員  
鹹字東西邊有作畚處二斗落只 墾田處太種一斗落只等庫是乎矣 同作  
田畚處有石礪礪 有木森森 陳廢去棄者 幾至百年是乎劈不喻 此處亦是  
矣身曾祖量名是乎等乙以 矣身方爲作墾計料是白齊 作墾後 矣身族屬及他人  
中 称以祖上量名立案成出處是如 生謀雜談是良置  
令監主明政之下 右良情由乙細細參商教是後 後考次立旨  
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 處分  
丁酉三月日

依願立旨

向事 廿八

官[署押]

토지면吐旨面に 사는 사노私奴 두원斗元

위와 같이 소지所志를 올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본래 전토가 없는 빈한한 백성으로 생활 할 길이 없어서 본면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鹹字 동서쪽에 작답作畚한 2두락지와 간전墾田한 곳의 태종太種 1두락지 등 곳이 있습니다. 이곳 전답을 만든 곳에는 자갈이 바글바글하고 나무가 뻑뻑하여서 묵히고 버려진 지가 거의 백 년이 될 뿐만 아닙니다. 이곳 역시 저의 증조의 양명量名이므로 제가 바

야흐로 개간할 계획입니다. 개간을 한 후에 저의 족속과 다른 사람들 중에 조상의 양명量名으로 입안立案을 성출하여 이익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것이니, 영감님의 명정明政 아래에서 이러한 사정을 세세히 참상參商하신 후에 뒤에 상고하기 위해 입지를 내려주도록 명령을 하실 일이니 영감주께서 처분해주십시오.

정유년 3월 일

원하는 대로 입지를 해줄 것. 28일.

관官[서업]

정유년 3월에 토지면吐旨面에 사는 사노私奴 두원斗元이 구례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자신이 토지면 당산리의 함자鹹字 동서쪽에 논으로 만든 2두락지와 간전墾田한 태종太種 1두락지 곳에 대해 입지를 성급해달라고 청원한 내용이다.

## 251. 1765년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三十年乙酉正月三十日 出身 李時華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妻邊衿得 吐旨  
面奈字四十畓四束 四十一畓二卜八束 四十二畓三束  
四十三畓三束 四十四畓六束 四十五畓三束 四十七畓  
二卜九束 加畓四束 并五斗落只庫乙 價折  
錢文二十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本文  
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雜談  
是去等 以此文下正事  
畓主 幼學 李光新[着名]  
證 幼學 李有臣[着名]  
筆 幼學 李守恒[着名]

추록

吐旨面奈字

五斗落只卜數

十八卜三束束庫乙

買表從妹夫李

光新處

건륭 30년(1765, 영조41) 을유년 1월 30일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를 위해 처변妻邊으로부터 깃득衿得한 토지면吐旨面 내지奈字 40번답 4속, 41번답 2부 8속, 42번답 3속, 43번답 3속, 44번답 6속, 45번답 3속, 47번답 29속, 가답加答 4속, 모두 5두락지 곳을 전문錢文 2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유학幼學 이광신李光新[착명]

증證 : 유학幼學 이유신李有臣[착명]

필筆 : 유학幼學 이수항李守恒[착명]

추록

토지면吐旨面 내지奈字 5두락지, 부수負數 18부 3속을 표종매부表從妹夫 이광신李光新에게서 매득함.

1765년 1월 30일에 유학幼學 이광신李光新이 이매를 하기 위해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처변妻邊으로부터 깃득衿得한 토지면吐旨面 내지奈字 40번답 4속, 41번답 2부 8속, 42번답 3속, 43번답 3속, 44번답 6속, 45번답 3속, 47번답 29속, 가답加答 4속, 총 5두락지 곳을 2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방매하였다. 증인으로 유학幼學 이유신李有臣이 섰고, 필집으로 유학幼學 이수항李守恒이 참여하였다. 추록에는 토지면吐旨面 내지奈字답 5두락지 18부 3속을 표종매부 이광신李光新에게서 매득하였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 252. 1739년 이희겸李喜謙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年己未四月十日 幼學 李喜謙前 明文  
右文爲 移買次<sup>121</sup> 求禮土地面 奈字四  
十畝四束 四十一二卜八束 四十二三束 四十三三束 四十四  
六束 四十五三束 四十七二卜九束 加畝四束  
并五斗地只庫乙 價折錢文十  
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本文  
記一杖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雜談是去等 此文下正事  
畝主 幼學 朴聖鳳  
筆 同生弟 朴聖獐[着名]

건륭 4년(1739, 영조15) 기미년 4월 10일 유학幼學 이희겸李喜謙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를 위해 구례求禮 토지면土地面 내지奈字 40번답 4속, 41번답 2부 8속, 42번답 3속, 43번답 3속, 44번답 6속, 45번답 3속, 47번답 29속, 가답加畝 4속, 모두 5두락지 곳을 전문錢文 1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유학幼學 박성봉朴聖鳳

필筆 : 동생제同生弟 박성린朴聖獐[작명]

1739년 4월 10일에 유학幼學 박성봉朴聖鳳이 이매를 하기 위해 유학幼學 이희겸李喜謙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土地面 내지奈字 40번답 4속, 41번답 2부 8속, 42번답 3속, 43번답 3속, 44번답 6속, 45번답 3속, 47번답 29속, 가답加畝 4속, 총 5두락지 곳을 1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본문기本

---

121 원문에는此자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고쳤다.

文記 1장과 함께 방매하였다. 필집으로 동생제(同生弟) 박성린(朴聖麟)이 참여하였다.

## 253. 1732년 박성봉(朴聖鳳)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十年壬子三月十三日 幼學 朴聖鳳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妻邊衿得  
爲在 吐旨伏在 奈字四十畝四束 四十一畝二卜  
八束 四十二畝三束 四十三畝三束 四十四畝六束 四十五畝  
三束 四十七畝二卜九束 加畝四卜 并五斗落只庫乙 價折錢文  
十八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卜正事  
畝主 自筆 幼學 李喜元[着名]

雍正 10년(1732, 영조8) 임자년 3월 13일 유학(幼學) 박성봉(朴聖鳳)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낱히 쓸 곳이 있어서 처변(妻邊)으로부터 깃득(衿得)한 토지(吐)에 있는 40답 4속, 41답 2부 8속, 42답 3속, 43답 3속, 44답 6속, 45답 3속, 47답 29속, 가답(加畝) 4속, 모두 5두락지(斗落) 곳을 전문(錢文) 18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 하니,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이희원(李喜元)[작명]

1732년 3월 13일에 유학(幼學) 이희원(李喜元)이 요용(小用)소치(小池)로 유학(幼學) 박성봉(朴聖鳳)에게 처변(妻邊)으로부터 깃득(衿得)한 땅으로 토지(吐)에 있는 40답 4속, 41답 2부 8속, 42답 3속, 43답 3속, 44답 6속, 45답 3속, 47답 29속, 가답(加畝) 4속, 총 5두락지(斗落) 곳을 18냥에 방매(放賣)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별도의 필집 없이 이희원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 254. 1784년 유성호柳星浩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九年甲辰十二月十一日 喪人 柳星浩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舍兄妻家衿得 馬山坪伏在 秋字  
畝八斗落只 負數 二作 四十二畝 二十一負八束 吐旨坪村  
後 結字三十一畝 七斗落只 負數三十七負五束 馬乙  
次亭 珠字三十五畝 四斗落只 十九負五束 右坪  
稱字三畝 三斗落只 十二負 合二十二斗落只庫  
乙 價折錢文肆百貳拾兩 依數捧上爲遣 本文  
記並以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  
是去等 將此文下正事  
畝主 舍弟 自筆 幼學 閔復華[着名]

### 추록

馬山 秋字 二作 四十二畝 二十一斗八束 八斗落只庫果  
吐旨坪 結字三十一畝 三十七斗六束 八斗落只  
庫果 珠字三十五畝 十九斗五束 四斗落只庫果  
稱字三畝 十二斗 三斗落只 合四處 二十三斗落只  
光州 閔生復華處 給價四百二十兩 買  
印

건륭 49년(1784, 정조8) 갑진년 12월 11일 상인喪人 유성호柳星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하기 위하여 사형舍兄이 처가妻家에서 깃득衿得한 마산馬山에 있는 추자답秋字畝 8두락지 부수負數 2작作 42번답畝 21부負 8속束 곳과 토지평촌吐旨坪村 뒤 결자結字 31번답 7두락지 부수 37부 5속 곳과 마을차정馬乙次亭 주자珠字 35번답 4두락지 19부 5속 곳과 우평右坪 칭자稱字 3번답 3두락지 12부 곳, 합 22두락지 곳을 전문錢文 42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서로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사제舍弟 자필自筆 유학幼學 민복회閔復華[작명]

## 추록

마산馬山の 추자秋字 2작 42번답 21복 8속 8두락지 곳과 토지평吐旨坪 결자結字 31번답 37복 6속 8 두락지 곳과 주자珠字 35번답 19복 5속 4두락지 곳과 칭자稱字 3번답 12복 3두락지, 합 4곳 23두락지를 광주 민복화閔復華에게 420냥을 주고 매입함.

1784년 12월 11일에 민복화閔復華가 이매를 하기 위해 유성호柳星浩에게 4곳의 논 22두락지를 돈 420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이다. 위 땅은 민복화의 형이 처가에서 깃득한 땅으로, 마산면의 추자답과 토지면의 결자답 등을 판 것이다. 유성호는 상중에 있고 재주의 동생인 민복화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논 위치는 현 구례군 마산면과 토지면이다. 논 자호字號는 마산면의 추자秋字 42번답과 토지면의 결자結字 31번답·주자珠字 35번답·칭자稱字 3번답이다. 원 문기에는 총 22두락지를 방해한다고 적혀 있으나 추록에는 23두락으로 기록되어 있다.

## 255. 1755년 이핵李翮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廿年乙亥正月廿九日 幼學 李翮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

居生耕食是在 鹹字垓

田 負數二負二束庫 草家七

間 及同字畚 一負九束 并以

價折錢文七兩 捧上爲遣

右人前 本并以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如有雜

談 則以此文告官下正

事

垓田主 孫必屋[着名]

證人 文仁星

筆 幼學 朴洙[着名]

건륭 20년(1755, 영조31) 을해년 1월 29일 유학幼學 이핵李翹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自己買得하여 경작해 먹은 함자鹹字 대전垡田 부수負數 2부 2속 곳과 초가草家 7칸과 동자답同字畓 1부 9속을 아울러 전문錢文 7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대전주垡田主 : 손필후孫必垆 [착명]

증인證人 : 문인성文仁星

필筆 : 유학幼學 박수朴洙 [착명]

1755년 1월 29일에 손필후孫必垆가 이핵李翹에게 함자鹹字 대전垡田 2부 2속과 초가 7칸, 동자답同字畓 1부 9속을 돈 7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이다. 방매이유는 적지 않았다. 문인성이 증인을 썼고, 박수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함자전은 구례현 토지면 구만리 당산堂山에 있다.

## 256. 1758년 조도인趙道仁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三年戊寅二月初十日 幼學 趙道仁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 居生耕食是

如可 要用所致 鹹字垡田卜數 二卜二束

庫 及畓一卜九束庫并以 價折錢文五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

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

談是去等 以此文下正事

田主 許氏[右手]

筆 幼學 李守恒[着名]



건륭 23년(1758, 영조34) 무인년 2월 10일 유학幼學 조도인趙道仁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 매득하여 갈아먹다가 요용소치要用所致로 함자鹹字 대전垡田 부수負數 2부 2속 곳과 초가草家 7칸과 동자답同字畓 1부 9속을 함께 전문錢文 7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익을 제기한다면 이 문서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허씨許氏[우수右手]

필筆 : 유학幼學 이수항李守恒[작명]

1758년 2월 10일에 허씨許氏가 유학幼學 조도인趙道仁에게 함자鹹字 대전垡田 부수負數 2부 2속 곳과 초가草家 7칸과 동자답同字畓 1부 9속을 돈 7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이다. 함자鹹字 대전垡田 부수負數 2부 2속 곳과 초가草家 7칸과 동자답同字畓 1부 9속 곳은 3년 전인 1755년 1월 29일에 손필후孫必屋가 이핵李翹에게 돈 7냥에 방매했었다. 전주田主 허씨許氏는 이핵李翹의 미망인으로 추정된다.

## 257. 1791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辛亥十二月十四日 柳德浩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賣次 吐旨面堂

山坪 鹹字垡田二負二束庫 及畓

一負九束 二作 并四負一束庫乙

價折錢文伍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并 右人前 永永放賣爲去

乎 日後良中 若有雜談是去

等 將此文記 告官卞正事

自筆 田畓主 幼學 趙宗得 喪不着

## 추록

谷城 朴別將 上候狀  
堂山 鹹字垡田 二卜  
二束庫 及同字畚 一卜  
九束庫 一斗地只 趙  
宗得處 給價五兩  
并付大作  
辛亥十二月日

건륭 56년(1791, 정조15)<sup>122</sup> 신해년 12월 14일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하기 위하여 토지면吐旨面 당산평堂山坪의 함자鹹字 대전垡田 2부 2속 곳과 답 1부 9속 2작인 곳을 아우른 4부 1속 곳을 전문錢文 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전답주田畚主 : 유학幼學 조종득趙宗得 상불착喪不着

## 추록

곡성谷城의 박별장朴別將<sup>123</sup>에게 보내는 편지.

당산堂山の 함자鹹字 대전垡田 2복 2속 곳과 동자답同字畚 1복 9속 곳 1두락지를 조종득趙宗得에게 5냥을 주고 샀으며, 아울러 대작大作에 부침.

1791년 12월 일

1791년 12월 14일에 조종득趙宗得이 유덕호柳德浩에게 구례군 토지면吐旨面 당산리의 함자鹹字 대전垡田 2부 2속 곳과 함자답 1부 9속 등 총 4부 1속을 돈 5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이다. 매도자 조종득은 토지면 당산리의 대전과 답을 이매하기 위해 팔고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유덕호柳德浩(1757~1815)는 유이익柳爾翼의 차남으로서 유이주柳爾胄(1726~1797)의 양자로 입계하였다.

122 원문에는 '건륭 50년'으로 되어있으나 신해년을 기준으로 건륭 56년으로 고침.

123 별장(別將) 조선시대 각 아문(衙門)의 소요 재화를 충당하기 위하여 팔포무역(八包貿易)을 대행한 상인.

## 258. 1741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六年辛酉三月十四日 幼學 李源碩前 明文  
右明文事段 妻邊衿得是在 累年執耕是  
自如可 要用所致 吐旨面大川前員伏在 騰  
字畚六斗落只 負數貳拾參卜壹束庫 價折  
錢文伍拾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並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屬中 或有  
雜談是去等 將此文告官卞正事  
自筆 畚主 姜宅仁[着名]  
證人 妻媧 禹廷福[着名]

건륭 6년(1741, 영조17) 신유년 3월 14일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처가쪽에서 깃득하여 수년간 직접 경작하다가 긴히 쓸 곳이 있어서 토지면吐旨面 대천전大川前에 소재한 등자답騰字畚 6두락지, 부수 23복 1속 곳을 전문錢文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교역하고,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자손과 족속 중에 혹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 답주畚主 강택인姜宅仁[착명]

증인證人 : 처남妻媧 우정복禹廷福[착명]

1741년 3월 14일에 강택인姜宅仁이 이원석李源碩에게 구례 토지면의 등자답騰字畚 6두락지, 부수 23복 1속을 돈 50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이다. 매도인은 처가에서 깃득한 땅을 긴히 쓸 곳이 있어서 판다고 밝히고,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고, 답주의 처남 우정복이 증인을 썼다.

구문기를 살펴보면, 1681년 8월 10일에 박충남朴忠男이 오기립吳己立에게 등자답騰字畚 7두락지 22복 3속을 은자銀子 8냥에 팔았고, 1695년 11월 24일 오후종吳後種과 오종시吳宗是가 김명운金命云에게 등자답騰字畚 6두락지 22복 3속을 정조正租 전소 15석과 웅우雄牛 1척隻에 팔았으며, 1699년 12월 18일 김명운金明云이 우상경禹尙京에게 등자답騰字畚 6두락지를 정조正租 전소 30석에 팔았다.

## 259. 1699년 우상경禹尙京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三十八年己卯十二月十八日 禹尙京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 要用所致以 自己  
買得是在 吐旨面 騰字上捕員伏在 畚六斗落只  
庫乙 他處移賣次以 價折正租全參拾石以 依  
數交易捧上爲遣 右人亦中 本文記三丈並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此良中 某同生子息等 如有  
雜談之弊是去等 此文記告官卞正事  
畚主 金明云[左寸]  
證人 吳莫三[着名]  
證保 姜先[着名]  
筆執 申仁立[着名]

강희 38년(1699, 숙종25) 기묘년 12월 18일 우상경禹尙京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낱히 쓸 곳이 있어서 자기 매득한 토지면吐旨面의 등자騰字 상포원上捕員에 소재한 답畚 6두락지 곳을 다른 곳에 이매移買하기 위하여 정조正租 전소 30석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교역하고, 위 사람에게 본문을 3장丈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차후에 동생同生과 자식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다면 이 문서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김명운金明云[좌촌左寸]

증인證人 : 오막삼吳莫三[착명]

증보證保 : 강선姜先[착명]

필집筆執 : 신인립申仁立[착명]

1699년 12월 18일에 김명운金明云이 우상경禹尙京에게 구례 토지면의 등자답騰字畚 6두락지를 돈 대신 정조正租를 전석 30석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이다. 다른 논을 사기 위해 팔았다. 오막삼이 증인을 썼고 강선이 보증을 하였으며 신인립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260. 1681년 오기립吳己立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貳拾年八月初十日 吳己立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矣 無子息三寸亦 矣身處許與<sup>124</sup>明文畚庫 在於吐  
旨面是在伏在 上浦員 騰字畚 柴斗落只 卜數貳拾貳卜參束庫乙 價折銀子  
捌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同生及子息遠近中 幸有雜談爲去等 將此文相考 告官卞正爲臥乎事  
畚主 居士朴忠男[着名]

證人 鄭壬吉

證保 金命云

筆執 金聖善[着名] 박거스

강희20년(1681, 숙종7) 8월 10일 오기립吳己立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자식 없는 삼촌이 나에게 명문으로 허여한 답고畚庫(논)가 토지면吐旨面에 있는데 상포원上捕員 등자답騰字畚 7두락지, 복수卜數는 22복 3속 곳을 은자銀子 8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차후에 동생同生과 자식과 원근遠近의 족속 중에 행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문서를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거사居士 박충남朴忠男[작명]

증인證人 : 정임길鄭壬吉

증보證保 : 김명운金命云

필집筆執 : 김성선金聖善[작명]

1681년 8월 10일에 박충남朴忠男이 오기립吳己立에게 구레 토지면의 등자답騰字畚 7두락지, 22복

---

124 원문에는 '여(如)'자로 되어 있으나 '여(興)'자로 바로잡았다.

3속을 은자銀子 8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이다. 등자답 7두락지는 원래 박충남이 자식이 없었던 삼촌에게서 갖득한 것이다. 정임길이 증인을 썼고 보증은 김명운이 했으며, 김성선이 문서를 작성했다.

## 261. 1695년 김명운金命云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參拾肆年乙亥十一月貳拾肆日 金命云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本貧之人以 矣父若干自己買  
得 吐旨面 勝字畝 上捕員 六斗落只庫乙 卜數二十二卜三束 價折正租全十五  
石 雄牛一隻以 准<sup>125</sup>數捧上爲白遣 右人處 本文記二丈并 永  
永放買爲去乎 後此某同生遠近族類中 或有生謀雜  
談 則將<sup>126</sup>此文內用 告官卜正事  
畝主 長子 吳後種[着名]  
同生弟 宗是[着名]  
證人 通政大夫 金漢伊  
證保 孫萬載[着名]  
筆執 崔聖禹[着名]

강희 34년(1695, 숙종21) 을해년 11월 24일 김명운金命云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본래 가난한 사람으로, 나의 부친이 약간의 자기 매득한 토지면吐旨面 등자답騰字畝 상포원上捕員 6두락지 곳, 복수卜數 22복 3속을 정조正租 전술 15석과 옹우雄牛(황소) 1척隻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2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후에 어떠한 동생同生과 원근遠近 족류族類 중에 혹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서 내

125 원문에는 '준(俊)'자로 되어있으나 '준(准)'자로 바꾸었다.

126 원문에는 '장(長)'자로 되어있으나 '장(將)'자로 바꾸었다.

용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장지長子 오후종吳後種[작명]

동생 弟 종시宗是[작명]

증인證人 : 통정대부通政大夫 김한이金漢伊

증보證保 : 손만재孫萬載[작명]

필집筆執 : 최성우崔聖禹[작명]

1695년 11월 24일에 오후종吳後種·오종시吳宗是가 김명운金命云에게 구례 토지면의 등자답騰字畝 6두락지 22복 3속을 정조正租 전소 15석과 옹우雄牛 1척隻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이다. 등자답 6두락지는 오후종의 부친이 매득한 땅으로, 부친이 사망한 후 장자 오후종과 동생 오종시가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통정대부 김한이가 증인을 썼고 손만재가 보증하였으며 최성우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262. 1702년 승僧 응진應珍 허여문기許與文記

壬午十一月初四日 僧 應珍處 成文

右成文爲馱乎事段 矣妾汝矣三寸叔母亦 無子息

就死之日 無一人顧見者 極爲可憐 汝亦萬方盡

力護喪 俾無白骨之憾次以 土旨某時旨伏在 騰畚二十

二卜三束 七斗落只庫乙 許給爲去乎 不輕舉行爲乎矣 某人

是乃某談爲去等 告官下正事

畝主 自筆 三寸 訓練奉事 吳義男[着名]

임오년(1702년) 11월 초4일 승僧 응진應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처이자 너의 삼촌 숙모가 자식 없이 죽음을 맞이한 날에 한 사람도 돌아보는 자가 없는 것은 매우 가련한 일이다. 네가 만방으로 힘을 다해 호상<sup>127</sup>하여 백골<sup>白骨</sup>의 슬픔이 없게 하였으므로, 토지<sup>土地</sup>의 모시기<sup>某時</sup> 소재 등자답<sup>騰字畓</sup> 22복 3속 7두락지 곳을 허급<sup>許給</sup>하니 가벼이 거행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거나 어떠한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sup>畓主</sup> : 자필<sup>自筆</sup> 삼촌<sup>三寸</sup> 훈련봉사<sup>訓鍊奉事</sup> 오의남<sup>吳義男</sup> [착명]

임오년(1702년) 11월 4일에 오의남<sup>吳義男</sup>이 조카인 승려 응진<sup>應珍</sup>에게 구례 토지면의 등자답<sup>騰字畓</sup> 7두락지 22복 3속 곳을 허급하면서 작성한 허여문기<sup>許與文記</sup>이다. 삼촌 오의남이 처의 초상을 치른 것에 대한 보답으로 승려 응진에게 등자답을 허여하였다. 오의남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1681년과 1695년, 1699년의 등자답의 매매과정을 통해 임오년은 1702년으로 추정된다.

## 263. 1670년 김태흥<sup>金太興</sup> 토지명문<sup>土地明文</sup>

康熙玖年庚戌正月拾陸日 金太興處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爲要 妻邊祖上傳來 耕  
 食爲如乎 吐旨杏亭員伏在 崗字畓拾貳斗  
 落只 卜數參拾柒負庫 價折正租全肆拾伍石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萬一子孫中 雜談隅有去等 此文記告官下  
 正事  
 畓主 自筆 同知 孫淑男[着名]

127 호상(護喪) 초상 치르는 모든 일을 주장하여 보살핌.



강희 9년(1670, 현종11) 경술년 1월 16일 김태흥金太興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하기 위하여 처가의 조상으로부터 전해 받아 경작하여 먹던 토지吐旨 행정원杏亭員 소재 강자답崗字畓 12두락지 복수卜數 37부 곳을 정조正租 전소 45석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만일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自筆 동지同知<sup>128</sup> 손숙남孫淑男 [착명]

1670년 1월 16일 손숙남孫淑男이 김태흥金太興에게 구례 토지면의 강자답崗字畓 12두락지, 부수 37부인 곳을 정조正租 전소 45석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이다. 강자답은 손숙남이 처가쪽에서 깃들한 땅으로, 이매하기 위해 팔았다. 손숙남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264. 1731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玖年辛亥正月拾五日 幼學 李源碩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祖上傳來衿得 多年耕食是如  
可 移買次以 伏在岡字畓拾斗落只 卜數貳作并參  
拾柒卜壹束庫乙 價折正租柒拾柒石 依數  
捧上爲遣 都文書段 背後交周是遣 右人前  
本文記壹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  
孫中雜談是去等 此文下正事  
畓主 金召史[右掌]

### 추록

128 동지(同知)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에 두었던 종이품(從二品) 관직인 동지사(同知事)로, 정원은 8원이다.

崗字畓 九斗 二作並卅七卜

買金氏

量東采

용정9년(1731, 영조7) 신해년 1월 15일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조상 전래로부터 깃들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이 때移買하기 위하여, 소재 강자답崗字畓 10두락지, 복수卜數는 2작作 37복 1속 곳을 정조正租 77석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도문서都文書<sup>129</sup>는 뒤쪽에 효주爻周하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김조이金召吏[우장右掌]

#### 추록

강자답崗字畓 9두락지, 2작作 37복 곳을 김씨金氏에게 샀는데 양안에는 동채東采라고 나온다.

1731년 1월 15일에 김조이金召吏가 이원석李源碩에게 구례 토지면의 강자답崗字畓 9두락지, 이모작 37복 곳을 정조正租 77석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이다. 강자답은 김조이가 조상에게 물려받아 지어먹는 곳인데 이매하기 위해 팔았다. 구문기는 도문서都文書에 붙어있기 때문에 뒷면에 효주하고, 새로 본문기 1장을 첨부하였다. 김조이는 1722년 11월 22일에 하수경河水鏡이 이원의李源義의 내지奈字 15번 답畓 2두락지를 돈 32냥에 팔 때 보증을 썼다.

---

129 도문서(都文書) 여러 군데의 토지의 내력이 일괄적으로 적혀 있는 문서를 뜻하는데, 대개 분재기에서 각각의 몫을 적은 문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모든 분재사항을 총합해서 기록해 놓은 문서를 부르는 명칭이다.

## 265. 1722년 이원의李源義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陸拾壹年壬寅十一月二十二日 幼學 李源義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買得耕食爲白如可

要用所致 勢不得 而奈字拾伍畝 卜仗捌卜四束 負數

貳斗落只庫乙 價折錢文參拾貳兩 依數交易

捧上爲遣 右前本文記三丈并以 永永放賣爲去

乎 次後子孫族類中 若有雜談是去等 此文

告官卞正事

畝主 河水鏡[着名]

證人 安興白[着名]

證保 金戒生一女金召吏[右寸]

筆執 李元必[着名]

### 추록

奈字畝二斗作

買河水京

量同人

강희 61년(1722, 경종2) 임인년 11월 22일 유학幼學 이원의李源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매득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요용소치로 형세가 부득이 하여 내지奈字 15번답 2두락지, 부수負數는 8복 4속 곳을 전문錢文 32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3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차후 자손과 족류族類 중에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하수경河水鏡[작명]

증인證人 : 안흥백安興白[작명]

증보證保 : 김계생金戒生 1녀 김조이金召吏[우촌]

필집筆執 : 이원필李元必 [작명]

### 추록

내자답奈字畝 2두락지인 곳을 하수경河水京에게 샀는데, 양안에 동일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1722년 11월 22일 하수경河水鏡이 이원의李源義에게 토지면 내자奈字 15번답 2두락지를 돈 32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이다. 매도자는 요용소치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팔았다고 했다. 안흥백安興白이 증인을 썼고 김계생의 큰딸인 김조이가 보증을 하였으며 이원필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구문기를 살펴보면, 1667년 1월 20일에 장조이가 계생戒生에게 내자답奈字畝 2두락지 8복을 가포價布 7필에 팔았고, 1680년 2월 7일에 정반용鄭攀龍이 서동백徐東伯에게 구례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 내자답奈字畝 8부 2두락지를 정조正租 전소 13석에 팔았으며, 1714년 12월 16일에 서성우徐聖宇가 하수경河水鏡에게 구례求禮 구만九萬 내자답奈字畝 8복 2두락지를 정조正租 15석에 팔았다. 소유권 이전을 보면, 장조이에서 계생으로, 정반용에서 서동백으로, 서성우에서 하수경으로, 하수경에서 이원의로 이전되었다. 지급액은 1667년 가포 7필, 1680년에 정조 전 13석이었고, 1714년은 15석이었고, 1722년에 돈 32냥이다.

## 266. 1714년 하수경河壽鏡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五十三年甲午十二月十六日 河壽鏡處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衿得爲在 求禮九萬面奈字  
畝八卜貳斗地庫乙 價折正租拾伍石 依數捧  
上爲遣 右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壹  
丈并以 許給爲去乎 日後某人中 如有雜談爲去  
等 將此文卜正事  
畝主 徐聖宇[着名]  
證 同生弟 聖道[着名]  
筆 同姓從弟 徐弘儉[着名]

강희 53년(1714, 숙종40) 갑오년 12월 16일 하수경河壽鏡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하기 위해 깃득한 구례求禮 구만면九萬面 내자답奈字畓 8복 2두락지 곳을 정조正租 15석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면서 본문기 1장을 첨부하여 준다. 훗날 어떤 사람 중에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서로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서성우徐聖宇[착명]

증證 : 동생同生 제弟 성도聖道[착명]

필筆 : 동생同姓 종제從弟 서홍검徐弘儉[착명]

1714년 12월 16일에 서성우徐聖宇가 하수경河水鏡에게 다른 논을 사기 위해 깃득한 구례求禮 구만면九萬面 내자답奈字畓 8복 2두락지를 정조正租 15석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이다. 동생 성도가 증證을 썼고 종제 서홍검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266-1. 1680년 서동백徐東伯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拾玖年庚申貳月初七日 徐東伯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妻邊祖上傳來衿得 耕食爲如乎 矣妻

累年身貢備納無路 勢不得已 吐旨面九萬里後坪伏在 奈字

早稻畓 貳斗落只 負數捌負庫良中 價折正租全拾參

石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前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

段 他田畓并付乙仍于 許給不得爲去乎 後次同生子息族類

中 雜談爲去等 持此文告官下正事

畓主 自筆執 前司果 鄭攀龍[着名]

證人 四寸 鄭七晚[着名]

강희19년(1680, 숙종7) 경신년 2월 7일 서동백徐東伯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 처가쪽에서 조상전래해온 것을 갖들하여 경작해 먹다가 나의 처가 여러해 동안 신공身貢<sup>130</sup>을 비납備納할 길이 없는지라 형세가 부득이 해서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 후평後坪에 소재한 내자奈字 조도답早稻畓 2두락지, 부수 8부 곳을 정조正租 전소 13석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는 다른 전답문서에 함께 붙어있으므로 줄 수 없다. 이후로 동생同生과 자식과 족류族類 중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나아가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집自筆執 전사과前司果 정반용鄭攀龍[작명]

증인證人 : 사촌 정칠만鄭七晩[작명]

1680년 2월 7일에 정반용鄭攀龍이 서동백徐東伯에게 구례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 내자답奈字畓 8부 2두락지를 정조正租 전소 13석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이다. 내자답은 정반용 처의 조상 전래답으로, 정반용의 처가 신공을 바칠 길이 없어서 판 것이다. 사촌 정칠만이 증인을 썼고, 정반용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267. 1667년 계생戒生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陸年戊申正月貳拾日 戒生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女矣身 累年身貢備納無路 勢  
不得已 伏在自助乃員奈畓貳斗落只 卜數捌卜庫乙 價  
折價布柒疋以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并以 同人  
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此子息等是乃 更生雜談爲去  
等 將此文記內乙用良 告官卜正向事

---

130 신공(身貢) 노비가 신역(身役) 대신 내는 세(稅)를 말한다.

畚主 寡女張召史[右寸]

證人 鄭先興[著名]

證保 金愛云

筆執 文弘元[著名]

강희 6년(1667, 현종8) 무신년 1월 20일 계생戒生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과녀가 여러 해 동안 신공身貢을 바칠 길이 없어서 형세상 부득이하게 소재 자조내원自助乃員의 내자답 2두락지, 복수는 8복인 곳을 가포價布 7필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해한다. 이후에 자식 등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과부 장조이張召史[우촌]

증인證人 : 정선흥鄭先興[작명]

증보證保 : 김애운金愛云

필집筆執 : 문홍원文弘元[작명]

1667년 1월 20일에 장조이張召史가 계생戒生에게 내자답奈字畚 2두락지 8복 곳을 가포價布 7필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이다. 과부 장조이는 신공을 바칠 길이 없어서 내자답을 판다고 하였다. 정선흥이 증인을 썼고 김애운이 보증을 하였으며 문홍원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268. 1825년 유억柳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五年乙酉三月十三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家垵 累年居

生是如可 勢不得已 伏在家垵吐旨面垣內

下村中 太種壹斗落只塵 雲字草家體  
舍三間 及行廊貳間 負數五束庫乙  
價折錢文拾兩 依數捧上爲遣 右  
前本文記並 永永放賣<sup>131</sup>爲去乎 日後雜  
談是去等 以此文記 告官下正事  
家垓主 朱德來[着名]  
筆 徐相祿[着名]

### 추록

家垓價拾兩內 四兩舊錢  
除 二兩五錢 荒租一石價除  
在三兩五錢 乙酉十二月  
初一日 丙戌三月 荒租一石給 又二兩  
三錢 都折除

도광 5년(1825, 순조25) 을유년 3월 13일 유억柳億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한 가대家垓에서 여러 해 살다가 형세상 부득이 하여 소재한 가대家垓의 토지면吐旨面 원내하촌垣內下村 중 태종太種 1두락지 곳 운자雲字 땅과 초가집 체사體舍(안채) 3칸 및 행랑行廊 2칸, 부수로는 5속인 곳을 전문錢文 1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익을 제기하는 자가 있거든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垓主 : 주덕래朱德來[작명]

필筆 : 서상록徐相祿[작명]

### 추록

가대家垓 값 10냥 가운데 4냥은 구전舊錢을 제하고 2냥 5전은 황조荒租 1석값으로 제하니 남은 돈

---

131 원문에는 '매(買)로 잘못 쓰인 것을 매(賣)로 바로잡았다.



은 3냥 5전이다. 을유년(1825) 12월 1일과 병술년(1826) 3월에 황조 1석으로 주고, 또 2냥 3전은 모두 제하였다.

1825년 3월 13일에 주덕래朱德來가 문화유씨[유억柳億]에게 형세가 부득이해서 토지면吐旨面 원내垣內의 하촌下村 중에 태종太種 1두락지 운자雲字 땅과 초가의 체사體舍 3칸과 행랑行廊 2칸, 부수로는 5속 곳을 돈 1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서상록徐相祿이 문서를 작성하였고 증인이나 보증인은 없다. 관련문서로는 1813년 12월 12일에 강순흥姜順興의 삼촌이 강순흥에게 가대家垆와 운자雲字 태종 5승락지 5속인 곳을 7냥에 팔았고, 같은 날 강순흥은 주덕래에게 운자 태종 1두락지와 초가와 체사 3칸과 행랑 2칸, 복수로는 5복인 곳을 15냥에 판 것이 있다. 부수로 5속이었던 곳이 5복인 것으로 바뀌었고, 매도가가 7냥에서 10냥으로 올랐다. 관련문서로 보면 위 땅의 주인은 장두구 → 진상철 → (미상) → 강성우 → 서종대 → (미상) → 박상근 → 강사창·강순흥 → 주덕래 → 문화유씨[유억柳億]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269. 1813년 주덕래朱德來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拾玖年癸酉十二月十二日 幼學 朱德來前 明文  
右明文段 矣自己買得家垆 累年居生是如  
可 太還米還出處無路乙仍于 勢不得已  
伏在求禮吐旨面垣內下村中 太種壹斗落只  
雲字畝 草家體舍三間及行廊二間 卜數五卜  
廩 折價錢文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右前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  
有雜談是如是去等 以此新舊文 告  
官下正事  
家垆主 閑良 姜順興[着名]  
證人 良人 張斗九[着名]  
筆 幼學 朴春漢[着名]

가경 18년(1813, 순조13) 계유년<sup>132</sup> 12월 12일 유학幼學 주덕래朱德來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한 가대家垔에서 여러 해 동안 살다가 태환太還과 미환米還을 낼 길이 없으므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구례 토지면吐旨面 원내하촌垣內下村에 있는 태종太種 1두락지의 운자雲字 땅과 초가의 체사體舍 3칸과 행랑行廊 2칸을, 복수로는 5복인 곳을 전문錢文 1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신문기와 구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垔主 : 한량閑良 강순흥姜順興[작명]

증인證人 : 양인良人 장두구張斗九[작명]

필筆 : 유학幼學 박춘한朴春漢[작명]

1813년 12월 12일 강순흥姜順興이 주덕래朱德來에게 환자를 값을 길이 없어서 토지면吐旨面 원내하촌垣內下村 중 태종太種 1두락지의 운자雲字 땅과 초가의 체사體舍 3칸 및 행랑行廊 2칸을 부수로는 5복인 곳을 돈 1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춘한朴春漢이 문서를 작성하였고 장두구張斗九가 증인을 썼다. 관련문서로는 1813년 12월 12일 같은 날에 강순흥 삼촌이 강순흥에게 가대家垔와 운자雲字 땅 태종太種 5승락지, 부수로 5속인 곳을 7냥에 판 것이 있다. 문서를 작성한 박춘한은 1808년 강성우가 서종대에게, 1813년 강순흥의 삼촌이 강순흥에게, 강순흥이 주덕래에게 팔 때 참여했던 집필자이다. 박춘한은 강씨 집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1번과 같은 문기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 270. 1813년 강순흥姜順興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十九年癸酉十二月十二日 姜順興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家垔 累年居生是如可

132 원문에는 가경 19년(1814, 순조14)으로 작성되었으나 계유년 간지를 따라 가경 18년(1813, 순조13)으로 수정함.

勢不得 求禮吐旨面垣內村中 家垔 雲字  
太種五升落只 負數五束庫乙 價折錢  
文柒兩肆錢 依數捧上爲遣 右處本文  
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雜談是去  
等 以此文記 日後憑考事  
垔主 同姓 三寸[着名]  
筆 朴春漢[着名]

가경 18년(1813, 순조13)<sup>133</sup> 계유년 12월 12일 강순흥姜順興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한 가대家垔에서 수년간 살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어 소재 구례 토지면吐旨面 원내하촌垣內下村 중 가대家垔와 운자雲字 태종太種 5승락지, 부수로는 5속인 곳을 전문錢文 7냥 4전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훗날 증거로 삼을 일이다.

대주垔主 : 동성同姓 삼촌三寸[착명]

필筆 : 박춘한朴春漢[착명]

1813년 12월 12일 강순흥의 삼촌이 강순흥姜順興에게 형세가 부득이해서 토지면吐旨面 원내하촌垣內下村 중 가대家垔와 운자雲字 태종太種 5승락지, 부수로는 5속인 곳을 돈 7냥 4전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춘한朴春漢이 문서를 작성하였고, 증인과 보증인은 없다.

---

**133** 원문에는 가경 19년(1814, 순조14)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유년' 간지에 따라 가경 18년(1813, 순조13)으로 수정함.

## 271. 1813년 주덕래朱德來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十九年癸酉十二月十二日 朱德來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自己<sup>134</sup>買得家堡 累年居生是如可  
太多還上 出處無路乙仍于 勢不得 求禮  
吐旨面垣內下村中 雲字草家三間與  
石春并 負數五束庫乙 價折錢文柒兩 依  
數捧上爲遣 右前本文書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官下正事  
家堡主 姜順興[着名]  
證人 張斗九[着名]  
筆 朴春漢[着名]

가경 18년(1813, 순조13)<sup>135</sup> 계유년 12월 12일 주덕래朱德來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스스로 매득한 가대家堡에서 여러 해 동안 살다가 빌린 환자還子가 너무 많아서 낼 길이 없으므로 형세상 부득이하여 구례 토지면吐旨面 원내하촌垣內下村 중 운자雲字와 초가 3칸 및 석용石舂(돌절구)를 함께, 부수로는 5속인 곳을 전문錢文 7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堡主 : 강순흥姜順興[작명]

증인證人 : 장두구張斗九[작명]

필筆 : 박춘한朴春漢[작명]

1813년 12월 12일 강순흥姜順興이 주덕래朱德來에게 빌린 환자를 값을 길이 없어서 토지면吐旨面

134 원문에는 '기(起)'자로 되어있으나 '기(己)'자로 바꾸었다.

135 원문에는 가경 19년(1814, 순조14)으로 작성되었으나 '계유년' 간지에 따라 가경 18년(1813, 순조13)으로 수정함.

원내하촌垣內下村 중 운자 땅과 초가 3칸 및 돌절구를 함께, 부수로는 5속인 곳을 돈 7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춘한朴春漢이 문서를 작성하였고 장두구張斗九가 증인을 썼다.

## 272. 1811년 강사창姜士昌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十七年辛未八月十七日 姜士昌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家堡 累年居生是如可  
移買次 求禮吐旨面垣內村中 家堡 雲字  
太種五升落只 負數七束庫乙 價折錢文  
柒兩肆錢 依數捧上爲遣 右前本文書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官下正事  
自筆 家堡主 朴相根[着名]

가경 16년(1811, 순조12)<sup>136</sup> 신미년 8월 17일 강사창姜士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한 가대家堡에서 여러 해 동안 살다가 이매移買하기 위하여 구례 토지면吐旨面 원내하촌垣內下村 중 가대家堡와 운자雲字 태종太種 5승락지, 부수로 7속인 곳을 전문錢文 7냥 4전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 가대주家堡主 박상근朴相根[착명]

1811년 8월 17일 박상근朴相根이 강사창姜士昌에게 이매하기 위하여 토지면吐旨面 원내하촌垣內下

---

<sup>136</sup> 원문에는 가경 17년(1812, 순조12)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미년 간지를 따라 가경 16년(1811, 순조11)으로 수정함.

村 중 가대家垞와 운자雲字 태종太種 5승낙지, 부수로 7속인 곳을 돈 7냥 4전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상근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고 증인과 보증인은 없다.

## 273. 1808년 서종대徐宗大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十三年戊辰六月十二日 幼學 徐宗大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家垞 居生是如可 移去次  
求禮吐旨面垣內下村伏在 雲字太種伍升落只  
負數柒束庫乙 草家二間并 價折錢文肆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前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若有  
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官下正事  
家垞主 姜成右[着名]  
證 姜得昌  
筆 幼學 朴春漢[着名]

가경 13년(1808, 순조8) 무진년 6월 12일 유학幼學 서종대徐宗大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한 가대家垞에서 살아가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구례 토지면吐旨面 원내하촌垣內下村에 있는 운자雲字 태종太種 5승락지, 부수로는 7속인 곳을 초가 2칸과 함께 전문錢文 4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垞主 : 강성우姜成右[작명]

증證 : 강득창姜得昌[작명]

필筆 : 유학幼學 박춘한朴春漢[작명]

1808년 6월 12일에 강성우姜成右가 서종대徐宗大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토지면吐旨面

원내하촌垣內下村 소재 운자雲字 태종太種 5승락지, 부수 7속인 곳을 초가 2칸과 함께 돈 4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강득창이 증證을 썼고, 박춘한朴春漢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 보면 위 땅의 주인은 장두구 → 진상철 → (미상) → 강성우 → 서종대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274. 1800년 진상철陳相喆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四年庚申十二月二十八日 幼學 陳相喆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亦自己買得垞田是在 要用所致 求禮  
吐旨面 垣內村 雲字員東邊五束庫 家舍貳間并 價折錢文  
柒兩 交易捧上爲遣 右前新文記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下正事  
家垞主 張斗九[着名]  
筆 黃聖澄[着名]

가경 4년(1800, 정조24) 경신년 12월 28일 유학幼學 진상철陳相喆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 매득한 대전垞田을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구례 토지면吐旨面 원내촌垣內村의 운자雲字 땅 동쪽 5속 곳과 가사家舍 2칸을 함께 전문錢文 7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신문기新文記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垞主 : 장두구張斗九[착명]

필筆 : 황성징黃聖澄[착명]

1800년 12월 18일에 장두구張斗九가 진상철陳相喆에게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토지면吐旨面 원내촌垣內村의 운자雲字 동쪽 5속인 곳과 가사家舍 2칸을 돈 7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원내촌垣內村의 운자雲字 땅과 집에 대해서는 이때 처음 문건이 만들어졌다. 황성징黃聖澄이 문서를 작성

하였고 증인과 보증인은 없다.

## 275. 1739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年己未二月十六日 妻甥 李源碩前 明文  
右明文事段 妻邊衿得 耕食爲如可 移買次 吐旨面  
天皇時伏在 雨字百畝六斗落只 負數廿三卜八束塵 價  
折錢文四十二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并以 右前永永  
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將此  
文卞正事  
自筆 畝主 妹夫 李遇馨[着名]

건륭4년(1739, 영조15) 기미년 2월 16일 처남妻甥 이원석李源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처가 쪽에서 깃들하여 경작해오다가 이매移買하기 위하여 토지면吐旨面 천황치天皇時 소재 우자雨字 100번 답 6두락지, 부수로는 23복 8속인 곳을 전문錢文 42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빙매한다. 훗날 자손 중에 만약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서로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畝主 : 매부妹夫 이우형李遇馨[착명]

1739년 2월 16일에 매부妹夫 이우형李遇馨이 이매하기 위해서 처남妻甥 이원석李源碩에게 토지면吐旨面 천황치天皇時에 있는 우자雨字 100번 답 6두락지, 부수로는 23복 8속인 곳을 돈 4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이우형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276. 1825년 유억柳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五年乙酉三月十三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田 以要用所  
致 伏在馬山面 月字太種三  
斗落只 卜數十一卜九束塵  
價折錢文參兩 依數捧  
上爲遣 右前舊文記并以 永  
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  
雜談是去等 將此文下正  
事  
田主 幼學 金濟井[着名]  
筆 朱得來[着名]  
證 金太右[着名]

도광5년(1825, 순조25) 을유년 3월 13일 유억柳億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전田을 요용소치로 마산면馬山面に 있는 월자月字 밭 태종太種 3두락지, 복수로는 11복 9속인 곳을 전문錢文 3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구문기舊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유학幼學 김제정金濟井[작명]

필筆 : 주득래朱得來[작명]

증證 : 김태석金太右[작명]

1825년 3월 13일에 김제정金濟井이 문화유씨[유억柳億]에게 요용소치로 마산면馬山面に 있는 월자月字전 태종太種 3두락지, 복수로는 11복 9속인 곳을 돈 3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태석이 증인을 썼고 주득래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277. 1767년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三十二年丁亥十一月十五日 出身 李時華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馬山面伏在 舟坪閭字畓  
三內畓九卜九束 七合畓十四卜六束 陸斗落只 價折  
錢文陸拾貳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前本  
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  
則將此文 告官下正事  
畓主 自筆 幼學 王錫廈[着名]

건륭 32년(1767, 영조43) 정해년 11월 15일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하기 위하여 마산면馬山面に 있는 주평舟坪의 윤자답閭字畓 삼내답三內畓 9복 9속과 칠합답七合畓 14복 6속, 6두락지인 곳을 전문錢文 62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서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왕석하王錫廈[작명]

1767년 11월 15일에 왕석하王錫廈가 이매하기 위해 이시화李時華에게 마산면馬山面 소재 주평舟坪 윤자답閭字畓 3번답 9복 9속과 7번답 14복 6속[총 24복 5속], 6두락지인 곳을 돈 6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왕석하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시화의 딸이 유덕호와 혼인하였다.

## 278. 1705년 김춘봉金春奉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肆年乙酉拾月二十八日 金春奉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女矣家夫 自己買得 累年耕食爲自如  
可 貧寒所致以 不可不吐旨面員伏在 騰字畝捌斗落只 負  
數拾柒負玖束庫乙 價折正租貳拾伍石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參丈并以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若有遠族間雜  
談爲去等 持此文記相考 告官卞正治罪爲乎事  
畝主 故朴內福妻 金召史[手掌]  
證人 族下 朴訶同[着名]  
證保 金今奉  
筆執 金尙伯[着名]

강희 44년(1705, 숙종31) 을유년 10월 28일 김춘봉金春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남편이 자기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해먹다가 빈한소치 貧寒所致로 토지면吐旨面에 있는 땅인 등자답騰字畝 8두락지, 부수로는 17부 9속 곳을 정조正租 25석 石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3장을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만약 먼 친척 간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잡고 죄로 다스릴 일이다.

답주畝主 : 고 박내복朴內福의 처妻 김조이金召史[수장手掌]

증인證人 : 족하族下 박각동朴訶同[착명]

증보證保 : 김금봉金今奉

필집筆執 : 김상백金尙伯[착명]

1705년 10월 28일에 박내복朴內福의 처 김조이金召史가 빈한한 소치로 김춘봉金春奉에게 토지면吐旨面에 있는 등자답騰字畝 8두락지 17부 9속 곳을 정조正租 25석石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족하 박각동이 증인을 썼고 김금봉이 보증을 썼으며 김상백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279. 1630년 우사수禹士壽 토지명문土地明

崇禎□…□十月十三日 禹士壽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 貧寒所致以 今年  
冬至 進上陪物以 人情等他條以 出處未由乙  
仍于 矣自己買得 耕食爲如乎 吐旨伏在 陽字  
畚拾壹斗落只 卅卜五束庫良中 價折木綿二十疋 丁  
雄馬壹疋 及正租壹石等乙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永永放賣爲乎矣 後此良中 矣身及  
他族類中 雜談爲去等 將此明文相考告官卜正  
事  
證保 四寸 宋世興[着名]  
證人 金桂蘭  
自筆執 宋鳳瑞[着名]

승정○년(○, ○) ○○년 10월 13일 우사수禹士壽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빈한貧寒한 까닭으로 금년 동지冬至에 진상進上할 물건이나, 인정人情조 등 다른 조목의 돈을 낼 길이 없으므로,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작해온 토지吐宅에 있는 양자답陽字畚 11두락지, 부수로는 30복 5속인 곳을 목면木棉 20필과 숫 정마丁馬 1필 및 정조正租 1석石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차후에 나와 다른 족류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명문으로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증보證保 : 사촌四寸 송세흥宋世興[작명]

증인證人 : 김계란金桂蘭

자필집自筆執 : 송봉서宋鳳瑞[작명]

○○년 10월 13일에 송봉서宋鳳瑞가 우사수禹士壽에게 토지면 양자답陽字畚 11두락지, 부수로는 30복 5속인 곳을 목면木棉 20필과 정마丁馬 1필 및 정조正租 1석石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진

상할 것과 인정조로 내야할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판다고 했다. 증보證保는 사촌四寸 송세흥宋世興이 썼고, 김계란이 증인이 되었으며, 송봉서가 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 280. 1754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拾玖年甲戌六月十三日 幼學 李源碩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sup>137</sup>買得 馬山面大旨  
坪 月字田十四 十三卜九束 十五 十卜四束 四斗落只庫乙  
價折錢文八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一丈并以 永永放賣於右人前  
爲去乎 日後子孫中 或有雜談  
是去等 以此下正事  
田主 自筆 幼學 鄭桓[着名]

### 추록

馬山鳥只川  
月字田 二作並  
廿四卜三束 買鄭  
生桓▣▣四斗

건륭 19년(1754, 영조30) 갑술년 6월 13일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 매득하여 마산면馬山面 대지평大旨坪 월자月字 전田 14번 13복 9속, 15번 10복 4속, 4두락지 곳을 전문錢文 8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본

---

137 원문에는 '기(起)'자로 기재된 것을 '기(己)'로 바꾸어 기록했다.

文記 1장을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차후 자손 중에 혹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서로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정환鄭桓[작명]

### 추록

마산馬山 조지천鳥只川 월자전月字田 2작작인 곳을 아울러 24복 3속인 곳을 정환에게 매득함.

1754년 6월 13일에 정환鄭桓이 이원석李源碩에게 마산면馬山面 대지평大旨坪 월자전月字田 14번 밭 13복 9속과 15번 밭 10복 4속[총 24복 3속], 합 4두락지 곳을 돈 8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매매 사유는 적지 않았다. 정환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추록은 마산면 조지천鳥只川의 월자月字 전田 2작작인 24복 3속 곳을 정생鄭生에게 매득했다는 내용이다.

## 281. 1749년 정환鄭桓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拾年己巳五月二十日 幼學 鄭桓前 明文  
右明文爲事段 矣積敗之餘 生道爲難乙仍于  
馬山面大旨坪 月字田十四 十三卜九束 十五 十卜四束慶 同生  
鼎呂衿下乙 自己<sup>138</sup>買得 累年耕食是如可 勢不  
已 賣食資生圖 價折錢文捌兩 依數交易  
捧用爲遣 本文記一丈并以 右前永永放賣爲  
去乎 日後同生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告官卞正事  
自筆 田主 通德郎 金鼎梅[着名]  
證 長兄 通德郎 金鼎禹[着名]

138 원문에는 '기(起)'자로 기재된 것을 '기(己)'로 바꾸어 기록했다.

家弟 金鼎調[着名]

건륭 14년(1749, 영조25) 기사년 5월 23일 유학幼學 정환鄭桓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거듭 실패한 나머지에 생계가 곤란하여 마산면馬山面 대지평大旨坪의 월자전月字田 14번 13복 9속, 15번 10복 4속 곳, 즉 동생同生 정여鼎呂가 깃든 곳을 자기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하여 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생계의 자생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錢文 8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1장을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대한 다. 훗날 동생同生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전주田主 : 통덕랑通德郎 김정매金鼎梅[착명]

증證 : 장형長兄 통덕랑通德郎 김정우金鼎禹[착명]

가제家弟 김정조金鼎調[착명]

1749년 5월 23일에 김정매金鼎梅가 생계의 도모를 위해 정환鄭桓에게 마산면馬山面 대지평大旨坪 월자전月字田 14번 13복 9속, 15번 전 10복 4속 곳을 돈 8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큰형 김정우와 동생 김정조가 증證을 썼고 김정매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282. 1740년 신초성辛楚聖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伍年庚申正月二十八日 辛楚聖前 明文

右明文爲事段 矣祖上傳來 累年耕食爲如可 要

用所致 勢不得已 吐旨面 伏在於騰字畝捌斗落只 負數

二作并貳拾貳卜參束庫乙 價折錢文伍拾壹兩以 依數

捧上爲遺 右人前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良中 子孫族屬 若有雜談是去等 此文記告官下正

事

畚主 金以載[着名]  
同生 弟 金有奉[着名]  
證 朴好傑[着名]  
筆 姜相賓[着名]

건륭 5년(1740, 영조16) 경신년 1월 28일 신초성辛楚聖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 조상전래의 땅을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요용소치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토지면吐旨面 소재 등자답騰字畓 8두락지, 부수로는 2작과 22복 3속인 곳을 전문錢文 51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자손과 족속 중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서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김이재金以載[작명]  
동생同生 제弟 김유봉金有奉[작명]  
증證 : 박호걸朴好傑[작명]  
필筆 : 강상빈姜相賓[작명]

1740년 1월 28일에 김이재金以載가 신초성辛楚聖에게 요용소치로 토지면吐旨面 소재 등자답騰字畓 8두락지, 부수로는 2작과 22복 3속인 곳을 돈 51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동생 김유봉과 함께 작명을 한 것으로 보아 등자답에 대한 소유권은 두 형제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호걸이 증을 썼으며 강상빈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를 통해 소유권 이전 경로가 미상 → 박낙복과 처 김조이 → 김춘봉·김이재 → 신초성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급 방식도 무명 2동, 정조 25석, 돈 51냥 등이다. 부수도 8두락지 17부 9속에서 1740년에는 2작에 22복 3속으로 4복 4속이 늘었다.

## 283. 1659년 박낙복朴歙福 토지명문土地明文

順治十六年己亥十二月十七日 朴歙福處 明文



右明文爲馭乎事段 矣自己賣得 累年耕食爲如可 □□  
 出入不得乙仍于 吐旨伏在 騰字畝八斗落只 十七卜九束庫乙  
 價折木二同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某人乃 雜談爲去乙等 此文記告官下正事  
 …□筆執□…[着名]

순치16년(1659, 효종10) 기해년 12월 17일 박낙복朴洛福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해먹다가 출입에 어쩔 수 없어서 토지吐旨 소재 등자답騰字畝 8두락지, 부수로 17복 9속 곳을 목木 2동同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해한다. 차후에 어떤 사람이거나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필집筆執…[착명]

1659년 12월 17일 ○○가 박낙복朴洛福에게 토지면 등자답騰字畝 8두락지, 부수로 17복 9속인 곳을 무명[木] 2동同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관련문서를 통해 소유권 이전 경로가 미상 → 박낙복과 처 김조이 → 김춘봉·김이재 → 신초성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방식도 무명 2동 → 정조 25석 → 전문 51냥 등이다. 부수도 17부 9속에서 1740년에는 22복 3속으로 4복 4속이 늘었다.

## 284. 1822년 족계중族契中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二年壬午正月二十七日 族契中明文

右明文事段 谷城石谷面上道峙坪

字字畝七斗落內 大路邊四斗落 卜數

九卜五束廩 價折錢文拾陸兩 依數捧

上是遣 本文記段 七斗畝並付故背頃

不得出給爲遣 只以新文記一丈 放賣  
於族契中爲去乎 以此文憑考事  
畚主 自筆 奴 漢甲[着名]

#### 추록

谷城 山直畚 七斗落內 四斗  
落 放賣於族契中 而文  
記二丈 都付印

도광 2년(1822, 순조22) 임오년 1월 27일 족계중族契中에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곡성谷城 석곡면石谷面 상도치평上道峙坪 자字자답 7두락지 가운데 대로변의 4두락지, 복수로는 9복 5속인 곳을 전문錢文 16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7두락지 답畝와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배탈背頓하고 내주지 않으며, 단지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족계族契중에 방매하니, 이 문기로 증빙을 삼을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노奴 한갑漢甲[작명]

#### 추록

곡성谷城의 산직山直 답畝 7두락지 내에서 4두락을 족계族契중에 방매하고 문기文記 2장은 모두 붙임.

1822년 1월 27일에 노비 한갑漢甲이 족계族契중에 곡성谷城 석곡면石谷面 상도치평上道峙坪의 자字자답 4두락지, 복수로는 9복 5속인 곳을 돈 16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한갑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추록에는 곡성 산지기의 논 4두락을 족계중에 방매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관련문서로는 1822년 1월 19일에 정경신丁敬臣이 문화유씨에게 석곡면石谷面 자字자답 7두락지, 16복 5속인 곳을 돈 28냥에 판 것이 있다.

## 285. 1822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二年壬午正月十九日 前明文  
右明文事 衿得是在 屢年耕農是如可 要用  
所致 勢不得已 而伏在谷城石谷面上道峙坪  
字字畚柴斗落只 負數十六卜五束廳 價折錢文  
貳拾捌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段 他田畚并付仍  
于 不得出給 只以新文一丈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  
某人中 如有雜談是去等 以將此文告官卞正事  
畚主 自筆 幼學 丁敬臣[着名]

도광 2년(1822, 순조22) 임오년 1월 19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수년 동안 경작해온 곳을 요용소치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곡성(谷城) 석곡면(石谷面)에 있는 상도치평(上道峙坪)의 자(字)자(字)답(字) 7두(七)락(石)지(地), 부(畝)수(畝)로는 16(石)복(石) 5(石)속(石)인(石) 곳을 전문(錢)文 28(兩)냥(兩)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畚)문(文)서에 함께 붙어 있으므로 줄 수 없고, 다만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해한다. 훗날 어떤 사람 중에 만일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畚)주(主) : 자(字)필(自)筆(筆) 유(幼)학(學) 정(丁)경(敬)신(臣)[착(作)명(名)]

1822년 1월 19일에 정경신(丁敬臣)이 문화유씨에게 요용소치로 곡성(谷城) 석곡면(石谷面) 상도치(上道峙)의 자(字)자(字)답(字) 7두(七)락(石)지(地), 부(畝)수(畝)로는 16(石)복(石) 5(石)속(石)인(石) 곳을 돈 28(兩)냥(兩)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정경신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286. 1740년 노奴 선생善生 배자牌子

奴 善生處  
移買次 吐旨面牟  
時旨坪 露字畚五  
斗落只 負數二十  
二卜束廬 某處賣  
納事  
庚申二月初七日  
寡上典廬  
本文記五丈

노奴 선생善生에게 주는 배자牌子

이매移買하기 위하여 토지면吐旨面 모시지평牟時旨坪에 있는 로자답露字畚 5두락지, 부수로는 22복 속인 곳을 모처에 팔 일이다.

경신년 2월 7일, 과寡 상전上典 노廬가 씌.

본문기本文記 5장도 함께 한다.

1740년 2월 7일에 상전上典 노廬씨가 노비 선생善生에게 토지면吐旨面 모시지평牟時旨坪 로자답露字畚 5두락지 22복 속 곳을 팔라고 내린 배자牌子이다. 관련문서로 보면 1740년 2월 11일에 서종만徐宗萬의 처妻 노씨廬氏가 이수관李守觀에게 로자답露字畚 5두락, 21복 속 곳을 돈 36냥에 판 것을 알 수 있다.

## 287. 1752년 이주국李柱國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拾七年壬申二月十九日 異姓 六寸 幼學 李柱國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衿得 吐旨面牟時坪  
露字畚五斗落 負數廿一卜五束庫乙 價  
折錢文三十九兩 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如有雜談是去等 以此  
卜正事  
自筆 畚主 幼學 異姓 六寸 李宗星[着名]

건륭 17년(1752, 영조28) 임신년 2월 19일 이성異姓 육촌六寸 유학幼學 이주국李柱國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하기 위해 깃득한 토지면吐旨面 모시평牟時坪의 로자답露字畚 5두락, 부수로는 21복 5속인 곳을 전문錢文 39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만일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 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畚主 : 유학幼學 이성異姓 육촌六寸 이종성李宗星[착명]

1752년 2월 19일에 이종성李宗星이 이매하기 위해 이주국李柱國에게 토지면吐旨面 모시평牟時坪의 로자답露字畚 5두락 21복 5속 곳을 돈 39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육촌 이종성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를 보면 1716년 2월 28일에 김세봉金世奉 처妻 김씨金氏가 승려 극능極能에게 로자답露字畚 5두락, 부수 20부 1속인 곳을 돈 37냥에 팔았고, 1740년 2월 11일에 서종만徐宗萬의 처妻 노씨盧氏가 이수관李守觀에게 로자답露字畚 5두락 21복 속 곳을 돈 36냥에 팔았다. 소유권은 김세봉 → 극능 → 미상 → 서종만 → 이수관·이종성 → 이주국으로 변경되었다.

## 288. 1740년 이수관李守觀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 年庚申二月十一日 幼學 李守觀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家翁自己買得爲在 吐旨  
面牟時旨坪 露字畝五斗落只 卜數二十一卜  
束庫乙 價折錢文三十六兩 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五丈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  
談是去等 以此文卜正事  
畝主 故徐宗萬 妻 盧氏[手掌]  
幼學 證筆 同姓 六寸 盧震傑[着名]

건륭5년(1740, 영조16) 경신년 2월 11일 유학幼學 이수관李守觀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하기 위하여 남편이 자기매득한 토지면吐旨面 모시지평牟時旨坪의 로자답露字畝 5두락, 복수로 21복 속인 곳을 전문錢文 36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5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해한다. 이후로 만일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고故 서종만徐宗萬 처妻 노씨盧氏[수장]

증필證筆 : 유학幼學 동성同姓 육촌六寸 노진걸盧震傑[착명]

1740년 2월 11일에 서종만徐宗萬의 처妻 노씨盧氏가 이매하기 위해 이수관李守觀에게 토지면吐旨面 모시지평牟時旨坪의 로자답露字畝 5두락, 복수로 21복 속인 곳을 돈 36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노씨의 육촌 노진걸이 증인을 서고 문서를 작성하였다. 1740년 2월 7일에 상전上典 노盧씨가 노비 선생善生에게 로자답露字畝 5두락지 22복 속 곳을 팔라는 배자에 따라 매매한 것이다.

## 289. 1716년 승僧 극능極能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五十五年丙申二月二十八日 僧極能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女矣身亦家夫 自己<sup>139</sup>買得 耕食爲如可  
本鄉歸還次 移買次 求禮縣吐旨面伏在 露字畝伍斗 負數  
貳拾負壹束庫乙 價折錢文參拾柒兩以 交易捧上爲遣 同人  
處 永永放賣爲乎於 本文記肆丈并以 出給爲去乎 後次良  
中 同生子息族屬中 更謀雜談爲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卞正事  
畝主 故 金世奉 妻 金氏[右掌]  
證人 同姓四寸 金永賓[着名]  
證保 同姓四寸 金重元[着名]  
異姓四寸 尹爾昌[着名]  
異姓七寸族下 金九鼎[着名]  
筆執 金鼎禹[着名]

강희 55년(1716, 숙종42) 병신년 2월 28일 승僧 극능極能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남편이 자기매득하여 경작해먹다가 본향에 귀환하려고 이매移買하기 위해 구례현求禮縣 토지면吐旨面 소재 로자답露字畝 5두락, 부수로는 20부 1속 곳을 전문錢文 37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며 본문기本文記 4장을 첨부하여 준다. 이후로 동생同生 자식 족속 중에 다시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고故 김세봉金世奉의 처妻 김씨金氏[우장]

증인證人 : 동성同姓 사촌四寸 김영빈金永賓[착명]

증보證保 : 동성同姓 사촌四寸 김중원金重元[착명]

---

139 원문에는 '기(記)'자로 기재된 것을 '기(己)'로 바꾸어 기록했다.

이성異姓 사촌四寸 윤이창尹爾昌[작명]

이성異姓 칠촌七寸 족하 김구정金九鼎[작명]

필집筆執 : 김정우金鼎禹[작명]

1716년 2월 28일에 김세봉金世奉 처妻 김씨金氏가 고향으로 이사하기 위해 승려 극능極能에게 구례현求禮縣 토지면吐旨面 소재 로자답露字畓 5두락, 부수로는 20부 1속인 곳을 돈 37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사촌 김영빈이 증인을 썼고 사촌 김종원, 윤이창, 칠촌 김구정이 보증을 썼으며, 김정우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에 의하면 소유권은 김세봉 → 극능 → 미상 → 서종만 → 이수관 이종성 → 이주국으로 변경되었다.

## 290. 1681년 승僧 명선明善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貳拾年辛酉三月十二日 僧明善處 明文

右明文爲事段 衿得耕食爲如可 田稅出處無路乙仍于 勢

不得已 吐旨面大川員伏在 露字畓四斗落只 負數拾參卜三束塵

價正租拾貳石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永永放賣爲

乎矣 本文記段 都文記載錄是乎等以 不爲傳授爲去乎

此後同生子息族類中 雜談爲去等 此文記告官下

正事

畓主 正兵 朴戒若[着名]

證人 同生弟 以發[左寸]

證保 僧 處益

筆執 同生兄 以賢[着名]



강희 20년(1681, 숙종7) 신유년 3월 12일 승僧 명선明善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깃들하여 경작해먹다가 전세田稅를 낼 길이 없으므로 형세가 부득이 하여 토지면吐旨面 대천大川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4두락지, 부수로는 13복 3속인 곳을 정조正租 12석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도문기에 실려있기 때문에 전수해줄 수 없다. 차후 동생同生 자식 족류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정병正兵<sup>140</sup> 박계약朴戒若 [작명]

증인證人 : 동생제同生弟 이발以發 [좌촌]

증보證保 : 승僧 처익處益

필집筆執 : 동생형同生兄 이현以賢 [작명]

1681년 3월 12일에 박계약朴戒若이 승려 명선明善에게 전세田稅를 내기 위해 토지면吐旨面 대천大川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4두락지, 부수는 13복 3속인 곳을 정조正租 12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동생 박이발이 증인을 썼고 승려 처익이 보증을 썼으며 형 박이현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291. 1726년 승僧 성기性機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肆年丙午肆月拾捌日 僧性機處 明文  
右明文爲馭乎事段 矣寺中衆公論議內  
當值法堂移建之計 而如此凶荒之年 始作  
緣化矣 匠人役粒與普施等 他無變通之  
路 故勢不得已 吐旨面伏在員 露字畓  
肆斗落只 卜數拾參負參束庫乙 價折錢

---

140 정병(正兵) 조선시대 군사 제도의 기간을 이루었던 일반 양인 농민 출신의 병종(兵種)을 말한다.

文五十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僧處 本  
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若有某寺中雜  
談之弊是去等 將此文記告官下正事  
畚主 時住持 玉梅[着名]  
證人 時持寺 錦海[着名]  
公證 公言 貫機[着名]  
筆執 太玄[着名]

용정4년(1726, 영조2) 병오년 4월 18일 승僧 성기性機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절에서 대중들의 공론 내에 법당法堂을 옮기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처럼 흥작의 해에 연화緣化<sup>141</sup>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장인匠人의 양식과 보시普施 등을 달리 변통할 길이 없어서 형세가 부득이하어 토지면吐旨面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4두락지, 복수는 13부 3속인 곳을 전문錢文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승려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건 절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시주지時住持 옥매玉梅[작명]  
증인證人 : 시지사時持寺 금해錦海[작명]  
공증公證 : 공언公言 관기貫機[작명]  
필집筆執 : 태현太玄[작명]

1726년 4월 18일에 당시 주지住持 옥매玉梅가 승려 성기性機에게 토지면吐旨面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4두락지, 부수로 13부 3속인 곳을 돈 5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흥년이 든 해에 법당을 이전하는 불사를 시작한지라 경비를 변동할 길이 없어서 판다고 했다. 금해가 증인을 썼고, 공언 관기가 공증을 하였으며 태현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141 연화(緣化) 권선문(勸善文) 또는 연화문(緣化文)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를 권하는 행위를 말한다.

## 292. 1740년 노부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年庚申正月十一日 李生員宅奴 加八里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移買次以 自己  
買得 耕食爲如可 吐旨面九萬員伏  
在 生字畚玖斗落只 卜數二作并二  
拾五卜七束庫果 大川員露字畚  
四斗落只 卜數拾三卜三束庫 合拾三斗  
落等庫乙 價折正租全壹百拾伍石  
依數捧上爲遣 右人處 兩庫本文記  
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  
去等 此文告官卞正事  
畚主 性機 改名 退徵[着名]  
證人 劉慶章[着名]  
筆 閑良 李成春[着名]

건륭 5년(1740, 영조16) 경신년 1월 11일 이생원댁李生員宅 노부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移買하기 위해 자기매득하여 경작해먹다가 토지면吐旨面 구만九萬에 있는 생자답生字畚 9두락지, 복수로는 2작 25복 7속인 곳과 대천大川에 있는 로자답露字畚 4두락지, 복수로는 13복 3속인 곳, 합 13두락인 곳을 정조正租 전소 115석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 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두 곳의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성기性機 개명改名 퇴징退徵[착명]

증인證人 : 유경장劉慶章[착명]

필筆 : 한량閑良 이성춘李成春[착명]

1740년 1월 11일에 퇴징退徵으로 개명한 성기性機가 이매하기 위해 이생원댁李生員宅 노비 가팔리

加八里에게 토지면吐旨面 구만九萬리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9두락지, 복수로는 2작 25복 7속인 곳과 대천大川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4두락지, 복수로는 13복 3속인 곳, 합 13두락지인 곳을 정조正祖 전조 115 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유경장이 증인을 썼고 이성춘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를 보면 1681년 3월 12일에 박계약朴戒若이 승려 명선明善에게 토지면吐旨面 대천大川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4두락지, 복수로는 13복 3속인 곳을 정조正祖 12석에 팔았고, 1716년 2월 6일에 석명선釋明善이 연곡사중燕谷寺中에 로자답露字畓 4두락지, 복수로는 13복 3속인 곳을 허급하였으며, 1726년 4월 18일에는 당시 주지住持 옥매玉梅가 승려 성기性機에게 로자답露字畓 4두락지, 복수로 13부 3속인 곳을 돈 50냥에 판 것을 알 수 있다.

## 293. 1716년 연곡사중燕谷寺中 허납명문許納明文

康熙五十五年丙申貳月初陸日 燕谷寺中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 矣亦自己買得 累年耕食爲有如可  
 年登七十之餘 生死未定乙仍于 吐旨面大川員伏在 露字  
 畓肆斗落只 卜數拾參卜參束塵 佛前千秋萬歲  
 流傳佛糧之意 許納爲乎矣 本文記一丈果 立案一丈  
 并以 永永許納爲去乎 日後良中 上佐及俗門之中  
 如有雜談是去乙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畓主 嘉善大夫 釋明善[着名]  
 筆執 上佐 嘉善大夫 釋勝一[着名]

강희 55년(1716, 숙종42) 병신년 2월 6일 연곡사중燕谷寺中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수년동안 경작해먹다가 나이 70여세가 됨에 생사를 알지 못하므로 토지면吐旨面 대천大川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4두락지, 복수로 13복 3속인 곳을 부처 앞에 천추만세千秋萬歲동안 전해가며 절 양식으로 쓸 뜻으로 허납許納하되, 본문기本文記 1장과 입안立案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상좌上佐와 속문俗門 사람들 중에 만약 이의

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가선대부嘉善大夫 석명선釋明善[작명]

필집筆執 : 상좌上佐 가선대부嘉善大夫 석승일釋勝一[작명]

1716년 2월 6일에 승려 명선明善이 연곡사燕谷寺에 토지면吐旨面 대전大川에 있는 로자답露字畝 4두 락지, 부수로 13복 3속인 곳을 허납하며 작성한 허여문기이다. 명선은 나이 70세가 되어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연곡사의 양식으로 만세토록 쓰라고 허납한 것이다. 상좌 석승일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294. 1756년 문덕홍文德洪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一年丙子十一月十一日 幼學 文德洪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當此新舊還上 萬分督納之日 數多穀物 未

由備納仍于 累度被刑牢囚是乎等以 面任及檢督等 呈訴

官前 自己耕食是在 某畝間放賣備納亦是乎所 勢出不已

吐旨面伏在下大川坪員 爲字畝參斗落只 卜數十二卜三束庫乙

價折錢文貳拾貳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 本

文記并以 官呈立旨帖連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如有

雜談是去等 將此文記告官下正事

畝主 姜宅仁[着名]

證人 同姓四寸 姜碩濟[着名]

檢督 全海明[着名]

約正 崔致雄[着名]

筆執 風憲 全日周[着名]

건륭 21년(1756, 영조32) 병자년 11월 11일 유학幼學 문덕홍文德洪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신구新舊 환자還上에 대해 매우 독납督納<sup>142</sup>하는 날을 당하여 다수의 곡물을 비납備納<sup>143</sup>할 길이 없음을 몇차례 형형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면임面任<sup>144</sup>과 검독檢督<sup>145</sup>들이 관청에 정소呈訴하여 자기가 지어먹는 땅은 어떤 논이든 간에 방매하여 비납하라고 함에 형세가 부득이하여 토지면吐旨面의 하대천평下大川坪에 있는 위자답爲字畓 3두락지, 복수는 12복 3속인 곳을 전문錢文 22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관에 올린 입지立旨<sup>146</sup>를 접련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강택인姜宅仁[작명]

증인證人 : 동성사촌同姓四寸 강석제姜碩濟[작명]

검독檢督 : 김해명全海明[작명]

약정約正<sup>147</sup> : 최치웅崔致雄[작명]

필집筆執 : 풍헌風憲<sup>148</sup> 전일주全日周[작명]

1756년 11월 11일에 강택인姜宅仁이 문덕홍文德洪에게 토지면吐旨面의 하대천평下大川坪에 있는 위자답爲字畓 3두락지, 복수로 12복 3속인 곳을 돈 2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강택인은 환자還上을 갚지 못하여 몇차례 옥살이를 하였고 면임과 검독이 관청에 정소하여 땅을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하기 때문에 위자답을 팔게 되었다. 사촌 강석제가 증인을 썼고, 검독 김해명, 약정 최치웅이 작명하였으며, 전일주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를 보면, 1741년 3월 14일에 강택인姜宅仁이 이원석李源碩에게 처가에서 갖득한 토지면의 등지답騰字畓 6두락지, 23복 1속을 돈 50냥에 팔았다.

142 독납(督納) 세금을 내도록 독촉함.

143 비납(備納) 갖추어 납부함.

144 면임(面任) 향촌사회에서 지방자치와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직책. 풍헌·약정(約正)·존위(尊位)·권농·집강(執綱)·도유사(都有司) 등으로 불렸다.

145 검독(檢督) 지방조직을 주·현 아래에 면·사, 혹은 방으로 나누었는데, 검독은 면·사방의 장 가운데 하나이다. 지금의 면장·읍장에 해당되며, 1895년(고종 32)에 '집강'으로 통일되었다.

146 입지(立旨) 관부(官府)에서 판결문을 쓰고 관인을 찍어 개인이 청원한 사실을 공증해 주던 문서.

147 약정(約正) 면임(面任)을 의미할 경우 향약정(鄉約正, 향약의 면책임자)과 혼동되므로 부헌(副憲)이라고도 하여 풍헌(風憲) 다음을 뜻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행정계통의 풍헌에 대하여 교회를 맡는 집강(執綱)을 뜻하기도 한다.

148 풍헌(風憲) 유향소에서 면(面)이나 리(里)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 대민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향임(鄉任)의 하나이다.

## 295. 1764년 문우덕文友德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九年甲申二月二十二日 幼學 文友德前 明文

右文爲移買次 自己買得是在伏在

吐旨面大川坪 露字畝三斗落 卜數十二卜

三束庫果 結字畝四斗落只 卜數十四卜五

束庫果 爲字畝二斗五刀落只 卜數八卜

七束庫果 金字畝三斗落只 卜數十四

三束庫 合實種十二斗五刀落只

庫乙 價折錢文壹百伍拾兩 依數捧上

爲遣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下正事

畝主 自筆 幼學 李宇龍[着名]

건륭 29년(1764, 영조40) 갑신년 2월 22일 유학幼學 문우덕文友德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땅으로 토지면吐旨面の 대천평大川坪에 있는 로자답露字畝 3두락지, 복수로는 12복 3속인 곳과 결자답結字畝 4두락지, 복수로 14복 5속인 곳과 위자답爲字畝 2두 5도락지, 복수로 8복 7속인 곳과 금자답金字畝 3두락지, 복수로 14복 3속인 곳, 합습 실종實種 12두 5도락지 곳을 전문錢文 15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로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이우룡李宇龍[작명]

1764년 2월 22일에 이우룡李宇龍이 문우덕文友德에게 토지면吐旨面 대천평大川坪에 있는 로자답露字畝 3두락지, 12복 3속인 곳과 결자답結字畝 4두락지, 14복 5속인 곳과, 위자답爲字畝 2두 5도락지, 8복 7속인 곳과, 금자답金字畝 3두락지, 14복 3속 곳, 합 12두 5도락지, 부수로는 49복 5속인 곳을 돈 15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이우룡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296. 1752년 이우인李宇寅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七年壬申二月十五日 幼學 李宇寅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耕食爲如可 移買  
次以 吐旨面八松亭員伏在 露字畝下邊一夜味參斗落  
只 卜數十二卜四束庫果 加耕旨伏在 生字畝上邊四斗落只  
負數十四負五束庫果 桶沺員伏在生字畝四斗落只  
卜數十五卜九束庫 并三庫 合拾壹斗落只等庫乙 價  
折錢文柒拾貳兩 依數捧上爲遣 右前三庫本文  
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謀計  
雜談是去等 此文告官卞正事  
畝主 徐以大[着名]  
證 朴東彩[着名]  
筆 朴東紀[着名]

건륭 17년(1752, 영조28) 임신년 2월 15일 유학幼學 이우인李宇寅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작해먹다가 이매移買하기 위해 토지면吐旨面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畝 아랫쪽 1배미 3두락지, 복수로는 12복 4속인 곳과 가경지加耕旨에 있는 생자답生字畝 상변 4두락지, 부수로는 14부 5속인 곳과 통보桶沺에 있는 생자답生字畝 4두락지, 복수로는 15복 9속인 곳 모두 세 곳, 합 11두락지 등 곳을 전문錢文 72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3곳의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자손 족속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서이대徐以大[착명]

증證 : 박동채朴東彩[착명]

필筆 : 박동기朴東紀[착명]

1752년 2월 15일에 서이대徐以대가 이우인李宇寅에게 이매하기 위해 토지면吐旨面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하변의 1배미 3두락지, 12복 3속 곳과 가경지加耕旨 소재 생자답生字畓 상변 4두락지, 14부 5속 곳과 통보桶漚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4두락지, 15복 9속 곳, 합 11두락지, 총 42복 7속인 곳을 둔 7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동채가 증證을 썼고 박동기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297. 1743년 승僧 정신定信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八年癸亥二月二十七日 僧 定信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女矣身家夫祖先流來之物 積年是如乎 矣家夫  
正兵服役是如可 不幸身死之後 物故情債及棺板 其初喪等物 出處  
無路 舅族果相議 吐旨面八松亭員伏在 露字陸斗落只內下邊一森區  
參斗落只 卜數拾貳負肆束廩 價折錢貳拾柒兩 依數捧上爲遣 都文記  
爻周 而本文記并以 右僧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某子孫族屬中 更生  
謀計雜談是去等 此文告官卞正事

畓主 故 禹廷良妻 申召史[右掌]<sup>149</sup>

證 家夫 儀母 徐召史[右寸]

家夫 妹夫 姜宅仁[着名]

證 家夫 同姓四寸 禹舜輔[着名]

同姓四寸 禹舜究[着名]

公證 通政 徐允徵[着名]

筆 朴再盛[着名]

건륭8년(1743, 영조19) 계해년 2월 27일 승僧 정신定信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남편 선조로부터 전해온 물건을 여러 해 동안 지어먹

---

149 원문에는 '우촌(右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우장(右掌)'으로 바꾸었다.

었는데 나의 남편이 정병正兵<sup>150</sup>으로 복역하다가 불행하게 죽은 후에 물고채物故債<sup>151</sup>.정채情債<sup>152</sup>. 관판棺板<sup>153</sup> 등 초상初喪에 들어갈 비용이 나올 길이 없어서 시댁식구와 상의하여 토지면吐旨面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로자답露字沓 6두락지 내에서 하면 일삼구一森區의 3두락지, 복수로는 12부 4속인 곳을 전문錢文 27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도문기都文記는 효주爻周하고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위 승려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어떤 자손 족속 중에 다시 이익을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番主 : 고故 우정량禹廷良 처妻 신조이申召史[우장]

증證 : 가부家夫의 의모儀母 서조이徐召史[우춘]

가부家夫의 매부妹夫 강택인姜宅仁[작명]

증證 : 가부家夫의 동성사촌同姓四寸 우순보禹舜輔[작명]

동성사촌同姓四寸 우순구禹舜究[작명]

공증公證 : 통정通政 서윤징徐允徵[작명]

필筆 : 박재성朴再盛[작명]

1743년 2월 27일 우정량禹廷良의 처妻 신조이申召史가 승僧 정신定信에게 토지면吐旨面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로자답露字沓 3두락지, 부수로는 12부 4속인 곳을 돈 27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죽은 남편의 초상을 치르는 비용을 내기 위해서 판다고 하였다. 의모 서조이와 남편의 매부 강택인, 남편의 사촌 우순보, 우순구가 증證을 썼다. 서윤진이 공증하였고 박재성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150 정병(正兵) 조선시대 군사 제도의 기간을 이루었던 일반 양인 농민 출신의 병종(兵種)을 말한다.

151 물고채(物故債) 조선 말기에 아전들의 농간으로 죽은 사람의 이름이나 가짜 이름을 군적에 넣고 부당하게 군포를 물린 것으로, 그 자손에게 백골징세(白骨徵稅)를 감행하였다.

152 정채(情債) 사정을 봐주는 대가로 주는 뇌물.

153 관판(棺板) 관(棺)을 만들기 위해 썬 놓은 넓고 긴 널빤지.

## 298. 1748년 계중契中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三年戊辰六月十六日 契中前 明文  
右明文爲馱乎事 矣自己<sup>154</sup>買得 累年耕食爲  
如可 移買次 吐旨面桶洑員伏在 生字畚肆斗落只  
負數二作并拾陸卜參束塵 價折錢文參拾貳兩  
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并以 永永  
放賣爲去乎 若有日後族屬中 某人是乃 生謀  
雜談之弊是去等 將此文記告官下正事  
畚主 鄭命天[着名]  
證人 釋圓益[着名]  
        順梅[着名]  
筆 釋太玄[着名]

건륭 13년(1748, 영조24) 무진년 6월 16일 계중契中에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수년 동안 경작해 먹다가 이매移買하기 위해 토지면吐旨面 통보桶洑에 있는 생자답生字畚 4두락지, 부수로는 2작 16복 3속인 곳을 전문錢文 32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만약 훗날 족속 중에 어떤 사람이든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정명천鄭命天[작명]

증인證人 : 석도익釋圖益[작명]

        순매順梅[작명]

필筆 : 석태현釋太玄[작명]

---

154 원문에는 '기(起)'자로 기록된 것을 바꾸었다.

1748년 6월 16일에 정명천鄭命天이 계중契中에 이매하기 위해 토지면吐旨面 통보桶洑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4두락지, 2작으로 부수는 16복 3속인 곳을 돈 3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도의과 순매가 증인을 썼고 태현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 보면, 1734년 2월 24일에 김춘봉金春奉이 김중대金重大에게 생자답生字畓 4두락지 2작 16복 3속 곳을 돈 20냥에 팔았고, 1742년 12월 20일에 김수명金水明이 정명천鄭命天에게 생자답生字畓 4두락지 2작 16복 3속인 곳을 돈 29냥에 판 것을 알 수 있다. 소유 이동 경로를 보면 1734년 김춘봉이 김중대에게, 1742년 김수명이 정명천에게, 1748년 정명천이 계중에 판 것이다. 지급액은 1734년 20냥이었던 것이 1742년에는 29냥이 되었고, 1748년에는 32냥이 되었다. 1734년 이후 8년만에 45%가 상승하였고, 14년만에 60%가 상승하였다.

## 299. 1742년 정명천鄭命天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七年壬戌十二月二十日 鄭命天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亦若干結卜 與當此赤立窮  
 夏 未由資生 勢不得已 同生無後三寸前衿得  
 是在 本面桶洑員伏在 生畓肆斗落只 卜數二作  
 并拾陸卜參束庫乙 價折錢文貳拾九兩 依數捧  
 上爲遣 右人前 本明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此謀人雜談是去等 以此憑考下正事  
 畓主 病人 金水明[左寸]  
 證人 河東侯  
 證保 權世煒  
 筆 同姓作三寸 孫孝根[着名]

건륭 7년(1742, 영조18) 임술년 12월 20일 정명천鄭命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약간의 결복結卜<sup>155</sup>이 있는데 이처럼 가난[赤立]하고 궁핍할 때를 당해 자생할 길이 없어서 형세상 부득이하여 동생同生이 후사가 없는 삼촌에게 갖득한

것인 본면 통보桶湫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4두락지, 복수로는 2작인 16복 3속인 곳을 전문錢文 29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후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것으로 증방할 일이다.

답주畓主 : 병인病人 김수명金水明[좌촌]

증인證人 : 하동거河東居

증보證保 : 권세위權世煒

필筆 : 동성同姓 작삼촌作三寸 손효근孫孝根[착명]

1742년 12월 20일에 김수명金水明이 정명천鄭命天에게 살아갈 방도를 찾기 위해 토지면 통보桶湫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4두락지, 복수로는 2작 16복 3속인 곳을 돈 29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권세위가 보증을 섰으며, 손효근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 보면 생자답生字畓 4두락지, 복수로 2작 16복 3속인 곳의 소유 변천은 김춘봉 → 김중대·김수명 → 정명천 → 계중이다.

### 300. 1734년 김중대金重大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十二年甲寅二月二十四日 金重大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自己買得 累年耕食爲白  
如可 要用所致以 勢不得已 吐旨面桶湫員伏在 生字  
畓四斗落只 卜數二作并以十六卜三東庫乙 價折  
錢文貳拾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 本  
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此後幸有子孫中  
雜談是去等 將此文記告官卜正事  
畓主 金春奉[着名]  
證人 證保 金萬朴[着名]

---

155 결복(結卜) 토지세(土地稅)로 매긴 목, 집, 목의 통칭(通稱).

筆執 閑良 金儀昌[着名]

옹정 12년(1734, 영조10) 갑인년 2월 24일 김중대金重大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수년 동안 경작해오다가 요용소치로 형 세상 부득이하어 토지면吐旨面 통보桶湫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4두락지, 복수로는 2작을 아우른 16복 3속인 곳을 전문錢文 2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 구히 방매한다. 이후에 행여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김춘봉金春奉[작명]

증인證人·증보證保 : 김만복金萬祚[작명]

필집筆執 : 한량閑良 김의창金儀昌[작명]

1734년 2월 24일에 김춘봉金春奉이 김중대金重大에게 요용소치로 토지면吐旨面 통보桶湫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4두락지, 복수로는 2작을 아우른 16복 3속인 곳을 돈 2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만복이 증인과 증보를 썼고, 한량 김의창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 보면 생자답生字畓 4두락지, 복수로 2작 16복 3속인 곳의 소유 변천은 김춘봉 → 김중대·김수명 → 정명천 → 계중이다.

### 301. 1706년 노奴 만금萬金 배자牌子

奴 萬金處 付

無他 汝亦無后奴子夏屎己

上畓庫 在於求禮縣吐旨

面桶浦員 生字畓 禾名柒斗

落只 卜數二作并十七卜庫乙 願

買人處 准價放賣納上 宜當

向事

丙戌十月二十九日

上典 郭[着押]

노奴 만금萬金에게 부침

다름이 아니라, 너는 후사가 없는 사내중 돌시똥屎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곳, 즉 구례현求禮縣 토지면吐旨面 통포桶浦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화명禾名 7두락지, 복수로는 2작을 아우른 17복인 곳을 사려는 사람에게 가격대로 방매하여 위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1706년 10월 29일, 상전上典 곽郭[착압]

1706년 12월 29일에 상전上典 곽郭씨가 노비 만금萬金에게 구례현求禮縣 토지면吐旨面 통포桶浦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7두락지, 복수로는 2작 17복인 곳을 팔아서 올리라고 명령하는 배자이다. 생자답 7두락지는 원래 노비 돌시똥屎의 몫이었으나 후사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주인이 팔게 된 것이다. 관련문서로는 노비 만금이 1706년 11월 13일에 김춘봉에게 7두락지, 2작 17부를 49냥에 판 매매 문서가 있다.

### 302. 1706년 김춘봉金春奉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伍丙戌十一月拾參日 金春奉處 明文

右明文爲乎事段 奴矣上典宅 無后奴子 疋屎畓庫乙 上典牌字

導良 全羅道求禮縣地吐旨面桶浦員伏在是在 生字畓禾

名柒斗落只庫 卜數貳作并拾柒負庫乙 價折錢文肆拾九

兩 依數捧上爲遣 同人處 奴疋屎買得文記一丈果 及本

文記貳丈果 上典主牌字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某姪子孫中 奸謀雜談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中 告官

卜正事

畓主 差奴 萬金[左寸]

證人 張先弘[着名]

筆執 僧人 哲識[着名]

강희 45년(1706, 숙종32) 병술년 11월 13일 김춘봉金春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상전택의 후사가 없는 사내종 돌시췌屎의 답췌 곳을 상전이 내린 배자牌字에 따라서 전라도全羅道 구례현求禮縣 토지면吐旨面의 통포桶浦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화명禾名 7두락지 곳, 복수는 2작을 아울러 17부인 곳을 전문錢文 49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노奴 돌시췌屎의 매득문기買得文記 1장과 본문기本文記 2장과 상전주上典主의 배자牌字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해한다. 훗날에 어떠한 조카나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차노差奴<sup>156</sup> 만금萬金[좌촌]

증인證人 : 장선홍張先弘[작명]

필집筆執 : 승인僧人 철직哲識[작명]

1706년 11월 13일에 상전으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은 노비 만금萬金이 김춘봉金春奉에게 구례현求禮縣 토지면吐旨面 통포桶浦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화명禾名 7두락지인 곳, 복수로는 2작을 아우른 17부인 곳을 돈 49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장선홍이 증인을 썼고 승려 철직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03. 1652년 서돌시徐疔屎 토지명문土地明文

壬辰年拾二月拾三日 徐疔屎處 明文

右明文爲畝乎事段 矣身亦買得 年年耕食

---

156 차노(差奴) 위임받은 노비.



爲白如可 今年良中 移買賣得次以 桶浦員伏  
 在 生字畚五夜未柒斗落只庫 負數拾柒負  
 二作并爲良良中 正木壹同半以 依數交易捧上爲  
 遣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同生族類等  
 雜談爲去乙等 此文記告官變定爲乎事  
 畚主 僧人 守圭[着名]  
 證人 正兵 姜善文[着名]  
 證保 水軍 禹進雲[着名]  
 筆執 僧人 能遠[着名]

임진년 12월 13일 서둘시徐疋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매득하여 해마다 경작하여 먹다가 금년에 이매移買하고 매득賣得하기 위해 통포桶浦에 있는 생자답生字畚 5배미 7두락지 곳, 부수로는 17부 2작 곳을 정목正木 1동 반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이후에 동생同生이나 족류 등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승인僧人 수규守圭[착명]  
 증인證人 : 정병正兵 강선문姜善文[착명]  
 증보證保 : 수군水軍 우진운禹進雲[착명]  
 필집筆執 : 승인僧人 능원能遠[착명]

임진년 12월 13일에 승인僧人 수규守圭가 서둘시徐疋屍에게 이매하기 위해 통포桶浦에 있는 생자답生字畚 5배미 7두락지, 부수로는 17부 2작인 곳을 정목正木 1동 반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강선문이 증인을 썼고 우진운이 보증을 썼으며 승인 능원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 문서를 보면 계미년(1643) 1월 17일에 장봉세張鳳世가 승인僧人 수규守圭에게 통포桶浦 소재 생자답生字畚 7두락지 17부 2작을 정목正木 1동에 팔았고, 1706년 11월 13일에 상전으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은 노비 만금萬金이 김춘봉金春奉에게 같은 곳을 돈 49냥에 판 것을 알 수 있다.

소유권 이동 경로를 보면 생자답生字畚 7두락지 17부 2작인 곳은 장봉세 → 승 수규 → 서둘시·만금 → 김춘봉 → 김중대·김수명 → 정명천 → 계중인데 김춘봉이 매득할 때부터는 생자답生字畚 4두락지 16복 3속인 곳으로 변모되었다.

### 304. 1643년 승僧 수규守圭 토지명문土地明文

癸未年正月拾柒日 僧人 守圭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貧寒所致以 口食還上田稅  
八結 一應隆役 雜物他條 出處未由仍于 自己買得 累年耕  
食爲如乎 桶浦員伏在 生字畚柒斗落只 卜數拾  
柒負二作合庫良中 正木壹同 以依數交易  
捧上爲遣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  
良中 某邊同生族類中 相論隅有去乙等 此  
文記內兒如 告官卜正事  
畚主 老除正兵 張鳳世[着名]  
證人 老除正兵 金秀男[着名]  
證保 私奴 梁原卜[着名]  
筆執 幼學 徐日進[着名]

계미년 1월 17일 승僧 수규守圭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빈한한 소치로 구식환자口食還上<sup>157</sup>와 전세田稅 8결과 대응해야 할 많은 역 및 기타 여러 가지 조목의 돈이 나올 방법이 없으므로, 자기매득하여 수년 동안 경작해온 통포桶浦에 있는 생자답生字畚 7두락지, 복수로는 17부 2작인 곳을 정목正木 1동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이후로 어떤 쪽의 동생同生 족류이건 간에 서로 논 의할 구석이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노제老除<sup>158</sup>정병正兵 장봉세張鳳世[작명]

증인證人 : 노제老除정병正兵 김수남金秀男[작명]

157 구식환자[口食還上]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꾸어주었다가 추수 후에 소정의 이자를 붙여서 받아들이는 일. 환자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 경창환자[京倉還上]·왕년환자[往年還上]·구식환자·종자환자[種子還上]가 그것이다.

158 노제(老除) 나이가 들어 군역에서 제외된 자.

증보證保 : 사노私奴 양원복梁原卜 [작명]

필집筆執 : 유학幼學 서일진徐日進 [작명]

계미년(1643) 1월 17일에 장봉세張鳳世가 승승 수규守圭에게 빈한한 소치로 통포桶浦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7두락지, 복수로 17부 2작인 곳을 정목正木 1동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빌린 환자와 전세 등 여러 가지 돈을 낼 길이 없어 토지를 판다고 했다. 김수남이 증인을 썼고 노비 양원복이 보증하였으며 서일진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소유권 이동 경로를 보면 생자답生字畓 7두락지 17부 2작인 곳은 장봉세 → 승 수규 → 서둘사·만금 → 김춘봉 → 김중대·김수명 → 정명천 → 계중으로 변화되었는데, 김춘봉이 매득할 때부터는 4두락지 16복 3속인 곳으로 변모되었다.

### 305. 1716년 최영득崔永得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陸年丙申十一月二十一日 崔永得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身亦 要用所致以 矣上典亦  
文尺駒字代田是在 矣上典亦 移買次以 奴大文  
處 牌字導良 同文尺兩山員伏在 駒字代田 長四十八尺  
廣二十尺 櫻桃木塞表并以 太種貳斗落只負數伍負  
參束庫乙 價折錢文拾柒兩 依數交易捧上爲  
遣 本文記四丈 牌字壹丈并以 同人處永永放賣爲去  
乎 後次謀使孫族屬中 如有雜談爲去等乙 次文記  
肆丈 牌字壹丈并以 相考告官卞正事  
田主 奴大文[左手]  
證人 金碩俊  
證保 車善浩  
筆執 幼學 金漢鳴[着名]

강희 55년(1716, 숙종42)<sup>159</sup> 병신년 11월 21일 최영득崔永得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요용소치로 나의 상전上典이 문척文尺의 구자駒字 대전垡田을 나의 상전이 이매移買하기 위해서 노奴 대문大文에게 배자牌字를 내린 것에 따라서 문척文尺 양지兩山에 있는 구자駒字 대전垡田, 길이가 40자이고 넓이가 20자인, 앵도목으로 둘러 표시한 곳의 태종太種 2두락지, 부수로 5부 3속인 곳을 전문錢文 17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4장과 배자 1장을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이후에 어떠한 자손과 족속 중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다음 문기文記 4장과 배자 1장을 첨부해서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노奴 대문大文[좌촌]

증인證人 : 김석준金碩俊

증보證保 : 차선호車善浩

필집筆執 : 유학幼學 김한명金漢鳴[작명]

1716년 11월 21일에 노비 대문大文이 최영득崔永得에게 문척면文尺面 양산兩山에 있는 구자駒字 대전, 즉 길이 40자 넓이 20자로 앵도목으로 둘러 표시한 곳의 태종太種 2두락지 5부 3속인 곳을 돈 17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상전이 이매하기 위해서 상전의 배자에 따라 노비 대문이 팔았다. 김석준이 증인을 썼고, 차선호가 보증을 썼으며 김한명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06. 1796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元年丙辰四月十七日 幼學 柳德浩前 明文  
右明文事段 祖上傳來垡田 累世居生是如可 當此  
歉年 生道極難 文尺面龜城里伏在 駒字員垡田二斗  
落只 負數五卜七束庫果 竹田三斗落只 負數九卜五束

159 강희 55년은 병신년이고, 강희 56년은 정유년이라서 병신년 간지에 맞추어 강희 55년으로 바꾸었다.

庫及草家一旨果木并以價折錢文五十五兩 依  
 數交易捧上 本文記段 都文書并載錄 故不得出給  
 背後昭周 只以新文書一丈 右前永永放賣 日後子孫  
 中 若有雜談 以此下正事  
 家垵主 幼學 張濶[着名]  
 證 幼學 高萬權[着名]  
 筆 幼學 張濬[着名]

가경 1년(1796, 정조20) 병진년 4월 17일 유학幼學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조상으로부터 전래해온 대전垵田에서 여러 대 동안 살아오다가 이와 같은 흉년을 당하여 생계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문척면文尺面 구성리龜城里의 구자駒字 대전垵田 2두락지, 부수로는 5복 7속인 곳과 죽전竹田 3두락지, 부수로는 9복 5속인 곳과 초가草家 1지늬와 과목果木을 아울러 전문錢文 5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도문기와 함께 실려 있기 때문에 내줄 수 없으니, 뒷면을 효주하고 다만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자손 중에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것으로 바로 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垵主 : 유학幼學 장활張濶[작명]

증證 : 유학幼學 고만권高萬權[작명]

필筆 : 유학幼學 장학張濬[작명]

1796년 4월 17일에 장활張濶이 유덕호柳德浩에게 문척면文尺面 구성리龜城里에 있는 구자駒字 대전垵田 2두락지 5복 7속과 죽전竹田 3두락지 9복 5속 곳과 초가草家 1지늬와 과목果木을 아울러 돈 5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흉년을 당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판다고 하였다. 고만권이 증證을 썼고, 장학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07. 1796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元年丙辰四月十七日 幼學 柳德浩前 明文  
右明文事段 歎年圖生之致 自己買得  
文尺面龜城里伏在 駒字員垵田二斗落  
負數五卜三束庫果 草家一旨果木  
竹田雜木并以 價折錢文拾五兩 依數交  
易捧上 本文記并以 右前永永放賣 日  
後良中 如有雜談 以此卜正事  
家垵主 幼學 張濶[着名]  
證 幼學 高守權[着名]  
筆 幼學 張濬[着名]

가경 1년(1796, 정조20) 병진년 4월 17일 유학幼學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흥년에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자기매득한 문척면文尺面 구성리龜城里에 있는 구자駒字 대전垵田 2두락지, 부수 5복 7속 곳과 초가草家 1지늬·과목果木·죽전竹田·잡목雜木을 아울러 전문錢文 1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만약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것으로 바로 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垵主 : 유학幼學 장활張濶[착명]  
증證 : 유학幼學 고수관高守權[착명]  
필筆 : 유학幼學 장학張濬[착명]

1796년 4월 17일에 장활張濶이 유덕호柳德浩에게 문척면文尺面 구성리龜城里 소재 구자駒字 대전垵田 2두락지 5복 7속 곳과 초가草家 1지늬, 과목果木·죽전竹田·잡목雜木을 돈 1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고수관이 증證을 썼고 장학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306. 1796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의 기록과 대상이 같다. 다만 다른 점은 앞에서는 돈 55냥에 판다고 했는데, 이번 명문에서는 15냥이라고 하였고, 증인이 앞에서는 고만권이었는데, 이번에는 고수관이란 점이 다를 뿐이다.

동일한 날짜에 두건의 계약을 하였고, 거래액수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볼 때 앞의 서류가 잘못 작성되어 다시 수정하여 작성하느라고 두 건이 만들어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 308. 1792년 상전주上典主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六年壬子五月初九日 上典主前 明文  
右明文事段 傳來垡田二斗落 累年居生 還上收刷之致  
方營放賣之際 上典主分付教是 一依他處放賣價拾  
七兩 成文納上宜當是如 故不得已 本文記并以 成文書納  
上事  
家垡主 奴 得孫[着名]  
證 同生 得三[着名]

건륭 57년(1792, 정조16)<sup>160</sup> 임자년 5월 9일 상전주上典主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전래해온 대전垡田 2두락은 여러 해 동안 살았던 곳인데 환자還上를 수쇄하는 일로 바야흐로 영營에서 방매放賣할 때, 상전주上典主의 분부에 '다른 곳에 방매하는 가격에 따라 17냥으로 값을 정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납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해서 문서를 작성하여 올리는 일이다.

가대주家垡主 : 노부 득손得孫[작명]

증證 : 동생同生 득삼得三[작명]

1792년 4월 17일에 노부 득손得孫이 상전주上典主에게 대전垡田 2두락지를 17냥에 팔면서 작성한

---

160 건륭 57년은 임자년이고, 건륭 56년은 신해년이기 때문에 간지에 맞추어 건륭 57년으로 바꾸어 번역함.

매매문서이다. 환자를 수세하기 위해 영에서 강제로 방매하려고 하자 상전이 그 가격으로 사겠다고 하여 판 것이다. 동생 득삼이 증證을 썼다. 여기에서 상전은 유씨집안의 유덕호로 보인다.

### 309. 1848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二十八年戊申四月廿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以要用之致 陶

山先山禁養伏虎嶺下麓

路邊松亭以上 及村東

溪邊合禁之地 價文米三

兩致 依數捧用爲遣 舊

文段 中間遺失 故不得

出給 而以新文一丈 右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是非 以此文券 告

官卜正事

禁養主 自筆 幼學 李士俊[着名]

도광 28년(1848, 현종14) 무신년 4월 20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요용소치로 도산陶山<sup>161</sup> 선산先山の 금양禁養지인 복호등伏虎嶺 하록의 길가 송정松亭 위쪽으로부터 마을 동쪽 개울가의 합금合禁의 땅까지를 쌀 3냥치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구문기舊文記는 중간에 유실되었으므로 내줄 수 없고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시비가 있거든 이 문권文券으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

161 도산(陶山) 구례현 토지면 도산리를 말함.



금양주禁養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이사준李士俊[작명]

1848년 4월 20일에 이사준李士俊이 문화유씨에게 요용소치로 도산陶山 선산先山の 금양禁養지를 쌀 3냥어치로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매도하게 된 금양지는 복호등伏虎嶺 아래 기슭의 노변에 있는 송정 위쪽부터 마을의 동쪽에 있는 개울가까지가 해당된다. 자필로 이사준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10. 1698년 최선백崔善伯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三十七年戊寅三月初四日 崔善伯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身亦移買次以 天皇峙伏  
在 露字畓貳斗落只庫 負數陸卜參束良中 價折正租全捌石  
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  
爲去乎 幸有後日某同生子息等是乃 更謀雜談  
爲去等 將此文記相考告官卞政向事  
畓主 張召史[右寸]  
證人 禹尙京[着名]  
證保 裊莫立[着名]  
筆執 李順起[着名]

강희 37년(1698, 숙종24) 무인년 3월 4일 최선백崔善伯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이매移買하기 위해서 천황치天皇峙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2두락지, 부수로는 6복 3속인 곳을 정조正租 전술 8석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행여 훗날 어떠한 동생同生 자식 등이거나 간에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로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장조이張召史[우촌]

증인證人 : 우상경禹尙京[작명]

증보證保 : 배막립裵莫立[작명]

필집筆執 : 이순기李順起[작명]

1698년 3월 4일에 장조이張召史가 이매하기 위해 최선백崔善伯에게 토지면 천황치天皇峙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2두락지, 부수로는 6복 3속인 곳을 정조正租 전술 8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우상경이 증인을 썼고, 배막립이 보증을 썼으며 이순기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311. 1730년 박임생朴壬生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八年庚戌十一月十七日 朴壬生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妻邊衿得畓 積年耕食爲如可 貧寒所致以

吐旨面大川石朴只員伏在 騰字畓參斗落只 負數三作并八卜五

束庫 價折錢文拾柒兩三錢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本文

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生謀雜談爲去等

此文告官下正事

畓主 朴戒必[着名]

證人 梁福慶[着名]

證保 高貴發[着名]

筆執 前司果 朴來震[着名]

옹정 8년(1730, 영조6) 경술년 11월 17일 박임생朴壬生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처가 쪽에서 깃든한 답畓을 수년 동안 경작하여 먹다가 빈한한 소치로 토지면吐旨面 대천大川 석박지石朴只에 있는 등자답騰字畓 3두락지, 부수로는 3작 아우른 8복 5속인 곳을 전문錢文 17냥 3전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자손과 족속 중 이의가 생긴다면 이 문기(文記)로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答主) : 박계필(朴戒必) [작명]

증인(證人) : 양복경(梁福慶) [작명]

증보(證保) : 고귀발(高貴發) [작명]

필집(筆執) : 전 사과(司果)<sup>162</sup> 박내진(朴來震) [작명]

1730년 11월 17일에 박계필(朴戒必)이 빈한한 소치로 박임생(朴壬生)에게 토지면(吐旨面) 대천(大川) 석박지(石朴只)에 있는 등자답(騰字畓) 3두락지, 3작 8복 5속인 곳을 돈 17냥 3전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양복경이 증인을 썼고, 고귀발이 보증을 하였으며 박내진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12. 1718년 박계필(朴戒必) 화회명문(和會明文)

康熙伍拾柒年戊戌參月初玖日 朴戒必處 明文  
右和會成文爲臥乎事段 矣身亦同姪毀得  
弘秋量畓 伏在吐旨面伏在騰字 負數參作并六卜六束  
庫乙 推尋爲白如可 衆人處有公論爲良和會 若  
干作紙捧上爲白遣 右人處 永永許給爲去乎 後次  
幸有姪孫中 如有雜談爲去等 此文記告官下正事  
畓主 羅承還[左寸]  
證人 鄭時必[着名]  
筆執 朴戒成[着名]

---

<sup>162</sup> 사과(司果) 오위(五衛)의 정6품 관직. 관계상(官階上)으로는 둔용교위(敦勇校尉)·진용교위(鎭勇校尉)라 별칭되었다.

강희 57년(1718, 숙종44) 무술년 3월 9일 박계필朴戒必에게 주는 명문

이 화회문기와會文記<sup>163</sup>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동질同姪이 잘못 얻은 흥추弘秋 양안에 있는 답쑤이 토지면吐旨面に 있는 등자답騰字畓에 있는데, 부수로는 3작병 6복 6속인 곳을 추심推尋<sup>164</sup>하였다가 여러 사람이 공문을 한 것이 있어서 화회和會를 한 후 약간의 작지作紙<sup>165</sup>를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이후에 행여 조카와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나승환羅承還 [좌촌]

증인證人 : 정시필鄭時必 [작명]

필집筆執 : 박계성朴戒成 [작명]

1718년 3월 9일에 나승환羅承還이 박계필朴戒必에게 토지면吐旨面 소재 등자답騰字畓 3작 6복 6속 곳을 약간의 작지作紙만 받고 팔면서 작성한 문건이다. 정시필이 증인을 썼고, 박계성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13. 1695년 장한세張汗世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參拾四年乙亥十一月初四日 張汗世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自己買得耕食爲  
如可 勢不得已 移買<sup>166</sup>次 吐旨面大川員伏在 勝字  
畓參斗落只三作 并卜數柒卜廩良中 價折正租  
全捌石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處 永永放

163 화회문기(和會文記) 화회(和會)에 의해 작성된 재산 분배에 관한 문서를 이르던 말.

164 추심(推尋)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낸.

165 작지(作紙) 종이값 명분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166 원문에는 매(賣)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바꾸었다.

賣爲去乎 後次良中 同生子息是乃 更生雜談爲去  
等 持此文記本文記三丈并 告官下正事

畚主 朴得龍[左寸]

證人 黃己云[左寸]

證保 金芻屎[左寸]

筆執 柳善白[着名]

### 추록

奴士日

汝亦 吐旨面大

川員伏在 騰字

畚參斗落只庫

切有用處 一一准

價 放賣備納向事

壬申正月初五日

上典[着名]

강희 34년(1695, 숙종21) 을해년 11월 4일 장한세張汗世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스스로 매득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형세상 부득이 하여 이매移買하기 위해 토지면吐旨面 대천大川에 있는 등자답騰字畓 3두락지, 3작作 아울러 복수 7복인 곳을 정조正租 전소 8석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이후에 동생同生이나 자식이건 간에 다시 이익을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본문기本文記 3장과 아울러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박득룡朴得龍[좌촌]

증인證人 : 황기운黃己云[좌촌]

증보證保 : 김돌시金芻屎[좌촌]

필집筆執 : 유선백柳善白[작명]

## 추록

노비 사일士日에게

너는 토지면吐旨面 대천大川에 있는 등자답騰字畓 3두락지인 곳을 긴히 필요한 곳이 있으므로 일일이 가격에 의거하고 방매하여 납입할 일이다.

임신년(1692) 1월 5일, 상전上典[작명]

1695년 11월 4일에 박득룡朴得龍이 이매하기 위해 장한세張汗世에게 토지면吐旨面 대천大川에 있는 등자답騰字畓 3두락지, 3작作 7복 곳을 정조正租 전소 8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황기운이 증인을 썼고, 김돌시가 보증을 썼으며 유선백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추록에는 1692년 1월 5일에 상전이 노비 사일에게 등자답 3두락지를 팔아서 올리라는 배자를 기록했다.

## 314. 1680년 김준일金俊一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拾玖年庚申拾月拾肆日 金俊一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要用所致以 自己買得 耕  
食爲如可 勢不得已 吐旨多乃員伏在 騰字畓  
一作肆卜柒束 二作六束 三作壹卜參束 并參斗落只  
庫乙 價折正租全拾石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本文記壹度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次  
良中 同生子孫中 幸有雜談爲去等 將此文記  
告官下正事  
畓主 尹應明[着名]  
證人 羅甲戌[着名]  
證保 朴福龍[左寸]  
筆執 梁德立[着名]

강희 19년(1680, 숙종6) 경신년 10월 14일 김준일<sup>金俊一</sup>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요용소치로 자기매득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형세가 부득이 하여 토지<sup>吐旨</sup> 다내<sup>多乃</sup>에 있는 등자답<sup>騰字畓</sup> 1작<sup>作</sup> 4복 7속, 2작<sup>作</sup> 6속, 3작<sup>作</sup> 1복 3속, 모두 3두락지인 곳을 정조<sup>正租</sup> 전소 10석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sup>本文記</sup> 1도<sup>度</sup>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후차에 동생<sup>同生</sup> 자손 중에 행여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sup>文記</sup>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sup>畓主</sup> : 윤응명<sup>尹應明</sup> [작명]

증인<sup>證人</sup> : 나갑술<sup>羅甲戌</sup> [작명]

증보<sup>證保</sup> : 박복룡<sup>朴福龍</sup> [좌촌]

필집<sup>筆執</sup> : 양덕립<sup>梁德立</sup> [작명]

1680년 10월 14일에 윤응명<sup>尹應明</sup>이 요용소치로 김준일<sup>金俊一</sup>에게 토지<sup>吐旨</sup> 다내에 있는 등자답<sup>騰字畓</sup> 1작<sup>作</sup> 4복 7속, 2작<sup>作</sup> 6속, 3작<sup>作</sup> 1복 3속, 모두 3두락지인 곳을 (총 6복 6속) 정조<sup>正租</sup> 전소 10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나갑술이 증인을 썼고 박복룡이 보증을 썼으며 양덕립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15. 1692년 박득룡<sup>朴得龍</sup> 토지명문<sup>土地明文</sup>

康熙參拾壹壬申正月參拾日 朴得龍處 明文

右明文爲事段 奴矣上典牌字導良 吐旨面所在畓

庫 放賣備納亦爲有等以 勢不得已 大川員伏在 騰字畓參

斗落只 負數三作并柒卜庫良中 價折禾五雌牛壹隻 及

租貳石等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

段 他田畓并付乙仍于 許給不得爲乎旡 向前本文記二文段 許給爲

去乎 後次良中 某人是乃 更生雜談爲去等 持此文記內乙

用良 告官下正事

畚主 奴 士日[左寸]  
證人 金斗垣[着名]  
證保 張二龍[着名]  
筆執 梁德立[着名]

강희 31년(1692, 숙종18) 임신년 1월 30일 박득룡朴得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상전의 배자牌字에 따라 토지면吐旨面 소재 답밭을 방매하여 납입해야 하기에 형세가 부득이하야 대천大川에 있는 등자답騰字畓 3두락지, 부수로 3작作을 아우른 7복인 곳을 5살 먹은 암소 1마리 및 조租 2석 등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이 함께 병기되어 있으므로 허급할 수 없으며, 저번의 본문기本文記 2장을 허급한다. 후차에 어떠한 사람이거나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노비 사일士日 [좌촌]  
증인證人 : 김두원金斗垣 [작명]  
증보證保 : 장이룡張二龍 [작명]  
필집筆執 : 양덕립梁德立 [작명]

1692년 1월 30일 노비 사일士日이 박득룡朴得龍에게 토지면吐旨面 대천大川에 있는 등자답騰字畓 3두락지, 3작作 7복인 곳을 5년 된 암소 1척隻과 조租 2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상전의 명령에 따라 판 것이다. 김두원이 증인을 썼고 장이룡이 보증을 썼으며 양덕립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는 1695년 11월 4일에 박득룡朴得龍이 장한세張汗世에게 토지면吐旨面 대천에 있는 등자답騰字畓 3두락지, 3작作 7복인 곳을 정조正租 전소 8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의 추록에 1692년 1월 5일에 상전이 노비 사일에게 등자답 3두락지를 팔아서 올리라는 배자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316. 1660년 나득룡羅得龍 토지방매명문

順治拾柒年庚子正月拾日…日雲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日…日所致以 祖上傳來耕食  
爲如乎 吐旨里騰字員伏在畚一作四負七束 二作六束  
三作一卜三束 并參斗落只庫乙 價折正木陸拾疋以 論  
價禾三雌牛壹首正租日貳石拾五斗等 依數交易捧  
上爲遣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某子  
息中 如有雜談爲去等 此文記相考告官下正事  
畚主 羅得龍[着名]  
證人 孫興達[着名]  
證保 梁萬貴[左寸]  
筆執 鄭動一[着名]

순치 17년(1660, 현종1) 경자년 1월 10일 ○○운雲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소치로 조상으로부터 전래해온 땅을 경작하여 먹다가 토지吐旨 등자답騰字畚 1작 4부 7속과 2작 6속과 3작 1복 3속, 모두 3두락지 곳을 정목正木 60필과 나이 3살인 암소 1마리 및 정조正租 ○2석 15두 등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후차에 어떤 자식 중에 만일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로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나득룡羅得龍[착명]

증인證人 : 손흥달孫興達[착명]

증보證保 : 양만귀梁萬貴[좌촌]

필집筆執 : 정동일鄭動一[착명]

1660년 1월 10일에 나득룡羅得龍이 ○○운雲에게 토지吐旨 등자답騰字畚 1작 4복 7속, 2작 6속, 3작 1복 3속, 모두 3두락지인 곳(총 6복 6속)을 정목正木 60필과 나이 3살의 암소 1마리 및 정조 2석 15

두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손흥달이 증인을 썼고 양만귀가 보증을 하였으며 정동일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순치 연호는 1644년부터 1661년까지인데 경자년은 1660년이고 왕력은 순치 17년이다.

### 317. 1679년 엄눌금嚴訥叱金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拾捌年己未四月拾壹日 嚴訥叱金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求禮東面吐旨坪芹旨伏在 畚伍斗落只  
妻邊衿得耕食爲如乎 東伍軍以鳥銃措備不得乙仍于 同鳥銃  
柄上余租貳石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同生子息族類等是乃 更生謀計雜談爲去乙等 此  
文記用良 告官下正事  
畚主 武學 鄭軒[着名]  
證人 金漢[着名]  
證保 金永男[着名]  
筆執 定虜衛 洪景祥[着名]

강희 18년(1679, 숙종5) 기미년 4월 11일 엄눌금嚴訥叱金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구례求禮 동면東面 토지坪吐旨坪 근지芹旨 소재 답畚 5두락지를 처가쪽에서 깃들해서 경작하여 먹다가 속오군東伍軍<sup>167</sup>으로서 조총鳥銃<sup>168</sup>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총 〇자루를 올리고 나머지는 조租 2석으로 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동생同生 자식이나 족류들이 만일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무학武學 정헌鄭軒[착명]

증인證人 : 김한金漢[착명]

증보證保 : 김영남金永男[착명]

1679년 4월 11일에 정헌鄭軒이 엄눌금嚴訥叱金에게 구례求禮 동면東面 토지평吐旨坪 근지芹旨 소재 답(로자답露字畓) 5두락지를 조총과 조租 2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속오군은 스스로 조총을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하지 못하여 조총 1자루와 조租 2석에 땅을 팔았다. 김한이 증인을 썼고, 김영남이 보증을 하였으며 홍경상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18. 1679년 김한金漢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十八年己未五月初十日 金漢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妻邊衿得 累年耕食爲如乎 有要用  
所致以 求禮縣東面吐旨伏在 露字畓伍斗落只 卜數貳拾卜庫  
乙 價折雌卜馬壹疋 兒馬壹疋 柒升細布伍疋等 價准則參拾疋  
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永永放賣爲乎矣 當初本文記段 所付  
都文記 故以不許爲去乎 幸有後次同生子息遠近中 生謀雜談爲去等  
將事相考告官下正爲臥乎事

167 속오군(東伍軍) 선조(宣祖) 27년(1594) 왜군에 대항할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에서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의 양반, 양민과 천민을 뽑아 조직한 군대. 조직은 11인이 1대가 되고, 3대(隊)가 1기(旗), 3기가 1초(哨), 5초가 1사, 5사가 1영(營, 약 2천 5백여 명)으로 편제되었고, 각 지방 진관(鎭管) 영장(營將)의 지휘 아래 고을에서 일정 기간 병역과 훈련을 쌓아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병자호란 뒤 속오군은 그 구실이 미약하게 되어 군역 대신 세를 걷는 수미법(收米法)이 적용되었으며, 영조 중엽부터는 양인은 제외되고 천인만으로 채워져서 《속대전(續大典)》에 천예군(賤隸軍)으로 규정되었다.

168 조총(鳥銃) 『국조보감 제46권』 숙종 9년(계해, 1683)에 다음의 글이 있다. 민유중 등이 또 아뢰기를, “호남의 속오군(東伍軍)으로서 스스로 조총(鳥銃)을 구비한 자에게는 복호(復戶) 1결을 주고 조총이 없는 자에게는 50부(負)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술년에 감축할 때에 스스로 조총을 구비한 자에게 50부를 주는 것으로 감하였고 조총이 없는 자는 완전히 삭감하였습니다. 대개 애당초 조총이 희귀했기 때문에 백성을 모집하여 복호를 주어서 스스로 조총을 구비하게 하였던 것인데, 지금은 경외에서 제조하여 숫자가 넉넉하여 나누어 줄 수 있으니 복호를 주는 규례를 일체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상이 따랐다.

169 정로위(定虜衛) 1512년(중종 7)에 설치되어 광해군 무렵까지 존속한 한량계층 중심의 군대.

畚主 嚴訥叱金[左寸]

證人 金永會[着名]

筆執 金聖善[着名]

강희 18년(1679, 숙종5) 기미년 5월 10일 김한金漢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처가쪽에서 깃득하여 수년 동안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구례현求禮縣 동면東面 토지吐旨 소재 로자답露字畓 5두락지, 복수 20복 곳을 값으로 암 복마卜馬 1필과 아머兒馬 1필, 7승포升布 5필 등으로 정하고, 값으로 준하면 30필로 환산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당초 본문기本文記는 도문기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줄 수 없다. 행여 이후에 동생同生 자식이나 원근 사람 중에 만약 이의를 제기한다면 일을 상고하여 관청에 고하고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엄눌금嚴訥叱金[좌촌]

증인證人 : 김영회金永會[작명]

필집筆執 : 김성선金聖善[작명]

1679년 5월 10일에 엄눌금嚴訥叱金이 요용소치로 김한金漢에게 토지면 소재 로자답露字畓 5두락지 20복인 곳을 암 복마卜馬 1필과 아머兒馬 1필, 7승포 5필 등으로 가격을 정하고, 값에 준하여 환산하면 30필인 것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영회가 증인을 썼고 김성선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 1679년 4월 11일에 정헌鄭軒이 엄눌금嚴訥叱金에게 구례求禮 동면東面 토지평吐旨坪의 로자답露字畓 5두락지를 조총과 나락 2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로 볼 때 엄눌금은 4월 11일에 위 땅을 매입하여 한 달 후에 조총을 준비하기 위해 방매한 듯하다.

### 319. 1682년 승僧 재현載玄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貳拾壹年癸亥貳月初參日 僧 載玄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自己<sup>170</sup>買得 耕食爲如可  
 要用所用致以 吐旨面伏在 露字畝伍斗落只 卜數  
 貳拾卜壹束庫乙 價折正租全拾伍石 依數交易  
 捧上爲遣 本文記貳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  
 此良中 子孫及遠族中 雜談爲去乙等 將此文記用良 告  
 官下正事  
 畝主 嘉善大夫 金漢[着名]  
 證人 安日萬[着名]  
 證保 金厚男[左寸]  
 筆執 異姓六寸 吳繼興[着名]

강희 21년(1682, 숙종8) 계해년 2월 3일 승僧 재현載玄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 서 토지면吐旨面에 있는 로자답露字畝 5두락지, 복수로 20복 1속인 곳을 정조正租 전소 15석으로 가 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2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자손과 먼 친족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가선대부嘉善大夫 김한金漢[착명]

증인證人 : 안일만安日萬[착명]

증보證保 : 김후남金厚男[좌촌]

필집筆執 : 이성異姓 육촌六寸 오계흥吳繼興[착명]

1682년 2월 3일에 김한金漢이 요용소치로 승僧 재현載玄에게 토지면吐旨面 소재 로자답露字畝 5두 락지, 복수로 20복 1속인 곳을 정조正租 전소 15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한은 1679년 5 월 10일에 엄눌금에게 매입하였는데 3년이 못 되어 되팔고 있다. 안일만이 증인을 썼고 증보는 김후 남이 썼으며, 육촌 오계흥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170 원문에는 기(記)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바꾸었다.

## 320. 1699년 김세건金世建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卅八年己卯參月初六日 金世建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自己<sup>171</sup>買得耕食爲白如可  
貧寒所致以 矣家夫亦 戊寅二月日 舟師正兵身役 累年  
對答爲白如可 忽得重病乙仍于 身死後 物故修定人情  
出處無路<sup>172</sup>爲白乎等乙用良 勢不得已 家夫買得爲在 吐旨  
面伏在 露字畝伍斗落只 卜數貳拾卜壹束 價折正租  
貳拾石以 相約衆所公定交易 依捧上爲遣 本文記參丈并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此良中 子女息同生姪子  
及五六寸族類等中 生謀談爲去乙等 將次文記并以內兒叱  
如 告官重治卜正向事  
畝主 故 金大允 妻 崔召吏[右寸]  
證人 妻父 崔汝龍[左寸]  
證保 姜俊弼[着名]  
筆執 老人 權朋[着名]

강희 38년(1699, 숙종25) 기묘년 3월 6일 김세건金世建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빈한한 소치로 나의 남편이 무인년(1698) 2월에 주사舟師<sup>173</sup>의 정병正兵으로 신역身役<sup>174</sup>을 수년 동안 담당하다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는데, 남편이 죽은 후에 물고채物故價를 수정할 때 드는 인정조人情條를 마련해낼 길이 없기에 형세가 부득이 하여 남편이 매득한 토지면吐旨面 소재 로자답露字畝 5두락지, 복수로는 20복 1속인 곳을 정조正租 전소 20석으로 서로 공식적으로 정하여 바꾸기로 약속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

171 원문에는 기(起)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바꾸었다.

172 원문에는 로(露)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바꾸었다.

173 주사(舟師) 조선 시대의 수군, 바다에서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던 군대.

174 신역(身役) 몸으로 치르는 노역(勞役).

本文記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해한다. 훗날에 자녀와 동생同生 조카나 5촌 6촌 족속 중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문기文記를 첨부하고 관청에 고하여 엄하게 다스리고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고故 김대운金大允 처妻 최조이崔召吏[우촌]

증인證人 : 처부妻父 최여룡崔汝龍[좌촌]

증보證保 : 강준필姜俊弼[작명]

필집筆執 : 노인老人 권봉權朋[작명]

1699년 3월 6일에 고故 김대운金大允의 처妻 최조이崔召吏가 김세건金世建에게 토지면吐旨面 소재 로자답露字畵 5두락지, 20복 1속 곳을 정조正租 전소 20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최조이의 남편 김대운은 수군에 소속된 정병으로 노역을 하다 증병을 얻어 죽었다. 이에 물고채를 내기 위해 땅을 판다고 했다. 처부 최여룡이 증인을 썼고 강준필이 보증을 썼으며 권봉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토지면의 로자답露字畵 5두락지의 매매과정을 구문기를 통해서 보면, 1679년 4월 11일에 정헌鄭軒이 엄눌금嚴訥叱金에게 5두락지를 조총과 나락 2석에 팔았고, 1679년 5월 10일에 엄눌금嚴訥叱金이 김한金漢에게 로자답露字畵 5두락지, 20복인 곳을 복마卜馬 1필과 아마兒馬 1필 및 7승포 5필 등을 받고 팔았으며, 1682년 2월 3일에는 김한金漢이 승僧 재현載玄에게 같은 곳을 정조正租 전소 15석에 팔았다. 그리고 1699년 3월 6일에 고故 김대운金大允의 처妻가 김세건金世建에게 정조 전 20석에 판 것을 알 수 있다.

## 321. 1727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五年丁未十二月二十日 幼學 李源碩前 明文

右明文字段 要用所致以 矣衿得 累

年耕食爲如可 勢不得已 吐旨面柳

木亭員伏在 出字畵柒斗落只 負

數二十三卜七束庫乙 價折錢文六十兩以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本五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次子孫中 幸有

雜談爲去等 此文告官卞正事

畚主 前<sup>175</sup>司果 金時偉[着名]

筆執 同生兄 金時繼[着名]

용정 5년(1727, 영조3) 정미년 12월 20일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내가 깃들하여 수년 동안 경작하여 먹다가 형세가 부득이 하여 토지면吐旨面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출자답出字畓 7두락지, 복수로는 23북 7속인 곳을 전문錢文 6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5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후에 자손 중에 행여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전 사과司果 김시위金時偉[착명]

필집筆執 : 동생同生 형兄 김시계金時繼[착명]

1727년 12월 20일에 김시위金時偉가 요용소치로 이원석李源碩에게 토지면吐旨面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출자답出字畓 7두락지, 부수로는 23북 7속인 곳을 돈 6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형 김시계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구례 토지면 유목정에 있는 출자답出字畓 구문기 5장을 보면, 1651년 2월에 형 정계생鄭戒生이 동생 정말룡鄭泰龍에게 출자답 6두락지 19북 7속 곳을 정목면正木綿 3필과 실상목實常木 40필, 정조正租 전 2석에 팔았고, 1654년 1월 26일에 정계생鄭戒生이 희정希淨에게 출자답 6두락지 19부 7속 곳을 정목正木 3동同 반에 팔았으며, 1661년 6월 29일에 김경길金京吉, 희정)이 승僧 천묵天默에게 정목正木 1동同 반에 팔았고, 1672년 4월 25일에 승僧 천묵天默이 승僧 경륜敬倫에게 출자답 10두락지 18부 9속 곳을 정목正木 4동同 25필에 팔았으며, 1679년 3월 24일에 승僧 경륜敬倫이 김상일金尙日에게 출자답 6두락지 19부 7속 곳을 정조正租 전 19석과 정목면 2필에 팔았다. 이전까지는 6두락지, 부수로는 19북 7속이었는데, 7두락지 23북 7속으로 늘었다.

---

175 원문에는 전(全)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 322. 1679년 김상일金尙日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拾捌年己未參月貳拾肆日 金尙日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身自己買得 耕食爲如可  
移買次以 勢不得已 求禮吐旨面柳木亭員伏在 出  
字畚陸斗落只 負數拾玖負柒束庫乙 價折正租全拾  
玖石 及正木綿貳疋 以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  
處 本文記肆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謀同生及上佐等是乃 生謀雜談爲去等 將此文告  
官卞正事  
畚主 僧 敬倫[着名]  
證人 梁德立[着名]  
證保 李貴玄[着名]  
筆執 尹應命[着名]

강희 18년(1679, 숙종5) 기미년 3월 24일 김상일金尙日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수년 동안 경작하여 먹다가 이매移買하기 위해 형세가 부득이 하여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출자답出字畚 6두락지, 부수로는 19부 7속인 곳을 정조正租 전 19석과 정목면 2필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4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후에 어떠한 동생同生이나 상좌上佐 등이건 간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승僧 경륜敬倫[작명]

증인證人 : 양덕립梁德立[작명]

증보證保 : 이귀현李貴玄[작명]

필집筆執 : 윤응명尹應命[작명]

1679년 3월 24일에 승僧 경륜敬倫이 이매하기 위해 김상일金尙日에게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유목

정柳木亭에 있는 출자답出字畓 6두락지, 부수로는 19부 7속인 곳을 정조正租 전 19석과 정목면 2필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양덕립이 증인을 썼고 이귀현이 보증을 하였으며 윤응명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본문기 4장을 첨부하였다.

### 323. 1672년 승僧 경륜敬輪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拾壹年壬子肆月貳拾伍日 僧 敬輪處 明文  
右明文爲事段 矣身自己買得耕食爲如可 要  
用所致以 求禮吐旨里柳木亭坪員伏在 出字畓  
拾斗落只 負數拾捌負玖束庫乙 價折  
正木肆同貳拾伍疋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  
處 本文記三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族類中 雜談隅有去等 將此文記相考告官辦  
正事  
畓主 僧 天默[着名]  
證人 余尙慶[着名]  
證保 僧 戒信[着名]  
筆 前司果 金潤敏[着名]

강희 11년(1672, 현종13) 임자년 4월 25일 승僧 경륜敬輪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구례求禮 토지리吐旨里 유목정평柳木亭坪에 있는 출자답出字畓 10두락지, 부수 18부 9속 곳을 정목正木 4동同 25필疋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3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매매한다. 이후에 족류 중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승僧 천묵天默[작명]

증인證人 : 여상경余尙慶[작명]

증보證保 : 승僧 계신戒信[작명]

필집筆執 : 전 사과司果 김윤민金潤敏[작명]

1672년 4월 25일에 승僧 천묵天默이 요용소치로 승僧 경륜敬輪에게 구례求禮 토지면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출자답出字畓 10두락지, 부수로는 18부 9속인 곳을 정목正木 4동同 25필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여상경이 증인을 썼고 승려 계신이 보증을 하였으며 김윤민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본문기 3장을 첨부하였다.

## 324. 1661년 승僧 천묵天默 토지명문土地明文

順治拾柒年辛丑陸月貳拾玖日 僧 天默處 明文  
右明文爲馭乎事段 矣身亦貧寒所致以 田稅積  
納不得仍于 自己買得耕食爲如可 求禮地吐旨坪柳木亭  
員伏在 出字畓陸斗落只 拾玖負柒束庫乙 正木壹同  
半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同僧處 永永放賣爲去乎 後  
次矣身及同生子息族類等是乃 生謀雜談 則此文記相  
考告官下正爲乎事  
畓主 金京吉[左寸]  
證人 僧 勝哲[著名]  
證保 僧 淸遠[著名]  
筆執 僧 勝普[著名]

순치 17년(1661, 현종2) 신축년 6월 29일 승僧 천묵天默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가난한 까닭으로 전세田稅를 오랫동안 납부할 수 없어

서 자기매득해서 경작해오던 구례求禮 땅 토지吐旨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출자답出字畓 6두락지, 19부 7속 곳을 정목正木 1동同 반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승僧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이후에 나의 동생同生 자식 족류 등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김경길金京吉[좌촌]

증인證人 : 승僧 승철勝哲[작명]

증보證保 : 승僧 청원淸遠[작명]

필집筆執 : 승僧 승보勝普[작명]

1661년 6월 29일에 김경길金京吉이 빈한소치로 승僧 천묵天默에게 구례求禮 토지吐旨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출자답出字畓 6두락지, 부수로는 19부 7속인 곳을 정목正木 1동同 반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승려 승철이 증인을 썼고 청원이 보증을 하였으며 승보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325. 1654년 희정希淨 토지명문土地明文

順治十一年甲午正月貳拾陸日 希淨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貧寒所致以 矣兄處買得耕

食爲如可 柳木亭員伏在 出字畓陸斗落只 負數拾

玖負柒束庫乙 價折正木三同半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同生子息族類等

雜談爲去等 此文記告官下正事

畓主 自筆執 鄭戒生[着名]

證人 金應金[着名]

證保 朴春夫[着名]

순치 21년(1654, 효종5) 갑오년 1월 26일 희정希淨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가난한 까닭으로 나의 형에게 매득하여 경작해오던 유목정柳木亭 소재 출자답出字畓 6두락지, 부수 19부 7속 곳을 정목正木 3동同 반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이후에 동생同生 자식 족류 등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집自筆執 정계생鄭戒生[착명]

증인證人 : 김응금金應金[착명]

증보證保 : 박춘부朴春夫[착명]

1654년 1월 26일에 정계생鄭戒生이 빈한소치로 희정希淨에게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출자답出字畓 6두락지, 부수로는 19부 7속인 곳을 정목正木 3동同 반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응금이 증인을 썼고, 박춘부가 보증을 썼으며 정계생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326. 1651년 정말룡鄭耆龍 토지명문土地明文

順治八年辛卯二月拾參日 同生弟 鄭耆龍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貧寒所致以 勢不

得已 祖上傳來 衿得耕食爲白如可 求禮吐旨面

柳木亭員伏在 出字畓陸斗落只 負數拾九卜

柒束庫乙 價折正木綿參疋 及實常木四十疋

正租全貳石等以 依數交易捧上爲白遣 汝矣

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此良中 子孫族類中

更生某計雜談爲去等 次文記告官下正事

畓主 同生兄 鄭戒生[左寸]

證人 梁厚生[着名]

證保 朴春夫[着名]

筆執 姜興立[着名]

순치 21년(1651, 효종2) 신묘년 2월 13일 동생제(同生弟) 정말룡(鄭耑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가난한 까닭으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조상에게 전래해 온 것을 깃득받아 경작하여 먹다가 구례(求禮) 토지면(吐旨面) 유목정(柳木亭) 소재 출자답(出字畓) 6두락지, 부수 19복 7속 곳을 정목면(正木綿) 3필과 실상목(實常木) 40필, 정조(正租) 전 2석 등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너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이후에 자손이나 족류 중 다시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동생형(同生兄) 정계생(鄭戒生) [좌촌]

증인(證人) : 양후생(梁厚生) [작명]

증보(證保) : 박춘부(朴春夫) [작명]

필집(筆執) : 강홍립(姜興立) [작명]

1651년 2월 13일에 형 정계생(鄭戒生)이 빈한소치로 동생 정말룡(鄭耑龍)에게 구례(求禮) 토지면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출자답(出字畓) 6두락지, 부수로는 19복 7속인 곳을 정목면(正木綿) 3필과 실상목(實常木) 40 필, 정조(正租) 전 2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양후생이 증인을 썼고 박춘부가 보증을 하였으며 강홍립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 보면, 유목정에 있는 출자답의 소유권 이동 경로는 정계생(鄭戒生) → 정말룡(鄭耑龍)·정계생(鄭戒生) → 희정(希淨)·김경길(金京吉) → 천묵(天默) → 경륜(敬輪) → 김상일(金尙日)·김시위(金時偉) → 이원석(李源碩)임을 알 수 있다. 김상일까지는 땅의 크기는 6두락지, 부수로는 19복 7속이었는데, 김시위가 이원석에게 매도할 때는 7두락지 23복 7속으로 늘었다.

### 327. 1714년 승(僧) 낭연(郎蓮)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伍年甲午貳月貳拾玖日 僧 郎蓮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父自己<sup>176</sup>買得是在 奈字畓肆斗

落只 負數貳作并拾參負壹束 順方帳庫乙 累年耕食爲如  
 可 上年癸巳年分 意<sup>177</sup>外矣外孫宋者介未 官作財主 平  
 均各各衿中是在 同畝肆斗落只內下邊 貳夜貳斗落只 矣衿  
 在緣爲白有與乎 今年大無之凶年 許多食口岔不喻 年  
 滿奉母之下 生道爲難乙仍于 勢不得已 內畝貳斗落只  
 負數陸陸束庫乙 右人處 價折錢文參拾兩 依數交  
 易捧上爲遣 本文記及決立案等段 他田畝并付是去乎  
 不得傳給爲去乎 日後良中 若有雜談爲去等 將此文記  
 并以告官下正事  
 畝主 鄭乞伊[着名]  
 證人 金順亨[着名]  
 證保 孫以華[着名]  
 筆執 鄭時泰[着名]

강희 55년(1714, 숙종40) 갑오년 2월 29일 승僧 낭연郎蓮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부친이 자기매득한 내자답奈字畝 4두락지, 부수로 2작  
 병 13부 1속, 순방順方 양안에 있는 곳을 수년 동안 경작하여 먹다가 작년 계사년(1713) 때, 뜻밖에도  
 나의 외손 송자개미宋者介未가 관작재주官作財主<sup>178</sup>로 평균 각각의 몫이 있게 되어 위의 답 4두락지  
 내 하변下邊 2배미夜味 2두락지가 내 몫의 가장자리에 있게 되었다. 금년에 전에 없던 큰 흉년이 들어  
 많은 식구들 뿐만 아니라 연세가 높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처지에 생계가 곤란하므로 형세가 부득이  
 하여 그 답畝 2두락지, 부수 6부 6속인 곳을 위 사람에게 전문錢文 30냥으로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승소판결 입안 등은 다른 전답에 병부并付되어 있으므로 전해 줄 수 없다. 훗날에 만  
 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첨부해서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정걸이鄭乞伊[작명]

증인證人 : 김순형金順亨[작명]

176 원문에는 기(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177 원문에는 의(矣)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178 관작재주(官作財主) 유언이나 재산 분배를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의 재산을 관청에서 자손에게 공정히 분배하여 주는 일을 이르던 말.

증보證保 : 손이화孫以華[작명]

필집筆執 : 정시대鄭時泰[작명]

1714년 2월 29일에 정걸이鄭乞伊가 승僧 낭연郎蓮에게 순방順方 양안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하변 2두락지 6부 6속 곳을 돈 3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1713년 흥년이 들어 관작재주로 깃득한 내자답 4두락지 중 하변 2두락지를 부모형제들의 생계가 곤란하여 팔았다. 김순형이 증인을 썼고 손이화가 보증을 썼으며 정시태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328. 1736년 김중천金重天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元年丙辰十二月十六日 金重天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亦自己買得耕食爲如可 要  
用所致 不得 本面奈字畓四斗落只 負數貳  
作并十三卜九束庫 價折錢文廿五兩 捧上爲  
遣 右人前 永永放賣爲有矣 本文記并放  
賣爲去乎 此後同生族屬中 雜談是去等 此文記  
告官下正事  
畓主 文德昌[着名]  
證人 文貴星  
證保 僧 自安  
筆執 徐致載[着名]

건륭 1년(1736, 영조12) 병진년 12월 16일 김중천金重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해서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부득이 본면의 내자답奈字畓 4두락지, 부수로는 2작병 13복 9속 곳을 전문錢文 25냥으로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해한다. 본문기本文記는 첨부하여 방해한다. 이후에 동생同生 족속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문덕창文德昌[작명]

증인證人 : 문귀성文貴星

증보證保 : 승僧 자안自安

필집筆執 : 서치재徐致載[작명]

1736년 12월 16일에 문덕창文德昌이 요용소치로 김중천金重天에게 토지면 내자답奈字畵 4두락지, 2작 13복 9속인 곳을 돈 2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문귀성이 증인을 썼고 승려 자안이 보증을 썼으며 서치재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 보면, 1714년 2월 29일에 정걸이鄭乞伊가 승려 낭연郎蓮에게 내자답奈字畵 하변 2두락지 6부 6속 곳을 돈 30냥에 팔았고, 1716년 1월 27일에 홍태진洪泰眞이 승려 승묵勝默에게 같은 곳을 돈 27냥에 팔았다. 그런데 1736년에는 4두락지 13복 9속을 25냥에 팔았다. 가격에서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 329. 1716년 승僧 승묵勝默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伍年丙申正月貳拾柒日 僧勝默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身之妻父處 官作財主衿分畵 移買次以 不得已 奈字

肆斗落只內上邊 貳斗落只庫 負數陸卜陸束庫畵 價折錢

文貳拾柒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永永放賣

爲去乎 本文記及立案 背後看周爲白遣 不得許與爲去乎

後此同生子息族類中 雜談爲去等 將此文以告官卜正事

畵主 洪泰眞[左寸]

證人 四寸甥 鄭斗必[左寸]

證保 釋玉梅[着名]

筆執 釋湛淨[着名]

강희 55년(1716, 숙종42) 병신년 1월 27일 승僧 승묵勝默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처부에게 관작재주官作財主로 깃득한 답畱을 이매移買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내자奈字 4두락지 내 상변上變 2두락지 곳, 부수 6복 6속 곳 답畱을 전문錢文 27냥으로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本文記와 입안立案은 뒷면에 효주하기로 하고 주지 않는다. 이후에 동생同生 자식 족류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畱主 : 홍태진洪泰眞 [좌촌]

증인證人 : 사촌남四寸甥 정두필鄭斗必 [좌촌]

증보證保 : 석옥매釋玉梅 [작명]

필집筆執 : 석담정釋湛淨 [작명]

1716년 1월 27일에 홍태진洪泰眞이 이매하기 위해 승僧 승묵勝默에게 내자답奈字畱 상변 2두락지, 부수로는 6복 6속인 곳을 돈 27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사촌 처남 정두필이 증인을 썼고, 옥매가 보증을 하였으며 담정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30. 1725년 승僧 성기性機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參年乙巳十二月貳拾壹日 僧 性機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僧矣師翁亦 至誠孝養 瓮不喻 結卜一結 每年無弊對答有功是在 他無報恩是如乎 永永別給衿得耕食爲有如有可要用所致以 勢不得已 吐旨面九萬員伏在 生字丁畝玖斗落只 卜數兩作并貳拾伍卜柒束庫 己亥量 矣俗名金文福以懸錄庫乙 價折錢文玖拾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上佐僧及族屬之中 如有相爭是非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辭議內乙用良 告官下正爲乎事 畱主 嘉善大夫 釋明善[着名]

證人 同姓 姪子 金聖之[着名]

證保 前判事 僧 勝元[着名]

筆執 嘉善大夫 僧 勝一[着名]

응정 3년(1725, 영조1) 을사년 12월 21일 승僧 성기性機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사옹師翁이 지극한 정성으로 효도하고 봉양할 뿐만 아니라 결복結卜 1결結을 매년 별탈없이 거행하여 공이 있었는데 달리 은혜를 갚지 못함에도 영구히 별 급別給으로 깃들해서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형세가 부득이하여 토지면吐旨面 구만九萬<sup>179</sup>에 있는 생자정답生字丁畵 9두락지, 복수로는 2작병 25복 7속인 곳, 기해己亥 양안에 나의 속명인 김문복金文福으로 현록懸錄(장부에 올려 적은 곳)된 곳을 전문錢文 90냥으로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상좌승上座僧이나 족속 중에 만일 서로 다투어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다면 이 문기文記의 내용을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가선대부嘉善大夫 석명선釋明善[착명]

증인證人 : 동성同姓 조카 김성지金聖之[착명]

증보證保 : 전판사前判事 승僧 승원勝元[착명]

필집筆執 : 가선대부嘉善大夫 승僧 승일勝一[착명]

1725년 12월 21일에 석명선釋明善이 요용소치로 승려 성기性機에게 토지면吐旨面 구만九萬에 있는 생자生字답 9두락지 25복 7속인 곳을 돈 9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조카 김성지가 증인을 썼고 승려 승원이 보증을 썼으며 승려 승일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179 현재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 구만 마을에 해당된다.

### 331. 1679년 승僧 여인如印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拾捌年己未陸月拾伍日 僧 如印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畚伏在於九萬員 而遠坪往來耕食  
爲難之際 右人畚 在於矣家後是去乙 兩相論議 矣畚  
玖斗落只 卜數二作并貳拾伍 卜柒束庫 與同僧高山餘  
字畚柒斗落只 卜數二作并貳拾肆 卜壹束庫果 本  
文記并以 永永相換爲去等 後次同生子孫及族屬中  
更謀雜談爲去等 此文記告官卞正事  
畚主 孫壽仁[着名]  
證人 姜儀善[着名]  
證保 孫碩[着名]  
筆執 朴承位[着名]

강희 18년(1679, 숙종5) 기미년 6월 15일 승僧 여인如印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답畚이 구만九萬에 있는데, 멀리 있는 땅에 왕래하며 지어먹기가 어려울 즈음에 위 사람의 논이 나의 집 뒤에 있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논의하여 나의 답畚 9두락지, 복수로는 2작 아울러 25복 7속인 곳과 위 승려의 고산 여자답餘字畚 7두락지, 복수로는 2작 아울러 24복 1속인 곳을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서로 교환한다. 이후에 동생同生 자손이나 족속 중에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손수인孫壽仁[작명]

증인證人 : 강의선姜儀善[작명]

증보證保 : 손석孫碩[작명]

필집筆執 : 박승위朴承位[작명]

1679년 6월 15일에 손수인孫壽仁이 승僧 여인如印과 상의하여 토지면 구만九萬에 있는답畚 9두락지 2작 25복 7속인 곳을 고산의 여자답餘字畚 7두락지 2작 24복 1속인 곳과 서로 교환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구만에 있는 9두락지는 생자답이다. 강의선이 증인을 썼고 손석이 보증을 썼으며, 박승위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332. 1665년 손수인孫壽仁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年乙巳十一月初七日 孫壽仁處 明文

右明文事段 女矣家夫生時 三倉還上 多有受食後 家夫今年分身  
死 他無子息 女矣身段豆 年深病人長臥房中 同穀物備納之數 正租  
貳拾石陸斗肆升四合 軍糧三色 并陸石壹斗七升七合 太參石一斗貳合 國屯  
太重亦 女矣身及首一族等囚次知嚴刑督促 他條備納未由乙仍于  
勢不得已 家夫衿得執持耕食爲在 生字畝拾參斗落只內 上邊肆斗  
落只段 家夫生時 既已放賣爲有在果 其次下邊畝十八卜三束 二作七卜四束 玖  
斗落只 及松亭子珍字畝十二卜八束 四斗落只 兩庫并拾參斗落只庫  
良中 同穀物等盡計 一一捧上爲遣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家夫邊遠近族屬及子息中 雜談爲去等 將此辭緣告官依法  
卜正事

畝主 故 李莫同 妻 士郎介[左寸]

女息 貴陽[左寸]

證人 異姓四寸兄 孫應旻[着名]

證保 徐德立

筆執 五寸叔 李弘益[着名]

강희 4년(1665, 현종6) 을사년 11월 7일 손수인孫壽仁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삼창三倉의 환자還上를 많이 받아 먹은 후인데, 남편이 올해 사망하였고 달리 자식도 없다. 나의 경우는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 오랫동안 방안에 누워있던 중에 위의 곡물을 갖추어 납부해야 할 수數가 정조正租가 20석 6두 4승 4홉이

고, 근량軍糧 3색이 모두 6석 1두 7승 7홉이며, 태수가 3석 1두 2홉이다. 나라의 둔전법이 너무 중하여, 나와 집안 우두머리 등을 가두고 차지次知<sup>180</sup>를 엄형하라고 독촉함에 다른 조목은 비남할 방법이 없다. 형세가 부득이 하여 남편이 깃들하여 집지執持하고 경작하여 먹은 생자답生字畓 13두락지 내에 상변 4두락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미 방매하였고, 그 다음 하변下邊 답畓 18복 3속과 2작 7복 4속, 9두락지인 곳과 송정자松亭子의 진자답珍字畓 12복 8속, 4두락지인 두 곳 합 13두락지인 곳을 위의 곡물값으로 계산을 하여 일일이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남편 쪽의 원근 족속이나 자식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사연을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법에 따라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고故 이막동李莫同의 처妻 사랑개士郎介[우촌]

여식女息 귀양貴陽[수촌]

증인證人 : 이성異姓 사촌형四寸兄 손응민孫應旻[작명]

증보證保 : 서덕립徐德立[작명]

필집筆執 : 오촌숙五寸叔 이홍익李弘益[작명]

1665년 11월 7일에 이막동李莫同의 처妻 사랑개士郎介와 딸 귀양貴陽이 환자 등을 값을 길이 없어서 손수인孫壽仁에게 생자답生字畓 하변下邊 18복 3속과 2작 7복 4속인 곳, 총 25복 7속 9두락지인 곳과 송정자松亭子 진자답珍字畓 12복 8속 4두락지인 곳, 합 13두락지인 곳을 환자의 곡식 값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사촌 손응민이 증인을 썼고 서덕립이 보증을 하였으며 오촌 숙부 이홍익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33. 1709년 연곡사燕谷寺 대중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捌年己丑正月十六日 燕谷寺衆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僧矣身化主建立之中施得畓是如可 役

糧所欠乙仍于 不得已 吐旨面九亭子員伏在 奈字畓柒斗落只

180 차지(次知) 주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던 하인,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대가를 받고 형벌을 받던 사람.

卜數貳拾負肆束庫果 又於平地員伏在 師字畚肆作并  
卜數拾貳卜肆束庫并 價折正租全肆拾伍石以 依數交  
易捧上爲遣 右寺衆處 本文記各五丈式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某人是乃推尋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  
正事

施得畚主 化主 坦悟[着名]

證人 成造別座 勤守

證保 通政大夫 僧 德弘

筆執 僧 太玄[着名]

강희 48년(1709, 숙종35) 기축년 1월 16일 연곡사燕谷寺 대중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화주승이 되어 절을 건립하던 중에 보시로 답궂을 얻었는데, 일을 하는 데 드는 양식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토지면吐旨面 구정자九亭子 에 있는 내자답奈字畚 7두락지, 복수로 20부 4속인 곳과 평지平地에 있는 사자답師字畚 4작 병 복수로 12복 4속인 곳을 함께 정조正租 전 45석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절의 대중에게 본문기本文記 5장씩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해한다. 훗날에 어떠한 사람이거나 추심하는 폐단이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시득답주施得畚主 : 화주化主<sup>181</sup> 탄오坦悟[착명]

증인證人 : 성조별좌成造別座<sup>182</sup> 근수勤守

증보證保 : 통정대부通政大夫 승僧 덕홍德弘[착명]

필집筆執 : 승僧 태현太玄[착명]

1709년 1월 16일에 화주승 탄오坦悟가 불사를 하는 데 양식이 부족하여 연곡사燕谷寺 대중에게 토지면吐旨面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畚 7두락지, 20부 4속 곳과 평지원平地員 소재 사자답師字

**181 화주(化主)** 화주승(化主僧). 거리에 나와서 여러 사람에게 시주를 받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법연(法緣)을 맺게 하며 절에서 쓰는 비용을 구해 들이는 승려를 말한다.

**182 성조별좌(成造別座)** 불당 건물을 짓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좌(別座)는 전좌(典座)라고도 하는데, 부처님께나 스님께 공양할 반찬과 음식을 만드는 소임을 뜻한다.

畚 4작 12복 4속 곳 모두를 정조正租 전 45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성조별좌 근수가 증인을 썼고 승려 덕홍이 보증을 썼으며 승려 태현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34. 1704년 승僧 처익處益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四十四年甲申元月十七日 長兄 僧 處益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長三寸九十之餘 生前佛  
事付所用之物 不足乙仍于 正租全廿五石價 同畚買  
得耕食爲如可 要用所致以 吐旨面伏在九亭子員  
伏在 奈字畚六斗落只 加畚一斗落只 負數二十卜四束庫并以 價折  
錢文百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同僧處 本文  
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某同生上佐子孫中 生謀雜  
談爲去乙等 此文記內以用 告官卞正事  
畚主 金必弘[着名]  
證人 僧 法隣[着名]  
證保 僧 普明[着名]  
筆執 僧 道元[着名]

강희 43년(1704, 숙종30)<sup>183</sup> 갑신년 1월 17일 장형長兄 승僧 처익處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큰 삼촌이 90여 세로 생전에 불사에 필요한 물건을 부쳤는데도 부족하므로 정조正租 전소 25석과 가격이 같은 답을 매득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토지면吐旨面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畚 6두락지와 가답加畚 1두락지, 부수로는 20복 4속인 곳을 아울러서 전문錢文 10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승僧에게 본문기

183 강희 44년(1705, 숙종31)은 을유년이고, 갑신년은 강희 43년(1704, 숙종30)이어서 갑신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어떠한 동생(同生)이나 상좌 및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答主) : 김필홍(金必弘) [작명]

증인(證人) : 승(僧) 법린(法隣) [작명]

증보(證保) : 승(僧) 보명(普明) [작명]

필집(筆執) : 승(僧) 도원(道元) [작명]

1704년 1월 17일에 김필홍(金必弘)이 요용소치(郟用所止)로 장형(張형) 승(僧) 처익(處益)에게 토지면(吐旨面)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6두락지와 가답(加畓) 1두락지, 부수로 20복 4속 곳을 돈 10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승려 법린이 증인을 썼고, 보명이 보증을 하였으며 도원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는 1703년 2월 27일에 처익(處益)이 제(弟) 김필홍(金必弘)에게 토지면(吐旨面) 산정(山亭) 아래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5두락지와 가답(加畓) 2두락지를 불공(佛公)에 입봉(入奉)하기 위해 정조(正租) 50석으로 가격을 정하여 허급(許給)하면서 작성한 문서가 있다. 사제(沙提) 법린이 증인을 썼고 처익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 있다. 즉 처익이 동생 김필홍에게 정조 50석을 받고 허급하였고, 김필홍이 다시 연곡사(延곡寺)에 돈 100냥에 판 것이다.

### 334-1. 1708년 화주승(化主僧) 탄오(坦悟) 허급명문(許給明文)

四十七年戊子十二月拾玖日 僧堂化主僧 坦悟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僧矣身 此僧堂積年居生爲白如可 寺運萬萬不吉 故去九月分 忽然失火燒燼後 例

當化主成建是乎矣 年當七十余歲 耳聾眼暗 瓮不喻 飢饉凶歲 變通無路 乙仍于 願堂兼施主次 以自己買得畓 貳拾伍斗五升 落只 卜數五十九 卜五束 肆庫只等 右化主處 本文記 并以 永永許給爲去乎 日後

良中 同生及姪子與僧門中 如有雜談之弊 是去乙等 將此文記 告官 卞正爲乎事

一 吐旨面沙灘員伏在 巨字畓參斗落只 卜數七 卜七束 本文記貳丈庫 許給爲齊

二 吐旨面九亭子員伏在 奈字畓貳作并柒斗落只 卜數貳拾 卜肆束 本文記五丈庫 許給爲齊

三 良田面道里山員伏在 皇字畝拾斗五升落只 卜數拾玖卜 本文記貳丈 決立案貳丈庫 許給爲齊

四 燕谷洞平地員伏在 師字畝肆作并伍斗落只 卜數拾貳卜肆束 本文記五丈庫 許給爲齊

元畝主 僧 處益[着名]

證人 成造別座 僧 勤守[着名]

證保 師弟 僧 法隣[着名]

公證參 通政 僧 德弘[着名]

筆執 僧 勝一[着名]

강희 47년(1708, 숙종34) 무자년 12월 19일 승당僧堂<sup>184</sup>의 화주승化主僧 탄오坦悟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이 승당僧堂에서 수년간 거처하며 살았는데, 절의 운이 매우 불길하여 지난 9월쯤에 홀연히 불이 나 모두 소진되었다. 후에 관례대로 마땅히 화주를 해서 건립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70여 세가 되어 귀는 먹고 눈은 보이질 않을 뿐만 아니라 기근과 흉년으로 변동할 길이 없으므로, 원당願堂과 겸하여 시주하기 위해 자기매득한 답畝 25두 5승락지, 복수로는 59복 5속인 네 곳을 위 화주化主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허급한다. 훗날에 동생同生과 질자姪子가 만약 승문僧門에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토지면吐旨面 사탄沙灘에 있는 거자답巨字畝 3두락지, 복수로는 7복 7속인 곳에 대해 본문기本文記 2장을 허급한다.

2. 토지면吐旨面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畝 2작병 7두락지, 복수로는 20복 4속인 곳에 대해 본문기 5장을 허급한다.

3. 간전면良田面 도리산道里山에 있는 황자답皇字畝 10두 5승락지, 복수로는 19복인 곳에 대해 본문기 2장과 판결 입안立案 2장을 허급한다.

4. 연곡동燕谷洞<sup>185</sup> 평지平地에 있는 사자답師字畝 4작병 5두락지, 복수로는 12복 4속인 곳에 대해 본문기 5장을 허급한다.

원답주元畝主 : 승僧 처익處益[작명]

증인證人 : 성조별좌成造別座 승僧 근수勤守[작명]

184 승당(僧堂) 사찰에서 승려가 좌선하며 기거하는 집.

185 연곡동(燕谷洞)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기촌을 연곡이라고도 했음.

증보證保 : 사제師弟 승僧 법린法隣[작명]

공증참公證參 : 통정通政 승僧 덕홍德弘[작명]

필집筆執 : 승僧 승일勝一[작명]

1708년 12월 19일에 승려 처익處益이 승당僧堂 화주승化主僧 탄오坦悟에게 토지면吐旨面 사탄沙灘에 있는 거자답巨字畓 3두락지 7복 7속과 토지면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2작 7두락지 20복 4속과 간전면良田面 도리산道里山에 있는 황자답皇字畓 10두락 5승락지 19복과 연곡동燕谷洞 평지平地에 있는 사자답師字畓 4작 5두락지 12복 4속 등 도합 답畓 25두락 5승락지 59복 5속인 네 곳을 허급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절에 불이 났으니 화주를 해서 건립해야 하나 나이가 70세가 넘고 눈과 귀가 멀었을 뿐만 아니라 흉년과 기근으로 변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매득한 땅을 허급하였다. 승려 근수가 증인을 썼고, 법린이 보증을 썼으며 덕홍이 공증을 썼고 승일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35. 1783년 노奴 연남然南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八年癸卯二月初八日 柳營將宅奴 然南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自己買得畓 累年耕食是

如可 移買次 勢不得已 求禮吐旨面金洞員 調字四十二畓 一負

柒束庫果 陽字一畓內十四負 合卜十五卜七束 伏在畓 實種肆斗

落只庫乙 價折柒拾陸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前本文

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上佐中 若有雜談之弊是

去等 此文記告官下正事

畓主 山人 藏學[着名]

筆執 黃聖澄[着名]

건륭 48년(1783, 정조7) 계묘년 2월 8일 유영장택柳營將宅 노비 연남然南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한 답畓에서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이매移買하기 위해 형세가 부득이하여 구례 토지면吐旨面 금동金洞<sup>186</sup>에 있는 조지調字 42번 답 1부 7속 곳과 양자陽字 1번 답 내의 14부, 합 복수 15복 7속의 실종實種 4두락지 곳을 76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해한다. 훗날 상좌上佐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산인山人 장학藏學[작명]

필집筆執 : 황성징黃聖澄[작명]

1783년 2월 8일에 장학藏學이 이매하기 위해 유영장택柳營將宅 노비 연남然南에게 구례 토지면吐旨面 금동金洞에 있는 조지調字 42번 답 1부 7속 곳과 양자陽字 1번 답 내의 14부, 합복 15복 7속인 실종實種 4두락지 곳을 돈 76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황성징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토지면 조지답과 양자답의 매매과정을 보면, 1767년 2월 19일에 진성규陳聖規가 승려 장학壯學에게 양자陽字 1번답 14부 곳과 조지調字 42번답 1부 7속 곳을 돈 55냥에 팔았고, 1757년 1월 11일에 승僧 연순演淳과 의준儀俊이 진한형陳漢亨에게 같은 곳을 돈 34냥에 팔았으며, 1741년 11월 25일에 강덕인姜德仁이 승려 벽공碧空에게 43냥에 팔았다. 1741년 43냥에서 1783년에 76냥이 되었으니 80%가 상승하였다. 승려가 일반인에 매도할 때는 일반인이 승려에게 매도할 때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다.

### 336. 1767년 승僧 장학壯學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參拾參年丁亥二月十九日 僧 壯學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祖上傳來 累年耕食是如可 移買次  
吐旨面金洞員伏在 陽字第一四斗落只 貳拾捌負陸束

---

186 금동(金洞)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금동마을을 말함.

內 拾肆負庫果 調字四十二壹負柒束庫乙 價折錢文  
伍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右僧處 本文記并以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此文告官  
卞正事  
自筆 畚主 幼學 陳聖規[着名]

건륭 32년(1767, 영조43)<sup>187</sup> 정해년 2월 19일 승僧 장학壯學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조상전래의 땅을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이매移買하기 위해 토지면吐旨面 금동金洞에 있는 양자陽字 제1번답 4두락지, 28부 6속 내 14부 곳과 조자調字 42번답 1부 7속 곳을 전문錢文 5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승僧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畚主 : 유학幼學 진성규陳聖規[착명]

1767년 2월 19일에 진성규陳聖規가 이매하기 위해 승려 장학壯學에게 토지면吐旨面 금동金洞에 있는 양자陽字 제1번답 14부인 곳과 조자調字 42번답 1부 7속인 곳을 돈 5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진성규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337. 1757년 진한형陳漢亨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二年丁丑正月十一日 幼學 陳漢亨前 明文  
右明文爲事段 矣師翁祭位畚 累年耕食 奉行祭祀

---

<sup>187</sup> 건륭 33년(1768, 영조44)은 무자년이고, 건륭 32년(1767, 영조43)은 정해년이다. 정해년을 기준으로 한다.

是如可 至於今年生道爲難乙仍于 勢不得已 伏在  
求禮吐旨金谷員 調字畚一卜七束 及陽字畚二作  
并肆斗落只 負數十四卜一束庫乙 價折錢文參  
拾肆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  
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某屬中僧族  
俗族中 幸有雜談是去等 將此文告官下正  
事

畚主 僧 演淳[着名]

儀俊[着名]

證人 幼學 金兌益[着名]

弟 兌玉[着名]

筆執 幼學 金道玉[着名]

건륭 22년(1757, 영조33) 정축년 1월 11일 유학幼學 진한형陳漢亨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스승의 제위답祭位畚<sup>188</sup>으로 수년 동안 경작하며 제사를 봉행하다가 금년에 이르러 살아갈 방도가 어려운지라 형세가 부득이하여 구례 토지면 금곡金谷에 있는 조자답調字畚 1복 7속과 양자답陽字畚 2작병 4두락지, 부수로 14복 1속인 곳을 전문錢文 34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승족僧族과 속족俗族 가운데 행여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승僧 연순演淳[작명]

의준儀俊[작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김태익金兌益[작명]

제弟 태옥兌玉[작명]

필집筆執 : 유학幼學 김도옥金道玉[작명]

---

188 제위답(祭位畚) 추수한 것을 제사 비용으로 쓰기 위해 마련한 논. 제수답(祭需畚).

1757년 1월 11일에 승僧 연순演淳과 의준儀俊이 살아갈 길이 어려워 진한형陳漢亨에게 구례 토지면 금곡金谷에 있는 조자답調字畓 1복 7속과 양자답陽字畓 2작병 4두락지, 부수로 14복 1속인 곳을 돈 34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태익과 그 동생 태옥이 증인을 썼고 김도옥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38. 1741년 승僧 벽공碧空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六年辛酉十一月二十五日 僧 碧空處 明文  
右明文爲事段 矣貧寒所致以 衿得是在 金谷  
員伏在 調字畓一卜七束 及陽字畓二作并四斗落只  
庫 數拾肆卜壹束庫乙 價折錢文肆拾參兩 依  
數捧上爲遣 右人前 本文并以 永永放賣爲  
去乎 日後良中 子孫中雜談是去等 將此文告  
官下正事  
畓主 自筆 姜德仁[着名]

건륭 6년(1741, 영조17) 신유년 11월 25일 승僧 벽공碧空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빈한貧寒한 까닭으로 깃득한 땅인 금곡金谷에 있는 조자답調字畓 1복 7속과 양자답陽字畓 2작병 4두락지 곳, 복수로 14복 1속 곳을 전문錢文 43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自筆 강덕인姜德仁[작명]

1741년 11월 25일에 강덕인姜德仁이 빈한소치로 승僧 벽공碧空에게 금곡金谷에 있는 조자답調字畓 1복 7속과 양자답陽字畓 2작 4두락지, 14복 1속인 곳을 돈 43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강덕인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339. 1715년 강위빈姜渭賓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肆年乙未六月拾玖日 姜渭賓前 明文  
右明文事段 女矣身家夫死後 生道貧寒之際 今  
五月分 猝得染患 舉家出幕飢死 丁寧渴悶  
故勢不得已 金谷員伏在 陽字內畓下邊 拾卜二作  
畓七卜并以 參斗落只等庫良中 價折錢文肆  
拾五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和會文記  
一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爲去等  
將此文告官下正事  
畓主 寡女 朴召史[右寸]  
證人 同姓姪 朴萬載[着名]  
筆 朴尙重[着名]

강희 54년(1715, 숙종41) 을미년 6월 19일 강위빈姜渭賓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남편이 죽은 후에 생계가 빈한할 때 금년 5월에 갑자기 병에 걸려 온 집안이 출막出幕<sup>189</sup>하여 굶어 죽게 되었으니 정녕 애타고 걱정되어 형세가 부득이하여 금곡金谷에 있는 양자답陽字畓 하변 10복, 2작답畓 7복, 모두 3두락지인 곳을 전문錢文 4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화회문기和會文記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만약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과녀寡女 박조이朴召史[우촌]

증인證人 : 동성질同姓姪 박만재朴萬載[작명]

필筆 : 박상중朴尙重[작명]

---

189 출막(出幕)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해서 수용하기 위해 따로 막을 치고 옮김.



1715년 6월 19일에 과부 박조이(朴昭史)가 강위빈(姜渭賓)에게 금곡(金谷)에 있는 양자답(陽字畓) 하변 10복과 2작답(畓 7복, 총 3두락지) 곳을 돈 4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과부 박조이는 남편이 죽은 후에 빈한해진 데다 5월에 전염병으로 출막하여 가족들이 굶어 죽기에 이르자 땅을 팔았다. 조카 박만재가 증인을 썼고 박상중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40. 1704년 박막례(朴莫禮) 화회명문(和會明文)

康熙肆拾參年貳月拾陸日 家夫末妹 莫禮處 明文

右和會文事段 女矣家夫( ) ( ) ( )本以順天之人 移接于此土 而矣家夫亦 與父母同居時 所在順天許多祖上田民 多數放賣 移買於此土 田畓買得時 家夫貴玄同生弟貴男名字以 皆是自己買得樣以 累年耕食爲白乎乃 厥田畓根本 則皆以順天祖上田民移買之致以 家夫之父母生時 所在馬山面加耕旨員畓段 家夫二妹處 許與爲遣 末女段 吐旨面陽字畓內 九卜

庫果 同字畓柒卜庫果 龍頭員伏在歲字田貳斗落只 負數貳卜壹束庫乙 其末妹處遺言衿給 而未成文 ( )嫂父母身死 則女矣家夫同生貴玄貴男等 不有父母之遺言 而移買時其名買得 故乃爲自己之物樣以 其妹段 永不出給 而家夫生時盜賣之後 至于今三妹子孫金( )億徐同伊( ) ( ) ( )父母生時乳脉推得次 呈訴官作財主之計是白乎所 實爲官前分財則見奪 而極爲惶恐乙仍于 依其父母遺言 畓庫三妹處平均分衿 後錄出給爲去乎 此後良中 女矣子孫中 生謀雜談之弊是去等 將此文告官下正事

財主 故 外三寸叔 朴貴玄 妻 崔昭史[右寸]

故 外三寸叔 朴貴男 妻 姜昭史[右寸]

證人 女等家夫 異姓 五寸叔 鄭三信[着名]

證保 陶漢慶[着名]

筆執 校生 梁朝海[着名]

一 家夫 長妹衿 馬山面 加耕旨員伏在 字畓拾伍斗落( ) ( ) ( )

강희 43년(1704, 숙종30) 2월 16일 가부家夫 말매末妹 막례莫禮에게 주는 명문

이 회회문기와會文記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남편은 본래 순천인順天人으로서 이곳으로 이접移接하였다. 나의 남편이 부모와 동거할 때 순천順天에 있는 조상전래한 많은 전민田民을 다수 방매하고 이곳에 이매移買하며 전답을 매득할 때 남편 귀현貴玄의 동생제同生弟 귀남貴男의 이름으로 하고 모두 자기매득한 양으로 수년간 경작하여 먹었다. 그 전답의 근본은 모두 순천 땅에 있는 조상전래의 전민을 이매한 것이므로, 남편의 부모가 살아계실 때, 마산면馬山面에 있는 가경지加耕耨 답畝는 남편의 둘째 누이에게 주었다. 말녀는 토지면 양자답陽字畝 내의 9복 곳과 동자답同字畝 7복 곳과 용두龍頭에 있는 세자전歲字田 2두락지, 부수 2복 1속 곳을 그 말녀에게 유언으로 갖급하였으나 문서를 만들지 못하였다. 형수와 부모가 죽자, 내 남편과 동생인 귀현과 귀남 등은 부모의 유언이 없어서 이매할 때 그 이름으로 매득하였으므로 자기의 물건인 것처럼 되었고, 그 누이에게는 영영 출급하지 않았기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도매盜賣<sup>190</sup>한 후 지금에 이르러 세 누이의 자손인 김○억金億과 서동이徐同伊가 부모가 살아있을 때 유맥乳脉을 추득하기 위해 관에 소訴를 올리고 관작재주官作財主를 할 계획이었다. 실로 관청 앞에서 분재하면 탈취를 당할 것이라 매우 두렵다. 부모의 유언에 따라 답畝 곳을 세 누이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뒤쪽에 기록하여 출급하니, 이후에 나의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재주財主 : 고故 외삼촌숙外三寸叔 박귀현朴貴玄의 처妻 최조이崔召史[우촌]

고외삼촌숙 박귀남朴貴男의 처妻 강조이姜召史[우촌]

증인證人 : 가부家夫의 이성異姓 오촌숙五寸叔 정삼신鄭三信[작명]

증보證保 : 도한경陶漢慶[작명]

필집筆執 : 교생校生 양조해梁朝海[작명]

남편의 큰 누이 갖 : 마산면馬山面 가경지加耕耨에 있는 ○자답 15두락

1704년 2월 16일에 박귀현朴貴玄의 처妻 최조이崔召史와 박귀남朴貴男의 처妻 강조이姜召史가 남편의 말매末妹 막례莫禮에게 토지면 양자답陽字畝내 9복 곳과 동자답同字畝 7복 곳과 용두龍頭에 있는 세자전歲字田 2두락지, 2복 1속 곳을 허여하는 문서이다.

최조이와 강조이는 시누이의 자손들이 관에 소를 올려 관작재주를 하려 하자 시부모의 유언에 따라 시누이의 자손들에게 분재를 해주었다. 이성異姓 오촌 숙부 정삼신이 증인을 썼고 도한경이 보증

190 도매(盜賣) 남의 물건을 훔쳐 팔. 투매.

을 썼으며, 양조해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341. 1752년 호노戶奴 귀재貴才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拾柒年壬申二月十六日 戶奴 貴才前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身自起買得 累  
年耕食爲白可 移買次以 求禮吐旨面仇

亭員 奈字畚伍斗落只四作并 負數貳

拾貳負二束庫 價折錢三拾兩 依數

交易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并以 永

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中 若

有雜<sup>191</sup>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

卜正事

畚主 自筆 金興載[着名]

證人 證保 朴支萬[着名]

#### 추록

吐旨面九亭子

奈字畚四斗

買金興才

건륭 17년(1752, 영조28) 임신년 2월 16일 호노戶奴 귀재貴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이매하기 위해

---

191 원문에는 신(新)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구례 토지면 구정仇亭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5두락지, 4작병 부수 22부 2속인 곳을 전錢 3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자손 중에 만약 이익을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自筆 김흥재金興載[작명]

증인證人·증보證保 : 박지만朴支萬[작명]

### 추록

토지면吐旨面 구정자九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4두락지를 김흥재金興才에게 샀다.

1752년 2월 16일에 김흥재金興載가 이매하기 위해 호노戶奴 귀재貴才에게 토지면 구정仇亭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5두락지, 4작 22부 2속 곳을 돈 3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추록에는 김흥재가 위의 땅을 샀다는 내용이다. 박지만이 증인과 보증을 썼고 자필로 김흥재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 보면 내자답 5두락지, 4작 22부 2속 곳의 매매과정은 1701년 10월 29일에 송봉익宋鳳翼이 성천복成千卜에게 정목正木 70필에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팔았고, 1705년 3월 24일에 승僧 해경海瓊이 오관서덕吳判書宅 수노首奴 한망韓望에게 추심을 당하여 영구히 내주었으며, 1705년 3월 25일에 오관서덕吳判書宅 노奴 기선己先이 치일致一에게 돈 50냥에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팔았고, 1707년 2월 18일에 치일致一이 이덕창李德唱에게 돈 40냥에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팔았으며, 1709년 2월 18일에 이덕창李德唱 부父 수원水元이 손억봉孫億奉에게 돈 45냥에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팔았고, 1715년 1월 25일에 손억봉孫億奉이 김세구金世九에게 돈 35냥에 누이를 양민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매득하였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팔았고, 1740년 4월 20일에 김세구金世九가 김흥재金興載에게 돈 32냥에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팔았다. 지급 방식은 정목 70필, 돈 50냥, 돈 40냥, 돈 45냥, 돈 35냥, 돈 32냥, 돈 30냥이다. 1705년의 50냥이 최고가이고 이후 1752년에 문화유씨에게 30냥으로 가장 싸게 팔렸다.

## 342. 1740년 김흥재金興載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年庚申四月二十日 金興載處 成文

右成文爲後考事 矣身自己買得 累年  
耕食爲如可 要用所致以 不得已 求禮吐旨面仇  
亭員 奈字畚五斗落只四作并 卜數二十二卜二束塵  
價折錢文參拾貳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牌字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同生  
子孫中 幸有雜談爲去等 此文記告官卜正  
事  
畚主 金世九[着名]  
證人 朴枝萬[着名]  
證保 劉方[着名]  
筆 孫必屋[着名]

건륭 5년(1740, 영조16) 경신년 4월 20일 김흥재金興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스스로 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하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부득이하게 구레 토지면 구정에 있는 내자답奈字畚 5두락지 4작병, 복수 22복 2속 곳을 전문錢文 32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와 배자牌字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동생同生과 자손 중에 행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김세구金世九[착명]

증인證人 : 박지만朴枝萬[착명]

증보證保 : 유방劉方[착명]

필筆 : 손필후孫必屋[착명]

1740년 4월 20일 김세구金世九가 요용소치로 김흥재金興載에게 구레 토지면 구정에 있는 내자답奈字畚 5두락지 4작, 복수 22복 2속인 곳을 돈 3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지만이 증인을 썼고 유방이 보증하였으며 손필후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343. 1715년 김세구金世九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肆年乙未正月二十五日 金世九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妹贖良次以 自己<sup>192</sup>買得  
爲如可 勢不得已 求禮吐旨面仇亭子伏在坪畚  
伍斗落只 卜數貳拾貳卜貳束 世弘量庫乙 價折  
錢文參拾伍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本  
文記伍丈及牌字壹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之良中 族類子孫遠近中 亦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 告官下正事  
畚主 驛吏 孫億奉[着名]  
證人 束伍 吳日磨[着名]  
證保 閑良 金成弼[着名]  
筆執 業武 金載夏[着名]

강희 54년(1715, 숙종41) 을미년 1월 25일 김세구金世九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누이를 속량贖<sup>193</sup>하기 위해 자기매득한 땅을 형세가 부득이하여 구레 토지면 구정자仇亭子에 있는 답 5두락지, 복수 22복 2속, 세홍世弘의 양안量案에 있는 곳을 전문 3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5장과 배자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족류 자손이나 원근 사람 중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역리驛吏 손억봉孫億奉[작명]

증인證人 : 속오束伍 오일마吳日磨[작명]

증보證保 : 한량閑良 김성필金成弼[작명]

필집筆執 : 업무業武 김재하金載夏[작명]

192 원문에는 기(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193 속량(贖良)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 주어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속신(贖身)

1715년 1월 25일 손억봉孫億奉이 김세구金世九에게 구례 토지면 구정자仇亭子에 있는 내자답 5두락 지 22복 2속 곳을 돈 3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누이를 양민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매득하였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팔았다. 오일마가 증인을 섰고 김성필이 보증하였으며 김재하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344. 1709년 손억봉孫億奉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捌年己丑貳月拾捌日 孫億奉處 明文  
 右明文爲馭乎事段 矣身要用所致以 自己賣得 耕  
 食爲如可 求禮吐旨面仇亭子員伏在 奈字畓伍斗落只 卜  
 數貳拾貳卜貳束 世弘量庫乙 價折錢文肆拾伍兩 依數交易捧上  
 爲遣 右人處 本文記肆丈及牌字壹丈并以 永永放賣爲  
 去乎 後日族流孫子中 亦有雜談爲去等 將此文記 告  
 官卞正事  
 畓主 李德唱 父 水元[着名]  
 證人 孫以華[着名]  
 證人 鄭時弼[着名]  
 筆執 鄭時泰[着名]

강희 48년(1709, 숙종35) 기축년 2월 18일 손억봉孫億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자기매득한 땅을 경작하여 먹다가 구례 토지면 구정자仇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5두락지, 복수 22복 2속, 세홍世弘의 양안에 있는 곳을 전문錢文 4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4장과 배자牌字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후일 족류 손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이덕창李德唱 父 水元[작명]

증인證人 : 손이화孫以華[작명]

증인證人 : 정시필鄭時弼[작명]

필집筆執 : 정시태鄭時泰[작명]

1709년 2월 18일 이덕창李德唱 부父 수원水元이 요용소치로 손억봉孫億奉에게 구례 토지면 구정자仇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5두락지, 22복 2속인 곳을 돈 4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손이화와 정시필이 증인을 썼고 정시태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345. 1707년 이덕창李德唱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四拾陸年丁亥參月初拾日 李德唱處 明文

右明文爲段乎事 矣身自己賣得耕食爲如可 要用所致以 求禮求亭子吐  
旨泮伏在 奈字畓伍斗落只 卜數二十二卜二束庫 價折錢文四十兩 依  
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本文三丈牌字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日  
上座及姪子中 雜談爲去乎 此文記告官卞正事

自手 筆執 致一[着名]

證人 性哲[着名]

강희 46년(1707, 숙종33) 정해년 3월 10일 이덕창李德唱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구례 구정자求亭子 토지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5두락지, 복수 22복 2속 곳을 전문錢文 4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3장과 배지牌字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후일 상좌나 조카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수自手 필집筆執 : 치일致一[작명]

증인證人 : 성철性哲[작명]



1707년 2월 18일에 치일致一이 요용소치로 이덕창李德唱에게 구례 구정자에 있는 내지답奈字畓 5두락지, 부수로는 22복 2속인 곳을 돈 4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성철이 증인을 썼고 치일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346. 1705년 수노首奴 한망韓望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肆年乙酉三月二十四日 吳判書宅 首奴 韓望處 明文

右明文事段 僧矣身師僧生時衿得是

在 求禮吐旨面歸亭子員伏在 奈字畓五斗

落只 負數二十二卜二束庫乙 德福帳 累年耕食

爲如可 其僧死後 爲其上典宅 今始推尋爲

乎等以 同畓塵 本文記一丈并以 永永納宅爲

去乎 日後良中 某上佐族類乃 生謀雜談

爲去等 此文記相考告官下正事

畓主 僧海瓊[着名]

證人 僧自覺[着名]

證保 僧雲捲[着名]

筆執 僧慧珠[着名]

강희 44년(1705, 숙종31) 을유년 3월 24일 오판서택吳判書宅 수노首奴 한망韓望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승려인 내가 사승師僧이 살아계실 때 갖득한 구례 토지면 귀정자歸亭子에 있는 내지답奈字畓 5두락지, 부수 22복 2속인 곳, 덕복德福의 양안에 있는 것을 수년간 경작하다가 그 승려가 죽은 후에 그 상전택을 위하여 지금 추심推尋하므로, 위의 답을 본문기本文記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납택納宅한다. 훗날에 어떠한 상좌上佐나 족류이건 간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승僧 해경海瓊[작명]

증인證人 : 승僧 자각自覺[작명]

증보證保 : 승僧 운권雲捲[작명]

필집筆執 : 승僧 혜주慧珠[작명]

1705년 3월 24일에 승僧 해경海瓊이 추심을 당해 오판서택吳判書宅의 수노首奴 한망韓望에게 구레 토지면 귀정자歸亭子(구정자)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5두락지, 부수로 22복 2속인 곳을 내주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승려 자각이 증인을 썼고 운권이 보증을 썼으며 혜주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347. 1705년 노奴 평립平立 배자牌子

付求禮奴平立

汝矣田畓記上次以差

奴己先下送爲在 田畓

放賣上送向事

乙酉正月初十日

上典吳[著名]

강희 44년(1705, 숙종31) 을유년 1월 10일 구레 노비 평립平立에게 부침

네게 전답田畓을 기록하기 위해 차노差奴(파견노비) 기선기先을 내려보냈으니 전답을 방매하고 올려보낼 일이다.

상전上典 오똥[작명]

1705년 1월 10일에 상전上典 오똥씨가 구레 노비 평립平立에게 기선을 내려보냈으니 전답을 방매하고 올려보낼 것을 명한 배자이다.

## 348. 1701년 성천복成千卜 토지명문土地明文

辛巳拾月貳拾玖日 成千卜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 要用所致以 祖上傳來 耕食爲  
如乎 奈字畚伍斗落只 貳拾二負二束庫良中 價折正木  
柒拾疋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此子息及他類中 雜談爲去等 將此文相考 告官  
卜正爲乎事  
證人 金應詳[着名]  
證保 梁德男[着名]  
畚主 自筆執 宋鳳翼[着名]

강희 40년(1701, 숙종27) 신사년 10월 29일 성천복成千卜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조상전래의 땅을 경작하여 먹다가 내자답奈字畚 5두락지, 22부 2속 곳을 정목正木 70필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후에 자식과 다른 족류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상고해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증인證人 : 김응상金應詳[착명]

증인證人 : 양덕남梁德男[착명]

답주畚主 : 자필집自筆執 송봉익宋鳳翼[착명]

1701년 10월 29일에 송봉익宋鳳翼이 요용소치로 성천복成千卜에게 내자답奈字畚 5두락지, 22부 2속 곳을 정목正木 70필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응상과 양덕남이 증인을 썼고 송봉익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349. 1705년 승僧 치일致一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四十四年三月二十五日 致一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奴矣上典主分付導良 故  
奴僧希益記上畚 切有用處 勢不得 求禮吐  
旨面懼亭子坪員伏在 奈字畚五斗落只 卜數  
二十二卜二束 世弘帳塵 價折錢文伍拾兩 依數  
捧上爲遣 同人處 本文記二丈并以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良中 某人是乃更生雜  
談爲去等 此文記相考告官卜正事  
畚主 吳判書宅奴 己先[左寸]  
證人 班奴 韓望[着名]  
證保 僧 海瓊[着名]  
筆執 朴洛雲[着名]

강희 44년(1705, 숙종31) 을유년 3월 25일 치일致一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노奴인 내가 상전의 분부에 따라 죽은 노승奴僧<sup>194</sup> 희익希益 이름으로 기록된 답畚을 긴히 필요한 곳이 있고 형세가 부득이하어 구례 토지면 구정자懼亭子 땅에 있는 내자답奈字畚 5두락지, 복수 22부 2속, 세홍世弘 양안에 있는 곳을 전문錢文 5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2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어떤 사람이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상고해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오판서댁吳判書宅 奴奴 己先[좌촌]

증인證人 : 반노班奴 한망韓望[작명]

증보證保 : 승僧 해경海瓊[작명]

필집筆執 : 박낙운朴洛雲[작명]

---

194 노승(奴僧) 종의 신분으로서 종이 된 사람.

1705년 3월 25일 오판서덕吳判書宅 노부 기선己先이 상전의 분부에 따라 승 치일致一에게 구례 토지면 구정자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5두락지, 22부 2속인 곳을 돈 5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한망이 증인을 썼고 승려 해경이 보증을 썼으며 박낙운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50. 1763년 양제명梁濟溟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貳拾捌年癸未四月二十七日 幼學 梁濟溟前 明文  
右明文事段 無後三寸買得畓 累年耕食爲如可 松道  
之人錢 備報辦出無路爲難乙仍于 勢不得已 本面九萬村後  
坪 奈字畓下邊三斗落只 卜數十負六束庫乙 價折錢文  
貳拾九兩伍錢 交易捧上爲遣 右前本文記三丈  
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族屬子孫中 或有雜  
談是去等 將此文告官下正事  
畓主 通德郎 金珍光[着名]  
證人 張聖[着名]  
筆 幼學 朴憲鎮[着名]

건륭 28년(1763, 영조39) 계미년 4월 27일 유학幼學 양제명梁濟溟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후사가 없는 삼촌이 매득한 답畓을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송도인松道人의 돈을 준비하여 판출辦出<sup>195</sup>할 길이 없으므로 형세가 부득이 하여 본면 구만촌九萬村 뒤에 있는 땅 내자답奈字畓 하변下邊 3두락지, 복수는 10부 6속인 곳을 전문錢文 29냥 5전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3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족속과 자손 중에 혹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

195 판출(辦出) 돈이나 물건 따위를 변통해 갖추어 냄.

답주畵主 : 통덕랑通德郎 김진광金珍光[작명]

증인證人 : 장성張聖[작명]

필筆 : 유학幼學 박헌진朴憲鎭[작명]

1763년 4월 27일에 김진광金珍光이 양제명梁濟溟에게 토지면 구만촌후평九萬村後坪 내자답奈字畵 하변下邊 3두락지 10부 6속 곳을 돈 29냥 5전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송도인의 돈을 변통할 길이 없어서 후사가 없는 삼촌에게 갖득한 토지를 팔았다. 장성이 증인을 썼고 박헌진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51. 1753년 최덕항崔德恒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八年癸酉二月二十日 崔德恒處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契中分破耕食

是如可 勢不得已 吐旨面桶泔坪

生字畵四斗落只 卜數二作并拾

陸卜參束庫乙 價折錢文肆拾兩

交易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

談是去等 以此文下正事

畵主 僧 廣學[着名]

證 僧 仁哲[着名]

筆 山人 幻海[着名]

건륭 18년(1753, 영조29) 계유년 2월 20일 최덕항崔德恒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계중契中에서 분과한 땅을 경작하

여 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토지면 통보桶湫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4두락지, 복수 2작병 16복 3속  
곳을 전문錢文 4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만약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로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승僧 광학廣學[작명]

증證 : 승僧 인철仁哲[작명]

필筆 : 산인山人 환해幻海[작명]

1753년 2월 20일에 승려 광학廣學이 요용소치로 최덕항崔德恒에게 토지면 통보桶湫에 있는 생자답  
生字畓 4두락지, 2작 16복 3속 곳을 돈 4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승려 인철이 증證을 썼고  
환해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352. 1755년 승僧 성관性寬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一年乙亥十二月十六日 僧性寬處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如可 要用  
所致以 勢不得已 求禮吐旨面桶湫員伏在 生字  
畓四斗落只 負數十六卜六束庫乙 價折錢文  
四十六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 本  
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幸有同  
生中如有雜談是去等 此文告官下正事  
畓主 崔德恒[着名]  
筆執 僧 日行[着名]

건륭 20년(1755, 영조31)<sup>196</sup> 을해년 12월 16일 승僧 성관性寬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형세가 부득이하여 구례 토지면 통보桶湫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4두락지, 부수로 16복 6속인 곳을 전 문錢文 46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행여 동생同生 중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최덕항崔德恒[작명]

필집筆執 : 승僧 일행日行[작명]

1755년 12월 16일에 최덕항崔德恒이 요용소치로 승려 성관性寬에게 구례 토지면 통보桶湫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4두락지, 16복 6속 곳을 돈 46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승려 일행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53. 1769년 양유봉梁有奉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參十四年己丑二月十二日 梁有奉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自己買得 累年耕食

是如可 移買次以 勢不得已 求禮吐旨面

桶湫員伏在 生字畓四斗落只 負數十

六負六束庫乙 價折錢文陸拾兩 依數

交易捧上爲遣 右前本文記并以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上佐族中 生謀雜是

去等 此文告官卞正事

畓主 僧 性寬[着名]

證 幼學 崔德恒[着名]

筆 僧 守敏[着名]

---

196 건륭 21년(1756, 영조32)은 병자년이고, 을해년은 건륭 20년(1755, 영조31)이다. 을해년을 기준으로 한다.



건륭 34년(1769, 영조45) 기축년 2월 12일 양유봉梁有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이매하기 위하여 형세가 부득이해서 구레 토지면 통보桶湫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4두락지, 부수 16부 6속인 곳을 전문錢文 6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상좌上佐나 족族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승僧 성관性寬[작명]

증證 : 유학幼學 최덕항崔德恒[작명]

필筆 : 승僧 수민守敏[작명]

1769년 2월 12일에 승 성관性寬이 이매차로 양유봉梁有奉에게 구레 토지면 통보桶湫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4두락지 16부 6속인 곳을 돈 6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최덕항이 증證을 썼고 승려 수민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54. 1777년 노奴 삭불朔不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二年丁酉正月十五日 文生員宅 奴 朔不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衿得是在 吐旨面

桶湫坪 生字畓四斗落只 負數二作并十

六卜三束庫乙 價折錢文陸拾伍兩 依

數捧上爲遣 右前本文記并以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如有雜

談是去等 將此文記下正事

畓主 閑良 梁東海[着名]

證 朴太右[着名]

筆 閑良 朴光春[着名]

건륭 42년(1777, 정조1) 정유년 1월 15일 문생원택文生員宅 노비 삭불朔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하기 위해 깃득한 토지면 통보桶湫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4두락지, 부수 2작병 16복 3속 곳을 전문錢文 6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자손과 족속 중에 만약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로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한량閑良 양동해梁東海[작명]

증證 : 박태우朴太右[작명]

필筆 : 한량閑良 박광춘朴光春[작명]

1777년 1월 15일에 양동해梁東海가 이매하기 위해 문생원택文生員宅 노비 삭불朔不에게 토지면 통보桶湫에 있는 생자답生字畓 4두락지, 2작 16복 3속 곳을 돈 6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태우가 증證을 썼고 박광춘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를 통해 토지면 통보에 있는 생자답 4두락지, 16복 3속의 매매과정을 보면, 1734년 2월 24일에 김춘봉金春奉이 김중대金重大에게 돈 20냥에 팔았고, 1742년 12월 20일에 김수명金水明이 정명천鄭命天에게 29냥에 팔았으며, 1748년 6월 16일에 정명천鄭命天이 계중契中에 돈 32냥에 팔았고, 1750년 4월 20일에 승려 극성克性이 승려 광학廣學에게 돈 20냥에 팔았으며, 1753년 2월 20일에 승려 광학廣學이 최덕항崔德恒에게 돈 40냥에 팔았고, 1755년 12월 16일에 최덕항崔德恒이 승려 성관性寬에게 돈 46냥에 팔았으며, 1769년 2월 12일에 승려 성관性寬이 양유봉梁有奉에게 돈 60냥에 팔았고, 1777년 1월 15일에 양동해梁東海가 문생원택文生員宅 노비 삭불朔不에게 돈 65냥에 팔았다.

지불액을 보면, 1734년 20냥, 1742년 29냥, 1748년 32냥, 1750년 20냥, 1753년 40냥, 1755년 46냥, 1769년 60냥, 1777년 65냥이다. 추세를 보면 1750년 승려간의 거래를 한 해에 가격이 내려갔고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 방매이유는 요용소치로, 이매하기 위해서, 살 방도를 찾기 위해서 등이 있는데 이매하기 위해서일 경우가 가격면에서 높았다.

## 355. 1750년 승僧 광학廣學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拾伍年庚午四月二十日 僧廣學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契員中 累年耕食爲如可 破契員分食次  
放賣爲有矣 吐旨面桶湫員 生字畚肆斗落只 負數二作并拾陸  
負三束塵 價折錢文貳拾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某契員中 幸有生謀雜談  
是去等 持此文記內用 告官卞正事

畚主 契首 僧 克性[着名]

證人 契員 僧 竺澄[着名]

筆 契末 僧 處瓊[着名]

건륭 15년(1750, 영조26) 경오년 4월 20일 승僧 광학廣學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계원契員 중에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파계破契하고 계원들이 나눠 먹기 위하여 방매를 하게 되었으니 토지면 통보桶湫의 생자답生字畚 4두락지, 부수 2작병 16부 3속 곳을 전문錢文 2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어떤 계원契員 중에 행여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계수契首 승僧 극성克性[착명]

증인證人 : 계원契員 승僧 축징竺澄[착명]

필筆 : 계말契末 승僧 처경處瓊[착명]

1750년 4월 20일에 승려 극성克性이 계를 깨고 나누기 위해 승려 광학廣學에게 토지면 통보桶湫에 있는 생자답生字畚 4두락지, 2작 16부 3속 곳을 돈 2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승려 축징이 증인을 썼고 승려 처경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56. 1787년 노부 용남龍男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拾貳年丁未十一月二十日 柳府使宅 奴 龍男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自己<sup>197</sup>買得畝 累年耕食是如可 勢  
不得已 求禮吐旨面大川坪柳木亭員伏在 露字畝柒斗落只  
負數二十五卜庫果 同員金字畝參斗落只 負數九卜  
四束庫 合畝拾斗落只 負數則參拾肆負肆束庫乙  
價折錢文玖拾伍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本  
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子孫中 若有  
雜談是去等 將此文記告官卜正事  
畝主 梁德遇[着名]  
證人 朴泰右[着名]  
筆執 黃聖澄[着名]

건륭 52년(1787, 정조11) 정미년 11월 20일 유부사댁柳府使宅 노부 용남龍男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스스로 매득한 답畝를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어 구레 토지면 대천大川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畝 7두락지, 부수 25복 곳과 같은 곳의 금자답金字畝 3두락지, 부수 9복 4속 곳, 합 답畝 10두락지, 부수 34부 4속 곳을 전문錢文 9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자손 중에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양덕우梁德遇[착명]

증인證人 : 박태우朴泰右[착명]

필집筆執 : 황성징黃聖澄[착명]

---

197 원문에는 기(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1787년 11월 20일에 양덕우梁德遇가 형세가 부득하여 유부사댁柳府使宅의 노비 용남龍男에게 구례 토지면 대천大川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7두락지, 25복 곳과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9복 4속 곳 도합 10두락지 34부 4속 곳을 돈 9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태우가 증인을 썼고 황성장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를 통해보면, 양덕우는 1758년 12월 27일에 정신만鄭信萬에게 로자답露字畓 7두락지 25복 곳을 돈 63냥에 사들였고, 같은 날에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9부 4속 곳을 돈 22냥에 사들였다. 29년 후 1787년 11월 20일에 양덕우梁德遇는 로자답露字畓 7두락지 25복 곳과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9복 4속 곳 도합 10두락지 34부 4속 곳을 돈 95냥에 팔았다.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10냥만 상승하였다.

## 357. 1758년 양덕우梁德遇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貳拾參年戊寅十二月二十七日 梁德遇前 明文

右明文爲馭乎事 矣身亦自己買得 耕食爲

如可 移賣次 大川前加耕坪員伏在

金字畓參斗落只 卜數九負四束庫

乙 價折錢文貳拾二兩 依數捧上爲遣

同人前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幸有雜談之弊是去等

此文記告官下呈事

畓主 鄭信萬[着名]

證人 僧 体訓[着名]

筆 山人 悟云[着名]

건륭 23년(1758, 영조34) 무인년 12월 27일 양덕우梁德遇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해서 경작하여 먹다가 이매하기 위하여 대천大川 앞의 가경평加耕坪에 있는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복수 9부 4속 곳을 전문錢文 22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행여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정신만鄭信萬[작명]

증인證人 : 승僧 체훈體訓[작명]

필筆 : 산인山人 오운悟云[작명]

1758년 12월 27일에 정신만鄭信萬이 이매하기 위해 양덕우梁德遇에게 대천大川앞 가정평加耕坪에 있는 금자답金字畵 3두락지, 9부 4속 곳을 돈 2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승려 체훈이 증인을 썼고 오운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58. 1758년 양덕우梁德遇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貳拾三年戊寅十二月二十七日 梁德遇前 明文

右明文爲事段 矣亦自己買得 累年耕食爲  
如可 移賣次 不得已 吐旨面柳木亭坪伏在  
露字畵柒斗落只 負數二十五卜庫乙 價折  
錢文陸拾參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本文記并  
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幸有雜談

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畵主 鄭信萬[着名]

證人 僧 體訓[着名]

筆 山人 悟云[着名]

건륭 23년(1758, 영조34) 무인년 12월 27일 양덕우梁德遇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해서 경작하여 먹다가 이매하기 위하여 부득

이하계 토지면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7두락지, 부수 25복 곳을 전문錢文 63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행여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정신만鄭信萬[작명]

증인證人 : 승僧 체훈體訓[작명]

필筆 : 산인山人 오운悟云[작명]

1758년 12월 27일 정신만鄭信萬이 이매하기 위해 양덕우梁德遇에게 토지면 유목정柳木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7두락지, 25복 곳을 돈 63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승려 체훈이 증인을 썼고 오운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59. 1756년 승僧 청탄淸坦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一年丙子二月二十四日 僧淸坦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 積年耕食爲如可

移買次 吐旨面八松亭員伏在 露字畓二斗

落只 卜數二作并八卜六束塵 價折錢文捌兩

依數捧上爲遣 右處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

去乎 日後族屬上佐中 幸有雜談是去等 此文

卜正事

畓主 山人 僧寶湜[着名]

證 朴忠福

筆 朴東紀[着名]

건륭 21년(1756, 영조32) 병자년 2월 24일 승僧 청탄淸坦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해서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이매하기 위하여 토지면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2두락지, 복수 2작병 8복 6속 곳을 전문錢文 8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족속과 상좌 중에 행여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로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산인山人 승僧 보식寶湜[작명]

증證 : 박충복朴忠福

필筆 : 박동기朴東紀[작명]

1756년 2월 24일에 승려 보식寶湜이 이매하기 위해 승려 청탄淸坦에게 토지면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2두락지, 2작 8복 6속 곳을 돈 8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충복이 증證을 썼고 박동기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 보면 1749년 3월 16일에 우창재禹昌才과 우약금禹若金이 보식寶湜에게 로자답露字畓 2두락지 8복 1속 곳을 돈 12냥에 팔았다. 즉 보식은 12냥에 샀다가 7년 후에 8냥에 판 것이다.

### 360. 1749년 보식寶湜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拾四年己巳三月十六日 寶湜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同三寸廷福  
別給出衿下以是如可 死後推尋是乎 則文  
書給之後 矣身亦貧寒所致以 勢不得  
今年番布 出處無路仍于 大川前八松亭  
員伏在 露字畓二斗落只 卜數八卜一束塵  
價折錢文拾貳兩乙 依數交易捧上遣  
右人處 本文記一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次後子孫中 雜談是去等 此文記以告官



卜正事

畚主 禹昌才[着名]

禹若金[着名]

證人 徐召史[右寸]

筆 通政 徐允澄[着名]

건륭 14년(1749, 영조25) 기사년 3월 16일 보식寶湜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동삼촌同三寸 정복延福에게 별급別給으로 출깃出衿하였다가 사후에 추심推尋하게 되어 문서화된 후에 나 또한 빈한貧寒한 까닭으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금년 번포番布<sup>198</sup>를 낼 길이 없어서 대천大川앞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2두락지, 복수 8복 1속 곳을 전문錢文 12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차후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우창재禹昌才[착명]

우약금禹若金[착명]

증인證人 : 서조이徐召史[착명]

필筆 : 통정通政 서윤징徐允澄[착명]

1749년 3월 16일에 우창재禹昌才과 우약금禹若金이 보식寶湜에게 토지면 대천大川앞 팔송정八松亭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2두락지, 부수로는 8복 1속인 곳을 돈 1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삼촌 우정복으로부터 추심하였다가 번포를 낼 길이 없어서 팔았다. 서조이가 증인을 썼고, 서윤징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198 번포(番布) 오위(五衛)의 군졸이 궁중에 번(番)을 드는 대신에 바치던 무명.

## 361. 1716년 양세중梁世重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伍年丙申十一月二十二日 梁世重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自己買得 耕食爲如可 要用所致  
以 馬山面罷加坪員伏在 月字田 仁上帳 負數二十三卜一束 同  
字田九卜 二作太種九斗落只庫乙 價折錢文三十五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二丈并以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良中 同生及子孫族類中 如有雜談是去  
等 將此文告官卞正事  
田主 嘉善 金士萬[着名]  
證人 申實奉[左寸]  
證保 姜水哲[着名]  
筆執 河振弼[着名]

강희 55년(1716, 숙종42) 병신년 11월 22일 양세중梁世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해서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마산면馬山面 갓가평罷加坪에 있는 월자전月字田, 인상仁上 양안에 있는, 부수 23복 1속과 동자전同字田 9복, 2작 태종太種 9두락지 곳을 전문錢文 3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2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동생同生과 자손 족류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가선嘉善 김사만金士萬[작명]

증인證人 : 신실봉申實奉[좌촌]

증보證保 : 강수철姜水哲[작명]

필집筆執 : 하진필河振弼[작명]

1716년 11월 22일에 김사만金士萬이 요용소치로 양세중梁世重에게 마산면馬山面 갓가평罷加坪에 있는 월자전月字田, 인상仁上 양안에 있는, 23복 1속 곳과 동자전同字田 9복 곳의 2작 태종太種 9두락지

곳을 돈 3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신실봉이 증인을 썼고 강수철이 보증을 썼으며 하진필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62. 1714년 김선흥金善興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參年甲午二月十五日 金善興處 明文  
右明文爲馭乎事段 矣身亦祖上傳來 衿得耕  
食爲如可 當此赤立之時 生道爲難 勢不得已 馬山面  
玉伊川坪伏在 月字丁二作并以 太種玖斗落只  
卜數貳拾貳卜一束 價折錢文肆拾兩 依  
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段 他田畚并付乙仍于  
背後交周後 右人處 不得許給爲在果 日  
後同生子孫族屬中 若或有雜談爲去等 將此  
文記 告官卜正事  
田主 自筆執 鄭泰基[着名]  
證保 同生妹夫 吳君業[着名]

강희 53년(1714, 숙종40) 갑오년 2월 15일 김선흥金善興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땅을 깃득해서 경작하여 먹다가 적립赤立의 때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짐에 형세가 부득이하야 마산면馬山面 옥이천玉伊川에 있는 월자정月字丁 2작병 태종太種 9두락지, 복수 22복 1속인 곳을 전문錢文 4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뒤쪽에 효주交周를 한 후에 위 사람에게는 허급하지 않는다. 훗날에 동생同生과 자손 족속 중에 혹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자필집自筆執 정태기鄭泰基[착명]

증보證保 : 동생매부同生妹夫 오군업吳君業[착명]

1714년 2월 15일에 정태기鄭泰基가 생계가 어려워져 김선흥金善興에게 마산면馬山面 옥이천玉伊川에 있는 월자정月字丁 2작 태종太種 9두락지, 22복 1속인 곳을 돈 4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매부 오군업이 보증을 썼고, 정태기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363. 1783년 노奴 용남用男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八年癸卯六月二十九日 柳龍川宅 奴 用男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祖先傳來田 累年耕食是如  
可 要用所致以 勢不得已 馬山面罷加坪員 月字二十  
八田十九卜一束 二十九田八卜一束 兩作卜數二十七卜二束 太種玖斗  
落只庫乙 價折錢文參拾兩 依數捧上爲遣 右人  
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某子  
孫中 若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 告官卞正  
事  
田主 辛兌望[着名]  
證筆 黃聖澄[着名]

건륭 48년(1783, 정조7) 계묘년 6월 29일 유용천댁柳龍川宅 노奴 용남用男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조상전래의 전田을 수년 동안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마산면馬山面 갓가평罷加坪에 있는 월자月字 28번 전田 19복 1속 곳과 29번 전田 8복 1속 곳, 즉 두 곳의 복수는 27복 2속인 곳으로 태종太種 9두락지인 곳을 전문錢文 3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어떤 자손 중에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신태망辛兌望[착명]

증필證筆 : 황성징黃聖澄[착명]

1783년 6월 29일에 신태망辛兌望이 요용소치로 유용천덕柳龍川宅의 노비 용남用男에게 마산면馬山面 갖가평罷加坪에 있는 월자月字 28번 전田 19복 1속 곳과 29번 전田 8복 1속 곳, 즉 두 곳의 복수 27복 2속 태종太種 9두락지인 곳을 돈 3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황성징이 증證을 썼고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 보면, 마산면 월자전 9두락지의 매매과정은 1714년 2월 15일에 정태기鄭泰基가 김선흥金善興에게 돈 40냥에 팔았고, 1716년 11월 22일에 김사만金士萬이 양세중梁世重에게 돈 35냥에 팔았으며, 1741년 5월 26일에 최개남崔介南이 신초성辛楚成에게 돈 15냥에 팔았다. 소유권 이동 과정을 보면, 정태기에서 김선흥에게, 김사만에서 양세중에게, 최개남에서 신초성에게, 신태망에서 문화유씨로 변경되었고, 지불액은 40냥에서, 35냥, 15냥으로 하락하다가 30냥을 회복하였다.

### 364. 1741년 신초성辛楚成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六年辛酉五月二十六日 辛楚成前 明文  
 右明文爲馭乎事段 矣身自己買得 累  
 年耕食爲如可 要用所致以 勢不得只 馬  
 山面罷加坪伏在 月字田二作并太種玖斗  
 落只 卜數二十七卜三束庫乙 價折錢文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并以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良中子孫中雜談是去  
 等 將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崔介南[着名]  
 證人 趙貴輝[着名]  
 證保 朴太三[着名]  
 筆 通政大夫 徐允澄[着名]

건륭 6년(1741, 영조17) 신유년 5월 26일 신초성辛楚成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해서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형세가 부득이 하여 마산면馬山面 갓가평罷加坪에 있는 월자전月字田 2작병 태종太種 9두락지, 복수 27복 3속인 곳을 전문錢文 1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최개남崔介南[작명]

증인證人 : 조귀휘趙貴輝[작명]

증보證保 : 박태삼朴太三[작명]

필筆 : 통정대부通政大夫 서윤징徐允澄[작명]

1741년 5월 26일 최개남崔介南이 요용소치로 신초성辛楚成에게 마산면馬山面 갓가평罷加坪 소재 월자전月字田 2작작 태종太種 9두락지, 27복 3속 곳을 돈 1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조귀휘가 증인을 썼고 박태삼이 보증을 썼으며 서윤징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65. 1788년 노부 석철石哲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伍拾參年戊申四月廿六日 柳營將宅 奴 石哲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傳來畝 累年耕食是

如可 移賣次 伏在於汝於員 澄字四十一畝

十二負七束 七十一畝內一夜味二負八束 兩作

并十五負五束 六斗落只八夜味庫乙

價折錢文陸拾兩 依數捧上是遣 右

人前 同畝庫乙 永永放賣<sup>199</sup>爲去乎 日後

若有推談是去等 以此文記 告

官下正事

此亦中 本文記 他田畝并付 故<sup>200</sup>不得出給

畝主 金蜀三[着名]

證人 成正三[着名]

筆 郭守萬[着名]

건륭 53년(1788, 영조12) 무신년 4월 26일 유영장댁柳營將宅 노비 석철石哲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전래답에서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이매하기 위해서 어여어於汝於에 있는 징자澄字 41번 답畝 12부 7속과 71번 답畝 내 1배미 2부 8속, 두 곳 모두 15부 5속, 6두락지 8배미인 곳을 전문錢文 6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위의 답畝 곳을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여기에서 본문기는 다른 전답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

답주畝主 : 김축삼金蜀三[착명]

증인證人 : 성정삼成正三[착명]

필筆 : 곽수만郭守萬[착명]

1788년 4월 26일에 김축삼金蜀三이 이매하기 위해 유영장댁柳營將宅의 노비 석철石哲에게 어여어於汝於에 있는 징자澄字 41번 답畝 12부 7속과 71번 답畝 내 1배미 2부 8속 곳, 합 15부 7속, 6두락지 8배미 곳을 돈 6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성정삼이 증인을 썼고 곽수만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66. 1728년 이일재李日載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陸年戊申三月拾捌日 李日載處 明文

199 원문에는 방매(防買)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200 원문에는 고(告)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一族金兌輝改名日定亦 本縣下吏舉行  
而御營色是如 上年條保米上納之時 無面米拾貳斗七升 不爲  
上納是遣 今年二月初 合家逃走仍于 若是上納之物 他無一處  
故一族是如 矣身處囚禁督納是乎等以 勢不得已 祖上傳來  
番庫 在於具亭子員 奈字定種貳斗落只二夜味 卜數伍卜六束 右人前 今價折錢  
貳拾貳兩 捧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 此後某人雜談爲去等  
此文記下正爲旆 本文記段 燒火立案載錄 故背後交周  
爲遣 放賣者  
番主 金順泰[着名]  
筆執 同生兄 金順亨[着名]  
證人 異姓 七寸叔 金海准[着名]

#### 추록

奈字番 二  
夜二斗  
買李元發

옹정 6년(1728, 영조4) 무신년 3월 18일 이일재李日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일족 김태휘金兌輝[일정日定으로 개명함]가 본 현의 하리下吏를 거행하여 어영색御營色이 되었다가 상년조의 보미保米<sup>201</sup>를 상납할 때 무면米無面米 12두 7승을 상납하지 못하고 금년 2월 초에 온 집안이 모두 도주하여 이와 같은 상납하는 물건이 달리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일족인 나에게 수금囚禁<sup>202</sup>하고 독납督納<sup>203</sup>하므로 형세가 부득이 하여 조상으로부터 전래해온 답밭이 구정자具亭子에 있는데 내자奈字 2두락지 2배미, 복수로는 5복 6속인 곳을 위 사람에게 전문錢文 22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구히 방매한다. 차후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로 바로잡을 일이며, 본문기本文記는 입안立案 기록이 불에 탔으므로 뒤에 효주쫓周하고 방매한다.

201 보미(保米) 보인(保人, 조선시대 평민 남자가 부담하던 국역의 하나)이 병역에 복무하는 대신 바치는 쌀.

202 수금(囚禁) 죄인을 잡아 가두어 둠.

203 독납(督納) 세금을 바치도록 독촉함. 독세(督稅).



답주畝主 : 김순태金順泰 [작명]

필집筆執 : 동생형同生兄 김순형金順亨 [작명]

증인證人 : 이성異姓 칠촌숙七寸叔 김해준金海准 [작명]

### 추록

내자답奈字畝 2배미 2두락지를 이원발에게서 샀다.

1728년 3월 18일에 김순태金順泰가 이일재李日載에게 토지면 구정자具亭子에 있는 내자답奈字畝 2두락지 2배미, 복수로는 5복 6속인 곳을 돈 2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친척인 김태휘가 작년(1727)조의 세를 내지 못하고 금년 2월 초에 모두 도주하여서 일족인 김순태를 대신 가두고 독촉하므로 내자답을 판 것이다. 김해준이 증인을 썼고 형 김순형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67. 1732년 노奴 각팔리恰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十年壬子二月十三日 李生員宅 奴 恰八里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自

己買得 耕食爲如可 勢不得 移

買次 具亭員定種奈字

畝 二斗落只二夜 負數伍卜六束

庫乙 價折錢文十兩以 依

數交易捧上爲遣 右人

本文記一丈并以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良同生

中族類 如有中雜談

爲去等 將此文記告官下

正事

畚主 李元發[着名]

筆執 次子 成春[着名]

옹정 10년(1732, 영조8) 임자년 2월 13일 이생원택李生員宅 노부 각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어 이매하기 위해서 구정具亭에 있는 정종定種 내자답奈字畓 2두락지 2배미, 부수로는 5복 6속인 곳을 전문錢文 1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매매한다. 훗날에 동생同生이나 족류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신新·구문기舊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이원발李元發[작명]

필집筆執 : 차자次子 성춘成春[작명]<sup>204</sup>

1732년 2월 13일에 이원발李元發이 이매하기 위해 이생원택李生員宅의 노부 각팔리加八里에게 토지면 구정具亭에 있는 정종定種 내자답奈字畓 2두락지 2배미, 부수로는 5복 6속인 곳을 돈 1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아들 성춘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68. 1730년 노부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八年庚戌十二月二十六日 李生員宅 加八里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僧矣身自己<sup>205</sup>買得畓 在於本面伏  
坪 菜字畓貳斗落只 卜數七卜四束庫乙 耕食爲白如可  
有用處乙仍于 同畓庫乙 右人處 價折錢文貳拾

204 아들이 아버지 옆에 이름을 나란히 쓸 수 없어서 뒷면에 썼다.

205 원문에는 기(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并以 永永放賣  
爲去乎 此後雜談爲去等 相考下正事  
畚主 僧 開演[着名]  
證人 長兄 金海俊[着名]  
證保 同生弟 金重境[着名]  
筆執 金順亨[着名]

용정 8년(1730, 영조6) 경술년 12월 26일 이생원택李生員宅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승僧인 내가 자기매득한 답畝이 본면의 땅에 있는데 채자답  
菜字畝 2두락지, 복수로는 7복 4속인 곳을 경작하여 먹다가 필요한 곳이 있으므로 위 채자답 곳을 위  
사람에게 전문錢文 2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대한  
다. 이후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승僧 개연開演[작명]

증인證人 : 장형長兄 김해준金海俊[작명]

증보證保 : 동생제同生弟 김중경金重境[작명]

필집筆執 : 김순형金順亨[작명]

1730년 12월 26일에 승僧 개연開演이 쓸 곳이 있어서 이생원택李生員宅의 노비 가팔리加八里에게  
토지면에 소재하는 채자답菜字畝 2두락지, 7복 4속 곳을 돈 2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  
해준이 증인을 썼고 동생 김중경이 보증을 썼으며 김순형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69. 미상년 승僧 경수敬修 토지명문土地明文

□…□四月拾玖日 僧 敬修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身本是貧寒之人以 當此窮春 生道

爲難乙仍于 不得已 右僧人 價折正租全拾石 依數捧上爲  
遣 菜字畚二斗落只 負數七卜庫乙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某同生子孫中 或有雜談爲去乙等 此明文告官卞正事  
畚主 金應水[左寸]  
證人 同生弟 金應漢[左寸]  
證保 僧 信日[着名]  
筆執 金日白[着名]

연도 미상 4월 19일 승僧 경수敬修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는 본래 빈한(貧寒)한 사람으로 이 춘궁기를 당하여 생계가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위 승려에게 정조(正租) 전소 8석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채자답(菜字畚) 2두락지, 부수 7복인 곳을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어떤 동생(同生) 자손 중에 혹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명문(明文)을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김응수(金應水) [좌촌(左寸)]

증인(證人) : 동생제(同生弟) 김응한(金應漢) [좌촌(左寸)]

증보(證保) : 승僧 신일(信日) [착명]

필집(筆執) : 김일백(金日白) [착명]

4월 19일에 김응수(金應水)가 춘궁기에 생계가 어려워 승려 경수(敬修)에게 토지면 채자답(菜字畚) 2두락지, 7복 곳을 정조(正租) 전소 8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아우 김응한이 증인을 썼고 승려 신일이 보증을 썼으며 김일백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70. 1722년 구례현(求禮縣) 취송입안(就訟立案)

康熙六十一年二月日 求禮縣就訟立案

右立案爲決給事 茲南原居  
崔聖禹呈狀據 隻朴承山捉  
來 使之一處推闕 則此者崔聖  
禹所告內 矣異姓四寸大父僧  
覺信別得是在 菜字畚二斗  
落只庫乙 不干人朴承山稱名 公  
然耕食 事極無據是如爲於  
隻承山招內 其亦買得此畚於  
高景大處云云是乎所 大槩  
此畚來自覺信之物 而覺信以  
僧無後身死之後 無他族屬  
則同畚僧異姓四寸孫聖禹所  
當次知是乎矣 其時年幼  
不知推尋是遣 聖禹之  
妹夫高景積 公然盜賣於  
其矣六寸兄高景大處 而  
景大亦賣於姪高擎泰放賣 又賣於朴承山處是如乎  
同聖禹及其長也 累度呈  
官 決得立案 昭昭書存 而景  
大蔑視聖禹之孤弱 終不  
出給是如所 他矣田畚 公然  
盜賣 因循不給之狀 極爲  
無據乙仍于 右畚庫乙 崔聖  
禹處字號負數後錄  
決給爲遣 合行立案者  
行縣監[着押]  
後 吐旨面菜字畚二斗落只  
負數柒負肆束印

강희 61년(1722, 경종2) 2월 일 구례현求禮縣 취송입안就訟立案<sup>206</sup>

이 입안立案을 결급決給(소송에서 이겼음을 선고함)하는 일이다. 남원南原에 사는 최성우崔聖禹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척췌 박승산朴承山을 잡아 와서 한번 추열推闡<sup>207</sup>토록 하였는데, 이 최성우가 고한 내용에 ‘나의 이성異姓 사촌四寸의 대부大父인 승僧 각신覺信이 별급別給한 채자답菜字畓 2두락지 곳을 관련도 없는 박승산이 칭명하고 공공연히 경작하여 먹은 일은 매우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고 했다. 척췌 승산의 공초供招에 그가 ‘이 답췌를 고경대高景大에게서 매득하였다’고 운운하였는데, 대개 이 답췌는 본래 각신覺信의 물건이고, 각신覺信은 승려로서 후사가 없이 죽은 후 다른 족속도 없으니, 이 채자답은 승려의 이성異姓 사촌손자인 성우聖禹가 마땅히 차지次知해야 한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어려서 추심推尋할 줄을 몰랐다. 그래서 성우의 매부 고경적高景積이 공공연히 그의 육촌형인 고경대高景大에게 도매盜賣하였다. 경대景大 또한 조카 고경태高擎泰에게 방매하였고, 고경태는 또 박승산朴承山에게 팔았던 것이다.

위의 성우聖禹가 어른이 되어서는 여러 차례 관청에 소지를 올려서 결득決得(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음)한 입안立案에 명백하게 밝힌 글자가 있는데 경대는 성우가 고약孤弱<sup>208</sup>하다고 멸시하며 끝내 출급出給하지 않았고, 그의 전답을 공공연히 도매盜賣하며 그럭저럭 시간을 끌면서 내주지 않는 행태가 매우 근거가 없으므로 위 답췌 곳을 최성우崔聖禹에게 자호字號와 부수負數를 뒤에 기록하여 결급決給한다. 합행입안자合行立案者.

행行 현감縣監[작업]

후 토지면吐旨面 채자답菜字畓 2두락지, 부수 7부 4속임.

1722년 2월 일에 구례현감求禮縣監<sup>209</sup>이 최성우崔聖禹에게 발급해준 것으로, 송사에 승소하였음을 선고하는 입안立案이다. 토지면에 있는 채자답菜字畓 2두락지는 원래 승려 각신覺信의 물건으로, 각신이 후사가 없이 죽었으니 그의 이성異姓 사촌손자인 최성우崔聖禹가 마땅히 차지해야 하지만 매부가 몰래 팔아먹고 그후로 여러 번 팔리다가 최성우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여러 번 정소하였지만 내주지 않은 상태였다. 이때 경작지는 박승산이었는데 그와 소송하여 승소하고, 구례현감이 입안을 발급

206 취송입안(就訟立案) 취송(就訟)이란 재판을 받으려고 법정에 나간 것을 말하고, 입안(立案)이란 청원에 대하여 관(官)에서 인가(認可) 또는 인증(認證)하는 문서를 말한다.

207 추열(推闡) 죄인을 심문함.

208 고약(孤弱) 외롭고 힘이 약하다. 조실부모한 사람.

209 이때 구례현감은 홍우평(洪禹平, 1719~1722)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준 것이다.

### 371. 1722년 김만일金萬鎰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六十一年壬寅十二月初三日 幼學 金萬鎰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以 自己買得是在  
吐旨面泐萃員伏在 菜字畝二斗落只 負  
數七卜四束庫乙 價折錢文貳拾兩 依  
數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二丈 決  
立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中生謀雜談爲去等 此文告官下  
正事

自筆 畝主 幼學 高爾明[着名]

강희 61년(1722, 경종2) 임인년 12월 3일 유학幼學 김만일金萬鎰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자기매득한 토지면吐旨面 보평泐萃에 있는 채자답菜字畝 2두락지, 부수 7복 4속 곳을 전문錢文 2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2장과 판결한 입안立案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이후에 자손 중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 답주畝主 유학幼學 고이명高爾明[작명]

1722년 12월 3일에 고이명高爾明이 요용소치로 김만일金萬鎰에게 토지면吐旨面 보평泐萃에 있는 채자답菜字畝 2두락지, 7복 4속인 곳을 돈 2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고이명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372. 1725년 승僧 개연開演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參年乙巳三月拾五日 僧 開演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自己<sup>210</sup>買得 耕食是如可  
要用所致以 不得已 伏在湫坪乙 菜字畝貳斗落  
只 卜數柒卜四束庫 價折錢文貳拾壹兩 捧上爲遣  
本文記及受立案所志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雜談爲去等 此文記告官  
卜正事  
畝主 幼學 金萬鎰[着名]  
證人 僧 貫己[着名]  
證保 李元弼  
筆執 金順亨[着名]

옹정 3년(1725, 영조1) 을사년 3월 15일 승僧 개연開演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부득이하게 보평湫坪에 있는 채자답菜字畝 2두락지, 복수 7복 4속 곳을 전문錢文 21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관에서 받은 입안소지立案所志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이후 동생同生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유학幼學 김만일金萬鎰[작명]

증인證人 : 승僧 관기貫己[작명]

증보證保 : 이원필李元弼[작명]

필집筆執 : 김순형金順亨[작명]

---

210 원문에는 기(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1725년 3월 15일에 김만일金萬鎰이 요용소치로 승려 개연開演에게 토지면 보평湫坪의 채자답菜字畓 2두락지, 7복 4속 곳을 돈 21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승려 관기가 증인을 썼고 이원필이 보증을 썼으며 김순형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73. 1722년 최성우崔聖禹 소지所志

南原居 崔聖禹

右謹陳所志矣段 矣亦與本縣居高翊天雀庫 相訟是如可  
矣身既已得決爲有在如中 貧寒之人 因其作木之難辦 他  
處欲爲放賣之計 則落訟人高翊天亦處處毀謗 罔有所極  
已至狼狽之境 原其心情 極爲無據是白去乎 捉來重  
治禁斷事乙 嚴明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 處分

壬寅二月日所志

決後仍執之罪 自

有其律 終不出給

是去等 治罪分付

次 此時兩班捉來

廿七日

求禮官[押]

남원에 사는 최성우崔聖禹 소지

삼가 소지所志를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본현에 사는 고익천高翊天和 답畓 곳을 서로 송사하였다가 제가 이미 승소판결을 받았을진대 빈한貧寒한 사람이 작목作木<sup>211</sup>을 판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곳에 방해하려고 계획하였는데 낙송인落訟人<sup>212</sup> 고익천이 가는 곳마다 훼방하기를 끝이 없이 하여 낭패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래부터 그 마음씀이 매우 근거가 없사오니 붙잡아다가 무겁게 다스리고 금단시키는 일을 분명하게 분부를 내려주십시오. 명령하실 일이니, 성주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임인년(1722, 경종2) 2월 일, 소지.

판결 후에도 잉집仍執<sup>213</sup>하는 죄는 스스로 그 법률에 있으니, 끝내 내주지 않으면 죄를 다스리기 위해 이 양반을 잡아 올 것.

27일.

구례관求禮官[입]

1722년 2월에 남원에 사는 최성우崔聖禹가 구례 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구례현에 사는 고익천과 소송을 하여 이미 채자답 2두락지를 최성우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팔지 못하게 방해를 하므로, 고익천을 엄히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구례현감은 ‘끝내 내주지 않으면 죄를 다스리기 위해 고익천을 잡아오라’고 제김하였다.

### 374. 1722년 고이명高以明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六十一年壬寅二月二十五日 幼學 高以明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亦貧寒所致以 此畚庫相訟得決後 作  
木備納爲難乙仍于 迫不得已 求禮吐旨面泐萍員伏在 菜字畚二斗  
落只 負數柒負肆束庫乙 價折錢文貳拾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二丈內一丈 他畚庫載錄爲乎等以 背

211 작목(作木) 조선 시대 전세를 받을 때 쌀이나 콩 대신에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무명으로 환산하여 받던 일.

212 낙송인(落訟人) 조선시대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213 잉집(仍執) 남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음.

後爰周爲乎旅 得決文書二丈并以 永永出給爲去乎 日後良中 子孫中  
若有雜談 則此文告官卞正事  
自筆 畚主 崔聖禹[着名]  
證人 金仁哲[左寸]  
證保 應赤[着名]

강희 61년(1722, 경종2) 임인년 2월 25일 유학幼學 고이명高以明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빈한貧寒한 까닭으로 이 답썰 곳을 상송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작목作木을 비납하기 어려우므로 절박하게 부득이하여 구례군 토지면 보평淤萍에 있는 채자답菜字畓 2두락지, 부수 7부 4속 곳을 전문錢文 2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本文記 2장에서 1장은 다른 답썰 곳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뒤에 효주爻周하며, 판결문서 2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출급한다. 훗날에 자손 중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畚主 : 최성우崔聖禹[착명]

증인證人 : 김인철金仁哲[좌촌]

증보證保 : ○응적應赤[착명]

1722년 2월 25일에 최성우崔聖禹가 세를 내기 위해 고이명高以明에게 구례군 토지면 보평淤萍에 있는 채자답菜字畓 2두락지, 부수로는 7부 4속인 곳을 돈 2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 375. 1722년 최성우崔聖禹 소지所志

南原居 崔聖禹

右謹陳所志冤痛情由事段 矣異姓四寸大父僧覺信 別得菜字畓二斗  
落只庫乙 不奸人朴承山稱名人 公然耕食 事極是乎等以 今此仰訴於明政

之下爲白去乎 右良情由參商教是後 同朴承山捉來法前 推問曲折  
後 右畚庫乙 一一推給事乙 各別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求禮官主處分  
壬寅正月日所志

[제김은 희미하여 판독불가]

남원사는 최성우崔聖禹 소지

삼가 소지所志를 진달하여 원통한 사정을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이성異姓 사촌 대부 이신 승僧 각신覺信에게 특별히 채자답菜字畓 2두락지 곳을 얻었는데, 상관없는 사람인 박승산朴承山 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공공연히 경작하여 먹은 일이 지극하여 지금 이렇게 명정지하明政之下<sup>214</sup>에 앙소仰訴하오니, 위의 사정을 헤아려 참고한 후에 박승산朴承山을 법정 앞에 잡아다가 곡절曲折을 추문推問한 후에 위 답畓곳을 일일이 추급推給해주시기를 각별히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하실 일이니, 구례관주求禮官主께서 처분해주십시오.

임인년(1722) 1월 일 소지所志

1722년 1월에 남원에 사는 최성우崔聖禹가 구례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성우의 이성사촌 대부 이신 승려 각신이 후사가 없이 죽었으므로 자연히 각신의 채자답 2두락지를 최성우가 얻게 되었는데 박승산이 공공연히 경작하면서 돌려주지 않으니 이것을 찾아주라는 내용이다.

---

214 명정지하(明政之下) 밝은 정치를 펴는 곳이라는 뜻으로 해당 송관(訟官)을 말한다.

## 376. 1706년 최성우崔聖禹 소지所志

南原居 崔聖禹

右謹陳所志冤痛情由事段 矣妹夫高慶積亦 矣四寸大父 茶畚二斗落只庫乙 他人處盜賣是□  
如是無據之罪 呈官治罪推尋爲白乎 矣四寸□…□之時 同畚庫乙 他人處放賣爲有  
如乎 同慶積亦時生凶計 前日放賣畚二斗庫乙 其矣□□畚出是如 橫奪盜賣爲去乙 如此無  
理之

狀乙 再三呈官推捉是乎則 自知其罪是白遣 不入官前是去乙 如此敗惡事乙 白括官  
前 適當拒逆推捉是乎矣 以他官居生之人 不久其留之計是白遣 □□拒逆遲延日月  
當到春分是乎等以 卽爲未推爲有臥乎 人世間又有如此不測之人乎 右良情由參商  
教是後 上項高慶積身乙 以官威捉來 推問眞僞次 如干田畚非理盜賣之罪嚴  
治後 同畚二斗落只庫乙 一一推尋事乙 各別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

丙戌十一月日所志  
官[着押]

推完次 慶積率來事  
初四日

高慶積捉來 一處推完  
只考汝矣兩度得決文書  
則慶積盜賣之狀 明白無  
疑 一從決給文書 同所爭畚庫  
推尋耕食爲乎矣 如有拒逆  
不遵之舉是去等 依法重治  
次 慶積與執耕人 一時捉來事  
丁亥正月十五日

남원 사는 최성우崔聖禹

삼가 소지所誌를 진술하여 원통한 사정을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매부 고경적高慶積이 나의 사촌 대부의 채답菜飭 2두락지 곳을 다른 사람에게 도매盜賣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근거없는 일을 하는 죄를 관청에 정소하니 치죄治罪하고 추심推尋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촌이 ...때 채자답 곳을 타인사람에게 방매하였고, 그 경적慶積이 흥계를 내서 답飭 2두락 곳을 그의 이름으로 칭하여 내고 횡탈하여 몰래 팔았는데, 이처럼 이치 없는 상황을 두세 번 관청에 정소하여 추척하게 하였으니 스스로 그 죄를 알아야 하는데도 관청에 들어가지 않고 이처럼 쾌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현감께 발판을 하였으나 마침 추척推捉<sup>215</sup>을 거역당했는데, 다른 고을에 사는 사람이라 오래 머물 방도가 없습니다. 추척을 거역하며 시간을 끌다가 춘분春分이 이름을 당해서 추척을 할 수 없으니, 인간세상에 또 이와 같은 불측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셔서 위의 고경적을 관청의 위엄으로 붙잡아와서 진위를 추문하고, 다음으로 약간의 전답을 이치에 맞지 않게 도매盜賣한 죄를 엄히 다스린 후 위의 답飭 2두락지 곳을 일일이 추심推尋하는 일을 각별히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하실 일이니, 처분해주십시오.

1706년 11월 일 소지所誌.

[제김] 추원<sup>216</sup>하기 위해 경적慶積을 이끌고 올 일.

초 4일.

고경적을 잡아 와서 한 곳을 추원한다. 다만 너의 두 건의 승소판결을 받은 문서를 살펴보니, 경적의 도매한 상황은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한결같이 결급 문서를 따라서 위의 분쟁한 답飭 곳을 추심하여 갈아먹도록 하라. 만일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일이 있다면 법에 따라 중히 다스리기 위해 경적慶積과 집경執耕<sup>217</sup>한 사람을 일시에 잡아들일 일이다.

정해년(1707년) 1월 15일.

1708년 11월에 남원에 사는 최성우崔聖禹가 구례 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매부 고경적이 채자답 2두락지를 도매하였으니 잡아다가 죄를 묻고 그 답을 추심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

---

215 추척(推捉) 범죄자를 수색해 잡아 옴.

216 추원(追完) 민법에서 법률상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던 법률 행위가 뒤에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게 되는 일을 말함.

217 집경(執耕) 허가 없이 남의 토지를 경작함을 말한다.

해 구례현감은 추완하기 위해 고경적을 데리고 오라고 했고, 또 다음에는 최성우가 승소한 편결문 두 건을 살펴보니 고경적이 도매한 것이 명확하므로 위 논을 추심하도록 하고, 거역한다면 고경적과 현재 땅을 갈아먹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잡아오라는 판결을 내렸다.

### 377. 1704년 손종봉孫種叱捧 방매명문放賣明文

康熙肆□…□

右明文事段 矣身亦貧寒所致以

妻片衿得耕食 生利爲難乙仍

于 舊洞億里員伏在 駒字田兩山處

入田 負數伍卜參束太種二斗落只庫乙 價

馬一疋【乙價去爲去乎 常木捌疋】正木一疋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一丈并以 同人處永永放賣爲

去乎 後次良中 某同生子息等是乃 雜

談爲去等 將<sup>218</sup>此文記 考告官卜正爲乎事

田主 孫種叱捧[着名]

證人 徐日男

筆執 正兵 同生 朴英目[着名]

강희 43(1704, 숙종30)에 손종봉孫種叱捧이 방매한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빈한貧寒한 까닭으로 처가에서 깃득하여 경작해서 먹다가 생활이 곤란하므로 구동억리舊洞億리에 있는 구자전駒字田으로 양산兩山처에 들어있는 전, 복수로 5복 3속의 태종太種 3두락지 곳을 상목常木 8필疋과 정목正木 1필疋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

---

218 원문에는 장(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고 본문기本文記 1장을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해한다. 후차에 어떤 동생이나 자식 등이 이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손종봉孫種叱捧[작명]

증인證人 : 서계남徐攄男[작명]

필집筆執 : 정병正兵 동생同生 박영목朴英目[작명]

1704년 ○월 ○일에 손종봉孫種叱捧이 빈한한 소치로 ○○에게 문척면 구동억리舊洞億里에 있는 구자전駒字田 5복 3속, 태종太種 3두락지 곳을 상목常木 8필咫과 정목正木 1필咫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서계남이 증인을 썼고 박영목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78. 1705년 정철석鄭哲石 토지명문土地明文

己酉年十月初伍日 鄭哲石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貧寒所致以 番布

出處無路乙仍于 買得耕食 舊億里員伏在 駒

字田兩山處入田 卜數伍卜三束 太種三斗落只

庫乙 價折家布三疋正租七斗 依數交易捧上

爲遣 本文記一丈并以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雜談爲去乙等 將此文告官下正

爲乎事

田主 高名吉[左寸]

證保 朴命山

證人 徐聖

筆執 梁戒玉[着名]



강희 44년(1705, 숙종31) 을유년 10월 15일 정철석鄭哲石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빈한(貧寒)한 까닭에 번포(番布)를 낼 길이 없으므로 매득해서 경작하여 먹던 구역리(舊億里)에 있는 구자전(駒字田)으로 양산(兩山)에 들어있는 밭, 복수 5복 3속, 태종(太種) 3두락지 곳을 가포(家布) 3필과 정조(正租) 7두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1장을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후차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고명길(高名吉) [좌촌]

증보(證保) : 박명산(朴命山)

증인(證人) : 서성(徐聖)

필집(筆執) : 양계옥(梁戒玉) [작명]

1705년 10월 15일 고명길(高名吉)이 빈한한 소치로 정철석(鄭哲石)에게 문척면 구역리(舊億里)에 있는 구자전(駒字田) 5복 3속, 태종(太種) 3두락지 곳을 가포(家布) 3필과 정조(正租) 7두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서성이 증인을 썼고 박명산이 보증을 하였으며 양씨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379. 1659년 유경신(柳敬信) 토지명문(土地明文)

順治十六年己亥二月二十九日 柳敬信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身亦貧寒所致

祖上傳來耕食爲如乎 兩山員 駒字田五

卜三束 長四十八尺 廣廿尺櫻桃木塞表 太種二斗落庫乙 價折正木二十五疋

依數交易捧上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子孫中 更生謀計雜談爲去等 將此

文告官下定事

自執筆 高愛龍[着名]

證人 同生 高正方[左寸]

證保 張弘立[着名]

순치 16년(1659, 효종10) 기해년 2월 29일 유경신柳敬信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빈한貧寒한 까닭으로 조상으로부터 전해 받아 경작하여 먹다가 양산兩山에 있는 구자전駒字田 5복 3속, 즉 길이 48척 넓이 20척 앵두나무[櫻桃木]로 주변을 둘러 표시한 곳인 태종太種 2두락지 곳을 정목正木 25필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해한다. 후에 자손 중 다시 어떤 이익을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집自筆執 : 고애룡高愛龍[작명]

증인證人 : 동생同生 고정방高正方[좌촌]

증보證保 : 장홍립張弘立[작명]

1659년 2월 29일에 고애룡高愛龍이 빈한한 소치로 유경신柳敬信에게 문척면 양산兩山에 있는 구자전駒字田 5복 3속, 태종太種 2두락지 곳을 정목正木 25필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고정방이 증인을 썼고 장홍립이 보증을 썼으며 고애룡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380. 1710년 비婢 정채廷菜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九年庚寅十一月二十六日 張生員宅 婢 廷菜  
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本無子女之養 年又耄  
耄 生道爲難不分喻 連值凶荒之餘 還上米租乙 無路  
備納仍于 勢不已 自己買得是遺 舊億里員伏在 兩山  
駒字代田 太種貳斗落只 卜數五卜三束庫乙 價折正租  
全陸石 依數交易捧上爲遺 本文記三丈并以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同生族類中 幸有雜  
談是去等 將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同知 鄭哲石[左寸]  
證保 私奴 永得[左寸]  
證人 私奴 二萬[左寸]  
筆執 李福連[着名]

강희 49년(1710, 숙종36) 경인년 11월 26일 장생원대張生員宅 비첩 정채延菜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본래 봉양할 자녀가 없는 데다가 나이 또한 70살이 넘어 살아갈 방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달아 흉년이 들어 환자還上의 미조米租를 비갓추어 납부할 길이 없으므로 형세가 부득이 하여 자기매득한 구역리舊億里 양산兩山에 있는 구지駒字 대전 태종太種 2두락지, 복수 5복 3속 곳을 정조正租 전소 6석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3장을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후에 동생과 족류 중에 행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동지同知 정철석鄭哲石[좌촌]

증보證保 : 사노私奴 영득永得[좌촌]

증인證人 : 사노私奴 이만二萬[좌촌]

필집筆執 : 이복련李福連[작명]

1710년 11월 26일에 정철석鄭哲石이 환자를 납부할 길이 없어 장생원대張生員宅의 노비 정채延菜에게 문척면 구역리의 양산에 있는 구지駒字 대전 태종太種 2두락지, 부수로 5복 3속인 곳을 정조正租 전소 6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사노 이만이 증인을 썼고 영득이 보증을 썼으며 이복련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문척면 구역리의 구자전 5복 3속에 대한 관련문서를 살펴보면, 1659년 2월 29일에 고애룡高愛龍이 유경신柳敬信에게 정목正木 25필에 팔았고, 1705년 10월 15일에 고명길高名吉이 정철석鄭哲石에게 가포家布 3필과 정조正租 7두에 팔았으며, 1704년경에 손종봉孫種捧이 누군가에게 상목常木 8필과 정목正木 1필에 팔았다.

## 381. 1703년 김필홍金必弘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四十貳年癸未貳月廿七日 弟 金必弘處 明文

右明文爲臥乎段 矣身亦去己巳分 矣師僧九十年 生前幾錢佛供爲計  
是白去乙 其時齋米布 施錢紙 狀紙 白綿紙 花草紙 水壬子 木麥 丹木 清蜜 眞末  
物所入爲遣 其時末同弟 正租五十石乙 收奉爲白遣 無事佛供 過時後矣師  
僧年年并作爲白可 去辛巳年二月廿五日身死 喪三年後 同畝庫乙 矣身并作□  
也是乎矣 勢不得已 吐旨面山亭下坪 奈字畝伍斗只 又於加畝二斗只果  
佛供入奉 正租五十石價許給爲遣 此本文記三丈并以 永永許給爲去  
乎 後次某同生族類等是乃 雜談爲去等 此文記用良告官卜定  
爲乎事

證人 師弟 法憐[着名]

自筆執 畝主 處益[着名]

강희 42년(1703, 숙종29) 계미년 2월 27일 제弟 김필홍金必弘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지난 기사년(1689)에 나의 사승師僧은 90세였는데, 생전에 얼마간의 돈으로 불공佛供을 할 계획이었다. 그때 미포米布<sup>219</sup>, 시전지施錢紙, 장지狀紙<sup>220</sup>, 백면지白綿紙<sup>221</sup>, 화초지花草紙, 수입자水壬子(들깨), 목맥木麥(메밀), 단목丹木<sup>222</sup>, 청밀淸蜜(꿀), 진말眞末(밀가루) 등의 물건을 소입所入<sup>223</sup>하였고, 그 때 말동제末同弟가 정조正租 50석을 수봉收奉하여 무사히 불공을 드렸다. 나의 사승이 해마다 병작并作<sup>224</sup>하다가 지난 신사년(1701) 2월 25일에 죽었다. 상

219 미포(米布) 쌀과 피륙을 아울러 이르는 말.

220 장지(狀紙) 공문이나 편지를 쓰는 데 쓰는 종이.

221 백면지(白綿紙) 품질(品質)이 썩 좋은 흰 종이.

222 단목(丹木) 다목. 콩과의 작은 상록교목(常綠喬木). 동(東) 인도(印度) 원산(原産)으로 난지에 재배(栽培). 높이 5미터, 가시가 있고 봄에 누른 나비꽃 꽃이 핏. 활 만드는 데 쓰고 속의 붉은 부분(部分)은 홍색 물감과 약재(藥材)로, 뿌리는 황색(黃色) 물감으로 씀.

223 소입(所入) 어떤 일에 비용(費用)으로 든 돈이나 재물(財物).

224 병작(并作) 땅임자와 소작인(小作人)이 소출(所出)을 똑같이 갈라 가지는 제도(制度). 배메기.

喪을 3년 치른 후 같은 답畝를 내가 병작并作하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토지면吐旨面 산정山亭아래에 있는 내자답奈字畝 5두락지, 또 가답加畝 2두락지를 불공에 입봉入奉하기 위해 정조正租 50석으로 가격을 정하여 허급許給하고, 이 본문기本文記 3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허급한다. 후차에 어떤 동생이나 족류 등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증인證人 : 사제師弟 법련法憐[작명]

자필집自筆執 : 답주畝主 처익處益[작명]

1703년 2월 27일에 처익處益이 제弟 김필홍金必弘에게 토지면吐旨面 산정山亭아래에 있는 내자답奈字畝 5두락지와 가답加畝 2두락지를 불공에 입봉入奉하기 위해 정조正租 50석으로 가격을 정하여 허급許給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사제 법련이 증인을 썼고 처익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382. 1635년 승僧 계영戒英 토지명문土地明文

崇禎捌年乙亥貳月貳拾柒日 僧 戒英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女矣身貧寒所致以 田稅積納不得乙仍于 祖

上傳來耕食爲如乎 吐旨伏在 奈字畝五斗落只 拾壹負柒束庫乙

價折木綿拾陸疋 依數交易捧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 子息

及某人是乃 雜談隅有去等 此明文兒如 告官下正事

畝主 婢 菊花[右寸]

證保 朴守辰[着名]

證人 曹件里山[左寸]

筆執 正兵 李大澤[着名]

승정 8년(1635, 인조13) 을해년 2월 27일 승僧 계영戒英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빈한貧寒한 까닭으로 전세田稅가 누적되어 납부하지

못하므로 조상 전래 땅을 경작하여 먹던 토지면의 내자답奈字畓 5두락지, 11부 7속 곶을 목면木綿 16필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구히 방매한다. 자식이나 어떤 사람이거나 이익을 제기한다면 이 명문대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비씨 국화菊花[우촌]

증보證保 : 박수신朴守辰[작명]

증인證人 : 조건리산曹件里山[좌촌]

필집筆執 : 정병正兵 이대택李大澤[작명]

1635년 2월 17일에 비씨 국화菊花가 몇 년 동안 내지 못한 전세田稅를 납부하기 위해 승려 계영戒英에게 토지면 내자답奈字畓 5두락지, 11부 7속 곶을 목면木綿 16필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조건리산이 증인을 썼고 박수신이 보증을 썼으며 정병 이대택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83. 1776년 노한위盧漢位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一年丙申十一月十二日 盧漢位前 明文

右明文事段 御營價布 申日夫無去

處逃亡後 無他田畓 只有垞田三升

落只 草家二間而已 故付標債

及番錢備納次 洞內會同完議後

同垞田草家 價折錢文參兩 依數交

易捧上爲遣 右人處 永永放賣爲去矣

本文記段 不知去處 不得出給爲去乎 日

後某人中 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告

官卞正事

洞首 呂夢龍[着名]

洞長 金世元[着名]

證參 呂業龍[着名]

證保 朴必才[着名]

筆 韓世奉[着名]

건륭 41년(1776, 영조52) 병신년 11월 12일 노한위盧漢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어영가포御營價布는 신일부申日夫가 거처없이 도망친 후로 달리 전답은 없고 다만 대전垸田 3승락지와 초가 2칸만이 있으므로 채價를 부표付標<sup>225</sup>하고 번전番錢<sup>226</sup>을 비납하기 위해 동네에서 회동하여 의논한 후에 위의 대전과 초가를 전문錢文 3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는 간 곳을 모르므로 출급하지 않는다. 훗날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동수洞首 : 여몽룡呂夢龍[착명]

동장洞長 : 김세원金世元[착명]

증참證參 : 여업룡呂業龍[착명]

증보證保 : 박필재朴必才[착명]

필筆 : 한세봉韓世奉[착명]

1776년 11월 12일에 동수洞首 여몽룡呂夢龍과 동장洞長 김세원金世元이 노한위盧漢位에게 대전垸田 3승락지와 초가 2칸을 돈 3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신일부가 가포를 내지 않고 도망쳤기 때문에 동네 수장 여몽룡이 대전과 초가를 처분하여 번전을 내기 위해 팔았다. 여업룡이 증인으로 참여하였고 박필재가 보증하였으며 한세봉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225 부표(付標) 문서 가운데 특별히 유념하거나 후일 참고할 사항에 표지(標紙)를 붙임.

226 번전(番錢) 입번(立番)할 군인이 입번하지 않는 대신에 내는 돈 또는 배를 말한다.

## 384. 1645년 승僧 덕식德式 토지명문土地明文

乙酉參月初肆日 僧人 德式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自己買畚乙 移買所致  
山亭下坪 李字畚伍斗落只 卜數貳拾負肆束庫乙 價折  
正木參拾陸疋以 交易依數捧上爲遣 同人處 永永  
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同生族類等是乃 雜談爲去  
乙等 此文記內以用告官卞正事  
畚主 僧人 桂英[着名]  
證人 徐德龍[着名]  
筆執 山人 性逸[着名]

을유년(1645, 인조23) 3월 4일 승인僧人 덕식德式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한 답밭을 이매할 까닭으로 산정하山亭下에 있는 이자답李字畚 5두락지, 복수 20부 4속 곳을 정목正木 36필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후차에 동생이나 족류 등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로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승인僧人 계영桂英[착명]

증인證人 : 서덕룡徐德龍[착명]

필집筆執 : 산인山人 성일性逸[착명]

1645년 3월 4일에 승인僧人 계영桂英이 이매하기 위해 승인僧人 덕식德式에게 토지면 산정하山亭下에 있는 이자답李字畚 5두락지, 복수로는 20부 4속인 곳을 정목正木 36필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서덕룡이 증인을 썼고 성일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계영은 1635년 2월 17일에 노비 국화로부터 내자답 5두락지, 11부 7속을 목면 16필에 사들인 적이 있다.



## 385. 1698년 노奴 귀손貴孫 배자牌子

奴 貴孫處 付

無他故奴應淸亦 無后身死乙

仍于 渠矣衿付所耕田畝 依法

推尋 收獲年久是如乎 移買次

以求禮吐旨面菜字伏在畝七卜

五束 同字十七卜五束等 合柒斗落

只庫乙 訪問諸處 準價捧納爲

遣 此牌字導良 明文成給向

事

戊寅十一月十五日

上典 尹[着名]

노奴 귀손貴孫에게 부침

다름이 아니라 노奴 응청應淸이 후사가 없이 죽었으므로 그가 깃부衿付 받아 경작한 전답을 법에 따라 추심推尋하여 수획收獲한지 오래되었다. 이매하기 위해서 구례 토지면吐旨面 채자菜字 답畝 7복 5속, 동자同字 17복 5속 등 합 7두락지 곳을 여러 곳을 방문하여 값에 준하여 받아서 들이고, 이 배자牌子에 따라 명문을 성급할 일이다.

무인년(1698, 숙종24) 11월 15일

상전上典 윤尹[작명]

1698년 11월 15일에 상전上典 윤尹씨가 노비 귀손貴孫에게 구례 토지면吐旨面 채자답菜字畝 7복 5속과 동자同字 17복 5속 등 합 7두락지 곳을 여러 곳을 방문하여 팔고 이 배자에 따라 명문을 작성해 주라는 배자이다.

## 386. 1719년 배중화裵重華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五十八年己亥十二月二十日 裵重華處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祖先傳來 衿得耕食是如可 勢不已 求禮吐只面  
山亭員 菜字伏在番七卜五束 同字二作番十七卜五束 並庫七斗落只庫乙  
價折正租全參拾伍石 五禾雌牛一隻等 依數捧上爲遣 右人處 本文記二丈  
及牌字一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同生子孫中 更生雜談是去等  
將此文告官下正事

番主 故 鄭武赤 子 萬柱[着名]

證人 前別將 金善[着名]

筆 幼學 姜稷萬[着名]

강희 58년(1719, 숙종45) 기해년 12월 20일 배중화裵重華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조상에게서 전래해온 땅을 갖들해서 경작하여 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구례 토지면 산정山亭에 있는 채자菜字 소재 답밭 7복 5속과, 동자同字 2작 답밭 17복 5속 아울러 곳 7두락지 곳을 정조正租 전소 35석과 5년 된 암소 1척隻 등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2장과 배자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동생과 자손 중에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番主 : 고故 정무적鄭武赤의 자子 만주萬柱[착명]

증인證人 : 전별장前別將 김선金善[착명]

필筆 : 유학幼學 강직만姜稷萬[착명]

1719년 12월 20일에 고故 정무적鄭武赤의 아들 만주萬柱가 요용소치로 배중화裵重華에게 구례 토지면 산정山亭에 있는 채자답菜字밭 7복 5속과 동자同字 2작답 17복 5속, 합 7두락지 곳을 정조正租 전소 35석과 5년 된 암소 1척隻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선이 증인을 썼고 강직만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를 보면, 1698년 11월 15일에 정응청鄭應淸이 김용金龍에게 마가馬價 30필과 목면木綿 20

필, 정조正租 10석에 팔았고, 1698년 11월 15일에 상전上典 윤尹씨가 노비 귀손貴孫에게 땅을 팔아들 이라고 배자를 냈고, 1698년 11월 25일에 귀손貴孫이 정무적鄭武赤에게 숫소 1마리와 암소 1마리에 팔았다. 소유권 이전 과정을 보면, 정응청이 김용에게, 윤씨의 노 귀손이 정무적에게, 정무적 아들 만 주가 배종화에게 팔았다. 지급방식은 마가, 목면, 정조, 수소, 암소 등이 있다.

### 387. 1698년 김용金龍 토지명문土地明文

戊寅十一月拾伍日 金龍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上典宅入納馬匹價 卽爲  
 備給未由仍于 山亭伏在 柒畝二夜未[味] 七卜五束  
 又二夜未 拾七負等庫 七斗落良中 馬價參拾疋及木綿  
 貳拾疋 正租拾石 依數交易捧上爲遣 永永  
 放賣爲去乎 後此某人中 雜談爲去等 此明文  
 告官卞正爲乎矣 幸有他處放賣爲良置  
 本主處 准價放賣事  
 畝主 鄭應淸[左寸]  
 證人 鄭應淥[着名]  
 筆執 鄭應濟[着名]

무인년(1698, 숙종24) 11월 15일 김용金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상전덕上典宅에 납부해야 할 마필馬匹값을 비급備給할 길이 없으므로 산정山亭에 있는 7번답畝 2배미 7복 5속, 또 2배미 17부 등 곳 7두락지를 말 값으로 30필과 목면木綿 20필, 정조正租 10석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구히 방매한다. 이후에 어떤 사람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행여 다른 곳에 방매하더라도 본주本主에게 가격대로 방매할 일이다.

답주畝主 : 정응청鄭應淸[좌촌]

증인證人 : 정응록鄭應祿[작명]

필집筆執 : 정응제鄭應濟[작명]

1698년 11월 15일에 정응청鄭應淸이 김룡金龍에게 산정山亭 채자답 2배미 7복 5속, 또 2배미 17부 등 곳 7두락지를 말 값으로 30필과 목면木綿 20필, 정조正租 10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상전택에 납부해야할 말 값을 낼 길이 없어서 판다고 했다. 정응록이 증인을 썼고 정응제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388. 1698년 정무적鄭武赤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參拾柒年戊寅十一月貳拾伍日 鄭武赤前 明文  
右明文爲 上典宅故奴應淸亦 無后身死乙仍于 所耕田畝 依法推尋收獲是如可 移買計料爲去乎 求禮吐旨面  
菜字伏在畝柒卜伍束 字畝拾柒卜伍束等 合柒斗落只  
準價捧納 亦牌字教是乎等以 右人前 價折雄牛壹隻 雌牛  
壹隻以 依數捧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矣 本文記段 他田  
畝婢一口并付乙仍于 許給不得爲去乎 後次良中某人是乃  
幸有雜談是去等 此文記告官辨正相考事  
畝主 代奴 貴孫[左寸]  
證人 班奴 忠立[左寸]  
證保 趙年世  
筆執 韓有准[着名]

강희 37년(1698, 숙종24) 무인년 11월 25일 정무적鄭武赤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상전택上典宅 고故 노奴 응청應淸이 후사가 없이 죽었으므로

경작했던 전답田畝를 법에 따라 추심하여 수확收獲하다가 이매할 요량으로 구레 토지면 채자菜字답畝 7복 5속과 또 17복 5속 등, 합 7두락지를 준가準價대로 봉납捧納하고, 또 배자에 따라 위 사람에게 수 소 1척隻과 암소 1척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는 다른 전답에 노비 1구口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허급할 수 없다. 후차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행여 이익을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도록 상고할 일이다.

답주畝主 : 대노代奴 귀손貴孫[좌촌]

증인證人 : 반노班奴 충립忠立[좌촌]

증보證保 : 조연세趙年世[좌명]

필집筆執 : 한유준韓有准[좌명]

1698년 11월 25일에 대노代奴 귀손貴孫이 이매하기 위해 정무적鄭武赤에게 구레 토지면 채자菜字답畝 7복 5속과 또 17복 5속 등, 합 7두락지를 숫소 1척隻과 암소 1척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반노 충립이 증인을 썼고 조연세가 보증을 썼으며 한유준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89. 1736년 최개남崔介南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元年丙辰十月十五日 崔介南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自己<sup>227</sup>買得 積年耕食爲如  
可 要用所致以 勢不得已 求禮馬山面罷加坪伏在 月字  
田二作并太種玖斗落只 負數貳拾柒負參束庫乙 價  
折錢文拾伍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本文  
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某同生子孫族屬  
中 謀計雜談是去等 將此文記 告官下正爲乎事  
田主 卞龍白[着名]

227 원문에는 기(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쳤다.

證 外三寸 徐允徵[着名]

筆 朴再盛[着名]

건륭 1년(1736, 영조12) 병진년 10월 25일 최개남崔介南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구례 마산면馬山面 갓가평罷加坪 소재 월자전月字田 2작병 태종太種 9두락지, 부수 27부 3속 곳을 전문錢文 1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어떤 동생이나 자손 족속 중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변용백卞龍白[작명]

증證 : 외삼촌外三寸 서윤징徐允徵[작명]

필筆 : 박재성朴再盛[작명]

1736년 10월 25일에 변용백卞龍白이 요용소치로 최개남崔介南에게 구례 마산면馬山面 갓가평罷加坪 소재 월자전月字田 2작 태종太種 9두락지, 27부 3속 곳을 돈 1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외삼촌 서윤징이 증을 썼고 박재성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는 1715년 3월 7일에 김선흥金善興이 김사만金士萬에게 월자전月字田 30복 태종太種 9두락지 곳을 돈 42냥에 팔면서 작성한 것이 있다. 42냥하던 곳이 20년 후에 15냥이 되었는데 밭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390. 1715년 김사만金士萬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肆年乙未參月初柒日 金士萬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自己<sup>228</sup>買得 累年  
耕食爲如可 矣身之同生 鎮武番布無路乙仍于  
勢不得已 求禮馬山面罷加坪伏在月字田

負數參拾卜 太種玖斗落只庫乙 價折錢文肆  
拾貳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一  
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息同生族類中  
雜談隅有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金善興[着名]  
證保 黃禮伊[着名]  
證人 姜水哲[着名]  
筆執 山人 祐明[着名]

강희 54년(1715, 숙종41) 을미년 3월 7일 김사만金士萬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나의 동생 진 무(鎭武)의 번포(番布)를 낼 길이 없으므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구례 마산면(馬山面) 갓가평(加加坪) 소재 월자전(月字田) 부수로는 30복, 태종(太種) 9두락지인 곳을 전문(錢文) 42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자식과 동생 족류 중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김선흥(金善興) [착명]

증보(證保) : 황예이(黃禮伊) [착명]

증인(證人) : 강수철(姜水哲) [착명]

필집(筆執) : 산인(山人) 우명(祐明) [착명]

1715년 3월 7일에 김선흥(金善興)이 김사만(金士萬)에게 구례 마산면(馬山面) 갓가평(加加坪) 소재 월자전(月字田) 30복 태종(太種) 9두락지 곳을 돈 4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매도 이유는 동생 진무(鎭武)의 번포를 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강수철이 증인을 썼고 황예이가 보증을 썼으며 산인(山人) 우명(祐明)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228 원문에는 기(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쳤다.

### 391. 1727년 변용백卞龍白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伍年丁未閏三月十一日 卞龍白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亦自己<sup>229</sup>賣得 累年耕食  
爲如可 貧寒所致以 勢不得只 馬山面罷加坪員  
伏在 月田太種九斗落只 卜數二十三卜一束 同字  
田九卜庫乙 價折錢文廿四兩以 依數交易捧上  
爲遣 右人前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某同生子孫中 行有雜談爲去等 此  
文記告官卞正事  
田主 梁世重[着名]  
證人 禹廷良[着名]  
筆執 李培聖[着名]

옹정 5년(1727, 영조3) 정미년 윤3월 11일 변용백卞龍白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빈한<sup>貧寒</sup>한 까  
닭으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마산면<sup>馬山面</sup> 갓가평<sup>罷加坪</sup> 소재 월자전<sup>月字田</sup> 태종<sup>太種</sup> 9두락지, 복수 23  
복 1속과 동자전<sup>同字田</sup> 9복 곳을 전문<sup>錢文</sup> 24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  
기<sup>本</sup>문<sup>文</sup>記<sup>記</sup>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동생과 자손 중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sup>文記</sup>  
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sup>田主</sup> : 양세중<sup>梁世重</sup>[착명]

증인<sup>證人</sup> : 우정량<sup>禹廷良</sup>[착명]

필집<sup>筆執</sup> : 이배성<sup>李培聖</sup>[착명]

---

229 원문에는 기(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쳤다.



1727년 윤3월 11일에 양세중梁世重이 빈한한 소치로 변용백下龍白에게 마산면馬山面 갓가평罷加坪 소재 월자전月字田 태종太種 9두락지, 복수로는 23복 1속과 동자전同字田 9복 곳을 돈 24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우정량이 증인을 썼고 이배성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92. 1721년 족하族下 정걸이鄭乞伊 정수섭鄭水燮 화회명문和會明文

康熙六十年辛丑十二月十九日 族下 鄭乞伊 鄭水燮處 明文  
右明文爲和會事 矣四寸大父衿下畚庫 菜  
字二作並七十三卜五束內 上邊八斗落只 負數  
三十六卜八束庫乙 彼此同姓<sup>230</sup>之間 累度相訟翻覆  
爲白如可 二十年當爲呈議送到付種種 則矣長三  
寸言說論理 則彼此族屬之間和會 畧干病木價  
錢文四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等處 矣祖  
父同姓四寸鄭東堤果 和會文記一丈 兩邊官作財主  
立案段 他田畚並付仍于 永永許給爲去乎 日後  
良中 雜談爲去乙等 此文記相考告官下  
正事  
和會主 同姓 長三寸 鄭時泰[着名]  
筆 同姓 族下 鄭善才[着名]

강희 60년(1721, 경종1) 신축년 12월 19일 족하族下 정걸이鄭乞伊 정수섭鄭水燮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은 화회를 하는 일이다. 나의 사촌 대부大父가 깃득한 답畚 곳인 채자菜字 2작병 73복 5속

---

230 원문에는 피차동성(彼此同性)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이하 몇 곳도 마찬가지로 고쳤다.

중에, 상변上邊 8두락지, 부수로는 36복 8속 곳을 피차 동성 간에 수차례 서로 송사를 반복하였다. 20년 동안에 의송議送<sup>231</sup>과 도부到付<sup>232</sup>를 올린 것이 여러 차례였는데, 나의 장삼촌長三寸이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피차 족속간에 회회를 하기로 하고, 약간의 병목값을 전문錢文 4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들에게는 나의 조부의 동성 사촌인 정동제鄭東堤에게 회회문기<sup>和會文記</sup> 1장을 [양쪽 관작재주<sup>官作財主</sup> 입안立案은 다른 전답에 붙어있어서 허급할 수 없음] 영구히 허급한다. 훗날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sup>文記</sup>를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회회주<sup>和會主</sup> 동성 장삼촌<sup>長三寸</sup> 정시대<sup>鄭時泰</sup> [작명]

필<sup>筆</sup> 동성 족하<sup>族下</sup> 정선재<sup>鄭善才</sup> [작명]

1721년 12월 19일에 회회주 정시대<sup>鄭時泰</sup>가 족하<sup>族下</sup> 정걸이<sup>鄭乞伊</sup>와 정수섭<sup>鄭水燮</sup>에게 채자답<sup>菜字畓</sup> 2작 73복 5속 중에 상변上邊 8두락지, 36복 8속 곳을 돈 4냥에 허급하는 문서이다. 사촌 대부가 깃든 채자답 8두락지에 대해 수차례 송사를 반복하다가 회회를 한 것이다. 족하 정선재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393. 1723년 조익화<sup>趙益華</sup> 토지명문<sup>土地明文</sup>

雍正元年癸卯二月拾肆日 幼學 趙益華氏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要用所致以 自己<sup>233</sup>買得 耕食爲如乎  
 求禮吐旨面皂川員伏在 菜字畓柒斗落只 二作并貳拾  
 柒負陸束伍夜味 己亥鄭無赤名懸帳兩庫乙 價折錢文  
 壹百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參丈. 牌字一

231 의송(議送) 백성이 고을 원의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였을 때 다시 관찰사에게 하는 상소를 말한다.

232 도부(到付) 관찰사는 민장(民狀)을 받으면 청원 내용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 군현 지방관에게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제김(題音)을 민장에 써서 청원자에게 돌려주었고, 청원자는 자신이 직접 관찰사의 제김을 해당 군현의 지방관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절차를 '도부(到付)'라고 하였다.

233 원문에는 기(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쳤다.

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子孫族類中 若有雜  
談爲去等 將此文記并以 告官卜正事

畚主 裴重華[着名]

證人 孫以華[着名]

證保 鄭秀永[着名]

筆執 鄭時泰[着名]

응정 1년(1723, 경종3) 계묘년 2월 14일 유학幼學 조익화趙益華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낱히 필요한 곳이 있으므로 자기매득하여 경작하여 먹은 구  
례 토지면吐旨面 작천<sup>작천</sup> 소재 채자답<sup>채자답</sup> 7두락지, 2작병 27부 6속 5배미가 기해년 양안에 정무적  
鄭無赤 이름으로 기록된 두 곳을 전문錢文 10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  
기本文記 3장과 배지牌字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후차에 자손과 족류 중 이의를 제기한다  
면 이 문기文記를 첨부하여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배중화裴重華[작명]

증인證人 : 손이화孫以華[작명]

증보證保 : 정수영鄭秀永[작명]

필집筆執 : 정시태鄭時泰[작명]

1723년 2월 14일에 배중화裴重華가 요용소치로 조익화趙益華에게 구례 토지면吐旨面 작천에 있는  
채자답<sup>채자답</sup> 7두락지, 2작 27부 6속 5배미, 기해년 양안에 정무적鄭無赤 이름으로 기록된 곳을 돈  
10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손이화가 증인을 썼고 정수영이 보증을 썼으며 정시태가 문서  
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 보면 1719년 12월 20일에 고故 정무적鄭武赤의 아들 만주萬柱가 배중화裴  
重華에게 구례 토지면 채자답<sup>채자답</sup> 7두락지를 정조正租 전소 35석과 5년 된 암소 1척雙에 팔았다.

### 394. 1783년 노奴 용남龍男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八年癸卯二月初十日 柳令監宅 奴 龍男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上典宅牌字導良 求禮吐旨九萬  
坪伏在 菜字番柒斗落只 卜數二十七負七束塵  
價折錢文壹百貳拾兩 依數交易捧上爲  
遣 右處 本文果牌字一丈并以 永永放賣爲去  
乎 此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  
官卞正事  
番主 奴 廷華[左寸]  
證 黃聖澄[着名]  
筆 幼學 朴夏邦[着名]

건륭 48년(1783, 정조7) 계묘년 2월 초10일 유영감택柳令監宅 노奴 용남龍男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상전택 배자牌字에 따라 구례 토지면 구만九萬에 있는 채자답菜字番 7두락지, 복수로는 27부 7속 곳을 전문錢文 12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배자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차후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番主 : 노奴 정화廷華[좌촌]

증證 : 황성징黃聖澄[작명]

필筆 : 유학幼學 박하방朴夏邦[작명]

1783년 2월 10일에 노비 정화廷華가 상전택의 배자에 따라 유영감택柳令監宅의 노奴 용남龍男에게 구례 토지면 구만九萬에 있는 채자답菜字番 7두락지, 27부 7속 곳을 돈 12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서이다. 황성징이 증證을 썼고 박하방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95. 1724년 이희증李希曾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二年甲辰十二月廿五日 幼學 李希曾 前明文  
右明文爲段 移買次 自己買得是在  
在於吐旨面門前員 鋏字畝九斗落  
只內 下邊肆夜味 陸斗落只 負  
數廿八負五束庫乙 價折錢文肆  
拾陸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  
前本文記六丈并以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相考  
告官卞正事  
畝主 自筆 幼學 朴挺泰[着名]

용정 2년(1724, 경종4) 갑진년 12월 25일 유학幼學 이희증李希曾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하기 위해 자기매득한 땅인 토지면 문전門前에 있는 검자답鋏字畝 9두락지 중에 하변下邊 4배미夜味 6두락지, 부수로는 28부 5속인 곳을 전문錢文 46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6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박정태朴挺泰[착명]

1724년 12월 25일에 박정태朴挺泰가 이매하기 위해 이희증李希曾에게 토지면 문전門前에 있는 검자답鋏字畝 9두락지 가운데 하변下邊 4배미 6두락지, 부수로는 28부 5속인 곳을 돈 46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정태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토지면 검자답의 구분기를 살펴보면, 1687년 2월 5일에 이무흥李武興이 김응선金應善에게 구례 토지吐旨 문전門前 검자답鋏字畝 5두락지, 20복 2속과 2작답 1복 등 곳을 정조正租 전소 3석에 팔았고, 임오년(1702년) 윤11월 29일에 조몽현趙夢見이 이명생李明生에게 검자답鋏字畝 1배미 3두락지 곳과 동자답同字畝 3배미 6두락지, 28복 5속 곳을 정목면 80필에 팔았고, 1703년 12월 20일에 김두홍金斗

弘이 옥명玉明에게 검자답銀字畓 4두락지 14부 6속 곳을 나락 전초 35석에 팔았으며, 1706년 1월 25일에 김두홍金斗弘이 승僧 옥명玉明에게 검자답銀字畓 5두락지 내의 하변下邊 2배미 3두락지, 22부 2속 곳을 정조正祖 12석과 전문錢文 15냥에 팔았고, 1708년 1월 24일에 김두홍金斗弘이 승僧 옥명玉明에게 검자답銀字畓 5두락지 20부 2속 내의 상변上邊답 2두락지 8부 2속 곳을 정조正祖 8석과 돈 11냥에 팔았고, 1718년 2월 7일에 장우선張遇善이 박정태朴挺泰에게 검자답銀字畓 6배미 9두락지 14복 6속과 2작 20복 2속을 돈 140냥에 팔았고, 1724년 5월 29일에 박정태朴挺泰가 이희증李希曾에게 검자답銀字畓 9두락지 가운데 상변上邊 2두 5도락지, 부수로 11부 3속 곳을 돈 19냥에 팔았고, 1724년 12월 25일에 박정태朴挺泰가 이희증李希曾에게 검자답銀字畓 9두락지 가운데 하변下邊 4배미 6두락지 28부 5속 곳을 돈 46냥에 팔았다.

### 396. 1724년 이희증李希曾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二年甲辰五月廿九日 幼學 李希曾 前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以 自己買得是  
 在 吐旨面門前員伏在 銀字今種  
 玖斗落只內 上邊貳斗伍刀落只  
 負數拾壹負參束庫乙 價折錢文  
 拾玖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前  
 永永放賣爲有矣 本文記段 他田畓  
 並付乙仍于 不得許給爲乎 背後交  
 周爲去乎 日後子孫中 雜談是去等  
 相考告官下正事  
 畓主 自筆 幼學 朴挺泰[着名]

옹정 2년(1724, 경종4) 갑진년 5월 29일 유학幼學 이희증李希曾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때하기 위해 자기매득한 토지면 문전門前에 있는 검자銀

字답 금종今種 9두락지 가운데 상변上邊 2두 5도락지, 부수 11부 3속 곳을 전문錢文 19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에 붙어 있으므로 허급하지 않고 뒤쪽에 효주爻周한다. 훗날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유헌幼學 박정태朴挺泰[착명]

1724년 5월 29일에 박정태朴挺泰가 이매하기 위해 이희증李希曾에게 토지면 문전門前 에 있는 검자답鉞字畝 9두락지 가운데 상변上邊 2두 5도락지, 11부 3속인 곳을 돈 19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정태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397. 1718년 박정태朴挺泰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柒年戊戌貳月初柒日 幼學 朴挺泰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sup>234</sup>買得 耕食爲如可 移買次 求禮  
吐旨面門前員伏在 鉞字畝陸夜味 玖斗落只 卜數拾肆卜  
陸束 二作二十卜二束 明生帳庫乙 價折錢文壹百  
肆拾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五丈并以 右人  
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雜爲去等 此文記  
相考告官卞正事  
畝主 張遇善[着名]  
證人 五寸姪 孫以華[着名]  
證保 五寸姪 李時汗[着名]  
筆 幼學 黃晞[着名]

---

234 원문에는 기(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쳤다.

강희 57년(1718, 숙종44) 무술년 2월 7일 유학幼學 박정태朴挺泰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이매하기 위하여 구례군 토지면 문전門前에 있는 검자답鉞字畓 6배미 9두락지, 복수 14복 6속과 2작 20복 2속 [명생明生의 이름으로 양안에 있는] 곳을 전문錢文 14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5장을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장우선張遇善 [작명]

증인證人 : 오촌질五寸姪 손이화孫以華 [작명]

증보證保 : 오촌질五寸姪 이시한李時汗 [작명]

필筆 : 유학幼學 황주黃晈 [작명]

1718년 2월 7일에 장우선張遇善이 이매하기 위해 박정태朴挺泰에게 구례군 토지면 문전門前에 있는 검자답鉞字畓 6배미 9두락지, 14복 6속과 2작 20복 2속 곳을 돈 14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오촌 조카 손이화가 증인을 썼고, 오촌 조카 이시한이 보증을 썼으며 황주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398. 1708년 승僧 옥명玉明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柒年戊子正月貳拾肆日 僧 玉明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要用所致以 父主自己買得矣衿下

累年耕食爲如可 勢不得已 吐旨坪門前伏在 鉞字畓伍斗

落只 卜數貳拾負貳束內 上邊畓貳斗落只 卜數捌負貳束庫

乙 價折正租捌石錢文拾壹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僧前 永

永放賣爲去乎 本文記并以 傳給爲去乎 後日良中 子息族類中

如有雜談爲去等 此文記相考告官卞正爲乎事

畓主 金斗弘[着名]

筆執 金尙白[着名]



강희 47년(1708, 숙종34) 무자년 1월 24일 승僧 옥명玉明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부친이 자기매득한 것을 내가 깃득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형세가 부득이 하여 토지평吐旨坪 문전門前 소재 검자답鉞字畓 5두락지 복수 20부 2속 내의 상변上邊 답 2두락지, 복수 8부 2속 곳을 정조正租 8석과 전문錢文 11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승僧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本文記는 첨부하여 전급傳給한다. 후일에 자식이나 족류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김두홍金斗弘[착명]

필집筆執 : 김상백金尙白[착명]

1708년 1월 24일에 김두홍金斗弘이 요용소치로 승僧 옥명玉明에게 토지평吐旨坪 문전門前 소재 검자답鉞字畓 5두락지 20부 2속 내의 상변上邊 답 2두락지 8부 2속 곳을 정조正租 8석과 돈 11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상백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399. 1687년 김응선金應善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貳拾陸年丁卯二月初五日 金應善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要用所致以 祖上衿得 耕食爲如可 勢不得已 求禮吐旨門前 鉞字畓伍斗落只 卜數貳拾卜貳束 二作畓卜數一卜 等庫乙 價折正租全參拾石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 賣爲乎矣 本文記則他田畓并付乙仍于 傳給爲去乎 後次良中 子息同 生等中 雜談爲去等 此文相考告官下正事

畓主 李武興[着名]

證人 鄭壬吉[着名]

證保 鄭秀卿[着名]

筆執 金廷顯[着名]

강희 26년(1687, 숙종13) 정묘년 2월 5일 김응선金應善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간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조상으로부터 깃들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구례 토지吐旨 문전門前 검자답鋤字畓 5두락지 복수 20복 2속, 2작답 복수 1복 등 곳을 정조正租 전소 3석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에 붙어 있으므로 전급해 준다. 후차에 자식과 동생 등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이무흥李武興 [작명]

증인證人 : 정임길鄭壬吉 [작명]

증보證保 : 정수경鄭秀卿 [작명]

필집筆執 : 김정현金廷顯 [작명]

1687년 2월 5일에 이무흥李武興이 요용소치로 김응선金應善에게 구례 토지吐旨 문전門前 검자답鋤字畓 5두락지 20복 2속, 2작 답 1복 등 곳을 정조正租 전소 3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정임길이 증인을 썼고 정수경이 보증을 썼으며 김정현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00. 1706년 승僧 옥명玉明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伍年丙戌正月貳拾伍日 僧 玉明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父自己<sup>235</sup>買得 累年耕食爲白如可 爲人子以貧寒所致 以 勢不得已 求禮吐旨門前員伏在 劔字畓伍斗落只內 下邊貳夜味 參斗落只 負數則拾貳負貳束庫乙 價折正租拾貳石錢文拾伍 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壹丈并以 右僧處 永永放賣爲去乎 若有 子孫中 如有雜談爲去等 此文記相考告官下正重罪施行事

---

235 원문에는 기(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쳤다.

畚主 金斗弘[着名]

證 異姓五寸 金順業[着名]

證 孫以華[着名]

筆執 金尙伯[着名]

강희 45년(1706, 숙종32) 병술년 1월 25일 승僧 옥명玉明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사람의 자식된 자로서 빈한貧寒한 까닭에 형세가 부득이하어 구례 토지吐旨 문전門前 소재 검자답劔字畓 5두락지 내의 하변下邊 2배미 3두락지, 부수 22부 2속 곳을 정조正租 12석과 전문錢文 1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 1장을 첨부하여 위 승僧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만약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상고하여 중죄로 정하고 시행할 일이다.

답주畚主 : 김두홍金斗弘[착명]

증證 : 이성異姓 오촌五寸 김순업金順業[착명]

증證 : 손이화孫以華[착명]

필집筆執 : 김상백金尙伯[착명]

1706년 1월 25일에 김두홍金斗弘이 빈한한 소치로 승僧 옥명玉明에게 구례 토지吐旨 문전門前 소재 검자답劔字畓 5두락지 내의 하변下邊 2배미 3두락지, 22부 2속 곳을 정조正租 12석과 전문錢文 1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순업과 손이화가 증證을 썼고 김상백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01. 1702년 이명생李明生 토지명문土地明文

壬午閏至月二十九日 正兵 李明生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要用所致以 妻邊祖上傳來

爲有在 吐旨門前員伏在 劔字畓 一夜味三斗落

只庫 及同員同字畚 三夜味陸斗落只 負數廿八卜  
 五束等庫良中 價折正木綿八十疋以論納內  
 前日妻父鄭文 四五年番布 參拾餘疋計除爲  
 遣 其餘木肆拾伍疋乙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子息中 雜談隅  
 有是去乙等 將此文記 告官下正爲乎事  
 自筆 畚主 喪人 趙夢見[着名]  
 證人 同壻 正兵 朴元世[左寸]  
 證保 正兵 金厚男[着名]

임오년(1702, 숙종28) 윤11월 29일 정병正兵 이명생李明生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처가쪽의 조상으로부터 전래해온 토지吐旨 문전門前 소재 검자답劍字畚 1배미 3두락지 곳과 같은 곳의 동자답同字畚 3배미 6두락지, 부수 28복 5속 등 곳을 정목면正木錦 80필로 가격을 정하여 납부를 논하였는데, 그 속에서 전일 처의 부친 정문鄭文이 4~5년간 밀린 번포番布 30여필을 계산하여 제하고, 그 나머지 목木 45필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구히 방해한다. 후차 자식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畚主 : 상인喪人 조몽현趙夢見[착명]  
 증인證人 : 동서同壻 정병正兵 박원세朴元世[좌촌]  
 증보證保 : 정병正兵 김후남金厚男[착명]

임오년(1702) 윤11월 29일에 조몽현趙夢見이 요용소치로 이명생李明生에게 토지吐旨 문전門前 소재 검자답劍字畚 1배미 3두락지 곳과 같은 곳의 동자답同字畚 3배미 6두락지, 28복 5속 곳을 정목면 80필로 정하여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위 땅은 처가로부터 깃득한 곳이고, 정목 80필 중에 처부가 4~5년간 밀린 번포 값으로 35필을 제하고 45필만 받기로 하고 판 것이다. 박원세가 증인을 썼고 김후남이 보증을 썼다. 답주 조몽현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조몽현은 상중인데도 상불착喪不着이라고 하지 않고 착명하였다.

검자답의 매매는 1687년부터 1724년에 거래되었는데 이 시기의 임오년은 1702년으로 추정된다.

## 402. 1703년 승僧 옥명玉明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四十貳年癸未十二月貳拾日 玉明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祖上傳來 耕食爲白如可 還  
上米租兩數備納仍于 勢不得已 門前員伏在  
釵字番肆斗落只 負數拾肆負陸束庫乙  
價折租全參拾伍石以 依數交易上捧爲遣 右  
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燒火立案并  
付仍于 不給爲去乎 後次良中 某同生子息族類等  
是乃 雜談爲去等 此文記內用良 告官辦政事  
番主 金斗弘[着名]  
證人 同姓 三寸 金項益[着名]  
證保  
筆執 趙位京[着名]

강희 42년(1703, 숙종29) 계미년 12월 20일 옥명玉明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조상으로부터 전래해온 것을 경작하여 먹다가 환자還上의 미조米租와 돈의 수數를 갖추어 납부해야 하므로 형세상 부득이하여 문전門前 소재 검자답釵字番 4두락지, 부수 14부 6속 곳을 나락 전소 35석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는 소회燒火되고 입안이 병부되어 있으므로 주지 않는다. 후차에 어떤 동생이나 자식 족류 등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番主 : 김두홍金斗弘[착명]

증인證人 : 동성同姓 삼촌三寸 김항익金項益[착명]

증보證保

필집筆執 : 조위경趙位京[착명]

1703년 12월 20일에 김두홍金斗弘이 환자를 갖기 위해 옥명玉明에게 토지면 문전門前 소재 검자답

釵字畚 4두락지 14부 6속 곳을 나락 전소 35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 403. 1768년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三十三年戊子十一月十三日 內從 出身 李時華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買得是在

吐旨九萬村後伏在 奈字畚三斗落只

卜數十負六束庫乙 價折錢文肆拾伍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前本文記五

丈 及議送二丈所志二丈并以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雜談是去等 將此下正

事

畚主 表從 幼學 梁濟溟[着名]

證 幼學 朴憲鎮[着名]

筆 幼學 柳台龜[着名]

건륭 33년(1768, 영조44) 무자년 11월 13일 내종內從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스스로 매득한 토지 구만촌九萬村 뒤에 있는 내자답奈字畚 3두락지, 복수 10부 6속 곳을 전문錢文 4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5장과 의송議送 2장, 소지所志 2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표종表從 유학幼學 양제명梁濟溟[작명]

증證 : 유학幼學 박헌진朴憲鎮[작명]

필筆 : 유학幼學 유태구柳台龜[작명]

1768년 11월 13일에 양제명梁濟溟이 요용소치로 내중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토지면 구만촌九萬村의 내자답奈字畓 3두락지, 10부 6속 곳을 돈 4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헌진이 증證을 썼고 유태구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를 통해 보면, 내자답 3두락지는 1727년 2월 29일에 승려 낭연朗演과 계순戒順과 경연敬演과 찬민贊敏이 김해일金海日에게 내자답奈字畓 20부 4속과 해자답海字畓 2부 7속, 모두 6두락지 곳을 돈 42냥에 팔았고, 1739년 6월 2일에 김수명金守命이 김해준金海俊에게 내자답奈字畓과 해자답海字畓 3작 23복 2속 6두락지 내 하변下邊 동쪽 작은 2배미 합 3배미 1두 5승락지 가운데 6복 곳을 돈 15냥에 팔았고, 1741년 6월 7일에 김수명金守命이 김진경金震慶에게 내자奈字 35번답 20복 4속과 36번답 1복 6속, 해자海字 41번답 1복 22속 3작병 23복 2속 가운데 3복 9속 곳의 답 6두락지 가운데 동쪽 1두락지 1배미 곳을 돈 6냥에 팔았고, 1768년 10월 20일 김진광金珍光 처妻 마조이馬召史가 양제명梁濟溟에게 구만촌九萬村 뒤쪽 내자답奈字畓 3두락지 10복 6속 곳을 돈 45냥에 팔았다. 소유권 이전 과정을 보면, 승려 낭연 등이 김해일에게, 김태회가 김해일에게, 김수명이 김해준에게, 김수명이 김진경에게, 김진광 처가 양제명에게, 양제명이 이시화에게로 이동되었다. 지급방식은 주로 전문錢文으로 거래되었고 거래액수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 404. 1768년 양제명梁濟溟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三十三年戊子十月二十日 幼學 梁濟溟前 明文  
 右明文事段 女矣無後三寸買得畓 累年耕食是  
 如可 家夫生時放賣是乎乃 畓價二十九兩五錢不足  
 故加錢十五兩乙 捧上爲遣 本面九萬村後邊 奈字  
 畓三斗落只 卜數十卜六束庫乙 價折錢文合四十五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前本文記二丈議送  
 二丈所志三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告官卜呈事  
 畓主 故通德郎 金珍光妻 馬召史[右掌]  
 證人 朴命善  
 筆 婿 尹聖國[着名]

건륭 33년(1768, 영조44) 무자년 10월 20일 유학幼學 양제명梁濟溟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후사가 없는 삼촌이 매득한 답을 (깃득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방매하였으나 답밭의 가격이 29냥 5전이 부족하여 전錢 15냥을 더하여 받고, 본면 구만촌九萬村 뒤쪽 내자답奈字畓 3두락지, 복수 10복 6속 곳을 전문錢文 합 4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2장과 의송議送 2장, 소지所志 3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고 올릴 일이다.

답주畓主 : 고故 통덕랑通德郎 김진광金珍光 처妻 마조이馬召史[우장]

증인證人 : 박명선朴命善

필筆 : 서媿 윤성국尹聖國[작명]

1768년 10월 20일에 김진광金珍光 처妻 마조이馬召史가 양제명梁濟溟에게 구만촌九萬村 뒤쪽 내자답奈字畓 3두락지, 10복 6속 곳을 돈 4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남편이 생전에 방매하였을 때 다 받지 못한 돈 15냥을 합하여 받은 것이다. 박명선이 증인을 썼고 사위 윤성국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05. 1739년 김해준金海俊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年己未六月初二日 金海俊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衿得耕食爲如可 貧寒之人所

耕數多 他無對答乙仍于 不得已 本面奈海兩字

三作并二十三卜二束六斗落只內 下邊東頭小二夜味 合

三夜味 壹斗五升落只 負數內六卜庫乙 價折錢文拾

伍兩 捧上爲遣 都文記背後交周後 永永放賣

爲去乎 此後某族屬中 雜談之弊是去等 此文

告官卞正事

畓主 金守命[左寸]



證人

筆病人 金重天[着名]

건륭 4년(1739, 영조15) 기미년 6월 2일 김해준金海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깃득해서 경작하여 먹다가 빈한한 사람이 경작한 수가 많고 달리 대답할 길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본면 내奈자와 해海자의 양자兩字 3작병 23복 2속 6두락 지내 하변下邊 동쪽 작은 2배미 합 3배미 1두 5승락지 부수 내 6복 곳을 전문錢文 1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받고, 도문기都文記의 뒤쪽에 효주爻周 한 후에 영구히 방매한다. 이후 어떤 족속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김수명金守命 [좌촌]

증인證人

필筆 : 병인病人 김중천金重天 [착명]

1739년 6월 2일에 김수명金守命이 빈한 소치로 김해준金海俊에게 토지면 내자답奈字畵과 해자답海字畵 3작병 23복 2속 6두락지 내 하변下邊 동쪽 작은 2배미 합 3배미 1두 5승락지 가운데 6복 곳을 돈 1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중천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06. 1741년 김진경金震慶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六年辛酉六月初七日 同姓 四寸弟 金震慶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衿得耕食爲如可 貧寒所致以  
不得已 皂子川奈字 卅五廿卜四束 卅六一卜六束 海字  
四十一壹卜二束 三作并二十三卜二束內 三卜九束庫畵六斗落只  
內 東邊壹斗落只壹夜味庫乙 價折錢文六兩 捧上  
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畵

并付乙仍于 不得出給是遣 都文書段 背<sup>236</sup>後爰周爲  
旅 日後同生子孫中 雜談是去等 此文告官下  
正事  
番主 四寸兄 金守命[右寸]  
證人 朴夏永  
保 文德昌  
筆 徐致載[著名]

건륭 6년(1741, 영조17) 신유년 6월 7일 동성同姓 사촌제四寸弟 김진경金震慶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깃득해서 경작하여 먹다가 빈한한 까닭으로 부득이하  
여 잔자천<sup>잔자천</sup> 내자<sup>내자</sup> 35번답 20복 4속과 36번답 1복 6속과 해자<sup>해자</sup> 41번답 1복 22속, 3작병 23  
복 2속 가운데 3복 9속 곳의 답 6두락지 가운데 동쪽 1두락지 1배미 곳을 전문<sup>전문</sup> 6냥으로 가격을 정  
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는 다른 전답에 병부되어 있으므로 출급하지 않고,  
도문기<sup>도문기</sup>는 뒤에 효주<sup>효주</sup>한다. 훗날 동생과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  
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sup>답주</sup> : 사촌형四寸兄 김수명金守命[우촌]  
증인<sup>증인</sup> : 박하영朴夏永  
보<sup>보</sup> : 문덕창文德昌  
필<sup>필</sup> : 서치재徐致載[작명]

1741년 6월 7일에 김수명金守命이 빈한 소치로 김진경金震慶에게 잔자천<sup>잔자천</sup>의 내자<sup>내자</sup> 35번답  
20복 4속과 36번답 1복 6속과 해자<sup>해자</sup> 41번답 1복 22속, 3작병 23복 2속 가운데 3복 9속 곳의 답 6  
두락지 가운데 동쪽 1두락지 1배미 곳을 돈 6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즉 이번에 매도한 것  
은 1두락지의 논에 해당된다. 박하영이 증인을 썼고 문덕창이 보증을 썼으며 서치재가 문서를 작성  
하였다.

---

236 원문에는 배(輩)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 407. 1729년 김해일金海日 불망기不忘記

己酉十月十一日 金海日處 不忘記  
右不忘記爲去乎 大概身亦谷寺位畚 當其時并  
作 而以去庚子改量時執 故右畚庫奈字  
卜束田段 矣名懸量是遣 同員海字四十一畚一卜二束  
段 矣子名必大懸量是如乎 此付量名是如 雜  
談是良置 卜正次以 不忘成給爲去乎  
相考卜正事  
不忘主 金日中 改名 泰輝[着名]  
筆執 金順亨[着名]

기유년(1729, 영조5) 10월 11일 김해일金海日에게 주는 불망기不忘記

이 불망기不忘記를 작성하는 것은 대개 내가 곡사谷寺의 위답位畚(위토답)을 그 당시에 병작하다가 지난 경자년에 양안을 고칠 때 시집時執<sup>237</sup>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답의 내자奈字 복속은 나의 이름으로 양안에 기록되었고, 같은 곳의 해자海字 41번답 1복 2속은 나의 아들 이름인 필대必大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기에 이런 양명量名<sup>238</sup>을 부치니, 이의를 제기할 때 바로 잡기 위해 불망기를 성급하니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불망주不忘主 : 김일중金日中 개명改名 태휘泰輝[착명]

필집筆執 : 김순형金順亨[착명]

기유년(1729) 10월 11일에 김태휘金泰輝가 김해일金海日에게 주는 불망기不忘記이다. 절의 위답을 경작하다가 경자년에 양안을 고칠 때 내자답과 해자답이 자신과 아들 이름으로 기록되게 되었기에 이런 양안 이름을 부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김태휘의 개명전 이름은 김일중金日中이었고 김순형이

---

**237 시집(時執)** 남의 노비와 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238 양명(量名)** 양안(量案)에 기재하는 기주(起主)의 성명이다.

문서를 작성하였다.

## 408. 1720년 연곡사連谷寺 삼강三綱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十玖年庚子正月二十六日 連谷寺內 三綱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要用所致以 矣自己<sup>239</sup>賣得  
西面加山坪里伏在 稱字畚下片三夜三斗落只 卜數六卜  
七束庫 價折錢文拾伍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段 他田  
畚并付以乙仍于 不給爲去乎 日後雜談爲去乙等 此文  
以告官卞正事

畚主 崔貴玄[着名]

證保人 韓茂信[着名]

筆執 崔溢周[着名]

강희 59년(1720, 숙종46) 경자년 1월 26일 연곡사連谷寺 삼강三綱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내가 자기매득한 서면西面 가산 평리加山坪里 소재 칭자답稱字畚 아래쪽 3배미 3두락지, 복수 6복 7속 곳을 전문錢文 1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에 병부되어 있으므로 주지 않는다. 훗날 이익을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최귀현崔貴玄[작명]

증보인證保人 : 한무신韓茂信[작명]

필집筆執 : 최일주崔溢周[작명]

---

239 원문에는 기(記)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1720년 1월 26일에 최귀현崔貴玄이 요용소치로 연곡사連谷寺의 삼강三綱에게 서면西面 가산평리加山坪里 소재 칭자답稱字畓 아래쪽 3배미 3두락지 6복 7속 곳을 돈 1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한무신이 증인과 보증을 섰다. 최일주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409. 1727년 김해일金海日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伍年丁未二月二十九日 金海日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老寺中各項經役煩重岔不  
喻 切有用處 故自己買得 伏在於吐旨面 奈字畓  
二十負四束 及同員海字二負柒束 二作并陸斗落  
只庫乙 價折錢文肆拾貳兩以 依數交易捧上爲  
遣 右人處 本文記并以 永放賣爲去乎 日後  
良中 某寺中及所任等 雜談之弊是  
去等 將此文記內用良 告官卞正爲乎事  
畓主 三綱 首僧 朗演[着名]  
三寶 戒順[着名]  
持寺 敬演[着名]  
各房訓將 贊敏[着名]  
前住持 釋宗一[着名][署押]  
時住持 釋太玄[着名][署押]  
公證 自一[着名] 尙一[着名] 具慧[着名]  
時公言 朗裕[着名]  
時書記 開演[着名]  
筆執 僧 處養[着名]

옹정 5년(1727, 영조3) 정미년 2월 29일 김해일金海日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늙어 사중의 각 향이 번다함이 심할 뿐 아니라 긴히 필요한 곳이 있으므로 자기매득한 토지면에 소재한 내자답奈字畓 20부 4속과 같은 곳에 있는 해자海字 2부 7속, 2작병 6두락지 곳을 전문 42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어떤 사중寺中과 소임所任 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삼강三綱 수승首僧 낭연朗演[작명]

삼보三寶 계순戒順[작명]

지사持寺 경연敬演[작명]

각방훈장房訓狀 찬민贊敏[작명]

전주지前住持 : 석종일釋宗一[작명][서업]

시주지時住持 : 석태현釋太玄[작명][서업]

공증公證 : 자일自一[작명] 상일尙一[작명] 구혜具慧[작명]

시공언時公言 : 낭유朗裕[작명]

시서기時書記 : 개연開演[작명]

필집筆執 : 승僧 처양處養[작명]

1727년 2월 29일에 승려 낭연朗演 등이 요용소치로 김해일金海日에게 토지면 내자답奈字畓 20부 4속과 해자답海字畓 2부 7속, 2작병 6두락지 곳을 돈 4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이전 주지 석종일과 현 주지 석태현이 착명하였고, 승려 자일과 상일과 구혜가 공증하였으며, 현 공언 낭유와 현 서기 개연이 착명하였다. 승려 처양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10. 1788년 노奴 한이閑伊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三年戊申二月二十日 奴 閑伊處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吐旨面竹川坪加

耕員 金字畚二斗落只 卜數八負五束  
庫乙 價折錢文貳拾兩 依數捧上 本文  
記并以 右處永永放賣 日後如有  
雜談是去等 以此下正事  
畚主 朴生員宅 奴 占卜  
筆 朴光春[著名]

건륭 53년(1788, 영조12) 무신년 2월 20일 노비 한이關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토지면 죽천평竹川坪 가경加耕 땅 금자답金字畚 2두락지, 복수 8부 5속 곶을 전문錢文 2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것으로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박생원대朴生員宅 노비 점복占卜

필筆 : 박광춘朴光春[착명]

1788년 2월 20일에 박생원대의 노비 점복占卜이가 요용소치로 노비 한이關伊에게 토지면 죽천평竹川坪 가경加耕 땅의 금자답金字畚 2두락지, 8부 5속 곶을 돈 2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광춘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11. 1780년 유영장주댁柳營將主宅 노비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五年庚子正月二十九日 求禮 柳營將主宅 奴處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買得是在 石  
谷面勿金洞官字員 垆田三升落只 負數  
六束庫 草家二間并以 價折錢文參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永永放賣

爲乎矣 本文記一張并以 出給爲去乎 日後  
子孫及某人中 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下正事  
垞田主 盧漢位[着名]  
證人 呂業龍[着名]  
筆 幼學 柳星七[着名]

건륭 45년(1780, 정조4) 경자년 1월 29일 구례求禮 유영장주댁柳營將主宅 노누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자기매득한 석곡면石谷面 물금동勿金洞 관자官字대전垞田 3승락지, 부수 6속 곳과 초가 2칸을 아울러 전문錢文 3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 1장을 첨부하여 내준다. 훗날 자손과 어떤 사람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대전주垞田主 : 노한위盧漢位[착명]

증인證人 : 여업룡呂業龍[착명]

필筆 : 유학幼學 유성칠柳星七[착명]

1780년 1월 29일에 노한위盧漢位가 요용소치로 유영장댁柳營將宅의 노비에게 석곡면石谷面 물금동勿金洞 관자官字대전垞田 3승락지 6속 곳과 초가 2칸을 아울러 돈 3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여업룡이 증인을 썼고 유성칠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유영장은 유이주를 가리킨다.

## 412. 1766년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三十一年丙戌正月十七日 出身 李時華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買得 伏

在吐旨 霜字垞田 太種一斗二刀落只 卜數

三卜八束庫果 一田一斗落只 卜數三卜六束 三田二束塵



價折錢文十一兩 依數捧上爲遣 永永  
放賣爲旆 本文記段 他田畝并付乙  
仍于 不得許與爲去乎 日後如  
有雜談是去等 將此文告  
官下正事  
垞主 自筆 幼學 高德文[着名]

건륭 31년(1766, 영조42) 병술년 1월 17일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자기매득한 토지면 상지霜字 대전垞田 태종太種 1두 2도락지, 복수 3복 8속 곳과 1번전田 1두락지 복수 3복 6속과 3번전田 2속 곳을 전문錢文 11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구히 방매하며, 본문기는 다른 전답에 병부되어 있으므로 주지 않는다. 훗날 만일 이익을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대주垞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고덕문高德文[착명]

1766년 1월 17일에 고덕문高德文이 요용소치로 이시화李時華에게 토지면 상지霜字대전垞田 태종太種 1두 2도락지, 3복 8속 곳과 1번전田 1두락지 복수 3복 6속과 3번전田 2속 곳을 돈 11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고덕문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시화의 딸과 유덕호가 혼인하였다.

## 413. 1733년 박족상朴導尙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十一年癸丑二月二十五日 朴導尙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自己<sup>240</sup>買畝庫 本面大川員

---

240 원문에는 기(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露字參斗落只 卜數八卜 自耕爲如可 遠路乙仍  
于 家近移買次以 右人處 價折錢文拾柒  
兩 捧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 決得立案及  
本文記并以 傳給爲去乎 此後良中 雜談  
爲去等 相考卞正事  
畚主 朴枝華[着名]  
證人 金必三[着名]  
筆執 金順亨[着名]  
追記 右畚本明文貳丈段 官紙筒上 故不得推  
尋 不爲傳給印  
筆 金順亨[着名]

옹정 11년(1733, 영조9) 계축년 2월 25일 박죽상<sup>朴讜尙</sup>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한 논인 본면 대천<sup>大川</sup> 로자<sup>露字</sup> 3두락지 복수 8복을 스스로 경작하다가 길이 멀기 때문에 집 근처로 이매하기 위하여 위 사람에게 전문 17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받고, 영구히 방매하며, 승소판결 입안과 본문기를 첨부하여 전급한다. 이후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sup>畚主</sup> : 박지화<sup>朴枝華</sup> [작명]

증인<sup>證人</sup> : 김필삼<sup>金必三</sup> [작명]

필집<sup>筆執</sup> : 김순형<sup>金順亨</sup> [작명]

추기<sup>追記</sup> : 위 논의 본 명문 2장은 관<sup>官</sup>의 지통<sup>紙筒</sup>에 있으므로 추심할 수 없어서 전급하지 않음. 인<sup>印</sup>

필<sup>筆</sup> : 김순형<sup>金順亨</sup> [작명]

1733년 2월 25일에 박지화<sup>朴枝華</sup>가 이매하기 위해 박죽상<sup>朴讜尙</sup>에게 토지면 대천<sup>大川</sup>의 로자<sup>露字</sup>답<sup>畝</sup> 3두락지 8복을 돈 17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필삼이 증인을 썼고 김순형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14. 1779년 노奴 용봉龍奉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四十四年己亥正月三十日 柳營將宅 奴 就奉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自己買得是在 吐旨面

伏在 露字畓五斗落只 卜數十四負四束

庫乙 價折錢文伍拾伍兩 依數捧上

右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幸有雜談是去等 此文

卜正事

畓主 鄭正金[着名]

證 朴守根[着名]

筆 閑良 朴千年[着名]

건륭 44년(1779, 정조3) 기해년 1월 30일 유영장대柳營將宅 노奴 용봉龍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하기 위하여 자기매득한 토지면 소재 로자답露字畓 5두락지, 복수 14부 4속 곳을 전문錢文 5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자손 중에 행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정정금鄭正金[착명]

증證 : 박수근朴守根[착명]

필筆 : 한량閑良 박천년朴千年[착명]

1779년 1월 30일에 정정금鄭正金이 이매하기 위해 유영장대柳營將宅 노奴 용봉龍奉에게 토지면 소재 로자답露字畓 5두락지 14부 4속 곳을 돈 5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수근이 증證을 썼고 박천년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팔송정의 로자답 관련문서를 보면, 1768년 1월 27일에 우창재禹昌載가 최창우崔昌佑에게 로자답露字畓 5두락지 14부 4속 곳을 돈 45냥에 팔았고, 1773년 12월 17일에 박광춘朴光春이 정정금鄭正金에게 같은 곳을 돈 54냥에 팔았다. 소유권 이전과정을 보면, 우창재가 최창우에게, 박광춘이 정정금에

계, 정정금이 유명장택 노비 용봉에게로 전달되었다. 지급액은 1768년 45냥, 1773년 54냥, 1779년 55냥이었다.

## 415. 1773년 정정금鄭丁金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參拾捌年癸巳十二月十七日 鄭丁金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亦自己<sup>241</sup>買得 累年耕食爲多

可 要用所致 求禮吐旨面下大川八松亭員

伏在 露字番伍斗落只 卜數十四卜四束庫乙

價折錢文伍拾四兩 依數捧上爲遣 右人處

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良中

子孫中 雜談是去等 此文記

告官下正事

證人 朴光春[着名]

證參 朴東柱[着名]

自筆 崔<sup>242</sup>致祥[着名]

건륭 38년(1773, 영조49) 기사년 12월 17일 정정금鄭丁金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구례군 토지면 하대천下大川 팔송정八松亭 소재 로자답露字番 5두락지, 복수 14복 4속인 곳을 전문錢文 54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증인證人 : 박광춘朴光春[작명]

241 원문에는 기(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242 원문에는 최(催)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증참證參 : 박동주朴東柱[작명]

자필自筆 : 최치상崔致祥[작명]

1773년 12월 17일에 최치상崔致祥이 요용소치로 정정금鄭丁金에게 구례군 토지면 하대천下大川 팔송정八松亭 소재 로자답露字畓 5두락지, 14복 4속 곳을 돈 54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광춘이 증인을 썼고 박동주가 증참을 하였으며 최치상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415-1. 1768년 최창우崔昌佑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三十三年戊子正月二十七日 崔昌佑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祖先流來 積年耕食爲

如可 移買次 求禮吐旨面下大川八松亭

員伏在 露字畓伍斗落只 卜數十四卜四束塵

價折錢文肆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右

前決立案一度并以 傳給而永永放賣爲如乎 日後

族屬中 幸有雜談爲去等 將此文記告

官下正事

畓主 禹昌載[着名]

證 鄭廷金

筆 朴東紀[着名]

건륭 33년(1768, 영조44) 무자년 1월 27일 최창우崔昌佑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조상으로부터 유래해온 땅을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이매하기 위하여 구례군 토지면 하대천下大川 팔송정八松亭 소재 로자답露字畓 5두락지, 복수 14복 4속 곳을 전문錢文 4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승소판결 입안 1통을 첨부하여

전급하고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족속 중에 행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우창재禹昌載[작명]

증證 : 정정금鄭廷金[작명]

필筆 : 박동기朴東紀[작명]

1768년 1월 27일에 우창재禹昌載가 이매하기 위해 최창우崔昌佑에게 구례군 토지면 하대천下大川 팔송정八松亭 소재 로자답露字畝 5두락지, 14복 4속 곳을 돈 4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정정금이 증證을 썼고 박동기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416. 1721년 이희증李希曾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六十年辛丑二月十五日 幼學 李希曾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妻邊衿得畝 及同姓三寸  
叔前別得畝 耕食爲如乎 吐旨面九萬里槐亭子員  
伏在 奈字畝拾斗落只 玖夜味三作并貳拾玖負壹束庫  
乙 價折錢文壹百拾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肆丈 及別得文記一丈并以 永永放賣爲乎矣  
衿得畝本文記段 他田畝并錄乙仍于 不得許給爲  
去乎 日後子孫中 若有雜談之弊是去等 將此文記  
告官下正事

畝主 姜泰華[着名]

證人 同姓 三寸 姜善龜[着名]

證保 孫以華[着名]

筆 前判官 姜渭賓[着名]

강희 60년(1721, 경종1) 신축년 2월 15일 유학幼學 이희증李希曾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하기 위하여 처가쪽에서 깃득한 답쑤와 동성 삼촌숙에게 별득別得한 답쑤를 경작하다가 토지면 구만리九萬里 괴정자槐亭子 소재 내자답奈字畓 10두락지 9배미, 3작병 29부 1속인 곳을 전문 11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4장과 별득문기別得文記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깃득한 답쑤의 본문기는 다른 전답에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허급하지 않는다. 훗날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강태화姜泰華 [작명]

증인證人 : 동성삼촌同姓三寸 강선구姜善龜 [작명]

증보證保 : 손이화孫以華 [작명]

필筆 : 전 판관判官 강위빈姜渭賓 [작명]

1721년 2월 15일에 강태화姜泰華가 이매하기 위해 이희증李希曾에게 토지면 구만리九萬里 괴정자槐亭子 소재 내자답奈字畓 10두락지 9배미, 3작병 29부 1속 곳을 돈 11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삼촌 강선구가 증인을 썼고 손이화가 보증을 썼으며 강위빈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를 살펴보면, 1717년 2월 17일에 이유평李有國이 강선구姜善龜에게 5두락지 14부 5속 곳을 돈 75냥에 팔았고, 1718년 1월 15일에 삼촌숙三寸叔 강선구姜善龜가 조카 태화泰華에게 10두락지 29부 가운데 5두락지 14부 5속 곳을 허급하였다. 소유권은 이유평李有國 → 강선구姜善龜 → 강태화姜泰華 → 이희증李希曾으로 이동되었다.

## 417. 1718년 강태화姜泰華 별급명문別給明文

康熙伍拾柒戌戌正月拾伍日 姪子 泰華處 別給明文

右明文爲許與事 我爲無子 此姪當時奉

養至極 無他可給之物 自己<sup>243</sup>買得 耕食爲如乎

吐旨面九萬里槐亭子員伏在 奈字畓拾斗

落只 貳拾玖負內 下邊伍斗落只拾肆負伍束  
庫乙 永永許與爲旆 本文記肆張并以 許給爲  
去乎 鎮長耕食爲乎矣 日後如有雜談之人  
是去等 此文記告官下正事  
番主 同姓 三寸叔 姜善龜[着名]  
證人 同姓 五寸姪 姜萬昌[着名]  
筆執 林夏昌[着名]

강희57년(1718, 숙종44) 무술년 1월 15일 질자姪子 태화泰華에게 주는 별급別給 명문

이 명문을 허여許與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이 조카가 당시에 봉양이 지극하  
였고 달리 줄 만한 물건이 없어서 자기매득해서 경작하여 먹은 토지면 구만리 괴정자槐亭子 소재 내  
자답奈字畓 10두락지, 29부 내의 하변 5두락지 14부 5속 곳을 영구히 허여하며 본문기 4장을 첨부하  
여 허급하니 오래도록 경작하여 먹고, 훗날 이익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番主 : 동성同姓 삼촌숙三寸叔 강선구姜善龜[착명]

증인證人 : 동성同姓 오촌질五寸姪 강만창姜萬昌[착명]

필집筆執 : 임하창林夏昌[착명]

1718년 1월 15일에 삼촌숙三寸叔 강선구姜善龜가 조카 태화泰華에게 토지면 구만리 괴정자槐亭子  
소재 내자답奈字畓 10두락지 29부 가운데 하변 5두락지 14부 5속 곳을 허급하는 별급문기이다. 자식  
이 없는 삼촌을 봉양하여 땅을 허여받았다. 오촌 조카 강만창이 증인을 썼고 임하창이 문서를 작성하  
였다.

---

243 원문에는 기(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 418. 1717년 강선구姜善龜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伍拾陸年丁酉貳月拾柒日 姜善龜前 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以 妻邊衿得爲在 求禮吐旨九萬里槐亭子坪  
員伏在 奈字內畚下邊伍斗落只 拾肆負伍束 芝郎介帳庫良中  
價折錢文柒拾伍兩 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旆 本文記段 他田畚  
並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子孫中 如有雜談之弊是去等 此  
文記告官下正事  
畚主 李有國[着名]  
證保 金起福[着名]  
筆執 林夏昌[着名]

강희 56년(1717, 숙종43) 정유년 2월 17일 강선구姜善龜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하기 위하여 처妻 쪽에서 깃든한 구례 토지면 구만리 괴정자槐亭子 소재 내자답奈字畚 하변下邊 5두락지, 14부 5속인 곳, 살랑개耑郎介 이름의 양안에 있는 곳을 전문錢文 7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고, 본문기는 다른 전답이 병부되어 있으므로 허급하지 않는다. 훗날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이유국李有國[착명]

증보證保 : 김기복金起福[착명]

필집筆執 : 임하창林夏昌[착명]

1717년 2월 17일에 이유국李有國이 이매하기 위해 강선구姜善龜에게 구례 토지면 구만리 괴정자槐亭子 소재 내자답奈字畚 하변下邊 5두락지, 14부 5속 곳을 돈 7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기복이 보증을 섰고 임하창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19. 1697년 김억봉金億奉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參拾六年丁丑十一月十八日 弟 金億奉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亦長兄生時自己買得 耕食爲  
白如可 兄而奄得重病 仍爲宿疾以 未救身死之後 本  
無子息 故永葬五鬼 小大群所物出處無路乙仍于  
勢不得已 亡兄之物 槐亭子員 奈字畚二作并拾斗落只  
負數貳拾捌卜束庫乙 價折正租全拾石 正木貳疋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二丈并 永永放賣爲  
去乎 後次良中 某子息同生族類中 幸有雜談  
爲去等 將此文告官卜正事  
畚主 金億世[着名]  
金億宗[着名]  
證 妹夫 朴忠立[着名]  
筆 武學 申奉延[着名]

강희36년(1697, 숙종23) 정축년 11월 18일 제弟 김억봉金億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 큰형이 생전에 자기매득해서 경작하여 먹었는데 형이 갑자기 중병을 얻어 숙질宿疾이 되었다가 낫지 못하고 사망한 후, 본래 자식이 없기 때문에 오귀五鬼<sup>244</sup>를 장사지냈는데 크고 작은 여러 물건들이 나올 길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망형亡兄(죽은 형)의 물건인 괴정자槐亭子の 내지답奈字畚 2작병 10두락지, 부수로는 28복속 곳을 정조正租 전소 10석과 정목正木 2필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2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후차에 어떤 자식이나 동생, 족류 중에 행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김억세金億世[착명]

김억종金億宗[착명]

---

244 오귀(五鬼) 사람을 곤궁하게 만든다는 다섯 종류의 귀신, 즉 지궁(智窮), 학궁(學窮), 문궁(文窮), 명궁(命窮), 교궁(交窮)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궁하게 산 형을 말한다.

증證 : 매부妹夫 박충립朴忠立[작명]

필筆 : 무학武學 신봉연申奉延[작명]

1697년 11월 18일 김억세金億世와 김억중金億宗이 동생 김억봉金億奉에게 토지면 괴정자槐亭子の 내자답奈字畓 10두락지 28복 곳을 정조正租 전소 10석과 정목正木 2필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형이 병으로 죽었는데 자식이 없고 장사지낼 비용도 없어서 형의 땅을 팔았다. 매부 박충립이 증證을 썼고 신봉연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를 살펴보면, 1671년 2월 13일에 외사촌숙外四寸叔 이홍익李弘益과 김인백이 동생同生에게 괴정자원 내자답 10두락을 주는 문서를 작성하였고, 1682년 11월 18일에 서덕립徐德立 처妻가 승僧 양변良下에게 내자답奈字畓 10두락지 28부 속 곳을 정조正租 합 12석과 나락 6석 및 암소 1척에 팔았다.

## 420. 1682년 승僧 양변良下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貳拾貳年壬戌十一月十六日 僧 良下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女矣身當此凶年 連命及  
許多還上等他條以 無路仍于 女矣邊祖上  
傳來 衿得耕食爲在 槐亭子員 奈字畓二作并  
拾斗落只 卜數貳拾捌負束庫良中 價折正  
租全拾貳石 及租陸石丁雌牛壹隻等 依數交  
易捧上 同人亦中 本明文并以 永永放賣爲去乎  
萬一族類等中 雜談是去等 將此辭緣告官  
卜正爲乎事

畓主 翁徐德立妻氏[同女右寸]

證人 金仁白[着名]

證保 安日萬[着名]

筆執 李弘益[着名]

강희 21년(1682, 숙종8)<sup>245</sup> 임술년 11월 16일 승僧 양변良卞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이와 같은 흉년을 당하여 목숨을 부지하고 허다한 환자還上 등 다른 조목을 비납할 길이 없어서 내 쪽 조상으로부터 전래해온 땅을 갖들하여 경작하여 먹은 괴정자槐亭子の 내자답奈字畓 2작병 10두락지, 복수는 28부 속 곳을 정조정租 전 12석과 조租 6석 및 암소 1척 등으로 가격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본 명문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만일 족류들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가옹 서덕립徐德立의 처妻씨[동녀 우촌]

증인證人 : 김인백金仁白[작명]

증보證保 : 안일만安日萬[작명]

필집筆執 : 이홍익李弘益[작명]

1682년 11월 18일에 서덕립徐德立의 처妻가 환자 등을 갖기 위해 승僧 양변良卞에게 토지면 괴정자槐亭子の 내자답奈字畓 10두락지 28부 속 곳을 정조정租 전 12석과 나락 6석 및 암소 1척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인백이 증인을 썼고 안일만이 보증을 썼으며 이홍익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21. 1671년 동생同生 화회성문和會成文

康熙拾年辛亥二月拾參日 同生 和會成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徒兄弟居生時 矣母亦年深之餘 傳染得發 仍爲差息 不得 仍病身死 矣母邊衿得田畓 及生前自己之物 未分前身死 矣徒兄弟 生存 祖上衿分畓拾斗落只以 矣兄處遺言爲白遺 母亦生前買得畓 槐亭子拾斗以 女矣身亦中 遺言爲有等以 各各耕食爲白在果 槐亭子畓段 當初 矣祖母買得時 矣母愛春名字以 買得爲乎喻良置 矣祖母生前遺言明白

245 강희 22년(1683, 숙종9)은 계해년이고, 임술년(1682)은 강희 21년(1682, 숙종8)이다.

爲乎等以 各各耕食是白去乎 幸有日後 矣母名字買得是如爲白遣 雜談是  
去等 將此緣由告官卞正爲乎事  
自筆 外四寸叔 李弘益[着名]  
愛春 長子 金仁伯[着名]  
證人 鄭應淥[着名]  
女婿 崔廷完[着名]

강희 10년(1671, 현종12) 신해년 2월 13일 동생同生과의 화회성문和會成文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우리 형제가 거처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친 또한 연세가 많은 나머지 전염병에 걸려 낫지 않고 병으로 사망하였다. 우리 모친 쪽에서 갖득한 전답과 생전 자기 매득한 물건을 나누기 전에 돌아가셨다. 우리 형제에게는 생존시에 조상에게 갖득한 답밭 10두락지로 형에게 유언하였고, 모친 또한 생전에 매득한 답밭인 괴정자槐亭子 10두락으로 딸에게 유언하였으므로 각각 경작하여 먹었다. 괴정자답槐亭子답은 당초 우리 조모께서 매득할 때 우리 모친 애춘愛春 이름으로 매득한 것이라고 우리 조모 생전에 유언한 것이 명백하므로 각각 경작하여 먹는다. 행여 훗날 우리 모친 이름으로 매득한 것이라고 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연유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 외사촌숙外四寸叔 이홍익李弘益[착명]

애춘愛春의 장자長子 김인백金仁伯[착명]

증인證人 : 정응록鄭應淥[착명]

여서女婿 최정완崔廷完[착명]

1671년 2월 13일 외사촌숙外四寸叔 이홍익李弘益과 장자 김인백金仁伯이 동생同生과 화회한 문기이다. 어머니가 전염병으로 사망하면서 전답을 미처 분깃하지 못했다. 그러나 형에게 조상전래답 10두락을 유언하였고, 모친이 생전에 매득한 괴정자 내자답 10두락은 딸에게 유언하였다. 또한 괴정자답은 어머니 이름인 애춘 이름으로 매득했던 것을 밝혔다. 정응록이 증인을 썼고 사위 최정완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22. 1672년 전영신全永信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拾壹年壬子參月初伍日 全永信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女矣家夫京步兵對答爲有  
如可 身死之後 番布及田稅繼後還上等 他無出  
處乙仍于 其矣故兄買得番 耕食爲如乎 伏在出  
字番肆斗落只 負數拾貳卜貳束庫乙 價  
折木綿貳疋及正租全陸石以 依數交易捧  
上爲遣 本文記壹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此良中 同生及  
子息中 更生雜談爲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卞正事  
番主 李先立 妻 命代[右寸]  
證人 金應泉  
證保 張大元[着名]  
筆執 梁德立[着名]

강희 11년(1672, 현종13) 임자년 3월 5일 전영신全永信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남편이 경보병京步兵으로 대답對答하다가 죽은 후에 번포番布와 전세田稅 및 계후繼後 환지還上 등을 달리 낼 길이 없으므로 그의 죽은 형이 매득한 답畝를 경작하여 먹은 곳인 출자답出字畝 4두락지, 부수 12복 2속 곳을 목면木綿 2필과 정조正租 전소 6석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후차에 동생과 자식 중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이선립李先立 처妻 命代[우촌]

증인證人 : 김응록金應泉

증보證保 : 장대원張大元[착명]

필집筆執 : 양덕립梁德立[착명]

1672년 3월 5일에 이선립李先立의 처妻 명대命代가 전영신全永信에게 출자답出字畓 4두락지, 부수로는 12복 2속 곳을 목면木綿 2필과 정조正租 전소 6석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죽은 남편의 변포와 전세, 환자 등을 낼 길이 없어서 팔았다. 김응록이 증인을 썼고 장대원이 보증을 썼으며 양덕립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를 살펴보면, 1652년 2월에 정계생鄭戒生이 승려 의경儀罔에게 출자답 2배미 4두락지, 12부 2속 곳을 정목正木 80필에 팔았다.

## 423. 1652년 승僧 의경儀罔 토지명문土地明文

順治壬辰二月初壹日 僧 儀罔處 明文  
 右明文爲馭乎事段 矣身亦貧寒所以  
 祖上傳來耕食爲如可 伏在卜大巨里 出字  
 員畓二夜 肆斗落只 卜數拾貳卜貳束塵 價  
 折木綿正伍陸升柒拾疋以 依數交易捧上  
 爲遣 同子息同生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  
 良中 雜談爲去等 此明文告官卞定事  
 證保 金應金[着名]  
 證人 梁後生[着名]  
 畓主 自筆執 鄭戒生[着名]

순치 임진년(1652, 효종3) 2월 1일 승僧 의경儀罔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빈한貧寒한 끼답으로 조상으로부터 전래 받아 경작하여 먹은 땅인 복대거리卜大巨리의 출자답出字畓 2배미 4두락지, 복수 12복 2속 곳을 목면木綿 정조正 5~6승<sup>246</sup> 70필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동同 자식과 동생同生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후차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명문을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증보證保 : 김응금金應金[착명]

증인證人 : 양후생梁後生[작명]

답주畝主 자필집自筆執 : 정계생鄭戒生[작명]

1652년 2월 1일에 정계생鄭戒生이 빈한 소치로 승僧 의경儀罔에게 복대거리卜大巨里 출자답出字畝 2배미 4두락지 12복 2속 곳을 목면木綿 5~6세배 70필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양후생이 증인을 썼고 김응금이 보증을 썼으며 정계생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424. 1652년 승僧 의경儀罔 토지명문土地明文

順治玖年壬辰貳月日 僧 儀罔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貧寒所致以 田稅  
不得于仍 祖上傳來 耕食爲如可 伏在卜大巨里  
畝貳夜 肆斗落只 卜數拾貳負貳束塵 價折  
正木捌拾疋以 依數交易捧上爲遣 同人處 永永放  
賣爲去乎 後次良中 同生子息族類等是乃 雜  
談爲去等 此文記相考告官卜事  
畝主 自筆 鄭戒生[着名]  
證人 梁後生[着名]  
證保 金應金[着名]

순치 9년(1652, 효종3) 임진년 2월일 승僧 의경儀罔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빈한貧寒한 까닭으로 전세田稅를 내지 못하므로 조상

---

246 5세배 내지 6세배를 말함. 1승(升, 세)은 80올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에는 포를 화폐 대용으로 사용했는데, 5승포를 기준포인 정포로 했다.



으로부터 전래반야 경작하여 먹은 복대거리답卜大巨里畓 2배미 4두락지, 복수 12부 2속 곳을 정목正木 80필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같은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후차에 동생과 자식과 족류 등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自筆 정계생鄭戒生[착명]

증인證人 : 양후생梁後生[착명]

증보證保 : 김응금金應金[착명]

1652년 2월일 정계생鄭戒生이 빈한소치로 승려 의경儀罔에게 내자답 2배미 4두락지 12부 2속 곳을 정목正木 80필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양후생이 증인을 썼고 김응금이 보증을 썼으며 정계생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앞 문서에서는 정계생鄭戒生이 승僧 의경儀罔에게 정목 5~6새베 70필에 팔았다.

## 425. 1724년 이희증李希曾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貳年甲辰五月十五日 李希曾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亦自己買得耕食

爲如可 適值數年生道無路 勢

不得已 吐旨面沙灘員伏在 出字

畓柒斗落只 負數貳拾伍卜四束

塵 價折錢文肆兩 依數交易

捧上爲遣 右前本文記并以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如

有雜談 則持此文告官下正事

畓主 羅起見[着名]

筆 司果 趙遇赫[着名]

옹정 2년(1724, 경종4) 갑진년 5월 15일 이희증李希曾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해서 경작하여 먹다가 마침 수년간 생활할 길이 없고 형세가 부득이하여 토지면吐旨面 사탄沙灘에 있는 출자답出字畓 7두락지, 부수 25복 4속 곳을 전문 4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동생과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나기현羅起見[작명]

필筆 : 사과司果 조우혁趙遇赫[작명]

1724년 5월 15일에 나기현羅起見이 살아갈 길이 없어서 이희증李希曾에게 토지면吐旨面 사탄沙灘 소재 출자답出字畓 7두락지 25복 4속 곳을 돈 4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조우혁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를 보면, 1723년 11월 7일에 전성유全聖維가 나기현羅起見에게 출자답出字畓 7두락지 25복 4속 곳을 전문錢文 90냥에 팔았는데, 매매 금액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문서작성의 오류로 보인다.

## 426. 1723년 나기현羅起見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元年癸卯十一月初七日 羅起見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祖上傳來 衿得耕食爲白如可  
貧寒所致以 吐旨面沙灘員伏在 出字畓柒斗落只兩庫  
并卜數貳拾伍卜四束庫乙 價折錢文玖拾兩 依數交易捧上  
爲遣 右人處 本文兩庫中 一庫文記三丈 一庫文段 他田畓并付  
仍于 不得許與是遣 衿得都文記中 背後爻周爲去乎 日後  
良中 遠近族屬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  
良 告官卞正事  
畓主 全聖維[着名]  
證人 金時繼[着名]

筆 妻媧 僧 寶遠[着名]

옹정 1년(1723, 경종3) 계묘년 11월 7일 나기현羅起見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땅을 깃득해서 경작하여 먹다가 빈한한 까닭으로 토지면 사탄沙灘 소재 출자답出字畓 7두락지 두 곳을 함께 복수 25복 4속 곳을 전문錢文 9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2곳 가운데 1곳은 문기 3장을, 1곳의 문기는 다른 전답이 병부되어 있으므로 허급하지 않고, 깃득한 도문기 뒤쪽에 효주爻周한다. 훗날에 원근 족속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전성유全聖維[착명]

증인證人 : 김시계金時繼[착명]

필筆 : 처남妻媧 승僧 보원寶遠[착명]

1723년 11월 7일에 전성유全聖維가 빈한소치로 나기현羅起見에게 토지면 사탄沙灘 소재 출자답出字畓 7두락지 25복 4속 곳을 전문錢文 9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시계가 증인을 썼고 처남 승려 보원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27. 1710년 대천동大川洞 고직庫直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玖年庚寅正月貳拾四日 大川洞 庫直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洞內錢文參兩壹毫捌分

出用之後 當次捧上爲如 他條以備納無路

仍于 勢不得已 自己賣得是在 吐旨天王

峙員 露字畓伍升落只庫 價折錢文

參兩壹毫八分乙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

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壹丈并以 亦爲

付給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爲去等 將  
此文記 告官卞正事  
畚主 朴貴上[左寸]  
證人 禹尙京[着名]  
證保 金愛仁[着名]  
筆執 姜謂亨[着名]

강희 49년(1710, 숙종36) 경인년 1월 24일 대천동大川洞 고직庫直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동네에서 전문錢文 3냥 1전 8푼을 출용出用한 뒤 지금  
내야 하는데 다른 조목으로 비납할 길이 없으므로 형세가 부득이 하여 자기매득한 토지면 천왕치天  
峙에 있는 로자답露字畓 5승락지 곳을 전문 3냥 1전 8푼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  
게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 1장을 첨부하여 준다. 훗날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  
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박귀상朴貴上 [좌촌]

증인證人 : 우상경禹尙京 [작명]

증보證保 : 김애인金愛仁 [작명]

필집筆執 : 강위형姜謂亨 [작명]

1710년 1월 24일에 박귀상朴貴上이 값을 돈이 없어서 대천동大川洞 고직庫直에게 토지면 천왕치天  
王峙 로자답露字畓 5승락지 곳을 돈 3냥 1전 8푼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우상경이 증인을 썼  
고, 김애인이 보증하였으며, 강위형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28. 1698년 박귀상朴貴上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參拾七年戊寅七月初五日 朴貴上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一族禹愛奉水軍等役 年久  
 隨行之後 多有番布 無楯仍于 禹愛奉逃走之  
 後 矣一族處 懲布爲有去乙 矣一族等處 分錄  
 之時尋問 則其矣番受立旨後 伏在於吐旨天王峙  
 員 露字番參升落只庫 價折錢文一兩以 依數  
 捧上爲遣 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 如有談  
 爲去等 此文記告官下正事  
 同四寸 禹上京[着名]  
 證參 異姓 六寸 金愛仁  
     異姓 六寸 張右方[着名]  
     異姓 六寸 張武成[着名]  
 筆執 異姓 六寸 都兪同[着名]

강희 37년(1698, 숙종24) 무인년 7월 5일 박귀상朴貴上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일족 우애봉禹愛奉은 수군 등의 역을 오랫동안 수행한 후 번포番布가 많아 끝이 없었다. 우애봉禹愛奉이 도주한 후로 나의 일족에게 번포를 징수하게 되었다. 나의 일족에게 분록分錄할 때 탐문해보니 그의 답궤가 있어 입지立旨를 받은 후에 토지면 천왕치天王峙에 소재한 로자답露字番 3승락지 곳을 전문錢文 1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만일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동사촌同四寸 우상경禹上京[착명]

증참證參 : 이성異姓 육촌六寸 김애인金愛仁

이성異姓 육촌六寸 장우방張右方[착명]

이성異姓 육촌六寸 장무성張武成[착명]

필집筆執 : 이성異姓 육촌六寸 도갯동都兪同[착명]

1698년 7월 5일에 사촌 우상경禹上京이 박귀상朴貴上에게 토지면 천왕치天王峙에 소재한 로자답露字番 3승락지 곳을 돈 1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우상경의 사촌 우애봉이 번포를 내지 못하고 도주한 후 주변의 친척들이 징포를 당하자 우애봉의 땅인 로자답을 방매하였다. 이성異姓 육촌六寸 김애인金愛仁, 장우방張右方, 장무성張武成은 증인으로 참석하였고, 도갯동都兪同이 문서를 작성하

였다.

## 429. 1700년 박귀상朴貴上 소지所志

吐旨居朴貴上

右謹陳所志者段 矣身無論情由事段 矣所居家前 無  
主加耕可以起墾處是白去乙 矣身起耕耕食爲白如乎 去  
戊寅年 同里居禹尙京亦 其矣次知加耕處是如 推尋  
計料是白去乙 矣身亦既已功役起墾之處 而公然見奪 情  
有冤痛乙仍于 同禹尙京處 給價買得 無弊耕食爲白如乎  
不料今者 邑內居禹愛奉稱名之人亦 其矣已物是如  
奪取言說爲白乎旡 至於萬端叱辱爲白臥乎所 極爲無  
據是白置 當初放賣者禹尙京 捉來推問 區別處置教是後  
同買得處段 矣身安舒耕食事乙 各別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官主 處分

庚辰六月 日 所志

既已買得於

禹上京處耕食

則中間傍賣者

必即可尋 推

閱處置次以 禹上

京率來事

官[押]

경진년(1700, 숙종26) 6월에 토지면에 사는 박귀상朴貴上이 올린 소지

삼가 소지所志를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사정은 말할 것도 없으니,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은 주인없는 가경加耕<sup>247</sup> 땅이라 기간起墾<sup>248</sup>할 수 있어서 제가 기경起耕<sup>249</sup>하여 경작해서 먹었습니다. 지난 무인년(1698)에 같은 마을에 사는 우상경禹尙京이 가경加耕한 곳을 차지次知<sup>250</sup>하려고 추심推尋할 계획을 세웠거늘 제가 이미 기간起墾한 곳에 공역이 있지만 공공연히 뺏으려고 하니, 원통하지만 위 우상경禹尙京에게 가격을 주고 매득하여 경작하여 먹으며 폐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지금 읍내에 사는 우애봉禹愛奉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자기 물건이라고 하며 탈취라고 말하고, 만가지 질욕叱辱<sup>251</sup>에 이르렀는데 매우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당초 방매자는 우상경禹尙京이니 붙잡아서 추문하여 구별區別하여 처치하신 후, 위의 매득한 땅에서 제가 편안하게 경작하여 먹는 일을 각별히 시행하도록 할 일입니다.

관주官主 처분處分

경진년(1700년) 6월 일 소지所志

이미 우상경禹尙京에게 매득한 곳을 갈아먹고 있다면 중간의 방매자를 반드시 곧바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니 추열하여 처치하기 위해서 우상경禹上京을 잡아올 일이다.

관환[입]

1700년 6월 일에 토지면에 사는 박귀상朴貴上이 구례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박귀상은 집앞의 버려진 땅을 개간하였으나 1698년에 우상경이 박귀상이 개간한 땅을 차지하려고 추심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박귀상은 우상경에게 가격을 주고 매득하였지만 우상경의 사촌 우애봉이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고 추심하겠다고 하므로 시비를 가리기 위해 소지를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해 구례현감은 추열하기 위해 우상경을 데려오라고 했다.

---

247 가경(加耕) 가경전(加耕田)을 가리킨다. 새로 개간하여 아직 토지 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논밭을 이르던 말.

248 기간(起墾) 버려진 거친 땅을 일구어 새로 논밭을 만들.

249 기경(起耕) 묵힌 땅이나 생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

250 차지(次知) 일을 책임 지는 것, 또는 어떤 재물 등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 것을 말한다.

251 질욕(叱辱) 꾸짖으며 욕함.

## 430. 1732년 조목영曹木永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十年壬子三月十五日 曹木永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自己買得  
累年耕食爲如可 要用所致以 勢不得  
只 伏在大川里員 露字番柒升落只庫  
負數一卜三束 帳名庫直水男名塵 價折錢  
文貳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本  
文記四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次子息同  
生中 如有雜談是去等 將此<sup>252</sup>文記 告官  
卞正事  
番主 李【改名】者斤老味[着名]  
筆 業武 徐允徵[着名]

옹정 10년(1732, 영조8) 임자년 3월 15일 조목영曹木永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형세가 부득이하어 대천리大川里 로자답露字番 7승락지, 부수 1복 3속 곳을, 양안 이름은 고직庫直 수남水男의 이름인 곳을 전문錢文 2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4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후차에 자식과 동생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番主 : 이지근노미李者斤老味[착명]

필筆 : 업무業武<sup>253</sup> 서윤징徐允徵[착명]

---

252 원문에는 장차(長次)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253 업무(業武) 양반의 서자(庶子)로서 유학(儒學)을 닦는 이를 가리키는 말. 적손(嫡孫)의 경우를 유학(幼學)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무관(武官) 집안의 서자는 업무(業武)라고 한다.



1732년 3월 15일에 이지근노미李者斤老昧가 요용소치로 조목영曹木永에게 토지면 대천리大川里 로 자답露字畓 7승락지, 1복 3속 곳을 돈 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업무 서윤징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를 살펴보면, 1728년 2월 8일에 이배성李培聖이 이후동시李厚童時에게 로자답露字畓 7승락지 1복 3속 곳을 돈 2냥에 팔았고, 1730년 4월 17일에 이정미李丁未가 이이삼李二三에게 로 자답露字畓 7승락지 1복 3속 곳을 돈 2냥에 팔았다.

## 431. 1730년 이이삼李二三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捌年庚戌四月十七日 李二三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亦自己買得耕食爲如可  
 要用所致以 勢不得已 伏在大川里前 露  
 字畓柒升落只 負數壹卜三束 帳名鄉約庫  
 直水男帳庫乙 價折錢文貳兩 依數交易捧上  
 爲遣 右人處 本文記三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此同生及子孫中 幸有雜談是去等 此文記  
 告官卞正事  
 畓主 李丁未[着名]  
 證人 吉老郎[左寸]  
 筆執 梁福慶[着名]

옹정 8년(1730, 영조6) 경술년 4월 17일 이이삼李二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해서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형세가 부득이하어 대천리大川里 앞 로자답露字畓 7승락지, 부수 1복 3속인 곳, 양안 이름은 향약 고지기인 수남水男인 곳을 전문錢文 2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3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후차에 동생과 자손 중에 행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이정미李丁未[작명]

증인證人 : 길노랑吉老郎[좌촌]

필집筆執 : 양복경梁福慶[작명]

1730년 4월 17일에 이정미李丁未가 요용소치로 이이삼李二三에게 토지면 대천리大川里 앞 로자답露字畵 7승락지 1복 3속 곳을 돈 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길노랑이 증인을 썼고 양복경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32. 1728년 이후동시李厚童時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陸年戊申二月初八日 李厚童時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洞內相約買得 累年耕  
食爲如可 要用所致以 勢不得已 伏在大川坪 露字  
畵柒升落只 卜數壹卜參束 庫直水男帳庫  
乙 價折錢文貳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  
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洞中良  
中 謀計雜談是去等 將此文記 相考告官  
卜正事

畵主 洞長 李培聖[着名]

證人 有司 高貴發[着名]

筆執 徐重男[着名]

옹정 6년(1728, 영조4) 무신년 2월 8일 이후동시李厚童時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동네에서 서로 약속하여 매득하고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대천평大川坪 로자답露字畵 7승락지, 부수로 1복 3속

인 곳을, 양안에 고직庫直 수남水男 이름으로 된 곳을 전문錢文 2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이익을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상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동장洞長 이배성李培聖[작명]

증인證人 : 유사有司 고귀발高貴發[작명]

필집筆執 : 서중남徐重男[작명]

1728년 2월 초8일 이배성李培聖이 요용소치로 이후동시李厚童時에게 토지면 대천평大川坪 로자답露字畝 7승락지 1복 3속 곳을 돈 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고귀발이 증인을 썼고 서중남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33. 1655년 유종산柳種叱山 토지명문土地明文

順治十二年乙未正月二十六日 柳種叱山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有要用所致以 祖上傳來 舊遠  
陳荒 浦坪員伏在 重字丁畝六斗落只 卜數十六卜五束庫  
乙 價折木綿正六升木參匹 依數交易捧上爲遣 永永放  
賣爲在果 後次或有放賣爲良置 本主放賣爲旆 此  
後同生子息族類中 雜談爲去等 將此文內兒叱如  
告官卞正事  
畝主 金太興[着名]  
證 金士男  
證 趙永男  
筆執 鄭應淥[着名]

순치 12년(1655, 효종6) 을미년 1월 26일 유종산柳種叱山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조상으로부터 전래해온 오래되고 묵은 땅인 포평浦坪에 있는 중자重字 정답丁畵 6두락지, 복수 16복 5속 곳을 목면木綿 정正 6승목 3필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구히 방매한다. 후차에 혹 방매하여도 본주가 방매한다. 이후에 동생과 자식과 족류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대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김태흥金太興[작명]

증證 : 김사남金士男

증證 : 조영남趙永男

필집筆執 : 정응록鄭應祿[작명]

1655년 1월 26일에 김태흥金太興이 요용소치로 유종산柳種叱山에게 포평浦坪 소재 중자重字답 6두락지, 16복 5속 곳을 정목 6세베 3필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사남과 조영남이 증인을 썼고 정응록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34. 1742년 노奴 순만順萬 배자牌子

奴順萬處

無他 京中往來 多

有負債之事 而萬無

報償之道 吐旨員伏在

奈字畵三斗五升落乙 某人

處 准價放賣宜當

事

壬戌四月日

上典 鄭[着名]

노비 순만順萬에게

다름이 아니라 서울을 왕래하느라 다수의 채무를 지게 된 일이 있게 되었으나 전혀 값을 길이 없어서 토지吐旨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3두 5승락지를 어떤 사람에게 준가准價대로 방매하는 것은 의당 할 일이다.

임술년(1742년) 4월 일

상전上典 정鄭[착명]

임술년(1742년) 4월 일에 상전上典 정鄭씨가 노비 순만順萬에게 토지吐旨 소재 내자답奈字畓 3두 5승락지를 팔라고 명령한 배자이다. 서울을 왕래하며 진 부채를 갚기 위해 판다고 하였다.

## 435. 1742년 이재창李再昌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七年壬戌八月二十二日 幼學 李再昌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亦要用所致以 吐

旨面 奈字四斗落只 負數二作 并十四卜

七束畓庫果 皂川 奈字海字并二作

負數廿三卜九束 畓陸斗落只等庫乙 右

前 價折錢文八十兩 依數捧上爲遣

兩庫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乎

日後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此文下正事

畓主 金海俊[着名]

證人 徐時贊[着名]

筆 婿 高德鼎[着名]

건륭7년(1742, 영조18) 임술년 8월 22일 유학幼學 이재창李再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토지면 내자奈字 4두락지, 부수 2작병 14복 7속 답췌 곳과 작천淸川 내자奈字와 해자海字 병 2작, 부수로 23복 9속인 답췌 6두락지 등 곳을 위 사람에게 전문錢文 8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두 곳의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김해준金海俊[작명]

증인證人 : 서시찬徐時贊[작명]

필筆 : 서嬢 고덕정高德鼎[작명]

1742년 8월 22일에 김해준金海俊이 요용소치로 이재창李再昌에게 토지면 내자奈字 4두락지 14복 7속 곳과 작천의 내자奈字와 해자海字 23복 9속 6두락지 등 곳을 위 사람에게 돈 8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서시찬이 증인을 썼고, 사위 고덕정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36. 1742년 노奴 순만順萬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七年壬戌正月二十二日 鄭沃溝宅 奴 順萬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之病孔劇 出入鬼關之中 飢死

丁寧乙仍于 不得已 父邊衿得爲有在 吐旨員伏

在 奈字二作海字并六斗落只 負數二十三卜九束內 下

邊九卜九束 曾賣於四寸金震慶許是遣 其餘上邊

三斗五升落只 卜數十三卜三束庫乙 價折錢文十九兩

依數捧上爲遣【後都文書背後爻周】右人處 前後本文記并以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同生族屬中 或有雜談是去等 此文

告官卞正事

畵主 金守明[左寸]

證

筆 徐以漢[著名]

건륭 7년(1742, 영조18) 임술년 1월 22일 정옥구택鄭沃溝宅 노비 순만順萬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병이 매우 심하여 죽음의 문턱에 이른 중에 정녕 굶어 죽게 되었기에 부득이하게 부친 쪽에서 깃들한 토지吐旨 소재 내자奈字 2작과 해자海字를 함께한 6두 락지 부수 23복 9속 가운데 하변下邊 9복 9속은 일찍이 사촌 김진경金震慶에게 팔았고, 그 나머지 상변上邊 3두 5승락지, 복수 13복 3속 곳을 전문 19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후에 도문서都文書는 뒤쪽에 효주爻周함】위 사람에게 진후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해한다. 훗날 동생과 족속 중에 혹 이익을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김수명金守明[좌촌]

증證

필筆 : 서이한徐以漢[작명]

1742년 1월 22일에 김수명金守明이 정옥구택鄭沃溝宅의 노비 순만順萬에게 토지吐旨 소재 내자奈字와 해자海字 6두 락지 23복 9속 가운데 하변下邊 9복 9속은 이미 사촌 김진경金震慶에게 팔았고, 상변上邊 3두 5승락지, 복수 13복 3속 곳을 돈 19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병이 들어 굶어죽게 되어 부득이하여 땅을 팔았다. 증인은 없고 서이한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37. 1742년 김진경金震慶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七年壬戌四月二十三日 金震慶前 明文

右明文事段 上典牌字導良 報債次 吐旨

員伏在 奈字畵上邊 三斗五升落只 負數十

三卜三束庫乙 價折錢文十九兩 依數捧

上爲遣 右人處 本文記牌字并以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此  
文記告官下正事  
畚主 奴 順萬[右寸]  
筆 徐以漢[著名]

건륭 7년(1742, 영조18) 임술년 4월 23일 김진경金震慶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상전上典의 배자에 따라 빗을 갚기 위해 토지吐旨 소재 내자답奈字畚 상변上邊 3두 5승락지, 부수 13복 3속인 곳을 전문錢文 19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와 배자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노奴 순만順萬[우촌]

필筆 : 서이한徐以漢[작명]

1742년 4월 23일에 노비 순만順萬이 상전의 명령에 따라 김진경金震慶에게 토지吐旨 소재 내자답奈字畚 상변上邊 3두 5승락지 13복 3속 곳을 돈 19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서이한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1742년 1월 22일에 김수만이 노비 순만에게 준 명문에 김진경과 순만의 매매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 438. 1755년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二十一年乙亥十一月三十日 出身 李時華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買得 吐旨面  
九亭員伏在 奈字三作并 卜數十三卜三束 實  
種參斗落只庫乙 價折錢文三十兩 依數捧  
上爲遣 右前本文記三丈并以 永永放賣爲



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告官

卜正事

畚主 幼學 金之煥[著名]

證 幼學 朴重喆[著名]

筆 幼學 李鳳德[著名]

건륭 20년(1755, 영조31)<sup>254</sup> 을해년 11월 30일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자기매득한 토지면吐旨面 구정九亭에 있는 내자奈字 3작병 복수 13복 3속, 실종實種 3두락지 곳을 전문錢文 13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3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유학幼學 김지환金之煥[작명]

증證 : 유학幼學 박중철朴重喆[작명]

필筆 : 유학幼學 이봉덕李鳳德[작명]

1755년 11월 30일에 김지환金之煥이 요용소치로 출신 이시화李時華에게 토지면吐旨面 구정九亭에 있는 내자奈字 3작 13복 3속 3두락지 곳을 돈 13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중철이 증證을 썼고 이봉덕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를 보면, 임술년(1702년) 4월에 상전上典 정鄭씨가 노비 순만順萬에게 내자답奈字畚 3두 5승락지를 팔라고 배자를 내렸고, 1742년 1월 22일에 김수명金守明이 정옥구댁鄭沃溝宅 노비 순만順萬에게 내자奈字 해자海字 모두 6두락지 23복 9속 가운데 상변上邊 3두 5승락지 복수 13복 3속 곳을 돈 19냥에 팔았고, 1742년 4월 23일에 노비 순만順萬이 김진경金震慶에게 내자답奈字畚 상변上邊 3두 5승락지 13복 3속 곳을 돈 19냥에 팔았고, 1748년 1월 24일에 김귀석金貴碩이 강태선姜泰先에게 내자답奈字畚 3작 16배미 4두락지 12부 3속 곳을 돈 19냥에 팔았고, 1752년 11월 25일에 강조이가 승려 벽수碧守에게 내자답奈字畚 3작 16배미 4두락지 12복 3속 곳을 돈 34냥에 팔았고, 1754년 11월 25일에 승려 벽수碧守가 김지환金之煥에게 내자답奈字畚 4두락지 3작 12복 3속 곳을 전문錢文 37냥에 팔았

---

254 원문의 건륭 21년(1756, 영조32)은 병자년이고, 을해년은 건륭 20년(1755, 영조31)이다.

다. 이상 매매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439. 1748년 강태선姜泰先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三年戊辰正月二十四日 姜泰先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祖上傳來 耕食爲白如可 貧  
寒所致以 勢不得已 求禮縣吐旨面九萬里仇亭字前  
坪員伏在 奈字畚三作并拾陸夜味 肆斗落只 負數十二  
負參束 金億生帳庫乙 價折錢文拾玖兩 依數交易捧  
上爲遣 右人處 永永放賣爲乎旆 立案中背後  
爻周爲去乎 日後良中 某同生子息遠近族屬中  
若有雜談爲去等 將此文記 相考告官下正事  
畚主 通政 金貴碩[着名]  
證人 金道慶[着名]  
筆執 山人 彩文[着名]

건륭 13년(1748, 영조24) 무진년 1월 24일 강태선姜泰先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아 경작하여 먹다가 빈한한 까닭으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구례현求禮縣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 구정자仇亭字 앞에 있는 내자답奈字畚 3작병 16배미 4두락지, 부수 12부 3속, 양안에 김억생金億生 이름으로 된 곳을 전문錢文 19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며, 입안立案에는 뒤쪽에 효주爻周한다. 훗날에 어떤 동생 자식과 원근의 족속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상고해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통정通政 김귀석金貴碩[착명]

증인證人 : 김도경金道慶[착명]

필집筆執 : 산인山人 채문彩文[착명]

1748년 1월 24일에 김귀석金貴碩이 빈한 소치로 강태선姜泰先에게 구례현求禮縣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 구정자仇亭字 앞에 있는 내자답奈字畓 3작 16배미 4두락지, 12부 3속 곳을 돈 19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도경이 증인을 썼고 산인 채문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40. 1754년 김지환金之煥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八年甲戌十一月二十五日 金之煥前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亦自己<sup>255</sup>買得 累年耕  
食是如可 勢不得已 移賣次 求禮吐旨面九萬村  
前九亭員伏在 奈字畓肆斗落只三作 并十二卜三東  
庫 價折錢文參拾柒兩 依數交易捧上爲  
遣 右人前 本文記三丈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遠近族屬中 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  
卜正爲乎事  
畓主 僧 碧守[着名]  
證 幼學 鄭聖雲[着名]  
筆 金瑞重[着名]

건륭 19년(1754, 영조30)<sup>256</sup> 갑술년 11월 25일 김지환金之煥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형세가 부득이 하여 이매하기 위해 구례 토지면吐旨面 구만촌九萬村 앞 구정九亭 소재 내자답奈字畓 4두락지 3작병 12복 3속 곳을 전문錢文 37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3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원근의 족속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255 원문에는 기(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256 원문의 건륭 18년(1753, 영조29) 계유년이고 갑술년은 건륭 19년(1754, 영조30)이다. 갑술년을 기준으로 한다.

답주畵主 : 승僧 벽수碧守[작명]

증證 : 유학幼學 정성운鄭聖雲[작명]

필筆 : 김서중金瑞重[작명]

1754년 11월 25일에 승려 벽수碧守가 이매하기 위해 김지환金之煥에게 구례 토지면吐旨面 구만촌九萬村 앞 구정九亭 소재 내자답奈字畵 4두락지 3작 12복 3속 곳을 전문錢文 37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서이다. 정성운이 증인을 썼고 김서중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41. 1752년 승僧 벽수碧守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拾陸年壬申三月十五日 僧 碧守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初年薄福 千萬意外  
上典是如爲遣 二還出往是乎事 勢不得已 贖身次 不可  
不 求禮吐旨面九萬里仇亭字員伏在 奈字畵三作并拾陸夜  
味 肆斗落只 負數十二卜三束 金億生帳庫乙 價折錢文參拾肆  
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 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幸有  
子息遠近族中 雜談是去等 將此文記 告官下正事  
畵主 姜召史[佐掌]  
證人 孟敏[着名]  
筆 崔天瀾[着名]

건륭 17년(1752, 영조28)<sup>257</sup> 임신년 11월 25일 승僧 벽수碧守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초년에 박복하였는데 천만뜻밖에 상전上典이 되었고, 두 차례 다시 출왕出往한 일로 형세가 부득이 하여 속신贖身<sup>258</sup>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례 토지면吐旨面 구만리九萬里 구정자九亭字 소재 내자답奈字畵 3작병 16배미 4두락지 부수 12복 3속 곳, 김억생金

億生의 이름으로 기록된 곳을 전문錢文 34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행여 자식과 원근의 족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番主 : 강조이姜召史[좌장]

증인證人 : 맹민孟敏[작명]

필筆 : 최흡崔滄[작명]

1752년 11월 25일에 강조이姜召史가 속신하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 승려 벽수碧守에게 구례 토지면 吐旨面 구만리九萬里 구정자九亭字 소재 내자답奈字畓 3작 16배미 4두락지, 12복 3속 곳을 돈 34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맹민이 증인을 썼고 최흡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42. 1750년 유생원柳生員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十五年庚午十月日 幼學 柳生員前 明文

右明文事段 右墳墓西邊禁養地 馬山樵

群曲谷路之內 南邊斜路之內乙 既遵

官令 捧價錢伍拾兩爲遣 右前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如有雜

談是去等 將此文記 告官下呈事

禁養主 幼學 金慶浩[着名]

證 別監 許仁[着名]

時尊位 文昌圭[着名]

時風憲 尹五甲[着名]

筆執 色吏 高德宇[着名]

257 원문의 건륭 16년(1751, 영조27)은 신미년이고 임신년은 건륭 17년(1752, 영조28)으로, 임신년을 기준으로 한다.

258 속신(贖身) 속량(贖良), 몸값을 받고 중의 신분을 풀어 주어 양민이 되게 하던 일.

건륭15년(1750, 영조26) 경오년 10월 일 유학幼學 유생원柳生員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 분묘墳墓의 서쪽 금양지禁養地와 마산馬山의 초군樵群이 다니는 골짜기 길 안쪽과 남쪽 셋길 안쪽을 이미 관의 명령에 따라 전錢 5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자손과 족속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금양주禁養主 : 유학幼學 김경호金慶浩 [작명]

증證 : 별감別監 허인許仁 [작명]

시존위時尊位 : 문창규文昌圭 [작명]

시풍헌時風憲 : 윤오갑尹五甲 [작명]

필집筆執 : 색리色吏 고덕우高德宇 [작명]

1750년 10월 일에 김경호金慶浩가 유생원柳生員에게 분묘墳墓의 서쪽 금양지禁養地와 마산馬山면의 초군樵群이 골짜기 길 안과 남쪽 셋길 안을 관의 명령에 따라 돈 5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별감 허인과 현 존위 문창규, 현 풍헌 윤오갑이 증인을 썼고, 색리 고덕우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443. 1910년 유수환柳壽桓 계약서契約書

契約書

一金七十伍兩也

右는 谷城石谷面紫雀

洞山坂測費에 因

흙이라

元額壹百三十兩中

에 伍拾五兩 物減하고

以右金으로 作定흙

隆熙四年三月十五日

記主 柳壽桓[着名]

證 柳永秀[着名]

際

계약서契約書

일금 75냥이다.

이것은 곡성谷城 석곡면石谷面 자작동紫雀洞의 산판山坂 측량 비용으로 인한 것이다. 원액元額 130냥 중에 55냥은 물건으로 감減하고, 위 금액으로 작성함.

융희4년(1910, 순종3) 3월 15일

기주記主 : 유수환柳壽桓[작명]

증證 : 유영수柳永秀[작명]

1910년 3월 15일 유수환柳壽桓이 곡성谷城 석곡면石谷面 자작동紫雀洞 산판山坂 측량 비용을 돈 75냥으로 계약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원래 액수는 130냥이었으나 물건값으로 55냥을 제하였다. 유영수가 증證을 썼다.

#### 444. 1910년 유수환柳壽桓 계약서契約書

契約書

一金拾兩紙價給

伍拾兩測費給

合陸拾兩也

隆熙四年庚戌三月十五日

記主 柳壽桓[着名]

際

계약서契約書

일금 10냥은 지가紙價로 주고, 50냥은 측비測費는 주고, 합 60냥이다.

융희4년(1910, 순종3) 경술년 3월 15일

기주記主 : 유수환柳壽桓[작명]

1910년 3월 15일에 유수환柳壽桓이 지가紙價 10냥, 측량비 50냥, 합 60냥을 주기로 계약한 문서이다.

## 445. 1824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四年甲申十一月十七日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田 伏在馬

山面玉只川坪 月字田 太種肆斗

落 負數柒負壹束庫乙 有緊

用處 不得已 價折錢文玖兩 依

數捧上爲遣 本文記並 右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

雜談 以此文下正事

田主 自筆 奴 小牙[着名]

### 추록

道光四年

甲申十一月 日

玉只川太種田

四斗落負數柒

負壹束庫給價

玖兩買得 奴 小牙



[着押]

月字 新舊文二丈  
文券及諺札合十丈  
垡田畚文券  
己未冬攷

도광 4년(1824, 순조24) 갑신년 11월 17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전田인 마산면馬山面 옥지천玉只川 땅 월자전月字田 태종太種 4두락, 부수 7부 1속 곳을 긴히 쓸 곳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전문錢文 9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해한다. 훗날 이익을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바로 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자필自筆 노奴 소아小牙[작명]

추록

도광 4년(1824, 순조24) 갑신년 11월 일

옥지천玉只川 태종전太種田 4두락지, 부수 7부 1속 곳을 9냥을 주고 노奴 소아小牙에게 매득하였다.

문권文券과 언찰諺札 합 10장

대전답垡田畚 문권을

기미년 겨울에 살핌

1824년 11월 17일에 노비 소아小牙가 긴히 쓸 데가 있어서 문화유씨에게 마산면馬山面 옥지천玉只川의 월자전月字田 태종太種 4두락, 7부 1속 곳을 돈 9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소아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추록에는 위의 내용과 문권과 언찰 10장 등을 기미년 겨울에 살폈다는 내용이 붙어있다.

## 446. 182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三年癸未六月初七日 宅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田 伏在馬山面  
玉只川坪月字田 太種四斗落  
負數柒負壹束塵 累年耕食  
爲如乎 身病猝重 藥債無路  
不得已 價折錢文拾伍兩 依數  
捧用爲遣 本文記段 甲戌火災  
已入燒燼 故以此新文記壹丈  
右宅永永放賣納上爲去乎 日  
後 以此憑考事  
田主 私奴 金福來[着名]  
證筆 良人 申忒赧[着名]

도광 3년(1823, 순조23) 계미년 6월 7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전田인 마산면馬山面 옥지천玉只川<sup>259</sup>의 월자전月字田 태종太種 4두락, 부수 7부 1속 곳을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몸의 병이 갑자기 중해져 약값을 낼 길이 없음에 부득이하게 전문錢文 1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는 갑술년 화재로 이미 소진되었으므로 이 신문기 1장으로 위 댁에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 문서로 증빙하여 고찰할 일이다.

전주田主 : 사노私奴 김복래金福來[착명]

증필證筆 : 양인良人 신덕주申忒赧[착명]

---

259 옥지천(玉只川) 현재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에 해당함.

1823년 6월 7일에 사노私奴 김복래金福來가 문화유씨에게 마산면馬山面 옥지천玉只川 월자전月字田의 태종太種 4두락 7부 1속 곳을 돈 1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몸의 병이 심해지고 약값이 없어서 팔았다. 양인 신택주가 증인을 썼고 문서를 작성하였다.

## 447. 1846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二十六年丙午三月十七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祖先傳來田 累年耕食是  
如可 不幸去十一月晦日良中 奄遭家  
嚴之喪是乎所 如干喪債 無路辦報  
故馬山面玉只村前坪 月字田 太種  
三斗落 卜數八負九束 價折錢文拾  
柒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并以 右前永  
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  
等 以此文憑考事  
田主 自筆 幼學 金致基 喪不着

도광 26년(1846, 현종12) 병오년 3월 17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조상으로부터 전래해온 전田을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불행히 지난 11월 그믐에 갑자기 부친의 상을 당했는데 여간한 상채喪債<sup>260</sup>를 갚을 길이 없으므로 마산면馬山面 옥지천玉只川의 월자전月字田 태종太種 3두락, 복수 8부 9속 곳을 전문錢文 17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익을 제기한다면 이 문서로 증빙하여 고찰할 일이다.

---

260 상채(喪債) 초상을 치르기 위하여 진 빚.

전주田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김치기金致基 상불착喪不着

1846년 3월 17일에 김치기金致基가 문화유씨에게 마산면馬山面 옥지천玉只川 월자전月字田 태종太種 3두락 8부 9속 곳을 돈 17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부친상으로 인해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팔았다. 김치기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상중이라 착명은 하지 않고 ‘상불착喪不着’이라고 표기하였다.

## 448. 1757년 김우신金禹伸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十四年丁丑三月十日 幼學 金禹伸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如可 要  
用所致 伏在馬山面玉只村前坪 月字田  
太種三斗落 卜數九負九束慶 價折錢  
文拾參兩 依數捧上爲遣 以新文一丈  
永永右前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  
談是去等 以此文憑考事  
田主 自筆 幼學 鄭澤龍[着名]

### 추록

馬山面 玉只

川前坪

道光廿六年丙午三月十七日

太種三斗地 月

字八卜九束 新舊二丈

건륭 22년(1757, 영조33)<sup>261</sup> 정축년 3월 10일 유학幼學 김우신金禹伸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마산면馬山面 옥지천玉只川 월자전月字田 태종太種 3두락, 복수 9부 9속 곳을 전문錢文 13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신문기 1장을 주고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서로 증빙하여 고찰할 일이다.

전주田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정택룡鄭澤龍[착명]

### 별지

마산면馬山面 옥지천전평玉只川前坪

도광 26년(1846, 헌종12) 병오년 3월 17일

태종太種 3두락지 월자月字 8복 9속, 신구新舊 2장

1757년 3월 10일에 정택룡鄭澤龍이 요용소치로 김우신金禹伸에게 마산면馬山面 옥지천玉只川 월자전月字田 태종太種 3두락 9부 9속 곳을 돈 13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정택룡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별지는 1846년 3월 7일의 매매 내역이다. 1757년에 9부 9속이었으나 89년 후에는 8복 9속이라고 했다.

## 449. 1857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咸豐七年丁巳八月初十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家垵 累年居生是多

加 丁巳大水 家陷漂流是遣 但在家垵一斗落只 卜數

七負九束 折價錢文八兩 依數捧上是遣 右前

---

<sup>261</sup> 원문의 건륭 14년(1749, 영조25)은 기사년이고, 정축년은 건륭 22년(1757, 영조33년)이므로 정축년을 기준으로 바꿈.

新文記一丈 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 則以此  
文記 告官卞呈事  
垞主 全汝中[着名]  
證筆 朴時連[着名]

此亦中 家垞所隨公錢  
談當於是在家  
垞主向事

### 추록

馬山面玉只川垞地一斗落文記  
咸豐七年丁巳八  
月初十日 金汝中

함풍 7년(1857, 철종8) 정사년 8월 10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한 가대家垞에서 수년간 거처하며 살았는데 정사년 대홍수 때 집이 잠겨 떠내려가고 가대家垞에 있는 단지 1두락지, 복수 7부 9속 곳만을 전문錢文 8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신문기 1장을 주고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대주垞主 : 전여중全汝中[착명]

증필證筆 : 박시연朴時連[착명]

이에 가대家垞에 따른 공전公錢은 이에 가대주가 담당할 일이다.

### 추록

마산면馬山面 옥지천玉只川 대지垞地 1두락 문기文記

함풍 7년(1857, 철종8) 정사년 8월 초10일 김여중金汝中<sup>262</sup>

---

262 본문에서는 전여중이라고 했다.

1857년 8월 10일에 전여중全汝中이 문화유씨에게 가대家垞로 남은 1두락지 7부 9속 곳을 돈 8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시연이 증證을 썼고 문서를 작성하였다.

## 450. 182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元年辛巳十二月十八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傳來畚 要用所致 伏在  
吐旨面龍頭坪 成字五斗落只 負數十八  
卜庫乙 價折錢文參拾伍兩 依數捧上爲遣  
明年農作 仍任時作者處 而本文記  
並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  
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下正事  
畚主 自筆 幼學 李周采 喪不着

건륭 39년(1821, 순조21) 신사년 12월 18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전래답을 갠히 필요한 까닭으로 토지면吐旨面 용두龍頭에 있는 성자成字 5두락지, 부수 18복 곳을 전문錢文 3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내년 농사는 시작자時作者에게 잉임하기로 하고 본문기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이주채李周采 상불착喪不着

1821년 12월 18일 이주채李周采가 요용소치로 문화유씨에게 토지면吐旨面 용두리龍頭리에 있는 성자成字畚 5두락지 18복 곳을 돈 3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다른 명문과 달리 내년 농사는 시작자가 잉임한다는 매매 조건을 달았다. 이주채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고 상중이라 착명대신 상불착喪不着이라고 표기하였다.

## 451. 1774년 이경철李景喆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三十九年甲午正月二十一日 幼學 李景喆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累年耕食是如可 要  
用所致 吐旨面龍頭員伏在 成字畝五  
斗落只 負數十八卜四束庫乙 價折錢  
文伍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右前

本文記並 永永放賣爲去乎 日  
後若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下  
正事

畝主 秋水敬[着名]

證 幼學 韓東銖[着名]

筆 幼學 梁夏翊[着名]

건륭 39년(1774, 영조50) 갑오년 1월 21일 유학幼學 이경철李景喆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토지면吐旨面 용두龍頭에 있는 성자답成字畝 5두락지, 부수 18복 4속 곳을 전문錢文 5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추수경秋水敬[작명]

증證 : 유학幼學 한동수韓東銖[작명]

필筆 : 유학幼學 양하익梁夏翊[작명]

1774년 1월 21일에 추수경秋水敬이 요용소치로 이경철李景喆에게 토지면吐旨面 용두龍頭에 있는 성자답成字畝 5두락지 18복 4속 곳을 돈 5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한동수가 증인을 썼고 양하익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52. 1877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三年丁丑正月十六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畝 數年  
耕食是如可 要用所致 伏在求禮良田  
面山亭村坪 周字畝三斗落 卜數十二負廳  
價折錢文壹百貳拾兩 依數捧上是遣  
右前舊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告官下呈  
事  
畝主 幼學 朴斗月[着名]  
證筆 幼學 沈甲文[着名]

광서 3년(1877, 고종14) 정축년 1월 16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답畝를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  
답으로 소재 구례 간전면良田面 산정촌山亭村의 주자답周字畝 3두락, 복수 12부 곳을 전문錢文 120냥  
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구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유학幼學 박두월朴斗月[착명]

증필證筆 : 유학幼學 심갑문沈甲文[착명]

1877년 1월 16일에 박두월朴斗月이 요용소치로 문화유씨에게 구례 간전면良田面 산정촌山亭村의  
주자답周字畝 3두락, 12부 곳을 돈 12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심갑문이 증證을 썼고 문서  
를 작성하였다.

## 453. 1822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三年壬午十一月二十五日 幼學 前明文  
右明文事段 切有要用處 自己買  
得 伏在吐旨面堂山坪 鹹字畝二斗  
落只 負數四卜九束 價折  
錢文拾二兩 依數捧上爲遣 本  
文記并以 永爲放賣爲去乎 日  
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憑信者  
畝主 自筆 幼學 李命喆[着名]

### 추록

堂山鹹字二斗落  
數卜四卜九束 買得  
新村李生員許

### 추록

己未冬攷  
嘉慶八年癸亥甲戌壬午  
癸未甲申  
文券七封

도광 2년(1822, 순조22)<sup>263</sup> 임오년 11월 25일 유학幼學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자기매득한 토지면吐旨面 당산堂  
山の 함자답鹹字畝 2두락지, 부수 4복 9속 곳을 전문錢文 12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

---

263 원문의 도광 3년(1823, 순조23)은 계미년이고, 임오년은 도광 2년(1822, 순조22)이므로 임오년을 기준으로 한다.

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이명철李命喆[작명]

#### 추록

당산의 함자鹹字 2두락지, 복수 4복 9속 곳을 신촌新村의 이생원에게서 매득買得함.

#### 추록

기미년 겨울에 살핌.

가경 8년(1803, 순조3) 계해년, 갑술, 임오, 계미, 갑신의 문권文券 7봉封印.

1822년 11월 25일에 이명철李命喆이 요용소치로 문화유씨에게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の 함자답鹹字畝 2두락지, 4복 9속 곳을 돈 1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이명철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추록에는 신촌新村의 이생원에게 함자답 땅을 매득하는 내용과 문권 7봉을 기미년 겨울에 살폈다는 내용이 붙어있다.

## 454. 180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八年癸亥二月十八日 幼學 前明文  
右明文事段 傳來畝肆斗落只 累代耕食  
是如可 家用所致 伏在吐旨面堂山坪 鹹字  
一百十 負數七卜一束 一百十一 負數二卜六束 合  
二作并九卜七束 價折錢文伍拾兩 依數  
捧上是遣 本文記段 他田畝并付 故不得出給  
是遣 新文記一丈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下正事  
畝主 幼學 李泰運[着名]  
證筆 幼學 李東式[着名]

추록

堂山緘字畚四斗  
落只李泰運處 買  
得印

가경 8년(1803, 순조3) 계해년 2월 18일 유학幼學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전래답 4두락지를 누대에 걸쳐 경작하여 먹다가 집에서 사  
용할 까닭으로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の 함자緘字 110번답 부수 7복 1속과 111번답 부수 2복 6속, 합 2  
작병 9복 7속 곳을 전문錢文 5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는 다른 전답이 병부되어  
있으므로 내주지 않고 신문기新文記 1장을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해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유학幼學 이태운李泰運[작명]

증필證筆 : 유학幼學 이동식李東式[작명]

추록

당산堂山 함자답緘字畚 4두락지를 이태운李泰運에게 매득함.

1803년 2월 18일에 이태운李泰運이 요용소치로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 함자緘字 110번답 7복 1속과  
111번답 2복 6속, 합 2작 9복 7속 곳을 돈 5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이동식이 증인을 썼  
고 문서를 작성하였다. 추록에는 4두락지를 이태운에게 매득했다는 내용이다.

## 455. 1801년 이명철李命喆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六年辛酉三月十七日 幼學 李命喆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勢不得已

縣東吐旨面伏在堂山坪 鹹字員  
 二斗落只 卜數四卜九束唐 價折  
 錢文貳拾貳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本文記一丈并以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文  
 卜正事  
 畚主 自筆 幼學 李時白 喪不着

가경 6년(1801, 순조1) 신유년 3월 17일 유학幼學 이명철李命喆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형세가 부득이하어 현縣의 동쪽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에 있는 함자鹹字 2두락지, 복수 4복 9속 곳을 전문錢文 22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이시백李時白 상불착喪不着

1801년 3월 17일에 이시백李時白이 요용소치로 이명철李命喆에게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の 함자鹹字 2두락지 4복 9속 곳을 돈 2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이시백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456. 매매기록

八松亭下 露字畚三斗落 卜數十二卜  
 三束果 上邊爲字畚三斗落 卜數十二卜  
 庫 合六斗落只果 桶沈坪 生字畚  
 四斗落 卜數二作十六卜三束庫 合廿

斗落只乙 南宮生員許買得  
印.

팔송정八松亭 아래의 로자답露字畓 3두락, 복수 12복 3속과 상변上邊 위자답爲字畓 3두락, 복수 12복 곳, 합 6두락지와 통보桶湫 생자답生字畓 4두락, 복수 2작 16복 3속 곳, 합 20두락지를 남궁생원南宮生員에게 매득買得함.

매매기록을 적은 것으로, 남궁생원南宮生員에게서 로자답露字畓 3두락 12복 3속과 상변上邊 위자답爲字畓 3두락 12복 곳, 합 6두락지와 통보桶湫 생자답生字畓 4두락 2작 16복 3속 곳, 합 20두락지를 매득했다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다.

## 457. 1814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十九年甲戌四月初六日 幼學 前明文  
右明文段 矣自己買得 數年耕食是如可  
要用所致 勢不得已 吐旨面金谷坪伏在  
陽字六負六束三斗落只塵 價折錢  
文參拾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并以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  
是去等 將此文記上典牌子 告官卞正事  
畓主 全召史[右掌]  
筆證 黃聖澄[着名]

### 추록

金谷 陽字畓 三  
斗落 負數六卜

一束庫 給價三十  
兩 買得 曹小才  
妻介丹處

가경 19년(1814, 순조14) 갑술년 4월 초6일 유학幼學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토지면吐旨面 금곡金谷 소재 양자陽字 6부 6속, 3두락지 곳을 전문錢文 3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익을 제기한다면 이 문기와 상전上典의 배자牌子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畵主 : 전조이全召史[우정]

필증筆證 : 황성징黃聖澄[착명]

#### 추록

금곡金谷 양자답陽字畵 3두락 부수 6복 1속 곳을 30냥을 주고 조소재曹小才의 처妻 개단介丹에게 매득함.

1814년 4월 6일에 전조이全召史가 요용소치로 문화유씨에게 토지면吐旨面 금곡金谷 소재 양자답陽字畵 6부 6속 3두락지 곳을 돈 3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황성징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추록에는 양자답 3두락지 6부 6속을 조소재 처 개단에게 매득하였다는 내용이다. 관련문서로 갑술년(1814년) 4월 4일에 상전上典 김금씨가 노비 개단介丹에게 양자답陽字畵 3두락 곳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급한 배자가 있다.

## 458. 1814년 비婢 개단介丹 배자牌子

牌子婢介丹處

無他 汝矣處牌子爲去乎  
當此大無之年 生活萬無一  
路乙仍于 汝矣畚陽字三  
斗落塵 以放賣之念 累  
次告憫 故私情所在 特爲  
許給 成給牌子 以此憑  
考事  
甲戌 四月 初四日  
上典 金[着名]

배자 비婢 개단介丹에게

다름이 아니라 너에게 배자를 한다. 이와 같은 흉년을 당하여 생활할 길이 전혀 없으므로 너의 답  
畚 양자陽字 3두락 곳을 방해한다는 생각을 누차 고민하기 때문에 사정이 있는 바라서 특별히 허급하  
고 배자를 성급하니 이것으로 증빙할 일이다.

갑술년(1814년) 4월 4일  
상전上典 김순[착명]

갑술년(1814년) 4월 4일에 상전上典 김순씨가 노비 개단介丹에게 양자답陽字畚 3두락 곳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급하는 배자이다. 흉년을 당하여 생활할 길이 없자 여자종 개단의 땅인 양자답 3두락을  
방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급하였다. 상전 김씨가 착명하였다.

관련문서로는 1814년 4월 6일에 전조이가 유씨 집안에 토지면吐旨面 금곡金谷 소재 양자답陽字畚 6  
부 6속 3두락지 곳을 돈 30냥에 판 것이 있다.



## 459. 1797년 김구월金九月金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二年丁巳二月十一日 金九月金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 耕食

是如可 不得已 伏在吐旨面鐵洞陽

字員 負數六負三斗落只應乙 價

折錢文貳拾肆兩 依數捧上爲遣 本

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

談是去等 此文卞正事

畚主 幼學 姜與文[着名]

筆 幼學 崔漢赫[着名]

가경 2년(1797, 정조21) 정사년 2월 11일 김구월金九月金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부득이하여 토지면吐旨面 철동鐵洞에 있는 양자陽字 땅 부수 6부 3두락지 곳을 전문錢文 24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유학幼學 강여문姜與文[착명]

필筆 : 유학幼學 최한혁崔漢赫[착명]

1797년 2월 11일에 강여문姜與文이 부득이하여 김구월金九月金에게 토지면吐旨面 철동鐵洞 양자陽字의 6부 3두락지 곳을 돈 24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최한혁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60. 1822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貳年壬午十月初六日 前明文

右明文放賣事段 矣自己買得 數年耕食是

如可 移買次 伏在縣內面東谷黑仙坪 菁田成<sup>264</sup>字太種參

斗落只 負數拾伍負庫乙 價折錢文拾兩 本文記

一丈并以 依數捧上爲遣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論談是去等 以此文記告官卞政事

田主 閑良 宋仁尙[着名]

筆執 閑良 高斗點[着名]

證人 閑良 金朔淡[着名]

### 추록

▣▣川 菁田 結卜

▣▣庫乙 買得

宋仁尙處 寄菁田連耕

도광 2년(1822, 순조22) 임오년 10월 6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이매하기 위하여 현내면縣內面 동곡東谷 흑선黑仙<sup>265</sup>의 청전菁田 성자成字 태종太種 3두락지, 부수 15부 곳을 전문錢文 1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본문기 2장을 첨부해서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한량閑良 송인상宋仁尙[작명]

필집筆執 : 한량閑良 고두점高斗點[작명]

증인證人 : 한량閑良 김삭담金朔淡[작명]

264 원문에는 차(次)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명문을 참조하여 바꾸었다.

265 흑선(黑仙) 구례 현내면 흑선리.

## 추록

천변에 있는 청전을 결복수는 ○인 곳을 송인상에게 매득하였다. 청전에 부쳐서 경작한다.

1822년 10월 6일에 송인상宋仁尙이 이매하기 위해 현내면縣內面 동곡東谷 흑선黑仙의 청전菁田 성자成字 태종太種 3두락지 15부 곳을 돈 1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삭담이 증인을 썼고 고두집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61. 1822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貳年壬午二月十二日 明文

右明文事段 矣傳來衿得菁田 累年耕食是如可 至於今年 偶得身病 而已至死境 故藥債備報次 伏在縣內面黑船<sup>266</sup>村前坪田 成字太種參斗落 負數拾伍負庫乙 價折錢文拾壹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新文一丈 永永放賣爲矣 本文記段 中間失火是如乎 故新文記一丈 放賣是如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爲乎乙事

田主 長女 金以坤 妻 金昭史[手掌]

次女 病人 尹次中 妻 金召史

證人 筆執<sup>267</sup> 鄭致信[着名]

도광 2년(1822, 순조22) 임오년 10월 6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전래 깃득한 청전菁田을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금년에 이르러 우연히 병을 얻었는데 이미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약값을 갚기 위해서 현내면縣內

---

266 원문에는 반(般)자로 쓰인 것을 바로잡았다.

267 원문에는 집(集)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面 흑선촌黑船村 앞의 밭 성자成字 태종太種 3두락, 부수 15부인 곳을 전문錢文 12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신문기 1장을 주고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는 중간에 소실되었으므로 신문기 1장으로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장녀長女 김이곤金以坤 처妻 김조이金召史[수장]

차녀次女 병인病人 윤차중尹次中 처妻 김조이金召史

증인證人 필집筆執 : 정치신鄭致信[작명]

1822년 10월 6일에 김이곤金以坤 처妻 김조이金召史와 윤차중尹次中 처妻 김조이金召史가 약값을 갚기 위해 유씨 집안에 현내면縣內面 흑선촌黑船村 앞의 밭 성자成字 태종太種 3두락 15부수 곳을 전문錢文 1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정치신이 증인을 썼고 문서를 작성하였다.

## 462. 1822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貳年壬午十月二十七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矣自起買得畝 累年

耕食是如可 勢不得已 求禮吐

旨面下竹川員伏在 金字畝三

斗落只 負數十三卜廩 價折錢

文貳拾柒兩 依數捧上是遣

右前新舊文并以 永永放賣爲

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文記告官下政事

畝主 幼學 李奎臣 喪不着

證筆 幼學 李敬池[着名]

추록

下竹川前 加耕坪金

字三斗落 結卜十卜三束

鷹買得燕谷 李

得春處 印

壬午至月初七日

[着名]

도광 2년(1822, 순조22) 임오년 10월 27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한 답짚을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구례 토지면吐旨面 하죽천下竹川 소재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부수 13복 곳을 전문錢文 27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신·구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유학幼學 이규신李奎臣 상불착喪不着

증필證筆 : 유학幼學 이경지李敬池[착명]

추록

하죽천下竹川 앞 가경평加耕坪 금자金字 3두락, 결복 10복 3속 곳을 연곡의 이득춘李得春에게 매득함.

무오년(1822) 11월 7일.

[착명]

1822년 10월 27일에 이규신李奎臣이 형세가 부득이하여 문화유씨에게 구례 토지면吐旨面 하죽천下竹川 소재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13복 곳을 돈 27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이규신은 상중에 있어서 착명하지 않았고 이경지가 증인을 썼고 문서를 작성하였다. 추록에는 이득춘에게 금자답을 매득했다는 내용이다.

## 463. 1801년 서한성徐漢成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六年辛酉正月十七日 徐漢成處 明文  
右明文事段 切有緊用處 伏在吐旨面加耕坪 金  
字百十七在 實種三斗落只 負數十卜六束塵 價折錢文  
肆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右處本文記并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告  
官卞正事  
畚主 自筆 幼學 李弼漢[着名]

가경 6년(1801, 순조1) 신유년 1월 17일 서한성徐漢成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소재 토지면吐旨面 가경평加耕坪 금자金字 117번답에 있는 실종實種 3두락지, 부수 10복 6속 곳을 전문錢文 4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이필한李弼漢[착명]

1801년 1월 17일에 이필한李弼漢이 요용소치로 서한성徐漢成에게 토지면吐旨面 가경평加耕坪 금자金字 117번답에 있는 실종實種 3두락지 10복 6속 곳을 돈 4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이필한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 보면 1790년 2월 20일에 박태룡朴泰龍이 이필한李弼漢에게 위 땅을 23냥에 팔았고, 1789년 4월 11일에 박남규朴南奎가 박태룡朴泰龍 위 땅을 23냥에 팔았다. 10년 후에 매매가가 두 배 가량 상승했다.

## 464. 1815년 강행룡姜幸龍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二十年乙亥三月二十六日 姜幸龍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流來畚 累年耕食  
是如可 當此大荒之歲 生道爲難 故求禮  
土旨面加耕坪 金字畚三斗落只 負數十卜六束  
廩 價折錢文參拾兩 依數捧上是遣 右前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子孫良中  
雜談是去等 以此文記告官卞正事  
自筆 畚主 徐碩文[着名]

가경 20년(1815, 순조15)<sup>268</sup> 을해년 3월 26일 강행룡姜幸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전래답을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큰 흉년을 당하여 생활이 곤란하므로 구례 토지면吐旨面 가경평加耕坪 금자답金字畚 3두락지, 부수 10복 6속 곳을 전문錢文 3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자손 중에 이익을 제기한다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畚主 : 서석문徐碩文[착명]

1815년 3월 26일 서석문徐碩文이 생계 곤란으로 강행룡姜幸龍에게 구례 토지면吐旨面 가경평加耕坪 금자답金字畚 3두락지 10복 6속 곳을 전문錢文 3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서석문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는 1801년 1월 17일에 같은 곳을 이필한李弼漢이 서한성徐漢成에게 돈 4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가 있다.

---

268 가경 21년(1816, 순조16)은 병자년이고, 을해년은 가경 20년(1815, 순조15)이라서 바꿈.

## 465. 1790년 이필한李弼漢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五年庚戌二月二十日 李弼漢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自己<sup>269</sup>買得畝 累年耕食  
是如可 不得已 切有要用所致以 吐旨面  
加耕坪伏在 金字畝參斗落只 卜數則  
十卜六束庫乙 價折錢文貳拾參兩 依數  
交易捧上爲遣 右前本文記并以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良中 若有雜談是  
去等 持此文記用告官下正事  
畝主 朴泰龍 喪不着  
證 辛聖彬[着名]  
筆 黃聖澄[着名]

건륭 55년(1790, 정조14) 경술년 2월 20일 이필한李弼漢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한 답畝를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부득이하  
게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토지면吐旨面 가경평加耕坪 소재 금자답金字畝 3두락지, 복수 10복 6속 곳을  
전문錢文 23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박태룡朴泰龍 상불착喪不着

증證 : 신성빈辛聖彬[작명]

필筆 : 황성징黃聖澄[작명]

1790년 2월 20일에 박태룡朴泰龍이 요용소치로 이필한李弼漢에게 토지면吐旨面 가경평加耕坪 소재

---

269 원문에는 기(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10복 6속 곳을 돈 23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태룡은 상중이라 착명하지 않았다. 신성빈이 증證을 썼고 황성징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는 1789년 4월 11일에 박남규朴南奎가 박태룡朴泰龍 위 땅을 23냥에 판 매매문서가 있다. 소유 이전은 박남규에서 박태룡으로, 박태룡에서 이필한으로 이전되었다. 금액은 동일하다.

## 466. 1789년 박태룡朴泰龍 토지명문土地明文

乾隆五十四年己酉四月十一日 朴泰龍處 明文  
 右明文事段 移賣次 吐旨面加耕坪伏在 金字畓  
 三斗落只 所耕十卜六束庫乙 價折錢文貳拾  
 伍兩 依數捧上爲遣 右人處永永放賣爲去  
 乎 本文書段 他田畓并付 故背後昭註 不得  
 出給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持此  
 文下正事  
 畓主 喪人 朴南奎 喪不着  
 證 黃聖澄[着名]  
 筆 陳相喆[着名]

건륭 54년(1789, 정조13) 기유년 4월 11일 박태룡朴泰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해하기 위해 토지면吐旨面 가경평加耕坪 소재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경작 복수는 10복 6속 곳을 전문錢文 23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는 다른 전답이 병부되어 있으므로 뒤에 효주하고 내주지 않는다. 훗날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상인喪人 박남규朴南奎 상불착喪不着

증證 : 황성징黃聖澄[작명]

필筆 : 진상철陳相喆[작명]

1789년 4월 11일에 박남규朴南奎가 이매하기 위해 박태룡朴泰龍에게 토지면吐旨面 가경평加耕坪 소재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10복 6속 곳을 돈 23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남규는 상중이라 착명하지 않았고 황성징이 증인을 썼고 진상철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67. 1882년 (유제양)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八年壬午三月十八日 前明文

右明文事 傳來畓 累年收稅是多可 勢不得已 放賣次 伏在求禮良田面

三神洞 問字十夜三斗落只 卜數十一負二束果 山亭坪罪字一夜四斗落只 卜數二十三負果 同坪罪字三

夜四斗落只 卜數十八負果 有字二夜六斗落只 卜數二十四負五束果 德馬坪罪字十夜三斗落只 卜數十一負果 同坪

罪字三斗落只 卜數十負一束果 東采坪伐字九夜四斗落只 卜數十六負一束果 碑石坪國字卅夜五斗落只

卜數十九負二束果 萬水坪民字二十三夜十斗落只 卜數三十七負九束果 久亭坪虞字七夜四斗落只 卜數十七負果 同坪虞字

五夜五斗落只 卜數十九負三束果 牛首坪國字三夜四斗落只 卜數十五負二束麤乙 并折價錢文壹阡捌佰兩

依數捧上是遣 舊文記段 中年闕失 故以新文一張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

有雜談 則以此文記相考事

畓主 幼學 金潤株[着名]

證人 幼學 金國瓚[着名]

광서 8년(1882, 고종19) 임오년 3월 18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전래답을 수년간 수세하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어 방매하기 위해 구례 간전면良田面 삼신동三神洞<sup>270</sup>에 있는 문자問字 10배미 3두락지, 복수 11부 2속 곳과 산정

山亭의 죄지罪字 1배미 4두락지, 복수 23부 곳과 동평同坪 죄지罪字 3배미 4두락지, 복수 18부 곳과 유자有字 2배미 6두락지, 복수 24부 5속 곳과 덕마평德馬坪 죄지罪字 10배미 3두락지, 복수 11부 곳과 동평同坪 죄지罪字 3두락지, 복수 10부 1속 곳과 동채평東采坪 벌자伐字 9배미 4두락지, 복수 16부 1속 곳과 비석평碑石坪 국자國字 30배미 5두락지, 복수 19부 2속 곳과 만수평萬水坪 민자民字 23배미 10두락지, 복수 37부 9속 곳과 구정평久亭坪 우자虞字 7배미 4두락지, 복수 17부 곳과 같은 곳 우자虞字 5배미 5두락지, 복수 19부 3속 곳과 우수평牛首坪 국자國字 3배미 4두락지, 복수 15부 2속 곳을 모두 전문錢文 180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구문기는 중간에 서실闕失되었으므로 신문기 1장으로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상고할 일이다.

답주畝主 : 유학幼學 김윤주金潤株 [착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김국찬金國瓚 [착명]

1882년 3월 18일에 김윤주金潤株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문화유씨에게 구례 간전면良田面 삼신동三神洞 문자問字 10배미 3두락지 11부 2속, 산정평山亭坪 죄지罪字 1배미 4두락지 23부, 동평同坪 죄지罪字 3배미 4두락지 18부, 유자有字 2배미 6두락지 24부 5속, 덕마평德馬坪 죄지罪字 10배미 3두락지 11부, 동평同坪 죄지罪字 3두락지 10부 1속, 동채평東采坪 벌자伐字 9배미 4두락지 16부 1속, 비석평碑石坪 국자國字 30배미 5두락지 19부 2속, 만수평萬水坪 민자民字 23배미 10두락지 37부 9속, 구정평久亭坪 우자虞字 7배미 4두락지 17부, 같은 땅 우자虞字 5배미 5두락지 19부 3속, 우수평牛首坪 국자國字 3배미 4두락지 15부 2속 곳을 모두 돈 180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국찬이 증인을 썼다. 이때 판 땅은 모두 55두락지, 부수로는 222복 5속인 곳이다.

## 468. 1824년 의계중義稷中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四年甲申十月十七日 義稷中 明文

右明文事段 矣宅分付據 本村前伏在

270 삼신동(三神洞) 구례군 간전면 삼산리 신촌마을에 해당.

露字六十七 卜數十八 卜三束庫 伍斗落乙 價  
折錢文柒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右稷  
中放賣爲去乎 本文記并付他文書 故不  
得出給 而限五年 準本價還退之意  
如是成明文爲臥乎事  
畚主 奴 千金[着名]  
筆證 金義憲[着名]

#### 추록

義稷中文書  
露字十八 卜三束庫  
伍斗落 買得于  
奴千金宅  
道光四年  
甲申十月十七日 封[着名]

도광 4년(1824, 순조24) 갑신년 10월 17일 의계중義稷中에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덕宅 分부에 따라 본촌 앞에 있는 로자露字 67번 복수 18복 3속 곳 5두락을 전문錢文 7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계중義稷中에게 방매한다. 본문기는 다른 문서에 병부되어 있으므로 내주지 않고, 5년을 기한으로 본 가격에 준하여 환퇴還退한 다 뜻으로 이 명문을 작성한다.

답주畚主 : 노奴 천금千金[착명]

필증筆證 : 김의헌金義憲[착명]

#### 추록

의계중義稷中 문서文書  
로자露字 18복 3속 곳 5두락을 노奴 천금千金덕에게 매득함.  
도광4년(1824, 순조24) 갑신년 10월 17일 봉封[착명]

1824년 10월 17일에 노비 천금千金이 의계중義稷中에게 로지露字 67번 답 복수 18복 3속 곳 5두락을 돈 7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5년 후에 본 가격에 준하여 환회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의현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증인을 썼다. 추록에는 의계중 문서 기록으로, 위의 땅을 노비 천금의 댁에게서 매득했다는 내용이다.

## 469. 1824년 노부 천금千金 배자牌子

奴千金 開坼  
分付是置 宅所用緊急  
伏在五美村前 露字六  
十七番伍斗落 卜數十八卜三  
束慶 某處捧價柒拾伍  
兩是遣 放賣納上之地 宜  
當事  
甲申十月十七日  
上典 柳[着名]

도광 4년(1824, 순조24) 갑신년 10월 17일 노부 천금千金 배자牌子

노부 천금千金은 열어볼 것.  
분부하니 댁宅에서 쓸 것이 긴급하여 오미촌五美村 앞 로지露字 67번 답畝 5두락, 복수 18복 3속 곳을 모처에 7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받고 방매하여 상납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갑신년 10월 17일, 상전上典 유柳[작명]

1824년 10월 17일에 상전上典 유柳씨가 노비 천금千金에게 구레 오미촌五美村 앞 로지露字 67번 답畝 5두락 18복 3속 곳을 75냥에 팔아서 상납하라고 명령을 내린 배자이다. 배자에 따라 천금은 의계

중義稷中에게 75냥에 팔아서 상납한다.

## 470. 182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三年癸未正月晦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傳來田地 累年耕食是如可 不得已 移  
賣次 本縣吐旨面下竹川村前坪 爲字畝十七 卜數  
卅二卜一束 六斗落只塵 價折錢文一百廿兩 依數  
捧上爲遣 右前舊文記 他田畝并付 故新文  
記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某人中雜  
談之弊 以此文記憑考事  
畝主 自筆 幼學 朱光文[着名]

도광 3년(1823, 순조23) 계미년 1월 30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전해 내려온 전지田地를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부득이하  
게 이매하기 위해 본현 토지면 하죽천촌下竹川村<sup>271</sup> 앞에 있는 위자답爲字畝 17번 복수 32복 1속 6두  
락지 곳을 전문錢文 12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구문기는 다른 전답이 병  
부되어 있으므로 신문기 1장을 주고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어떤 사람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주광문朱光文[작명]

1823년 1월 30일에 주광문朱光文이 이매하기 위해 토지면 하죽천촌下竹川村 앞의 위자답爲字畝 17

---

271 하죽천촌(下竹川村)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하죽마을을 말한 것으로 보임.

번답 32북 1속 6두락지 곳을 돈 12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주광문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471. 기해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己亥十一月二十八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水

砧 累月收稅是如可 以

要用所致 伏在求禮

土旨面竹川下桶沕坪

金字加耕二負庫果 水砧

并 價折錢文五拾兩 依

數捧上是遣 新舊文并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異論 則以此

文憑考事

水砧主 幼學 李順一[着名]

證人 幼學 金贊瑞[着名]

### 추록

票

右標事 錢伍拾兩 以每朔貳分

邊得用 而限明年二月念間 依數

備報之意 如是成票事

己亥臘初四日 票主 李景三[着名]

此亦中 水砧文券憑考次

證人 幼學 柳士仁

×拾兩 合陸拾兩

기해년 11월 28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 매득한 수침水砮(물방아)에서 수년간 세금을 걷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구례 토지면吐旨面 죽천竹川 아래 통보桶漙의 금자金字 가경加耕 2부 곳과 수침  
水砮을 아울러 전문錢文 5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신·구문기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문異論이 있다면 이 문서로 증빙할 일이다.

수침주水砮主 : 유학幼學 이순일李順一 [작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김찬서金贊瑞 [작명]

추록

표票

이 표票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전錢 50냥을 매 식朔당 2푼의 이자로 얻어 쓰고 기한을 내년  
2월 20일 사이에 숫자대로 갚는다는 뜻으로 표票를 작성한다.

기해년 12월 4일, 표주標主 이경삼李景三 [작명]

이에 수침水砮 문권을 증빙하기 위해

증인證人 : 유학幼學 유사인柳士仁

10냥 합 60냥이다.

기해년 11월 28일 이순일李順一이 요용소치로 문화유씨에게 구례 토지면吐旨面 죽천竹川 아래 통보  
桶漙의 금자답金字畓 가경加耕 2부 곳과 수침水砮을 아울러 돈 5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찬서가 증인을 썼다.

추록의 표票는 기해년 12월 4일에 이경삼李景三이 써준 것으로, 50냥을 10달 동안 2부 이자로 빌려  
서 총 60냥을 갚기로 한 내용이다. 유사인이 증인을 썼다.

## 472. 1729년 이원석李源碩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七年己酉正月十一日 李生員源碩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寺中自己<sup>272</sup>買得是在如中  
殘弊寺中 多數負債 他無還報之道乙仍于  
不得已 本面竹田員伏在 珍字畚四斗落只 卜數今  
量三作并拾貳卜玖束庫乙 價折錢文貳拾捌兩  
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某寺中等 雜談爲去等 此文記告官卜正事  
畚主 三綱僧 幸海[着名]

尙日[着名]

斗尙[着名]

證人 崔哲奉[着名]

時公員 僧朗演[着名]

書記 僧 處敬[着名]

僧 克性[着名]

僧 自日[着名]

時住持 釋開演[着名]

筆執 金順亨[着名]

## 추록

珍字畚四斗三作十二卜九束

買燕谷寺寺內

量明山

옹정 7년(1729, 영조5) 기유년 1월 11일 이생원李生員 원석源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우리 절에서 자기매득하였는데 잔폐한 절에 다수의 부채가 있지만 달리 갚을 방도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본면 죽전竹田에 있는 진자답珍字畚 4두락지, 복수는 현재 양안으로 3작병 12복 9속 곳을 전문錢文 28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어떠한 절 사람들이 이익을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

272 원문에는 기(起)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삼강승三綱僧 행해幸海[작명]

상일尙日[작명]

두상斗尙[작명]

증인證人 : 최철봉崔哲奉[작명]

시공원時公員 : 승僧 낭연朗演[작명]

서기書記 : 승僧 처경處敬[작명]

승僧 극성克性[작명]

승僧 자일自日[작명]

시주지時住持 : 석개연釋開演[작명]

필집筆執 : 김순형金順亨[작명]

#### 추록

진자답珍字畝 4두 3작 12복 9속 곳을 연곡사燕谷寺 절 내에서 매득함. 양안에는 명선明山이름으로 되어 있음.

1729년 1월 11일에 승려 행해幸海 등이 절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이원석李源碩에게 토지면 죽전竹田 소재 진자답珍字畝 4두락지 3작 12복 9속 곳을 돈 28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현 주지는 석개연이다. 다른 문기들과 달리 여러 승려들이 착명하였다. 최철봉이 증인을 썼고 김순형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추록을 통해 진자답을 판 곳은 연곡사임을 알 수 있다.

### 473. 1728년 연곡사燕谷寺 사중寺中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六年戊申十一月十六日 燕谷寺 寺中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師長主前別得 耕食  
爲如可 移接他官 故以移買次 吐旨面竹田登員  
伏在 珍字畝四斗落只 負數三作并十二卜九束庫乙

價折錢文三十兩以 依數捧上爲遣 右寺中前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此後良中 同生子孫 中 如有雜談爲去等 此文記告官下正事

畚主 俞命華[着名]

證人 金海准[着名]

證保 僧 幸海[着名]

筆執 僧 處閑[着名]

용정 6년(1728, 영조4) 무신년 11월 16일 연곡사燕谷寺 사중寺中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사장주師長主에게 별득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타관他官으로 옮겨야 하므로 이매하기 위해 토지면吐旨面 죽전등竹田登 소재 진자답珍字畓 4두락지, 부수는 3작병 12복 9속 곳을 전문錢文 3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절에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이 후에 동생과 자손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유명화俞命華[작명]

증인證人 : 김해준金海准[작명]

증보證保 : 승僧 행해幸海[작명]

필집筆執 : 승僧 처한處閑[작명]

1728년 11월 16일에 유명화俞命華가 이매하기 위해 연곡사 사중寺中에게 토지면吐旨面 죽전등竹田登 소재 진자답珍字畓 4두락지, 3작병 12복 9속 곳을 돈 3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해준이 증인을 썼고 승려 행해가 보증을 썼으며 승려 처한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74. 1704년 승僧 선명善明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四十七年甲申正月十二日 僧人 善明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亦祖上衿得 耕食爲如可 要用所致  
以 竹田旨員伏在 珍字番七斗落只 負數廿八卜四束內 下邊七庫  
四斗落只 負數十六負三束庫乙 價折錢文伍拾五兩 依數  
交易捧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背後爻周爲去乎  
後次同生使孫中 雜談爲去等 此文記告官下正向事  
番主 金俊迪[着名]  
證人 鄭時必[着名]  
筆執 前哨官 金珍器[着名]

강희 43년(1704, 숙종43)<sup>273</sup> 갑신년 1월 12일 승인僧人 선명善明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조상으로부터 깃들해서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죽전지竹田旨 소재 진자답珍字番 7두락지 부수 28복 4속 내의 하변下邊 4두락지, 부수 16부 3속 곳을 전문 5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는 뒤에 효주爻周한다. 후차에 동생과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番主 : 김준적金俊迪[착명]

증인證人 : 정시필鄭時必[착명]

필집筆執 : 전초관前哨官 김진기金珍器[착명]

1704년 1월 12일에 김준적金俊迪이 요용소치로 승인僧人 선명善明에게 토지면 죽전지竹田旨 소재 진자답珍字番 하변下邊 4두락지 16부 3속 곳을 돈 5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정시필이 증인을 썼고 김진기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

<sup>273</sup> 원문의 강희 47년(1708, 숙종34)은 무자년이고, 갑신년은 강희 43년(1704, 숙종43)이므로 갑신년을 기준으로 바꿈.

## 475. 1706년 상좌上佐 조의祖儀 별급성문別給成文

康熙肆拾伍年丙戌貳月拾陸日 上佐 祖儀處 別給成文  
右成文爲臥乎事段 自己買得 耕食爲有如可 殘弱病身  
困苦之中 積年供饋 孝心至極是乎矣 他無償恩之果  
乙仍于 吐旨面竹田員伏在 珍字畚肆斗落只庫 本  
文記壹丈并以 永永許給爲去乎 日後良中我死之  
後 某上佐及內外族屬中別給是以 如有推尋談雜之弊是  
去等 將此文記 告官卜正事  
元財主 僧 善明[着名]  
證人 僧 道信[着名]  
證保 僧 信極[着名]  
筆執 山人 勝一[着名]

강희 45년(1706, 숙종32) 병술년 2월 16일 상좌上佐 조의祖儀에게 주는 별급성문別給成文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잔약하고 병들어 곤고困苦 하던 중에 (조의가) 여러 해 공궤供饋<sup>274</sup>를 하여 효심이 지극하였는데 달리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므로 토지면吐旨面 죽전竹田 소재 진자답珍字畚 4두락지 곳을 본문기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허급한다. 훗날에 내가 죽은 후 어떤 상좌上佐와 내외 족속 가운데 별급別給한 일로 만약 추심하거나 이익을 제기하는 폐단이 있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원재주元財主 : 승僧 선명善明[작명]

증인證人 : 승僧 도신道信[작명]

증보證保 : 승僧 신극信極[작명]

필집筆執 : 산인山人 승일勝一[작명]

---

274 공궤(供饋) 윗 사람에게 음식을 드림.

1706년 2월 16일에 승僧 선명善明이 상좌上佐 조의祖儀에게 토지면吐旨面 죽전竹田 소재 진자답珍字畓 4두락지 곳을 허급하는 별급문기이다. 승려 선명이 병든 자신을 돌보아준 은혜로 상좌 조의에게 별급해준 것이다. 승려 도신이 증인을 썼고, 신극이 보증을 썼으며 승일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76. 1724년 호노戶奴 가팔리加八里 토지명문土地明文

雍正二年甲辰二月拾參 李生員宅 戶奴 加八里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移賣次以 自  
己買得 吐旨眞木亭員 珠畓卜數拾參卜  
參束 二作四卜 三作伍卜 玖束 并陸斗落只庫  
價折錢文捌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右人  
處 本文記貳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次雜談是去等 此文告官下正事  
畓主 韓者斤老末[着名]  
證人 張漢龜[着名]  
筆執 李元弼[着名]

옹정 2년(1724, 경종4) 갑진년 2월 13일 이생원李生員댁 호노戶奴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이매하기 위하여 자기매득한 토지면 진목정眞木亭 주자답珠字畓 복수 13복 3속, 2작 4복, 3작 5복 9속, 모두 6두락지 곳을 전문錢文 8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2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후차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한자근노미韓者斤老末[착명]

증인證人 : 장한구張漢龜[착명]

필집筆執 : 이원필李元弼[착명]

1724년 2월 13일에 한자근노미韓者斤老未가 이매하기 위해 이생원李生員댁 호노 가팔리加八里에게 토지면 진목정眞木亭의 주자답珠字畓 13복 3속, 2작 4복, 3작 5복 9속, 모두 6두락지 곳을 돈 8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장한구가 증인을 썼고 이원필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77. 1719년 한자근노미韓者斤老未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五十八年己亥正月二十九日 韓者斤老未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亦自己買得 耕食爲

加可 移買次以 本面眞木亭員伏在 珠字畓十三ト

三束 二作畓四ト 三作畓五ト九束 六斗落只庫乙

價折錢文九十一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

記一丈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子孫

中 若有雜談是去等 將此文告官卜正事

畓主 幼學 金禹錫[着名]

證人 幼學 張啓漢[着名]

筆 幼學 張鳴漢[着名]

강희 58년(1719, 숙종45) 기해년 1월 29일 한자근노미韓者斤老未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기매득하여 경작하여 먹다가 이매하기 위하여 본면 진목정眞木亭 소재 주자답珠字畓 13복 3속, 2작답 4복, 3작답 5복 9속, 6두락지 곳을 전문錢文 91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 1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후차에 자손 가운데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유학幼學 김우석金禹錫[작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장계한張啓漢[작명]

필筆 : 유학幼學 장명한張鳴漢[작명]

1719년 1월 29일 김우석金禹錫이 이매하기 위해 한자근노미韓者斤老未에게 토지면 진목정眞木亭 소재 주자답珠字畓 13복 3속, 2작답 4복, 3작답 5복 9속, 6두락지 곳을 돈 91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장계한이 증인을 썼고 장명한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478. 1705년 김우석金禹錫 토지명문土地明文

康熙肆拾肆年乙酉正月拾陸日 幼學 金禹錫前 明文  
右明文爲 他面田畓有難親耕 以移買次 本縣吐  
旨面伏在 珠字畓十三卜三束 二作畓四卜 三作畓五卜九束 六  
斗落只庫 價折錢文壹百貳拾兩 捧上後 右人  
前永永放賣爲旆 本文記段 都文記中 他田畓並  
付之致 不得傳給爲去乎 日後同生及子孫中 若  
有雜談之人是去等 將此文記 告官卜正事  
畓主 自筆 折衝 金進白[着名]

강희 44년(1705, 숙종31) 을유년 1월 16일 유학幼學 김우석金禹錫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다른 면면에 있는 전답을 친히 경작하기 어려워서 이매하기 위하여 본현 토지면吐旨面 소재 주자답珠字畓 13복 3속, 2작답 4복, 3작답 5복 9속, 6두락지 곳을 전문錢文 12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받은 후에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며, 본문기는 도문기都文記 가운데 다른 전답이 병부된 까닭으로 전급傳給하지 않는다. 훗날 동생과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를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自筆 절충折衝 김진백金進白[작명]

1705년 1월 16일에 김진백金進白이 이매하기 위해 김우석金禹錫에게 본현 토지면吐旨面 주자답珠字畓 13복 3속, 2작답 4복, 3작답 5복 9속, 6두락지 곳을 돈 12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진



백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479. 1893년 유씨종계柳氏宗契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十九年癸巳十一月初二日 美洞 柳氏宗契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畝 累年耕食  
是多可 以報債次 伏在求禮吐旨面月谷  
村後坪 月明峰下垣內樵路邊 加耕三  
負畝一斗落地 價折錢文貳拾肆兩  
依數以債相計是遣 舊文闕失 故只  
以此新文一丈 柳氏宗契前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 則以此文憑  
考事

畝主 幼學 金廷彥[着名]

證筆 幼學 李膺鉉[着名]

此亦中 土稅每年以租十三斗約定 永許  
並耕是矣 天降之災外 如有一斗租加減  
之說 則彼此還退是齊  
際

광서 19년(1893, 고종30) 기사년 11월 2일 미동美洞 유씨종계柳氏宗契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답畝를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빚을 갚기 위해 구례 토지면吐旨面 월곡촌月谷村 뒤의 월명봉月明峰 아래 담장내 셋길 가의 가경답加耕畝 3부 1두락지를 전문錢文 24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빚을 상계相計<sup>275</sup>하로 하고, 구문기는 서실闕失되었으므로 신문기 1장으로 유씨柳氏의 종계宗契<sup>276</sup>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

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畝主 : 유학幼學 김정언金廷彦[작명]

증필證筆 : 유학幼學 이응현李膺鉉[작명]

이에 토세土稅는 매년 조租 13두로 약정하고, 영구히 병경并耕<sup>277</sup>을 허여하니, 하늘이 내린 재앙 외에 만약 1두의 조租라도 가감加減하자는 말이 있다면 피차 환퇴還退한다.

1893년 11월 2일에 김정언金廷彦이 빚을 갚기 위해 오미동의 유씨종계柳氏宗契에게 구례 토지면吐旨面 가경답加耕畝 3부 1두락지를 돈 24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24냥으로 빚을 상계하고, 토세로 매년 조 13두를 주기로 약정하고 1두라도 가감이 있다면 물리기로 했다. 이응현이 증證을 서고 문서를 작성하였다.

## 480. 1889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十五年己丑十一月廿六日 前明文  
右明文事 衿得畝 數年收<sup>278</sup>稅是多可  
以移買次 伏在求禮吐旨面薪田坪 劔字  
三斗只 卜數十卜三束廳乙 價折錢文  
八十五兩 依數交易是遣 舊文并付他文 故以此  
新文一丈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  
爻象之端 則持此文憑考事

275 상계(相計)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서로 번재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 표시에 따라 양쪽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일.

276 종계(宗契)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데에 드는 비용을 모으는 계.

277 병경(并耕) 토지(土地)를 공동(共同)으로 구입(購入), 공동(共同)으로 경작하여 그 수입(收入)을 나누어 가지던 일.

278 원문에는 수(數)자로 기재된 것을 바꾸었다.

畚主 幼學 自筆 柳濟赫[着名]  
際

### 추록

求禮 吐旨 造培右坪 劔字十卜  
三束三斗地 價八十二兩 相換  
出給 金谷 陽字二斗地 文券

광서 15년(1889, 고종26) 기축년 11월 26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깃든한 답췌에서 수년간 세를 걷어먹다가 이매하기 위해서 구례 토지면吐旨面 신전薪田 검자劔字 3두락지, 복수 10복 3속 곳을 전문錢文 8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구문기를 다른 문기가 병부되어 있으므로 이 신문기 1장으로 위 사람에게 영구히 판매한다. 훗날 효상交象<sup>279</sup>의 단서가 있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畚主 : 유학幼學 자필自筆 유제혁柳濟赫[착명]

### 추록

구례 토지 조배우평造培右坪 검자劔字 10복 3속 3두의 땅을 값 82냥으로 정하고 금곡金谷 양자陽字 2두락 땅 문권文券과 상환하여 출급하였다.

1889년 11월 26일에 유제혁柳濟赫이 이매하기 위해 구례 토지면吐旨面 신전의 검자劔字 3두락지 10복 3속 곳을 돈 8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유제혁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추록에는 검자답 10복 3속 3두락지를 82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금곡의 양자답 2두락 문권과 바꾸어 출급한다는 내용이다.

---

279 효상(交象) 좋지 않은 몰골. 경광(景光).

## 481. 1887년 미동美洞 경계京契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十三年丁亥十一月二十七日 美洞 京契前 明文

右明文事 傳來畚 屢年耕食是如可 以要用所

致 伏在求禮吐旨面津邊後坪 重字三斗

只 卜數十一負八束廳乙 價折錢文肆拾

伍兩 依數捧用是遣 舊文闕失 故以

新文一丈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

有雜談是去等 持此文憑考事

畚主 幼學 金溶弼[着名]

證人 幼學 李文瑞[着名]

### 추록

吐旨面細石坪 重

字畚 結十一負八束

買得於金尊位

溶弼

광서 13년(1887, 고종24) 정해년 11월 27일 미동美洞 경계京契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전래답을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소재 구례 토지면吐旨面 진변津邊 뒤의 땅 중자重字 3두락지, 복수로는 11부 8속인 곳을 전문錢文 4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구문기는 서실闕失 되었으므로 신문기 1장으로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해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畚主 : 유학幼學 김용필金溶弼[작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이문서李文瑞[작명]

### 추록

토지면吐旨面 세석평細石坪의 중자답重字畚 결부수는 11부 8속인 곳을 준위尊位 김용필金溶弼에게

매득함.

1887년 11월 27일에 김용필(金溶弼)이 요용소치로 오미동 경계(京契)에게 구례 토지면(吐旨面) 진변(津邊)에 있는 중자답(重字畓) 3두락지 11부 8속 곳을 돈 4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이문서가 증인을 썼다. 추록에는 세석평의 중자답 11부 8속을 준위 김용필에게 매득했다는 내용이다.

## 482. 1886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十二年丙戌正月二十二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畓 累年  
耕食是多可 以要用所致 伏在  
求禮吐旨面下竹村右坪 霜字  
三斗落只 卜數十負二束廳乙  
價折錢文陸拾兩 舊文遺失 故  
只以新文一丈 右前永永放賣  
爲去乎 日後如有雜談 則以此文  
卜正事  
畓主 閒良 朴勺九[着名]  
證人 朴也茂[着名]

### 추록

求禮吐旨面下竹村右坪 霜字三斗  
只 卜數十負二束廳 買得於內  
竹居朴勺九處 價文六十兩

광서 12년(1886, 고종23) 병술년 1월 22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답밭을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  
답으로 소재 구례 토지면吐旨面 하죽촌下竹村 오른쪽에 있는 상지糶字 3두락지 복수로는 10부 2속인  
곳을 전문錢文 60냥으로 가격을 정하고, 구문기는 유실되었으므로 신문기 1장으로 위 사람에게 영구  
히 방해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한량閻良 박작구朴勺九[작명]

증인證人 : 박아무朴也茂[작명]

### 추록

구례 토지면吐旨面 하죽촌下竹村 오른쪽에 있는 상지糶字 3두락지, 복수 10부 2속 곳을 내죽內竹에  
사는 박작구朴勺九에게서 매득함. 가격은 전문 60냥임.

1886년 1월 22일에 박작구朴勺九가 요용소치로 문화유씨에게 구례 토지면吐旨面 하죽촌下竹村 상  
자답糶字畝 3두락지 10부 2속 곳을 돈 6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아무가 증인을 썼다.  
추록에는 상자답糶字畝 3두락지 10부 2속을 내죽에 사는 박작구에게서 60냥에 매득했다는 기록이다.

## 483. 1885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十一年乙酉十二月二十日 前明文

右明文事 當此荒年 生

活爲難 故伏在吐旨面新

舟村後坪 先山下直畝

一斗落 加耕三負塵

價折錢文 玖兩五錢 依

數捧上是遣 以新文

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 則以此

憑考事

畝主 幼學 柳玉印[著名]

證人 幼學 金景安[著名]

추록

瓦代畝條

可考

新安洞宅墓下

加耕畝一斗地

月谷村後金夙興

加耕畝一斗地

추록

求禮吐旨面新養山村後

山中月明峰下新安洞宅山

直土加耕三負廳一斗只

還退文記 戊子

正月十六日下舟

山金寡女處

광서 11년(1885, 고종22) 을유년 12월 20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흉년을 당하여 생활이 어려우므로 토지면吐旨面 신주촌新舟村 뒤의 선산 아래에 있는 답밭 1두락, 가경加耕 3부 곳을 전문錢文 9냥 5전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신문기 1장으로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효상爻象이 있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畝主 : 유학幼學 유옥인柳玉印[작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김경안金景安[작명]

## 추록

구례 토지면 신양산촌新養山村 뒷산의 월명봉月明峰 아래 신안동댁新安洞宅 산직山直 땅 가경加耕 3부 곳 1두락지 환퇴문기還退文記  
무자년 1월 16일 하주산下舟山 김금과부에게.

## 별지

와대답瓦代畚 조條는 상고할 수 있다.  
신안동댁新安洞宅 묘 아래 가경답加耕畓 1두락의 땅, 월곡촌月谷村 뒤 김숙흥金夙興의 가경답加耕畓 1두락 땅임.

1885년 12월 20일에 유옥인柳玉印이 흉년을 당해 생활이 어려워서 문화유씨에게 토지면吐旨面 신주촌新舟村 뒤의 선산 아래 답畓 1두락, 가경加耕 3부 곳을 돈 9냥 5전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경안이 증인을 썼다.

## 484. 1878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四年戊寅二月十四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己新起家舍 累  
年居生是多可 以移買次 在  
於吐旨五美洞 體舍三間 翼  
廊二間 合爲五間廡 價折  
錢文肆拾壹兩 依數捧上  
是遣 右前永永放賣爲去  
乎 日後如有爻象之端 以  
此文憑考事  
家舍主 幼學 柳濟亨[着名]  
證人 幼學 金在麟[着名]



광서 4년(1878, 고종15) 무인년 2월 14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가 새로 지은 가사家舍에서 수년간 거처하다가 이매하기 위하여 토지 오미동에 있는 체사體舍 3칸과 익랑翼廊 2칸, 합 5칸을 전문錢文 41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효상爻象의 단서가 있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가사주家舍主 : 유학幼學 유제형柳濟亨[착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김재린金在麟[착명]

1878년 2월 14일에 유제형柳濟亨이 이매하기 위해 토지면 오미동에 있는 건물 체사體舍 3칸과 익랑翼廊 2칸, 합 5칸을 돈 41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재린이 증인을 썼다.

## 485. 1878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肆年戊寅二月二十八日 前明文

右明文段 自己買得畓 累年收稅

是如可 以要用所致 伏在求禮吐

旨面觀鳳亭坪 李字卜數

拾負柒束庫 畓四斗落

只 價折錢文壹佰貳拾兩 準數

捧用是遣 以新文一丈 右前永

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

是去等 以此文憑考事

畓主 自筆 幼學 許滋[着名]

### 추록

桶沭坪四斗落 文記

五美洞書齊舍五間

李十卜七束  
戊寅春買得  
同封[着押]

광서 4년(1878, 고종15) 무인년 2월 28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답쑈에서 수년간 세를 걷어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구례 토지면吐旨面 관봉정觀鳳亭의 이자李字답 복수 10부 7속 곳 4두락지를 전문錢文 12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쑈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허현許滋[작명]

#### 추록

통보평桶湫坪 4두락 문기文記  
오미동五美洞 서제사書齊舍 5칸  
이李자답 10부 7속을  
무인년 봄에 매득함.  
동봉[착압]

1878년 2월 28일에 허현許滋이 요용소치로 문화유씨에게 구례 토지면吐旨面 관봉정觀鳳亭의 이자답李字쑈 10부 7속 곳 4두락지를 돈 12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허현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추록은 오미동五美洞 서제사書齊舍 5칸과 이자답을 매득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 486. 1875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元年乙亥十二<sup>280</sup>月二十二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傳來畚 累年

收稅是多可 要用所致 伏

在求禮吐旨面月明洞下湊越

坪 金字三斗落只 卜數十卜

七束廩 折價錢文壹百兩

依數捧上是遣 右前并

新舊文記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 則以此文

相考事

畚主 自筆 幼學 崔燦永[着名]

### 추록

吐旨面 湊越花庄坪 金字三斗落

地 卜數十卜七束 價文壹佰兩 買

於馬山面居[관독불능]

광서 1년(1875, 고종12) 을해년 12월 22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전래답에서 수년간 세를 걷어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구례 토지면吐旨面 월명동月明洞 아래 보월평湊越坪 금자金字 3두락지, 복수 10복 7속 곳을 전문錢文 10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신·구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상고할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최찬영崔燦永[착명]

---

280 원문에는 이십(二十)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쳤다.

## 추록

토지면 보월 화장평의 금자답 3두락지, 복수 10복 7속인 곳을 값 100냥을 주고 마산면에 사는 최 씨에게 샀다.

1875년 12월 22일에 최찬영崔燦永이 요용소치로 에게 구레 토지면吐旨面 월명동月明洞 아래 보월湫越의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10복 7속 곳을 돈 10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최찬영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는 1862년 10월 4일에 한석리韓錫履가 이거하기 위해 문화유씨에게 토지면吐旨面 보월湫越의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10복 7속 곳을 돈 7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가 있고, 1853년 4월 22일에 김광숙金光叔이 요용소치로 토지면吐旨面 월명동月明洞 화장평의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10복 7속 곳을 돈 5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가 있다.

## 487. 1853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咸豐三年癸丑四月廿二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畓 累年耕  
食是多可 要用所致 伏在吐旨面  
月明洞花庄坪 金字畓三斗落只 卜  
數十負七束廩 價折錢文伍十五兩  
依數交易捧上是遣 右前本文記  
并 而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  
去等 以文相考事  
畓主 閒良 金光叔[着名]  
證人 幼學 柳建[着名]

## 추록

李字 四斗只 十卜七束 桶沺坪

金字 三斗只 十卜七束 月谷前坪  
霜字 三斗只 十卜二束 下竹村左  
棉田 一斗只 外野嶸坪 文書不入  
文學契中

합품 3년(1853, 철종4) 계축년 4월 22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답쭈을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  
답으로 소재 토지면吐旨面 월명동月明洞 화장평花庄坪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복수 10부 7속 곳을 전  
문錢文 5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  
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상고할 일이다.

답주畓主 : 한량閔良 김광숙金光叔[착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유건柳建[착명]

#### 추록

이지李字 4두락지 10복 7속 통보평桶漑坪

금자金字 3두락지 10복 7속 월곡전평月谷前坪

상자霜字 3두락지 10복 2속 하죽촌좌下竹村左

면전棉田 1두락지 외야등평外野嶸坪은 문서文書에 넣지 않는다.

문학계중文學契中

1853년 4월 22일에 김광숙金光叔이 요용소치로 문화유씨에게 토지면吐旨面 월명동月明洞 화장평의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10복 7속 곳을 돈 5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유건이 증인을 썼다. 추  
록에는 문학계중文學契中の 기록으로, 이지답李字畓 4두락지 10복 7속,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10복 7  
속, 상자답霜字畓 3두락지 10복 2속, 면전棉田 1두락지는 문서에 넣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록했다.

관련문서로는 1875년 12월 22일에 최찬영崔燦永이 요용소치로 문화유씨에게 구례 토지면吐旨面  
월명동月明洞 아래 보월漑越의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10복 7속 곳을 돈 10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서가 있고, 1862년 10월 4일에 한석리韓錫履가 이거하기 위해 문화유씨에게 토지면吐旨面 보월漑越  
의 금자답金字畓 3두락지 10복 7속 곳을 돈 7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가 있다.

## 488. 1862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同治元年壬戌十月初四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畝 累年耕  
食是多可 移去次 伏在吐旨面深越坪  
金字畝三斗落只 卜數十卜七束庫乙 價  
折錢文柒拾兩 依數捧上是遣 舊文  
記並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  
有雜談 則持此憑考事  
畝主 自筆 幼學 韓錫履[着名]

동치 1년(1862, 철종13) 임술년 10월 4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답밭을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이매하기 위해 소재 토지면吐旨面 보월深越의 금자답金字畝 3두락지, 복수 10복 7속 곳을 전문錢文 7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구문기舊文記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한석리韓錫履[착명]

1862년 10월 4일에 한석리韓錫履가 이거하기 위해 토지면吐旨面 보월深越의 금자답金字畝 3두락지 10복 7속 곳을 돈 7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한석리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는 1875년 12월 22일에 최찬영崔燦永이 요용소치로 구례 토지면吐旨面 월명동月明洞 아래 보월深越의 금자답金字畝 3두락지 10복 7속 곳을 돈 10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가 있고, 1853년 4월 22일에 김광숙金光叔이 요용소치로 토지면吐旨面 월명동月明洞 화장평의 금자답金字畝 3두락지 10복 7속 곳을 돈 5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가 있다.

## 489. 병신년 추록

價錢壹佰兩

光緒十七年辛卯正月廿四日

元定土稅租五石印

求禮文尺面龜城里右坪

食字五斗只卜數廿二卜八束 買得

於馬山上沙吳璉淳

居間 崔奴古邑丹

紅甲紗 下衣 一件 // 三十六兩

綠永脂 上衣 一件 // 十二兩六錢

吉祥紗 上衣 一件 // 八兩

紫工緞 回長 一件 // 一兩九錢

豐松甲紗 中 三件 // 二兩四錢

又 縷 三介 // 六錢

甲紗縷 一件 // 九錢

婚函 一座 // 十一兩

合七十三兩三錢內

賞七十兩 辛丑三廿五日

丙申至十五日封[着名]

合十一券

始 都合廿一

가격 전錢 100냥.

광서 17년(1891, 고종28) 신묘년 1월 23일

원정元定 토세土稅 조租 5석 인印.

구례 문척면文尺面 구성리龜城里 우평右坪

식자食字 5두락지 복수 22복 8속을  
마산馬山 상사上沙 오진순吳璉淳에게 매득.  
거간 : 최노崔奴 고읍단古邑丹.

홍갑사紅甲紗 하의 1건 \* 36냥  
녹영지綠永脂 상의 1건 \* 12냥 6전  
길상사吉祥紗 상의 1건 \* 8냥  
자공단紫工緞 회장 1건 \* 1냥 9전  
풍송갑사豐松甲紗 3건 \* 2냥 4전  
    또 루縷 3개 \* 6전  
갑사루甲紗縷 1건 \* 9전  
혼함婚函 1좌座 \* 11냥  
합 73냥 3전 내 70냥을 신축년 3월 25일에 줌.

병신년 11월 15일 동봉同封[착명]

합 11권

도합 21

병신년 11월 15일에 동봉하면서 작성한 추록이다. 1891년 1월 23일에 돈 100냥에 구례 문척면丈尺面 구성리龜城里 오른쪽의 식자답食字畝 5두락지 22복 8속을 마산馬山면 상사上沙리의 오진순吳璉淳에게 매득하는 내용과 돈 73냥 3전어치의 상하의 옷값 등을 기록하였다.

## 490. 1819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二十四年己卯三月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良田面鷄足山麻田嶺  
山直田 年年執卜 太種三斗落 負數



五卜庫乙 右宅入葬 故不得已 移買<sup>281</sup>  
次 價折錢文參兩 依數捧上爲遣 永  
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文記并  
付 故不得出給 而日後如有雜談  
是去等 以此新文記一丈 卜正事  
田主 自筆 林春星[着名]

濫斫他人邱木 誠是法外所  
當嚴治是矣 姑觀來頭是遣  
斫伐松楸 隨卜數 價本備  
給事 洪求禮

#### 추록

嘉慶廿四年  
己卯三月日  
良田麻田嶺山  
所入葬處太  
種三斗田落  
買于林春成  
處[押]

가경 24년(1819, 순조19) 기묘년 3월 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간전면良田面 계족산鷄足山 마전등麻田嶺 산직전山直田을 해마다 집복執卜<sup>282</sup>한 태종太種 3두락, 부수 5복 곳을 위 택宅이 입장入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매하기 위하여 전문錢文 3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문기文記가 병부되어 있으므로 출급하지 않는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바로 잡을 일이다.

---

281 원문에 매(賣)자로 기재된 것을 고쳤다.

282 집복(執卜) 벼슬아치가 농사의 작황을 살펴 조세를 매기던 일을 이두식으로 이르던 말.

전주田主 : 자필自筆 임춘성林春星[작명]

〈제김〉 다른 사람의 구목丘木을 함부로 베는 것은 진실로 법을 벗어난 행동이니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우선 앞으로 하는 것을 보고, 작별한 송추松楸<sup>283</sup>는 복수卜數에 따라 값을 갖추어 줄 일이다. 홍구례洪求禮<sup>284</sup>

#### 추록

가경 24년(1819, 순조19) 기묘년 3월 일에 간전良田 마전등麻田嶺의 산소 입장처인 태종太種 3두락 지 밭을 임춘성林春成에게 매득함. [입]

1819년 3월 일에 임춘성林春星이 문화유씨에게 간전면良田面 계족산鷄足山 마전등麻田嶺 산직전山直田 태종太種 3두락 5복 곳을 돈 3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문화유씨가 그 땅에 무덤을 쓰기 때문에 이매하기 위해 판다고 했다. 임춘성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옆 부분에는 구례현감의 제김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를 통해 먼저 송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491. 1889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十五年己丑正月二十七日 前明文

右明文段 以緊用之致 買得畝

伏在求禮吐旨面把道村前

長水坪 海字畝四斗落只卜

數六十九負四束 加四負

九束 六十一 三負四束 加耕

---

283 송추(松楸) 산소 둘레에 심는 나무의 총칭.

284 구례현감으로 홍(洪) 성을 가진 사람은 1816년에 부임하여 1817년까지 재직한 홍낙우(洪樂佑)가 있다.

三處<sup>285</sup> 唐 價折錢文壹百  
貳拾兩 依數捧上爲遣  
新舊文記並 右前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  
是去等 將此文記 憑考事  
畚主 幼學 朴鏞浩[着名]  
證人 幼學 高季龍[着名]

광서 15년(1889, 고종26) 기축년 1월 27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매득한 답畝 구례 토지면吐旨面 파도촌把道村<sup>286</sup> 앞의 장수평長水坪 해자답海字畝 4두락지, 60번답 9부 4속, 가답加畝 4부 9속, 61번답 3부 4속, 가경加耕 3처 곳을 전문錢文 12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신문기新文記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해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文記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畝主 : 유학幼學 박용호朴鏞浩[착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고계룡高季龍[착명]

1889년 1월 27일에 박용호朴鏞浩가 요용소치로 유씨 집안에게 구례 토지면吐旨面 파도촌把道村 장수평長水坪 해자답海字畝 4두락지 17부 7속을 돈 12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고계룡이 증인을 썼다.

---

285 원문에는 전(錢)자를 잘못 쓰여있는 것을 고쳤다.

286 파도촌(把道村)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를 말한다.

## 492. 추록

求禮吐旨面九灣  
村右長水坪 海字  
畝四斗地 卜數十七  
負七束塵 買得於朴鏞浩  
宗中  
價一百二十兩給  
光緒十五年己丑正月廿七日  
居間高俊五 并作

宗中  
可考  
[着押]

구례 토지면 구만촌九灣村 오른편 장수평長水坪 해자답海字畝 4두락지, 복수 17부 7속 곳을 박용호  
朴鏞浩에게 매득하고 종중宗中에게 값 120냥을 줌.

광서 15년(1889, 고종26) 기축년 1월 27일

거간居間 : 고준오高俊五 병작并作

종중宗中에서 상고할 수 있음[착압]

1889년 1월 27일에 문화유씨가 거간 고준오高俊五를 통해 박용호朴鏞浩에게 구례 토지면 구만촌九  
灣村 장수평長水坪 해자답海字畝 4두락지 17부 7속 곳을 매득하고 종중에 돈 120냥을 주었다는 내용  
이다.

## 493. 할반문서

…□…

…□庫果 長水坪海字畝一  
斗落只 卜數三負四束 加耕

…□廩 價折錢文參

…□依數捧上爲遣 右

…□文記并 永永放

…□日後若

…□則以此文

…□[着名]

## 494. 1888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十四年戊子三月十三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畝 數年

收稅是多可 以移買次 伏在求

禮吐旨面把道村前長水坪

海字畝四斗落 卜數十七負七

束廩 價折錢文壹百肆拾兩

依數捧上是遣 右前新舊

文記並 永永放賣爲去乎 日

後若有相左之端 則以此文

記憑考事

畝主 自筆 幼學 郭淳[着名]

광서 14년(1888, 고종25) 무자년 3월 13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답밭을 수년간 세를 받아먹다가 이매하기 위해 구례 토지면吐旨面 파도촌把道村 장수평長水坪 해자답海字畓 4두락, 복수 17부 7속 곳을 전문錢文 14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신문기新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서로 어긋나는 단서가 있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畓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곽순郭淳[착명]

1888년 3월 13일에 곽순郭淳이 이매하기 위해 구례 토지면吐旨面 파도촌把道村 장수평長水坪 해자답海字畓 4두락 17부 7속 곳을 돈 14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곽순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495. 1886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十三年丙戌正月二十五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畓

數年耕食是多可 以要

用所致 伏在吐旨面把道

村前長水坪 海字畓三

斗落 卜數十三負三束

厶 價折錢文九十兩 依

數捧上是遣 右前新舊

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相左之端 則以此

憑考事

畓主 自筆 幼學 金昌奎[着名]

광서 12년(1886, 고종23)<sup>287</sup> 병술년 1월 27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답畝를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  
답으로 구례 토지면吐旨面 파도촌把道村 앞 장수평長水坪 해자답海字畝 3두락, 복수 13부 3속 곳을 전  
문錢文 9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신·구문기新舊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만약 서로 어긋날 단서가 있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김창규金昌奎[착명]

1886년 1월 27일에 김창규金昌奎가 요용소치로 구례 토지면吐旨面 파도촌把道村 장수평長水坪 해자  
답海字畝 3두락 13부 3속 곳을 돈 9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창규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  
하였다.

## 496. 1889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十五年己丑正月十六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養家傳來畝 累年耕  
食是多可 勢不得 移買<sup>288</sup>次 伏在吐旨  
面內竹村前坪 霜字員四斗落 卜數  
十六負廬 價折錢文壹百貳拾兩  
依數捧上是遣 右前以新文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之  
端 則以此文記憑考事  
畝主 幼學 鄭在護[着名]  
證筆 幼學 金淇達[着名]

287 원문의 광서 13년(1887, 고종24)은 정해년이고, 병술년은 광서 12년(1886, 고종23)이다

288 원문에는 매(賣)자로 기재된 것을 고쳤다.

證人 幼學 張世哲[着名]

추록

求禮吐旨 內竹村前霜字畝四斗地卜  
數十六卜 應乙 買得於鄭  
安甫處 光緒十五年己丑  
正月廿一日

二 新文[押]

價一百廿兩給 居間金克瑞  
并時作  
土稅每年四石約定

광서 15년(1889, 고종26) 기축년 1월 26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양가養家<sup>289</sup>에서 전래한 답밭을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해서 이매하기 위해 토지면吐旨面 내죽촌內竹村<sup>290</sup> 앞의 상지霜字답 4두락, 복수 16부 곳을 전문錢文 12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효상交象의 단서가 있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畝主 : 유학幼學 정재호鄭在護[착명]

증필證筆 : 유학幼學 김기달金淇達[착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장세철張世哲[착명]

추록

구례 토지면吐旨 내죽촌內竹村 앞의 상지답霜字畝 4두락지, 부수 16복 곳을 정안보鄭安甫에게서 매득함.

광서15년(1889, 고종26) 기축년 1월 26일.

가격 120냥을 지급함.

거간居間 김극서金克瑞가 병시작并時作하고, 토세土稅는 매년 4석으로 약정約定.

289 양가(養家) 양자로 들어간 집.

290 내죽촌(內竹村)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내죽마을을 말한다.



1889년 1월 26일에 정재호鄭在護가 이매하기 위해 유씨 집안에 토지면吐旨面 내죽촌內竹村의 상자霜字답 4두락지 16복 곳을 돈 12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장세철이 증인을 썼고 김기달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추록에는 상자답을 정안보에게 매득했고, 거간 김극가 병시작을 하며 토세는 매년 4석으로 약정한다는 내용이다.

## 497. 1879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五年己卯二月十三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畝 累年  
 耕食是多可 以要用所致 伏在求  
 禮縣吐旨面沙灘後坪 出字畝二  
 斗落只 卜數七負三束廳 價折  
 錢文肆拾兩 依數交易捧上  
 是遣 舊文記并 右前永永放  
 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 則以  
 此文記 告官卞正事  
 畝主 自筆 幼學 姜應三[着名]  
 證人 幼學 喪人 王洛瑞 喪不着

광서 5년(1879, 고종16) 기묘년 2월 13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답밭을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구례 토지면吐旨面 사탄沙灘 뒤에 있는 출자답出字畝 2두락지, 복수 7부 3속 곳을 전문錢文 4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구문기舊文記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효상爻象이 있다면 이 문기로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강응삼姜應三[작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상인喪人 왕낙서王洛瑞 상불착喪不着

1879년 2월 13일에 강응삼姜應三이 요용소치로 구례 토지면吐旨面 사탄沙灘 뒤에 있는 출자답出字畓 2두락지 7부 3속 곳을 돈 4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상중에 있는 왕낙서가 증인을 썼다.

## 498. 1886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十二年丙戌二月初七日 前明文  
右明文事 今春自己買得畓 以要用所致 不得已 伏在求禮吐旨面沙灘後共堂坪 出字二斗地 卜數七負三束塵 價折錢文貳拾七兩內拾二兩 以當報條米十二斗 價計之在拾伍兩 準數捧用交易是遣 并新舊文三章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 則以此文憑考事 畓主 閒良 洪達宣[着名] 證人 朴昌浩[着名] 此亦中 錢貳兩八錢 兩次去

### 추록

求禮吐旨面沙灘後共當田坪  
出字二斗只卜數七卜三束塵買  
得於洪達宣處 價文二十九兩八錢

광서 12년(1886, 고종23) 병술년 2월 7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금년 봄에 자기매득한 답畓을 긴히 필요한 끼답으로 부득이 하여 구례 토지면吐旨面 사탄沙灘 뒤 공당평共堂坪 출자답出字畓 2두락지, 복수 7부 3속 곳을 전문錢文

27냥 내 12냥으로 가격을 정하고, 값이야 할 쌀 12두는 15냥으로 계산하여 숫자대로 받고, 신·구문기 3장을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畵主 : 한량開良 홍달선洪達宣[작명]

증인證人 : 박창호朴昌浩[작명]

이에 전錢 2냥 8전이 두 차례 감.

#### 추록

구례 토지면 사탄沙灘 뒤 공당평共堂坪 출자出字 2두락지 복수 7복 3속 곳을 홍달선洪達宣에게 매득 하였는데 값은 전문 29냥 8전이다.

1886년 2월 7일에 홍달선洪達宣이 요용소치로 구례 토지면吐旨面 사탄沙灘 뒤 공당평共堂坪의 출자出字畵 2두락지 7부 3속 곳을 돈 27냥 가운데 12냥을 받고, 값이야 할 쌀 12두는 1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창호가 증인을 썼다. 추록에는 홍달선에게 29냥 8전에 매득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 499. 1875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同治十四年乙亥三月十二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畵 伏在吐旨面

下竹花爭坪 字負數一負二斗落廳

累年收稅是多可 以要用所致 價

折錢文參拾陸兩 依數捧上是遣

右前並新舊文記 另另放賣爲

去乎 日後如有雜談 則持此文

記 憑考事

畵主 間良 劉壽福[着名]

證人 間良 梁錫臣[着名]

동치 14년(1875, 고종12)<sup>291</sup> 을해년 3월 12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답畝인 구례 토지면吐旨面 하죽下竹 화쟁평花爭坪 ○자답 부수 1부 2두락 곳을 수년동안 세를 걷어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전문錢文 36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신·구문기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해한다. 훗날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畝主 : 한량間良 유수복劉壽福 [작명]

증인證人 : 한량間良 양석신梁錫臣 [작명]

1875년 3월 12일에 유수복劉壽福이 요용소치로 구례 토지면吐旨面 하죽下竹 화쟁평花爭坪 ○자답 1부 2두락지를 돈 36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양석신이 증인을 썼다. 논의 자호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 500. 1869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同治九年己巳十二月二十九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畝 累年

收稅是加可 要用所致

伏在吐旨面下竹花爭坪

二斗落 伏數一負廩 價折

錢文二拾兩 依數捧上爲

去乎 日後如有相左之

端 則以此文記憑考事

畝主 幼學 柳[着名]

291 동치(同治) 연호는 13년으로 끝난다. 을해년은 고종 12년이고 광서 1년이다.

證人 閑良 金子成[着名]

추록

光緒元年乙亥三月十一日[着押]

一度

吐旨面深越花爭坪金字貳斗落

卜數負五束庫乙 價文參拾陸兩 舊文

記并 買得於九龍洞居金壽福處

동치 8년(1869, 고종6)<sup>292</sup> 기사년 12월 29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답밭을 여러 해동안 세를 걷어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소재 구례 토지면吐旨面 하죽下竹 화쟁평花爭坪 2두락지 복수 1부 곳을 전문錢文 2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훗날 서로 어긋날 단서가 있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畝主 : 유학幼學 유柳[작명]

증인證人 : 한량閑良 김자성金子成[작명]

추록

광서 1년(1875, 고종12) 을해년 3월 10일[착압]

1통

토지면吐旨面 보월深越 화쟁평花爭坪 금지金字 2두락 복수 5복 곳을 전문 36냥으로 가격을 정하고 구문기舊文記를 첨부하여 구룡동九龍洞에 사는 김수복金壽福에게 매득함.

1869년 12월 29일에 유柳씨가 요용소치로 에게 구례 토지면吐旨面 하죽下竹 화쟁평花爭坪 2두락지 복수 1부 곳을 돈 2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김자성이 증인을 썼다. 추록에는 1875년 3월 10일에 토지면吐旨面 보월深越 화쟁평花爭坪 금지金字 2두락 복수 5복 곳을 구룡동에게 사는 김수복에게 36냥을 주고 매득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

<sup>292</sup> 원문의 동치 9년(1870 고종7)은 경오년이고, 기사년은 동치 8년(1869, 고종6)이다.

## 501. 189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十七年辛卯五月日 前明文  
右明文事 相關畝數年收稅是如  
可 依畝主所願不得已賣給是如  
伏在求禮吐旨面陽岸坪 玉字  
二夜味 三斗地 卜數九卜六束 又玉字巨字 五夜味 一斗五升  
地 卜數五卜一束 石臼坪 夜字五夜味 二斗地 卜數三卜六束  
合畝六斗五升地 價折錢文六十五兩  
依數交易是遣 舊文本無 故  
祇以此新文一丈 前前永永放賣  
爲去乎 日後如有雜談 則持此文  
憑考事  
畝主 自筆 求禮美洞 柳康翎宅 奴 鳳石[着名]

### 추록

陽岸坪玉字三斗地 卜數九卜六束  
玉字巨字一斗五升地 卜數五卜一束  
石臼坪夜字二斗地 卜數三卜六束  
中 三丈康翎宅券奉相關  
合畝六斗五升地 買得於完西白熏  
錢四百兩 得用計論賣  
光緒十七年辛卯五月日 六十五兩  
錢葉受來 白參奉許諾

광서 17년(1891, 고종28) 신묘년 5월 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상관답(相關畝)에서 수년간 세를 받다먹다가 답주가 원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팔아주기 위해 구례 토지면(吐旨面) 양안평(陽岸坪) 옥자(玉字) 2배미 3두지 복수 9복 6속

과 또 옥자玉字 거자巨字 5배미 1두 5승지 복수 5복 1속과 석구평石臼坪 야자夜字답 5배미 2두락지 복수 3복 6속, 합 6두 5승지를 전문錢文 6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구문기는 본래 없으므로 신문기 1장으로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해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구례求禮 미동美洞 유강령택柳康翎宅 노奴 봉석鳳石[작명]

### 추록

양안평陽岸坪 옥자玉字 3두지 복수 9복 6속

옥자玉字 거자巨字 1두 5승지 복수 5복 1속

석구평石臼坪 야자夜字 2두지 복수 3복 6속 중 3장은 강령택康翎宅의 문권과 상관된다.

합 답畚 6두 5승지를 완서完西의 백훈白熏에게 매득하고 돈 4백냥을 얻어 쓸 계획으로 팔것을 말했다.

광서17년(1891, 고종28) 신묘년 5월 일 65냥은 엽전으로 받아오기로 백참봉이 허락했다.

1891년 5월 일에 유강령택柳康翎宅의 노 봉석鳳石이가 구례 토지면吐旨面 양안평陽岸坪의 옥자玉字 2배미 3두지 9복 6속과 또 옥자玉字 거자巨字 5배미 1두 5승지 복수 5복 1속과 석구평石臼坪 야자夜字 답 5배미 2두락지 복수 3복 6속, 합 6두 5승지를 돈 6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 502. 189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十七年辛卯正月二十四日 前明文

右明爲事 傳來畚 累年收稅是多可

要用所致 伏在文尺面九城邨右 食

字伍斗落 卜數廿二卜一束塵 價折錢

文壹佰兩 依數捧上是遣 新舊文

記並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

有相左之端 則以此文憑考事

畚主 自筆 幼學 吳璉淳[着名]

證人 幼學 崔祥尹[着名]

광서 17년(1891, 고종28) 신묘년 1월 24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전래답에서 수년간 세를 받아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문척면文尺面 구성촌九城邨 오른편 식자食字 5두락, 복수 22복 1속 곳을 전문錢文 10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신문기新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서로 어긋날 단서가 있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畝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오진순吳璉淳[작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최상윤崔祥尹[작명]

1891년 1월 24일에 오진순吳璉淳이 요용소치로 문척면文尺面 구성촌九城邨 식자食字 5두락 22복 1속 곳을 돈 10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최상윤이 증인을 썼고 오진순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503. 1880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六年庚辰八月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  
收稅是多加 要用所致 伏在文  
尺面九城村前坪 食字五斗落 卜  
數廿二負四束庫果合  
價折錢文壹百陸拾兩 依數捧上  
是遣 右前新舊文并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若有相左之端 以此  
文憑考事



畚主 幼學 高圭桓[着名]

광서 6년(1880, 고종17) 경진년 8월 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해서 수년간 세를 걷어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문척면文尺面 구성촌九城邨 식자食字 5두락, 복수 22부 4속 곳 합 전문錢文 16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신문기新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서로 어긋날 단서가 있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고규환高圭桓[착명]

1880년 8월 일에 고규환高圭桓이 요용소치로 에게 문척면文尺面 구성촌九城邨 식자답食字畚 5두락 22부 4속 곳을 돈 16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고규환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 문서로는 1891년 1월 24일에 오진순吳璉淳이 요용소치로 문척면文尺面 구성촌九城邨 식자食字 5두락 22부 1속 곳을 돈 10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가 있다.

## 504. 187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同治十年辛未七月十五日 前明文  
右明文事 矣兄喪逝後 報債無路 依兄  
自己買得畚五斗落只 在於文尺面九城  
里前坪 食字負數廿二卜八束麩 禾  
穀併 價折錢文壹百陸拾五兩 依數捧  
上是遣 右前新舊文記併以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 則  
以此文記憑考事  
畚主 金基俊 喪不着

筆執 朴昌文[著名]

證人 幼學 高振采

동치 10년(1871, 고종8) 신미년 7월 15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형이 세상을 떠난 후에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형이 자기매득한 답畝 5두락지가 문척면文尺面 구성리九城里前坪에 있는데 식자食字 부수 22복 8속 곳을 화곡禾穀과 함께 전문錢文 16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신新·구문기舊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畝主 : 김기준金基俊 상불착喪不着

필집筆執 : 박창문朴昌文[작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고진채高振采

1871년 7월 15일에 김기준金基俊이 문척면文尺面 구성리九城里에 소재한 식자답食字畝 22복 8속 곳을 화곡禾穀과 함께 돈 16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형이 세상을 떠나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형의 답을 판다고 하였다. 고진채가 증인을 썼고, 박창문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505. 1900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武肆年庚子二月廿一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畝 累年

收稅是如可 勢不得已 伏在

文尺面池邊坪 白字畝二斗

落 卜數八負八束 價折

錢文壹百參拾兩 依數捧

上是遣 右前以新舊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  
有他說 則以此文記 告官下  
正事  
畚主 仙岳山人 擎雲[着名]  
保證 文尺 九城里 李金夢致 喪不着

광무 4년(1900, 고종37) 경자년 2월 21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답畚에서 수년 동안 세를 걷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문척면文尺面 지변池邊에 있는 백자답白字畚 2두락, 복수 8부 8속 곳을 전문錢文 13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신·구문기新·舊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다른 말이 있다만 이 문기로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선암산인仙岳山人 경운擎雲[작명]

보증保證 : 문척文尺 구성리九城里 이금몽치李金夢致 상불착喪不着

1900년 2월 21일에 선암산인仙岳山人 경운擎雲이 형세가 부득이하여 문척면文尺面 지변池邊에 있는 백자답白字畚 2두락 8부 8속 곳을 돈 13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상중에 있는 이금몽치李金夢致가 보증을 섰다.

## 506. 1897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建陽二年丁酉十月十八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綿田 累  
年耕食是如可 以要用所致 伏  
文尺面龍神坪場字丁 太種三  
斗落只 卜數八負八束塵 價折錢

文參拾伍兩 依數捧上是遣  
右前以新舊文記并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若有雜談 則以此  
文記相考事  
田主 自筆 幼學 張塘[着名]  
證人 幼學 高錫平

此亦中 木花卅斤  
眞荏烙印二升  
每年元定次

건양 2년(1897, 고종34) 정유년 10월 18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면전綿田(목화밭)을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문척면文尺面 용신龍神 장자場字전 태종太種 3두락지, 복수 8부 8속 곳을 전문錢文 3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신新·구문기舊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상고할 일이다.

전주田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장당張塘[작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고석평高錫平

이에 목화木花 30근과 진임眞荏(참깨) 낙인烙印 2승을 매년 원정元定하기로 함.

1897년 10월 18일에 장당張塘이 요용소치로 문척면文尺面 용신龍神 장자정場字丁 태종太種 3두락지 8부 8속 곳을 돈 3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고석평이 증인을 썼고 장당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매년 목화 30근과 참깨 낙인 2승을 주기로 했다.

## 507. 1897년 장당張塘 수표手標

標

右標事段 文尺面九城里龍神

坪 場字綿田三斗落只 舊文記

段 東撓遺失 故不得已 如是成標

爲去乎 日後若有他說 則以此文記

告官事

丁酉十月十九日 標主 幼學 張塘[着名]

표標

이 표標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문척면文尺面 구성리九城里 용신龍神에 있는 장자場字 면전綿田 3두락지, 구문기舊文記는 동학 소요 때 유실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와같이 표를 만드니, 훗날 만약 다른 말이 있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할 일이다.

정유년(1897) 10월 19일 표주標主 유학幼學 장당張塘[착명]

1897년 10월 19일에 장당張塘이 문척면文尺面 구성리九城里 용신평龍神坪의 장자場字 목화밭 3두락지에 대하여 표標를 작성한 것이다. 표를 작성한 것은 동학의 소요로 구문기를 유실하였기 때문이다. 1897년 10월 18일에 장당張塘은 유씨집안에 장자場字 목화밭 3두락지 8부 8속을 35냥에 팔았다.

## 508. 1896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開國五百五年丙申正月十七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勢不得已 圖生次  
伏在求禮吐旨面五美村前坪  
騰字畓下片 三斗落只 卜數十三負  
庫乙 價折錢文貳百兩 依數捧  
上是遣 舊文記段 中間遺失  
故以新文一丈 永永放賣爲去  
乎 日後如有相左之端 則以此  
憑考事  
畓主 柳寡宅 金氏[手掌]  
子 壽童  
證筆 幼學 柳濟晞[着名]

#### 추록

騰字畓三斗地 同初次 文券  
價二百兩 竟爲一百三十兩

개국 505년(1896, 고종33) 병신년 1월 17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형세가 부득이하여 살기를 도모하기 위해 구례 토지면吐旨面 오미촌五美村 앞에 있는 등자답騰字畓 하편下片 3두락지 복수 13부 곳을 전문錢文 20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구문기舊文記는 중간에 유실되었으므로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서로 어긋나는 단서가 있다면 이것으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畓主 : 유씨 과부댁 김씨金氏[수장]

자子 수동壽童

증필證筆 : 유학幼學 유제희柳濟晞[작명]

#### 추록

등자답騰字畓 3두지가 처음 문권文券에는 값 200냥이었는데 마침내는 130냥이 되었다.

1896년 1월 17일에 유수동柳壽童과 그의 모친 김씨가 생계를 위해서 구례 토지면吐旨面 오미촌五美

村 등지답騰字畓 하편下片 3두락지 13부 곳을 돈 20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유제희가 증인을 서고 문서를 작성하였다.

## 509. 1896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開國伍百伍年丙申十一月廿四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畓 累年耕食是多可  
勢不得已 要用所致故 伏在求禮文尺面  
池邊坪 白字畓二斗落 卜數八負六束  
應 價折錢文百兩 依數捧上是遣 右前  
以新舊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有雜談 則以此文記 告官下呈事  
畓主 順天 仙岩寺 僧 擎雲[着名]

### 추록

求禮吐旨美洞村前環洞左坪 騰字畓  
三斗地九斗地之下流 卜數十三負一束庫乙  
買得於京居鄭衛將 細音會計  
價一百卅五兩 舊主 卽平村宅柳壽童

求禮文尺面安只洞池上坪 白字畓  
二斗地 卜數八卜六束應乙 給價錢一百  
卅兩 買得於仙岳山人擎處

개국 505년(1896, 고종33 건양1년) 병신년 11월 24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답밭을 수년동안 지어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하

고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구례 문척면文尺面 지변池邊에 있는 백자답白字畓 2두락, 복수 8부 6속 곳을 전문錢文 10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신新·구문기舊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익을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순천順天 선암사仙岩寺 승僧 경운擊雲[작명]

#### 추록

구례 토지 미동촌美洞村 앞 환동環洞 왼쪽의 등자답騰字畓 3두지, 9두지의 하류, 복수 13부 1속 곳을 서울에 사는 정위장鄭衛將에게 샀는데, 세음細音(셈)을 회계하여 135냥으로 하였다. 구주舊主는 곧 평촌대平村宅 유수동柳壽童이다.

구례 문척면 안지동安只洞 지상池上의 백자답白字畓 2두지, 복수 8부 6속 곳을 전錢 130냥을 주고 선암산인仙岫山 경운에게 매득하였다.

1896년 11월 24일에 승僧 경운擊雲이 유씨 집안에 구례 문척면文尺面 지변池邊에 있는 백자답白字畓 2두락 8부 6속 곳을 돈 10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 510. 1889년 유두호庾斗瑚 표標

標

右標段 求禮馬山面五溪坪【玉只坪】

日字田 舊文記中間遺失 故

放賣時 不得許給 以標一丈

舊文記代成標爲去乎 日

後 如有相左 則以此標記

憑考事

標主 幼學 庾斗瑚[着名]

己丑四月二十日



丙申二月日 還放於

龍頭梁變一處

표標

위 표標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구례 마산면馬山面 오계평五溪坪【옥지평玉只坪】일자전日字田의 구문기舊文記가 중간에 유실되었으므로 방매할 때 허급할 수 없어서 표標 1장으로 구문기舊文記를 대신하여 표標를 만들어 준다. 훗날 만약 서로 어긋남이 있다면 이 표기標記로 증빙할 일이다.

표주標主 : 유학幼學 유두호庠斗瑚[착명]

기축년(1889) 4월 20일

병신년(1896) 2월 일에 용두龍頭리의 양섭일梁變一에게 다시 방매함.

1889년 4월 20일에 유두호庠斗瑚가 구례 마산면馬山面 오계평五溪坪【옥지평玉只坪】일자전日字田의 구문기를 잃어버려서 방매할 때 줄 수 없으므로 구문기 대신 새로 작성해서 준 표標이다. 위 땅을 1896년 2월에 다시 양섭일에게 팔았다.

## 511. 1895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開國五百四年乙未九月十五日 前明文

右明文事 流來田畝 屢年耕

食是如加 勢不得已 報債次

伏在求禮吐旨面金谷坪 陽

字畝二斗地 卜數七卜三束 折價

一百兩爲遣 馬山面玉只坪 日字

浦田五【三】斗地 卜數十三卜二束庫  
折價五十兩 右前并新舊文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  
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告  
官下正事  
田畝主 幼學 張文國 喪不着

### 추록

可攷  
求禮吐旨面金谷坪 陽字畝 二斗  
地 卜數七卜三束果  
馬山面玉浦坪 日字田 五斗  
地 卜數十三卜二束廳乙  
錢壹佰伍拾兩 買得於馬山下沙  
張文國宅號盤谷處印  
開國五百四年乙未九月十五日[着押]  
權執

개국 504년(1895, 고종32) 을미년 9월 15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유래 전답田畝를 여러 해 경작하여 먹다가 형세가 부득이  
빚을 갚기 위해 구례 토지면 금곡金谷의 양지답陽字畝 2두지, 복수 7복 3속을 100냥으로 가격을 정하  
고, 마산면馬山面 옥지평玉只坪 일자포전日字浦田 5두지, 복수 13복 2속 곳을 5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위 사람에게 신新·구문기舊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전답주田畝主 : 유학幼學 장문국張文國 상불착喪不着

### 추록

상고할 수 있다.

구례 토지면 금곡金谷의 양지답陽字畝 2두지, 복수 7복 3속과 마산면馬山面 옥포평玉浦坪 일자전日  
字田 5두지, 복수 13복 2속 곳을 전錢 150냥으로 하여 마산馬山 하사下沙에 사는 장문국張文國宅 호

號는 반곡盤谷에게 매득함.

개국 504년(1895, 고종32) 을미년 9월 15일[착업]

1895년 9월 15일에 상중에 있는 장문국張文國이 빚을 갚기 위해 유씨 집안에 구례 토지면 금곡金谷의 양자답陽字畓 2두지 7복 3속을 돈 100냥에, 마산면馬山面 옥지평玉只坪 일자포전日字浦田 5두지 13복 2속 곳을 돈 5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 512. 1895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開國五百四年乙未十一月二十一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畓 伏在吐旨面五美洞  
村前環洞坪 騰字畓合九斗地內 下流三斗落只 卜數十三  
負一束塵 價折錢文壹百參拾伍兩 依數捧上是遣  
以新文一丈 永永放賣於右人前 日後如有爻象  
之端 則以此憑考事  
畓主 柳寡宅[手掌]  
子 壽童  
證 叔 柳濟晞

### 추록

五味洞萬孫名下騰字 結卜十七卜三束  
下竹丁春名下去

개국 504년(1895, 고종32) 을미년 11월 21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자기 답畓 토지면吐旨面 오미동五美洞

마을 앞의 환동(環洞)에 있는 등자답(騰字畓) 합 9두지 내의 하류(下流) 3두락지, 복수 13부 1속 곳을 전문(錢文) 13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효상(效象)의 단서가 있다면 이것으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畓主) : 유과택(柳寡宅) [수장]

자(子) 수동(壽童)

증(證) : 숙부 유제희(柳濟晞)

### 추록

오미동(五美洞) 만손(萬孫) 이름으로 된 등자(騰字) 결복(結卜)은 17복 3속 곳을 하죽(下竹) 정춘(丁春) 명의로 함.

1895년 11월 21일에 유수동(柳壽童)과 그 모친이 토지면(吐旨面) 오미동(五美洞) 촌전 환동(環洞)<sup>293</sup>에 있는 등자답(騰字畓) 하류(下流) 3두락지 13부 1속 곳을 돈 13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숙부 유제희가 증(證)을 썼다.

관련문서로 1896년 1월 17일에 유수동(柳壽童)과 그의 모친 김씨가 생계를 위해서 구례 토지면(吐旨面) 오미촌(五美村) 등자답(騰字畓) 하편(下片) 3두락지 13부 곳을 돈 20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가 있는데, 이때에도 유제희가 증(證)을 서고 문서를 작성하였다.

## 513. 1890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十六年庚寅十月廿五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契中買得畓 屢

年收稅是如可 以相換次 伏

在求禮吐旨面金谷上坪 陽字

二斗地 卜數七負三束鷹乙

293 환동(環洞)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를 말한다.

依本價陸拾兩 以此新文一丈  
永永相換爲去乎 日後如有  
爻象之說 持此文憑考事  
畚主 五美洞  
齋契首 柳[着押] 奴卜乃宅  
此亦中 加錢拾兩 從速備給次  
際

### 추록

求禮吐旨金谷坪  
陽字二斗地卜數七  
負三束 價陸拾兩  
相換得美洞齋中

광서 16년(1890, 고종27) 경인년 10월 25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계증契中에게 매득한 답畓에서 수년간 세를 걷어먹다가 상환하기 위해 구레 토지면 금곡金谷 위에 있는 양자陽字 2두지, 복수 7부 3속 곳을 본가本價 60냥에 의거하여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영구히 상환한다. 훗날 만약 효상爻象의 말이 있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할 일이다.

답주畓主 : 오미동五美洞 재계수齋契首 유柳[착압] 노奴 복내택卜乃宅  
이에 전錢 10냥을 더해서 조속히 갖추어주려고 함.

### 추록

구레 토지 금곡의 양자답 2두지, 복수는 7부 3속인 곳을 가격 60냥에 미동 재증齋中과 상환함.

1890년 10월 25일에 오미동五美洞 재계수齋契首 유柳[노奴 복내卜乃]가 본가本價 60냥과 구레 토지면 금곡金谷의 양자답陽字畓 2두지 7부 3속 곳을 상환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문서를 작성한 후에 10냥을 추가로 주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재계수齋契首 유柳가 서명을 했다.

## 514. 189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十七年辛卯二月六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畚 數年收稅是如可  
要用所致 伏在求禮文尺邨上坪 字畚  
五斗落 卜數字白庫乙 價折錢文壹百兩  
依數捧上爲遣 舊文記都文載錄 故不  
得許與 而以新文記一丈 右前永永放  
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是  
去等 將此文記相考事  
畚主 自筆 幼學 丁永禧[着名]

### 추록

文尺面安旨洞前坪 白字五斗畚  
卜數廿五卜九束 價給一百兩 買得  
於崔昌鉉 居間崔在和

광서 17년(1891, 고종28) 신묘년 2월 6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답밭에서 수년간 세를 걷어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구례 문척촌文尺邨 백자답白字畚 5두락 곳을 전문錢文 10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구문기는 도문기에 실려 있어서 허여할 수 없고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효상爻象이 있다면 이 문기로 상고할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정영희丁永禧[작명]

### 추록

문척면文尺面 안지동安旨洞 앞의 백자白字답 5두락, 복수 25복 9속을 값 100냥을 주고 최창현崔昌鉉에게 매득함. 거간居間은 최재화崔在和.

1891년 2월 6일에 정영희丁永禧가 요용소치로 구례 문척촌文尺邨의 백자답白字畓 5두락지(복수로는 25복 9속 곳)를 돈 10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정영희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추록에 의하면 문화유씨는 백자답 5두락지 25복 9속을 거간 최재회를 통해 돈 100냥을 주고 최창현에게 매득하였다.

## 515. 1891년 정영희丁永禧 표標

標

右標事 白字畓五斗落

卜數廿五卜九束庫乙 永永放賣 而

舊文記 他文記并付 故

以新文一丈是遣 以此成

標 日後若有爻象 則以

此標憑考事

辛卯二月日 標主 丁[着名]

표標

이 표標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백자답白字畓 5두락, 복수 25복 9속 곳을 영구히 방매하는데, 구문기는 다른 문기와 병부되어 있으므로 신문기 1장으로 하고 이 표標를 만들어 준다. 훗날 만약 효상爻象이 있다면 이 표標로 증빙할 일이다.

표주標主 정丁[작명]

1891년 2월 일에 정丁씨가 백자답白字畓 5두락 25복 9속 곳을 팔면서 작성한 표標이다. 구문기를 내줄 수 없어서 신문기와 함께 표를 작성해서 준 것이다. 표주 정丁씨는 1891년 2월 6일 정영희丁永禧가 백자답 5두락지를 판 문기에 따라 정영희로 보인다.

## 516. 1877년 산인山人 시헌是憲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三年丁丑十月晦日 山人 是憲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畚 累年耕  
食是如可 喪債太多 故不得已 伏在  
求禮縣文尺面安地坪 白字畚二斗落  
只 負數八負六束塵 價折錢文七十四兩  
六錢 依數捧上爲遣 新舊文三丈并以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  
談是去等 以此文記 告官下定事  
畚主 山人 守仁[着名]  
證人 幼學 陳致善[着名]  
筆執 山人 元奇[着名]

丙子二月日 喪債錢以五分利二十兩用  
當年十朔  
丁丑年十朔 合二十兩  
并本利合四十兩  
丁丑十月晦日 新給錢四十二兩六錢  
都合八十二兩六錢內 八兩鉢孟二座價除  
餘錢七十四兩六錢 畚價給  
每斗落三十七兩三錢式

광서3년(1877, 고종14) 정축년 10월 30일 산인山人 시헌是憲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답畚에서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상채喪債가 너무 많으므로 부득이하게 구례현 문척면文尺面 안지安地<sup>294</sup>에 있는 백자답白字畚 2두락지, 부수 8부 6속 곳을 전문錢文 74냥 6전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신·구문기新·舊文記 3장을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畓主 : 산인山人 수인守仁[작명]

증인證人 : 유학幼學 진치선陳致善[작명]

필집筆執 : 산인山人 원기元奇[작명]

병자년 2월 일에 상채전喪債錢은 5부의 이자로 20냥을 썼다. 즉 당년當年 10달과 정축년丁丑年 10달이라 합하여 20냥이다. 그래서 본자와 이자를 합하여 40냥이다.

정축년 10월 그믐에 새로 42냥 6전을 주어서 도합 82냥 6전이 된 가운데, 8냥은 발우鉢盂 2좌 값으로 제하고, 나머지 돈 74냥 6전을 논값으로 하니, 매 두락당 37냥 3전씩 계산된 것이다.

1877년 10월 30일에 산인 수인守仁이 산인 시헌是憲에게 구례현 문척면文尺面 안지평安地坪 백자답白字畓 2두락지 8부 6속 곳을 돈 74냥 6전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방매이유는 초상을 치르면서 진 빚을 갚지 못해서이다. 진치선이 증인을 썼고 원기가 문서를 작성하였다. 덧붙인 글에는 병자년(1876) 2월에 상채전喪債錢을 5부의 이자로 20냥을 써서 본자까지 합해 40냥이 되었고 이번에도 42냥 여를 받아써서 발우값을 제하고도 74냥 6전을 논값으로 하는데 매 두락당 37냥 3전씩 계산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 517. 1891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光緒拾柒年辛卯十二月十九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畓 年耕食是如可  
要用所致 伏在求禮縣文尺面安旨洞  
前坪 白字畓五斗落只 卜數二十五卜九束  
廳乙 錢文壹百兩 依數奉上是遣 新舊文

---

294 안지(安地)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안지마을에 해당.

并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  
雜談是去等 以此文記憑考事  
畚主 幼學 崔昌鉉[着名]  
證筆 幼學 高廷旭[着名]

광서17년(1891, 고종28) 신묘년 12월 19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답밭에서 경작하여 먹다가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구례현 문척면文尺面 안지평安地坪 백자답白字畓 5두락지, 복수 25복 9속 곳을 전문錢文 100냥으로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신구문기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이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답주畚主 : 유학幼學 최창현崔昌鉉[착명]

증필證筆 : 유학幼學 고정옥高廷旭[착명]

1891년 12월 19일에 최창현崔昌鉉이 구례현 문척면文尺面 안지평安地坪 백자답白字畓 5두락지 25복 9속 곳을 돈 10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고정옥이 증증을 썼고 문서를 작성하였다.

## 518. 1838년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十八年戊戌閏四月十六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自己買得 騰字  
畓 二斗五升落只 伏在五美洞村前坪  
員 負數十二負庫乙 折價肆拾兩  
依數捧上是遺 本文記并 右前永  
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  
此文記 告官下正事

畚主 全萬益[着名]

도광 18년(1838, 헌종4) 무술년 4월 16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매하기 위해 스스로 매득한 등자답騰字畚 2두 5승락지의 오미동五美洞 마을 앞에 있는 부수 12부 곳을 4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전만익全萬益[착명]

1838년 4월 16일에 전만익全萬益이 이매하기 위해 오미동五美洞의 등자답騰字畚 2두 5승락지 12부 곳을 4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 519. 1829년 곽학묵郭學默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九年己丑三月二十五日 幼學 郭學默前 明文

右明文事段 以要用所致 自己買得 伏

在吐旨面五美洞坪 騰字畚伍斗落

地內 西邊二斗五升落 負數十二負

廩 價折錢文參拾伍兩 依數捧上

爲遣 本文記段 他畚文記并付 故不

得出給 而右前以新文記一丈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如有雜

談 則以此文下正事

畚主 自筆 幼學 柳日浩[着名]

## 추록

環洞坪騰字卜數十三卜一束  
價一百卅五兩九斗地之下流 三斗地文券  
騰字畚三斗地之都券

도광 9년(1829, 순조29) 기축년 3월 25일 유학幼學 곽학묵郭學默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자기매득한 토지면 오미동五美洞 등자답騰字畚 5두락지 내의 서쪽 2두 5승락, 부수 12부 곳을 전문錢文 3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는 다른 답畚에 병부되어 있으므로 출급할 수 없고, 위 사람에게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바로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유일호柳日浩[작명]

## 추록

환동環洞의 등자騰字 복수 13복 1속  
135냥 9두지의 하류下流 3두지 문권文券  
등자답騰字畚 3두지의 도권都券

1829년 3월 25일에 유일호柳日浩가 요용소치로 곽학묵郭學默에게 토지면 오미동五美洞 등자답騰字畚 2두락지 5승락 12부 곳을 돈 3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 520. 1807년 이증태李增泰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十二年丁卯二月三十日 幼學 李增泰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老母年當八十 人命尤淺 朝不  
慮夕 日後送終之節 板材與衣服預備之意

自己買得是在 伏在吐旨面堂山坪鹹字員  
畚二斗落只 負數四卜七束庫乙 價折錢文  
貳拾柒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見失之致 不得出與爲去乎 日後  
女婿族屬中 如有雜談 此文下正事  
畚主 李姓[手掌]  
筆 李宗仁[着名]  
證 韓益祿[着名]

### 추록

堂山坪鹹字  
畚 卜數四卜七束  
廳 買得李奴分今處

가경 12년(1807, 순조7) 정묘년 2월 30일 유학幼學 이증태李增泰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노모의 나이가 80세가 되어 사람의 목숨이 매우 얇아 아침에 저녁을 생각할 수 없다. 이후 송종送終의 일과 판재板材(관) 및 의복衣服(수의)을 미리 준비할 생각으로 자기매득한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の 함자답鹹字畚 2두락지, 부수 4복 7속 곳을 전문錢文 27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本文記는 잃어버려서 줄 수 없다. 훗날 사위나 족속 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바로 잡을 일이다.

답주畚主 : 이성李姓[수장]

필筆 : 이종인李宗仁[작명]

증證 : 한익록韓益祿[작명]

### 추록

당산堂山の 함자답鹹字畚 복수 4복 7속 곳을 이노李奴 분금分今에게 매득함.

1807년 2월 30일에 이성李姓이 이증태李增泰에게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の 함자답鹹字畚 2두락지 4복 7속 곳을 돈 27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노모의 장례비용을 준비하기 위하여 판다고

하였다. 한익록이 증證을 썼고 이종인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답주는 착명하지 않고 수장手掌한 것으로 보아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추록에는 함자답을 이씨 노비 분금에게 매매했다고 기록했다.

## 521. 1808년 한익록韓益祿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十三年戊辰十二月十七日 幼學 韓益祿前 明文  
右明文事 要用所致 自己買得是在 伏在吐旨  
面堂山坪 鹹字員畝二斗落只 負數四卜九束  
庫乙 價折錢文貳拾柒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  
雜談是去等 將此文下正事  
自筆 畝主 幼學 李增泰[着名]

가경 13년(1808, 순조8) 무진년 12월 17일 유학幼學 한익록韓益祿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자기매득한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の 함자답鹹字畝 2두락지, 부수 4복 9속 곳을 전문錢文 27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바로 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畝主 : 유학幼學 이증태李增泰[착명]

1808년 12월 17일에 이증태李增泰가 요용소치로 한익록韓益祿에게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 함자답鹹字畝 2두락지 4복 9속 곳을 돈 27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이증태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 보면 1807년 2월 30일에 이씨 성이 이증태李增泰에게 함자답을 27냥에 팔았는데, 1808년에는 이증태가 한익록에게 같은 곳을 27냥에 팔았고, 1809년 3월 16일에는 한익록韓益祿이 이씨노비 분금分金에게 같은 곳을 돈 40냥에 팔았다.

## 522. 1809년 노부 분금分金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十四年己巳三月十六日 奴 分金處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買得是在 伏在

吐旨面堂山坪 鹹字畓貳斗落只 負數

四負九束塵 價折錢文四拾兩 依數

捧上爲遣 右前本文記貳丈并以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將此文

記卞正事

筆 幼學 韓弘弼[着名]

畓主 幼學 韓益祿[着名]

가경 13년(1809, 순조9) 기사년 3월 16일 노부 분금分金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자기매득한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の 함자답鹹字畓 2두락지, 부수 4부 9속 곳을 전문錢文 40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2장을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바로 잡을 일이다.

필筆 : 유학幼學 한홍필韓弘弼[착명]

답주畓主 : 유학幼學 한익록韓益祿[착명]

1809년 3월 16일에 한익록韓益祿이 요용소치로 노비 분금分金에게 토지면吐旨面 당산堂山の 함자답鹹字畓 2두락지 4부 9속 곳을 돈 40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한홍필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한익록은 위 땅을 1808년 12월 17일에 이증태李增泰에게 돈 27냥에 사들였는데, 1809년 3월에 노비 분금에게 돈 40냥에 팔아서 4개월 만에 13냥의 차익을 남겼다.

## 523. 1814년 유노柳奴 복래卜來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拾九年甲戌二月初四日 柳奴卜來前 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是在 堂山  
坪鹹字畝 合三斗落只 卜數四卜  
九束塵 價折錢文參拾  
伍兩 依數捧上爲遣 本  
文記并 右前永永放賣爲  
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  
等 將此文卜正事  
自筆 畝主 李奴 分今[着名]

가경 19년(1814, 순조14) 갑술년 2월 4일 유노柳奴 복래卜來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한 당산堂山 함자답鹹字畝 합 3두락지, 복수 4복 9속 곳을 전문錢文 3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바로 잡을 일이다.

자필自筆 답주畝主 : 이노李奴 분금分今[착명]

1814년 2월 4일에 이노李奴 분금分今이 유노柳奴 복래卜來에게 당산堂山 함자답鹹字畝 3두락지 4복 9속 곳을 돈 3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1809년 3월 16일에 한익록이 이씨의 노비 분금에게 40냥에 팔았는데, 분금은 유씨의 노비 복래에게 돈 35냥에 판 것이다.



## 524. 1796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元年丙辰十一月廿六日 柳德浩前 明文

右文爲事 要用所致以

本面九龍井村中 生

字垞田 貳斗落只 卜數

貳卜庫乙 價折錢文肆

兩 依數捧上爲遣 右前

本文記并以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雜談是

去等 以此文卜正事

垞田主 自筆 幼學 柳萬龜[着名]

### 추록

九龍垞畝

二斗地 柳生

萬龜處 買

得耳

嘉慶元年

丙辰十一月廿

六日 文券一丈

가경 1년(1796, 정조20) 병진년 12월 26일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본면 구룡정촌九龍井村에 있는 생자生字 대전垞田 2두락지, 복수 2복 곳을 전문錢文 4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를 첨부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기로 바로 잡을 일이다.

대전주垞田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유만구柳萬龜[작명]

### 추록

구룡九龍 대답대답 2두지를 유만구柳萬龜에게 매득함.  
가경 1년(1796, 정조20) 병진년 12월 26일. 문권文券 1장.

1796년 12월 26일에 유만구柳萬龜가 요용소치로 유덕호柳德浩에게 구룡정촌九龍井村에 있는 생자生字 대전대田 2두락지 2복 곳을 돈 4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유만구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525. 1800년 고수관高守瓘 서간書簡

料外 卽承辱書 仍審窮臆  
侍餘棣履佳安 慰溱區區無任之  
至 守瓘 省事粗安 外何昂喻 簡中  
所教 家垩事 價至於降下 還爲  
慨然 所送錢文 如數考捧 而文書更  
修付送 考納如何 餘便忙不備 伏惟  
下照 謹拜謝上狀  
庚臈十七日  
高守瓘 拜

### 추록

龜村 高守瓘 家垩文記  
庚申臘月十  
嘉慶五年庚申  
十二月初二日文記  
片紙

뜻밖에 당신의 편지를 받고, 살피건대 연말에 부모님 모시며 형제들과 사는 생활이 좋다고 하니, 위로되고 그리운 마음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저(수관)는 부모님께서 그럭저럭 편안하게 지내시니 이밖에 무엇을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편지에서 말씀하신 가대家垵의 일은 값이 떨어지기에 이르렀으니 도리어 한탄스럽습니다. 보내주신 전문錢文은 수대로 잘 받았고, 문서는 다시 수정하여 부쳐 보내니 살펴서 받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인편이 바빠해서 이만 줄입니다. 삼가 헤아려 주십시오. 삼가 답장편지 올립니다.

1800년 12월 17일에 고수관高守瓘 올림.

### 추록

구촌龜村의 고수관高守瓘이 경신년 납월 17일에 보낸 편지.

가경 5년(1800, 정조24) 경신년 12월 2일 문기

1800년 12월 2일에 고수관高守瓘이 유덕호에게 보내온 편지이다. 가대家垵의 값이 내려 오히려 한탄스럽다는 말과 보내온 가대 값을 숫자대로 받았고, 문서는 수정하여 보내드리니 받으라는 말을 하였다. 같은 날 고수관이 유덕호에게 문척면文尺面 구성리龜城里에 있는 구자駒字 태종太種 1두 5승락지, 초가草家 1지 5칸 5복 곳을 돈 13냥에 판 문기가 있다.

## 526. 1800년 유덕호柳德浩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伍年庚申十二月初二日 幼學 柳德浩前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傳來家垵 在於文尺

面龜城里 駒字太種一斗伍升落只 草家一

旨五間 負數五卜庫乙 價折錢文拾參

兩以 依數交易捧上爲乎矣 本文記段

都文券立旨載錄 故不得出給爲去乎 日後

子孫良中 若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告

官下正事

家垔主 自筆 幼學 高守瓘[着名]

가경5년(1800, 정조24) 경신년 12월 2일 유학幼學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전래 가대家垔인 문척면文尺面 구성리龜城里에 있는 구자駒字 태종太種 1두 5승락지, 초가草家 1지 5칸 부수 5복 곳을 전문錢文 13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도문기가 입지立旨에 실려 있으므로 내줄 수 없다. 훗날 자손 중에 만약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垔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고수관高守瓘[작명]

1800년 12월 2일에 고수관高守瓘이 요용소치로 유덕호柳德浩에게 가대家垔로 문척면文尺面 구성리龜城里에 있는 구자駒字 태종太種 1두 5승락지, 초가草家 1지 5칸 5복 곳을 돈 13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고수관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527. 1808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嘉慶陸年戊辰二月十六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  
如可 移買次 伏在馬山面大召坪  
地字田三斗落 卜數十一負九束塵  
價折錢文貳拾八兩 依數捧上爲遣  
舊文記 中間闕失 故以新文記一丈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  
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告  
官下正事  
田主 自筆 幼學 王得亮[着名]

가경 13년(1808, 순조8)<sup>295</sup> 무진년 2월 16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이매하기 위하여 마산면馬山面 대소大畧의 지자전地字田 3두락, 복수 11부 9속 곳을 전문錢文 28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구문기舊文記는 중간에 유실되었으므로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전주田主 : 자필自筆 유학幼學 왕득량王得亮[착명]

1808년 2월 16일에 왕득량王得亮이 이매하기 위해 마산면馬山面 대소大畧에 있는 지자전地字田 3두락, 복수 11부 9속 곳을 돈 28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왕득량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528. 1834년 박영화朴永和 토지명문土地明文

道光十四年甲午正月廿八日 朴永和前 明文

右明文事段 以要用所

致 自己買得 生字家堡

體舍三間 行廊三間 杵

白桶一食 鼎一坐 負數五

卜廩 價折錢文參拾貳

兩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族屬中 如有雜談是去

等 以此文記 卜正事

家堡主 自筆 張一祿[著名]

---

295 원문의 가경 6년(1801, 순조1)은 신유년이고, 무진년은 가경 13년(1808, 순조8)이다.

도광 14년(1834, 순조34) 갑오년 1월 28일 박영화朴永和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필요한 까닭으로 자기매득한 생자生字 가대家垔의 체사體舍 3칸, 행랑行廊 3칸, 절구통 1식, 솥 1좌坐, 부수 5복 곳을 전문錢文 32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족속 중에 만약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바로 잡을 일이다.

가대주家垔主 : 자필自筆 장일록張一祿[작명]

1834년 1월 28일에 장일록張一祿이 요용소치로 박영화朴永和에게 생자生字 가대家垔, 체사體舍 3칸, 행랑行廊 3칸, 절구통 1식, 솥 1좌坐, 부수 5복 곳을 돈 32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장일록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 529. 1858년 토지명문土地明文

咸豐捌年戊午三月十六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田 累年耕

食是如可 移買次 伏在馬山面

大楸坪地字員 太種三斗

落只 負數十一卜九束塵 價

折錢文貳拾伍兩 依數捧上

爲遣 新舊文并 右前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 則

以此文記憑考事

田主 幼學 李潤璣[着名]

證筆 幼學 崔時一[着名]

함풍 8년(1858, 철종9) 무오년 3월 16일 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기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먹다가 이매하기 위하여 마산면馬山面 대추大楸의 지자地字 태종太種 3두락지, 부수 11복 9속 곳을 전문錢文 25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신新·구문기舊文記를 첨부하여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만약 이익을 제기한 자가 있다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전주田主 : 유학幼學 이윤기李潤璣 [착명]

증필證筆 : 유학幼學 최시일崔時一 [착명]

1858년 3월 16일에 이윤기李潤璣가 이매하기 위해 마산면馬山面 대추大楸에 있는 지자地字 태종太種 3두락지 11복 9속 곳을 돈 2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최시일을 증證을 썼고 문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문서로는 1808년 2월 16일에 왕득량王得亮이 마산면馬山面 대소大召의 지자전地字田 3두락, 복수 11부 9속 곳을 돈 28냥에 판 것이 있다.

부록

전담 자호별 토지매매 목록

家  
目  
侍  
知  
不  
下  
教  
日  
多  
重  
國  
家  
大  
事  
也  
勿  
心  
下  
即  
收  
越  
入  
將  
就  
直  
東  
不  
七  
年  
未  
暇  
事  
三  
經  
同  
視  
可  
美



전답 자호별 토지매매 목록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479	토지명문	광서19년(1893, 고종30) 계사년 11월 초2일 미동(美洞) 유씨종계(柳氏宗契)에게 주는 명문	1893	김정언	유씨종계	이응현	돈 24냥	토지		가경답	
449	토지명문	함풍7년(1857, 철종8) 정사년 8월 초10일 에게 주는 명문	1857	전여중		박시연	돈 8냥			가대	1두락지 7부 9속
107	토지명문	건륭52년(1787, 정조11) 정미년 1월 6일 유용천(柳龍川) 닥에게 주는 명문	1787	김지각	유용천	김지각	돈 30냥	토지	하죽천리	가대 상자18전 초가 대추나무 갑나무	태종1두 5승락지 7부3속 5지 3그루
106	토지명문	건륭52년(1787, 정조11) 정미년 2월 21일 유용천(柳龍川) 닥에게 주는 명문	1787	김지호	유용천	김지호	돈 9냥	토지	하죽천	가사 2지	3부
263	토지명문	강희9년(1670, 현종11) 경술년 1월 16일 김태흥(金太興)에게 주는 명문	1670	손숙남	김태흥	손숙남	정조 45석	토지	행정	강자답	12두락지 37부
264	토지명문	옹정9년(1731, 영조7) 신해년 1월 15일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에게 주는 명문	1731	김조이	이원석		정조 77석			강자답	10두락지 2작 37복 1속
334-1	허급명문	강희47년(1708, 숙종34) 무자년 12월 19일 승당(僧堂) 화주승(化主僧) 탄오(坦梧)에게 주는 명문	1708	치익	탄오	승일	허급	토지 토지 간전 간전	사탄 구정자 도리산 연곡동	거자답 내자답 황자답 사자답	3두락7복 7속 2작7두락 20복4속 10두락 5승락지 19복 4작5두락 12복4속
139	토지명문	건륭13년(1748, 영조24) 무진년 11월 20일 이생원(李生員) 닥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1748	김태후	가팔리	장한벽	돈 2냥	토지		검자문전답	1부 4속 5승락지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395	토지명문	옹정2년(1724, 경종4) 갑진년 12월 25일 유학(幼學) 이희중(李希曾)에게 주는 명문	1724	박정태	이희중	박정태	돈 46냥	토지	문전	검자답	6두락지 28부 5속
396	토지명문	옹정2년(1724, 경종4) 갑진년 12월 25일 유학(幼學) 이희중(李希曾)에게 주는 명문	1724	박정태	이희중	박정태	돈 19냥	토지	문전	검자답	2두 5도락지 11부 3속
397	토지명문	강희57년(1718, 숙종44) 무술년 2월 초7일 유학(幼學) 박정태(朴挺泰)에게 주는 명문	1718	장우선	박정태	황주	돈 140냥	토지	문전	검자답	9두락지 14복 6속, 2작 20복 2속
398	토지명문	강희47년(1708, 숙종34) 무자년 1월 24일 승(僧) 옥명(玉明)에게 주는 명문	1708	김두홍	옥명	김상백	돈 11냥	토지	문전	검자답	2두락지 8부 2속
399	토지명문	강희26년(1687, 숙종13) 정묘년 2월 초5일 김응선(金應善)에게 주는 명문	1687	이무홍	김응선	김정현	정조 전 3석	토지	문전	검자답	5두락지 20복 2속, 2작 1복
400	토지명문	강희45년(1706, 숙종32) 병술년 1월 25일 승(僧) 옥명(玉明)에게 주는 명문	1706	김두홍	옥명	김상백	정조 12석 돈 15냥	토지	문전	검자답	3두락지 22부 2속
402	토지명문	강희42년(1703, 숙종29) 계미년 12월 20일 옥명(玉明)에게 주는 명문	1703	김두홍	옥명	조위경	나락 전 35석	토지	문전	검자답	4두락지 14부 6속
480	토지명문	광서15년(1889, 고종26) 기축년 11월 26일 에게 주는 명문	1889	유제혁		유제혁	돈 85냥	토지	신전	검자답	3두락지 10복 3속
401	토지명문	임오년 윤11월 29일 정병(正兵) 이명생(李明生)에게 주는 명문	1702	조몽현	이명생	김후남	정목 80필	토지	문전	검자답 동자답	3두락지 6두락지 합28복 5속
36	배자	노(奴) 선립(先立)에게	1783	박	선립			토지	삼수평	과자답	41부 9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37	토지명문	건륭48년(1783, 정조7) 계묘년 2월 25일 류용천(柳龍川)댁 노(奴) 용남(龍男)에게 주는 명문	1783	선립	용남	황성징	돈 160냥	토지	삼수평	과자답	10두락지 41부 9속
38	토지명문	건륭32년(1767, 祖43) 정해년 2월 22일 박생원(朴生員) 노(奴) 선립(善立)에게 주는 명문	1767	마조이	선립	윤성국	돈 105냥	토지	삼수평	과자답	10두락지 41부 9속
39	토지명문	옹정7년(1729, 영조5) 기유년 1월 12일 김해준(金海俊)에게 주는 명문	1729	낭식	김해준	처경	돈 96냥 5전	토지	삼수평	과자답	10두락지 41부 9속
33	토지명문	건륭45년(1780, 정조4) 경자년 3월 4일 유학(幼學) 공재창(孔再昌)에게 주는 명문	1780	유도순	공재창	이형관	돈 62냥	곡성	물금동	관자	6두락지 25부
56	토지명문	건륭 48년(1783, 정조7) 계묘년 11월 3일 유학(幼學) 허구(許倅)에게 주는 명문	1783	여방철	허구	이양진	돈 7냥	석곡	물금동	관자	2속
11	토지명문	건륭50년(1785, 정조9) 을사년 8월 27일 구례(求禮) 류용천(柳龍川)댁 노(奴)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1785	한세봉	업이	양위담	돈 10냥	석곡	물금동	관자금산	10두락지
31	토지명문	옹정11년(1733, 영조9) 계축년 1월 14일 김조이(金召史)에게 주는 명문	1733	최봉제	김조이	최봉제	돈 14냥 5전		물금동	관자답	2두락지 11부
32	토지명문	건륭17년(1752, 영조28) 임신년 3월 20일 계좌상(稷座上) 김석지(金碩只)에게 주는 명문	1752	장원귀	김석지	오윤덕	돈 70냥	석곡	물금동	관자답	6두락지 25부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157	토지명문	가경11년(1806, 순조6) 경인년 12월 유학(幼學) 노상갑(盧祥甲)에게 주는 명문	1806	김중손	노상갑	김중손	돈 15냥	석곡	상도 용주리 촌	관자답	2두락지 4부 9속
160	토지명문	광서2년(1876, 고종13) 병자년 7월 25일 명문	1876	노병진		유창규	돈 20냥	석곡	상도 당산	관자답 가경	2두락지 4부 6속 13속
34	토지명문	건륭50년(1785, 정조9) 을사년 3월 15일 여서(女婿) 여방좌(呂邦佐)에게 주는 명문	1785	공도창	여방좌	공도창	돈 72냥	돌실	물금동	관자답 진전	6두락지 20부 10부
35	토지명문	건륭51년(1786, 정조10) 병오년 11월 20일 류용천(柳龍川) 덕노(奴)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1786	여방좌	업이	한세봉	돈 50냥	석곡	물금동	관자답 진전	6두락지 20부 10부
9	토지명문	건륭44년(1779, 정조3) 기해년 7월 11일 이효재(李孝才)에게 주는 명문	1779	김치옥	이효재	여방보	돈 2냥	석곡	물금동	관자대전	3두락지 1복 6속
57	토지명문	건륭46년(1781, 정조5) 신축년 12월 6일 백악지(白要只)에게 주는 명문	1781	이효재	백악지	한세봉	돈 8냥	석곡	물금동	관자대전	5도락지 1부 6속
10	토지명문	건륭51년(1786, 정조10) 병오년 12월 구례(求禮) 류용천(柳龍川) 덕노(奴)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1786	백악지	업이	허후	돈 6냥	석곡	물금동	관자대전 추가	8두락지 1복 6속 3칸
411	토지명문	건륭45년(1780, 정조4) 경자년 1월 29일 구례(求禮) 유영장주덕(柳營將主宅) 노(奴)에게 주는 명문	1780	노한위	유영장 덕노	유성철	돈 3냥	석곡	물금동	관자대전 추가	3승락지 6속 2칸
305	토지명문	강희55년(1716, 숙종42) 병신년 11월 21일 최영득(崔永得)에게 주는 명문	1716	대문	최영득	김한명	돈 17냥	문척	양지	구자 대전	태종 2두락지 5부 3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1-4	토지명문	도광27년(1847, 현종13) 정미년 12월 14일 에게 주는 명문	1847	장남		장남	돈 60냥	문척	구성리	구자대전 죽전	본체4칸 행랑4칸 태종 3두락지 13복5속
40	토지명문	가경3년(1798, 정조22) 무오년 12월 15일 수노(首奴) 임적(任迪)에게 주는 명문	1798	정소남	임적	서정중	돈 4냥	문척	구성리	구자대전 초가	태종 1두락지 초가3칸 1부3속
41	토지명문	건륭60년(1795, 정조19) 을묘년 12월 2일 정소남(丁小男)에게 주는 명문	1795	김덕팔	정소남	김덕팔	돈 3냥	문척	구성리	구자대전 초가	태종 1두락지 초가3칸 1부3속
42	토지명문	건륭60년(1795, 정조19) 을묘년 2월 6일 김덕팔(金德八)에게 주는 명문	1795	백순재	김덕팔	백순재	돈 3냥	문척	구성리	구자대전 초가	태종 1두락지 가사3칸 1부3속
181	토지명문	가경4년(1799, 정조23) 기미년 3월 7일 상인(喪人)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1799	장전	유덕호	장전	돈 8냥	문척	구석리	구자대전 초가	1두락지 2부 2지합4칸
182	토지명문	건륭60년(1795, 정조19) 을묘년 2월 17일 동성(同姓) 4촌(四寸) 유학(幼學) 장전(張灑)에게주는명문	1795	장란	장전	장란	돈 10냥		구성리	구자대전 초가	1두락지 2부 2지 4칸
377	토지방매 명문	강희 43(1704, 숙종30) 갑신년에 손종봉(孫種叱捧)이 방매한 명문	1704	손종봉		박영목	상목 8필 정목 1필	문척	구동억 리	구자전	태종 3두락지 5복 3속
378	토지명문	강희44년(1705, 숙종31) 을유년 10월 15일 정철석(鄭哲石)에게 주는 명문	1705	고명길	정철석	양계옥	가포 3필 정조 7두	문척	구역리	구자전	태종 3두락지 5복 3속
379	토지명문	순치16년(1659, 효종10) 기해년 2월 29일 유경신(柳敬信)에게 주는 명문	1659	고애룡	유경신	고애룡	정목 25필	문척	양산	구자전	태종 2두락지 5복 3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380	토지명문	강희49년(1710, 숙종36) 경인년 11월 26일 장생원택(張生員宅) 비(婢) 정채(廷菜)에게 주는 명문	1710	정철석	정채	이복련	정조전 6석	문척	구억리	구자전	태종 2두락지 5복 3속
526	토지명문	가경5년(1800, 정조24) 경신년 12월 초2일 유학(幼學)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1800	고수관	유덕호	고수관	돈 13냥	문척	구성리	구자전 초가	태종1두 5승락지 5복 1지5칸
309	토지명문	도광28년(1848, 헌종14) 무신년 4월 20일 에게 주는 명문	1848	이사준	유씨		쌀 3냥 이치	도산	복호등	금양지	
471	토지명문	기해년 11월 28일 에게 주는 명문	기해년	이순일		표	돈 50냥	토지	죽천	금자수침	2부
89	토지명문	건륭 15년(1750, 영조26) 경오년 3월 17일 승(僧) 성열(成涅)에게 주는 명문	1750	강위창	성열	경행	돈 13냥	토지	대천가경지	금자115번 답	3두락지 9부 4속
83	토지명문	건륭 11년(1746, 영조22) 병인년 5월 26일 산인(山人) 재환(再還)에게 주는 명문	1746	이만일	재환	김지한	돈 12냥		대천가경지	금자답	3두락지 9부 4속
90	토지명문	옹정11년(1733, 영조9) 계축년 10월 회일(晦日) 이만일(李萬日)에게 주는 명문	1733	정순생	이만일	박동기	돈 10냥	토지	대천가경지	금자답	3두락지 9부 4속
357	토지명문	건륭23년(1758, 영조34) 무인년 12월 27일 양덕우(梁德遇)에게 주는 명문	1758	정신만	양덕우	오운	돈 22냥	토지	가경평	금자답	3두락지 9복 4속
410	토지명문	건륭53년(1788, 영조12) 무신년 2월 20일 노(奴) 한이(閑伊)에게 주는 명문	1788	점복	한이	박광춘	돈 20냥	토지	죽천평	금자답	2두락지 8부 5속
462	토지명문	도광2년(1822, 순조22) 임오년 10월 27일 에게 주는 명문	1822	이규신		이경지	돈 27냥	토지	하죽천	금자답	3두락지 13복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463	토지명문	가경6년(1801, 순조1) 신유년 1월 17일 서한성(徐漢成)에게 주는 명문	1801	이필한	서한성	이필한	돈 45냥	토지	가경평	금자답	3두락지 10복 6속
464	토지명문	가경20년(1815, 순조16) 을해년 3월 26일 강행룡(姜幸龍)에게 주는 명문	1815	서석문	강행룡	서석문	돈 30냥	토지	가경평	금자답	3두락지 10복 6속
465	토지명문	건륭55년(1790, 정조14) 경술년 2월 20일 이필한(李弼漢)에게 주는 명문	1790	박태룡	이필한	황성징	돈 23냥	토지	가경평	금자답	3두락지 10복 6속
466	토지명문	건륭54년(1789, 정조13) 기유년 4월 11일 박태룡(朴泰龍)에게 주는 명문	1789	박남규	박태룡	진상철	돈 23냥	토지	가경평	금자답	3두락지 10복 6속
486	토지명문	광서1년(1875, 고종12) 을해년 12월 22일 에게 주는 명문	1875	최찬영			돈 100냥	토지	월명동 보월	금자답	3두락지 10복 7속
487	토지명문	함풍3년(1853, 철종4) 계축년 4월 22일 에게 주는 명문	1853	김광숙			돈 55냥	토지	월명동 화장평	금자답	3두락지 10복 7속
488	토지명문	동치1년(1862, 철종13) 임술년 10월 초4일 에게 주는 명문	1862	한석리			돈 70냥	토지	월명동 보월	금자답	3두락지 10복 7속
161	토지명문	광서9년(1883, 고종20) 계미년 12월 그믐 에게 주는 명문	1883	한봉준		한봉준	돈 11냥	문척	죽연리	금자마진 시목	5두락지2부 3주
436	토지명문	건륭7년(1742, 영조18) 임술년 1월 22일 정옥구댁[鄭沃溝宅] 노(奴) 순만(順萬)에게 주는 명문	1742	김수명	순만	서이한	돈 19냥	토지		내자, 해자	3두 5승락지 13복 3속
406	토지명문	건륭6년(1741, 영조17) 신유년 6월 초7일 동성(同姓) 사촌(四寸) 제(弟) 김진경(金震慶)에게 주는 명문	1741	김수명	김진경	서치재	돈 6냥	토지	잔자천	내자35답 내자36답 해자41답	1두락지 1배미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251	토지명문	건륭30년(1765, 영조41) 을유년 1월 30일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1765	이광신	이시화	이수항	돈 20냥	토지		내자40답 내자41답 내자42답 내자43답 내자44답 내자45답 내자47답 가답	4속 2부8속 3속 3속 6속 3속 29속 4속
252	토지명문	건륭4년(1739, 영조15) 기미년 4월 10일 유학(幼學) 이희겸(李喜謙)에게 주는 명문	1739	박성봉	이희겸	박성린	돈 10냥	토지		내자40답 내자41답 내자42답 내자43답 내자44답 내자45답 내자47답 가답	4속 2부8속 3속 3속 6속 3속 29속 4속
253	토지명문	옹정10년(1732, 영조8) 임자년 3월 13일 유학(幼學) 박성봉(朴聖鳳)에게 주는 명문	1732	이희원	박성봉	이희원	돈 18냥	토지		내자40답 내자41답 내자42답 내자43답 내자44답 내자45답 내자47답 가답	4속 2부8속 3속 3속 6속 3속 29속 4속
24	토지명문	건륭29년(1764, 영조40) 갑신년 4월 17일 명문	1764	이의송		이의송	돈 52냥	토지	구정자	내자54번 답	4두락지 17부 6속
26	토지명문	강희61년(1722, 경종2) 임인년 3월 5일 호노(戶奴)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1722	박지화	가팔리	서상원	돈 41냥	토지	구정자	내자답	4두락지 17부 7속
27	토지명문	강희58년(1719, 숙종45) 기해년 3월 20일 박지화(朴枝華)에게 주는 명문	1719	처찰	박지화	처찰	돈 38냥	토지	구정자	내자답	4두락지 17부 7속
112	토지명문	옹정10년(1732, 영조8) 임자년 10월 20일 손효근(孫孝根)에게 주는 명문	1732	정만이	손효근	박신문	돈 26냥	토지	구만리 구정자	내자답	4두락지 14부 7속
113	토지명문	옹정11년(1733, 영조9)계축년1월25일 처남(妻娚) 김해준(金海俊)에게주는명문	1733	손효근	김해준	손효근	돈 30냥	토지		내자답	4두락지 14부 7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131	토지명문	용정3년(1725, 영조1) 을사년 12월 20일 유학(幼學) 이원식(李源植)에게 주는 명문	1725	이수점	이원식	이수점	돈 40냥	토지	구정자	내자답	4두락지 14부 2속
131-1	토지명문	용정 2년(1724, 경종4) 갑진년 12월 28일 동성 6촌제(同姓六寸弟) 이수점(李壽漸)에게 주는 명문	1724	이수인	이수점	이수인	돈 50냥	토지	구정자	내자답	4두락지 14부 2속
132	토지명문	강희44년(1705, 숙종31) 을유년 12월 5일 조카 박각동(朴柁同)에게 주는 명문	1705	김조이	박각동	김상백	정조 23석	토지	구만리 괴정자	내자답	4두락지 14부 2속
133	토지명문	강희33년(1694, 숙종20) 갑술년 12월 19일 박낙상(朴尙尙)에게 주는 명문	1694	명선	박낙상	김성진	암소 1척	토지	구정	내자답	14부 5속
134	토지명문	용정3년(1725, 영조1) 을사년 10월 20일 유학(幼學) 이원식(李源植)에게 주는 명문	1725	이수점	이원식	이수점	돈 23냥	토지	구정자	내자답	4두락지 14부 2속
135	토지명문	용정2년(1724, 경종4) 갑진년 12월 28일 동성(同姓) 6촌제(六寸弟) 이수점(李守漸)에게 주는 명문	1724	이수빈	이수점	이수빈	돈 24냥	토지	구정자	내자답	4두락지 14부 2속
136	별급문기	강희44년(1705, 숙종31) 을유년 12월 5일 아들 박각동(朴柁同)에게 별급(別給)하는 문기	1705	부	박각동	김상백	허급	토지	구정	내자답	3두락지 14부 2속
137	토지명문	강희33년(1694, 숙종20) 갑술년 12월 19일 박낙상(朴尙尙)에게 주는 명문	1694	명선	박낙상	김성진	암소 1척	토지	구정	내자답	14부 5속
172	화회명문	강희53년(1714, 숙종40) 갑오년 1월 15일 이세안(李世安)에게 주는 화회명문(和會明文)	1714	김순형	이세안	강석로	돈 4냥	토지		내자답	3두락지 13부 2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173	토지명문	강희45년(1706, 숙종32) 병술년 12월 10일 이세안(李世安)에게 주는 명문	1706	김순익	이세안	김순형	정조전 10석 돈46냥	토지	구만리	내자답	3두락지 13부 2속
191	토지명문	건륭21년(1756, 영조32) 병자년 12월 14일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1756	발민	이시화	활헌	돈 12냥	토지	구정자	내자답	3두락지 7부 5속
192	토지명문	강희44년(1705, 숙종31) 을유년 2월 28일 화엄사(華嚴寺) 지사(持寺) 늑준(勸俊)에게 주는 명문	1705	김억세	늑준	치현		토지	구정자	내자답	3두락지 8부 5속
193	토지명문	강희41년(1702, 숙종28) 임오년 2월 22일 김억세(金億世)에게 주는 명문	1702	가원	김억세	박의립	정조 전 20 석 5두	토지	구정	내자답	3두락지 7부 5속
195	토지명문	강희32년(1693, 숙종19) 계유년 2월 27일 가원(可元)에게 주는 명문	1693	박내복	가원	조위경	수소 1마리		구정	내자답	3두락지
203	토지명문	건륭56년(1791, 정조15) 신해년 12월 7일에게 주는 명문	1791	조종득		이필영	돈 31냥	토지	구만리	내자답	2두락지 7부 2속
265	토지명문	강희61년(1722, 경종2) 임인년 11월 22일 유학(幼學) 이원의(李源義)에게 주는 명문	1722	하수경	이원의	이원필	돈 32냥			내자답	2두락지 8복 4속
266	토지명문	강희53년(1714, 숙종40) 갑오년 12월 16일 하수경(河壽鏡)에게 주는 명문	1714	서성우	하수경	서홍검	정조 15석		구만	내자답	2두락지 8복
266-1	토지명문	강희19년(1680, 숙종7) 경신년 2월 초7일 서동백(徐東伯)에게 주는 명문	1680	정반용	서동백	정반용	정조 전 13석	토지	구만리	내자답	2두락지 8부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267	토지명문	강희6년(1667, 현 중8) 무신년 1월 20일 계생(戒生) 에게 주는 명문	1667	장조이	계생	문홍원	가포 7필		자조내 운	내자답	2두락지 8복
327	토지명문	강희55년(1714, 숙종40) 갑오년 2 월 29일 승(僧) 낭 연(郎蓮)에게 주 는 명문	1714	정걸이	낭연	정시태	돈 30냥		순방장	내자답	2두락지 6부 6속
328	토지명문	건륭1년(1736, 영 조12) 병진년 12 월 16일 김중천 (金重天)에게 주 는 명문	1736	문덕창	김중천	서치재	돈 25냥			내자답	4두락지 2작 13복 9속
329	토지명문	강희55년(1716, 숙 종42) 병신년 1월 27일 승(僧) 승묵 (勝默)에게 주는 명문	1716	홍태진	승묵	석담정	돈 27냥			내자답	2두락지 6복 6속
341	토지명문	건륭17년(1752, 영조28) 임신년 2 월 16일 호노(戶 奴) 귀재(貴才)에 게 주는 명문	1752	김홍재	귀재	김홍재	돈 30냥	토지	구정	내자답	5두락지 4작 22부 2속
342	토지명문	건륭5년(1740, 영 조16) 경신년 4월 20일 김흥재(金 興載)에게 주는 명문	1740	김세구	김흥재	손필후	돈 32냥	토지	구정	내자답	5두락지 4작 22부 2속
343	토지명문	강희54년(1715, 숙종41) 을미년 1 월 25일 김세구 (金世九)에게 주 는 명문	1715	손억봉	김세구	김재하	돈 35냥	토지	구정자	내자답	5두락지 22복 2속
344	토지명문	강희48년(1709, 숙종35) 기축년 2월 18일 손억봉 (孫億奉)에게 주 는 명문	1709	수원	손억봉	정시태	돈 45냥	토지	구정자	내자답	5두락지 22복 2속
345	토지명문	강희46년(1707, 숙종33) 정해년 3월 10일 이덕창 (李德唱)에게 주 는 명문	1707	치일	이덕창	치일	돈 40냥	토지	구정자	내자답	5두락지 22복 2속
346	토지명문	강희44년(1705, 숙종31) 을유년 3 월 24일 오판서 택(吳判書宅) 수 노(首奴) 한망(韓 望)에게 주는 명문	1705	해경	한망	해주		토지	구정자	내자답	5두락지 22복 2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348	토지명문	강희40년(1701, 숙종27) 신사년 10월 29일 성천복(成千卜)에게 주는 명문	1701	송봉익	성천복	송봉익	정목 70필	토지		내자답	5두락지 22복 2속
349	토지명문	강희44년(1705, 숙종31) 을유년 3월 25일 승 치일(致一)에게 주는 명문	1705	기선	치일	박낙운	돈 50냥	토지	구정자	내자답	5두락지 22복 2속
366	토지명문	옹정6년(1728, 영조4) 무신년 3월 18일 이일재(李日載)에게 주는 명문	1728	김순태	이일재	김해준	돈 22냥	토지	구정자	내자답	2두락지 5복 6속
367	토지명문	옹정10년(1732, 영조8) 임자년 2월 13일 이생원택(李生員宅) 노(奴) 각팔리(恰八里)에게 주는 명문	1732	이원발	각팔리	성춘	돈 10냥	토지	구정	내자답	2두락지 5복 6속
382	토지명문	승정8년(1635, 인조13) 을해년 2월 17일 승(僧) 계영(戒英)에게 주는 명문	1635	국화	계영	이대택	목면 16필	토지		내자답	5두락지 11부 7속
403	토지명문	건륭33년(1768, 영조44) 무자년 11월 13일 내종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1768	양제명	이시화	유태구	돈 45냥	토지	구만촌	내자답	3두락지 10부 6속
404	토지명문	건륭33년(1768, 영조44) 무자년 10월 20일 유학(幼學) 양제명(梁濟溟)에게 주는 명문	1768	마조이	양제명	윤성국	돈 45냥	토지	구만촌	내자답	3두락지 10복 6속
416	토지명문	강희60년(1721, 경종1) 신축년 2월 15일 유학(幼學) 이희중(李希曾)에게 주는 명문	1721	강태화	이희중	강위빈	돈 110냥	토지	구만리	내자답	10두락지 29부 1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417	별급명문	강희57년(1718, 숙종44) 무술년 1월 15일 질자(姪子) 강태화(姜泰華)에게 주는 별급(別給) 명문	1718	강선구	강태화	임하창		토지	구만리	내자답	5두락지 14부 5속
418	토지명문	강희56년(1717, 숙종43) 정유년 2월 17일 강선구(姜善龜)에게 주는 명문	1717	이유국	강선구	임하창	돈 75냥	토지	구만리	내자답	5두락지 14부 5속
419	토지명문	강희36년(1697, 숙종23) 정축년 11월 18일 제(弟) 김억봉(金億奉)에게 주는 명문	1697	김억세, 김억중	김억봉	신봉연	정조전 10석 정목 2필	토지	괴정자	내자답	10두락지 28복
420	토지명문	강희21년(1682, 숙종8) 임술년 11월 18일 승(僧) 양변(良卞)에게 주는 명문	1682	서덕립 처	양변	이홍익	정조전 12석 나락 6석	토지	괴정자	내자답	10두락지 28부
421	화회성문	강희10년(1671, 현종12) 신해년 2월 13일 동생(同生) 화회성문(和會成文)	1671	이홍익, 김인백	동생	이홍익, 김인백	화회	토지	괴정자	내자답	10두락지
424	토지명문	순치9년(1652, 효종3) 임진년 2월 일 의경(儀罔)에게 주는 명문	1652	정계생	의경	정계생	정목 80필			내자답	4두락지 12부 2속
434	배자	노(奴) 순만(順萬)에게	1742	정씨	순만			토지		내자답	3두 5승락지
437	토지명문	건륭7년(1742, 영조18) 임술년 4월 23일 김진경(金震慶)에게 주는 명문	1742	순만	김진경	서이한	돈 19냥	토지		내자답	3두 5승락지 13복 3속
438	토지명문	건륭20년(1755, 영조31) 을해년 11월 30일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1755	김지환	이시화	이봉덕	돈 13냥	토지	구정자	내자답	3두락지 13복 3속
439	토지명문	건륭13년(1748, 영조24) 무진년 1월 24일 강태선(姜泰先)에게 주는 명문	1748	김귀석	강태선	채문	돈 19냥	토지	구만리	내자답	4두락지 12부 3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440	토지명문	건륭19년(1754, 영조30) 갑술년 11월 25일 김지환(金之煥)에게 주는 명문	1754	벽수	김지환	김서중	돈 37냥	토지	구만촌	내자답	4두락지 12복 3속
441	토지명문	건륭17년(1752, 영조28) 임신년 11월 25일 승(僧) 벽수(碧守)에게 주는 명문	1752	강조이	벽수	최흡	돈 34냥	토지	구만리	내자답	4두락지 12복 3속
350	토지명문	건륭28년(1763, 영조39) 계미년 4월 27일 유학(幼學) 양제명(梁濟溟)에게 주는 명문	1763	김진광	양제명	박헌진	돈 29냥 5전	토지	구만촌 후평	내자답 하변	3두락지 10부 6혹
334	토지명문	강희43년(1704, 숙종30) 갑신년 1월 16일 승(僧) 처익(處益)에게 주는 명문	1704	김필홍	처익	도원	돈 10냥	토지	구정자 평지	내자답 가답	6두락지 1두락지 20복4속
381	토지명문	강희42년(1703, 숙종29) 계미년 2월 27일 제(弟) 김필홍(金必弘)에게 주는 명문	1703	처익	김필홍	처익	정조 50석	토지	산정	내자답 가답	5두락지 2두락지
435	토지명문	건륭7년(1742, 영조18) 임술년 8월 22일 유학(幼學) 이재창(李再昌)에게 주는 명문	1742	김해준	이재창	고덕정	돈 80냥	토지	작천	내자답 내자, 해자	4두락지 14복7속 6두락지 23복9속
333	토지명문	강희48년(1709, 숙종35) 기축년 1월 16일 연곡사(燕谷寺) 중(衆)에게 주는 명문	1709	탄옥	연곡사 중	태현	정조 전 45석	토지	구정자 평지	내자답 사자답	7두락지 20부4속 곳 4작12복 4속
170	토지명문	건륭10년(1745, 영조21) 을축년 1월 20일 이생원(李生員)댁 노(奴) 귀만(貴萬)에게 주는 명문	1745	이엄이	귀만	박동기	돈 390냥	토지	구만평	내자답 함자답	3두락지 15부2속 3승락지 7속
171	토지명문	옹정13년(1735, 영조11) 을묘년 12월 19일 이룡이(李龍伊)에게 주는 명문	1735	박조이	이룡이	박재성	돈 34냥	토지	구만평	내자답 함자답	3두락지 15부2속 3승락지 7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407	불망기	기유년 10월 11일 김해일(金海日) 에게 주는 불망기 (不忘記)	1729	김태휘	김해일	김순형		토지		내자답 해자41번 답	
409	토지명문	옹정5년(1727, 영 조3) 정미년 2월 29일 김해일(金 海日)에게 주는 명문	1727	낭연	김해일	치양	돈 42냥	토지		내자답 해자답	20부4속 2부7속
405	토지명문	건륭4년(1739, 영 조15) 기미년 6월 초2일 김해준(金 海俊)에게 주는 명문	1739	김수명	김해준	김중천	돈 15냥	토지		내자답, 해자답	6복
483	토지명문	광서11년(1885, 고종22) 을유년 12월 20일 에게 주는 명문	1885	유육인			돈 9냥 5전	토지	신주촌	답	1두락지 3부
308	토지명문	건륭57년(1792, 정조16) 임자년5 월 9일 상전주(上 典主)에게 주는 명문	1792	득손	상전주		돈 17냥			대전	2두락지
306	토지명문	가경1년(1796, 정 조20) 병진년 4월 17일 유학(幼學) 유덕호(柳德浩) 에게 주는 명문	1796	장활	유덕호	장학	돈 55냥	문척	구자	대전 죽전 초가 과목	2두락지 5복7속 3두락지 9복5속 1지
383	토지명문	건륭41년(1776, 영조52) 병신년 12월 12일 노한위 (盧漢位)에게 주 는 명문	1776	어몽룡	노한위	한세봉	돈 3냥			대전 초가	3승락지 2칸
307	토지명문	가경1년(1796, 정 조20) 병진년 4월 17일 유학(幼學) 유덕호(柳德浩) 에게 주는 명문	1796	장활	유덕호	장학	돈 15냥	문척	구자	대전 초가 죽전 과목 잡목	2두락지 5복7속 1지
225	토지명문	도광29년(1849, 현종15)기유년2 월29일 에게 주는 명문	1849	유익룡		전광하	돈 15냥		죽천	뒷산	금양지
238	토지명문	건륭31년(1766, 영조42) 병술년 1 월 27일 이선달 (李先達)댁 노 (奴) 귀재(貴才) 에게 주는 명문	1766	만태	귀재	전일주	돈 100냥		오리동	등자67번 답 등자68번 답	37부8속 15부6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240	토지명문	건륭30년(1765, 영조41) 을유년 12월 24일 박생원(朴生員)덕 노(奴) 만태(萬泰)에게 주는 명문	1765	치위	만태	전일주	돈 100냥	토지	오리동	등자67번 답 등자68번 답	37부8속 15부6속
210	토지명문	건륭2년(1737, 영조13) 정사년 1월 18일 김상이(金尙伊)에게 주는 명문	1737	이	김상이	최태산	돈 2냥	토지	대천	등자답	1두 5승락지 4부 9속
211	토지명문	건륭 15년(1750, 영조26) 경오년 12월 6일 노(奴) 배이(盃伊)에게 주는 명문	1750	김상이	배이	김원휘	돈 1냥	토지	대천	등자답	1두 5승락지, 태종 2두락지 4부 9속
239	배자	노 치위에게	1765	윤	치위			토지		등자답	11두락지
241	토지명문	건륭14년(1749, 영조25) 기사년 2월 25일 유학(幼學) 신광호(申光虎)에게 주는 명문	1749	장처원	신광호	장처원	돈 67냥	토지	천황치	등자답	11두락지 53부 3속
258	토지명문	건륭6년(1741, 영조17) 신유년 3월 14일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에게 주는 명문	1741	강택인	이원석	강택인	돈 50냥	토지	대천전	등자답	6두락지 23복 1속
259	토지명문	강희38년(1699, 숙종25) 기묘년 12월 18일 우상경(禹尙京)에게 주는 명문	1699	김명운	우상경	신인립	정조 전 30석	토지	상포	등자답	6두락지
260	토지명문	강희20년(1681, 숙종7) 8월 10일 오기립(吳己立)에게 주는 명문	1681	박충남	오기립	김주선	은자 8냥	토지	상포	등자답	7두락지 22복 3속
261	토지명문	강희34년(1695, 숙종21) 을해년 11월 24일 김명운(金命云)에게 주는 명문	1695	오후종	김명운	최성우	정조 15석	토지	상포	등자답	6두락지 22복 3속
262	허여명문	임오년(1702) 11월 초4일 승(僧) 응진(應珍)에게 주는 명문	1702	오의남	응진(승)	오의남	허여	토지	모시지	등자답	7두락지 22복 3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278	토지명문	강희44년(1705, 숙종31) 을유년 10월 28일 김춘봉(金春奉)에게 주는 명문	1705	김조이	김춘봉	김상백	정조 25석	토지		등자답	8두락지 17부 9속
282	토지명문	건륭5년(1740, 영조16) 경신년 1월 28일 신초성(辛楚聖)에게 주는 명문	1740	김이재	신초성	강상빈	돈 51냥	토지		등자답	8두락지 2작 22복 3속
283	토지명문	순치16년(1659, 효종10) 기해년 12월 17일 박낙복(朴尙福)에게 주는 명문	1659	박낙복			무명 2동	토지		등자답	8두락지 17복 9속
311	토지명문	옹정8년(1730, 영조6) 경술년 11월 17일 박임생(朴壬生)에게 주는 명문	1730	박계필	박임생	박내진	돈 17냥 3전	토지	대천석 박지	등자답	3두락지 3작 8복 5속
312	토지명문	강희57년(1718, 숙종44) 무술년 3월 초9일 박계필(朴戒必)에게 주는 명문	1718	나승환	박계필	박계성	작지(作紙)	토지		등자답	3작 6복 6속
313	토지명문	강희34년(1695, 숙종21) 을해년 11월 4일 장한세(張汗世)에게 주는 명문	1695	박득룡	장한세	류선백	정조 전 8석	토지	대천	등자답	3두락지 3작 7복
314	토지명문	강희19년(1680, 숙종6) 경신년 10월 14일 김준일(金俊一)에게 주는 명문	1680	윤응명	김준일	양덕립	정조 전 10석	토지	다내	등자답	1작4복 7속2작 6속3작 1복3속 총 3두락지
315	토지명문	강희31년(1692, 숙종18) 임신년 1월 30일 박득룡(朴得龍)에게 주는 명문	1692	사일	박득룡	양덕립	암소 1척 조2석	토지	대천	등자답	3두락지 3작 7복
316	토지명문	순치 17년(1660, 현종1) 경자년 1월 10일 ○○운(○○雲)에게 주는 명문	1660	나득룡	○○운(雲)	정동일	정목 60필 암소 1두 정조 2석 12두	토지	다내	등자답	1작4복 7속 2작6속 3작1복 3속 총 3두락지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508	토지명문	개국505년(1896, 고종33 건양1년) 병신년 1월 17일 에게 주는 명문	1896	유수동			돈 200냥	토지	오미촌	등자답	3두락지 13부
512	토지명문	개국504년(1895, 고종32) 을미년 11월 21일 에게 주는 명문	1895	유수동			돈 135냥	토지	오미동	등자답	3두락지 13부 1속
518	토지명문	도광18년(1838, 현종4) 무술년 4월 16일 에게 주는 명문	1838	전만익			돈 40냥	토지	오미동	등자답	2두 5승락 지 12부
519	토지명문	도광9년(1829, 순조29) 기축년3월 25일 유학(幼學) 곽학묵(郭學默) 에게 주는 명문	1829	유일호	곽학묵		돈 35냥	토지	오미동	등자답	2두 5승락지 12부
85	토지명문	용정13년(1735, 영조11) 을묘년 1월 24일 강삼봉(姜三奉) 에게 주는 명문	1735	박임생	강삼봉	박동기	돈 22냥	토지	대천돌 박지 천황	등자답 로자답	3두락지 8부5속 2두락지 6부3속
87	토지명문	건륭45년(1780, 정조4) 경자년 12월 7일 유생원(柳生員) 덕 노(奴) 용봉(用奉) 에게 주는 명문	1780	박용서	용봉	김태옥	돈 50냥	토지	석박 지, 천 황	등자답 로자답	3두락지 8부5속 2두락지 6부 3속
88	토지명문	건륭12년(1747, 영조23) 정묘년 4월 17일 석삼익(釋三益) 에게 주는 명문	1747	강삼봉	석삼익	모현	돈 29냥	토지	대천돌 박지, 천황	등자답 로자답	3두락지 8부5속 2두락지 6부3속
163	토지명문	도광4년(1824, 순조24) 갑신년 11월 11일 에게 주는 명문	1824	이원형		이원형	돈 20냥	토지	오미동	등자전	태종 6두락지 18부
205	토지명문	건륭51년(1786, 정조10) 병오년 12월 일 노(奴) 용봉(用奉) 덕 에게 주는 명문; 1784년 노 이봉(二奉) 배자	1786	박수근	용봉		돈 10냥	토지	오미동 촌	등자전	태종 3두락지 4부 6속
213	토지명문	건륭30년(1765, 영조41) 을유년 8월 8일 고생원(高生員) 덕(宅) 비(婢) 원단(元丹) 에게 주는 명문	1765	조조이	원단	서만연	돈 1냥	토지	천왕치	등자전	태종 1두락지 3부 7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215	토지명문	용정10년(1732, 영조8) 입자년 3월 13일 조선봉(曹先奉)에게 주는 명문	1732	이배성	조선봉	이배성	돈 6전	토지	천황치	등자전	태종 5승락지 1부 5속
216	토지명문	용정4년(1726, 영조2) 병오년 3월 13일 노돌동(魯荳洞)에게 주는 명문	1726	양세중	노돌동	이성래	1냥 5전	토지		등자전	태종 5승락지 1부 6속
218	토지명문	강희25년(1686, 숙종12) 병인년 2월 11일 도산룡(陶山龍)에게 주는 명문	1686	김호일	도산룡	장대명	가포 2필			등자전	태종 1두락지
207	불망기	강희39년(1700, 숙종26)경진년12월17일이생원(李生員)에게주는불망기	1700	김애승	이생원	김애승	수소 1마리	토지	천황치	등자전 가답	태종 2두락지 1두 3승락지
208	토지명문	강희35년(1696, 숙종22) 병자년 6월 7일 동성(同姓) 7촌(七寸) 이송린(李松隣)에게 주는 명문	1696	이흥성	이송린	이흥성	정조 2석	토지	천황치	등자전 가답	태종 2두락지 1두3 승락지
209	토지명문	강희30년(1691, 숙종17) 신미년 10월 4일 이상혁(李相赫)에게 주는 명문	1691	김정현	이상혁	김정현	상목 2 필	토지	천황치	등자전 가답	태종 2두락지 1두 3승락지
217	토지명문	강희60년(1721, 경종1) 신축년 윤 3월 15일 양세중(梁世重)에게 주는 명문	1721	도시봉	양세중	박시중	3냥 5전	토지	돌박지	등자전 가전	태종 1두락지 2부3속
212	토지명문	건륭 44년(1779, 정조3) 기해년 1월 6일 유술호(柳述浩)에게 주는 명문	1779	고만혁	유술호	고만혁	돈 7냥	토지	천황치	등자전 등자답	태종 1두락지 3부1속 2두락지 4부9속
154	토지명문	용정5년(1727, 영조3) 정미년 3월 12일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石)에게 주는 명문	1727	김우석	이원석	장응한	돈 47냥 정조 20석	토지	원내	려자15답 려자16답	29부8속 7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154-1	토지명문	갑신년 12월 25일 고(故) 학생(學生) 김회(金滄) 처(妻) 장씨(張氏)에게 주는 명문	갑신년	한정준	장씨	한정준	정조전 30석 정목 10필	토지	장내 수침	려자답	10두락지 27부 7속
92	배자	차노(差奴) 태복(太卜)에게 부침	1701	김	태복					려자답 출자답	12복4속 10복7속, 10복6속
93	토지명문	강희40년(1701, 숙종27) 신사년 1월 27일 박계웅(朴戒雄)에게 주는 명문	1701	태복	박계웅	양윤제	복마1필 돈 14냥		토지평	려자답 출자답	12부4속 10부7속, 10부6속
468	토지명문	도광4년(1824, 순조24) 갑신년 10월 17일 의계중(義稷中) 명문	1824	천금	의계중	김의현	돈 75냥	토지	오미촌	로자 67번 답	5두락지 18복 3속
469	배자	도광4년(1824, 순조24) 갑신년 10월 17일 노(奴) 천금(千金)	1824	유씨	천금		돈 75냥	토지	오미촌	로자 67번 답	5두락지 18복 3속
84	토지명문	강희52년(1713, 숙종39) 계사년 2월 14일 박임생(朴任生)에게 주는 명문	1713	최치화	박임생	도한경	돈 34냥		천황치	로자답	2두락지 6부 3속
86	토지명문	강희16년(1677, 숙종3) 정사년 4월 8일 김호일(金浩日)에게 주는 명문	1677	전조이	김호일	나의일	수소 1마리 정조전 1석	토지	천황치	로자답	4두락지 14부 9속, 3두락지 6부 3속
122	토지명문	건륭13년(1748, 영조24) 무진년 3월 12일 달연(達演)에게 주는 명문	1748	충민	달연	풍철	돈 30냥	토지	유목정 평	로자답	5두락지 16부 4속
123	토지명문	영정13년(1735, 영조11) 을묘년 2월 16일 세민(世敏)에게 주는 명문	1735	이선익	세민	각령	돈 30냥	토지	유목정	로자답	5두락지 16부 4속
124	토지명문	건륭16년(1751, 영조27) 신미년 3월 25일 승(僧) 성탄(成坦)에게 주는 명문	1751	달연	성탄	유징	돈 39냥	토지	유목정 평	로자답	5두락지 16부 4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125	토지명문	옹정 9년(1731, 영조7) 신해년 9월 18일 이선익(李先益)에게 주는 명문	1731	우정량	이선익	이원필	돈 27냥	토지	유목정평	로자답	5두락지 16부 4속
142	토지명문	건륭50년(1785, 정조9) 을사년 8월 18일 류용천(柳龍川) 맥노(奴)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1785	김경위	업이	강여천	150냥	토지	저지평	로자답	9두락지 30부 5속
204	토지명문	건륭49년(1784, 정조8) 갑진년 2월 7일 류용천(柳龍川) 맥노(奴)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1784	이봉	업이		돈 5냥	토지	오미촌전	로자답	1두락지 3부 5속
219	토지명문	건륭51년(1786, 정조10) 병오년 윤 7월 22일 유학(幼學)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1786	정효달	유덕호	정효달	돈 60냥	토지	팔송정	로자답	3두락지
220	토지명문	건륭51년(1786, 정조10) 병오년 2월 29일 유학(幼學) 정효달(鄭孝達)에게 주는 명문	1786	이철원	정효달	이철원	돈 63냥	토지	팔송정	로자답	3두락지 4배미 12부 3속
221	토지명문	건륭49년(1784, 정조8) 갑진년 3월 15일 유학(幼學) 이철원(李澈源)에게 주는 명문	1784	문덕희	이철원	문덕희	돈 60냥	토지	팔송정	로자답	3두락지 12부 3속
286	배자	노(奴) 선생(善生)에게 주는 배자[牌子]	1740	노씨	선생			토지	모시지평	로자답	5두락지 22복
287	토지명문	건륭17년(1752, 영조28) 임신년 2월 19일 이성(異姓) 육촌(六寸) 유학(幼學) 이주국(李柱國)에게 주는 명문	1752	이종성	이주국	이종성	돈 39냥	토지	모시평	로자답	5두락지 21복 5속
288	토지명문	건륭5년(1740, 영조16) 경신년 2월 11일 유학(幼學) 이수관(李守觀)에게 주는 명문	1740	노씨	이수관	노진걸	돈 36냥	토지		로자답	5두락지 21복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289	토지명문	강희55년(1716, 숙종42) 병신년 2월 28일 승(僧) 극능(極能)에게 주는 명문	1716	김세성	극능	김정우	돈 37냥	토지		로자답	5두락지 20부 1속
290	토지명문	강희20년(1681, 숙종7) 신유년 3월 12일 승(僧) 명선(明善)에게 주는 명문	1681	박계약	명선	이현	정조 12석	토지	대천	로자답	4두락지 13복 3속
291	토지명문	옹정4년(1726, 영조2) 병오년 4월 18일 승(僧) 성기(性機)에게 주는 명문	1726	왕매	성기	태현	돈 50냥	토지		로자답	4두락지 13부 3속
293	허납명문	강희55년(1716, 숙종42) 병신년 1월 초6일 연곡사중(燕谷寺中)에게 주는 명문	1716	석명선	연곡사중	석승일	허납	토지	대천	로자답	4두락지 13복 3속
297	토지명문	간릉8년(1743, 영조19) 계해년 2월 27일 승(僧) 정신(定信)에게 주는 명문	1743	신조이	정신	박재성	돈 27냥	토지	팔송정	로자답	3두락지 12부 4속
310	토지명문	강희37년(1698, 숙종24) 무인년 3월 초4일 최선백(崔善伯)에게 주는 명문	1698	장조이	최선백	이순기	정조 전 8석		천황지	로자답	2두락지 6복 3속
317	토지명문	강희18년(1679, 숙종5) 기미년 4월 11일 엄눌금(嚴訥叱金)에게 주는 명문	1679	정헌	엄눌금	홍경상	조종 조2석	토지	토지평 근지	로자답	5두락지
318	토지명문	강희18년(1679, 숙종5) 기미년 5월 초10일 김한(金漢)에게 주는 명문	1679	엄눌금	김한	김망선	암복 마1필 아마1필 7승 세포 5필	토지		로자답	5두락지 20복
319	토지명문	강희21년(1682, 숙종8) 계해년 2월 초3일 승(僧) 재현(載玄)에게 주는 명문	1682	김한	재현	오계홍	정조 전 15석	토지		로자답	5두락지 20복 1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320	토지명문	강희38년(1699, 숙종25) 기묘년 3월 초6일 김세건(金世建)에게 주는 명문	1699	최조이	김세건	권명	정조 전 20석	토지		로자답	5두락지 20복 1속
358	토지명문	건륭23년(1758, 영조34) 무인년 12월 27일 양덕우(梁德遇)에게 주는 명문	1758	정신만	양덕우	오운	돈 63냥	토지	유목정평	로자답	7두락지 25복
359	토지명문	건륭21년(1756, 영조32) 병자년 2월 24일 승(僧) 청탄(淸坦)에게 주는 명문	1756	보식	청탄	박동기	돈 8냥	토지	팔송정	로자답	2두락지 2작 8복 6속
360	토지명문	건륭14년(1749, 영조25) 기사년 3월 16일 보식(寶澁)에게 주는 명문	1749	우창재 우약금	보식	서윤징	돈 12냥	토지	팔송정	로자답	2두락지 8복 6속
413	토지명문	옹정11년(1733, 영조9) 계축년 2월 25일 박죽상(朴燾尙)에게 주는 명문	1733	박지화	박죽상	김순형	돈 17냥	토지	대천	로자답	3두락지 8복
414	토지명문	건륭44년(1779, 정조3) 기해년 1월 30일 유영장주덕(柳營將主宅) 노(奴) 용봉(龍奉)에게 주는 명문	1779	정정금	용봉	박천년	돈 55냥	토지		로자답	5두락지 14부 4속
415	토지명문	건륭38년(1773, 영조49) 계사년 2월 17일 정정금(鄭丁金)에게 주는 명문	1773	최치상	정정금	최치상	돈 54냥	토지	하대천	로자답	5두락지 14복 4속
415-1	토지명문	건륭38년(1773, 영조49) 계사년 12월 17일 최창우(崔昌佑)에게 주는 명문	1773	우창재	최창우	박동기	돈 45냥	토지	하대천	로자답	5두락지 14복 4속
427	토지명문	강희49년(1710, 숙종36) 경인년 1월 24일 대천동(大川洞) 고직(庫直)에게 주는 명문	1710	박귀상	고직	강위형	돈 3냥 1전 8푼	토지	천왕치	로자답	5승락지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428	토지명문	강희37년(1698, 숙종24) 무인년 7월 초5일 박귀상(朴貴上)에게 주는 명문	1698	우상경	박귀상	도갯동	돈 1냥	토지	천왕치	로자답	3승락지
430	토지명문	옹정10년(1732, 영조8) 임자년 3월 15일 조목영(曹木永)에게 주는 명문	1732	이자근 노미	조목영	서윤정	돈 2냥	토지	대천리	로자답	7승락지 1복 3속
431	토지명문	옹정8년(1730, 영조6) 경술년 4월 17일 이이삼(李二三)에게 주는 명문	1730	이정미	이이삼	양복경	돈 2냥	토지	대천리	로자답	7승락지 1복 3속
432	토지명문	옹정6년(1728, 영조4) 무신년 2월 초8일 이후동시(李厚童時)에게 주는 명문	1728	이배성	이후동 시	서중남	돈 2냥	토지	대천평	로자답	7승락지 1복 3속
156	토지명문	건륭44년(1779, 정조3) 기해년 7월 18일 유학(幼學) 유하옥(柳夏燭)에게 주는 명문	1779	문우덕	유하옥	고시환	돈 170냥	토지	저지	로자답 결자답	19부5속 22부7속
155	토지명문	건륭44년(1779, 정조3) 기해년 7월 26일 유학(幼學) 유술호(柳述浩)에게 주는 명문	1779	유하옥	유술호	나봉좌	돈 250냥	토지	저지 천황치	로자답 결자답 운자답	19부5속 22부7속 8두락지 25부
295	토지명문	건륭29년(1764, 영조40) 갑신년 2월 22일 유학(幼學) 문우덕(文友德)에게 주는 명문	1764	이우룡	문우덕	이우룡	돈 150냥	토지	대천평	로자답 결자답 위자답 금자답	3두락지 12복3속 4두락지 14복5속 2두 5도락지 8복7속 3두락지 14복3속
356	토지명문	건륭52년(1787, 정조11) 정미년 11월 20일 류부사택(柳府使宅) 노(奴) 용남(龍男)에게 주는 명문	1787	양덕우	용남	황성징	돈 95냥	토지	유목정	로자답 금자답	7두락지 25복 3두락지 9복4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296	토지명문	건륭17년(1752, 영조28) 임신년 2월 15일 유학(幼學) 이우인(李宇寅)에게 주는 명문	1752	서이대	이우인	박동기	돈 72냥	토지	팔송정가경지통보	로자답 생자답 생자답	3두락지 12복3속 4두락지 14부5속 4두락지 15복9속
456	토지명문	매매기록	미상	남궁생원						로자답 위자답 생자답	3두락 12복3속 3두락 12복 4두락지 16복3속
147	토지명문	건륭48년(1783, 정조7) 계묘년 11월 11일 유생원(柳生員) 덕노(奴) 운삼(雲三)에게 주는 명문	1783	박수근	운삼	박수근	돈 40냥		천황	로자답 초가	4두락지 15부3속 2지
148	토지명문	건륭53년(1788, 정조12) 무신년 10월 15일 재종제(再從弟) 유인호(柳仁浩)에게 주는 명문	1788	천호	유인호	천호	돈 12냥		천황	로자답 초가	1두락지 3부3속 3지
143	토지명문	건륭 49년(1784, 정조8) 갑진년 11월 13일 유생원(柳生員) 덕노(奴) 용봉(龍奉)에게 주는 명문	1784	복태	용봉	복태	돈 7냥	토지	대천	로자전	5두락지 7부 2속
230	토지명문	광무 9년(1905, 광무9) 을사년 1월 16일 유낙안택(柳樂安宅)에게 주는 명문	1905	선민	유낙안택	전덕서	돈 20냥	간전	백운천	면전 가경	8두 5승락지 2부
100	토지명문	건륭37년(1772, 영조48) 임진년 11월 1일 민생원(閔生員) 덕노(奴) 원반(元反)에게 주는 명문	1772	이순손	원반	곽해봉	돈 50냥			모자답 여자답 기지 초가 송죽전	태종 2두락 11부7속 태종 2두락지 11부 4두락지 8칸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467	토지명문	광서8년(1882, 고종19) 임오년 3월 18일 [유제양]에게 주는 명문	1882	김윤주			돈 1800 냥	간전	삼신평 산정평 동평 덕마평 동평 동채평 비석평 만수평 구정평 구정평 우수평	문자 죄자 죄자 유자 죄자 죄자 별자 국자 민자 우자 우자 국자	3두11, 2속 4두23부 4두18부 6두24, 5속 3두11부 3두10, 1속 4두16, 1속 5두19, 2속 10두37, 9속 4두17부 5두19, 3속 4두15, 2속
505	토지명문	광무4년(1900, 고종37 광무4년) 경자년 7월 15일 에게 주는 명문	1900	경운			돈 130냥	문척	지번	백자답	2두락지 8부 8속
509	토지명문	개국505년(1896, 고종33 건양1년) 병신년 11월 24일 에게 주는 명문	1896	경운			돈 100냥	문척	지번	백자답	2두락 8부 6속
514	토지명문	광서17년(1891, 고종28) 신묘년 2월 6일 에게 주는 명문	1891	정영희			돈 100냥	문척		백자답	5두락지 25복 9속
515	토지명문	신묘년(1891) 2월 일 정(丁) 표(標)	1891	정영희						백자답	5두락지 25복 9속
516	토지명문	광서3년(1877, 고종14) 정축년 10월 30일 산인(山人) 시헌(是憲)에게 주는 명문	1877	수인	시헌	원기	돈 74냥 6전	문척	안지평	백자답	2두락지 8부 6속
517	토지명문	광서17년(1891, 고종28) 신묘년 12월 19일 에게 주는 명문	1891	최창현			돈 100냥	문척	안지평	백자답	5두락지 25복 9속
164	토지명문	광서19년(1893, 고종30) 계사년 11월 12일 에게 주는 명문	1893	봉월			돈 140냥		능성	사자11번 답 사자12번 답 사자12번 답 모전	1부3속 10배미 2두락 2부2속 6배미 1두락 12부 4속 15배미 3두락 1석지 1두락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206	토지명문	건륭52년(1787, 정조11) 정미년 6월 11일 유학(幼學)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1787	양중어	유덕호	정치명	돈 1냥 5전	토지	오미동촌	산소	구복
490	토지명문	가경24년(1819, 순조19) 기묘년 3월 일 에게 주는 명문	1819	임춘성			돈 3냥	간전	마전등	산직전	태종 3두락지 5복
443	계약서	융희4년(1910, 순종3) 3월 15일 유수환 계약서	1910	유수환			돈 75냥	석곡	자작동	산관측량	계약서
104	토지명문	건륭45년(1780, 정조4) 경자년 3월 16일 유학(幼學) 남궁참(南宮棼)에게 주는 명문	1780	유선호	남궁참	고상갑	돈 300냥	토지	상죽천	상자가대전 초가 죽전과목 가경전 전후 좌우 회장  동자답	태종 15두락지 초가2지     18두락지 등55부 2속
482	토지명문	광서12년(1886, 고종23) 병술년 1월 22일 에게 주는 명문	1886	박작구			돈 60냥	토지	하죽촌	상자답	3두락지 10부 2속
496	토지명문	광서15년(1889, 고종26) 기축년 1월 26일 에게 주는 명문	1889	정재호		김기달	돈 120냥	토지	내죽촌	상자답	4두락지 16복
412	토지명문	건륭31년(1766, 영조42) 병술년 1월 17일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1766	고덕문	이시화	고덕문	돈 11냥	토지		상자대전	태종1두 2도락지 3복8속 1번전 1두락 3복6속 3번전2속
146	토지명문	건륭50년(1785, 정조9) 을사년 9월 19일 유학(幼學) 고응두(高應斗)에게 주는 명문	1785	이봉운	고응두	황성징	돈 2냥 9전	토지	하대천	상자대전 가사	6부7속 3칸1지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102	토지명문	건륭60년(1795, 정조19) 을묘년 3월 4일 유학(幼學)에게 주는 명문	1795	강지택		이기후	돈 50냥	토지	상죽천평	상자대전 상자답 가사 죽전시목 좌우회장 가경전	태종 15두락지 15두락지 1지3칸 11주  등 총 53부2속
103	토지명문	건륭52년(1787, 정조11) 정미년 11월 14일 유학(幼學) 문창욱(文昌郁)에게 주는 명문	1787	남궁참	문창욱	남궁참	돈 220냥	토지	상대평	상자대전 초가  죽전과목 가경전 전후좌우 회장 동자답	태종 45두락지 2지      18두락지 등 55부 2속
105	토지명문	건륭 52년(1787, 정조11) 정미년 2월 7일 통덕랑(通德郎)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1787	강무	유덕호	정치명	돈 15냥	토지	죽천	상자대전 초가 죽전과목  면전	2두락지 3지   태종 2두락지 등 12부
101	토지명문	건륭54년(1789, 정조13) 기유년 1월 15일 유학(幼學) 강지택(姜之澤)에게 주는 명문	1789	문창욱	강지택	문창욱	돈 150냥	토지	상죽천	상자대전 초가 죽전 시목 동자답 가경전 회장	태종 15두락지 3지  19두락지
145	토지명문	건륭51년(1786, 정조10) 병오년 11월 16일 류용천(柳龍川) 덕노(奴)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1786	고응두	업이	정치명	돈 4냥	토지	하대천	상자대전, 답  초가 소등목과 과목	5도락지, 합 태종 1두 7도락지 3칸 등 6부 7속
298	토지명문	건륭13년(1748, 영조24) 무진년 6월 16일 계중(契中)에게 주는 명문	1748	정명천	계중	석태현	돈 32냥	토지	통보	생자답	4두락지 2작 16복 3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299	토지명문	건륭7년(1742, 영조18) 임술년 12월 20일 정명천(鄭命天)에게 주는 명문	1742	김수명	정명천	손효근	돈 29냥	토지	통보	생자답	4두락지 2작 16복 3속
300	토지명문	옹정12년(1734, 영조10) 갑인년 2월 24일 김중대(金重大)에게 주는 명문	1734	김춘봉	김중대	김의창	돈 20냥	토지	통보	생자답	4두락지 2작 16복 3속
301	배자	노(奴) 만금(萬金)에게 부침	1706	곽씨	만금			토지	통포	생자답	7두락지 2작 17복
302	토지명문	강희45년(1706, 숙종32) 병술년 11월 13일 김춘봉(金春奉)에게 주는 명문	1706	만금	김춘봉	철직	돈 49냥	토지	통포	생자답	7두락지 2작 17부
303	토지명문	임진년12월13일 서돌시(徐玆屎)에게주는명문	1652	수규	서돌시	능원	정목 1동 반	토지	통포	생자답	7두락지 2작 17부
304	토지명문	계미년 1월 17일 승인(僧人) 수규(守圭)에게 주는 명문	1643	장봉세	수규	서일진	정목 1동 반	토지	통포	생자답	7두락지 2작 17부
324	토지명문	순치17년(1661, 현종2) 신축년 6월 29일 승(僧)천묵(天黻)에게 주는 명문	1661	김경일	천묵	승보	정목 1동 반	토지	유목정평	생자답	6두락지 19부 7속
330	토지명문	옹정3년(1725, 영조1) 을사년 12월 21일 승(僧) 성기(性機)에게 주는 명문	1725	석명선	성기	승일	돈 90냥	토지	구만	생자답	9두락지 2작 25복 7속
351	토지명문	건륭18년(1753, 영조29) 계유년 2월 20일 최덕항(崔德恒)에게 주는 명문	1753	광학	최덕항	환해	돈 40냥	토지	통보평	생자답	4두락지 2작 16복 3속
352	토지명문	건륭20년(1755, 영조31) 을해년 12월 16일 승(僧) 성관(性寬)에게 주는 명문	1755	최덕항	성관	일행	돈 46냥	토지	통보평	생자답	4두락지 16복 3속
353	토지명문	건륭34년(1769, 영조45) 기축년 2월 12일 승(僧) 양유봉(梁有奉)에게 주는 명문	1769	성관	양유봉	수민	돈 60냥	토지	통보	생자답	4두락지 16복 3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354	토지명문	건륭42년(1777, 정조1) 정유년 1월 15일 문생원택(文生眞宅) 노(奴) 삭불(朔不)에게 주는 명문	1777	양동해	삭불	박광춘	돈 65냥	토지	통보평	생자답	4두락지 2작 16복 3속
355	토지명문	건륭15년(1750, 영조26) 경오년 4월 20일 승(僧) 광학(廣學)에게 주는 명문	1750	극성	광학	처경	돈 20냥	토지	통보	생자답	4두락지 2작 16복 3속
292	토지명문	건륭5년(1740, 영조16) 경신년 1월 11일 이생원택(李生眞宅)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1740	퇴징(성기)	가팔리	이성춘	정조 전 115석	토지	구만대천	생자답 로자답	9두락지 2작 25복 7속 4두락지 13복 3속 총 13두락지
331	토지명문	강희18년(1679, 숙종5) 기미년 6월 15일 승(僧) 여인(如印)에게 주는 명문	1679	손수인	여인	박승위	교환	토지	구만고산	생자답 여자답	9두락지 2작25복 7속, 7두락지 2작24복 1속
332	토지명문	강희4년(1665, 현종6) 을사년 11월 초7일 손수인(孫壽仁)에게 주는 명문	1665	낭년, 귀양	손수인	이홍익	곡물		송정자	생자답 진자답	18복3속, 2작7복 4속, 9두락지 12복8속 4두락지
524	토지명문	가경1년(1796, 정조20) 병진년 12월 26일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1796	유만구	유덕호	유만구	돈 4냥		구룡정촌	생자전	2두락지 2복
528	토지명문	도광14년(1834, 순조34) 갑오년 1월 28일 박영화(朴永和)에게 주는 명문	1834	장일록	박영화	장일록	돈 32냥			생자전 가대체사 행랑 절구통 술	5복 3간 3간 1식 1좌
1-3	토지명문	도광28년(1848, 현종14) 무신년 2월 10일에게주는 명문	1848	윤찰방		한정복	돈 33냥	마산	매부평	성자답	5두락지 9부 9속
450	토지명문	건륭39년(1821, 순조21) 신사년 12월 18일 에게 주는 명문	1821	이주채		이주채	돈 35냥	토지	용두	성자답	5두락지 18복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451	토지명문	건륭39년(1774, 영조50) 갑오년 1월 21일 유학(幼學) 이경철(李景喆)에게 주는 명문	1774	추수경	이경철	양하익	돈 55냥	토지	용두	성자답	5두락지 18복 4속
138	토지명문	대한 광무 7년(1903, 광무7) 계묘년 2월 21일 명문	1903	유제중			돈 250냥	토지	도산촌	송전	1국
13	토지명문	건륭54년(1789, 정조 13) 기유년 5월 2일 류영장(柳營將) 맥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1789	권직형	업이	권직형	돈 75냥	토지		수자35답 결자42답 위자답	3두락지 13부4속 20부5속 7두락지 11부3속
14	배자	수리색(修理色)에게	1789	관	수리색	한		토지		수자35답 결자4번답 위자1번답	3두락지 13부4속 20부5속 11부3속
489	추록	병신년 11월 15일 봉(封)	병신년				돈 100냥	문척	구성리	식자답	5두락지 22복 8속
502	토지명문	광서17년(1891, 고종28) 신묘년 1월 24일 에게 주는 명문	1891	오진순		오진순	돈 100냥	문척	구성촌	식자답	5두락지 22복 1속
503	토지명문	광서6년(1880, 고종17) 경진년 8월 일 에게 주는 명문	1880	고규환		고규환	돈 160냥	문척	구성촌	식자답	5두락지 22부 4속
504	토지명문	동치10년(1871, 고종8) 신미년 7월 15일 에게 주는 명문	1871	김기준		박창문	돈 165냥	문척	구성리	식자답	5두락지 22복 8속
336	토지명문	건륭32년(1767, 영조43) 정해년 2월 19일 승(僧) 장학(壯學)에게 주는 명문	1767	진성규	장학	진성규	돈 55냥	토지	금동	양자1번답 조자42번답	14부 1부7속
279	토지명문	송정○년(1630) ○○년 10월 13일 우사수(禹士壽)에게 주는 명문	1630	송세홍	우사수	송봉서	목면 20필 정웅 마1필 정조 1석	토지		양자답	11두락지 30복 5속
339	토지명문	강희54년(1715, 숙종41) 을미년 6월 19일 강위빈(姜渭賓)에게 주는 명문	1715	박조이	강위빈	박상중	돈 45냥	토지	금곡	양자답	하변 10복, 2작 답 7복 3두락지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457	토지명문	가경19년(1814, 순조14) 갑술년 4월 초6일 유학(幼學) 에게 주는 명문	1814	전조이		황성징	돈 30냥	토지	금곡	양자답	6부 6속
458	배자	1818년 4월 초4日 비(婢) 개단(介丹)	1814	상전 김씨	개단			토지	금곡	양자답	3두락지
459	토지명문	가경2년(1797, 정조21) 2월 11일 김구월금(金九月金)에게 주는 명문	1797	강여문	김구월금	최한혁	돈 24냥	토지	철동	양자답	3두락지 6부
513	토지명문	광서16년(1890, 고종27) 경인년 10월 25일 에게 주는 명문	1890		복내		돈 60냥	토지	금곡	양자답	2두락지 7부 3속
340	화회명문	강희43년(1704, 숙종30) 2월 16일 가부(家夫) 말녀(末妹) 막례(莫禮) 에게 주는 명문	1704	최조이 강조이	막례	양조해	화회	토지	금곡 용두	양자답 동자답 세자전	9복 7복 2두락지 2복1속
511	토지명문	개국504년(1895, 고종32) 을미년 9월 15일 에게 주는 명문	1895	장문국			돈 100냥	토지 마산	금곡 옥지평	양자답 일자포전	2두락지 7복3속 5두락지 13복2속
183	토지명문	도광20년(1840, 현종6) 경자년 2월 21일 에게 주는 명문	1840	김치기		김치기	돈 8냥	마산	옥지촌	영자전	태종 1두락지 4부 5속
501	토지명문	광서17년(1891, 고종28) 신묘년 5월 일 에게 주는 명문	1891	봉석		봉석	돈 65냥	토지	양안평 양안평 석구평	옥자 옥자거자 야자답	3두락지 9복 6속 1두락지 5승지 5복 1속 2두락지 3복 6속
177	토지명문	건륭58년(1793, 정조17) 계축년 11월 1일 에게 주는 명문	1793	반일선		반일선	돈 10냥		변흘리	용자답	1두락지
180	토지명문	건륭57년(1792, 정조16) 임자년 12월 27일 유학(幼學) 이수남(李壽南)에게 주는 명문	1792	박중채	이수남	전내복	19냥 5전		변흘리	용자답	2두락지 5부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275	토지명문	건륭4년(1739, 영조15)기미년2월 16일 처남(妻姆) 이원석(李源碩)에게주는명문	1739	이우형	이원석	이우형	돈 42냥	토지	천황치	우자 100번답	6두락지 23복 8속
270	토지명문	가경18년(1813, 순조13) 계유년 12월 12일 강순흥(姜順興)에게 주는 명문	1813	삼촌	강순흥	박춘한	돈 7냥	토지	내하촌	운자 가대	태종 5승락지 5속
268	토지명문	도광5년(1825, 순조25) 을유년 3월 13일에게 주는 명문	1825	주덕래	(유억)	서성록	돈 10냥	토지	내하촌	운자 초기체사행랑	태종 1두락지 5속 3칸 2칸
269	토지명문	가경18년(1813, 순조13) 계유년 12월 12일 유학(幼學) 주덕래(朱德來)에게 주는 명문	1813	강순흥	주덕래	박춘한	돈 15냥	토지	내하촌	운자 초기체사행랑	태종 1두락지 5속 3칸 2칸
271	토지명문	가경18년(1813, 순조13) 계유년 12월 12일 주덕래(朱德來)에게 주는 명문	1813	강순흥	주덕래	박춘한	돈 7냥	토지	내하촌	운자 초기 돌절구	5속 3칸
272	토지명문	가경16년(1811, 순조12) 신미년 8월 17일 강사창(姜士昌)에게 주는 명문	1811	박상근	강사창	박상근	돈 7냥 4전	토지	내하촌	운자답 가대	태종 5승락지 7속
273	토지명문	가경13년(1808, 순조8) 무진년 6월 12일 유학(幼學) 서종대(徐宗大)에게 주는 명문	1808	강성우	서종대	박춘한	돈 4냥	토지	내하촌	운자답 초기	태종 5승락지 7속 2칸
274	토지명문	가경4년(1800, 정조24) 경신년 12월 28일 유학(幼學) 진상철(陳相喆)에게 주는 명문	1800	장두구	진상철	황성징	돈 7냥	토지	내하촌	운지원 가사	5속 2칸
280	토지명문	건륭19년(1754, 영조30) 갑술년 6월 13일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에게 주는 명문	1754	정환	이원석	정환	돈 8냥	마산	대지평	월자14전 월자15전	13복 9속 10복 4속 4두락지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281	토지명문	건륭14년(1749, 영조25) 기사년 5월 23일 유학(幼學) 정환(鄭桓)에게 주는 명문	1749	김정매	정환		돈 8냥	마산	대지평	월자14전 월자15전	13복 9속 10복 4속 4두락지
363	토지명문	건륭48년(1783, 정조7) 계묘년 6월 29일 유용천택(柳龍川宅) 노(奴) 용남(用男)에게 주는 명문	1783	신태망	용남	황성징	돈 30냥	마산	갓가평	월자28전 월자29전	19복 1속 8복 1속 총 태종 9두락지 2작 27복 2속
276	토지명문	도광5년(1825, 순조25) 을유년 3월 13일 에게 주는 명문	1825	김제정	(유억)	주득래	돈 3냥	마산		월자답	태종 3두락지 11복 9속
222	토지명문	도광 3년(1823, 순조23) 계미년 9월 11일에게 주는 명문	1823	이원기		이원기	돈 10냥	마산면		월자전	태종 3두락지 11부 9속
364	토지명문	건륭6년(1741, 영조17) 신유년 5월 26일 신초성(辛楚成)에게 주는 명문	1741	최개남	신초성	서윤징	돈 15냥	마산	갓가평	월자전	태종 9두락지 27복 3속
389	토지명문	건륭1년(1736, 영조12) 병진년 10월 25일 최개남(崔介南)에게 주는 명문	1736	변용백	최개남	박재성	돈 15냥	마산	갓가평	월자전	태종 9두락지 27부 3속
390	토지명문	강희54년(1715, 숙종41) 을미년 3월 7일 김사만(金士萬) 최개남(崔介南)에게 주는 명문	1715	김선홍	김사만	우명	돈 42냥	마산	갓가평	월자전	태종 9두락지 30복
391	토지명문	옹정5년(1727, 영조3) 정미년 윤 3월 11일 변용백(卞龍白)에게 주는 명문	1727	양세중	변용백	이배성	돈 24냥	마산	갓가평	월자전	태종 9두락지 23복 1속
445	토지명문	도광4년(1824, 순조24) 갑신년 11월 17일 에게 주는 명문	1824	소아		소아	돈 9냥	마산	옥지전	월자전	태종 4두락지 7부 1속
446	토지명문	도광3년(1823, 순조23) 계미년 6월 초7일 택에 주는 명문	1823	김복래		신택주	돈 15냥	마산	옥지전	월자전	태종 4두락지 7부 1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447	토지명문	도광26년(1846, 현종12) 병오년 3월 17일 닥에 주는 명문	1846	김치기		김치기	돈 17냥	마산	옥지천	월자전	태종 3두락지 8부 9속
448	토지명문	건륭 22년(1757, 영조33) 정축년 3월 10일 유학(幼學) 김우신(金禹伸)에게 주는 명문	1757	정택룡	김우신	정택룡	돈 13냥	마산	옥지천	월자전	태종 3두락지 9부 9속
361	토지명문	강희55년(1716, 숙종42) 병신년 11월 22일 양세중(梁世重)에게 주는 명문	1716	김사만	양세중	하진필	돈 35냥	마산	갓가평	월자전 동자전	23복1속 9복 2작 태종 9두락지
362	토지명문	강희53년(1714, 숙종40) 갑오년 2월 15일 김선흥(金善興)에게 주는 명문	1714	정태기	김선흥	오군업	돈 40냥	마산	옥이천 평	월자정	태종 9두락지 2작 22복 1속
470	토지명문	도광3년(1823, 순조23) 계미년 1월 30일 에게 주는 명문	1823	주광문		주광문	돈 120냥	토지	하죽천 촌	위자 17번 답	6두락지 32복 1속
114	토지명문	건륭8년(1743, 영조19) 계해년 3월 6일 유학(幼學) 이재창(李再昌)에게 주는 명문	1743	재찬	이재창	관찰	돈 60냥	토지	천황치 팔송정	위자답	6두락지 31부 8속
115	토지명문	옹정11년(1733, 영조9) 계축년 6월 27일 재찬(再讚)에게 주는 명문	1733	최치화	재찬	치헌	돈 15냥	토지	천황치	위자답	1백미 3두락지 15부 8속
116	토지명문	옹정12년(1734, 영조10) 갑인년 1월 21일 재찬(再贊)에게 주는 명문	1734	최치화	재찬	우겸	돈 27냥	토지	천황치 팔송정	위자답	3두락지 16부
117	토지명문	강희36년 (1697, 숙종23) 정축년 3월 13일 최선백(崔善白)에게 주는 명문	1697	이조이	최선백	이시민	정조전 35석 백목 3필	토지	천황	위자답	6두락지 31부 2속
118	토지명문	강희29년(1690, 숙종19) 경오년 3월 15일 전후백(全厚白)에게 주는 명문	1690	나의일	전후백	나의일	정조전 48석	토지	천황	위자답	6두락지 31부 2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119	토지명문	건륭15년(1750, 영조26) 경오년 12월 12일 이주국(李柱國)에게 주는 명문	1750	이수천	이주국	수벽	돈 17냥	토지	대천	위자답	3두락지 10부
120	토지명문	옹정9년(1731, 영조7) 신해년 1월 15일 이생원(李生員)의 노(奴) 잉질산(莛叱山)에게 주는 명문	1731	탈인	잉질산	손필후	돈 27냥	토지	천황치	위자답	9부 8속 1배미 3두락지
121	토지명문	강희45년(1706, 숙종32) 병술년 4월 25일 승(僧) 해명(海明)에게 주는 명문	1706	김갯동	해명	보원	돈 60냥	토지	천황치	위자답	1배미 3두락지 11부 5속
294	토지명문	건륭21년(1756, 영조32) 병자년 11월 11일 유학(幼學) 문덕홍(文德洪)에게 주는 명문	1756	강택인	문덕홍	전일주	돈 22냥	토지	하대천 평	위자답	3두락지 12복 2속
277	토지명문	건륭32년(1767, 영조43) 정해년 11월 15일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1767	왕석하	이시화	왕석하	돈 62냥	마산	주평	윤자3답 윤자7답	9복9속 14복6속
235	토지명문	건륭10년(1745, 영조21) 을축년 2월 23일 유학(幼學) 이주국(李柱國)에게 주는 명문	1745	서시찬	이주국	아들	돈 21냥	현내	포전평	윤자전	태종 3두락지 16부 6속
236	토지명문	건륭6년(1741, 영조17) 신유년 2월 18일 서시찬(徐時贊)에게 주는 명문	1741	이재옥	서시찬	이재옥	돈 23냥	현내	포전	윤자전	태종 3두락지 11부 6속
237	토지명문	옹정11년(1733, 영조9) 계축년 6월 25일 이재옥(李再郁)에게 주는 명문	1733	김덕엽	이재옥	김민후	돈 19냥	토지	포전평	윤자전	태종 3두락지 16부 6속
18	토지명문	건륭37년(1772, 영조48) 임진년 1월 22일 권수이(權守伊)에게 주는 명문	1772	인혜	권수이	대일	돈 46냥	토지	통보구 만촌 당산	이자46번 답 함자답	4두락지 16부 5속 1두락지 2부 2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19	토지명문	건륭49년(1784, 정조8) 갑진년 10월 22일 류용천(柳龍川)댁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1784	권후손	업이	정치명	돈 80냥	토지	구만촌 당산	이자46년 답 합자답	4두락지 16부 5속 1두락지 2부 2속
3	토지명문	임오년(1642) 11월 5일 오만복(吳萬福)에게 주는 명문	1642	법성	오만복	김재평	목면 25필	토지	통보	이자답	3두락지 6부 7속
4	토지명문	강희25년(1686, 숙종12) 병인년 11월 8일 이기룡(李起龍) 처 민조이(閔召史)에게 주는 명문	1686	하인홍	민조이	배인룡	정조 전 8석		고지 구만려	이자답	3두락지 7부
5	토지명문	강희29년(1690, 숙종19) 경오년 2월 28일 승(僧) 석웅(釋熊)에게 주는 명문	1690	금향	석웅	준건	정조 전 1석			이자답	2두락지 4부 4속
6	토지명문	강희30년(1691, 숙종17) 신미년 2월 7일 장선하(張善何)에게 주는 명문	1691	민조이	장선하	유선백	정조 전 8석		구만려 전	이자답	3두락지 7부 7속
7	토지명문	강희30년(1691, 숙종17) 신미 1월 27일 장선홍(張善弘)에게 주는 명문	1691	석능	장선홍	유선백	암소 1척 정조전 2석			이자답	2두락지 4부 4속
8	토지명문	옹정6년(1728 영조4) 무신년 1월 10일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에게 주는 명문	1728	강위형	이원석	서종건	돈 44냥	토지	통보	이자답	5두락지 11부 5속
15	허여명문	건륭28년(1763 영조39) 계미년 2월 12일 장녀서(長女壻) 유천지(柳千枝)에게 허여명문	1763	김씨	유천지	진한형	허여	토지	통보	이자답	4두락지 11부 5속
16	토지명문	건륭34년(1769 영조 45) 기축년 1월 22일 양수정(梁水廷)에게 주는 명문	1769	유천지	양수정	박동기	돈 52냥 5전	토지	통보 구정자	이자답	4두락지 16부 5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17	토지명문	건륭34년(1769 영조 45) 기축년 2월 21일 한씨(韓氏) 인쇄(印慧)에게 주는 명문	1769	양수정	한인혜	박동기	돈 52냥	토지	통보 구만촌	이자답	4두락지 16부 5속
25	토지명문	건륭23년(1758, 영조34)무인년 11 월 24일 유학(幼學) 이의송(李宜松)에게 주는 명문	1758	이장희	이의송	김필명	돈 44냥	토지	구정자	이자답	4두락지 17부 7속 1배미
43	토지명문	건륭56년(1791, 정조15) 신해년 12월 18일 유삼수(柳三水) 덕노(奴)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1791	김광서	업이	김광서	돈 235냥	토지	구만촌	이자답	3작 13두락지 51부 1속
44	토지명문	건륭20년(1755, 영조31) 을해년 6 월 27일 유학(幼學) 김광서(金光瑞)에게 주는 명문	1755	김광해	김광서	김광해	돈 235냥	토지	구만촌	이자답	3작 13두락지 52부 6속
45	토지명문	건륭16년(1751, 영조27) 2월 6일 유학(幼學) 김광해(金光海)에게 주는 명문	1751	김덕추	김광해	김덕추	돈 235냥	토지	구만촌	이자답	3작 13두락지 52부 6속
46	토지명문	순치10년(1653, 효종4) 계사년 1 월 10일 지귀택(智貴宅)에게 주는 명문	1653	이상원	지귀택	이승립	정목 5동	토지	구만리	이자답	3작 13두락지 48부 8속
47	토지명문	순치9년(1652, 효 종3) 임진년 1월 10일 이상원(李尙元)에게 주는 명문	1652	말개	이상원	김은양	정목면 4동	토지		이자답	3작 13두락지 48부 8속
94	토지명문	건륭52년(1787, 정조11) 정미년 7 월 15일 류용천(柳龍川) 덕노(奴) 업이(業伊)에게 주는 명문	1787	채원	업이	문우덕	돈 40냥	토지	구정자 평	이자답	3두락지 11부 1속
95	토지명문	건륭52년(1787, 정조11) 정미년 1 월 15일 승(僧) 채원(采元)에게 주는 명문	1787	문우덕	채원	문우덕	돈 42냥	토지	구정자 평	이자답	3두락지 11부 1속

번호	분류	소재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96	토지명문	건륭25년(1760, 영조36) 경진년 12월 11일 동생형(同生兄) 김선귀(金善貴)에게 주는 명문	1760	김필형	김선귀	김필형	돈 44냥	토지	구정자평	이자답	3두락지 8부
97	토지명문	건륭25년(1760, 영조36) 경진년 1월 26일 장형(長兄) 김선귀(金善貴)에게 주는 명문	1760	필만	김선귀	필형	돈 19냥	토지	구정자평	이자답	정중 3두락지 8부
98	토지명문	건륭 18년(1753, 영조29) 계유년 12월 18일 김재구(金再九)에게 주는 명문	1753	강태선의 처	김재구	서팽갑	돈 17냥 5전	토지	구정자평	이자답	3두락지 8부
108	토지명문	건륭21년(1756, 영조32) 병자년 4월 4일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1756	최인관	이시화	최인관	돈 70냥	토지	구정자	이자답	5배미 7두락지 28부 6속
109	토지명문	옹정10년(1732, 영조8) 임자년 4월 20일 유학(幼學) 최인관(崔寅寬)에게 주는 명문	1732	장명한	최인관	장명한	돈 60냥	토지	구정자	이자답	7두락지 28부 6속
110	토지명문	강희41년(1702, 숙종28) 임오년 11월 23일 김익명(金楡明)에게 주는 명문	1702	조위경	김익명	조위경	돈 100냥 정조 16석	토지	구정자	이자답	8두락지 11부
194	토지명문	강희5년(1666, 현종7) 병오년 5월 2일 박낙복(朴祿福)에게 주는 명문	1666	여기응	박낙복	박경익	정목 60필		자임	이자답	3두락지 7부 5속
384	토지명문	순치2년(1645, 인조23) 을유년 3월 4일 승(僧) 덕식(德式)에게 주는 명문	1645	계영	덕식	성일	정목 36필	토지	산정	이자답	5두락지 20부 4속
485	토지명문	광서4년(1878, 고종15) 무인년 2월 28일 에게 주는 명문	1878	허현		허현	돈 120냥	토지	관봉정	이자답	4두락지 10부 7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510	표	광서15년(1889, 고종26) 기축년 2월일 유두호(庾斗瑚) 표(標)	1889	유두호				마산	오계평 (옥지평)	일자전	
284	토지명문	도광2년(1822, 순조22) 임오년 1월 27일 족계중(族契中)에게 주는 명문	1822	한갑	족계	한갑	돈 16냥	석곡	상도치 평	자자답	4두락지 9복 5속
285	토지명문	도광2년(1822, 순조22) 임오년 1월 19일 에게 주는 명문	1822	정경신		정경신	돈 28냥	석곡	상도치 평	자자답	4두락지 16복 5속
507	수표	정유년 10월 19일 유학(幼學) 장당(張塘) 수표	1897	장당				문척	용신평	장자 복화밭	3두락지
506	토지명문	건양2년(1897, 고종34 광무1년) 정유년 10월 18일 에게 주는 명문	1897	장당			돈 35냥	문척	용신평	장자전	태종 3두락지 8부 8속
214	토지명문	건륭3년(1738, 영조14) 무오년 11월 16일 조선봉(曹先奉)에게 주는 명문	1738	노돌동	조선봉	강득거	돈 1냥	토지	천왕치	전	태종 5승락지 1부 6속
228	토지명문	광무9년(1905, 광무9) 을사년 4월 1일 유낙안택(柳樂安宅)에게 주는 명문	1905	서침지	유낙안 택		돈 5냥	간전	백운천 동	전	1두락지
461	토지명문	도광2년(1822, 순조22) 임오년 10월 초6일 에게 주는 명문	1822	김이곤 처 김조이 윤치중 처 김조이		정치신	돈 12냥	현내	흑선촌	전 성자	태종 3두락지 15부
335	토지명문	건륭48년(1783, 정조7) 계묘년 2월 초 8일 류영장택(柳營將宅) 노(奴) 연남(然南)에게 주는 명문	1783	장학	연남	황성징	돈 76냥	토지	금동	조자42번 답 양자1번답	1부 7속 14부
162	토지명문	함풍7년 (1857, 철종8) 정사년 10월 16일 에게 주는 명문	1857	김은화		김규원	돈 30냥	석곡	용주촌	조자답	2두락지 11부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337	토지명문	건륭22년(1757, 영조33) 정축년 1월 11일 유학(幼學) 진한형(陳漢亨)에게 주는 명문	1757	연순의준	진한형	김도옥	돈 34냥	토지	금곡	조자답 양자답	1복7속 2작 4두락지 14복 1속
338	토지명문	건륭6년(1741, 영조17) 신유년 11월 25일 승(僧) 벽공(碧空)에게 주는 명문	1741	강덕인	벽공	강덕인	돈 43냥	토지	금곡	조자답 양자답	1복 7속 2작 4두락지 14복 1속
226	토지명문	개국504년(1895, 고종 32) 을미년 5월 1일 에게 주는 명문	1895	최황구			돈 50냥	남원	산동	주봉곡	금양지
452	토지명문	광서3년(1877, 고종14) 정축년 1월 16일 에게 주는 명문	1877	박두월		심갑문	돈 120냥	간전	산정촌	주자답	3두락지 12부
476	토지명문	옹정2년(1724, 경종4) 갑진년 2월 13일 이생원(李生員) 호노(戶奴)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1724	한자근 노미	가팔리	이원필	돈 85냥	토지	진목정	주자답	6두락지 13복 3속, 2작 4복, 3작 5복 9속
477	토지명문	강희58년(1719, 숙종45) 기해년 1월 29일 한자근노미(韓者斤老未)에게 주는 명문	1719	김우석	한자근 노미	장명한	돈 91냥	토지	진목정	주자답	6두락지 13복 3속, 2작 4복, 3작 5복 9속
478	토지명문	강희44년(1705, 숙종31) 을유년 1월 16일 유학(幼學) 김우석(金禹錫)에게 주는 명문	1705	김진백	김우석	김진백	돈 120냥	토지	진목정	주자답	6두락지 13복 3속, 2작 4복, 3작 5복 9속
1	토지명문	강희60년(1721, 경종1) 신축년 1월 14일 유학(幼學) 장계한(張啓韓)에게 주는 명문	1721	황팔인	황팔인	박정태	돈 56냥	토지	구만리	증자답	6두락지 16부 5속
2	허여명문	강희46년(1707, 숙종33) 정해년 2월 10일 동생제(同生弟) 성안(性眼)에게 주는 명문	1707	보정	성안	국평	허여	토지	보석평	증자답	6두락지 16부 5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28	토지명문	강희57년(1718, 숙종44) 무술년 5월 23일 김해준(金海准)에게 주는 명문	1718	하위부	김해준	이원필	돈 51냥	토지	포돌	중자답	4두락지 15부 5속
29	토지명문	강희52년(1713, 숙종39) 계사년 1월 21일 승(僧) 승묵(勝默)에게 주는 명문	1713	강영노	승묵	박준영	돈 25냥 52전	토지	포평을	중자답	3두락지 10부 4속
30	토지명문	옹정13년(1735, 영조11) 을묘년 윤 4월 25일 엄한필(嚴漢弼)에게 주는 명문	1735	승묵	엄한필	처행	돈 14냥	토지	포평	중자답	3두락지 10부 4속
58	토지명문	강희58년(1719, 숙종45) 기해년 1월 19일 황팔인(黃八引)에게 주는 명문	1719	한덕문	황팔인	방우필	돈 50냥	토지	구만리 보석	중자답	6두락지 16부 5속
176	토지명문	건륭5년(1740, 영조16) 경신년 7월 11일 유학(幼學) 이재창(李再昌)에게 주는 명문	1740	장치재	이재창	장치재	돈 85냥	토지	시목정	중자답	5배미 9두락지 40부 8속
178	토지명문	순치 8년(1651, 효종2) 신묘년 5월 주부택(主簿宅) 호노(戶奴) 이룡(而龍)에게 주는 명문	1651	응변	이룡	응변	정목면 3동	토지	시목정	중자답	5배미 9두락지 30부
179	토지명문	건륭10년(1745, 영조21) 을축년 7월 16일 유학(幼學) 이재창(李再昌)에게 주는 명문	1745	장치원	이재창	장치원	돈 64냥	토지	포평	중자답	7두락지 37부 6속
433	토지명문	순치12년(1655, 효종6) 을미년 1월 26일 유종산(柳種岵山)에게 주는 명문	1655	김태홍	유종산	정응록	정목 6세베 3필			중자답	6두락지 16복 5속
481	토지명문	광서13년(1887, 고종24) 정해년 11월 27일 미동(美洞) 경계(京契)에게 주는 명문	1887	김용필	경계		돈 45냥	토지	진변	중자답	3두락지 11부 8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527	토지명문	가경13년(1808, 순조8) 무진년 2월 16일 에게 주는 명문	1808	왕득량		왕득량	돈 28냥	마산	대소	지자전	3두락지 11부 9속
529	토지명문	함풍8년(1858, 철종9) 무오년 3월 16일 에게 주는 명문	1858	이윤기		최시일	돈 25냥	마산	대추	지자전	태종 3두락지 11복 9속
174	토지명문	옹정4년(1726, 영조2) 병오년 1월 20일 유학(幼學) 이희증(李希曾) 에게 주는 명문	1726	김재구	이희증	김재구	정조 29석	토지		진자답	3두 8승락지 12부 3속
175	토지명문	옹정3년(1725, 영조1) 을사년 2월 7일 김재귀(金再貴) 에게 주는 명문	1725	김태휘	김재귀	김태휘	돈 40냥	토지		진자답	3두 8승락지 12부 3속
472	토지명문	옹정7년(1729, 영조5) 기유년 1월 11일 이생원(李生員) 원석(源碩) 에게 주는 명문	1729	행해	이원석	김순형	돈 28냥	토지	죽전	진자답	4두락지 12복 9속
473	토지명문	옹정6년(1728, 영조4) 무신년 11월 16일 연곡사(燕谷寺) 사중(寺中) 에게 주는 명문	1728	유명화	사중	처한	돈 30냥	토지	죽전등	진자답	4두락지 12복 9속
474	토지명문	강희 43년(1704, 숙종43) 갑신년 1월 12일 승인(僧人) 선명(善明) 에게 주는 명문	1704	김준적	선명	김진기	돈 55냥	토지	죽전지	진자답	4두락지 16부 3속
475	별급성문	강희45년(1706, 숙종32) 병술년 2월 16일 상좌(上佐) 조의(祖儀) 에게 주는 별급성문(別給成文)	1706	선명	조의	승일	허급	토지	죽전	진자답	4두락지
365	토지명문	건륭53년(1788, 영조12) 무신년 4월 26일 유영장택(柳營將宅) 노(奴) 석철(石哲) 에게 주는 명문	1788	김촉삼	석철	곽수만	돈 60냥		어어어	징자41답 징자71답	12부 7속 2부 8속
63	토지명문	건륭29년(1764, 영조40) 갑신년 4월 19일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 에게 주는 명문	1764	이의송	이시화	이의송	돈 96냥	토지	자전	채자10답 채자11답 채자12답	7부 4속 12부 8속 10복 5속 6두락지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61	토지명문	강희60년(1721, 경종1) 신축년 12월 18일 이생원(李生員) 덕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1721	정수영	가팔리	정시태	돈 80냥	토지	산정	채자11번 답 채자12번 답	13부 4속 5두락지 10부 8속
59	토지명문	강희48년(1707, 숙종33) 정해년 3월 6일 정수영(鄭秀永)에게 주는 명문	1707	정조이	정수영	조위경	허급		산정	채자답	8두락지
60	토지명문	강희5년(1666, 현종7) 병오년 2월 10일 정지훈(鄭之勳)에게 주는 명문	1666	충립	정지훈	김응선	큰 수소 4마리	토지	구만리	채자답	15두락지 69부 5속 2작답 4부 3작답 13부 6속 4작답 8부 6속
62	토지명문	건륭24년(1759, 영조35) 기묘년 1월 16일 유학(幼學) 이의송(李宜松)에게 주는 명문	1759	이시화	이의송	이시화	돈 85냥	토지		채자답	7두락지 30부 7속
64	토지명문	강희38년(1699, 숙종25) 기묘년 2월 22일 동성(同姓) 사촌질(四寸姪) 정사길(鄭士吉)에게주는명문	1699	정수명	정사길	정동식	허급			채자답	7두락지 부수 34부, 2작답 4부 4속
82	토지명문	건륭29년(1764, 영조40) 갑신년 2월 17일 유학(幼學) 김광서(金光瑞)에게 주는 명문	1764	유월금	김광서	유세장	돈 100냥	토지	구만촌	채자답	7두락지 27부 7속
368	토지명문	옹정8년(1730, 영조6) 경술년 12월 26일 이생원택(李生員宅) 노 가팔이(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1730	개연	가팔리	김순형	돈 20냥	토지		채자답	2두락지 7복 4속
369	토지명문	미상(未詳)… 4월 19일 승(僧) 경수(敬修)에게 주는 명문	미상	김응수	경수	김일백	정조 전 8석	토지		채자답	2두락지 7복
370	취송입안	강희61년(1722, 경종2) 2월 일 구례현(求禮縣) 취송입안(就訟立案)	1722	구례현 감	최성우			토지		채자답	2두락지 7부 4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371	토지명문	강희61년(1722, 경종2) 임인년 12월 3일 유학(幼學) 김만일(金萬鎰)에게 주는 명문	1722	고이명	김만일	김만일	돈 20냥	토지	보평	채자답	2두락지 7복 4속
372	토지명문	옹정3년(1725, 영조1) 을사년 3월 15일 승(僧) 개연(開演)에게 주는 명문	1725	김만일	개연	김순형	돈 21냥	토지	보평	채자답	2두락지 7복 4속
373	소지	남원사는 최성우(崔聖禹) 소지	1722	최성우	구례현 감			토지		채자답	2두락지
374	토지명문	강희61년(1722, 경종2) 임인년 2월 25일 유학(幼學) 고이명(高以明)에게 주는 명문	1722	최성우	고이명	최성우	돈 20냥	토지	보평	채자답	2두락지 7부 4속
375	소지	남원사는 최성우(崔聖禹)	1722	최성우	구례현 감			토지		채자답	2두락지
376	소지	남원사는 최성우(崔聖禹)	1718	최성우	구례현 감			토지		채자답	2두락지
387	토지명문	강희37년(1698, 숙종24) 무인년 11월 15일 김용(金龍)에게 주는 명문	1698	정응청	김용	정응제	마가 30필 목면 20필 정조 10석	토지	산정	채자답	7두락지 7복 5속, 2배미 17부
388	토지명문	강희37년(1698, 숙종24) 무인년 11월 25일 정무적(鄭武赤)에게 주는 명문	1698	귀손	정무적	한유준	숯소 1척 암소 1척	토지		채자답	7두락지 7복 5속, 17복 5속
392	화회명문	강희60년(1721, 경종1) 신축년 12월 19일 족하(族下) 정걸이(鄭乞伊) 정수섭(鄭水燮) 화회명문	1721	정시대	정수섭	정선재	돈 4냥	토지		채자답	8두락지 36복 8속
393	토지명문	옹정1년(1723, 경종3) 계묘년 2월 14일 유학(幼學) 조익화(趙益華)에게 주는 명문	1723	배중화	조익화	정시대	돈 100냥	토지	작천	채자답	7두락지 2작 27부 6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394	토지명문	건륭48년(1783, 정조7) 계묘년 2월 초10일 유영감택[柳令監宅] 노(奴) 용남(龍男)에게 주는 명문	1783	정화	용남	박하방	돈 120냥	토지	구만	채자답	7두락지 27부 7속
385	배자	무인년(1698) 11월 15일 노(奴) 귀손(貴孫)에게	1698	윤씨	귀손			토지		채자답 동자답	7복 5속 17복 5속
386	토지명문	강희58년(1719, 숙종45) 기해년 12월 20일 배중화(裵重華)에게 주는 명문	1719	만주	배중화	강직만	정조전 35석 암소 1척	토지	산정	채자답 동자답	7복 5속 17복 5속
460	토지명문	도광2년(1822, 순조22) 임오년 10월 초6일 에게 주는 명문	1822	송인상		고두점	돈 10냥	현내	동곡 혹선	청전 성자	태종 3두락지 15부
484	토지명문	광서4년(1878, 고종15) 무인년 2월 14일 에게 주는 명문	1878	유제형			돈 41냥	토지	오미동	채사 익랑	3칸 2칸
144	토지명문	가경2년(1797, 정조21) 정사년 10월 13일 상인(喪人)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1797	고종열	유덕호	고종열	돈 25냥	토지		초가 과목 죽전대전 상자전	4지 태종 2두락지 4부 5속
141	토지명문	가경15년(1810, 순조10) 경오년 5월 12일 유학(幼學)에게 주는 명문	1810	고수권		고수권	18냥	토지		초자전	태종 3두락지 11부 2속
99	토지명문	건륭 27년(1762, 영조38) 임오년 3월 15일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1762	오덕옥	이시화		돈 87냥	마산	내평	추자답	8두락지 29부 7속
254	토지명문	건륭49년(1784, 정조8) 갑진년 12월 11일 상인(喪人) 유성호(柳星浩)에게 주는 명문	1784	민복화	유성호	민복화	돈 420냥		마산평 토지평 촌 마을차 정 우평	추자답 결자답 주자답 칭자답	8두락지 21부 8속 7두락지 37부 5속 4두락지 19부 5속 3두락지 12부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91	토지명문	용정9년(1731, 영조7) 신해년 3월 15일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에게 주는 명문	1731	김조이	이원석	박동채	정조 60석		행목정	출자답	6두락지 2작 22부
321	토지명문	용정5년(1727, 영조3) 정미년 12월 20일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에게 주는 명문	1727	김시위	이원석	김시계	돈 60냥	토지	유목정	출자답	7두락지 23복 7속
322	토지명문	강희18년(1679, 숙정5) 기미년 3월 24일 김상일(金尙日)에게 주는 명문	1679	경륜	김상일	윤응명	정조전 19석 정목면 2필	토지	유목정	출자답	6두락지 19부 7속
323	토지명문	강희11년(1672, 현종13) 임자년 4월 25일 승(僧) 경륜(敬輪)에게 주는 명문	1672	천묵	경륜	김윤민	정목 4동 25필	토지	유목정	출자답	10두락지 18부 9속
325	토지명문	순치 21년(1654, 효종5) 갑오년 1월 26일 희정(希淨)에게 주는 명문	1654	정계생	희정	박춘부	정목 3동 반	토지	유목정 평	출자답	6두락지 19부 7속
326	토지명문	순치21년(1651, 효종2) 신묘년 2월 13일 동생(同生) 제(弟) 정말룡(鄭柰龍)에게 주는 명문	1651	정계생	정말룡	강홍립	정목면 3필 실상목 40필 정조전 2석	토지	유목정 평	출자답	6두락지 19부 7속
422	토지명문	강희11년(1672, 현종13) 임자년 3월 초5일 전영신(全永信)에게 주는 명문	1672	명대	전영신	양덕립	목면 2필 정조전 6석			출자답	4두락지 12복 2속
423	토지명문	순치9년 임진년(1652, 효종3) 2월 초1일 승(僧) 의경(儀岡)에게 주는 명문	1652	정계생	의경	정계생	목면 5~6 새베 70필		북대거리	출자답	4두락지 12복 2속
425	토지명문	용정2년(1724, 경종4) 갑진년 5월 15일 이희증(李希曾)에게 주는 명문	1724	나기현	이희증	조우혁	돈 4냥	토지	사탄	출자답	7두락지 25복 4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426	토지명문	옹정1년(1723, 경 중3) 계묘년 11월 초7일 나기현(羅 起見)에게 주는 명문	1723	전성유	나기현	보원	돈 90냥	토지	사탄	출자답	7두락지 25복 4속
497	토지명문	광서5년(1879, 고 종16) 기묘년 2월 13일 에게 주는 명 문	1879	강응삼		강응삼	돈 40냥	토지	사탄	출자답	2두락지 7부 3속
498	토지명문	광서12년(1886, 고종23) 병술년 2 월 초7일 에게 주 는 명문	1886	홍달선			돈 27냥	토지	사탄	출자답	2두락지 7부 3속
48	토지명문	간룡21년(1756, 영조32) 병자년 2 월 29일 이성오촌 질(異姓五寸侄) 이시화(李時華) 에게 주는 명문	1756	정승조	이시화	정승조	돈 18냥	토지	세초미	칭자답	3두락지 11부 9속
49	토지명문	건륭17년(1752, 영조28) 임신년 11월 15일 외종제 (外從弟) 유학(幼 學) 정승조(鄭昇 朝)에게 주는 명 문	1752	이원석	정승조	이원석	돈 21냥	토지	세초미	칭자답	3두락지 11부 9속
50	토지명문	건륭6년(1741, 영 조17) 신유년 3월 9일 종조(從祖)에 게 주는 명문	1741	이종혁	종조	이종혁	돈 25냥 52전	토지	마편정	칭자답	3두락지 11부 9속
51	토지명문	강희56년(1717, 숙종43) 정유년 2 월 29일 유학(幼 學) 이원인(李源 仁)에게 주는 명 문	1717	김해준	이원인	박준영	돈 37냥	토지	세초미	칭자답	3두락지 11부 3속
52	토지명문	강희38년(1699, 숙종25) 기묘년 1 월 6일 김해준(金 海准)에게 주는 명문	1699	김덕립	김해준	김일중	정조전 70석 수소 1척	토지	세초미	칭자답	5두락지 21부
53	토지명문	강희36년(1697, 숙종23) 정축년 4 월 29일 김덕립 (金德立)에게 주 는 명문	1697	일행	김덕립	공후원	조 전 11석	토지	수집	칭자답	5두락지 21부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54	토지명문	강희35년(1696, 숙종22) 병자년 4월 20일 승(僧) 일행(日行)에게 주는 명문	1696	김항익	일행	권희신	수소 1마리 포5필 정조전 11석	토지	수집	칭자답	5두락지 21부
55	토지명문	강희9년(1670, 현종11) 경술년 3월 7일 비(婢) 학례(鶴禮)에게 주는 명문	1670	득상	학례	정응록	보병목 10필 정조전 4석		수집	칭자답	5두락지 21부
408	토지명문	강희59년(1720, 숙종46) 경자년 1월 26일 연곡사(蓮谷寺) 삼강(三綱)에게 주는 명문	1720	최귀현	삼강	최일주	돈 15냥	서면	가산평리	칭자답	3두락지 6복 7속
247	토지명문	용정2년(1724, 경종) 갑진년 12월 25일 승(僧) 처한(處汗)에게 주는 명문	1724	막금	처한	정시대	돈 14냥			하자답	3작 2두락지 6부
150	토지명문	건륭6년(1741, 영조17) 신유년 1월 10일 이생원(李生員) 맥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1741	권세휘	가팔리	권세휘	돈 9냥	토지	구만리	합자	1두 5승락지 4부 4속
202-2	토지명문	건륭8년(1743, 영조19) 계해년 3월 28일 손발(孫發)에게 주는 명문	1743	이	손발	이	돈 2냥			합자	3두락지 2부 8속
454	토지명문	가경8년(1803, 순조3) 계해년 2월 18일 유학(幼學)에게 주는 명문	1803	이태운		이동식	돈 50냥	토지	당산	합자110번 답 합자111번 답	7복1속 2복6속
243	토지명문	건륭51년(1786, 정조10) 병오년 3월 20일 박수근(朴水根)에게 주는 명문	1786	이덕준	박수근	황성징	돈 75냥	토지	당산	합자 128번답	2배미 4두락지 9부 8속
67	토지명문	건륭48년(1783, 정조7) 계묘년 3월 15일 가선대부(嘉善大夫) 승(僧) 채원(采元)에게 주는 명문	1783	이덕삼	채원	황성징	돈 140냥	토지	당산평	합자 128번답 합자 129번답	7두락지 25부
20	토지명문	건륭30년(1765, 영조41) 을유년 3월 17일 승(僧) 인쇄(印惠)에게 주는 명문	1765	백상봉	인혜	박동기	돈 9냥	토지	당산	합자답	1두락지 2부 2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21	토지명문	건륭22년(1757, 영조33) 정축년 6월 20일 백상봉(白上奉)에게 주는 명문	1757	예산	백상봉	김성래	돈 3냥	토지	당산	함자답	1두락지 2부 2속
22	배자	노(奴) 예산(禮山)에게 부침	1757	최	예산			토지	당산	함자답	1두락지 2부 4속
23	토지명문	건륭21년(1756, 영조32) 병자년 1월 17일 동성 6촌(同姓六寸) 최한주(崔漢柱)에게 주는 명문	1756	최한명	최한주	최한명	돈 3냥	토지	당산	함자답	7승락지 2부 2속
68	토지명문	건륭28년(1763, 영조39) 계미년 1월 19일 이원세(李元世)에게 주는 명문	1763	희선	이원세	전일주	돈 37냥	토지	당산평	함자답	2작 4두락지 16부 8속
69	토지명문	건륭13년(1748, 영조24) 무진년 3월 10일 최생원(崔生員) 덕 노(奴) 희선(喜先)에게 주는 명문	1748	희징	희선	석태현	돈 16냥	토지	당산	함자답	2두락지 11부
70	토지명문	건륭5년(1740, 영조16) 경신년 4월 28일 이수백(李水白)에게 주는 명문	1740	숙충	이수백	석태현	돈 17냥	토지	당산	함자답	3두락지 1배미 11부 3속
71	토지명문	강희46년(1707, 숙종 33) 정해년 2월 10일 이덕창(李德唱)에게 주는 명문	1707	정조이	이덕창	조위경	조선 10석 돈 20냥	토지	당산	함자답	2두락지 6부 5속
72	허급명문	옹정13년(1735, 영조11) 을묘년 1월 20일 연곡사중(燕谷寺中)에 주는 명문	1735	석명선	연곡사중	석태현	허급	토지	당산	함자답	1배미 2두락지
73	토지명문	건륭16년(1751, 영조27) 신미년 2월 15일 이생원(李生員) 덕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1751	서시찬	가팔리	박동기	돈 7냥	토지	구만촌	함자답	1두락지 3부 4속
74	토지명문	강희50년(1711, 숙종37) 신미년 12월 20일 김순래(金順萊)에게 주는 명문	1711	이수원	김순래	조위경	돈 15냥	토지	구만촌	함자답	2부 5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75	토지명문	강희24년(1685, 숙종11) 을축년 1월 20일 이인종(李仁宗)에게 주는 명문	1685	김일용	이인종	이홍익	소경 1결 정조전 1석	토지	구만리	함자답	1두락지 2부 5속
151	토지명문	옹정7년(1729, 영조5) 기유년 10월 27일 김해일(金海日)에게 주는 명문	1729	문후명	김해일	손필후	돈 11냥	토지		함자답	1두 5승락지 5부
152	토지명문	옹정3년(1725, 영조1) 을사년 3월 8일 문후명(文厚明)에게 주는 명문	1725	고해익	문후명	고해익	돈 15냥	토지	구만	함자답	1두 5승락지 4부 4속
168	토지명문	건륭10년(1745, 영조21) 을축년 2월 20일 윤상룡(尹尙龍)에게 주는 명문	1745	김유재	윤상룡	박재성	돈 2냥	토지	당산	함자답	1두 3승락지 5부
169	토지명문	옹정3년(1725, 영조1) 을사년 3월 11일 김시백(金時伯)에게 주는 명문	1725	정번	김시백	허시정	수소 1마리	토지	당산	함자답	1두 3승락지 5부
231	토지명문	건륭49년(1784, 정조8) 갑진년 12월 6일에 에게 주는 명문	1784	조		조	돈 60냥	토지	구만촌 전	함자답	3두락지 8부 6속
231-1	배자	노(奴) 유월금(六月金)에게	1784	조	유월금		돈 60냥	토지	구만촌 전	함자답	3두락지 8부 6속
232	토지명문	건륭56년(1791, 정조15) 신해년 12월 9일 에게 주는 명문	1791	김지각		이유상	돈 40냥	토지	구만촌 전	함자답	3두락지 8부 6속
242	토지명문	건륭52년(1787, 정조11) 정미년 3월 27일 승(僧) 채원(采元)에게 주는 명문	1787	박수진	채원	박수진	돈 52냥	토지	당산	함자답	4두락지 9부 8속
244	토지명문	건륭33년(1768, 영조44) 무자년 12월 20일 이원세(李元世)에게 주는 명문	1768	마씨	이원세	윤성국	돈 22냥	토지	당산	함자답	2두락지 6부 3속
245	토지명문	건륭 13년(1748, 영조24) 무술년 3월 26일 김해준(金海准)에게 주는 명문	1748	김부담	김해준	석태현	돈 3전	토지	당산	함자답	1두락지 4부 2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246	토지명문	용정5년(1727, 영조3) 정미년 4월 18일 김해준(金海准)에게 주는 명문	1727	진기	김해준	정치주	정조전 10석 돈8냥	토지	당산	함자답	2두락지 9부 2속
248	토지명문	강희50년(1711, 숙종37) 신묘년 2월 15일 황계남(黃戒男)에게 주는 명문	1711	황개동	황계남	정시태	돈 28냥	토지	구만 당산	함자답	3두락지 4부 4속 2배미
453	토지명문	도광 2년(1822, 순조22) 임오년 11월 25일 유학(幼學)에게 주는 명문	1822	이명철		이명철	돈 12냥	토지	당산	함자답	2두락지 4복 9속
455	토지명문	가경6년(1801, 순조1) 신유년 3월 17일 유학(幼學) 이명철(李命喆)에게 주는 명문	1801	이시백	이명철	이시백	돈 22냥	토지	당산	함자답	2두락지 4복 9속
520	토지명문	가경12년(1807, 순조7) 정묘년 2월 30일 유학(幼學) 이증태(李增泰)에게 주는 명문	1807	이성	이증태		돈 27냥	토지	당산	함자답	2두락지 4복 7속
521	토지명문	가경13년(1808, 순조8) 무진년 12월 17일 유학(幼學) 한익록(韓益祿)에게 주는 명문	1808	이증태	한익록		돈 27냥	토지	당산	함자답	2두락지 4복 9속
522	토지명문	가경13년(1809, 순조9) 기사년 3월 16일 노(奴) 분금(分金)에게 주는 명문	1809	한익록	분금		돈 40냥	토지	당산	함자답	2두락지 4부 9속
523	토지명문	가경19년(1814, 순조14) 갑술년 2월 초4일 유노(柳奴) 복래(卜來)에게 주는 명문	1814	분금	복래		돈 35냥	토지	당산	함자답	3두락지 4복 9속
66	토지명문	건륭54년(1789, 정조13) 기유년 5월 15일 류부사(柳府使) 맥 노(奴) 용남(龍男)에게 주는 명문	1789	황추성	용남	황성징	돈 100냥	토지	구만리 당산평	함자답 동자답	7두락지 27부 7속 4두락지 12부 4속

번호	분류	소재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76	토지명문	강희21년(1682, 숙종8) 임술년 1월 29일 김일용(金日龍)에게 주는 명문	1682	김후복	김일용	김정현	정조 22두 정목 1필			함자대전	1두락지 2부 2속
198	토지명문	강희59년(1720, 숙종46) 경자년 1월 25일 김순형(金順亨)에게 주는 명문	1720	정선재	김순형	정선재	돈 3냥			함자대전	1두락 5부 8속
199	토지명문	순치7년(1650, 효종 1) 경인년 11월 6일 김응선(金應先)에게 주는 명문	1650	정희	김응선	강영립	정목면 4동		구만 구정자	함자대전 내자답	11부 5속, 2작전 14복 태종 5두락 3두락지 13부 2속
255	토지명문	건륭20년(1755, 영조31) 을해년 1월 29일 유학(幼學) 이핵(李翮)에게 주는 명문	1755	손필후	이핵	박수	돈 7냥			함자대전 동자답	2부 2속 1부 9속
256	토지명문	건륭23년(1758, 영조34) 무인년 2월 초10일 유학(幼學) 조도인(趙道仁)에게 주는 명문	1758	손필후	조도인	박수	돈 7냥			함자대전 동자답	2부 2속 1부 9속
257	토지명문	건륭56년(1791, 정조15) 신해년 12월 14일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1791	조종득	유덕호	조종득	돈 5냥	토지	당산평	함자대전 동자답	2부 2속 1부 9속
196	토지명문	건륭6년(1741, 영조17) 신유년 3월 20일 유학(幼學) 이원석(李源碩)에게 주는 명문	1741	모성훈	이원석	이동운	돈 30냥		구만리	함자대전 시목 초가 과목	태종 2두락지 6부 3주 6칸
149	토지명문	강희21년(1682, 숙종8) 임술년 1월 28일 오기립(吳起立)에게 주는 명문	1682	이상민	오기립	김성▣	정조 전 2석 4두	토지	구만리	함자전	태종 1두 5승락지 5부 9속
153	토지명문	강희49년(1710, 숙종36) 경인년 3월 11일 고생원(高生員) 맥 노(奴) 석민(石民)에게 주는 명문	1710	구학	석민	김순형	돈 2냥	토지	구만리	함자전	태종 1두 5승락지 5부 9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200	토지명문	경오년(1690) 11월 27일 신양(信陽)에게 주는 명문	1690	송신망	신양	송신망	정조 10두			함자전	1두락지 3부 3속
201	토지명문	강희56년(1717, 숙종43) 정유년 2월 회일(晦日) 이생원(李生員) 닥노(奴) 기인(己仁)에게 주는 명문	1717	강선위	기인	박후영	돈 2냥		구만촌전	함자전	1두락지 3부 3속
202	토지명문	강희43년(1704, 숙종30) 갑신년 3월 19일 황조백(黃祖白)에게 주는 명문	1704	이조이	황조백	김중채	수소1 짐말1 돈21냥		당산	함자전	태종 5두락지 25부 5속
202-1	토지명문	옹정10년(1732, 영조8) 임자년 3월 21일 노(奴) 손선(孫先)에게 주는 명문	1732	황우세	손선	황우세	돈 8냥		당산리	함자전	5두락지 25부 1속
223	배자	노(奴) 태재에게	1791	김	태재			토지	당산평	함자전	태종 7두락지 32부 8속
224	토지명문	건륭56년(1791, 정조15) 신해년 12월 29일 유삼수(柳三水) 닥노(奴) 복래(卜來)에게 주는 명문	1791	태재	복래	조운익	돈 27냥	토지	당산평	함자전	태종 7두락지 32부 8속
249	토지명문	강희28년(1689, 숙종15) 기사년 2월 15일 정시필(鄭時必)에게 주는 명문	1689	방조이	정시필	황준건	정조 전 2석	토지	당산	함자전	태종 2두락지 4부 4속
197	토지명문	옹정7년(1729, 영조5) 기유년 9월 회일(晦日) 모생원(牟生員) 닥노(奴) 돌이(捫伊)에게 주는 명문	1729	김순형	돌이		돈 35냥			함자전  시목 출가 조행 랑및 고사	태종 2두락지 6부 8속 2주 2지 6칸
166	토지명문	건륭12년(1747, 영조23) 정묘년 12월 28일 동성(同姓) 5촌질(五寸侄) 최우천(崔佑天)에게 주는 명문	1747	최우관	우천	최우관	돈 4냥	토지	당산	함자전답	답시종 5승락지 전피모 3두락지 7부 2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140	토지명문	건륭10년(1745, 영조21) 을축년 1월 11일 이무발(李戊發)에게 주는 명문	1745	김해준	이무발	김해준	8전	토지		해자 31번전 해자전	태종 5두락지 8속 태종 5두락지 9속
186	토지명문	가경25년(1820, 순조20) 경진년 1월 15일 유학(幼學) 장봉익(張鵬翼)에게 주는 명문	1820	고육석	장봉익	고육석	돈 12냥	토지	구만평	해자47번답	3두락지 11부 4속
187	토지명문	가경17년(1812, 순조12) 임신년 2월 28일 유학(幼學) 박진형(朴鎭衡)에게 주는 명문	1812	김낙성	박진형	김낙성	돈 30냥	토지	구만	해자47번답	3두락지 11부 4속
78	토지명문	건륭10년(1745, 영조21) 을축년 4월 3일 보평(浣坪) 제작자(諸作者)에게 주는 명문	1745	이하석	여러 작자	이하석	돈 6냥	토지	산정	해자8답 해자9답 해자10답	1두락지 2부 9속 1부 3속 2속
77	토지명문	건륭28년(1763, 영조39) 계미년 1월 30일 수작자(首作者) 출신(出身) 이시화(李時華)에게 주는 명문	1763	조도계	이시화	서이한	돈 6냥		산정	해자답	3작 1두락지 4부 4속
79	토지명문	강희56년(1717, 숙종43) 정유년 3월 10일 이생원(李生員) 덕 노(奴) 점봉(占奉)에게 주는 명문	1717	정시대	점봉	정시대	돈 2냥 3전	토지	산정	해자답	1부 2속
126	토지명문	강희53년(1714, 숙종40) 갑오년 2월 8일 승(僧) 취엄(就嚴)에게 주는 명문	1714	서종건	취엄	태화	돈 27냥	토지	구만리 행정하	해자답	2두락지 5부 6속
127	토지명문	강희57년(1718, 숙종44) 무술년 2월 15일 이생원(李生員) 덕 노(奴) 장발(長發)에게 주는 명문	1718	취엄	장발	태화	돈 27냥	토지	구만리 송정자	해자답	2두락지 5부 6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130	토지명문	강희62년(1722, 경종2) 임인년 8월 16일 유학(幼學) 이희중(李希曾)에게 주는 명문	1722	이수익	이희중	이동윤	돈 30냥	토지	구만 송정자	해자답	2두락지 6부 7속
184	토지명문	도광3년(1823, 순조23) 계미년 1월 27일 에게 주는 명문	1823	장홍익		장홍익	돈 30냥	토지	구만평	해자답	3두락지 11부 4속
185	토지명문	가경18년(1813, 순조13) 계유년 2월 21일 유학(幼學) 고육석(高六錫)에게 주는 명문	1813	박진형	고육석	박진형	돈 30냥	토지	구만촌	해자답	3두락지 11부 4속
188	토지명문	간릉8년(1743, 영조19) 계해년 5월 15일 이생원(李生員) 덕 노(奴) 가팔리(加八里)에게 주는 명문	1743	김독산	가팔리	정위주	돈 14냥			해자답	2두락지 5복 9속
190	토지명문	강희52년(1713, 숙종39) 계사년 10월 10일 김독산(金禿山)에게 주는 명문	1713	박옥대	김독산	김상번	정조 전 2석	토지		해자답	2두락지 5부 6속
491	토지명문	광서15년(1889, 고종26) 기축년 1월 27일 에게 주는 명문	1889	박용호			돈 120냥	토지	장수평	해자답	4두락지 17부 7속
492	토지명문	추록	1889		박용호		돈 120냥	토지	장수평	해자답	4두락지 17부 7속
493	토지명문	할반된 토지명문	미상						장수평	해자답	
494	토지명문	광서14년(1888, 고종25) 무자년 3월 13일 에게 주는 명문	1888	곽순		곽순	돈 140냥	토지	장수평	해자답	4두락지 17부 7속
495	토지명문	광서12년(1886, 고종23) 병술년 1월 27일 에게 주는 명문	1886	김창규		김창규	돈 90냥	토지	장수평	해자답	3두락지 13부 3속
128	토지명문	순치13년(1656, 효종7) 3월 29일 김시양(金時陽)에게 주는 명문	1656	우진운	김시양	김응선	정목 15필	토지	구만 송정	해자전	2두락지 5부 6속
129	토지명문	강희46년(1707, 숙종 33) 정해년 2월 9일 서상문(徐尙文)에게 주는 명문	1707	김진하	서상문	김진하	돈 7냥	토지	구만 송정	해자전	2두락지 5부 6속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1	노비명문	가경15년(1810, 순조10) 경오년 2월 초4일 유학(幼學) 유덕호(柳德浩)에게 주는 명문	1810	이기대	유덕호	이진한	돈 30냥				
1-1	고목	을해년(1815) 12월 25일에 고두열(高斗列)이 생원에게 주는 고목	1815	고두열	생원						
1-2	소지	을해년(1815) 12월에 토지 오미동의 유풍천택(柳豐川宅) 노(奴) 해손(亥孫)이가 구례현감에게 올린 소지	1815	해손	구례현감						
12	소지	수리색(修理色) 권직형(權直衡)이 올린 소지	1785	권직형	관						
65	토지명문	강희11년(1672, 현종13) 임자년 1월 28일 정사길(鄭士吉)에게 주는 명문	1672	방조이	정사길	이홍익	5승포 2필 정조 5석		산정		태종 2두락지 8부 6속
80	소지	토지에 사는 김해준(金海俊) 등	1746	김해준	관						
81	소지	토지에 사는 김해준(金海俊) 등	1745	김해준	관						
111	소지	관노(官奴) 정만이(鄭萬伊) 소지	1732	정만이	관						
158	표	병자년(1876)8월 20일노병진표	1876	노병진			돈 120냥				
159	표	병자년(1876) 9월 12일노병진표	1876	노병진			돈 16냥				
165	소지	전라북도 구례에 사는 유제양(柳濟陽)	1896	유제양	관						
167	소지	화민(化民) 유학(幼學) 최우천(崔佑天) 소지	1756	최우천	관						
189	소지	토지(吐旨)에 사는 박옥대(朴玉代)	1713	박옥대	관						
227	토지명문	광서7년(1881, 고종18)신사년 12월에 주는 명문	1881	이홍준			돈 5냥	토지	도산평		5두락지 1부

번호	분류	소제목	서기	매도자 (발급자)	매입자 (수급자)	작성자	매매	소재	땅이름	전답자호	부수
229	토지명문	광무 9년(1905, 광무9) 을사년 4월 1일 유낙안택(柳樂安宅)에게 주는 명문	1905	김상표	유낙안택		돈 10냥	간전	백운천		동쪽 길 아래, 송전 위 등
233	간찰	기축년(1889) 4월 23일 종제(從弟) 유제관(柳濟寬) 상서(上書)	1889		수신 유제양	유제관		토지			
234	수기	무자년(1828) 10월 16일 노 해손(亥孫) 수기	1828	해손				토지	오미동		
250	소지	토지(吐旨面)에 사는 사노(私奴) 두원(斗元)	정유년	두원	관						
347	배자	강희44년(1705, 숙종31) 을유년 1월 10일 구례 노평립(平立)에게 부침	1705	상전 오씨	평립	상전 오씨					
429	소지	토지에사는 박귀상(朴貴上)	1700	박귀상	구례현감						
442	토지명문	건륭15년(1750, 영조26) 경오년 10월 일 유학(幼學) 유생원(柳生員)에게 주는 명문	1750	김경호	유생원	고덕우	돈 50냥				분묘의 서쪽 금양지 마산면의 초군골짜기안 남쪽셋길안
444	계약서	융희4년(1910, 순종3) 경술년 3월 15일 계약서	1910	유수환			돈 60냥				지가 10냥 측량비 50냥
499	토지명문	동치14년(1875, 고종12) 을해년 3월 12일 에게 주는 명문	1875	유수복			돈 36냥	토지	화쟁평		2두락지 1부
500	토지명문	동치8년(1869, 고종6) 기사년 12월 29일 에게 주는 명문	1869	유씨			돈 20냥	토지	화쟁평		2두락지 1부
525	서간	경신년(1800) 고수관(高守權) 서간(書簡)	1800	고수관	유덕호						

호남한국학자료총서4

구례 문화유씨 운조루 문서1

찍은날 2019년 1월 24일

펴낸날 2019년 1월 31일

펴낸이 이종범

펴낸곳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소촌동)

전 화 062-603-9600

팩 스 062-941-6705

편저자 권수용, 문현주, 최영희

편집·제작 올킴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134번길 19

전 화 062-226-7735

팩 스 062-226-7745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호남한국학진흥 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